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385-10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Social Security Factbook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ocial Security Factbook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이용자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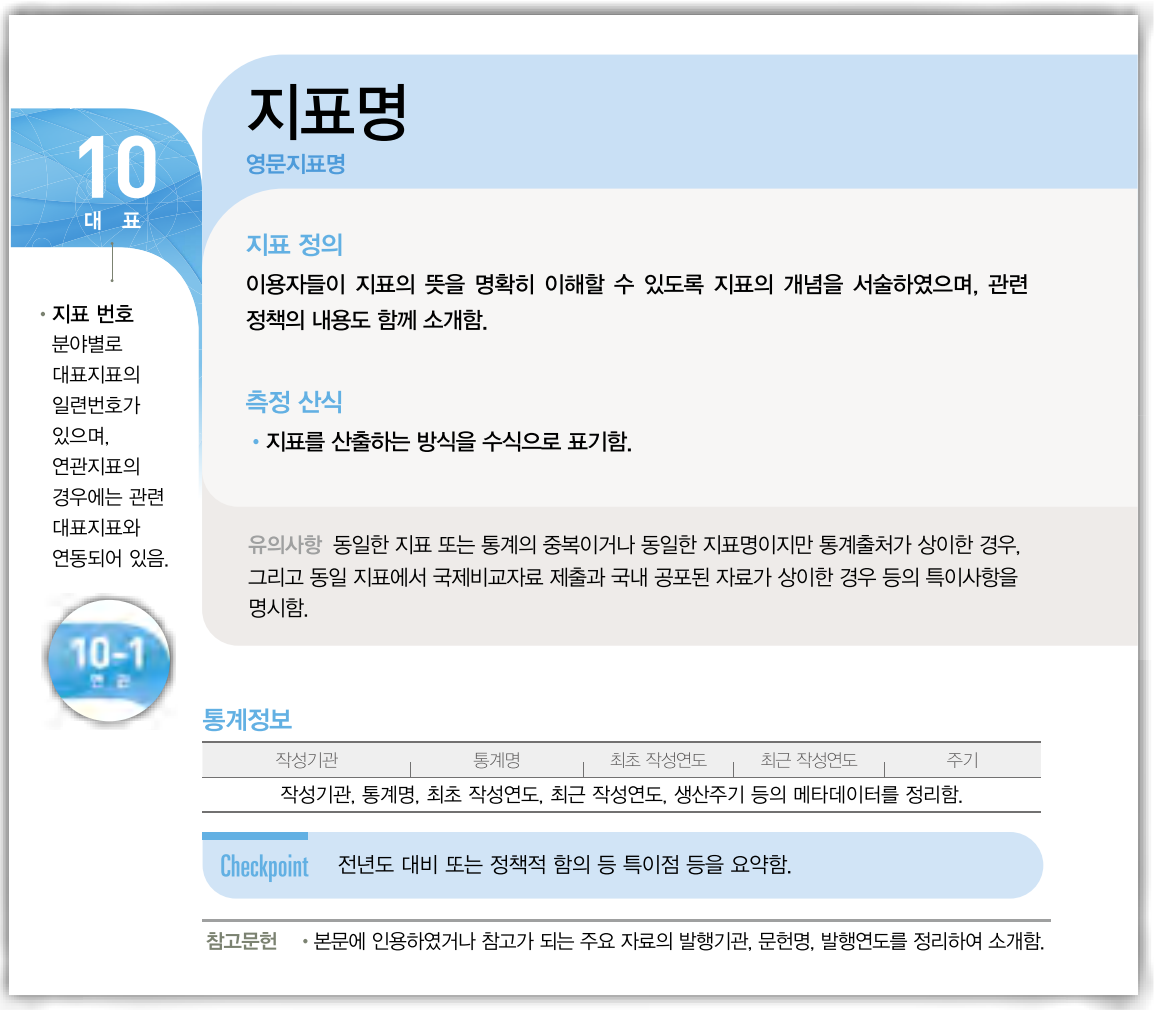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 수준과 시대적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통계 연보임.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문화 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과 삶의 질에 관련된 통계를 종합 제시함.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은 14개 분야, 51개 세부 영역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함.

[그림] 사회보장통계 분야와 각 세부 영역명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음.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은 다음 기준으로 작성함.

- 통계 정보 중에서 전년도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업데이트, 오류 정정 등의 이유로 변경된 것임.
- 반올림 처리로 세부 항목의 합계와 총계(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수록된 통계는 사회보장통계 운영지침에 따라 제출기관이 2022년 12월 말 현재 작성 ·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의 작성연도는 주로 2021년임. 다만, 보다 최신 자료가 있는 경우 최신 자료를 수록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산출된 미공표 자료는 작성 시점의 차이로 인해 부처가 발간하는 각종 통계 연보의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보고서에 사용된 부처명은 2021년 시점의 부처명을 기준으로 작성함.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기반으로 전자책(e-book)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됨.

• 사회보장통계는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책자 표지의 QR코드를 이용하여 통계서비스 포털로 접속할 수 있음.

※ 발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로 문의 바랍니다. (044-202-3752)

인포그래픽 014

사회배경 026

1 가족 040

2 아동 070

3 청년 100

4 노인 114

5 장애인 136

6 근로 174

7 소득보장과 빈곤 204

8 건강 234

9 보육 및 교육 296

10 문화 324

11 주거 348

12 에너지 372

13 환경 386

14 사회재정 406

지표별 목차

사회 배경

01. 인구성장률 028
02. 총인구 029
03. 인구피라미드 030
04. 부양비 031
05. 합계출산율 032
06. 국내총생산 034
07. 1인당 국민총소득 035
08. 경제성장률 036
09. 소비자물가지수 037
10.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038

1 가족

01. 1인가구 042
02. 노인가구 043
03. 한부모가구 045
04. 국내외 입양아동 수 046
 04-1.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047
 04-2.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048
05. 다문화가구 050
 05-1. 북한이탈주민 052
06.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053
07.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054
08.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봄 055
09.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056
10. 조이혼율 057
 10-1. 조혼인율 058
 10-2.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059
11. 가족부문 공공사회복지 지출 060
1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1
13.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3
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5
1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7

2 아동

01. 아동 수면시간 072
02.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074
03. 아동 자살률 076
0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078
 04-1. 아동 손상 경험률 080
05.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081
06.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083
07. 아동 빈곤율 085
 07-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087
 07-2. 아동급식 지원자 수 088
08. 나홀로 아동 089
 08-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091
09. 보호대상아동 아동 수 094
 09-1.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096

09-2.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097
09-3.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수 099

3 청년

01. 청년고용률 102
01-1. 대학 졸업 청년고용률 103
02. 청년 비정규직 비율 104
03.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 105
04. 청년 니트(NEET) 비율 106
05. 청년 상대적 빈곤율 108
06.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 109
07.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110
08. 청년 우울감 경험률 111
09.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112
10.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 113

4 노인

01. 65세 기대여명 116
02. 노인의 ADL 제한율 118
03. 노인의 운동 실천율 119
03-1. 노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120
04. 노인의 학대경험률 121
05. 노인 진료비 123
05-1. 의료기관 종별 노인 외래환자 수 124
06.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125
06-1.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127
07.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128
07-1.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130
08. 장기요양기관 수 131
08-1. 장기요양기관의 전문 인력 133

5 장애인

01. 등록장애인 수 138
01-1. 장애출현율 141
02.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142
02-1.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143
03. 장애인 복지시설 수 144
03-1.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145
03-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146
03-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147
0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48
05.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50
0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52
06-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154
07.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156
08. 특수교육 대상자 수 158
08-1.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159
09. 장애인 교육 수준 160
10.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161
10-1. 장애인 고용률 162
10-2. 장애인 실업률 163

1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64
12.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165
13.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166
13-1. 장애수당 수급자 수 167
13-2.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168
14.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169
15.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171

6 근로

01. 경제활동참가율 176
02. 고용률 177
03. 실업률 178
04. 실업급여 수급자 수 180
05.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181
06. 총 근로시간 182
0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184
08.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185
09. 사회보험 가입률 187
10. 산업재해율 188
11. 저임금근로자 비율 189
12. 시간급 최저임금 190
12-1. 최저임금 영향률 192
13. 시간당 임금총액 193
14.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194
15. 자활사업 대상자 수 196
15-1. 자활사업 참여자 수 198
16.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00
16-1.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202
17.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203

7 소득보장과 빈곤

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6
01-1.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208
01-2.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210
01-3. 주거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211
01-4. 의료급여 수급자 수 213
01-5. 교육급여 수급자 수 215
02.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216
03. 상대적 빈곤율 218
04. 상대적 노인 빈곤율 220
05. 소득5분위배율 222
06. 지니계수 223
07.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25
08.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227
09.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229
09-1.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231
10.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232

8
건강

01. 기대수명 236
01-1. 건강수명 238
01-2. 주관적 건강인지율 239
02. 조사망률 240
02-1. 연령표준화사망률 242
02-2. 영아사망률 243
02-3.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244
03. 저체중아 발생률 245
03-1. 조산율 246
04. 자살률 247
04-1. 정신장애 유병률 249
04-2. 우울장애 유병률 250
05. 10대 다빈도 상병 251
05-1. 암 발생률 252
05-2. 뇌졸중 의사진단 경험률 253
05-3. 고혈압 유병률 254
05-4. 당뇨병 유병률 255
06. 현재 흡연율 256
06-1.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258
06-2.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259
06-3. 청소년 현재 흡연율 260
07. 고위험 음주율 261
07-1. 연간 음주율 262
07-2. 청소년 현재 음주율 263
07-3. 1인당 알코올소비량 264
08. 비만율 265
08-1. 청소년 비만율 267
08-2. 걷기실천율 268
09.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269
09-1.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270
10. 평균 재원일수 271
11. 1인당 의사 진료 건수 272
11-1. 1인당 외래방문 횟수 273
11-2. 산전수진율 274
1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75
12-1.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1세 대상 277
12-2. 소아 ·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만 1~18세 278
13.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79
13-1.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280
14. 의료보장 적용 인구 281
14-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82
15. 의사 수 284
15-1. 면허의료인 수 286
16. 병상 수 287
16-1. 의료기관 수 289
17. GDP 대비 경상의료비 290
17-1.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291
17-2.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 292
17-3. 건강보험 급여비 293
17-4. 건강보험 보장률 294

9 보육 및 교육

0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298
0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300
03.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301
03-1.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302
0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304
05. 학교급별 취학률 305
06. 학급당 학생 수 306
07.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307
08. 교원 1인당 학생 수 308
09. 학생 1인당 사교육비 310
09-1.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311
10.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312
10-1.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314
11.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316
12.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318
13. 고등교육 이수율 320
14.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322

10 문화

0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26
01-1.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327
02. 연간 독서량 328
02-1. 연간 독서율 329
03.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331
0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332
05.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333
06.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활동 참여율 335
07. 생활체육 참여율 337
07-1.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338
08.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339
09.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341
10.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342
11.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343
1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344
13.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345
14. GDP 대비 문화예산 346
1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347

11 주거

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50
02.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352
03.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353
04.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355
05.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356
05-1.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358
06.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359
07. 노숙인 수 361
0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362
09.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364
10.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366

10-1.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367
11.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368
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370

12 에너지

01. 가전기기 보급률 374
02.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375
03. 도시가스 보급률 377
04.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378
05. 소득(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율 379
06.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380
07. 에너지효율 개선 382
08.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383
09. 연료비 지원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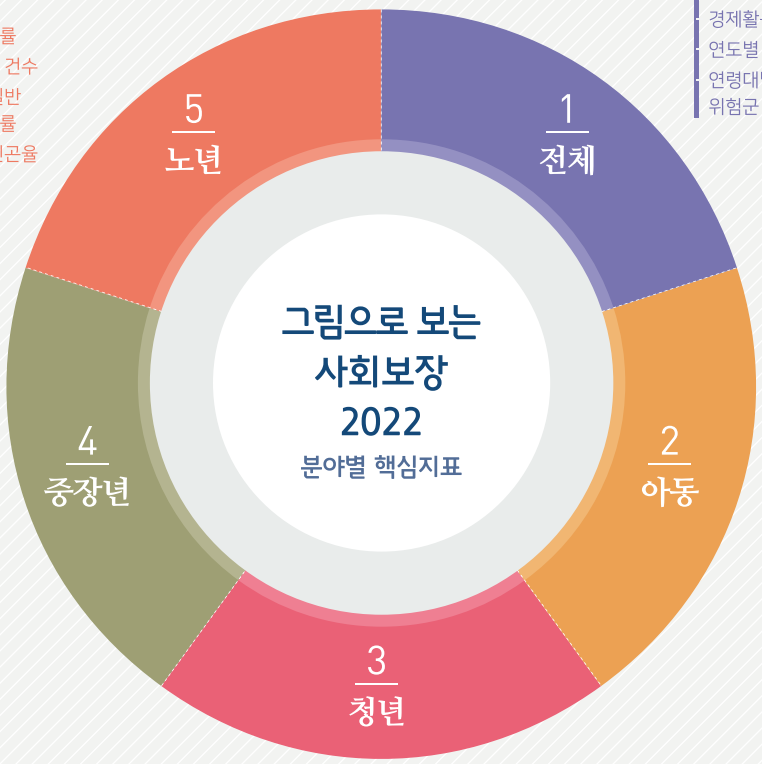
13 환경

01.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388
01-1. 주요 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389
01-2.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390
02. 주요 도시 소음도 391
0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392
03-1.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393
03-2.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394
04.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395
04-1. 환경예산 비율 396
05. 상수도 보급률 397
06. 하수도 보급률 398
06-1.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400
06-2. 하수도 설치율 401
07.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402
07-1.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403
08. 환경성질환자 수 405

14 사회 재정

01.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408
0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410
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412
04.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413
05. 공적연금수지 414
06. 고용 · 산재보험수지 415
07.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416
08.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417

INFOGRAPHICS 2022



- 인구성장률
-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 경제활동참가율
- 연도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 연령대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 건강식생활 실천율
- 수면과 운동 실천율
-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수
- 학교폭력

- 청년 고용률
- 청년 비정규직 비율
- 청년 상대적 빈곤율
- 주관적 삶의 만족도
- 사회단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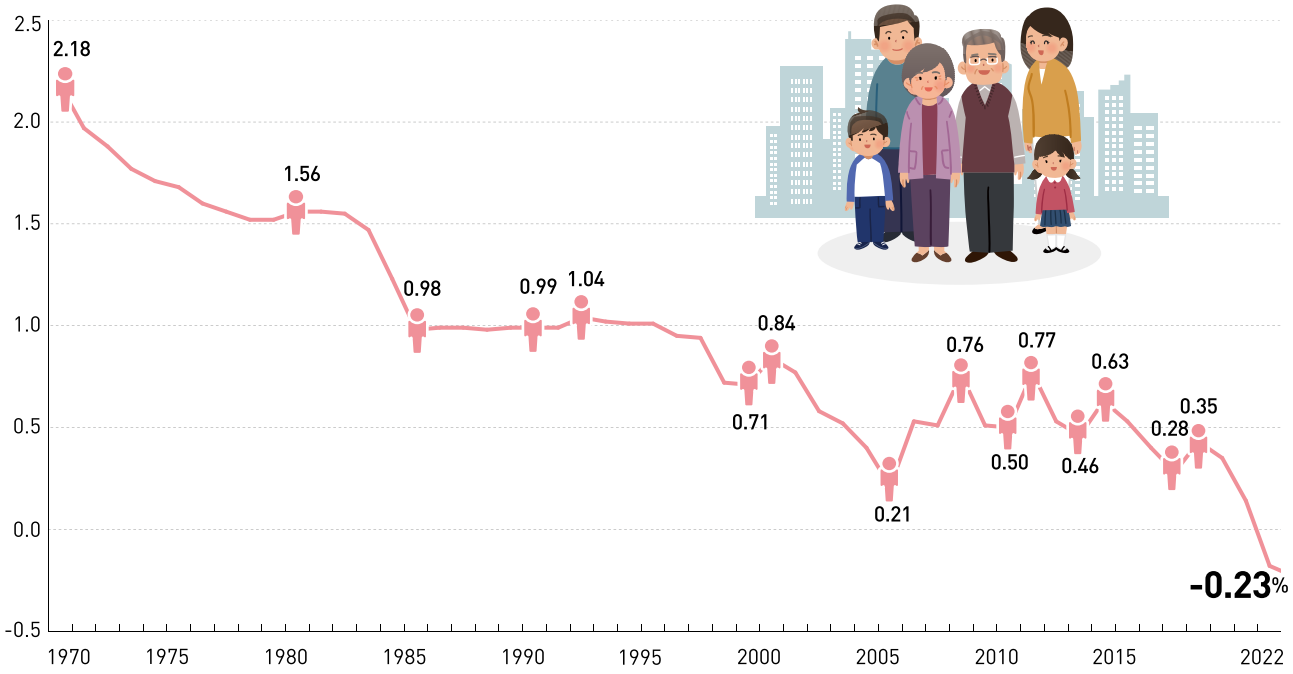
- 경제활동 참가율
-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관람 횟수
- 우울감 경험률
- 고위험 음주율
- 비만율

- 노인인구 비중
- 기초연금 수급률
- 노인학대 신고 건수
- 성별 노인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 상대적 노인 빈곤율 (65세 이상)

전체

▶ 인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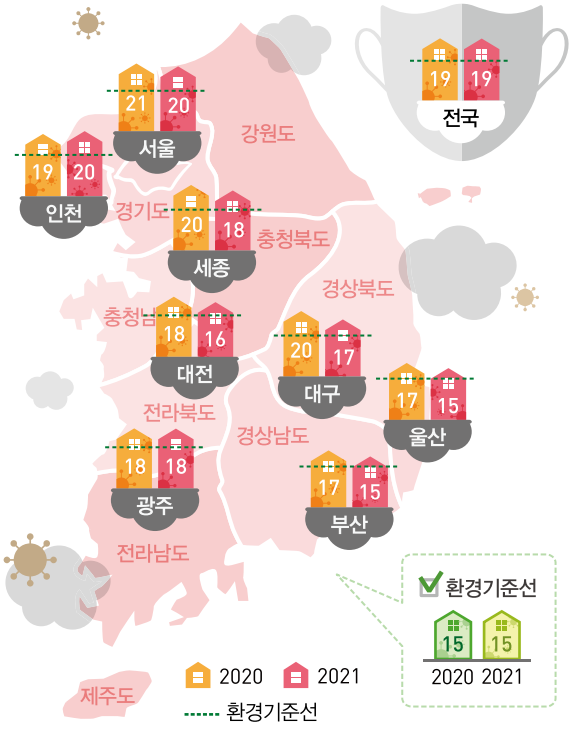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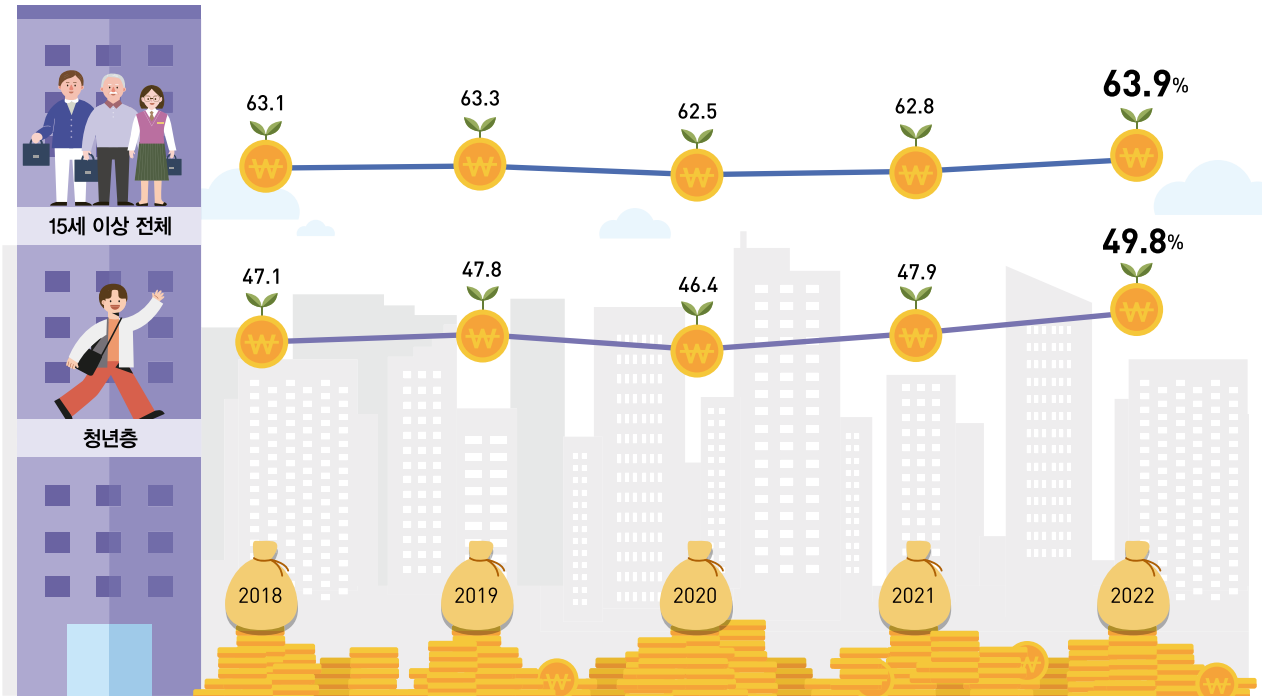
▶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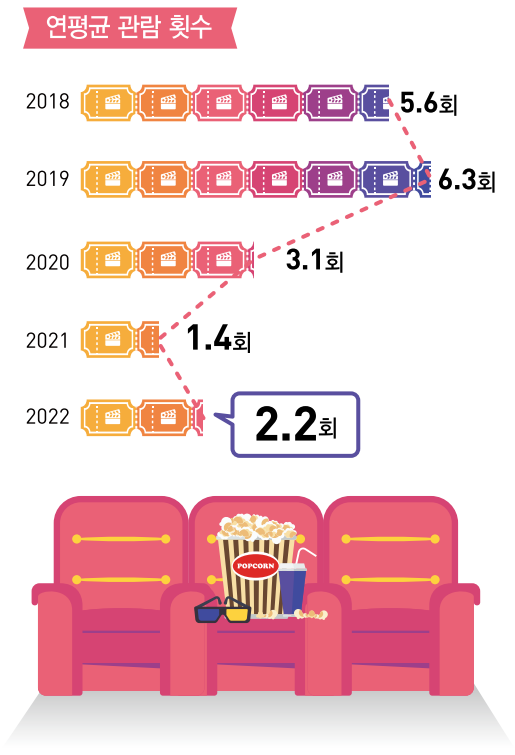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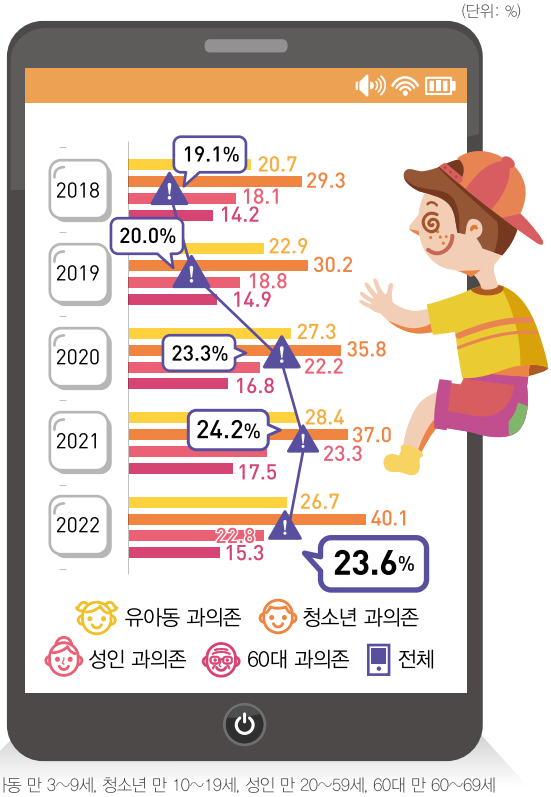
▶ 연도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단위: 회)



▶ 연령대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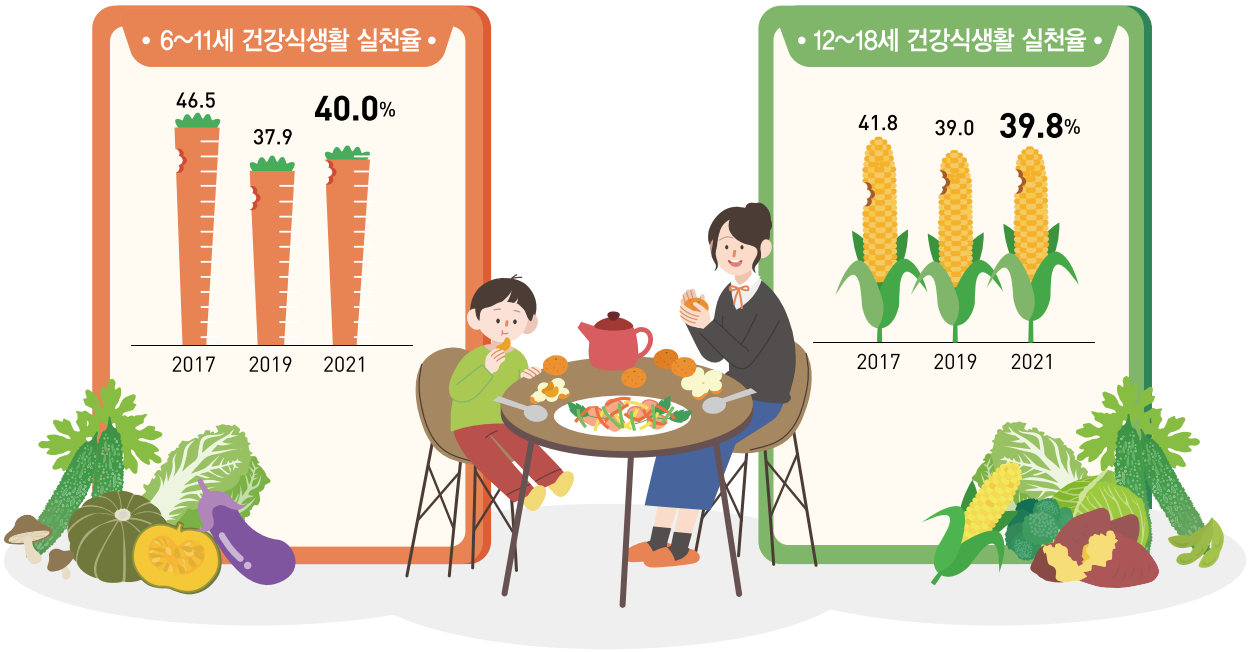


주: 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60대 만 60~69세

아동(18세 미만)

▶ 건강식생활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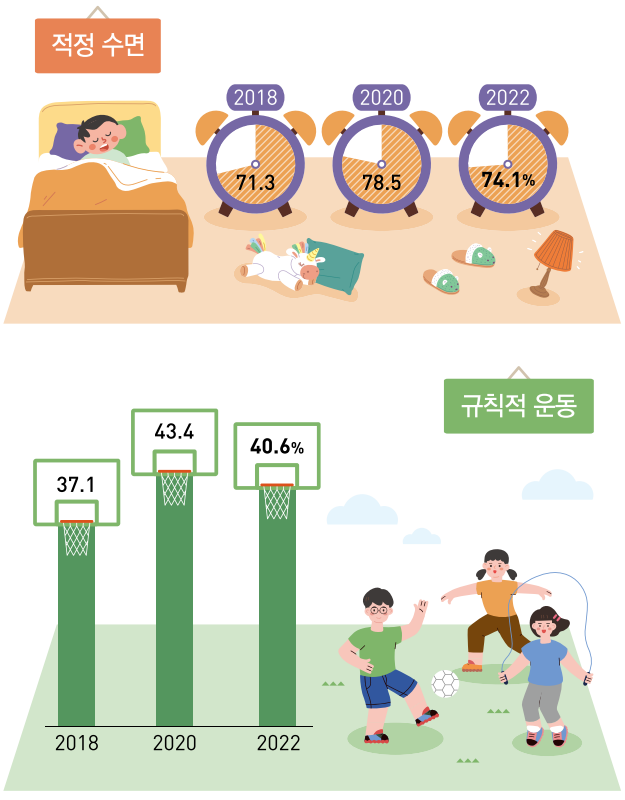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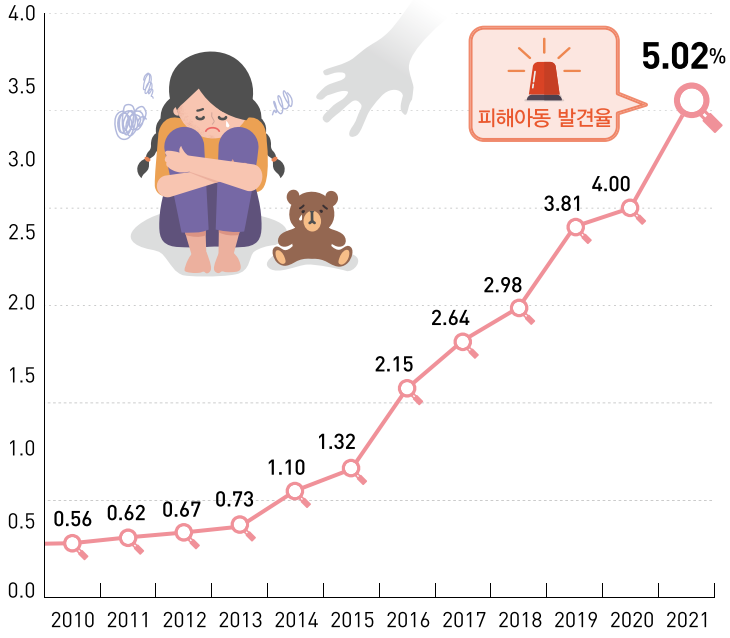
▶ 수면과 운동 실천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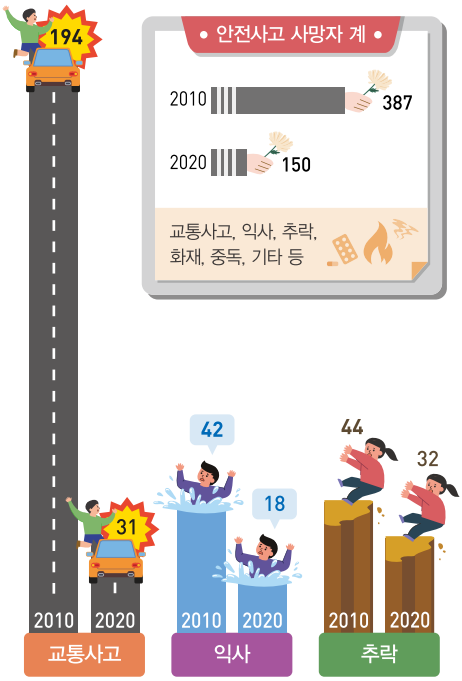
▶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건)



▶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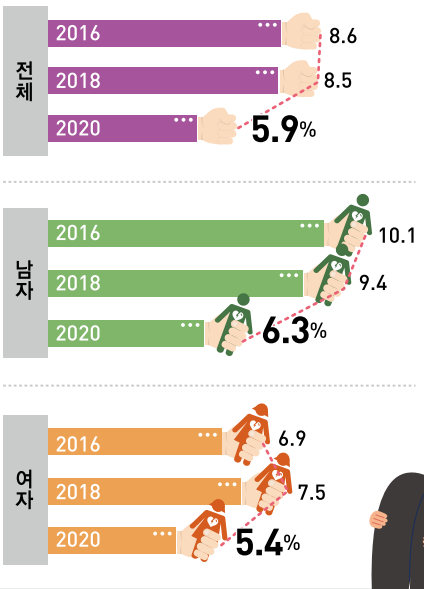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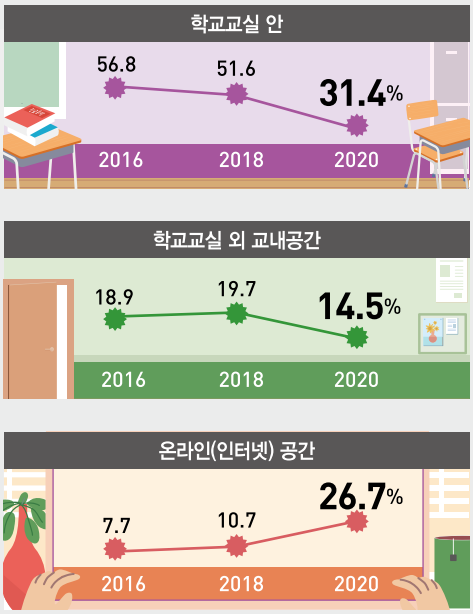
▶ 학교폭력

(단위: %)

•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



•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장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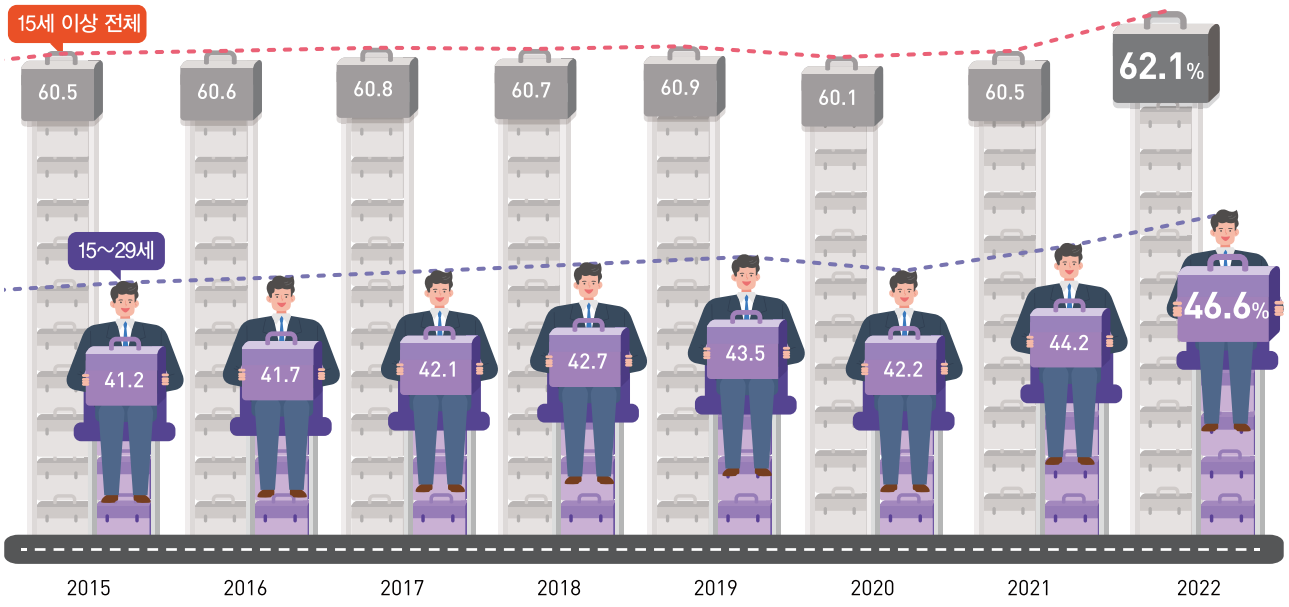


주: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폭력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

청년(19세~30대 초반)

▶ 청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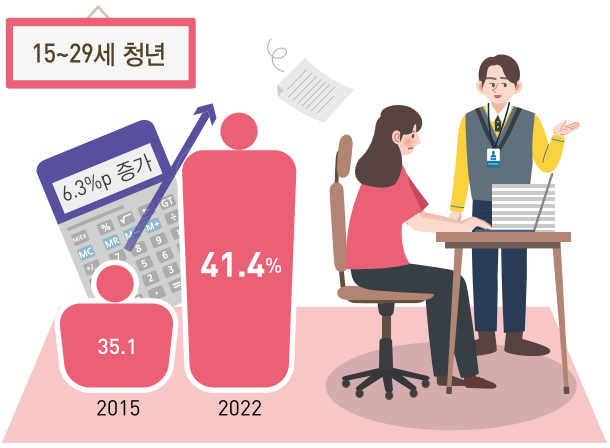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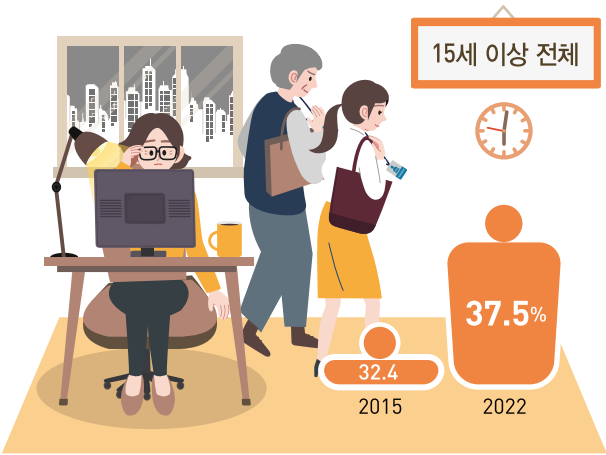




▶ 청년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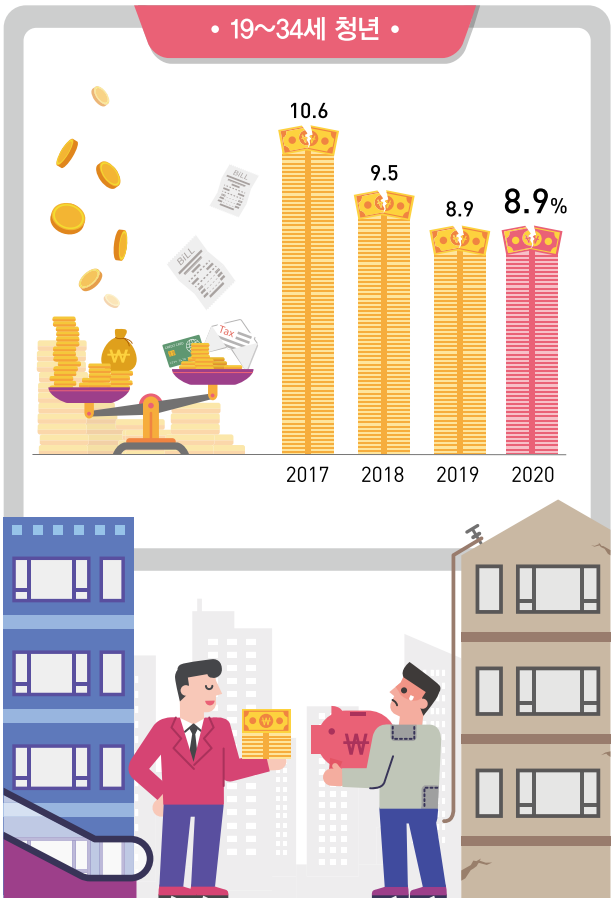
(단위: %)





▶ 청년 상대적 빈곤율

(단위: %)



▶ 주관적 삶의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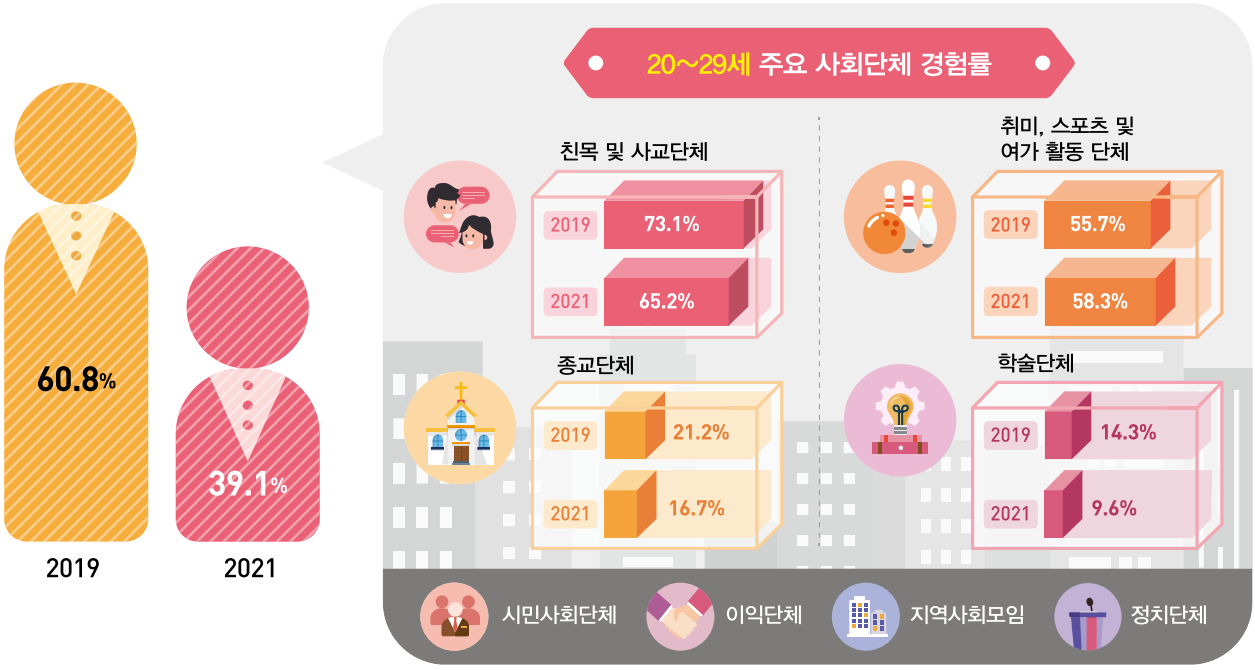


주: 삶의 만족도는 현제 삶에 어느정도 만족하는 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임



▶ 사회단체 경험률

(단위: %)



중장년(30대 초중반 ~ 60대 초반)

▶ 경제활동 참가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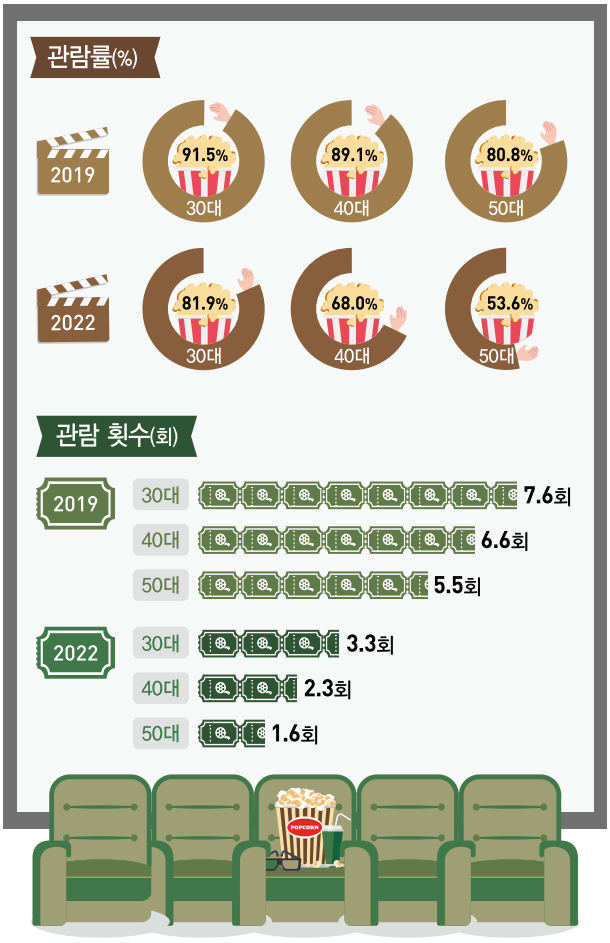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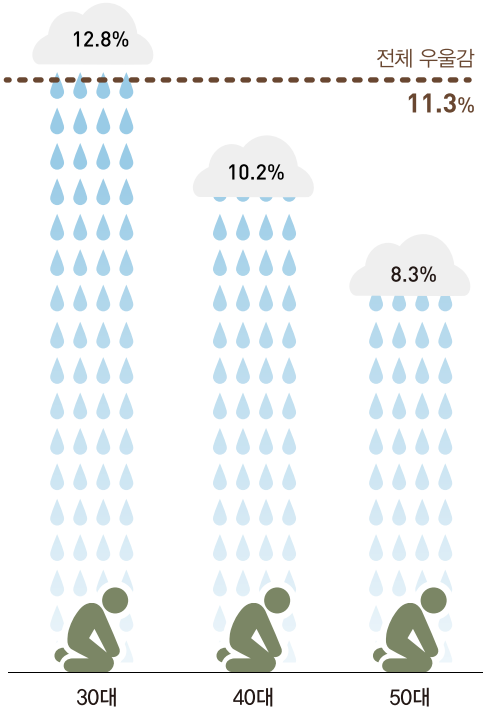
▶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관람 횟수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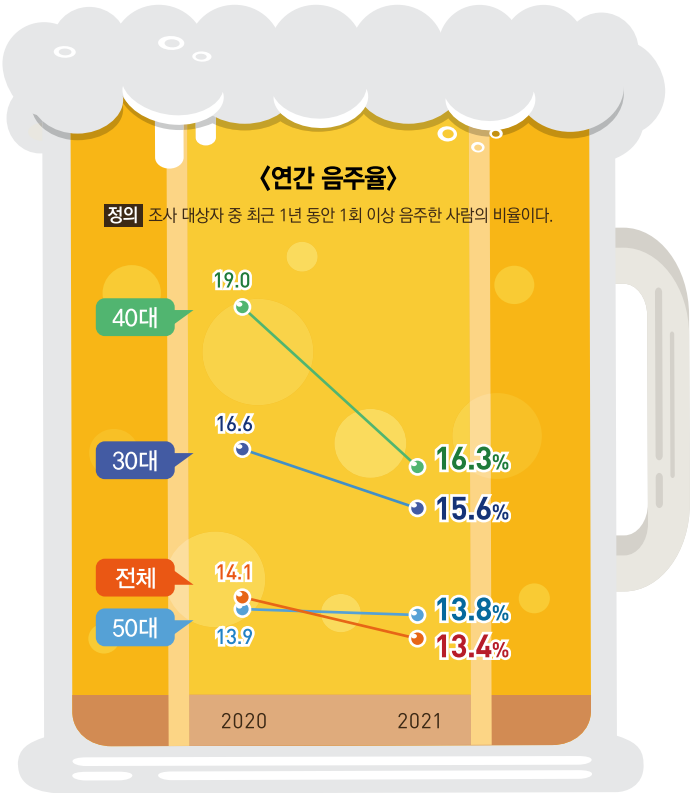
▶ 우울감 경험률 (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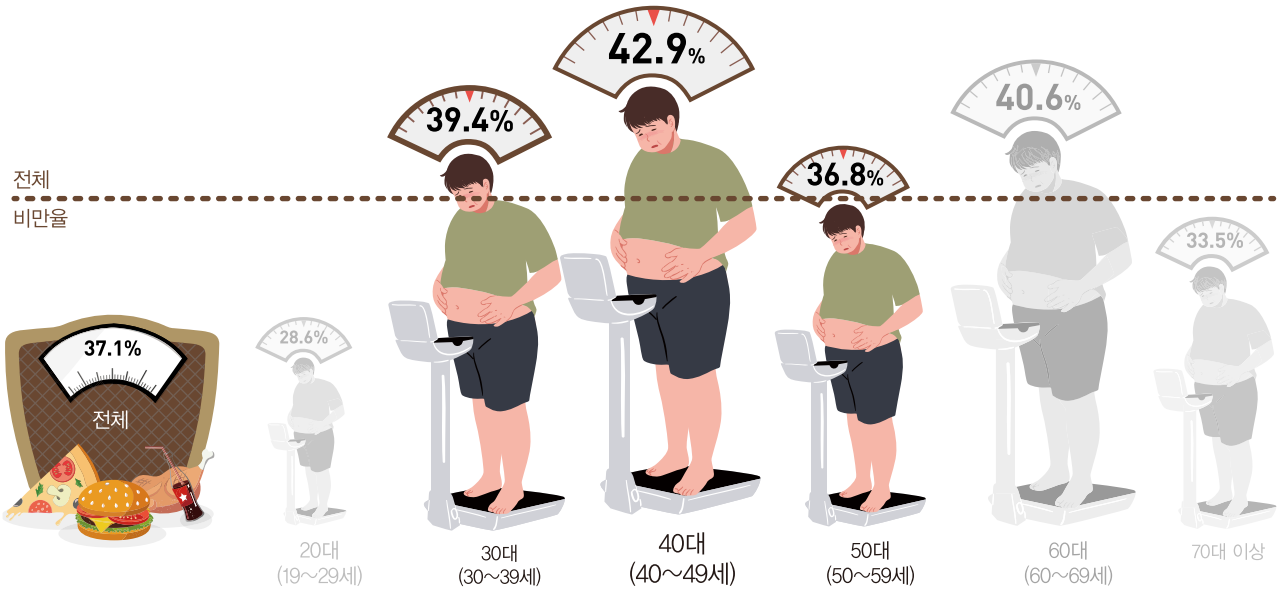
▶ 고위험 음주율

(단위: %)



▶ 비만율 (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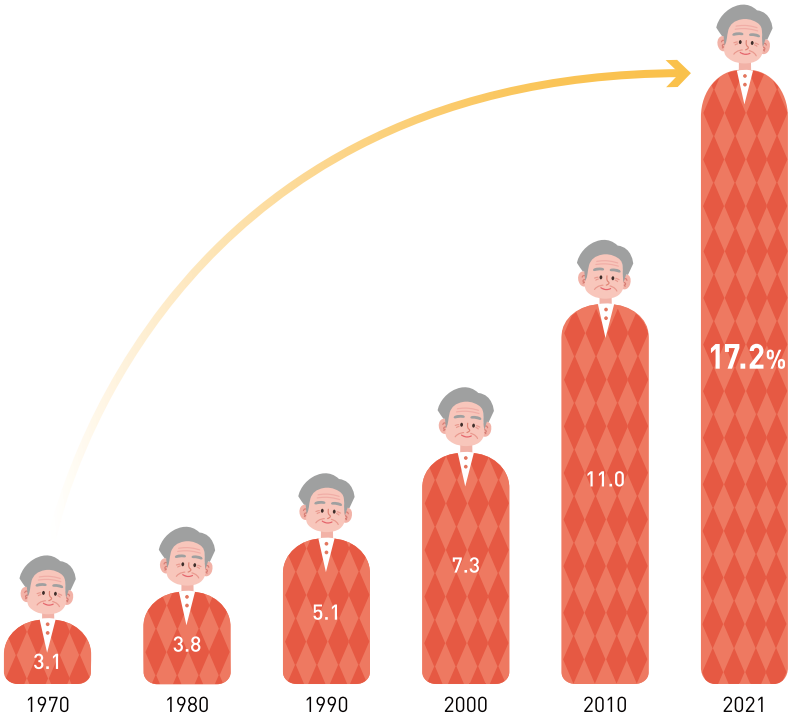


노년(65세 이상)

▶ 노인인구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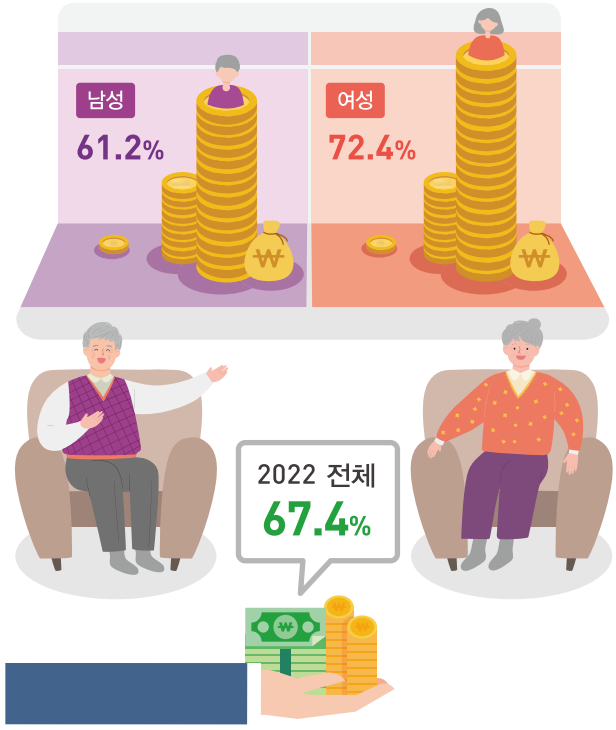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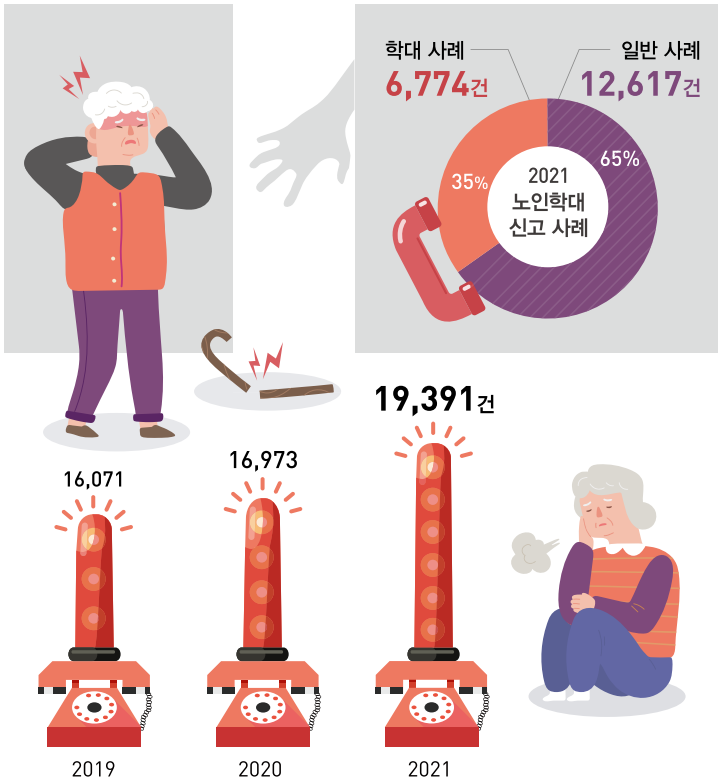
▶ 기초연금 수급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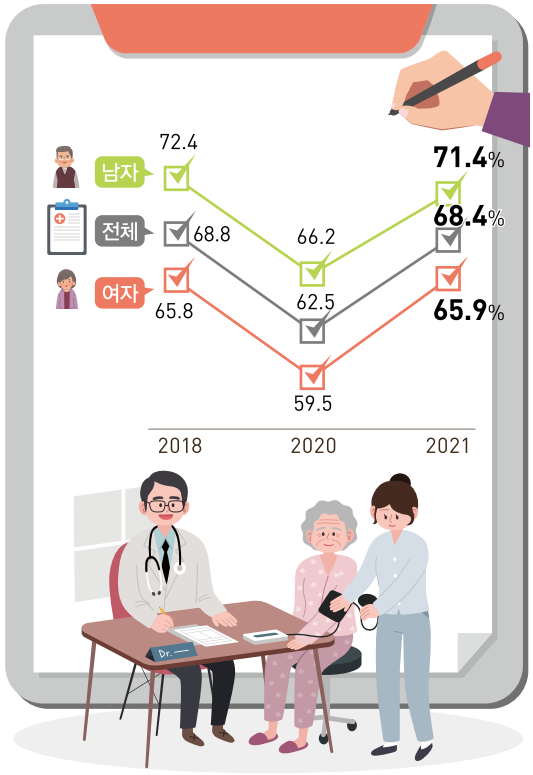
▶ 노인학대 신고 건수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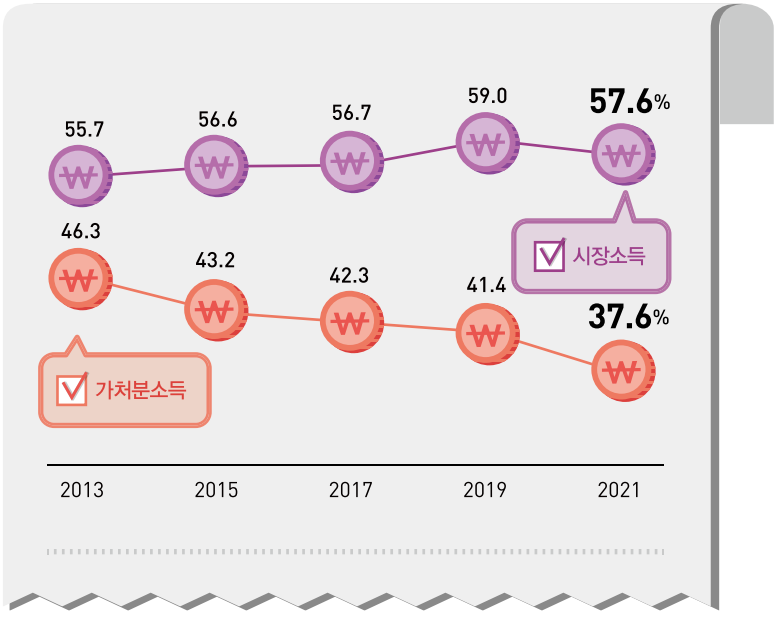
▶ 성별 노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 상대적 노인 빈곤율 (65세 이상)

(단위: %)





사회배경

01 인구성장률
02 총인구
03 인구피라미드
04 부양비
05 합계출산율
06 국내총생산
07 1인당 국민총소득
08 경제성장률
09 소비자물가지수
10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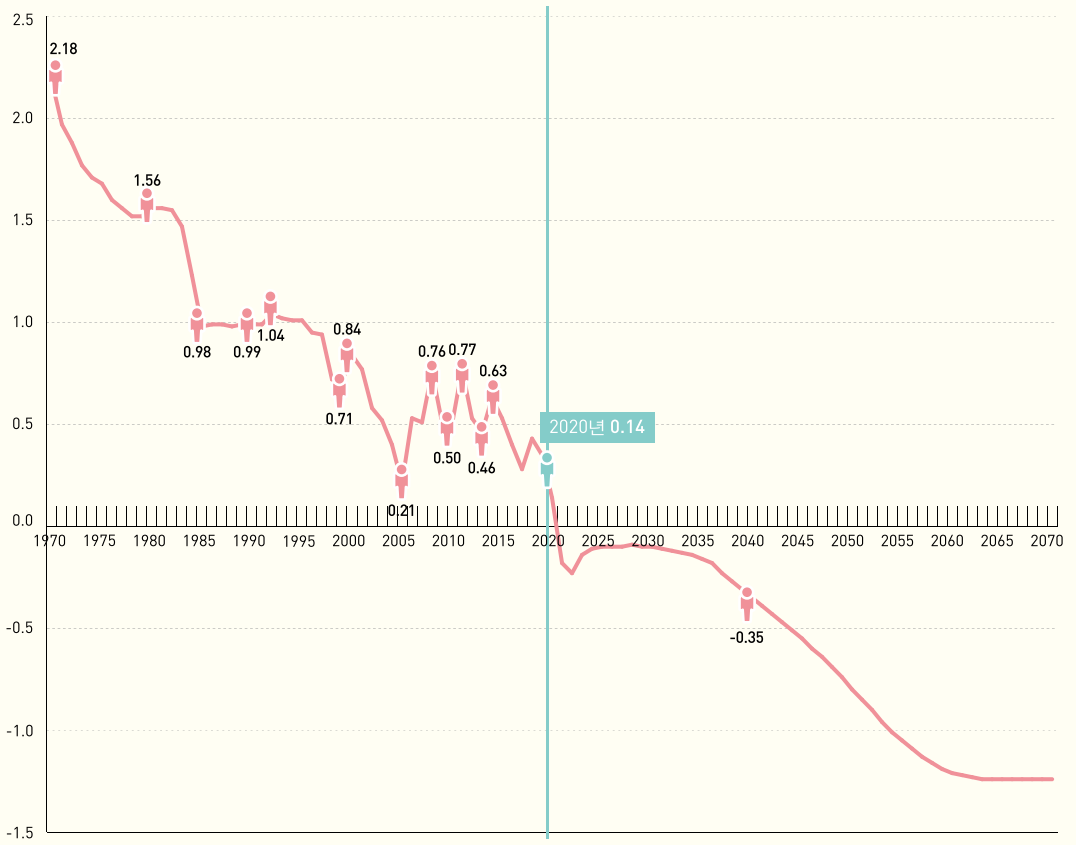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부영역	지표	
인구	인구성장률	
	총인구	
	인구피라미드	
	부양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평균 초산연령
거시경제적 여건	국내총생산	
	1인당 국민총소득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국가재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01 인구성장률
Population growth rate

그림 1 인구성장률 (1970~2070)

(단위: %)



주: 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표 1 연도별 인구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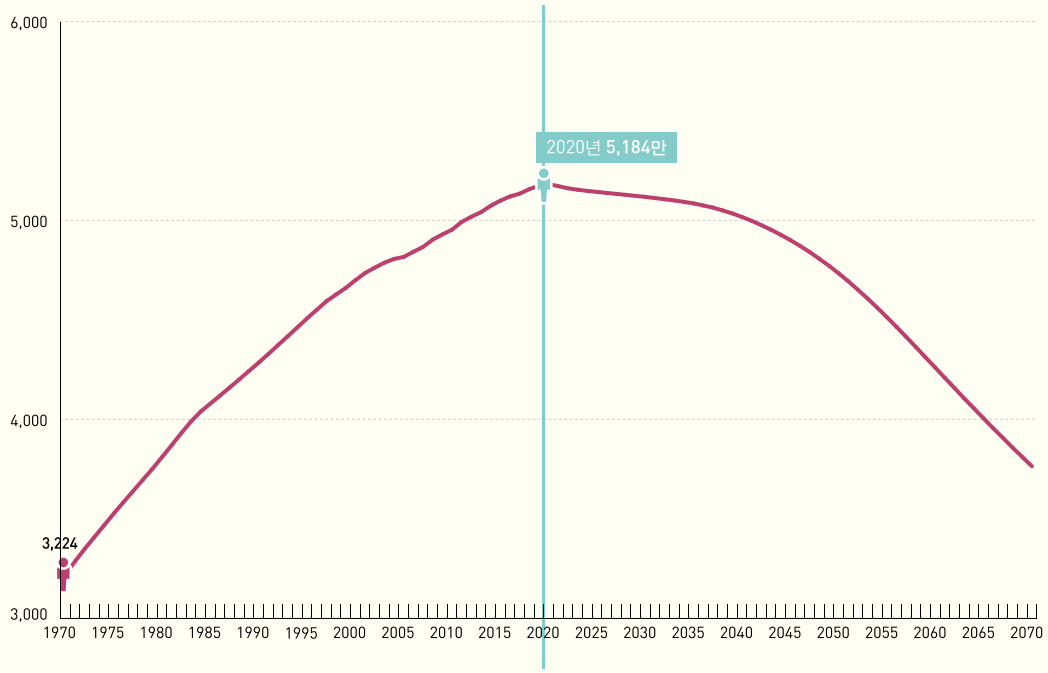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인구성장률	2.18	1.56	0.99	0.84	0.50	0.14	-0.10	-0.35	-0.80	-1.21	-1.24

주: 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02 총인구
The total population

그림 2 총인구 (1970~2070)

(단위: 만 명)



주: 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표 2 연도별 총인구

(단위: 만 명)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총인구	3,224	3,812	4,287	4,701	4,955	5,184	5,120	5,019	4,736	4,262	3,766

주: 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03 인구피라미드
Population pyramid

그림 3 연도별 인구피라미드 변화

(단위: 명)



주: 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표 3 연도별 성별 · 연령별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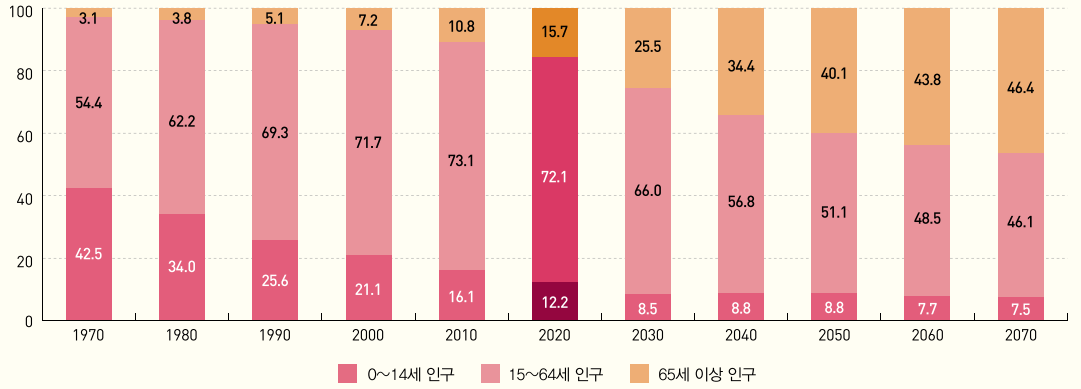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09			2019			2029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계	49,554,112	24,881,114	24,672,998	51,836,239	25,925,697	25,910,542	51,199,019	25,534,271	25,664,748
0~9세	4,769,730	2,473,396	2,296,334	4,054,901	2,079,932	1,974,969	2,576,302	1,319,755	1,256,547
10~19세	6,638,502	3,504,126	3,134,376	4,769,187	2,468,387	2,300,800	4,032,780	2,065,788	1,966,992
20~29세	6,973,154	3,644,461	3,328,693	7,037,893	3,729,483	3,308,410	5,062,482	2,658,121	2,404,361
30~39세	8,264,820	4,253,237	4,011,583	7,174,782	3,745,452	3,429,330	7,020,461	3,715,493	3,304,968
40~49세	8,578,079	4,359,204	4,218,875	8,257,903	4,205,641	4,052,262	7,073,577	3,656,108	3,417,469
50~59세	6,751,678	3,369,738	3,381,940	8,575,336	4,299,097	4,276,239	8,167,351	4,129,147	4,038,204
60~69세	4,090,354	1,954,121	2,136,233	6,476,602	3,156,921	3,319,681	8,237,029	4,064,573	4,172,456
70~79세	2,565,169	1,051,061	1,514,108	3,598,811	1,614,737	1,984,074	5,885,189	2,750,853	3,134,336
80세 이상	922,626	271,770	650,856	1,890,824	626,047	1,264,777	3,143,848	1,174,433	1,969,415

주: 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그림 4 연도별 연령별 인구피라미드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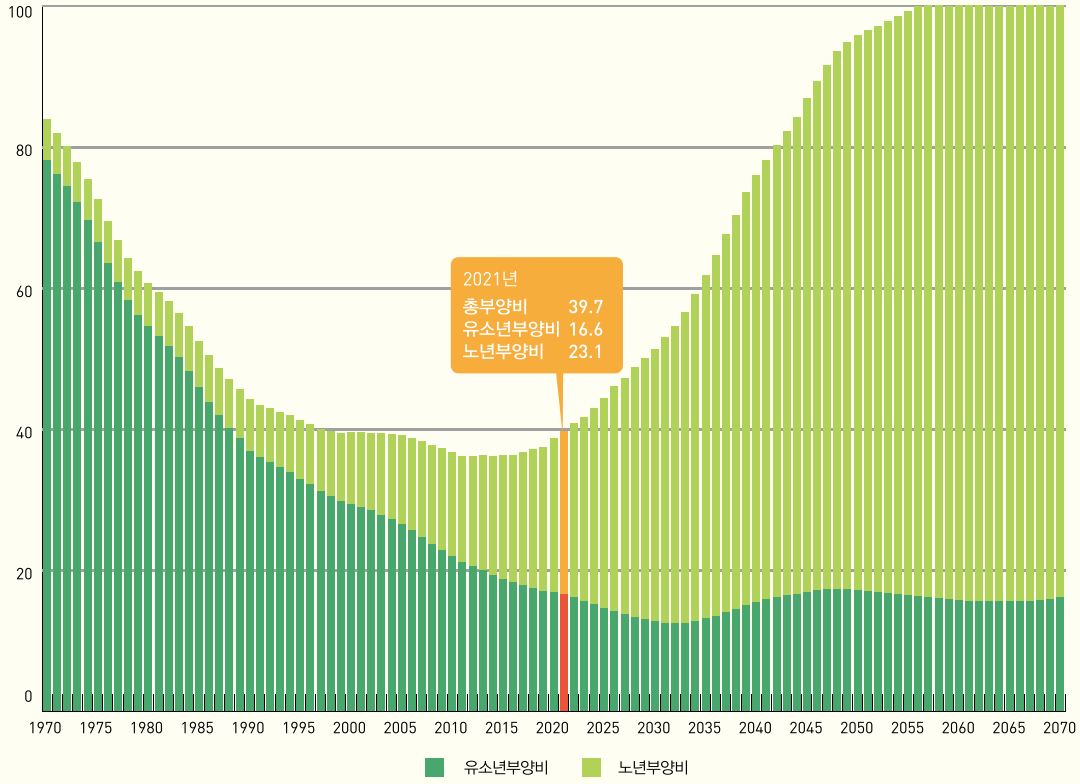


주: 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04 부양비
Dependency ratio

그림 5 총부양비 (1970~2070)

(단위: %)



주: 1) 중위가정
2)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3)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4) 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표 4 연도별 부양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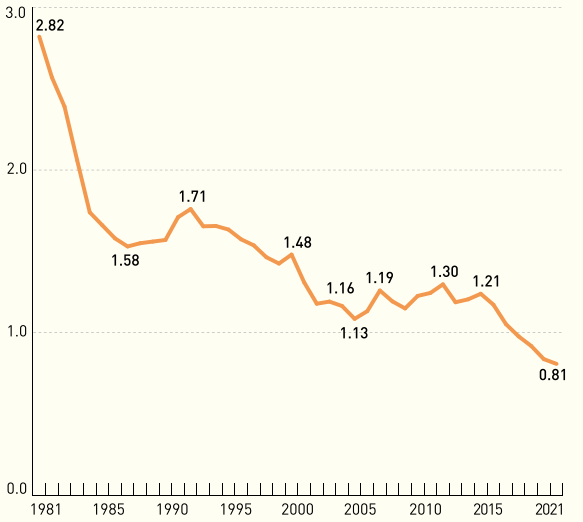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6.9	38.7	51.4	76.0	95.8	106.3	116.8
유소년 부양비	78.2	54.6	36.9	29.4	22.0	16.9	12.8	15.5	17.2	15.8	16.2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4.8	21.8	38.6	60.5	78.6	90.4	100.6

주: 202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05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그림 6 합계출산율 (198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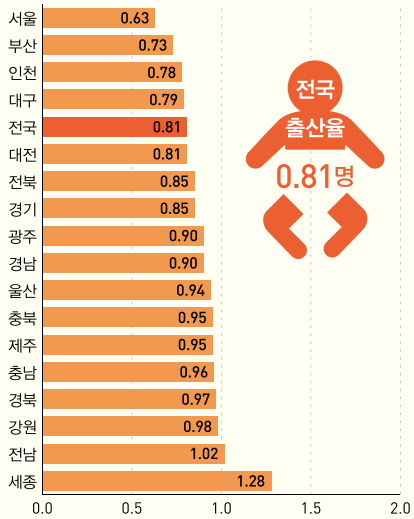
(단위: 가임기 여자 1명당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그림 7 시도별 합계출산율 (2021)

(단위: 가임기 여자 1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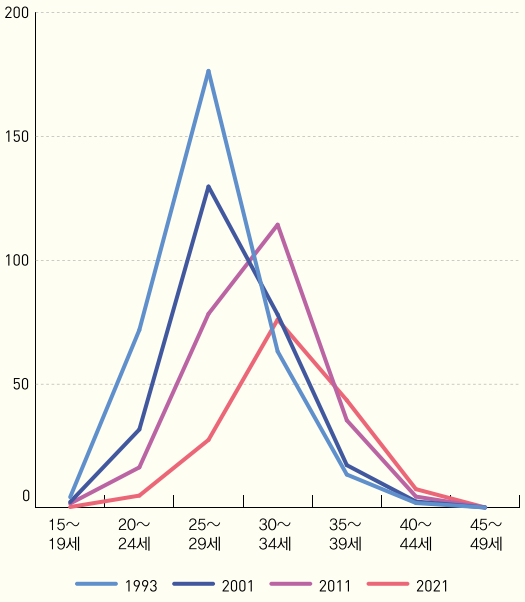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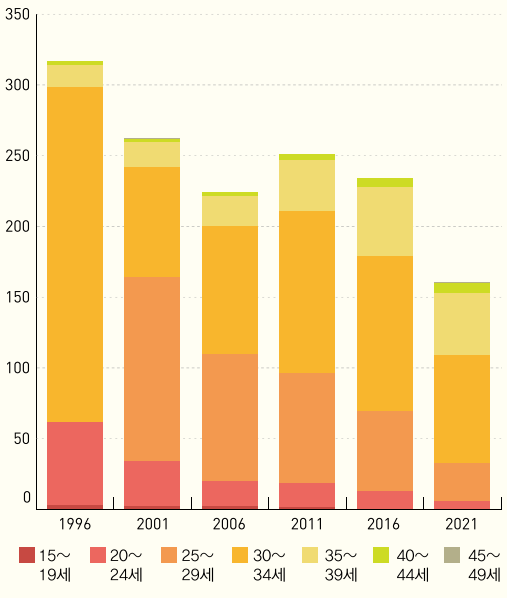
5-1. 연령별 출산율

그림 8 연도별 모의 연령별 출산율

(단위: 해당 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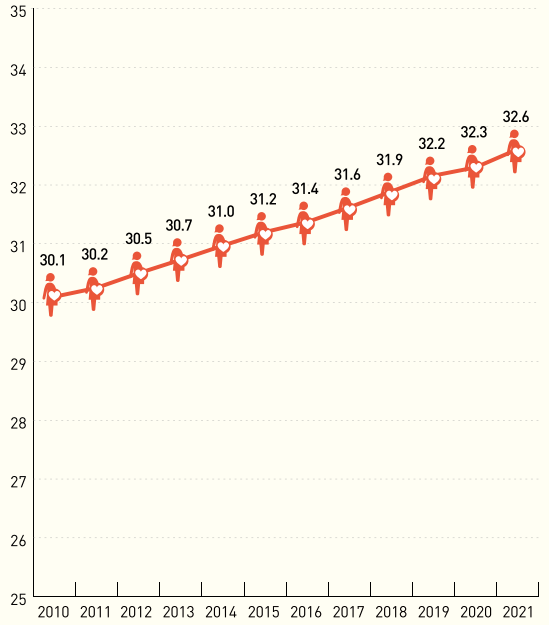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5-2. 평균 초산연령

그림 9 모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 (200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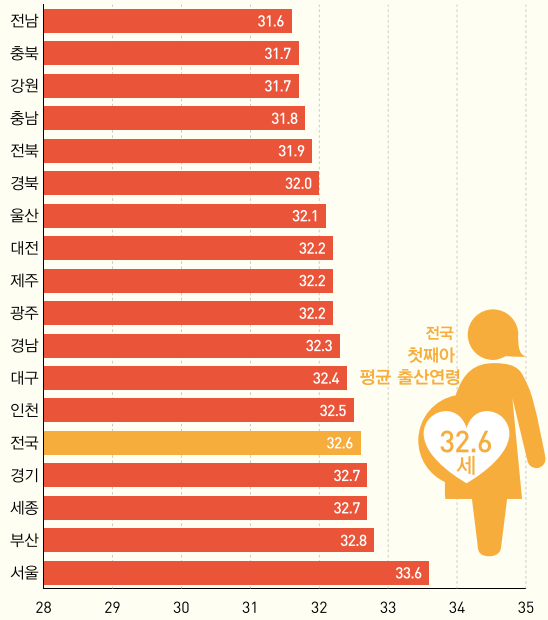
(단위: 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그림 10 시도별 모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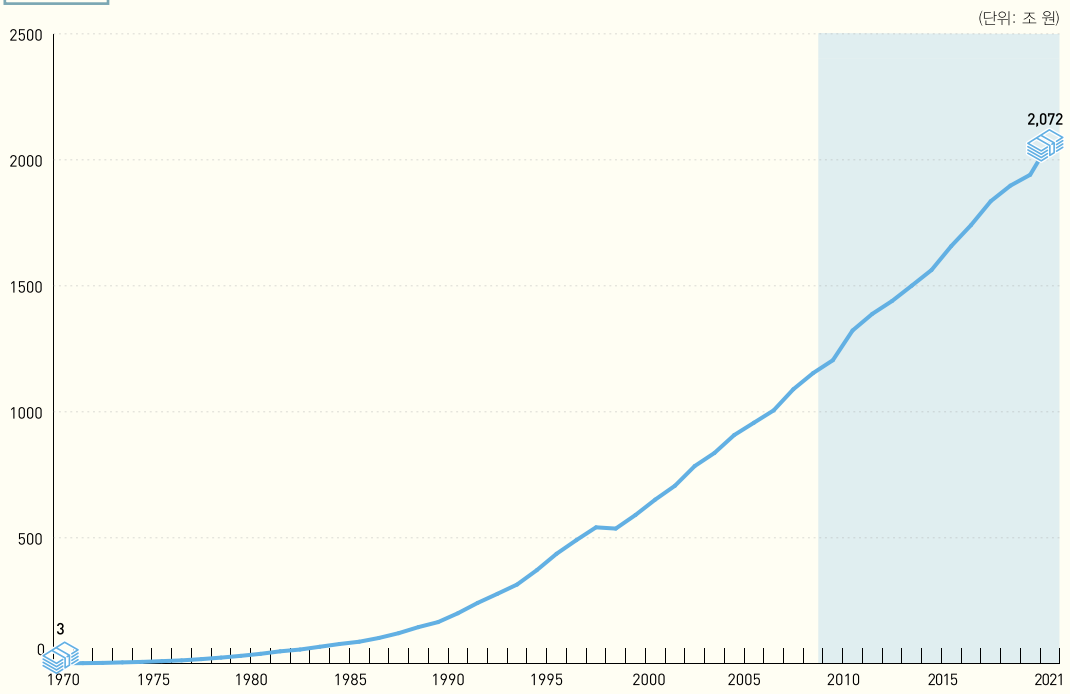
(단위: 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06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그림 11 국내총생산 (1970~2021)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표 5 연도별 국내총생산

(단위: 조 원)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국내총생산	3	11	40	88	201	437	652	957	1,323	1,658	1,941	2,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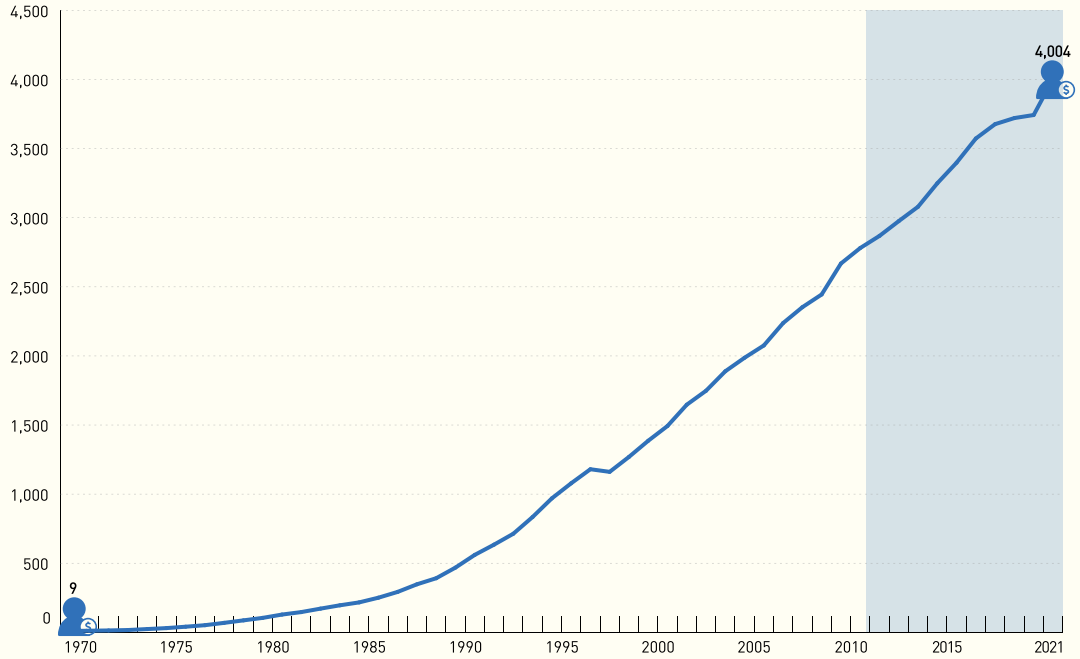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07 1인당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그림 12 1인당 국민총소득 (1970~2021)

(단위: 만 원)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표 6 연도별 1인당 국민총소득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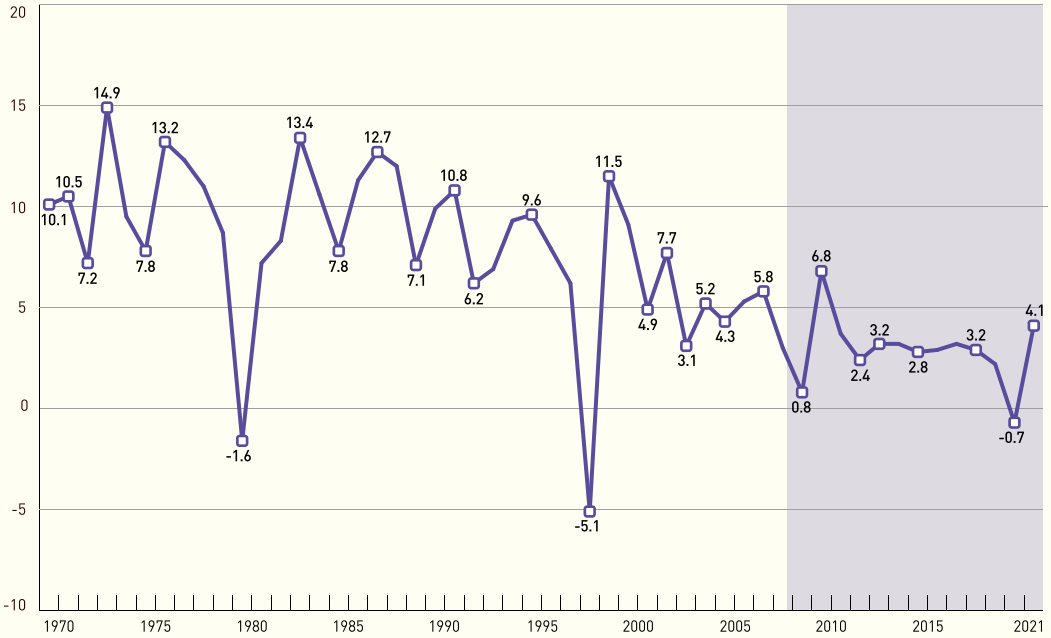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1인당 국민총소득	9	30	103	211	467	966	1,377	1,973	2,673	3,260	3,762	4,004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08 경제성장률
Rate of economic growth

그림 13 경제성장률 (1970~2021)

(단위: %)



주: 표시된 수치는 주요 반등 · 반락 지점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표 7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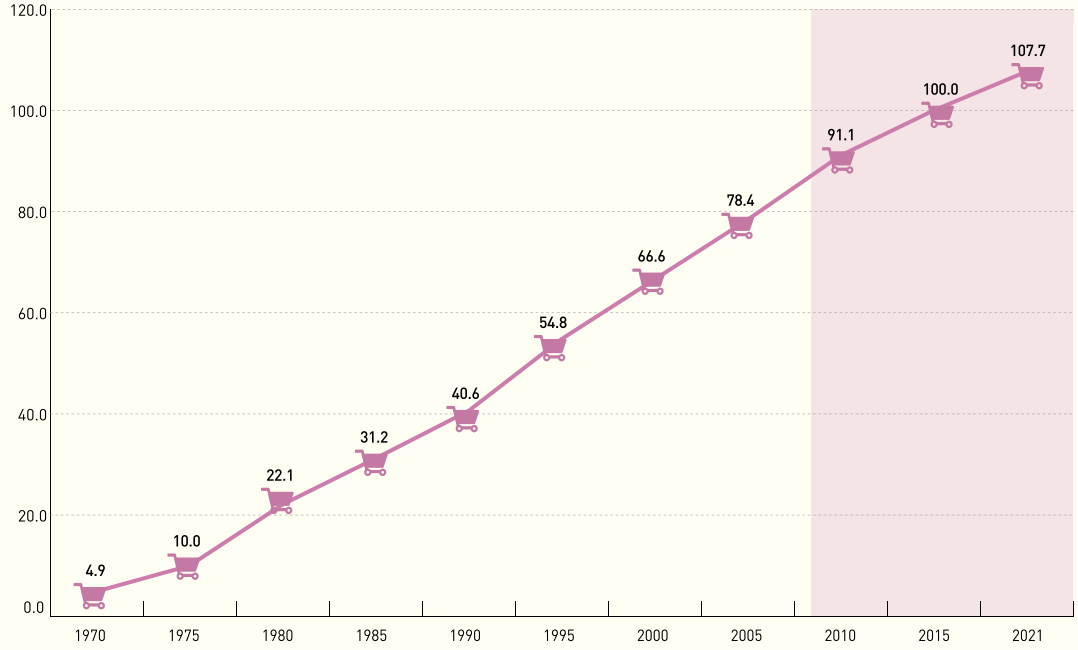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경제 성장률	10.1	7.8	-1.6	7.8	9.9	9.6	9.1	4.3	6.8	2.8	-0.7	4.1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09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그림 14 소비자물가지수 (1970~2021)

(단위: 2020=100)



주: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2020=100)의 총지수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표 8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2020=100)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소비자물가지수	4.9	10.0	22.1	31.2	40.6	54.8	66.6	78.4	91.1	100.0	105.4	1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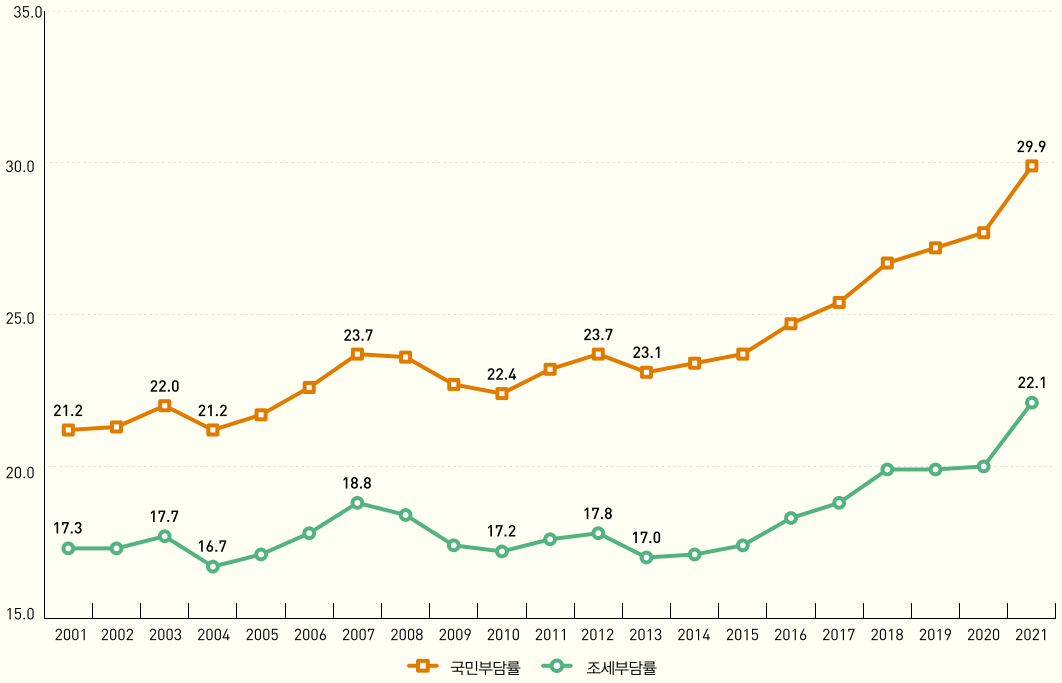
주: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2020=100)의 총지수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10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 of GDP & total tax revenue(excluding social security) as % of GDP

그림 15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2001~2021)

(단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3.04.03. 인출)

표 9 연도별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민부담률	21.2	21.3	22.0	21.2	21.7	22.6	23.7	23.6	22.7	22.4	23.2	23.7	23.1	23.4	23.7	24.7	25.4	26.7	27.2	27.7	29.9
조세부담률	17.3	17.3	17.7	16.7	17.1	17.8	18.8	18.4	17.4	17.2	17.6	17.8	17.0	17.1	17.4	18.3	18.8	19.9	19.9	20.0	22.1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3.04.03. 인출)

1

가족

01 1인가구
02 노인가구
03 한부모가구
04 국내외 입양아동 수
05 다문화가구
06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07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08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봄
09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10 조이혼율
11 가족부문 공공사회복지 지출
1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3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다양한 가족	1인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국내외 입양아동 수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다문화가구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봄	
가족 갈등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조이혼율	조혼인율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가족지원서비스	가족부문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1
대 표

1인가구

Single-person household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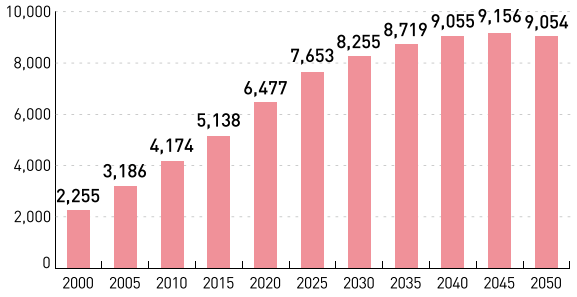
1인가구란 일반가구 중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집계된 1인으로 구성된 가구 수

그림 1-1 연도별 1인가구 수 및 추계 (2000~2050)

(단위: 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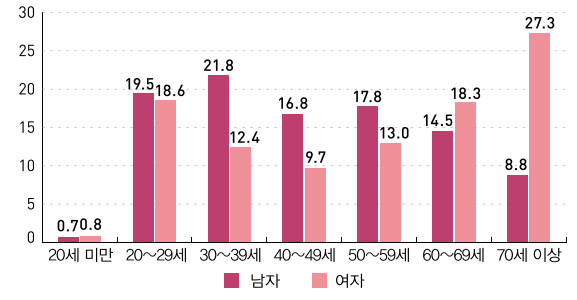


주: 1) 장래가구추계는 최근의 가구변동 추이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이 실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가구에 대한 전망치이므로 향후 사회 경제 정책적인 환경변화 및 사회적 행동 양식 변화에 따라 전망치와 실적치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장래가구추계 기준가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차이가 있음(자료의 기준시점이 가구추계는 7.1일, 인구총조사는 11.1일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0~2050년, 2022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그림 1-2 성별 · 연령별 1인가구 비율 (2021)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1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표 1-1 연도별 · 성별 가구유형 및 1인가구 비율

(단위: 천 가구, %)

연도	성별	일반가구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
2000	전체	14,312	2,224	15.5
	남자	11,659	945	8.1
	여자	2,653	1,279	48.2
2005	전체	15,887	3,171	20.0
	남자	12,402	1,418	11.4
	여자	3,485	1,753	50.3
2010	전체	17,339	4,142	23.9
	남자	12,842	1,924	15.0
	여자	4,497	2,218	49.3
2015	전체	19,111	5,203	27.2
	남자	13,461	2,593	19.3
	여자	5,650	2,610	46.2
2017	전체	19,674	5,619	28.6
	남자	13,659	2,792	20.4
	여자	6,015	2,827	47.0
2018	전체	19,979	5,849	29.3
	남자	13,742	2,906	21.1
	여자	6,237	2,942	47.2
2019	전체	20,343	6,148	30.2
	남자	13,867	3,054	22.0
	여자	6,476	3,094	47.8
2020	전체	20,927	6,643	31.7
	남자	14,081	3,304	23.5
	여자	6,846	3,339	48.8
2021	전체	21,448	7,166	33.4
	남자	14,249	3,584	25.2
	여자	7,200	3,582	49.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1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21	1년
	장래가구추계	2002	2020	5년

02 대 표

노인가구

Elderly household

지표 정의

- 노인인구 비율(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인구 고령화의 정도와 변화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노인가구는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 노인가구는 노인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독거가구(노인단독가구), 부부 중 1인 이상이 노인인 노인부부가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 동거가구, 그 외의 기타 다양한 가구형태로 구분하여 파악되며, 노인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대비 가구형태별 응답 노인 수의 비율로 측정된다.

측정 산식

- 노인인구 비율(고령인구 비율) = $\frac{\text{65세 이상 인구}}{\text{전체 인구수}} \times 100$
- 가구형태별 노인가구 비율 = $\frac{\text{노인의 가구형태별 노인 수}}{\text{65세 이상 전체 노인 수}} \times 100$
- 조손가구 수 =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및 조부 또는 조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수

표 1-2 연도별 · 성별 노인인구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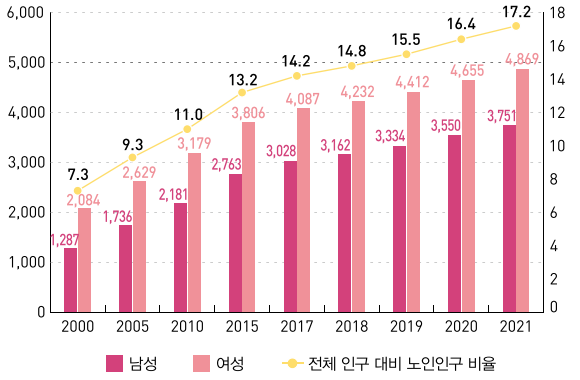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연도	노인인구	전체인구 대비 비중	성별			
			남성	노인인구 대비 비중	여성	노인인구 대비 비중
2000	3,372	7.3	1,287	38.2	2,084	61.8
2005	4,365	9.3	1,736	39.8	2,629	60.2
2010	5,360	11.0	2,181	40.5	3,179	59.5
2015	6,569	13.2	2,763	42.1	3,806	57.9
2017	7,115	14.2	3,028	42.6	4,087	57.4
2018	7,394	14.8	3,162	42.8	4,232	57.2
2019	7,746	15.5	3,334	43.0	4,412	57.0
2020	8,206	16.4	3,550	43.3	4,655	56.7
2021	8,620	17.2	3,751	43.5	4,869	56.5

주: 내국인 기준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그림 1-3 연도별 · 성별 노인인구 수 및 비율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21	1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20	3년

표 1-3 일반특성별 · 가구형태별 노인가구 비중 (2020)

(단위: %)

구분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가구	계
합계		19.8	58.4	20.1	1.7	100.0
성	남자	9.7	74.7	14.1	1.5	100.0
	여자	27.4	46.1	24.5	1.9	100.0
연령	65~69세	13.6	65.6	18.7	21.1	100.0
	70~74세	17.0	66.6	15.1	1.3	100.0
	75~79세	21.5	58.2	18.5	1.8	100.0
	80~84세	29.8	44.1	24.7	1.4	100.0
	85세 이상	33.2	25.0	39.8	2.0	100.0
지역	동부	18.5	57.3	22.3	1.8	100.0
	읍 · 면부	23.7	61.9	13.0	1.5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2020

표 1-4 연도별 · 가구형태별 노인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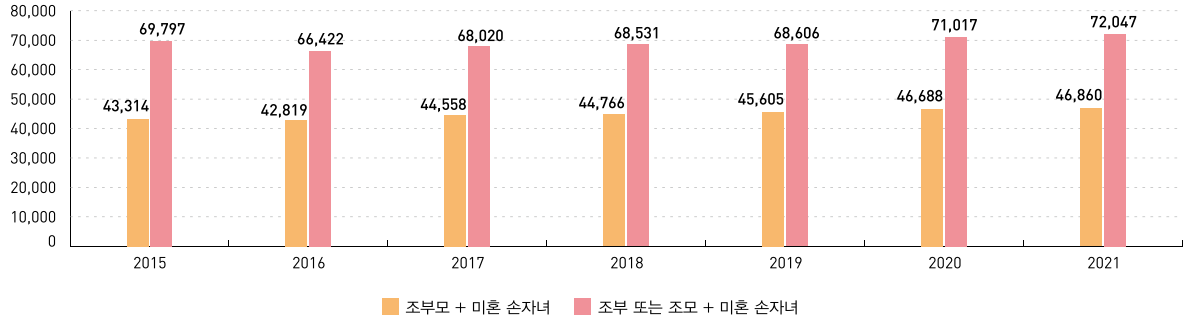
(단위: %)

연도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가구	계
1994	13.4	26.8	54.7	4.9	100.0
2004	20.6	34.4	38.6	4.4	100.0
2008	25.7	39.4	30.2	4.7	100.0
2011	18.6	47.7	28.6	5.0	100.0
2014	23.0	44.5	28.4	4.0	100.0
2017	23.6	48.4	23.7	4.4	100.0
2020	19.8	58.4	20.1	1.7	100.0

주: 노인가구는 노인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독거가구(노인단독가구), 부부 중 1인 이상이 노인인 노인부부가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 동거가구, 그 외의 기타 다양한 가구 형태로 구분하여 파악되며, 노인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대비 가구형태별 응답 노인 수의 비율로 측정됨.
자료: 1994, 2004년, 보건복지부,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각 연도; 2008년 이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4 연도별 · 가구형태별 조손가구 수

(단위: 가구)



주: 조부모와 손자녀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으며, 손자녀는 미혼자녀만 해당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03 대 표

한부모가구

Single-parent household

지표 정의

한부모가구는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주말부부 등 제외)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장래가구추계」를 통해 집계된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수

유의사항
1.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가족'을 의미한다.
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한부모가구는 한부모의 법적인 혼인상태가 미혼, 이혼 및 사별이며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표 1-5 전체 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수 (2016~2021)

(단위: 천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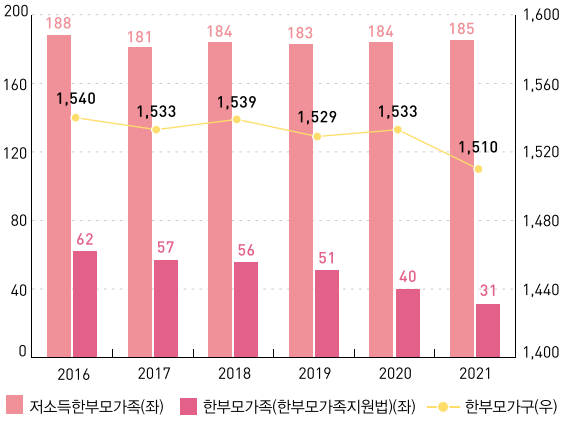
연도	전체가구	한부모가구[1]		한부모가족지원 가구	
		계	전체가구 대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2]	한부모가족[3]
2016	19,838	1,540	7.8	188	62
2017	20,168	1,533	7.6	181	57
2018	20,500	1,539	7.5	184	56
2019	20,891	1,529	7.3	183	51
2020	21,485	1,533	7.1	184	40
2021	22,023	1,510	6.9	185	31

주: 1) 한부모 가구는 인구총조사 상 '미혼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 이혼 및 사별인 모 또는 부(원거리 거주 부부 제외)의 가구'를 의미하므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과는 상이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3)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시 보장받는 가구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4)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과 한부모가족 현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 말 기준 자료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내부자료), 2021

그림 1-5 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수 (2016~2021)

(단위: 천 가구)



주: 1) 한부모 가구는 인구총조사 상 '미혼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 이혼 및 사별인 모 또는 부(원거리 거주 부부 제외)의 가구'를 의미하므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과는 상이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3)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시 보장받는 가구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4)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과 한부모가족 현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 말 기준 자료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 (내부자료), 202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21	1년
여성가족부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021	1년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2021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21

04
대 표

국내외 입양아동 수

Number of adopted children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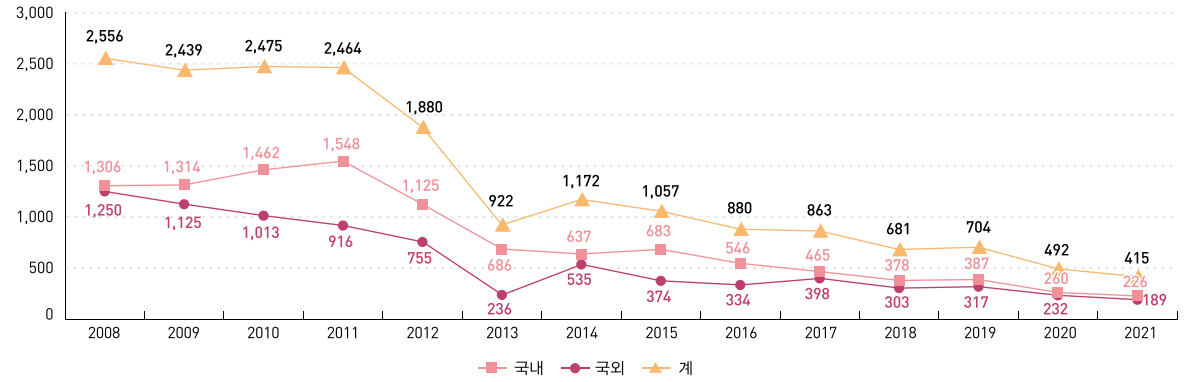
국내 및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국내 및 국외로 입양된 아동의 총합

그림 1-6 국내외 입양아동 수 (200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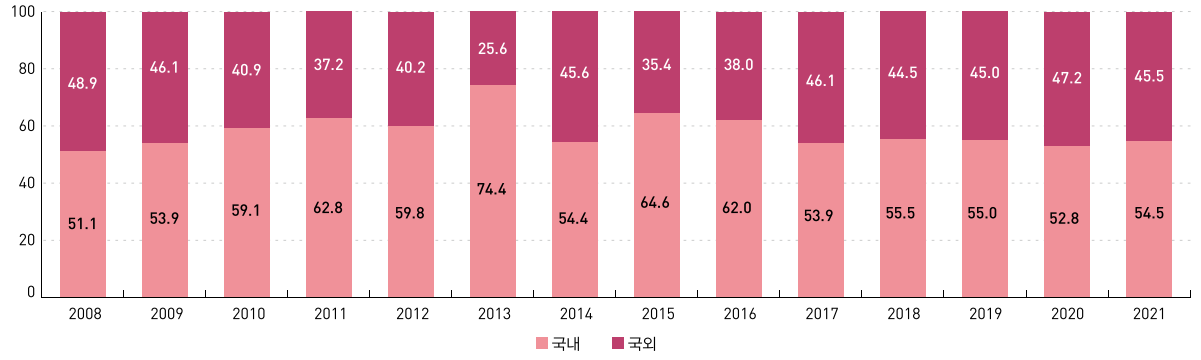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그림 1-7 국내외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2008~2021)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2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1994	2021	1년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Number of recipients of benefits related to adopted children

지표 정의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 16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국내 입양 가정(장애아동은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을 집계한다.

측정 산식

- 입양 관련 급여 수급자의 총합

표 1-6 입양아동 급여 수급자 수 (2015~2021)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입양아동 급여 수급자 수	12,872	13,376	13,741	13,926	14,045	14,239	14,304

주: 시설 수급자 포함, 각 연도 12월 기준

그림 1-8 장애 유무별 입양 관련 급여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



주: 시설 수급자 포함

표 1-7 시도별 · 월별 입양아동 급여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4,255	14,253	14,262	14,272	14,274	14,277	14,292	14,299	14,301	14,319	14,319	14,304
서울	1,797	1,795	1,803	1,803	1,807	1,807	1,809	1,797	1,797	1,801	1,801	1,804
부산	735	738	734	731	728	730	732	736	736	738	737	744
대구	453	452	451	452	455	453	454	454	454	456	457	458
인천	886	886	886	886	884	883	893	893	901	902	906	898
광주	402	394	397	399	397	396	397	399	400	400	399	399
대전	345	345	341	341	343	343	342	343	344	346	341	342
울산	251	250	250	247	246	247	248	248	248	250	250	251
세종	177	172	172	173	172	166	165	166	166	169	171	172
경기	4,186	4,188	4,187	4,195	4,200	4,207	4,211	4,228	4,226	4,226	4,226	4,205
강원	527	530	528	528	532	530	528	528	523	523	521	519
충북	452	457	458	459	460	464	466	466	465	465	465	466
충남	750	754	757	757	755	755	750	749	749	748	750	756
전북	735	730	729	727	724	726	725	725	726	726	727	725
전남	585	589	588	589	591	590	590	588	589	591	590	590
경북	677	677	676	679	683	686	685	685	685	686	690	686
경남	1,044	1,043	1,052	1,054	1,044	1,041	1,039	1,036	1,035	1,034	1,032	1,027
제주	253	253	253	252	253	253	258	258	257	258	256	262

주: 시설 수급자 포함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1	월

04-2
연 관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care service related to adopted children

지표 정의

만 5세 이하 입양아동 중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입양특례법에 의거)를 집계한다.

측정 산식

•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중 만 5세 이하 아동의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 수급자 수

표 1-8 만 5세 이하 입양아동 관련 수급자 중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수급자 수 (2018~2021)

(단위: 명)

시도	2018				2019				2020				2021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국	2,791	670	1,557	564	1,619	598	539	482	2,091	547	1,118	426	1,752	382	1,005	365
서울	363	135	168	60	237	122	65	50	294	95	163	36	239	63	146	30
부산	149	46	73	30	92	41	20	31	118	32	54	32	103	26	58	19
대구	102	23	59	20	55	16	13	26	73	16	38	19	62	11	34	17
인천	141	31	73	37	76	22	26	28	107	33	56	18	91	23	52	16
광주	76	20	44	12	50	25	10	15	63	22	21	20	54	15	20	19
대전	73	13	43	17	42	15	13	14	48	11	23	14	38	7	19	12
울산	49	21	20	8	27	15	4	8	42	9	26	7	33	5	22	6
세종	45	11	28	6	30	6	13	11	39	5	21	13	22	2	15	5
경기	847	198	469	180	501	184	173	144	649	192	331	126	557	142	303	112
강원	101	13	73	15	43	10	21	12	75	13	45	17	59	6	37	16
충북	87	23	47	17	40	14	14	12	41	8	26	7	42	5	30	7
충남	137	31	77	29	68	24	28	16	102	25	60	17	90	17	51	22
전북	120	23	68	29	58	15	21	22	87	14	51	22	73	8	44	21
전남	91	11	61	19	59	19	26	14	64	14	39	11	56	7	37	12
경북	133	24	84	25	89	31	33	25	115	21	71	23	97	15	58	24
경남	216	37	130	49	120	32	39	49	143	35	70	38	110	27	58	25
제주	61	10	40	11	32	7	20	5	31	2	23	6	26	3	21	2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3	2021	월

표 1-9 시도별 · 월별 만 5세 이하 입양아동 관련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전국	2,051	2,012	1,987	1,957	1,971	1,899	1,878	1,850	1,820	1,801	1,776	1,752	1,896.2
서울	286	280	274	270	274	262	260	251	246	241	239	239	260.2
부산	122	121	120	114	114	110	111	112	111	110	104	103	112.7
대구	71	69	68	67	67	66	64	64	63	63	63	62	65.6
인천	104	100	97	97	96	96	97	97	99	99	97	91	97.5
광주	63	61	61	59	60	59	59	58	56	55	56	54	58.4
대전	44	45	45	44	45	44	40	40	40	41	40	38	42.2
울산	42	41	41	37	37	35	35	33	33	34	34	33	36.3
세종	38	34	31	32	31	24	24	24	23	23	21	22	27.3
경기	627	616	613	606	613	599	593	592	578	573	566	557	594.4
강원	67	69	65	64	65	66	65	62	59	59	59	59	63.3
충북	44	45	42	42	42	42	44	44	44	42	42	42	42.9
충남	98	96	95	92	93	91	87	87	86	85	85	90	90.4
전북	87	87	88	85	85	79	79	79	78	74	74	73	80.7
전남	62	63	64	63	64	62	62	60	59	59	57	56	60.9
경북	113	109	107	109	110	103	101	98	98	97	98	97	103.3
경남	149	143	143	143	143	132	127	119	117	117	114	110	129.8
제주	34	33	33	33	32	29	30	30	30	29	27	26	30.5

05 대 표

다문화가구

Multicultural household

지표 정의

다문화가구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인지 ·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의 수**

유의사항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구성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이며, 외국인주민 자녀 수와 지역별 통계는 외국인 주민 현황 기준(행정안전부, 각 연도)임에 유의한다. 외국인 주민 현황의 경우 2015년 11월 1일 이후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서 외국인 주민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작성방식 및 통계기준일을 변경하였음에 유의한다.

표 1-10 가구 구성별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20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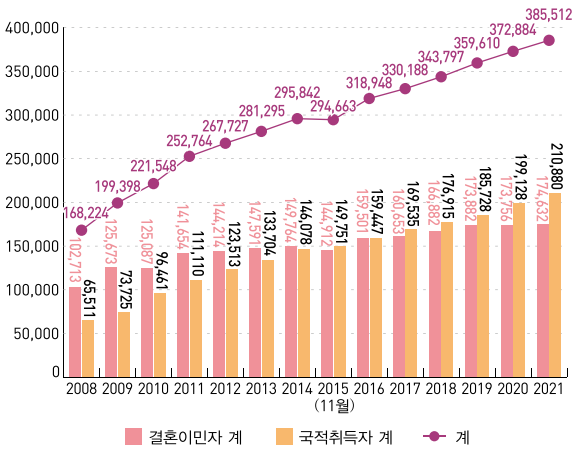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천 명, %)

구분	2020		2021		증감	
	가구(A) (천 가구)	가구원 (천 명)	가구(B) (천 가구)	가구원 (천 명)	(B-A) (천 가구)	증감율 (%)
내국인(귀화)	68	136	74	148	6	1.1
내국인(출생) + 내국인(귀화)	85	315	89	320	4	1.0
내국인(출생) + 외국인(결혼이민자)	132	422	126	403	-6	1.0
내국인(출생) + 다문화자녀	38	119	42	130	4	1.1
내국인(귀화) + 외국인(결혼이민자)	20	62	20	62	0	1.0
기타	24	39	34	55	10	1.4
합계	368	1,103	385	1,117	17	1.0

주: 1) 내국인(귀화):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외국인(결혼이민자):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3) 내국인(출생)+다문화자녀: 내국인(출생) 가구주와 다문화자녀가 같이 생활하는 가구
4) 기타가구: 결혼이민자+기타외국인, 결혼이민자+다문화자녀 등 그 외 다문화 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그림 1-9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2008~202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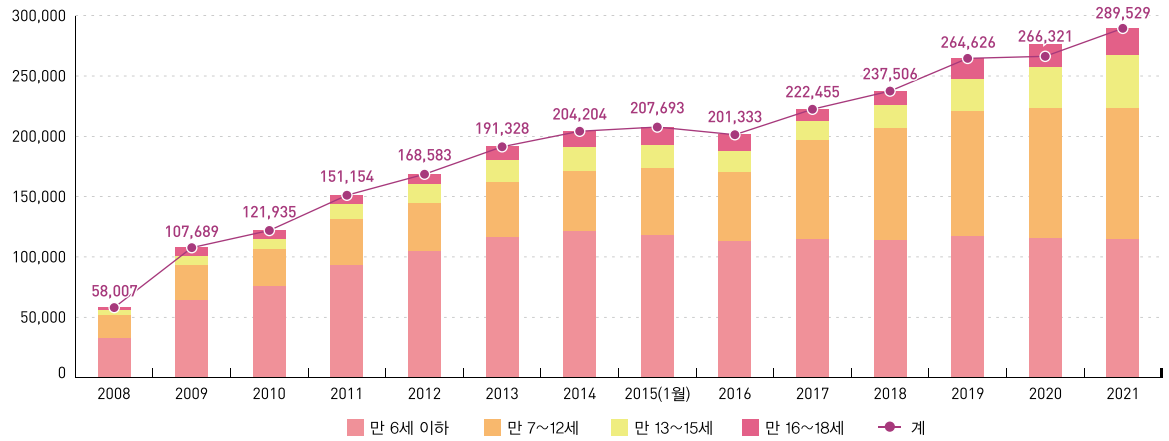
주: 1) '16년 통계 기준 변경: 종전 혼인귀화자와 기타귀화자로 나뉘어있던 한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세부구분 삭제됨(기타귀화자 중에도 한국인과 결혼한 귀화자가 많이 포함되므로 구별할 실익이 적음).
2)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11.4.4.개정, '11.10.05 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 귀화)도 다문화 가족에 포함됨.
3) 2015년부터 조사방식이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에서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변경 (통계기준은 11.1일 0시), 조사시점 기준 전후 3개월 중 91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제외
4) 국적취득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2006	2021	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21	1년

그림 1-10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2008~2021)

(단위: 명)



주: 1) 외국인주민 자녀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를 지칭함.
2) 2016년 외국인주민 자녀는 201,333명으로 귀화하였거나 아직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가 9,874명(4.9%),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생 자녀가 191,459명(95.1%)임.
3)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는 2016년부터 추가됨.
4) 2015년 11월부터 조사방식이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되어 2014년도까지 매년 1월 1일자 기준이었던 통계 시점이 2015년부터 11월 1일자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통계 자료는 2015년까지 1월 기준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2016년도부터 11월 1일 기준의 수치를 사용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표 1-11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2009~2021)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월)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294,663	318,948	330,188	343,797	359,610	372,884	385,512
서울	57,281	63,364	69,694	70,381	71,364	73,801	68,093	73,914	73,753	74,717	75,489	75,430	75,866
부산	7,973	8,314	9,705	10,305	10,915	11,529	11,380	11,853	12,337	12,620	13,255	13,787	14,040
대구	5,170	5,599	6,261	6,664	7,131	7,580	7,743	8,403	8,815	9,176	9,712	10,143	10,323
인천	11,872	13,235	14,939	16,029	17,026	18,222	18,552	20,988	22,626	24,435	26,211	27,871	29,579
광주	3,384	3,705	4,283	4,590	4,960	5,336	5,603	6,001	6,284	6,455	6,932	7,206	7,384
대전	3,849	4,117	4,758	5,123	5,337	5,575	5,610	5,899	6,106	6,232	6,516	6,766	6,892
울산	3,301	3,755	4,225	4,561	5,049	5,497	5,759	6,217	6,296	6,411	6,648	6,843	6,888
세종	-	-	-	-	653	650	894	1,053	1,225	1,351	1,490	1,607	1,683
경기	53,998	61,447	71,174	77,128	81,731	86,337	86,327	95,848	100,529	107,141	113,100	118,883	125,235
강원	4,449	4,809	5,793	6,103	6,381	6,590	6,571	6,768	6,989	7,212	7,659	7,991	8,235
충북	5,165	6,023	6,982	7,417	7,941	8,370	9,126	9,433	9,882	10,391	10,983	11,486	11,884
충남	8,614	9,544	11,294	12,348	12,649	13,460	14,035	14,863	15,636	16,396	17,323	17,978	18,930
전북	6,940	7,197	8,523	9,068	9,626	9,951	10,237	10,568	10,900	11,165	11,595	12,004	12,175
전남	7,452	8,142	9,489	10,115	10,657	11,129	11,502	11,749	11,906	12,040	12,722	13,148	13,454
경북	8,333	9,232	10,461	11,067	11,856	12,620	12,986	13,640	13,990	14,444	15,125	15,756	16,301
경남	10,107	11,345	13,062	14,443	15,352	16,217	16,799	17,929	18,725	19,106	19,996	20,778	21,246
제주	1,510	1,720	2,121	2,385	2,667	2,978	3,446	3,822	4,189	4,505	4,854	5,207	5,397

주: 1) '16년 통계 기준 변경: 종전 혼인귀화자와 기타귀화자로 나뉘어있던 한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세부구분 삭제됨(기타귀화자 중에도 한국인과 결혼한 귀화자가 많이 포함되므로 구별할 실익이 적음).
2) 2015년 11월부터 조사방식이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되어 2014년도까지 매년 1월 1일자 기준이었던 통계시점이 2015년부터 11월 1일자 기준으로 변경됨.
3) 조사시점 기준 전후 3개월 중 91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05-1
연 관

북한이탈주민

North korean defectors

지표 정의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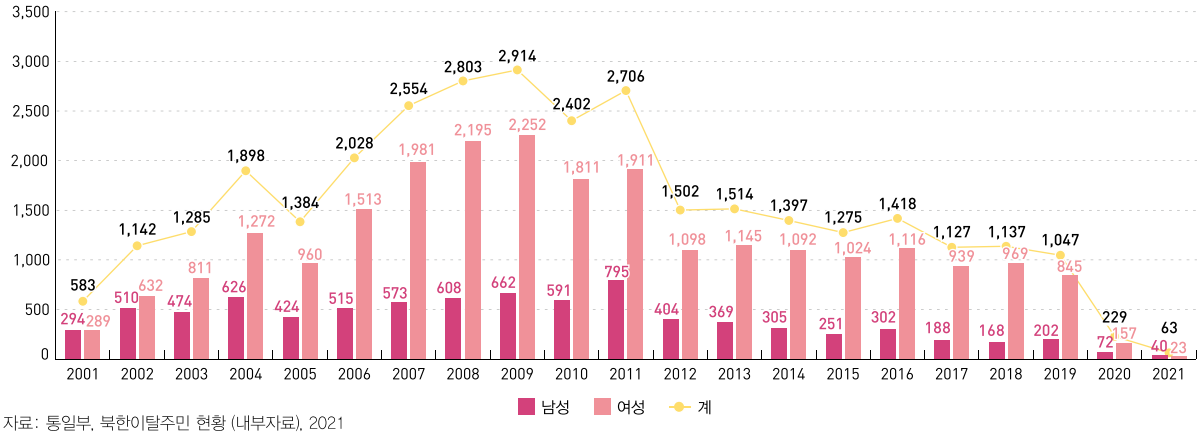
측정 산식

-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이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 수

유의사항 현재 북한이탈주민가구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구 수를 파악하는 대신 가구원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를 제시한다. 해당 연도의 통계는 국내에 입국한 시점을 기준으로 익년도 6월 말에 작성된다(입국조사 과정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임이 확인되는데 약 4~5개월 소요).

그림 1-11 성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0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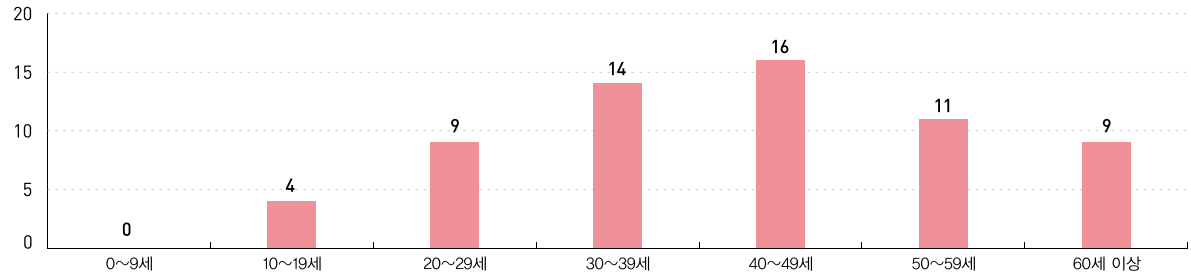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내부자료), 2021

그림 1-12 연령대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21)

(단위: 명)



주: 연령대별 입국 최종 인원임.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내부자료), 202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내부자료)	1998	2021	1년

06 대 표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maternity leave benefits

지표 정의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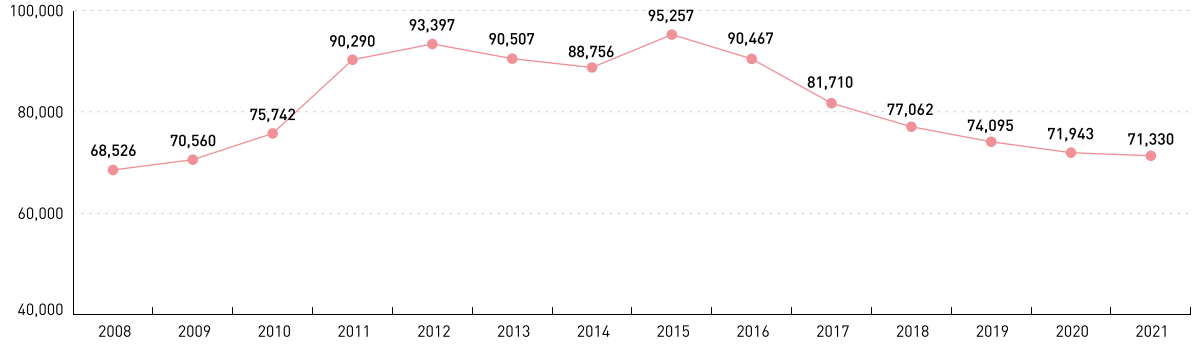
- '산전후휴가'라는 명칭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도입된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임신 ·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보장된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 90일(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480만 원 한도, 다태아 120일분 640만 원 한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측정 산식

- **출산전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그림 1-13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200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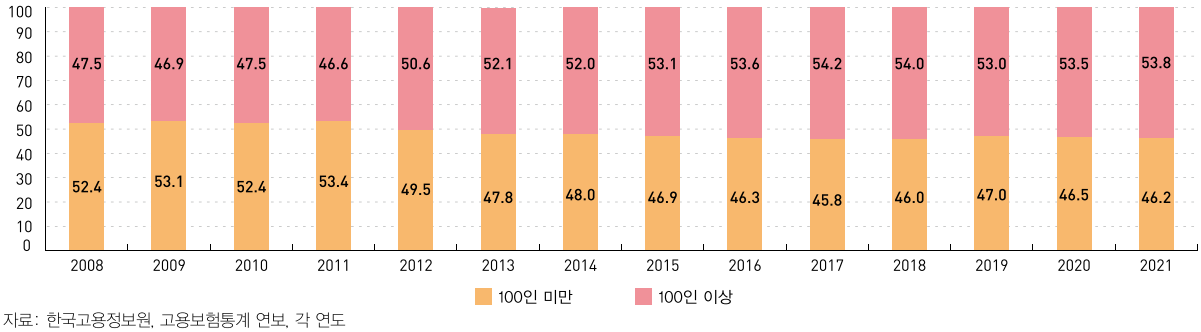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연보, 각 연도

그림 1-14 사업장 규모별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비중 (2008~2021)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21	1년

07
대 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parental leave benefits

지표 정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1항에 의해 규정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한다. 육아휴직급여는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에 해당되는 급여이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게 된다.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2019.01.01.부터 상한액 월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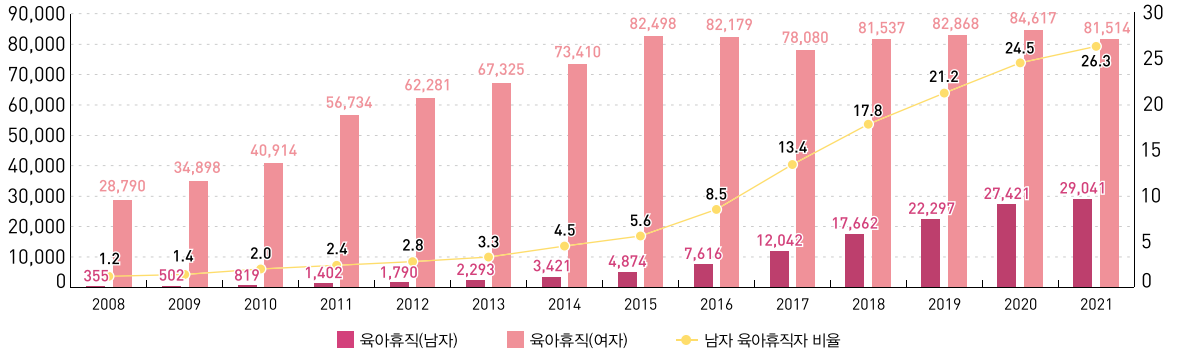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유의사항 육아휴직자 수의 중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전년도부터 당해 연도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년도 휴직자로 정의하고 당해 연도 휴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림 1-15 성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수 (200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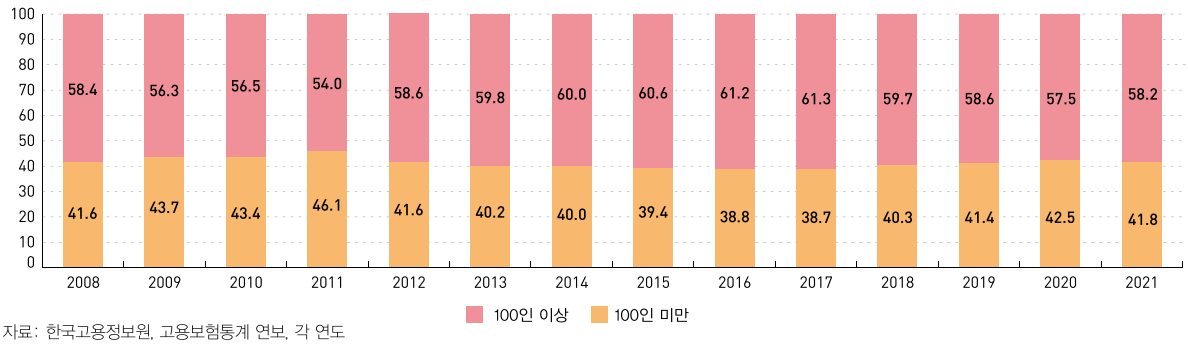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연보, 각 연도

그림 1-16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비중 (2008~2021)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21	1년

08 대표

가정관리 및 가족·가구원 돌봄

Housework and family and household member care

지표 정의

가정관리(자신의 가족 또는 가구의 가정생활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행동) 및 가족 · 가구원 돌봄(가족 또는 가구원을 보수를 받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살피는 일체의 행동)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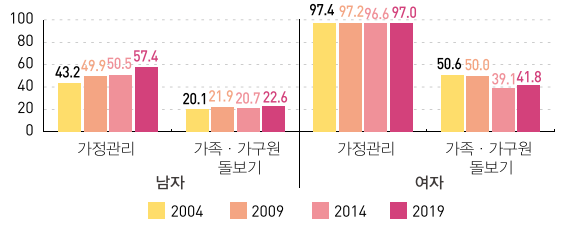
구분	1999~2009	2014	2019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 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음식준비,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 관리 및 유지,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가족·가구원 돌보기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그 외 가족 돌보기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장기 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측정 산식

- **전체 평균 시간 : 전체 집계대상자(특정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 포함)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특정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행위자)의 비율**
- **행위자 평균 시간 : 특정 행동을 한 사람(행위자)들의 평균 시간**

그림 1-17 기혼자의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보기' 행위자 비율 (요일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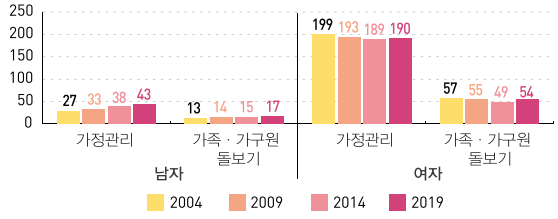


주: 2014년까지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은 19세 이상을 대상 (동거 포함)으로 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01.10. 인출)

그림 1-18 기혼자의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보기' 평균 시간 (요일 평균)

(단위: 분)



주: 2014년까지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은 19세 이상을 대상 (동거 포함)으로 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01.10. 인출)

표 1-12 가구 유형별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평균 시간 (2019)

(단위: 시간:분, %)

가구 유형별	행동분류별	요일 평균 행위자 비율 (%)			요일 평균 시간 (시간:분)		
		계	남편	아내	계	남편	아내
맞벌이가구	가정관리	76.1	57.4	96.2	93	39	151
	가족·가구원 돌보기	30.2	22.2	38.8	25	15	36
외벌이(남편)가구	가정관리	73.9	49.7	99.3	136	33	245
	가족·가구원 돌보기	41.6	27.2	56.7	57	20	96
외벌이(아내)가구	가정관리	86.8	80.1	93.4	121	103	139
	가족·가구원 돌보기	18.9	16.6	21.1	17	16	17

주: 평균 시간과 비율은 초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상위 분류의 값이 하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2019년도 생활시간 조사보고서, 2020.07.30. (http://kosis.kr에서 2021.0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1999	2019	5년

09
대 표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Rate of domestic violence and reporting rate

지표 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지난 1년간 전체 가구 중 가정폭력(부부폭력)이 발생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가정폭력 신고율은 가정폭력 발생 건수 중에서 경찰에 신고한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 가정폭력은 가족 해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본 지표를 통해 여성,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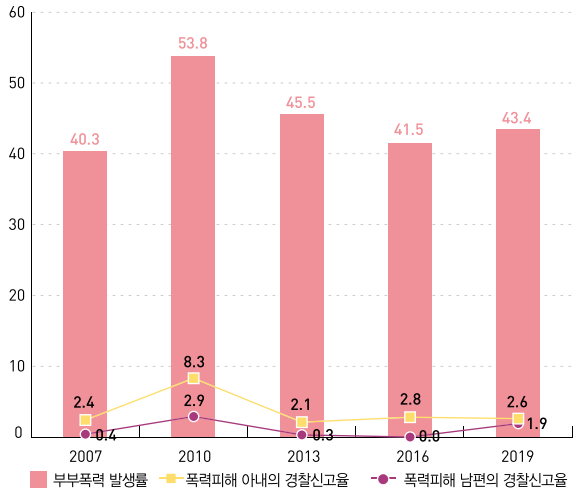
측정 산식

• 가정폭력 발생률 = $\frac{\text{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 가구}}{\text{조사 대상 가구}} \times 100$

• 가정폭력 신고율 = $\frac{\text{경찰에 신고한 건수}}{\text{가정폭력 발생 건수}} \times 100$

그림 1-19 연도별 가정폭력 발생률 및 경찰신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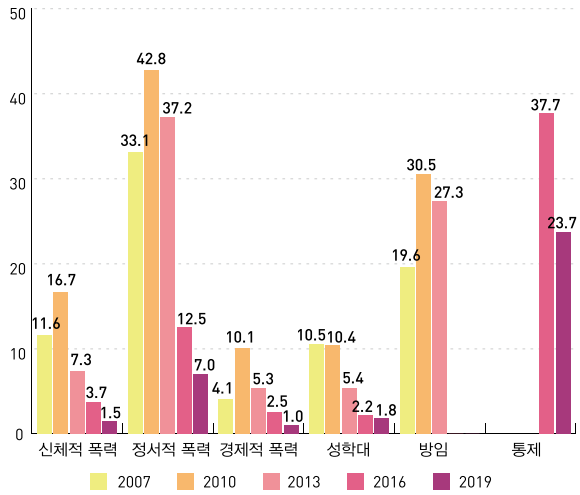


주: 1)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이며, 2016년도 조사부터 방임을 제외하고 통제를 포함함.
2) 2010년 조사에서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의 폭력 유형'인 통제 발생률은 제외함.
3) 2016년 이후 부부 폭력발생률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통제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20 연도별 · 유형별 가정폭력 발생률

(단위: %)



주: 1) 중복응답이 반영된 값임.
2) 신체적 폭력은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을 모두 포함함.
3)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이며, 2016년도 조사부터 방임을 제외하고 통제를 포함함.
4) 2010년 조사에서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의 폭력 유형'인 통제 발생률은 제외함.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4	2019	3년

10 대 표

조이혼율

Crude divorce rate

지표 정의

1년 동안 신고된 총 이혼 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 당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연간 총 이혼 건수}}{\text{당해 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

유의사항 조이혼율은 특정 연도의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의 비율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이혼율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은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이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인구(2010년 이후는 거주 불명 등록자 제외)를 사용한다. 이혼 통계 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동안 전국 시 · 구청 및 읍 · 면 · 동 사무소에 신고한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결과이다.

표 1-13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2007~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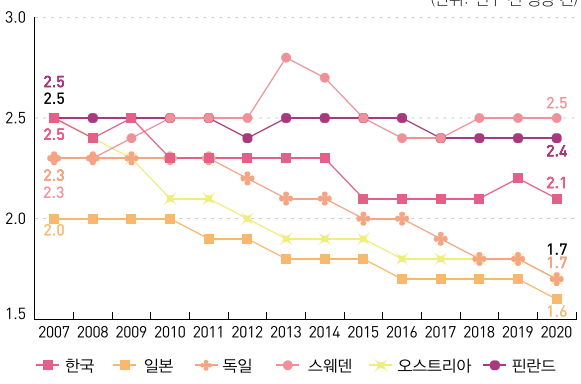
(단위: 천 건, 인구 천 명당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혼 건수 (천 건)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108.7	110.8	106.5	101.7	93.2
조이혼율	2.5	2.4	2.5	2.3	2.3	2.3	2.3	2.3	2.1	2.1	2.1	2.1	2.2	2.1	2.0	1.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그림 1-21 주요 국가별 조이혼율 (200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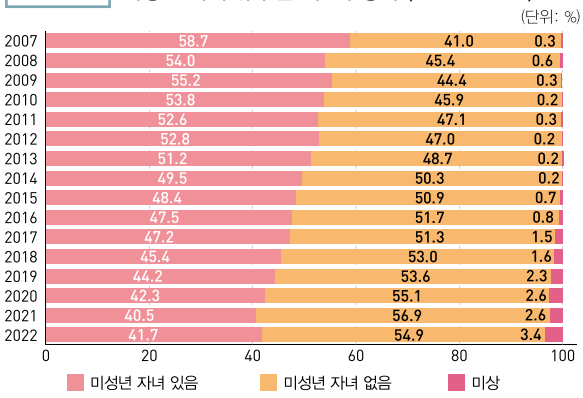
(단위: 인구 천 명당 건)



자료: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data.oecd.org에서 2023.05.18. 인출)

그림 1-22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구성비 (2007~2022)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표 1-14 평균 이혼연령 (2007~2022)

(단위: 세)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남자	43.2	44.3	44.5	45.0	45.4	45.9	46.2	46.5	46.9	47.2	47.6	48.3	48.7	49.4	50.1	49.9
여자	39.5	40.5	40.7	41.1	41.5	42.0	42.4	42.8	43.3	43.6	44.0	44.8	45.3	46.0	46.8	46.6

주: 평균 이혼연령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22	1년

10-1
연 관

조혼인율

Crude marriage rate

지표 정의

1년 동안 신고된 총 혼인 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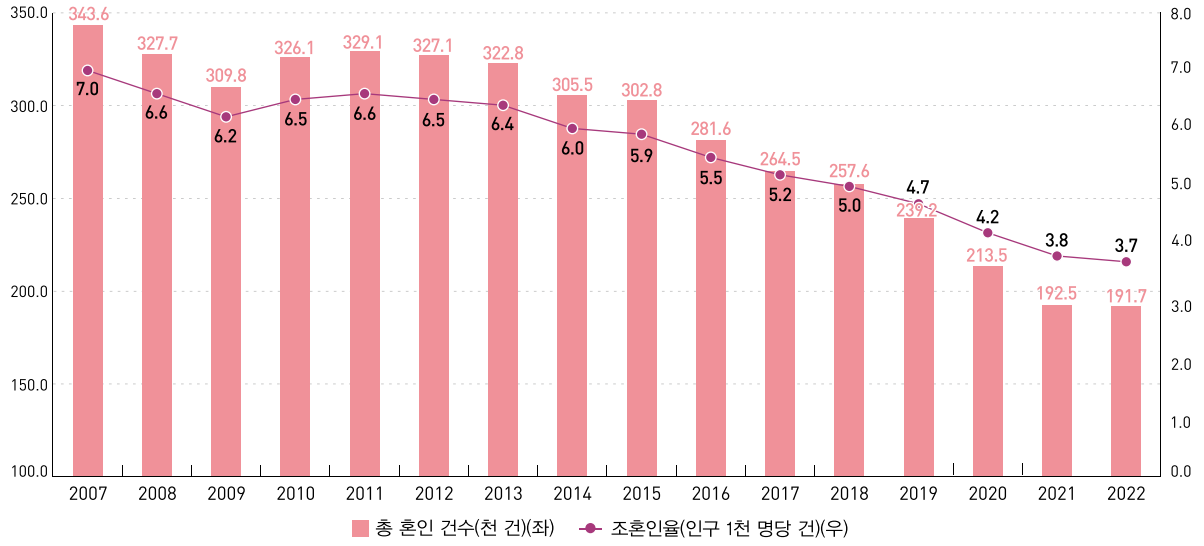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연간 총 혼인 건수}}{\text{당해 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

유의사항 혼인 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동안 전국 시 · 구청 및 읍 · 면 · 동 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므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1-23 총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2007~2021)

(단위: 천 건, 인구 1천 명당 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2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22	1년

10-2 연 관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Number of divorces with a foreign spouse

지표 정의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유의사항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즉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이혼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표 1-15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2007~2022)

(단위: 천 건,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8.3	11.0	11.5	11.1	11.5	10.9	10.5	9.8	8.2	7.7	7.1	7.1	6.9	6.2	6.2	5.8
한국남성 + 외국여성	(67.6)	(72.0)	(71.9)	(70.8)	(72.6)	(72.4)	(72.4)	(71.7)	(69.7)	(73.2)	(73.0)	(72.5)	(71.3)	(70.9)	(69.9)	(68.2)
한국여성 + 외국남성	(32.4)	(28.0)	(28.1)	(29.2)	(27.4)	(27.6)	(27.6)	(28.3)	(30.3)	(26.8)	(27.0)	(27.5)	(28.7)	(29.1)	(30.1)	(31.8)
총 이혼건수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108.7	110.8	106.5	101.7	93.2
총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	(6.7)	(9.4)	(9.3)	(9.5)	(10.1)	(9.5)	(9.1)	(8.4)	(7.5)	(7.1)	(6.7)	(6.6)	(6.2)	(5.8)	(6.1)	(6.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2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22	1년

11
대 표

가족부문 공공사회복지 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family

지표 정의

OECD 기준 가족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출산전후 휴가(maternity and parental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유아교육보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가사지원/시설지원(home help/accommodation), 기타 현물지원(other benefits in kind)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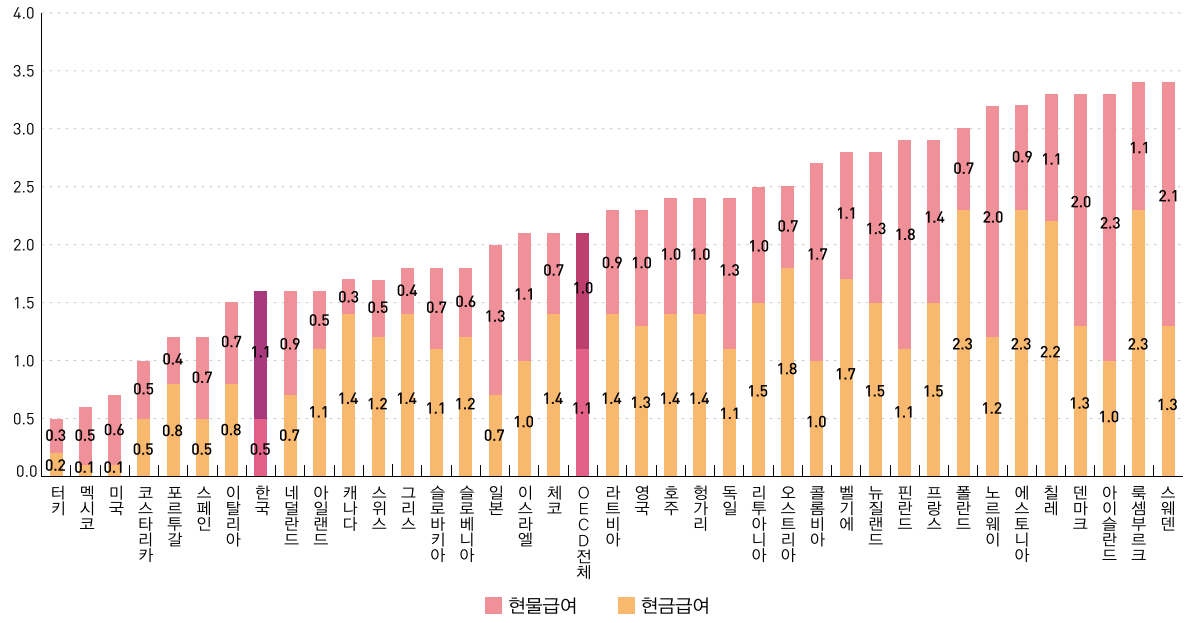
- OECD 기준 사회복지 지출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상별(노인, 장애인 및 아동가족 등) 및 영역별(보건,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등) 현금급여와 서비스로 인한 지출 등이 포함된다.

측정 산식

-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출산전후 휴가(maternity and parental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유아교육보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가사지원/시설지원(home help/ accommodation), 기타 현물지원(other benefits in kind)에 대한 지출의 총합을 GDP로 나눈 값**

그림 1-24 OECD 국가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단위: % of GDP)



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미국, 영국은 2020년도, 나머지는 2019년도 자료임.
자료: OECD.Stat,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3.05.24.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1990	2020	2년

12 대 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nursing and home care visiting service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 · 가사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이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 · 군 · 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자
- 지원 금액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2022년 기준)

구분	월 24시간(A형)		월 27시간(B형)		월 40시간(C형)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정부지원금	월 374,400원	월 351,940원	월 408,560원	월 395,930원	월 624,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22,460원	월 12,640원	월 25,270원	면제

표 1-16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3~2022)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용자 수	10,878	10,959	10,898	10,193	9,307	8,775	8,799	8,516	8,520	8,395
이용액	23,041,551	24,137,021	22,213,589	23,627,437	22,490,026	24,310,808	28,447,646	27,818,475	27,823,711	28,960,745

주: 각 연도별 연간 이용자 수 및 이용액

표 1-17 시도별 · 월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수 (2022)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6,324	6,275	6,322	6,344	6,415	6,422	6,400	6,389	6,330	6,324	6,426	6,365
서울	436	438	438	435	431	435	436	429	420	421	419	412
부산	632	631	636	638	658	672	679	690	689	680	697	699
대구	398	396	405	408	415	414	399	398	401	399	415	402
인천	435	431	453	454	461	473	464	447	440	449	446	446
광주	328	331	328	331	333	333	341	346	342	342	349	350
대전	183	180	189	193	193	187	192	197	197	195	197	192
울산	215	210	214	222	223	226	232	232	231	224	230	225
세종	11	10	11	11	12	9	8	8	7	6	8	8
경기	684	667	669	663	678	682	681	672	670	667	680	681
강원	298	295	297	297	297	296	297	302	302	293	295	292
충북	193	185	187	185	190	186	187	185	190	194	200	199
충남	203	204	202	199	196	193	188	194	193	192	197	186
전북	910	907	908	908	902	893	874	871	852	869	873	853
전남	470	472	471	482	488	488	483	481	469	465	465	461
경북	389	386	379	380	388	383	390	387	381	381	398	400
경남	499	491	494	497	505	507	504	508	505	503	517	521
제주	40	41	41	41	45	45	45	42	41	44	40	38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22	월

표 1-18 시도별 · 월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액 (2022)

(단위: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2,299,417	2,258,038	2,348,245	2,417,633	2,457,663	2,425,660	2,438,358	2,420,691	2,381,402	2,419,958	2,505,196	2,588,485
서울	157,576	158,831	160,337	164,315	164,237	161,951	162,716	163,371	160,111	159,822	162,926	166,858
부산	228,361	226,473	237,939	246,925	253,165	254,818	258,593	262,579	259,483	259,631	271,573	289,637
대구	145,501	144,838	149,074	155,875	159,565	153,715	151,975	152,069	150,392	149,081	160,828	160,469
인천	155,485	150,657	166,475	171,452	174,860	174,369	176,662	163,995	163,488	168,074	170,017	185,554
광주	118,513	123,591	128,240	130,556	130,868	130,923	133,247	131,282	133,856	133,552	142,124	145,540
대전	66,238	64,818	71,565	72,290	73,640	69,677	72,712	75,403	74,560	75,738	78,187	79,958
울산	77,275	76,354	78,047	84,263	84,521	85,449	87,594	87,547	85,558	86,237	87,251	87,617
세종	3,931	3,806	4,360	4,313	4,017	3,276	3,182	3,089	2,621	2,254	2,941	3,416
경기	245,583	238,329	249,421	250,154	258,001	257,049	257,595	256,347	251,511	254,990	264,716	278,507
강원	106,361	102,601	109,824	110,120	111,329	111,088	111,938	112,109	110,815	109,676	111,181	116,594
충북	70,091	66,230	70,957	70,520	73,819	71,440	70,691	70,060	70,309	74,116	79,482	82,719
충남	75,917	76,128	75,699	76,853	77,540	73,406	72,571	72,899	74,225	75,215	77,844	75,808
전북	335,205	322,686	333,130	343,645	344,362	333,263	333,138	327,210	318,692	335,150	335,026	334,534
전남	173,355	172,279	178,768	186,818	187,723	190,109	184,876	183,394	178,745	178,316	182,918	186,311
경북	145,088	142,334	142,054	144,050	149,635	146,289	149,440	151,258	145,649	148,247	154,112	167,216
경남	181,256	173,425	178,464	189,618	193,768	191,654	194,587	192,629	186,841	194,345	208,611	212,176
제주	13,681	14,656	13,892	15,865	16,614	17,183	16,840	15,452	14,547	15,514	15,460	15,569

13 대 표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language development supporting service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등 간접적인 서비스와 더불어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놀이, 수화 등 각종 지도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대상 중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이며,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생계 ·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지원 금액: 소득별로 상이

(2020년 기준)

구분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차상위계층(가형)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정부지원금	월 22만 원	월 20만 원	월 18만 원	월 16만 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 원	월 4만 원	월 6만 원

표 1-19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4~2022)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용자 수	313	398	421	387	343	327	323	345	295
이용액	60,183	75,916	78,562	73,966	65,250	61,304	69,350	73,857	62,642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표 1-20 시도별 · 월별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용자 수 (2022)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323	315	309	324	323	326	312	307	307	302	313	297
서울	66	62	61	64	61	64	62	62	61	62	65	61
부산	5	8	5	6	5	5	5	4	4	4	4	3
대구	6	5	5	5	5	5	5	5	7	7	7	7
인천	9	6	6	10	9	10	10	9	9	9	9	9
광주	37	37	38	40	40	40	39	39	39	39	38	38
대전	14	13	13	13	13	13	10	10	10	10	11	11
울산	8	8	9	9	9	9	8	8	9	10	11	11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63	62	63	65	69	69	70	70	67	62	63	60
강원	2	2	2	2	2	2	2	2	2	3	3	2
충북	14	13	12	11	11	10	9	7	7	7	7	6
충남	16	14	13	14	15	14	16	16	16	16	16	14
전북	39	37	35	36	34	35	33	35	37	36	37	36
전남	12	13	12	13	14	14	14	13	13	13	15	12
경북	17	16	17	17	20	20	13	11	11	11	14	14
경남	8	11	10	11	8	8	9	9	8	7	7	7
제주	7	8	8	8	8	8	7	7	7	6	6	6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언어발달지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22	월

표 1-21 시도별 · 월별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액 (2022)

(단위: 천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58,567	53,503	52,954	60,774	63,168	61,156	58,072	56,428	59,187	57,650	63,220	62,642
서울	11,595	9,966	10,865	11,663	12,077	11,858	11,612	12,109	11,846	12,463	14,417	13,203
부산	983	1,264	745	1,035	738	781	814	580	690	811	582	678
대구	1,173	1,027	970	1,057	1,020	1,020	1,020	1,000	1,350	1,460	1,495	1,515
인천	1,232	1,137	1,182	1,999	1,504	2,320	1,770	1,520	2,211	1,483	2,215	1,857
광주	7,143	6,809	7,131	7,917	8,176	7,947	7,204	7,494	7,542	7,750	7,745	8,112
대전	2,740	2,392	2,633	2,593	2,520	2,480	2,014	1,960	1,960	1,960	2,028	2,390
울산	1,433	1,373	1,749	2,006	1,874	1,682	1,580	1,439	1,826	1,781	1,924	2,458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10,818	9,145	8,739	11,545	12,603	11,643	11,936	11,679	11,395	10,321	11,042	11,491
강원	252	216	219	321	288	324	183	289	356	348	376	216
충북	2,444	2,290	1,906	2,244	2,194	1,785	1,636	1,415	1,444	1,448	1,356	1,400
충남	2,924	2,264	2,424	2,478	2,625	2,524	3,054	2,829	2,878	2,916	2,886	3,327
전북	7,759	6,981	6,854	7,076	7,031	6,812	6,323	6,726	7,949	7,583	8,929	8,476
전남	2,232	2,471	2,289	2,444	3,172	2,855	3,069	2,527	2,977	2,686	3,396	2,697
경북	3,123	2,747	2,855	3,191	3,864	4,041	3,208	2,240	2,173	2,080	2,250	2,423
경남	1,440	1,858	1,365	1,880	1,770	1,580	1,700	1,560	1,445	1,283	1,420	1,200
제주	1,277	1,566	1,029	1,325	1,712	1,504	950	1,060	1,145	1,280	1,160	1,200

주: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14 대 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으로 시도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 · 청소년 정서발달, 심리지원, 노인맞춤형 운동, 장애인 ·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시각장애인 안마, 정신건강 토탈케어, 자살위험군 예방,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건강취약계층 운동, (비만)아동 건강관리, 성인 심리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사업분류 기준에 따라 사업유형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 신규 사업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선정된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 (1)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서비스별로 상이하다.**
 (2) 욕구기준은 해당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선정 우선순위는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정한다.
- **지원 금액 : 각 사업별로 본인부담금이 책정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본인부담금을 설정하도록 권장**

표 1-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3~2022)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용자 수	460,013	366,808	233,347	275,785	250,169	256,111	273,569	267,455	264,365	262,817
이용액	195,527,304	197,660,079	185,713,192	242,992,664	224,440,262	223,344,470	244,315,904	229,995,788	252,423,012	243,157,021

주: 각 연도별 연간 이용자 수 및 이용액

표 1-23 시도별 · 월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2022)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34,101	128,160	132,880	141,665	142,731	141,826	139,242	139,838	137,421	136,794	136,927	136,568
서울	5,257	5,476	6,333	6,611	6,653	6,896	6,841	6,973	6,841	7,062	7,380	7,524
부산	12,864	12,473	12,648	13,459	13,431	13,785	13,774	14,647	13,548	13,858	13,512	13,509
대구	7,739	7,998	8,770	8,721	8,590	8,649	8,290	8,178	7,538	7,646	7,765	7,641
인천	8,720	8,273	8,590	9,365	9,198	9,049	8,917	8,570	9,055	9,264	9,033	9,850
광주	6,943	6,846	7,054	8,098	8,087	8,107	8,496	8,578	8,617	8,652	8,266	8,075
대전	8,229	8,116	8,091	8,218	8,147	8,240	8,177	8,178	8,240	8,110	8,282	8,506
울산	3,174	3,124	3,293	3,784	3,857	3,808	3,621	3,575	2,506	2,395	2,334	2,422
세종	864	928	962	964	939	938	936	704	720	704	696	674
경기	22,904	22,012	21,256	22,044	21,708	21,086	20,905	21,525	22,046	21,566	22,647	22,644
강원	6,196	5,990	6,056	6,200	6,192	6,146	6,040	5,525	5,314	5,488	5,670	5,719
충북	5,267	5,420	5,720	5,760	5,747	5,718	5,497	5,766	5,968	5,969	5,977	5,884
충남	6,623	5,925	6,336	6,411	6,396	6,371	6,276	6,420	6,914	7,055	6,021	5,999
전북	9,589	8,893	9,676	10,554	10,997	11,054	10,769	10,977	10,746	10,714	10,751	10,930
전남	9,523	7,943	8,851	11,489	12,318	12,022	11,395	10,626	10,010	9,662	9,597	8,114
경북	7,735	6,895	7,386	8,143	8,463	8,432	8,435	8,416	8,170	7,804	7,672	7,709
경남	6,790	6,429	6,524	6,641	6,741	6,758	6,681	6,638	6,621	6,473	6,309	6,067
제주	5,684	5,419	5,334	5,203	5,267	4,767	4,192	4,542	4,567	4,372	5,015	5,30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22	월

표 1-24 시도별 · 월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금액 (2022)

(단위: 천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8,472,076	17,627,003	18,977,483	21,771,516	21,322,610	20,770,884	20,450,562	20,428,249	20,189,268	20,631,784	20,727,477	21,788,109
서울	780,471	807,858	950,315	1,060,217	1,046,297	1,094,790	1,087,544	1,104,639	1,093,084	1,142,451	1,214,285	1,367,530
부산	1,617,161	1,598,351	1,584,013	1,917,112	1,798,451	1,819,996	1,837,313	1,954,673	1,802,969	1,915,424	1,867,793	1,924,729
대구	1,024,269	973,660	1,304,417	1,253,016	1,203,957	1,226,024	1,177,507	1,159,616	1,064,013	1,071,654	1,133,522	1,115,632
인천	1,234,684	1,138,569	1,263,927	1,375,327	1,346,885	1,297,754	1,290,168	1,231,198	1,302,840	1,358,877	1,363,356	1,530,650
광주	993,265	1,029,946	902,754	1,386,444	1,234,298	1,207,256	1,274,285	1,324,837	1,301,913	1,356,513	1,283,161	1,272,316
대전	1,261,701	1,249,013	1,240,799	1,328,032	1,299,623	1,303,217	1,309,341	1,279,295	1,324,695	1,302,840	1,325,763	1,441,744
울산	387,028	419,120	406,508	575,824	549,244	531,695	500,661	497,639	354,253	342,728	335,624	389,612
세종	146,367	147,871	162,974	170,683	166,295	165,898	166,192	119,465	127,483	124,028	122,447	132,236
경기	3,133,467	3,034,131	3,044,110	3,448,923	3,326,755	3,200,159	3,196,364	3,278,680	3,334,801	3,404,772	3,550,820	3,870,482
강원	851,681	815,225	852,420	947,854	915,213	911,656	877,162	800,343	766,402	802,979	854,757	898,417
충북	777,835	777,888	856,981	923,394	897,923	882,114	832,467	866,879	889,824	945,141	948,276	964,468
충남	921,739	774,712	985,571	980,750	986,294	969,498	962,752	975,762	1,056,180	1,135,746	969,710	1,043,712
전북	1,390,344	1,244,892	1,435,390	1,726,970	1,752,265	1,670,558	1,640,239	1,634,357	1,629,341	1,634,456	1,664,971	1,742,049
전남	1,206,944	1,061,879	1,230,905	1,696,137	1,759,646	1,591,187	1,494,307	1,384,443	1,323,806	1,302,003	1,297,353	1,137,197
경북	1,031,731	933,893	1,049,829	1,204,743	1,266,161	1,212,526	1,204,884	1,199,238	1,184,252	1,171,736	1,143,346	1,231,087
경남	962,094	905,407	969,788	1,028,246	1,016,614	1,008,592	1,016,503	984,788	1,014,382	1,008,050	967,708	978,531
제주	751,296	714,589	736,782	747,846	756,690	677,965	582,872	632,397	619,029	612,387	684,585	747,718

주: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15 대 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postpartum women and infants health care service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경과 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금액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2022년 기준)

구분	단태아	쌍태아(인력 1명)	쌍태아(인력 2명)	삼태아 이상(인력 2명)
1일 기준 서비스가격	124,800원	158,400원	218,400원	249,600원

표 1-25 연도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3~2022)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용자 수	58,569	67,791	71,120	82,313	79,515	97,905	136,364	114,192	125,675	132,917
이용액	33,969,434	39,876,439	38,903,756	45,018,903	53,210,976	74,765,812	123,529,851	110,975,918	132,536,607	147,238,203

주: 각 연도별 연간 이용자 수 및 이용액

표 1-26 시도별 · 월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2022)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3,335	15,389	17,089	17,443	17,984	17,055	16,538	17,590	17,865	19,172	19,264	16,847
서울	2,697	3,097	3,431	3,462	3,588	3,380	3,236	3,435	3,441	3,611	3,747	3,380
부산	751	899	981	983	1,049	1,016	987	989	1,023	1,152	1,143	943
대구	570	674	752	764	809	750	691	724	742	850	837	729
인천	667	770	823	848	957	908	849	908	948	1,000	999	886
광주	346	370	420	416	440	433	402	415	431	457	485	399
대전	436	468	541	539	557	553	508	606	648	682	653	536
울산	298	346	379	395	385	340	347	349	405	410	413	344
세종	179	198	220	239	241	243	225	201	204	221	226	226
경기	3,760	4,408	4,932	5,098	5,151	4,801	4,764	5,147	5,226	5,561	5,483	4,800
강원	302	355	390	389	410	408	422	427	452	474	493	426
충북	395	414	460	423	420	445	424	445	436	471	474	426
충남	578	634	735	761	760	691	657	733	736	794	802	690
전북	381	426	446	450	473	458	477	502	447	486	549	474
전남	422	488	515	493	529	532	523	579	548	620	597	497
경북	641	799	894	972	989	934	886	915	924	1,018	1,016	918
경남	749	863	979	1,017	1,028	965	954	1,017	1,024	1,138	1,125	962
제주	163	180	191	194	198	198	186	198	230	227	222	21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22	월

표 1-27 시도별 · 월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액 (2022)

(단위: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9,611,399	11,010,220	12,056,219	12,524,160	13,271,694	12,409,200	11,975,402	12,711,226	12,622,342	13,141,820	13,753,195	12,151,326
서울	1,836,417	2,048,737	2,261,695	2,345,352	2,488,937	2,300,301	2,178,422	2,370,124	2,320,388	2,354,402	2,510,819	2,264,322
부산	520,381	642,731	655,376	713,702	749,656	729,457	694,515	703,744	720,241	782,980	803,005	667,099
대구	408,528	484,442	534,697	569,411	600,118	572,560	511,313	542,257	541,052	596,230	609,287	537,909
인천	467,811	563,031	621,045	621,274	743,275	702,749	636,190	686,904	711,402	723,321	754,660	669,275
광주	252,441	256,843	307,808	311,252	341,710	328,297	289,958	310,962	315,398	346,323	366,860	295,810
대전	304,738	324,611	397,302	369,323	414,116	400,270	367,203	439,838	457,824	466,526	473,332	387,102
울산	213,787	267,209	290,651	298,129	290,881	250,168	264,769	260,356	292,333	265,980	298,247	251,997
세종	136,452	146,452	159,961	175,507	172,367	177,417	167,896	142,320	146,294	143,688	171,157	159,693
경기	2,698,012	3,153,517	3,477,598	3,651,863	3,773,799	3,458,954	3,447,757	3,683,894	3,623,735	3,739,118	3,849,238	3,455,332
강원	233,880	274,522	274,083	283,069	313,353	315,110	317,931	316,889	336,810	332,361	350,275	307,242
충북	295,216	320,929	327,056	316,271	330,986	340,232	317,489	330,101	316,915	338,672	334,224	317,383
충남	445,087	464,534	529,896	535,825	581,342	532,745	494,701	535,767	537,157	546,104	590,590	502,071
전북	294,989	323,345	335,120	330,046	372,729	331,837	360,371	391,241	328,466	366,708	403,406	377,596
전남	314,350	359,839	370,863	369,854	403,309	392,959	383,545	426,039	401,821	439,895	454,276	353,329
경북	514,015	613,603	675,417	749,702	760,023	722,131	686,509	688,918	680,889	746,358	782,101	724,838
경남	554,719	641,226	691,150	741,588	777,862	708,188	719,110	727,012	724,033	784,733	837,360	718,257
제주	120,577	124,649	146,501	141,992	157,231	145,826	137,723	154,860	167,582	168,420	164,358	162,071

2
아동

01 아동 수면시간
02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03 아동 자살률
0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05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06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07 아동 빈곤율
08 나홀로 아동
09 보호대상아동 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아동 건강 발달	아동 수면시간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아동 자살률	
아동 안전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아동 손상 경험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 빈곤	아동 빈곤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아동급식 지원자 수
아동의 사회적 보호	나홀로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보호대상아동 수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수

01
대 표

아동 수면시간

Child sleeping hours

지표 정의

아동 · 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학교 등교 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기초로 초 · 중 ·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을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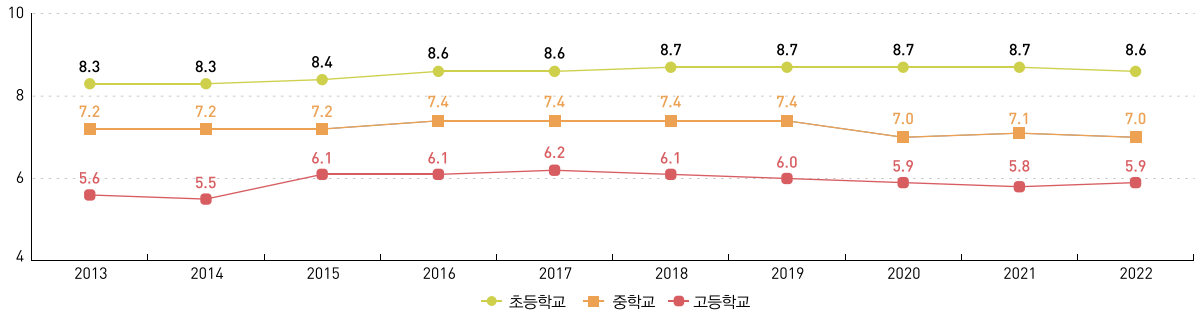
• 아동의 적정 수면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아동 1일(평일) 수면시간의 합}}{\text{전체 아동의 수}}$ (평일 평균)

그림 2-1 연도별 · 학령별 평균 수면시간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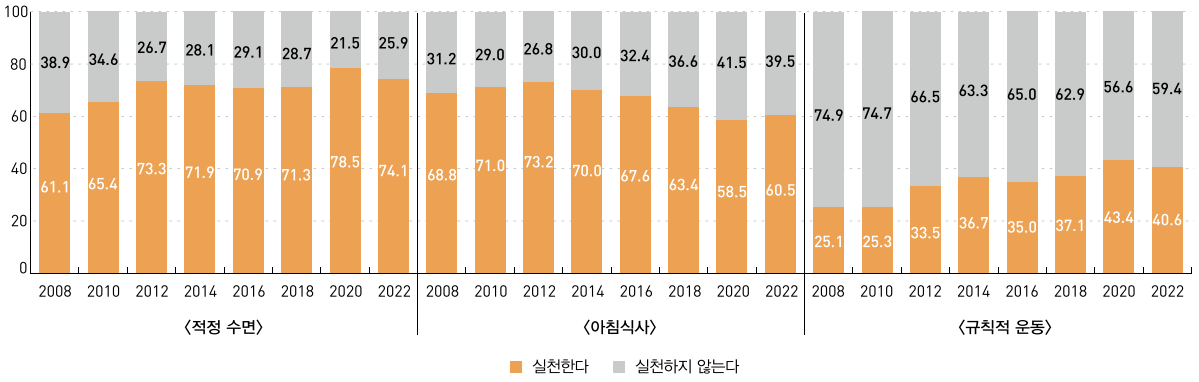
(단위: 시간)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2-2 연도별 건강관리 실천 여부 (2008~2022)

(단위: %)



주 : 1) 2010년까지는 15~19세, 2012년부터 13~19세
2)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하나, 짝수년에 보건(건강관리) 관련 조사를 수행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09	2022	1년
통계청	사회조사	1977	2022	1년

* 통계청 사회조사는 기본항목(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조사. (짝수년)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홀수년)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여가, 소득과소비, 노동으로 조사됨.

표 2-1 학령별 수면시간당 비율 (2014~2022)

(단위: %)

연도	구분		5시간 미만	5~6시간	6~7시간	7~8시간	8시간 이상
2014	전체		5.6	15.7	20.8	24.6	33.4
	초등학교		0.3	0.7	3.8	17.2	78.0
	중학교		1.3	6.0	20.9	42.0	29.6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5.0	40.4	33.0	10.1	1.5
		특성화	7.9	19.0	37.0	30.1	5.9
2015	전체		4.1	12.9	20.6	26.0	36.3
	초등학교		0.2	0.6	3.3	13.8	82.0
	중학교		1.1	6.6	18.1	41.6	32.6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0.9	31.5	36.1	17.5	4.1
		특성화	5.7	12.5	35.4	34.7	11.7
2016	전체		7.9	17.3	14.1	23.9	36.7
	초등학교		0.3	1.4	2.9	13.8	81.6
	중학교		2.5	9.5	16.0	37.5	34.5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20.7	40.1	21.2	15.3	2.7
		특성화	9.0	20.4	19.8	36.5	14.3
2017	전체		4.5	14.6	20.4	23.7	36.8
	초등학교		0.2	0.8	3.4	14.8	80.8
	중학교		1.5	7.6	20.0	36.6	34.3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1.5	34.5	32.9	16.7	4.3
		특성화	4.4	14.9	34.5	32.2	14.0
2018	전체		5.0	14.7	19.8	21.9	38.7
	초등학교		0.2	0.6	3.4	12.4	83.4
	중학교		1.3	7.9	17.8	36.6	36.4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2.6	34.5	34.3	14.4	4.3
		특성화	8.8	19.4	35.2	28.8	7.8
2019	전체		6.4	14.0	18.2	20.9	40.5
	초등학교		0.3	1.0	3.5	13.0	82.2
	중학교		2.6	8.1	19.4	33.2	36.7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6.8	32.6	30.5	15.2	5.0
		특성화	8.4	23.2	29.8	25.9	12.6
2020	전체		5.5	11.0	17.1	18.8	47.6
	초등학교		0.5	0.7	2.5	7.4	88.9
	중학교		4.3	8.3	16.4	27.1	43.8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1.8	25.5	33.1	20.3	9.4
		특성화	9.5	14.5	24.7	28.6	22.7
2021	전체		9.6	15.1	17.9	19.0	38.3
	초등학교		0.7	1.8	4.3	14.0	79.2
	중학교		6.2	12.2	22.1	30.0	29.4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23.4	34.6	26.7	11.1	4.2
		특성화	16.6	19.1	30.1	21.5	12.7
2022	전체		8.9	14.5	18.4	20.5	37.7
	초등학교		0.5	1.5	3.9	15.5	78.6
	중학교		5.6	12.6	24.8	30.8	26.3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22.7	31.3	26.6	13.7	5.7
		특성화	15.8	26.3	28.5	20.2	9.2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02
대 표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Rate of internet (smartphone) overdependences in children

지표 정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집단)과 잠재적 위험사용자군(현저성, 조절 실패, 문제적 결과 중 1~2가지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구성된다.

- 스마트폰 과의존의 개념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salience)이 증가하고 이용조절력(self-control failure)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2016년부터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는 기존의 인터넷(K-척도) 및 스마트폰(S-척도) 개별척도를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통합하여 통합척도를 사용, 유아동(만 3~9세), 청소년(만 10세~19세), 성인(만 20세~59세), 고령층(만 60세~69세) 4종의 척도를 도입하였다.

측정 산식

$$\frac{\text{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상담개입 또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집단 수)}}{\text{조사대상(10~19세) 청소년 수}} \times 100$$

유의사항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스마트폰 중독척도(각 15문항)를 활용하여 산출함.**

표 2-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및 수 (2015-2022)

(단위: %, 천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율 (%)	수 (천 명)	비율 (%)	수 (천 명)	비율 (%)	수 (천 명)	비율 (%)	수 (천 명)	비율 (%)	수 (천 명)	비율 (%)	수 (천 명)	비율 (%)	수 (천 명)	비율 (%)	수 (천 명)
과의존 위험	16.2	5,810	17.8	7,426	18.6	7,860	19.1	8,278	20.0	8,871	23.3	10,212	24.2	10,728	23.6	10,426
고위험	2.4	863	2.5	1,042	2.7	1,133	2.7	1,180	2.9	1,274	4.0	1,753	4.5	1,983	4.2	1,869
잠재적 위험	13.8	4,947	15.3	6,384	15.9	6,727	16.4	7,098	17.1	7,597	19.3	8,459	19.7	8,735	19.4	8,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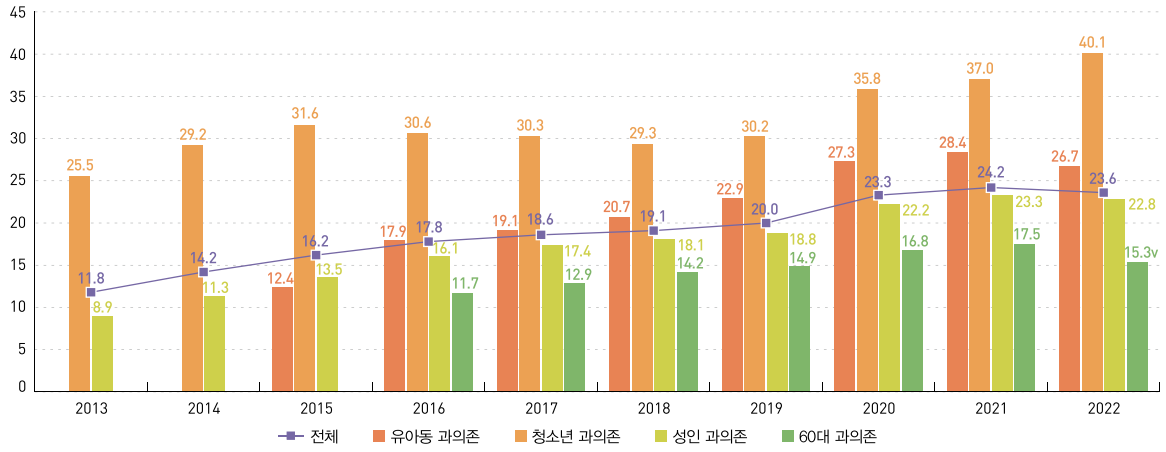
주: 1) 조사연령 확대 2016년 이후: 만 3~69세 (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60대 만 60~69세)
2015년: 만 3~59세 (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조사대상 연령이 위와 같이 확대되고, 기존 인터넷(K-척도) 및 스마트폰(S-척도) 개별척도를 2016년부터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통합하여 조사함에 따라 전년도와 단순비교 불가
3)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수=만3~69세 인터넷(스마트폰)이용자수x과의존 위험군 비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04	2022	1년

그림 2-3 연령대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2013~2022)

(단위: %)



주: 1) 조사연령 확대 2016년~2020년: 만 3~69세 (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60대 만 60~69세)
2015년: 만 3~59세 (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2014년: 만 10~5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2013년: 만 10~54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4세)
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조사대상 연령이 위와 같이 확대되고, 기존 인터넷(K-척도) 및 스마트폰(S-척도) 개별척도를 2016년부터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통합하여 조사함에 따라 전년도와 단순비교 불가
3)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수=만3~69세 인터넷(스마트폰)이용자수x과의존 위험군 비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3 연령대별 · 연도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2013~2022)

(단위: %)

구분	연령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유아동	-	-	12.4	17.9	19.1	20.7	22.9	27.3	28.4	26.7
	청소년	25.5	29.2	31.6	30.6	30.3	29.3	30.2	35.8	37.0	40.1
	성인	8.9	11.3	13.5	16.1	17.4	18.1	18.8	22.2	23.3	22.8
	60대	-	-	-	11.7	12.9	14.2	14.9	16.8	17.5	15.3
고위험	유아동	-	-	1.7	1.2	1.2	2.0	2.3	3.7	4.3	3.5
	청소년	2.4	3.3	4.0	3.5	3.6	3.6	3.8	5.0	5.7	5.2
	성인	1.0	1.8	2.1	2.5	2.8	2.7	2.8	4.0	4.5	4.4
	60대	-	-	-	2.0	2.1	2.4	2.5	3.2	3.7	3.0
잠재적 위험	유아동	-	-	10.7	16.7	17.9	18.7	20.6	23.6	24.1	23.2
	청소년	23.1	25.9	27.6	27.1	26.7	25.7	26.4	30.8	31.3	34.9
	성인	7.9	9.5	11.4	13.6	14.6	15.4	16.0	18.2	18.8	18.3
	60대	-	-	-	9.7	10.8	11.8	12.4	13.6	13.8	12.3

주: 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60대 만 60~69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각 연도

03
대 표

아동 자살률

Child suicide rate

지표 정의

아동 · 청소년 자살률(자살사망률)은 연간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아동 · 청소년 사망자의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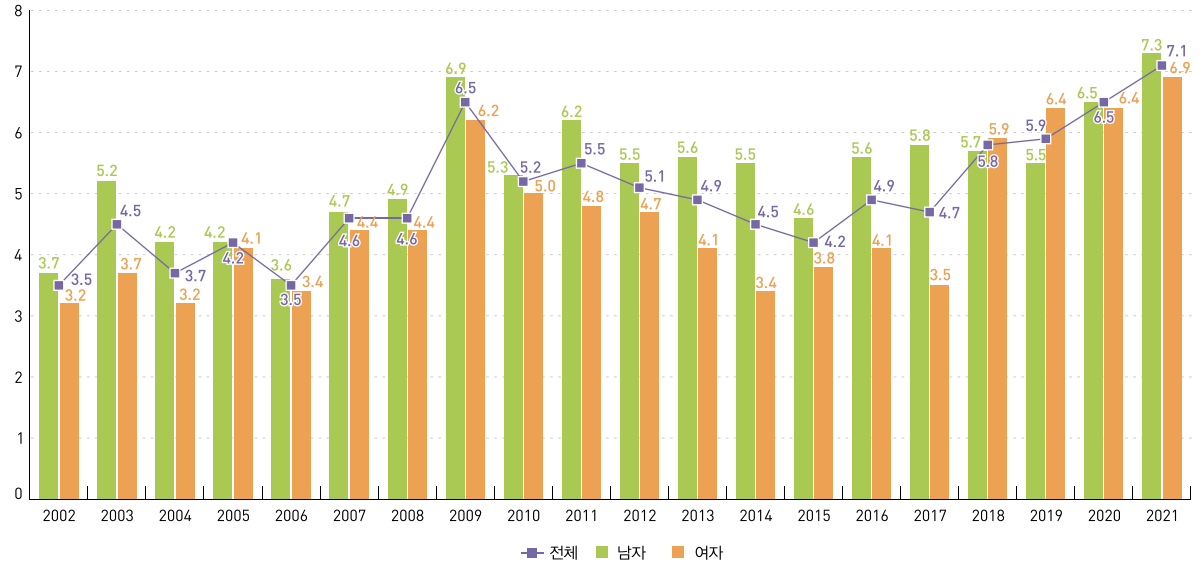
• 연앙인구는 당해 연도의 중간인 7월 1일 기준의 주민등록 인구를 의미하며,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사용한다.

측정 산식

$$\frac{\text{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아동 · 청소년 사망자의 수}}{\text{당해 연도 아동 · 청소년 연앙인구}} \times 100{,}000$$

그림 2-4 성별 10대의 자살률 (2002~2021)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주 :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10대 사망자 수 및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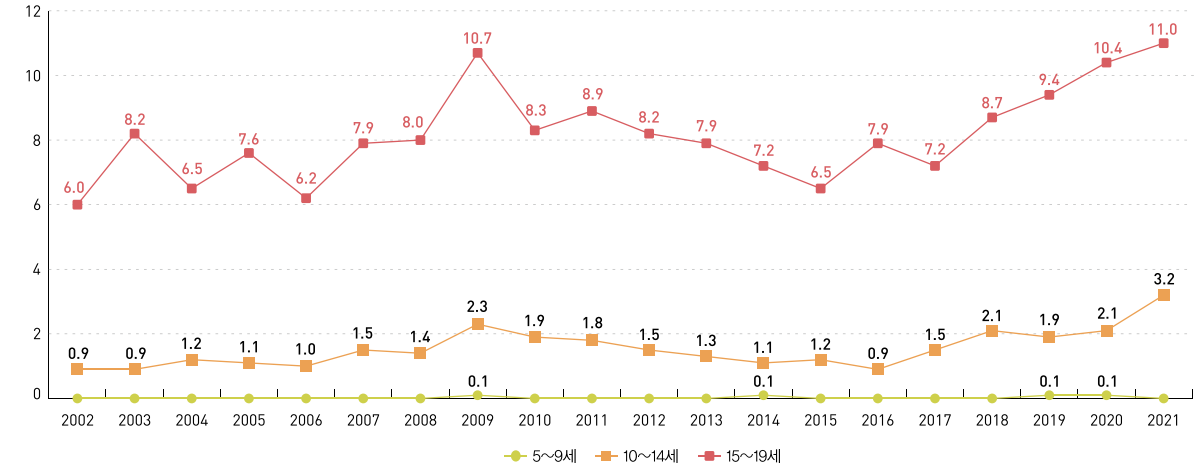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21	1년
통계청	사회조사	1977	2022	1년

그림 2-5 연령별 아동 · 청소년 자살률 (200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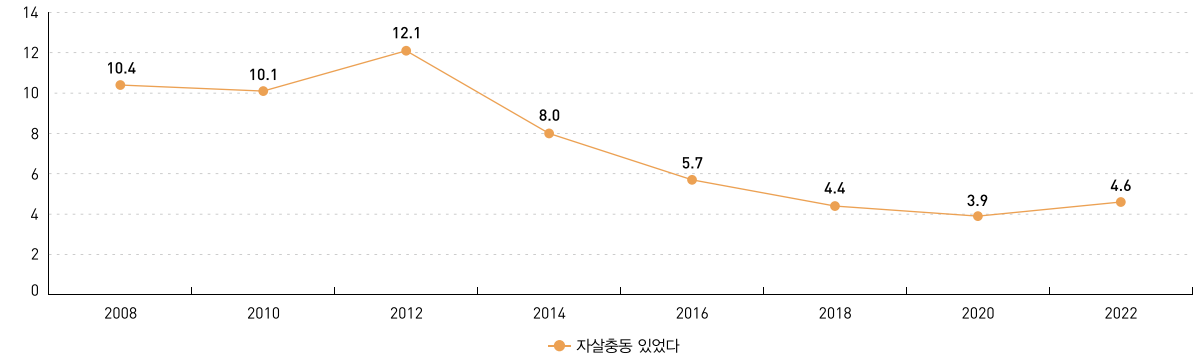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주: 1)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 0~4세 자살자 수는 집계되지 않거나 0명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그림 2-6 연도별 자살충동 청소년의 비율 (2008~2022)

(단위: %)



주: 1) 2010년까지는 15~19세, 2012년부터 13~19세
2)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하나, 짝수년에 보건(자살충동) 관련 조사를 수행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표 2-4 연도별 청소년 자살충동 여부 및 이유 (2008~2022)

(단위: %)

연도	자살충동 여부		자살충동 이유							
	자살충동 있다	자살충동 없다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	직장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성적 및 진학문제	이성문제, 친구 및 동료와의 불화	기타
2008	10.4	89.6	8.8	3.5	1.7	13.6	10.1	51.0	8.6	2.9
2010	10.1	89.9	10.5	2.2	1.6	11.2	12.6	53.4	5.7	2.8
2012	12.1	87.9	16.7	2.0	0.4	12.5	16.9	39.2	8.5	3.7
2014	8.0	92.0	19.5	2.1	0.8	9.8	10.5	39.3	12.9	5.2
2016	5.7	94.3	10.6	3.0	1.0	11.1	11.9	48.1	10.0	4.3
2018	4.4	95.6	14.5	4.6	0.9	13.1	14.0	35.7	16.5	0.6
2020	3.9	96.1	9.3	12.4	3.0	14.4	11.2	29.7	19.2	0.8
2022	4.6	95.4	3.3	34.2	1.2	11.2	8.7	30.8	7.0	3.5

주: 1) 2010년까지는 15~19세, 2012년부터 13~19세
2)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하나, 짝수년에 보건(자살충동) 관련 조사를 수행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04
대 표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Number of safety accident death in children

지표 정의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년 동안 외부요인에 의한 안전사고(운수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로 사망한 14세 이하의 아동의 수 및 10만 명당 비율을 말하며 자살, 타살, 질병에 의한 사망은 제외한다.

•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사고 중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사고를 근거로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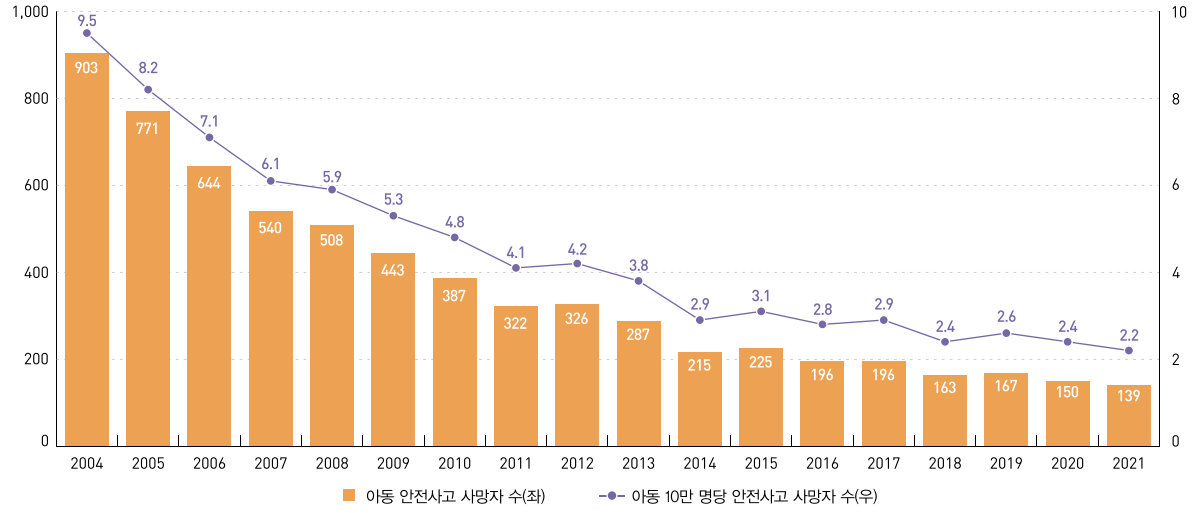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 = $\frac{\text{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 수}}{\text{14세 이하 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00$

유의사항 본 지표에서 교통사고는 사망원인통계(통계청)와 교통사고통계(경찰청)에서 각각 공표하는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 사망원인통계의 '교통사고'는 육상 · 해상 · 항공 등 모든 교통기관 사고 및 트랙터 사고 등 비도로상의 사고를 포함한다. 교통사고통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의 통계를 의미하며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교통사고를 근거로 작성된다.

그림 2-7 14세 이하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및 10만 명당 사망자 수 (2004~2021)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주: 사망원인통계에서 사망원인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와 "가해(타살)"을 제외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통계청, 주민등록 연앙인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21	1년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976	2021	1년

표 2-5 15세 미만 아동 안전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 (200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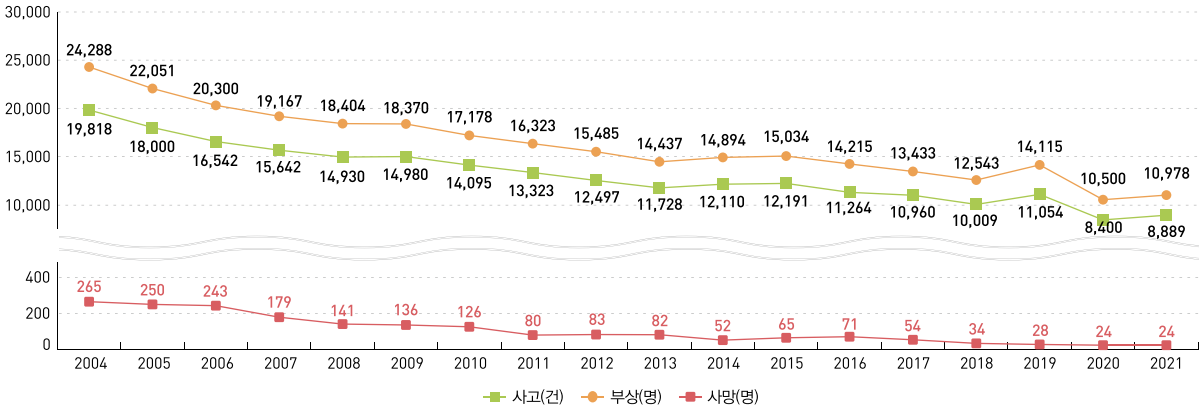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903	771	644	540	508	443	387	322	326	287	215	225	196	196	163	167	150	139
교통사고	378	347	317	260	214	201	194	137	131	121	80	103	87	75	54	54	31	36
추락	187	156	79	79	78	62	44	50	53	41	36	28	28	24	18	25	32	25
익사	89	69	58	58	50	40	42	37	36	37	31	28	19	26	28	27	18	19
화재	42	19	42	7	19	10	15	15	14	15	5	10	5	7	8	2	15	8
중독	7	5	5	4	2	5	3	1	1	2	2	0	1	2	4	1	3	1
기타	200	175	143	132	145	125	89	82	91	71	61	56	56	62	51	58	51	50

주: 사망원인통계에서 사망원인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와 "가해(타살)"을 제외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그림 2-8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건수, 부상자 수, 사망자 수 (200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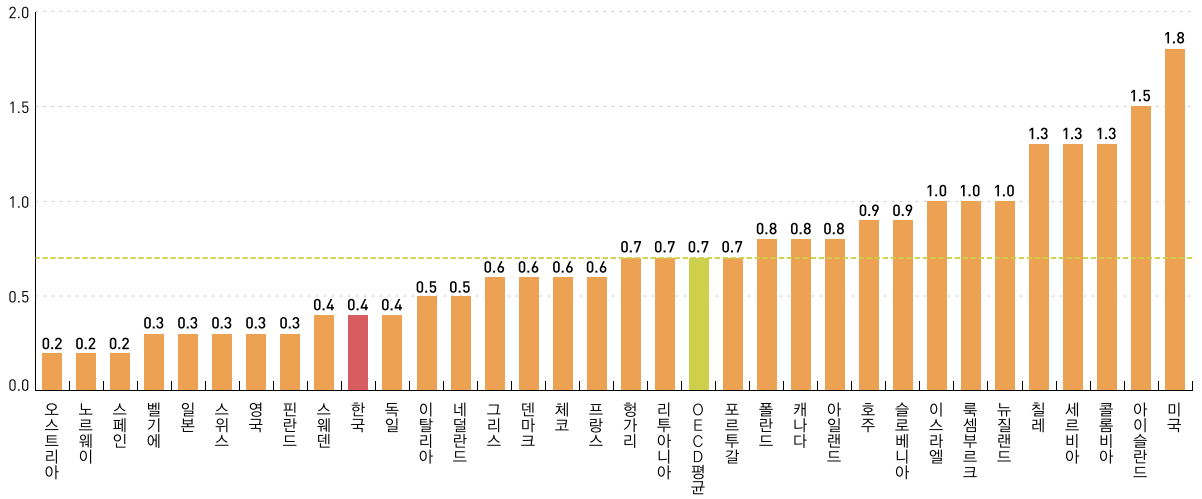
(단위: 건, 명)



주: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그림 2-9 아동(14세 이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국제비교 (2020)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주: 네덜란드는 2017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는 2018년, 나머지는 2020년 자료
자료 : OECD 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Database (http://stats.oecd.org에서 2023.04.25. 인출)

04-1
연 관

아동 손상 경험률

Child injury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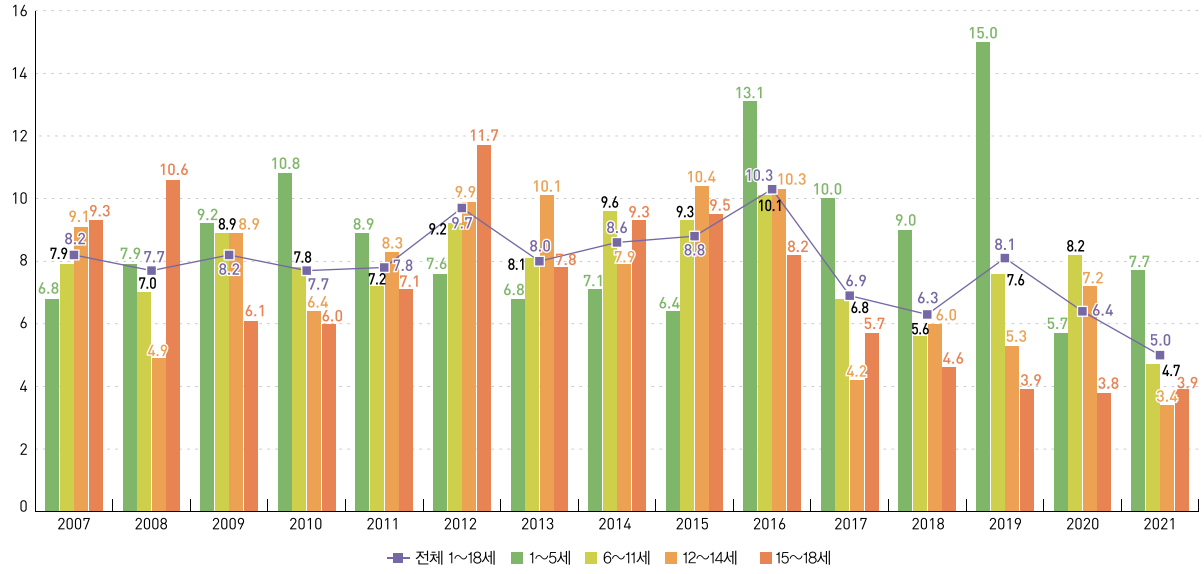
아동의 손상 경험률은 만 18세 이하의 아동 중 최근 1년간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아동 분율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만 18세 이하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사람}}{\text{만 18세 이하 인구}} \times 100$

그림 2-10 아동 연간 손상 경험률 (2007~2021)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05 대 표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Substantiation rate of child abuse

지표 정의

아동학대란 신체, 정신, 성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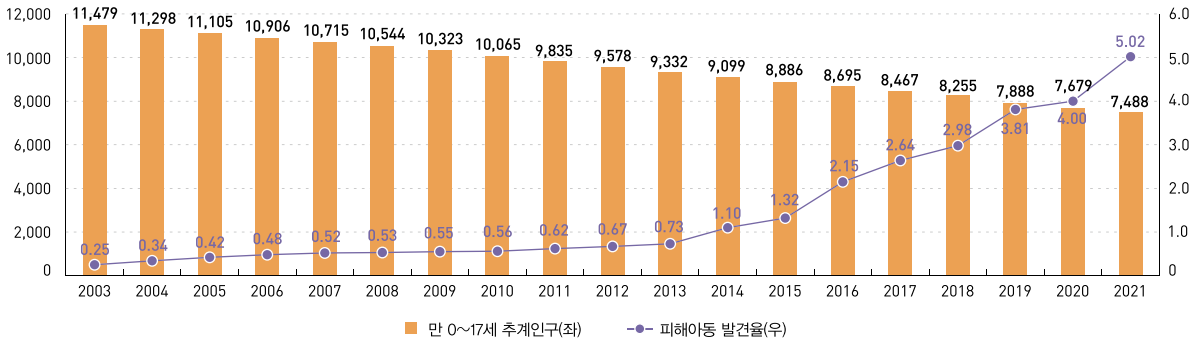
- 아동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은 추계아동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로 판정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한다.
- 학대피해아동 서비스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에게 취한 최종조치와 제공된 서비스의 횟수를 포함하는데, 최종조치 결과는 전년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 결과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만 0~17세 아동학대 판정 피해아동 수}}{\text{만 0~17세 아동 수}} \times 1{,}000$

그림 2-11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 (200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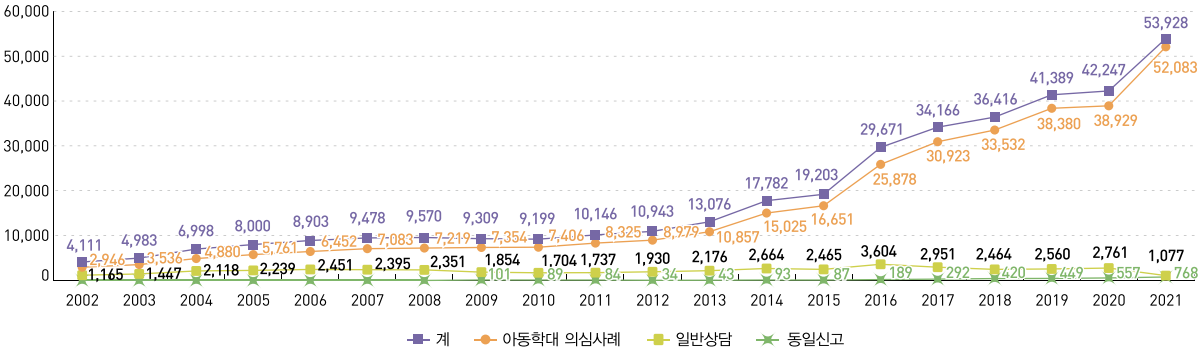
(단위: 명, ‰)



주: 1)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함.
2) 2016년까지 통계청「연령별(시도) 추계아동인구」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2017년 이후 통계청「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이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18년 이후: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그림 2-12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2002~2021)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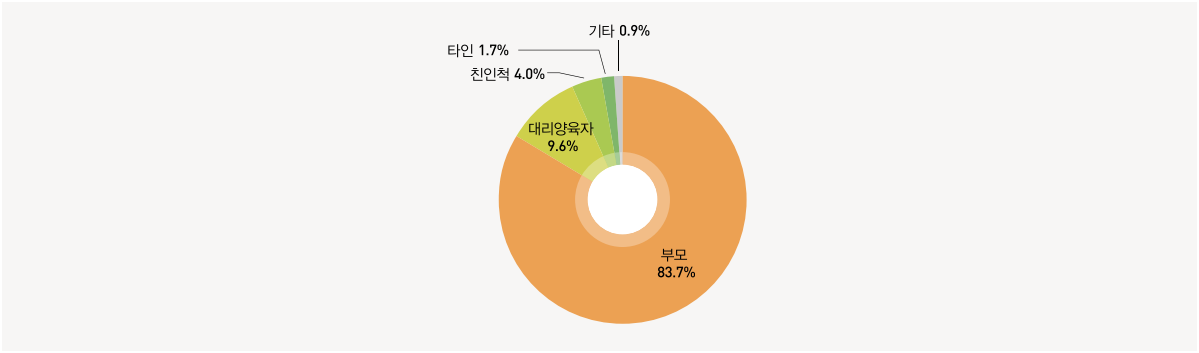
주: 1) 동일신고는 2009년부터 집계됨. 동일신고란 최초 신고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 피해의심내용으로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를 의미함.
2) 해외발생사례 건수는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이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18년 이후: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2006	2021	1년

그림 2-13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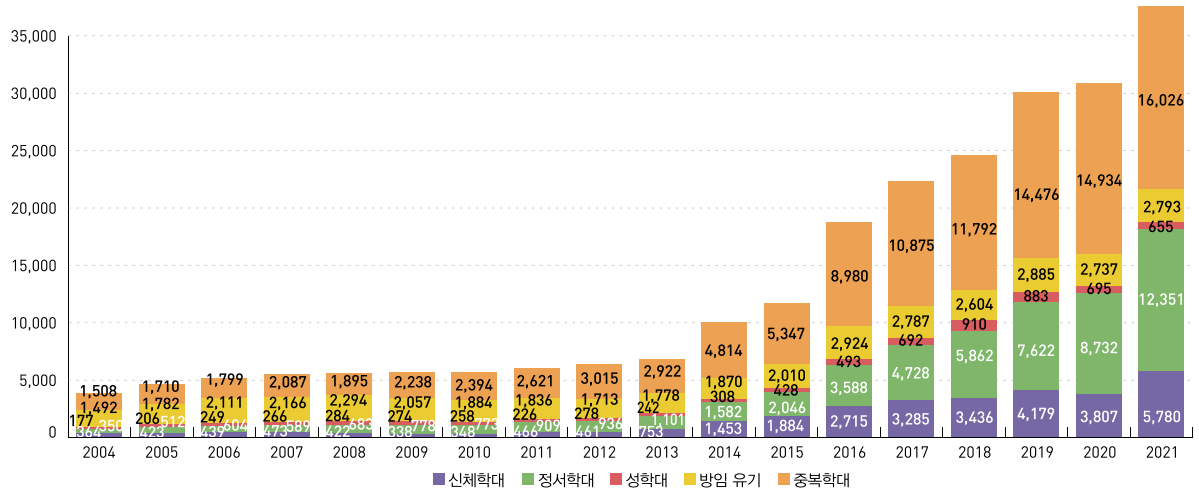
(단위: %)



주: 1) 대리양육자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그림 2-14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건수 (200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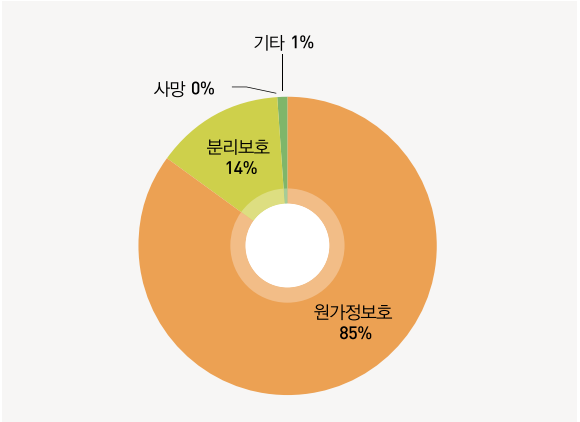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이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18년 이후: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그림 2-15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유형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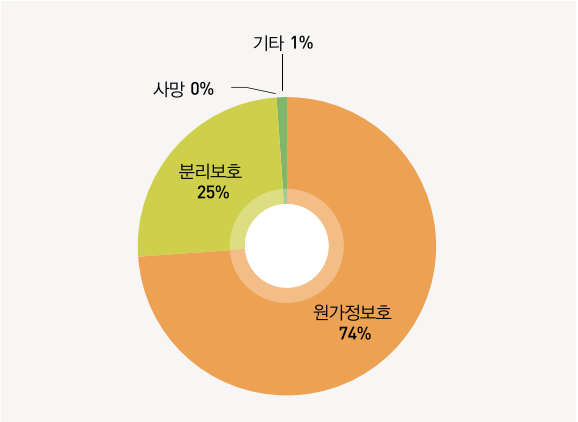
(단위: 건, %)



주: 원가정보호: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경우
분리보호: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사망: 아동학대 사망, 아동학대 사망 외 일반사망을 포함하고 있음.
기타: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예: 가출 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이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18년 이후: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그림 2-16 재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유형(2021)

(단위: 건, %)



주: 원가정보호: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경우
분리보호: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사망: 아동학대 사망, 아동학대 사망 외 일반사망을 포함하고 있음.
기타: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예: 가출 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이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18년 이후: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http://kosis.kr에서 2023.04.25. 인출)

06
대 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Rate of school violence

지표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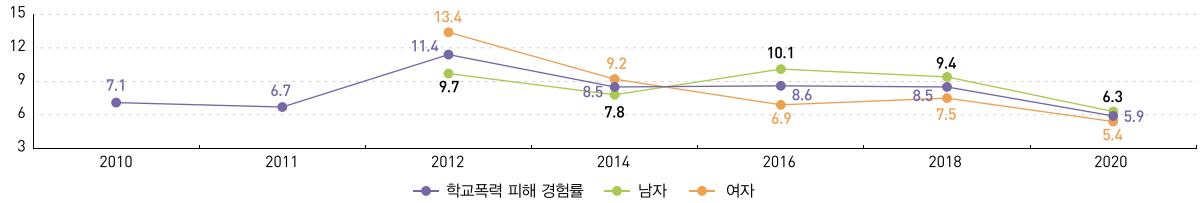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전국의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의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

유의사항 2014년까지 격년으로 각기 실시되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와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는 조사 내용의 중복과 정책 활용도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 2015년 통합이 결정되어, 2016년부터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로 통합적으로 조사한다. 이에 각 통계표에서 제시하는 내용 중 일부가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또한 기초통계표와 결과 보고서에서 학교 폭력과 청소년 폭력을 혼용하고 있으나 2020년 여성가족부 결과 보고서는 학교 폭력으로 통계를 제시한바, 이에 따라 지표명을 쓰도록 한다.

그림 2-17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2010~2020)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10-2014);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16~2020)

표 2-6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이유 (2016~2020)

(단위: %)

구분			청소년 폭력 피해 경험률	피해사실을 알린 경험					피해사실을 알린 대상(중복응답)		
				알린 적 있음	알린 적 없음	가족에게 알렸다	선생님에게 알렸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지원기관에 알렸다 (상담기관, Wee 센터,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경찰(112)에 알렸다	기타
전체		2016	8.6	46.5	53.5	52.4	48.3	45.8	6.3	3.3	1.7
		2018	8.5	48.3	51.7	54.1	52.0	47.0	4.5	1.3	1.3
		2020	5.9	62.4	37.6	71.4	36.4	35.6	4.0	1.5	3.7
성별	남자	2016	10.1	39.5	60.5	48.5	46.1	34.6	7.0	4.0	1.5
		2018	9.4	41.0	59.0	50.0	54.5	35.7	3.7	1.1	2.4
		2020	6.3	55.2	44.8	69.2	34.5	24.0	4.0	2.1	4.0
	여자	2016	6.9	57.6	42.4	56.6	50.7	58.0	5.6	2.6	1.9
		2018	7.5	57.9	42.1	58.0	49.7	57.6	5.2	1.6	0.3
		2020	5.4	71.4	28.6	73.6	38.5	46.9	4.0	1.0	3.4
학교급	초	2016	10.5	60.7	39.3	62.7	48.4	33.8	5.6	1.6	2.5
		2018	9.9	63.9	36.1	63.1	46.6	36.0	2.2	0.3	1.9
		2020	9.8	70.9	29.1	80.5	31.3	25.0	0.7	0.8	4.8
	중	2016	8.0	38.8	61.2	50.2	49.5	56.7	5.9	4.0	0.5
		2018	9.7	46.8	53.2	50.3	62.2	52.3	6.1	1.7	1.0
		2020	5.3	57.0	43.0	63.8	45.5	46.4	7.2	3.8	3.0
	고	2016	7.6	38.9	61.1	37.7	47.0	55.2	7.9	5.4	1.5
		2018	6.4	31.4	68.6	39.5	46.3	63.9	6.8	3.2	0.4
		2020	2.8	44.6	55.4	42.5	41.5	65.5	13.9	0.0	0.0

주: 피해사실을 알린 경험은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1999	2020	부정기

표 2-7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유형 비율 (2010~2011, 2012~2014, 2016~2020)

(단위: %)

구분	신체적 상처는 없었다	신체적 상처가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욕, 동영상 촬영을 억지로 당했다	기타
2010	34.9	19.6	33.7	6.3	0.6	4.1
2011	31.1	17.6	26.8	6.1	0.7	17.7

연도	구타	욕설, 폭언	돈,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2012	28.1	56.2	29.6	38.2
2014	25.5	46.9	29.9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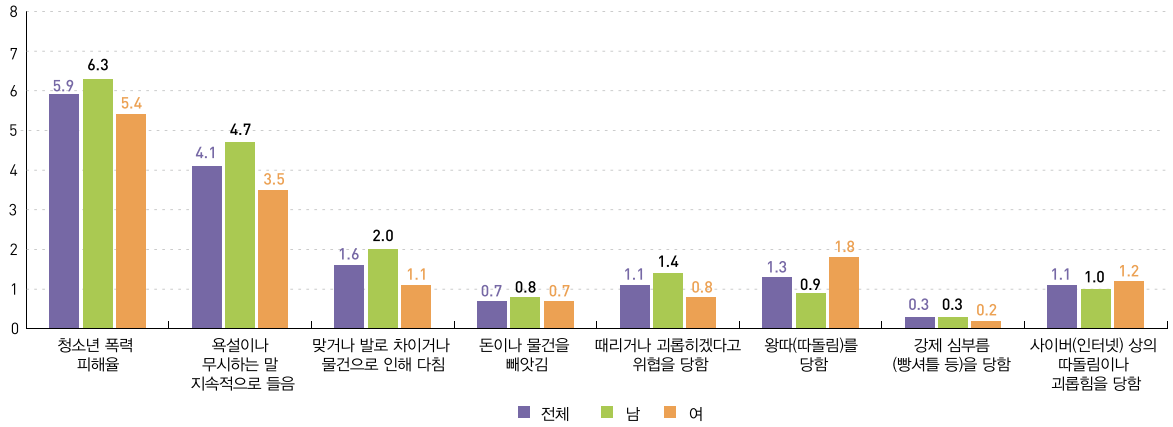
연도	사례 수(건)	청소년 폭력 피해율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지속적으로 들음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물건으로 인해 다침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왕따 (따돌림)를 당함	강제 심부름(빵셔틀 등)을 당함	사이버 (인터넷) 상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2016	15,633	8.6	6.9	2.9	1.0	1.8	1.6	0.5	0.8
2018	15,629	8.5	6.9	2.4	1.0	1.6	1.6	0.2	0.9
2020	15,633	5.9	4.1	1.6	0.7	1.1	1.3	0.3	1.1

주: 1) 제시된 7가지 유형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본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며, 복수응답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10–2014);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16~2020)

그림 2-18 성별 학교폭력 피해유형 비율 (2020)

(단위: %)



주: 기타는 모름 혹은 무응답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20)

표 2-8 연도별 · 피해 장소별 학교폭력 비율 (2010~2020)

(단위: %)

연도	학교교실 안	학교교실 외 교내공간	학교주변/ 공터/골목	동네 주변/ 골목/놀이터/ 주차장	상가, 지하도 안/ 학원 안/ 학원 건물 주변	시내유흥가/ 번화가	공원/야산 등	사이버 (인터넷 공간)	기타
2010	42.3	21.5	8.6	8.8	3.7	1.5	4.3	-	8.0
2011	38.3	12.3	8.3	10.5	2.1	1.9	4.1	-	22.3
2012	51.5	12.7	9.9	10.6	2.8	3.0	2.3	-	7.2
2014	46.4	13.3	10.6	9.0	3.8	2.5	2.5	-	11.7
2016	56.8	18.9	2.5	5.3	4.3	0.8	0.4	7.7	3.1
2018	51.6	19.7	2.2	4.7	5.3	0.6	0.5	10.7	4.6
2020	31.4	14.5	1.5	10.0	6.0	1.0	1.7	26.7	4.6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10~2014),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16~2020)

07
대 표

아동 빈곤율

Child poverty rates

지표 정의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전체 아동 중 상대적 빈곤선(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인 아동의 비율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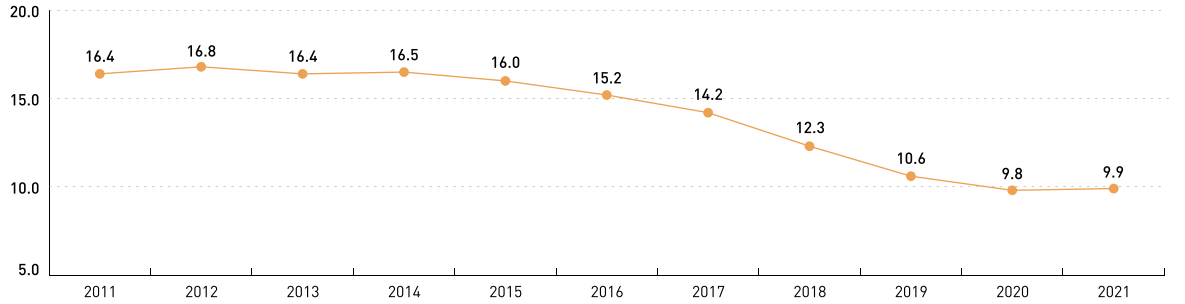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아동 수}}{\text{전체 아동 수}} \times 100$

유의사항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OECD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가계동향조사가 2017년 개편되어 가계수지(소득 및 지출) 통계에서 소득통계와 지출통계가 분리되어 지출통계는 연간 주기로 작성 및 공표된다.

그림 2-19 연도별 상대적 아동(0~17세) 빈곤율 (2011~2021)

(단위: %)



주: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0. 인출)

표 2-9 연도별 · 소득지출별 상대적 아동 빈곤율 (전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지출 50%, 2016~2020)

(단위: %)

연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16	15.5	15.2	15.2	3.9	5.7
2017	14.5	13.9	14.2	4.1	5.5
2018	13.1	12.3	12.3	3.4	4.6
2019	12.1	10.8	10.6	2.9	4.4
2020	12.9	10.5	9.8	2.8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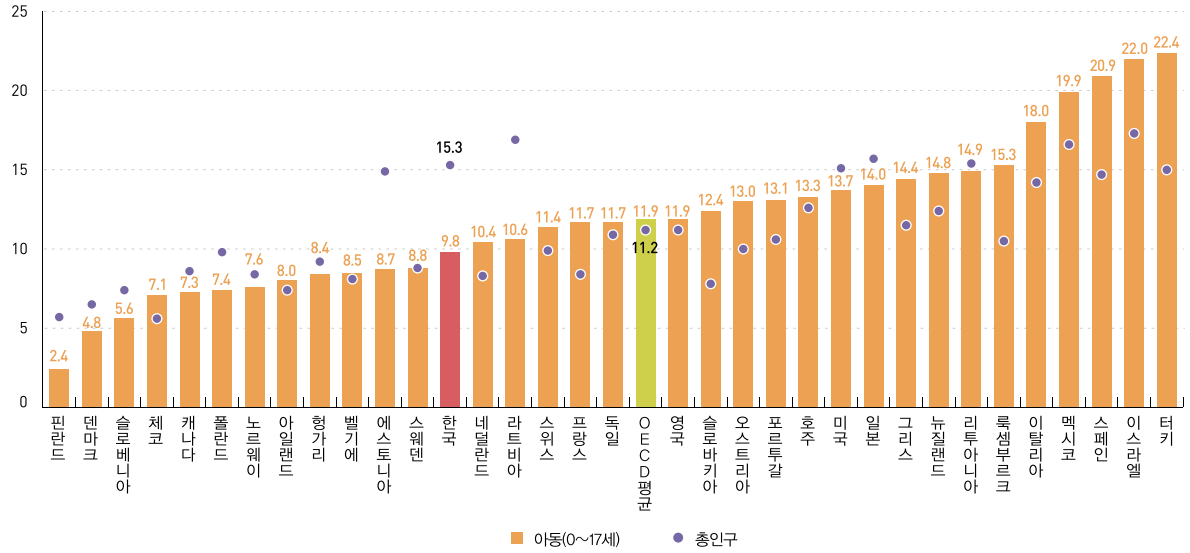
주: 전체 아동 중 기준빈곤선(중위소득 및 지출의 50%) 아래에 있는 아동의 비율(개인 기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2021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2005	2020	1년

그림 2-20 OECD 국가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아동 빈곤율 (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



주: 한국, 캐나다, 핀란드, 라트비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호주는 2020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는 2018년, 미국은 2021년, 나머지는 2019년 자료임.

자료: OECD Poverty rate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에서 2023.05.10. 추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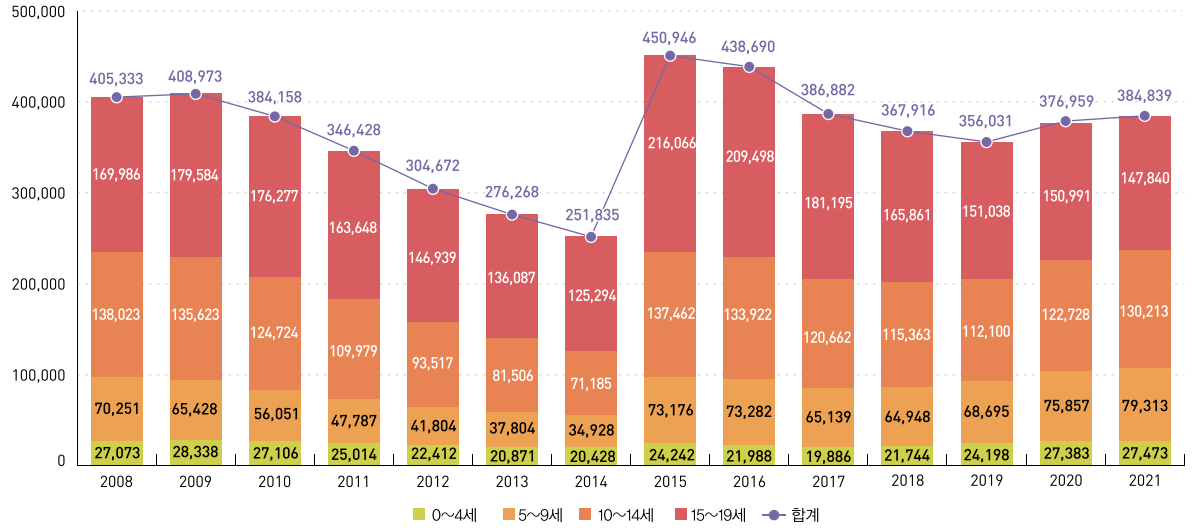
지표 정의

아동 ·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아동 · 청소년을 지칭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계층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수급한다.

그림 2-21 연령별 국민기초생활 수급 아동 수 (200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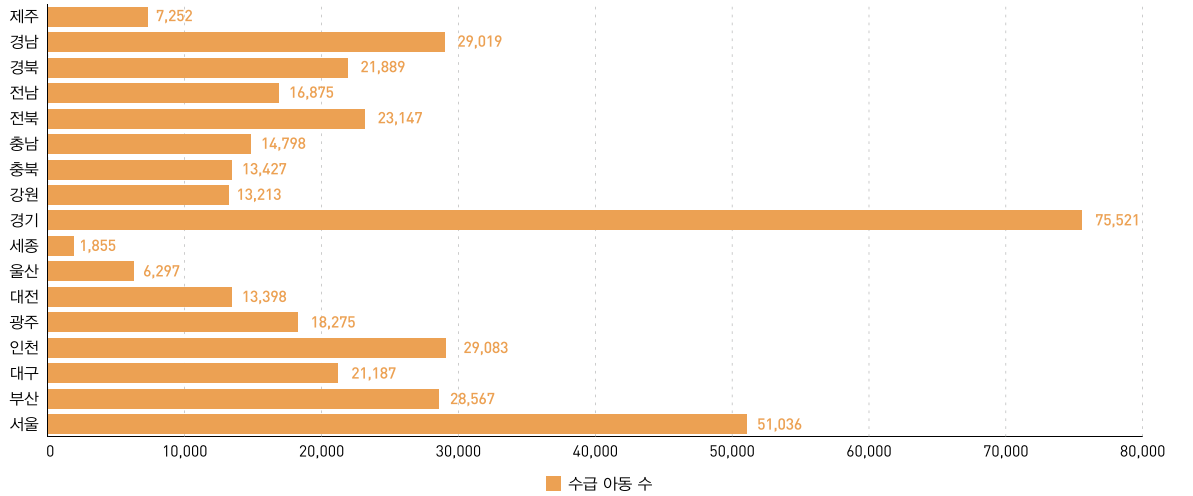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0 (http://kosis.kr에서 2023.05.10. 인출)

그림 2-22 시도별 국민기초생활 수급 아동 수 (2021)

(단위: 명)



주: 0~19세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20 (http://kosis.kr에서 2023.05.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977	2021	1년

07-2
연 관

아동급식 지원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school me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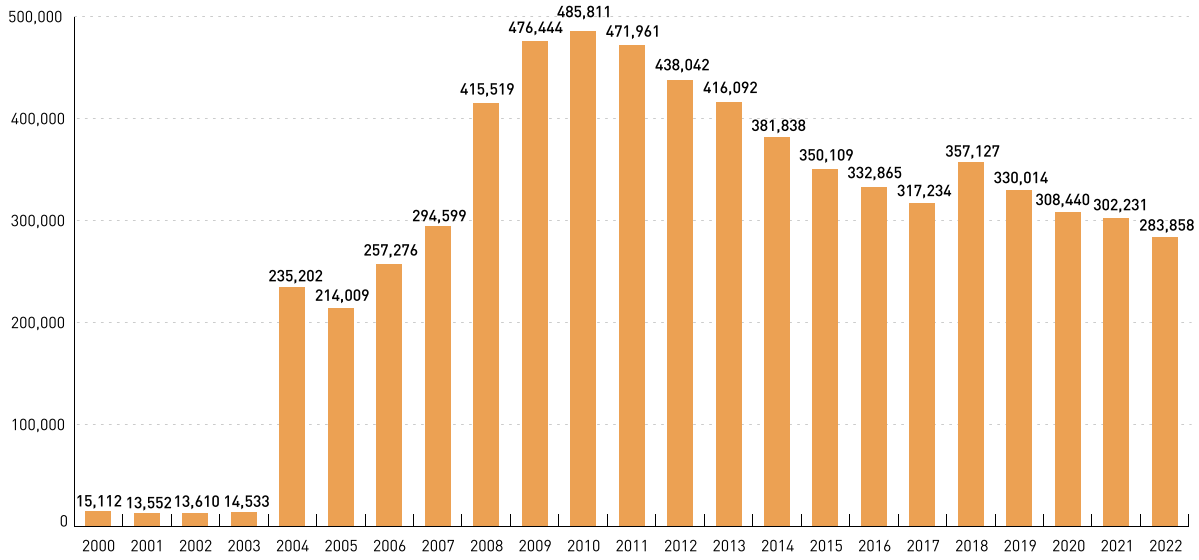
지표 정의

아동급식은 빈곤, 가족해체 등 여러 가지 가정 사유로 발생하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 식사를 제공받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제공 ·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총괄하는 사업임.
- 지자체(시도/시군구) 제출자료를 취합한 자료임.

그림 2-23 아동급식 지원자 수 (2000~2022)

(단위: 명)



주: 매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 현황(지자체 제출자료), 각 연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7에서 2023.05.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 현황	2000	2021	1년

08 대 표

나홀로 아동

Children staying home alone

지표 정의

나홀로 아동이란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한다.

- 방과 후 기관 이용 초등학생 중 나홀로 아동은 방과 후 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녀 중 기관 이용 이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방과 후 기관 이용 이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방치된 아동(초등학생 자녀)이 혼자 있는 시간**

표 2-10 보육 상태별 아동인구 (2015, 2020)

(단위: 천 명, %)

구분	아동인구	부모	조부모	가족 · 친인척	가사 도우미	혼자 또는 다른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보육 시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학원	기타
2015년	5,764 (100.0)	(50.3)	(10.4)	(0.9)	(1.1)	(3.0)	(20.7)	(10.2)	(1.3)	(11.7)	(25.7)	(0.1)
0~6세	3,119 (100.0)	(54.7)	(11.7)	(0.8)	(1.4)	(0.2)	(38.2)	(18.8)	(1.3)	(0.7)	(3.9)	(0.1)
7~12세	2,645 (100.0)	(45.1)	(9.0)	(1.0)	(0.7)	(6.2)	(0.1)	(0.1)	(1.4)	(24.7)	(51.3)	(0.1)

구분	아동인구	부모	조부모	가족 · 친인척	가사 도우미	혼자 또는 다른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보육 시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학원	기타
2020년	5,198 (100.0)	(60.2)	(12.0)	(1.4)	(1.2)	(4.6)	(17.8)	(8.7)	(1.1)	(5.9)	(15.7)	(0.1)
0~6세	2,550 (100.0)	(60.3)	(11.7)	(0.8)	(1.6)	(0.1)	(36.4)	(17.8)	(0.0)	(0.5)	(0.6)	(0.1)
7~12세	2,647 (100.0)	(60.1)	(12.2)	(2.1)	(0.8)	(8.9)	(0.0)	(0.0)	(2.2)	(11.1)	(30.3)	(0.1)

주 1) 아동보육상태는 평일 낮(오전 9시~오후 6시) 동안 주된 돌봄 형태이며, 초등학생은 정규 수업 후 주된 돌봄 형태임.
2) 2개까지 선택 가능하여 계와 일치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http://www.kosis.kr/에서 2023.05.10. 인출)

표 2-11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2020~2021)

(단위: %)

구분	없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2020(13차)	18.8	21.4	21.2	13.4	9.7	15.5
2021(14차)	21.81	19.44	22.55	15.36	7.79	1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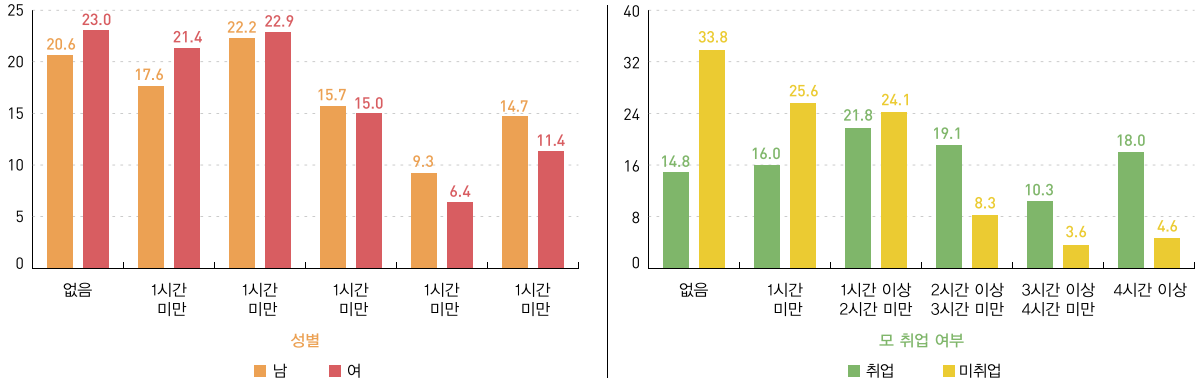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은 절대 시간이 아닌, ① 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으로 측정한 구간척도의 점수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II)	2008	2022	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아동보육상태	2015	2020	5년

그림 2-24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2021)

(단위: 시간)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은 절대 시간이 아닌, ① 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으로 측정한 구간척도의 점수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08-1 연 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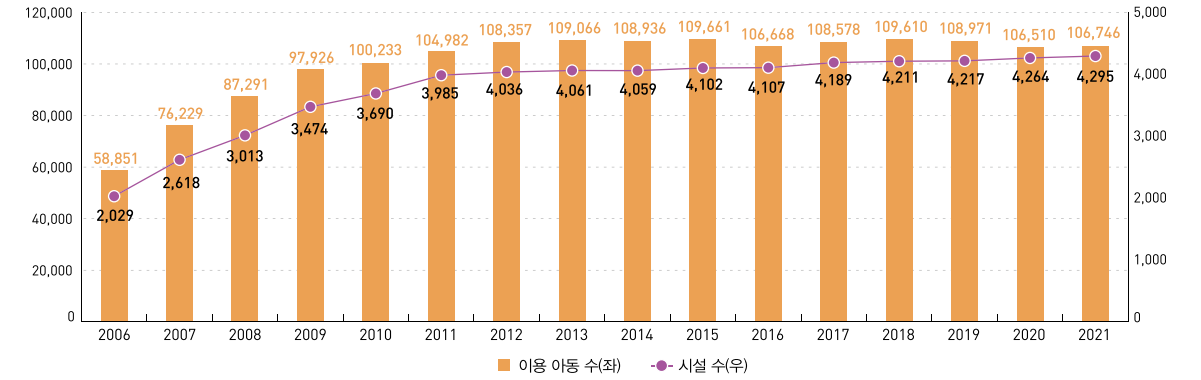
Number of uses of community child centers

지표 정의

18세 미만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 등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그림 2-25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및 시설 수 (2006~2021)

(단위: 명,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12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2006~2021)

(단위: 개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61	4,059	4,102	4,107	4,189	4,211	4,217	4,264	4,295
서울	210	262	302	354	367	395	404	405	409	414	414	450	454	454	468	477
부산	110	134	155	171	185	194	196	200	200	205	204	208	212	210	210	209
대구	35	60	75	115	147	171	177	188	191	200	199	198	200	199	199	201
인천	117	143	157	175	174	182	187	186	181	179	183	182	178	176	181	185
광주	92	143	164	201	218	272	278	285	292	300	301	306	308	310	310	311
대전	83	122	133	139	144	149	146	147	147	146	145	145	144	143	142	140
울산	41	49	51	54	52	56	57	58	56	56	55	54	56	56	57	58
세종	-	-	-	-	-	-	11	9	10	11	12	12	13	13	13	13
경기	402	534	601	656	679	722	735	728	751	757	763	783	789	793	800	803
강원	102	114	139	159	159	164	164	162	163	166	168	168	172	174	173	174
충북	118	137	156	176	185	201	202	199	190	188	184	185	184	183	181	185
충남	87	125	151	181	200	216	214	221	224	232	226	240	238	238	238	238
전북	147	173	212	255	267	286	288	287	281	281	286	285	285	285	288	294
전남	216	279	307	343	368	399	392	392	383	387	384	379	378	377	390	395
경북	108	143	164	206	232	252	256	261	257	259	258	267	271	247	274	275
경남	128	158	189	219	244	254	257	260	255	253	259	261	263	266	274	271
제주	33	42	57	70	69	72	72	73	69	68	66	66	66	66	66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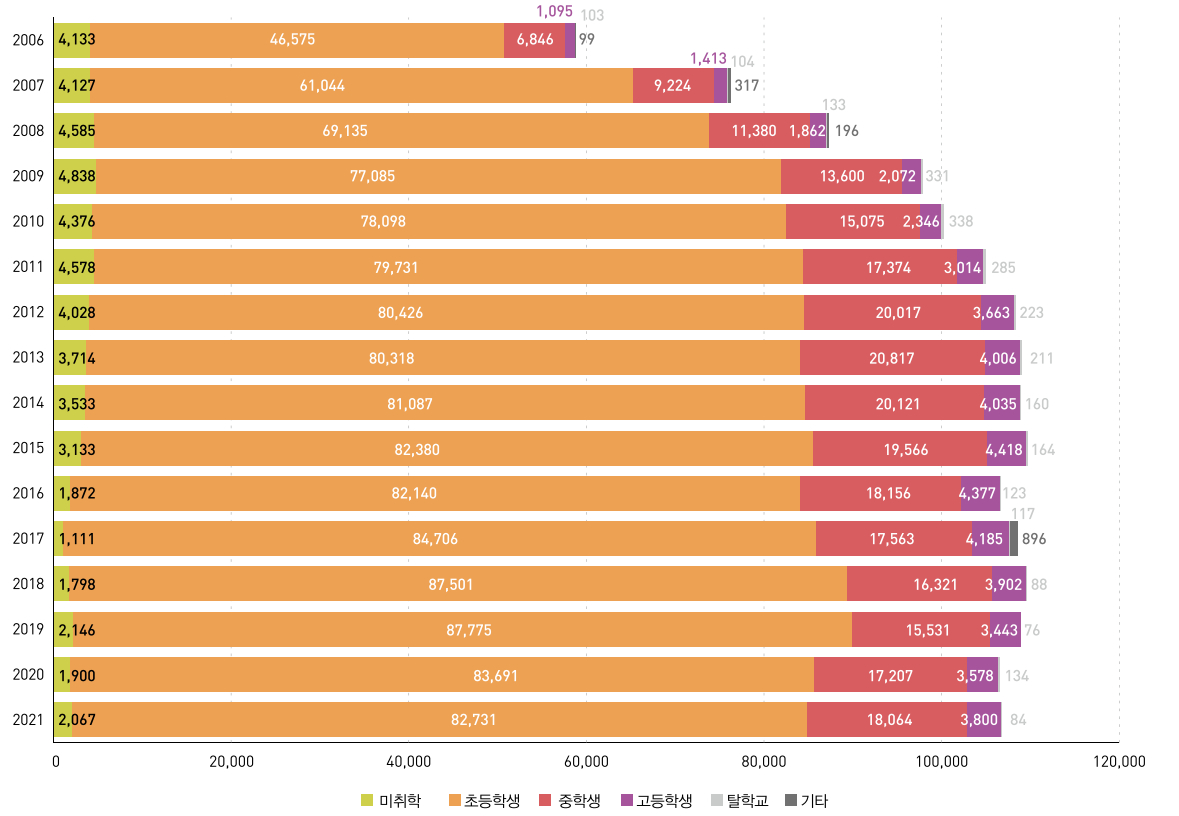
주: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2008	2022	1년

그림 2-26 학령별 ·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2006~2021)

(단위: 명)



주: 분석 불가능 시설 238개소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13 학령별 ·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2006~2021)

(단위: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104,982	108,357	109,066	108,936	109,661	106,668	108,578	109,610	108,971	106,510	106,746
미취학	4,133	4,127	4,585	4,838	4,376	4,578	4,028	3,714	3,533	3,133	1,872	1,111	1,798	2,146	1,900	2,067
초등학생	46,575	61,044	69,135	77,085	78,098	79,731	80,426	80,318	81,087	82,380	82,140	84,706	87,501	87,775	83,691	82,731
중학생	6,846	9,224	11,380	13,600	15,075	17,374	20,017	20,817	20,121	19,566	18,156	17,563	16,321	15,531	17,207	18,064
고등학생	1,095	1,413	1,862	2,072	2,346	3,014	3,663	4,006	4,035	4,418	4,377	4,185	3,902	3,443	3,578	3,800
탈학교	103	104	133	331	338	285	223	211	160	164	123	117	88	76	134	84
기타	99	317	196	-	-	-	-	-	-	-	-	896	-	-	-	-

주: 분석 불가능 시설 238개소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14 가정형태별 · 양육자 경제활동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2021)

(단위: 명, %)

구분		이용 아동 수	비율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전체		106,746	100.0	26.0
양부모가정	소계	72,481	67.9	18.0
	맞벌이 가정	54,295	50.9	13.0
	아버지만 경제활동	14,216	13.3	4.0
	어머니만 경제활동	2,780	2.6	1.0
	경제활동 안함	1,190	1.1	0.0
모자가정	소계	18,707	17.5	5.0
	경제활동 함	15,998	15.0	4.0
	경제활동 안 함	2,709	2.5	1.0
부자가정	소계	11,712	11.0	3.0
	경제활동 함	10,672	10.0	3.0
	경제활동 안 함	1,040	1.0	0.0
조손가정	소계	2,947	2.8	1.0
	경제활동 함	1,618	1.5	0.0
	경제활동 안 함	1,329	1.2	0.0
소년소녀가장		143	0.1	0.0
기타(친척 및 시설)		753	0.7	0.0

주: 분석 불가능 시설 238개소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2022

09
대 표

보호대상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needing protection

지표 정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을 말한다.

측정 산식

• 시 · 군 · 구청에서 보고받아 사회적 보호를 하게 된 아동의 총합

표 2-15 발생 원인별 보호대상아동 수 및 비중 (2000~2021)

(단위:명, %)

연도	총 계	기아, 미아	미혼부모	비행, 가출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등
2000	9,085	1,422(15.7)	4,190 (46.1)	1,757 (19.3)	1,716 (18.9)	
2001	10,586	815 (7.7)	4,897 (46.3)	728 (6.9)	4,146 (39.2)	
2002	10,057	708 (7.0)	4,337 (43.1)	749 (7.4)	4,263 (42.4)	
2003	10,222	707 (6.9)	4,457 (43.6)	595 (5.8)	4,463 (43.7)	
2004	9,393	543 (5.8)	4,004 (42.6)	581 (6.2)	4,265 (45.4)	
2005	9,420	492 (5.2)	2,638 (28.0)	1,413 (15.0)	4,877 (51.8)	
2006	9,034	285 (3.2)	3,022 (33.5)	802 (8.9)	4,925 (54.5)	
2007	8,861	342 (3.9)	2,417 (27.3)	748 (8.4)	5,354 (60.4)	
2008	9,284	353 (3.8)	2,349 (25.3)	706 (7.6)	891 (9.6)	4,985 (53.7)
2009	9,028	257 (2.8)	3,070 (34.0)	707 (7.8)	1,051 (11.6)	3,943 (43.7)
2010	8,590	401 (4.7)	2,804 (32.6)	772 (9.0)	1,037 (12.1)	3,576 (41.6)
2011	7,483	299 (4.0)	2,515 (33.6)	741 (9.9)	1,125 (15.0)	2,803 (37.5)
2012	6,926	285 (4.1)	1,989 (28.7)	708 (10.2)	1,122 (16.2)	2,822 (40.7)
2013	6,020	306 (5.1)	1,534 (25.5)	512 (8.5)	1,117 (18.6)	2,551 (42.4)
2014	4,994	295 (5.9)	1,226 (24.5)	508 (10.2)	1,105 (22.1)	1,860 (37.2)
2015	4,503	347 (7.7)	930 (20.7)	360 (8.0)	1,094 (24.3)	1,772 (39.4)
2016	4,592	274 (6.0)	856 (18.6)	314 (6.8)	1,540 (33.5)	1,608 (35.0)
2017	4,121	273 (6.6)	850 (20.6)	229 (5.6)	1,437 (34.9)	1,332 (32.3)
2018	3,918	338 (8.6)	623 (15.9)	231 (5.9)	1,415 (36.1)	1,311 (31.8)
2019	4,047	245 (6.1)	464 (11.5)	473 (11.7)	1,484 (36.7)	1,381 (33.5)
2020	4,120	183 (4.4)	463 (11.2)	468 (11.4)	1,767 (42.9)	1,239 (30.1)
2021	3,437	117 (3.4)	366 (10.6)	293 (8.5)	1,660 (48.3)	1,001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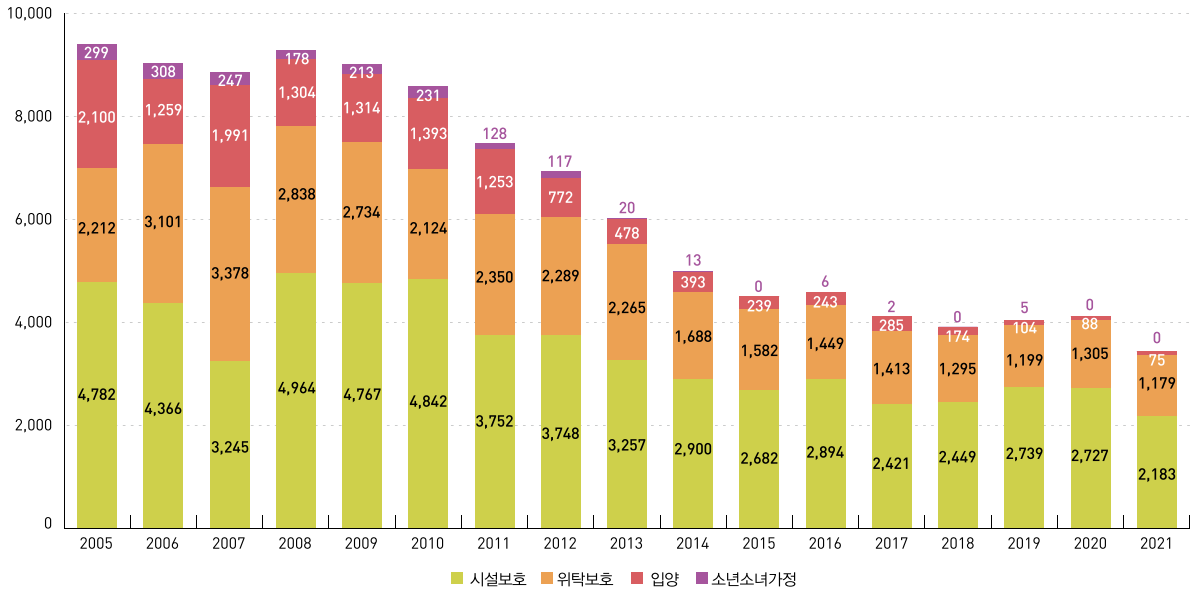
주: 빈곤, 실직, 부모 이혼 등에는 빈곤, 실직, 부모이혼, 부모사망, 부모질병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요보호 아동 현황보고 (내부자료)	1994	2021	1년

그림 2-27 보호대상아동 조치 현황 (2005~2021)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0. 인출)

표 2-16 보호대상아동 조치 현황 (2021)

(단위: 명, %)

전체	조치내용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소계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입양 전 위탁
4,120	2,183	996	243	-	546	1,254	0	75	1,028	151
(100.0)	(63.5)	(29.0)	(7.1)	-	(15.9)	(36.5)	(0.0)	(2.2)	(29.9)	(4.4)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0. 인출)

09-1
연 관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Number of uses of children welfare institutions

지표 정의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 수는 생활,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과 아동종합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총합

표 2-17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수 (1990~2021) (단위: 개소)

연도	총계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1990	278	223	10	-	-	-
1995	269	215	13	-	-	-
2000	269	235	12	6	8	-
2005	282	242	13	8	15	-
2006	282	243	13	8	15	-
2007	282	243	13	8	13	-
2008	285	242	12	10	14	5
2009	280	239	12	11	13	3
2010	280	238	12	11	14	3
2011	280	242	12	10	12	3
2012	281	243	12	11	12	3
2013	281	243	13	11	11	3
2014	278	242	12	10	11	3
2015	281	243	12	11	12	3
2016	281	243	12	11	12	3
2017	280	242	12	11	12	3
2018	279	241	12	11	12	3
2019	281	240	13	12	13	3
2020	274	237	15	12	10	-
2021	274	236	15	12	11	-

주: 1)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종합시설을 포함하며, 위 표에서 아동직업훈련시설은 집계되지 않음.
2) 2020년부터 아동종합시설은 아동일시보호시설에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현황, 각 연도

표 2-18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수 (1990~2021) (단위: 명)

연도	총계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1990	23,450	20,147	471	-	-	-
1995	18,074	15,105	620	-	-	-
2000	17,720	16,293	222	460	387	-
2005	19,151	17,729	229	457	626	-
2006	18,817	17,517	235	436	554	-
2007	18,426	17,161	269	404	365	-
2008	17,992	16,706	257	477	341	142
2009	17,586	16,239	262	514	368	138
2010	17,119	15,787	235	495	402	131
2011	16,523	15,313	249	455	361	113
2012	15,916	14,700	256	497	335	128
2013	15,239	14,038	250	486	359	106
2014	14,630	13,437	252	481	336	124
2015	14,001	12,821	243	447	350	140
2016	13,689	12,448	230	485	356	170
2017	12,789	11,665	221	497	279	127
2018	12,193	11,100	227	447	272	147
2019	11,665	10,585	218	469	275	118
2020	11,356	10,352	253	436	315	-
2021	10,956	10,072	233	404	247	-

주: 1)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종합시설을 포함하며, 위 표에서 아동직업훈련시설은 집계되지 않음.
2) 2020년부터 아동종합시설은 아동일시보호시설에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현황,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및 종사자 현황	1996	2021	반기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under foster care

지표 정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는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수를 의미한다.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아동복지법 제3조).

측정 산식

-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총합**

표 2-19 위탁가정 유형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2010~2021)

(단위: 세대, 명, %)

연도	구분	계	위탁가정 유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2010	세대 수	12,120 (100.0)	7,849 (64.8)	3,365 (27.8)	906 (7.5)
	아동 수	16,359 (100.0)	10,865 (66.4)	4,371 (26.7)	1,123 (6.9)
2011	세대 수	11,630 (100.0)	7,463 (64.2)	3,351 (28.8)	816 (7.0)
	아동 수	15,486 (100.0)	10,205 (65.9)	4,260 (27.5)	1,021 (6.6)
2012	세대 수	11,030 (100.0)	7,230 (65.5)	3,037 (27.5)	763 (6.9)
	아동 수	14,502 (100.0)	9,732 (67.1)	3,831 (26.4)	939 (6.5)
2013	세대 수	11,169 (100.0)	7,294 (65.3)	3,086 (27.6)	789 (7.1)
	아동 수	14,596 (100.0)	9,776 (67.0)	3,843 (26.3)	977 (6.7)
2014	세대 수	11,077 (100.0)	7,162 (64.7)	3,089 (27.9)	826 (7.5)
	아동 수	14,385 (100.0)	9,550 (66.4)	3,816 (26.5)	1,019 (7.1)
2015	세대 수	10,706 (100.0)	6,944 (64.9)	2,927 (27.3)	835 (7.8)
	아동 수	13,728 (100.0)	9,127 (66.5)	3,556 (25.9)	1,045 (7.6)
2016	세대 수	10,197 (100.0)	6,642 (65.1)	2,773 (27.2)	782 (7.7)
	아동 수	12,896 (100.0)	8,578 (66.5)	3,348 (26.0)	970 (7.5)
2017	세대 수	9,575 (100.0)	6,207 (64.8)	2,605 (27.2)	763 (8.0)
	아동 수	11,983 (100.0)	7,950 (66.3)	3,100 (25.9)	933 (7.8)
2018	세대 수	8,955 (100.0)	5,831 (65.1)	2,357 (26.3)	767 (8.6)
	아동 수	11,141 (100.0)	7,426 (66.7)	2,801 (25.1)	914 (8.2)
2019	세대 수	8,359 (100.0)	5,442 (65.1)	2,167 (25.9)	750 (9.0)
	아동 수	10,384 (100.0)	6,905 (66.5)	2,572 (24.8)	907 (8.7)
2020	세대 수	8,001 (100.0)	5,155 (64.4)	2,069 (25.9)	777 (9.7)
	아동 수	9,923 (100.0)	6,542 (65.9)	2,447 (24.7)	934 (9.4)
2021	세대 수	7,733 (100.0)	4,817 (62.3)	1,999 (25.9)	917 (11.9)
	아동 수	9,535 (100.0)	6,107 (64.0)	2,344 (24.6)	1,084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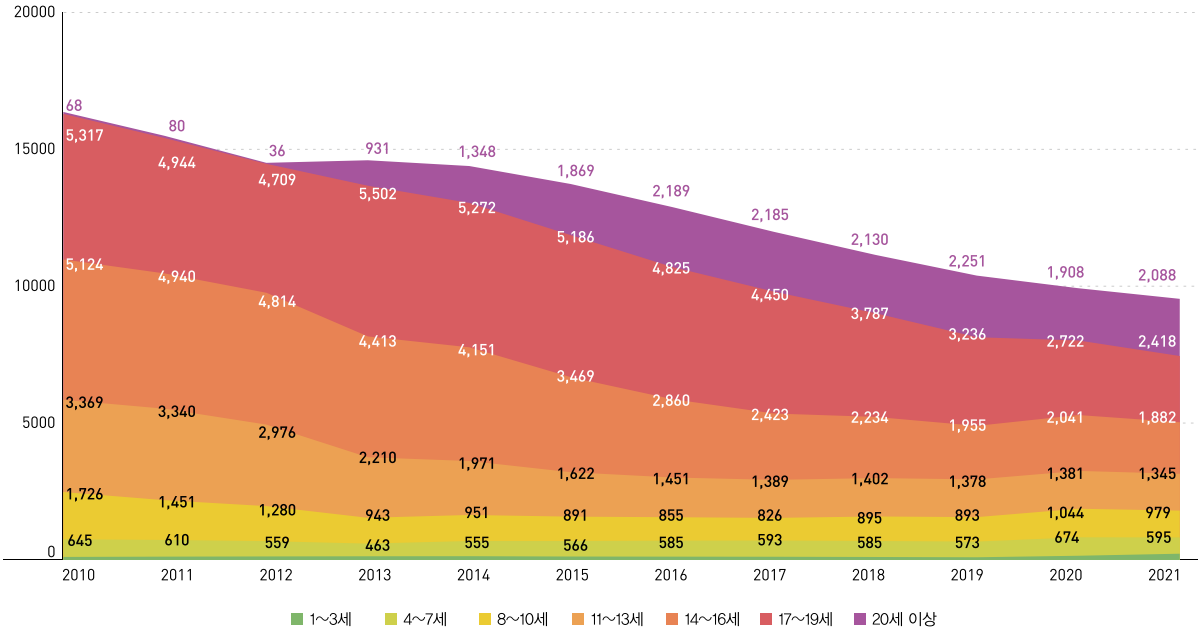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위탁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2009	2021	1년

그림 2-28 연도별 · 연령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2010~2021)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표 2-20 연도별 · 연령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2010~2021)

(단위: 명)

구분	계	보호 아동 연령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2010	16,359	110	645	1,726	3,369	5,124	5,317	68
2011	15,486	121	610	1,451	3,340	4,940	4,944	80
2012	14,502	128	559	1,280	2,976	4,814	4,709	36
2013	14,596	134	463	943	2,210	4,413	5,502	931
2014	14,385	137	555	951	1,971	4,151	5,272	1,348
2015	13,728	125	566	891	1,622	3,469	5,186	1,869
2016	12,896	121	585	855	1,451	2,860	4,825	2,189
2017	11,983	117	593	826	1,389	2,423	4,450	2,185
2018	11,141	108	585	895	1,402	2,234	3,787	2,130
2019	10,384	98	573	893	1,378	1,955	3,236	2,251
2020	9,923	153	674	1,044	1,381	2,041	2,722	1,908
2021	9,535	228	595	979	1,345	1,882	2,418	2,088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in grouphomes

지표 정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52조).

측정 산식

-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총 수

표 2-21 아동공동생활가정 수 및 연령별 보호 아동 현황 (2009~2020)

(단위: 명)

연도	시설 수 (개소)	보호 아동 재학 유형						
		계	0~7세 (미취학)	8~13세 (초등)	14~16세 (중등)	17~19세 (고등)	20세 이상 (대재)	기타
2009	397	1,993	230	842	518	300	23	80
2010	416	2,127	195	894	543	388	42	65
2011	460	2,241	254	843	619	402	51	72
2012	489	2,438	291	848	682	481	50	86
2013	480	2,481	280	884	670	546	59	42
2014	476	2,588	300	878	661	640	79	30
2015	480	2,636	352	850	652	653	87	42
2016	510	2,758	428	878	701	613	101	37
2017	533	2,811	385	947	661	642	127	49
2018	558	2,872	355	998	678	665	129	47
2019	578	2,949	378	1,024	678	666	157	46
2020	591	3,126	393	1,132	698	681	182	4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및 종사자 현황	1996	2021	반기

3

청년

01 청년고용률
02 청년 비정규직 비율
03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
04 청년 니트(NEET) 비율
05 청년 상대적 빈곤율
06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
07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08 청년 우울감 경험률
09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10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청년의 고용과 경제활동	청년고용률	대학 졸업 청년고용률
	청년 비정규직 비율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	
	청년 니트(NEET) 비율	
청년의 삶의 질	청년 상대적 빈곤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청년 우울감 경험률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	

01
대 표

청년고용률

Youth employment rate

지표 정의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청년고용률은 15~29세 청년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정의한다.

- 취업자는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명자료 발췌).

 청년의 경제활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는 실업률, 고용률, 고용보조지표 등이 있는데, 이 중 고용률은 청년의 고용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로 청년일자리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다.

측정 산식

- $$\frac{\text{취업 중인 15~29세 인구수}}{\text{전체 15~29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통계기준을 개정(2013년 10월)함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 범위가 '1시간 무급가족종사자'로 확장되었으나, 공식 취업자 · 고용률 등은 현행(18시간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 기준)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모수추정의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 작성 방법이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변화하고, 과거 시계열도 소급보정된다. 인구통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7월~2018년 12월(18년 6개월간)간의 소급보정된 모수추정용 인구를 적용하여 새로운 표본가중치를 산출하고, 공표자료(KOSIS,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재작성하여 서비스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명자료 발췌).

표 3-1 청년 연령대별 고용률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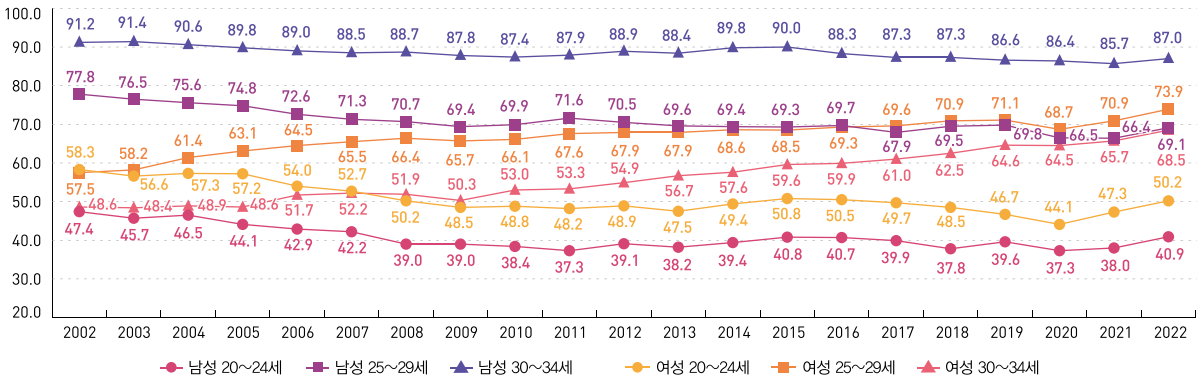
(단위: %)

연령계층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5세 이상 전체	59.6	59.8	60.5	60.5	60.6	60.8	60.7	60.9	60.1	60.5	62.1
15~29세	40.3	39.5	40.5	41.2	41.7	42.1	42.7	43.5	42.2	44.2	46.6
20~24세	44.5	43.3	44.8	46.1	46.1	45.3	43.7	43.5	41.1	43.1	46.0
25~29세	69.2	68.8	69.0	68.9	69.5	68.7	70.2	70.4	67.6	68.5	71.4
30~34세	72.3	72.9	74.2	75.3	74.7	74.7	75.4	76.1	76.1	76.3	78.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3.14. 인출)

그림 3-1 성별 청년 연령대별 고용률 (2002~2022)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3.1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2	1개월

대학 졸업 청년고용률

Employment rates of 25~34 year-olds with tertiary education

지표 정의

25~34세 고등교육(대학)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을 의미한다.

- 2022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고등교육단계의 학력 소지자 수/연령별 인구수)은 51.7%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3%로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대학졸업 청년의 고용률은 높은 인적자본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거나, 못하는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정규 교육과정이 마무리된 시점으로 예상되는 25~34세 청년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을 보여준다. 고등교육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이 포함되고, 사이버 · 원격 · 방송통신대학은 제외된다.**

- $\frac{\text{25~34세 고등교육 이수자 중 취업자 수}}{\text{25~34세 고등교육 이수자}} \times 100$

표 3-2 OECD 국가 25~34세 대학 졸업자 평균 고용률 (2011,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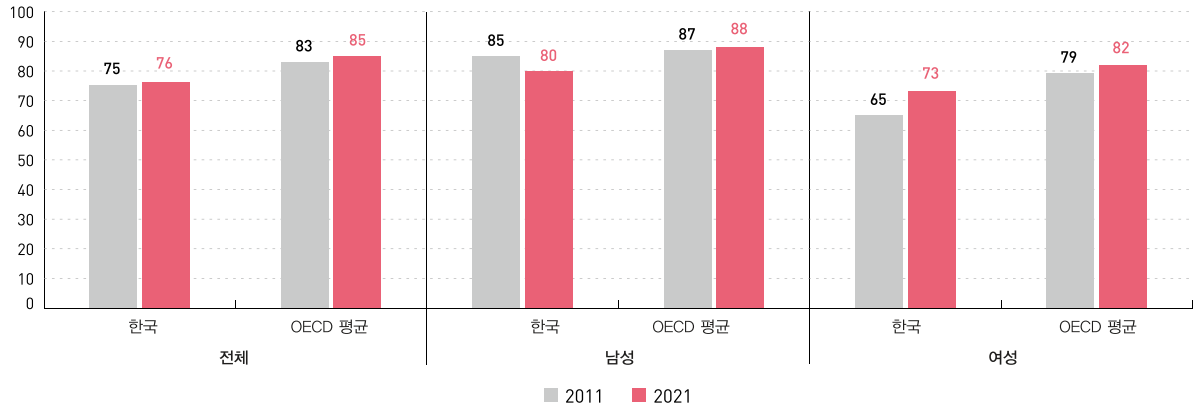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2011	75	83	85	87	65	79
2021	76	85	80	88	73	82

자료: OECD/ILO, See Source section for more information and Annex 3 for notes (https://doi.org/10.1787/b35a14e5-en, last updated 2023.03.14.)

그림 3-2 OECD 국가 25~34세 대학졸업자 평균 고용률 (2011, 2021)

(단위: %)



자료: OECD/ILO, See Source section for more information and Annex 3 for notes (https://doi.org/10.1787/b35a14e5-en, last updated 2023.03.1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대학 졸업 청년고용률	-	2021	비정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9	2021	월

02 대 표

청년 비정규직 비율

Rate of irregular workers among ages 15~29 workers

지표 정의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15세~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 비정규직은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①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②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③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가 포함된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설명자료 발췌).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 중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청년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높은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15~29세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수}}{\text{15~29세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2019년 자료에는 병행조사 효과로 인해 전년 미포착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어, 기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2018년 대비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금근로자에 관한 기본항목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한 것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결과이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설명자료 발췌).

표 3-3 청년 및 전체 연령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2015~2022)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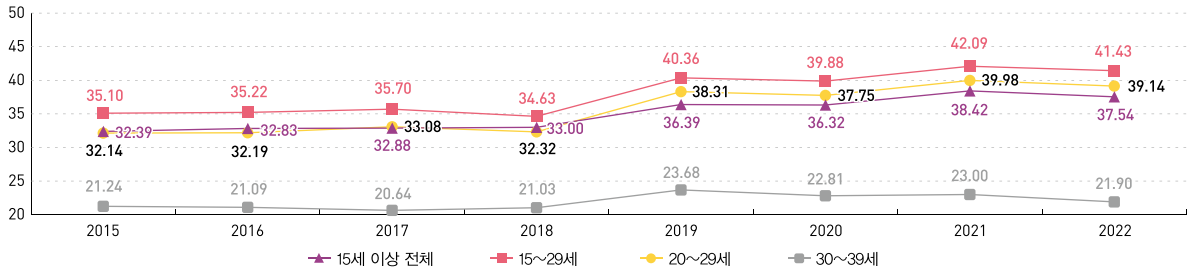
연령대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수	임금근로자 중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15세 이상 전체	6,308	32.39	6,481	32.83	6,578	32.88	6,614	33.00	7,481	36.39	7,426	36.32	8,066	38.42	8,156	37.54
15~29세	1,288	35.10	1,309	35.22	1,336	35.70	1,275	34.63	1,513	40.36	1,421	39.88	1,562	42.09	1,573	41.43
15~19세	191	74.32	197	75.19	179	73.36	151	74.02	151	77.84	138	84.15	148	85.06	159	86.41
20~29세	1,097	32.14	1,112	32.19	1,157	33.08	1,124	32.32	1,362	38.31	1,283	37.75	1,414	39.98	1,414	39.14
30~39세	1,028	21.24	1,000	21.09	981	20.64	992	21.03	1,111	23.68	1,022	22.81	1,016	23.00	983	21.90

주: 1) 각 연도 8월 말 기준
2) 2019년 자료는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19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과 비교가 불가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3.14. 인출)

그림 3-3 청년 및 전체 연령 비정규직 비율 (2015~2022)

(단위: %)



주: 각 연도 8월 말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3.1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7	2022	연 2회(3월, 8월)

03 대 표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rate among ages 15~29 workers

지표 정의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은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 고용보험은 1993년 제정,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제공한다. 노동시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으므로 장기실직,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은 생애주기상 실직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청년 중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frac{\text{15~29세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수}}{\text{15~29세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지역고용조사는 반기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4년부터 상반기(4월)에 조사한 값이다(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설명자료 발췌).

표 3-4 연령대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4~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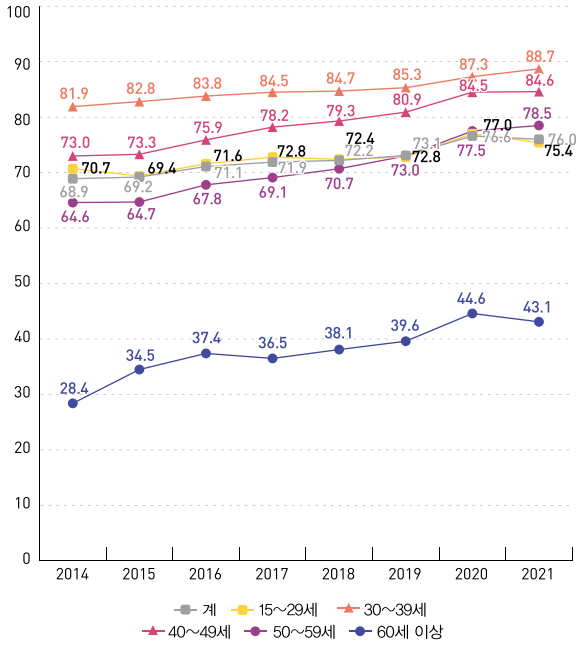
구분	연령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민연금	계	69.1	68.9	70.3	69.6	71.2	71.6	74.3	73.3
	15~29세	70.5	69.1	71.3	72.5	72.1	72.7	76.5	74.8
	30~39세	82.8	83.3	84.2	85.1	85.3	85.9	87.8	88.9
	40~49세	74.3	74.6	76.9	79.4	80.2	82.1	85.5	85.5
	50~59세	66.3	66.3	69.1	70.4	71.7	74.4	78.6	79.5
	60세 이상	18.4	21.1	21.6	7.6	22.7	20.2	22.1	20.7
건강보험	계	72.1	72.0	73.6	74.8	74.9	76.0	79.6	78.9
	15~29세	71.3	70.8	72.2	73.6	72.9	73.3	77.3	75.5
	30~39세	83.2	83.8	84.8	85.8	85.6	86.3	88.4	89.3
	40~49세	74.7	74.8	77.2	79.9	80.4	82.3	85.8	85.8
	50~59세	67.3	67.5	69.8	71.2	72.3	74.7	79.2	80.0
	60세 이상	45.1	46.1	48.2	48.3	49.9	51.4	57.2	55.1
고용보험	계	68.9	69.2	71.1	71.9	72.2	73.1	76.6	76.0
	15~29세	70.7	69.4	71.6	72.8	72.4	72.8	77.0	75.4
	30~39세	81.9	82.8	83.8	84.5	84.7	85.3	87.3	88.7
	40~49세	73.0	73.3	75.9	78.2	79.3	80.9	84.5	84.6
	50~59세	64.6	64.7	67.8	69.1	70.7	73.0	77.5	78.5
	60세 이상	28.4	34.5	37.4	36.5	38.1	39.6	44.6	43.1

주: 1) 임금근로자 대상
2)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3) 국민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연금 포함
4)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5) 고용보험은 '해당 없음' 응답자 제외

자료: 1) 2014~2017년은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02.11. 인출)
2) 2018~2021년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추출 및 분석 ((http://mdis.kostat.go.kr에서 2022.02.23. 인출)

그림 3-4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률 (2014~2021)

(단위: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02.11. 인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추출 및 분석 ((http://mdis.kostat.go.kr에서 2022.02.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	2021	반기

*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4년~2017년까지 1년 주기로 공개됨. 2018년부터 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확인

04
대 표

청년 니트(NEET) 비율

Share of 15~29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s)

지표 정의

청년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율은 15~29세 청년 중 교육, 훈련을 받지도 않고, 일하지 않는 상태에 놓인 청년의 비중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OECD 기준을 따라 형식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상태가 아닌 경우 니트로 정의하였다.

• 생애주기에 있어서 청년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School-to-Work Transition) 과정을 경험하는데, 청년 니트 비율은 성인기 주요 과업(교육, 취업, 원가구로부터 독립(주거), 가족의 형성(결혼), 자녀양육) 중 성인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결정하는 핵심 과업인 교육과 취업에서 벗어난 유휴청년의 규모를 보여준다. 청년 니트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새로운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니트 비율은 기존 사회안전망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교육, 직업훈련, 취업 상태가 아닌 15~29세 인구수}}{\text{15~29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청년 니트는 합의된 정의가 없는데, OECD는 고등학교(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를 졸업한 후 대학이 아닌 기관에서 자격 등을 획득하는 형식교육*(formal education,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중인 청년과 취업상태인 청년을 니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면 공공기관 채용시험(행정고시, 공무원, 공기업 등), 기타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에 통학하는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중인 청년이 니트에 포함된다. 김기헌(2017)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형식교육 중인 청년을 제외하였을 때,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 니트 비율은 16.6%로 OECD 정의를 적용한 청년 니트 비율(19.2%)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니트의 정의를 마련하여, 정책지원이 필요한 청년 니트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김기헌, 2017).

* 형식교육 : 초 · 중 ·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교육통계서비스 용어사전 발췌).

** 비형식교육 : 비형식교육이란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한다.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 · 학위'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이다.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 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스터디 클럽, 개인과외 형태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있는 학습을 말하며, 직장에서 받은 교육, 학원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강좌, 인터넷 강좌, 학습동아리, 개인교습 등을 포함한다(교육통계서비스 용어사전 발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Society at a glance (국가별 교육통계, 노동력통계)	-	2017	비정기적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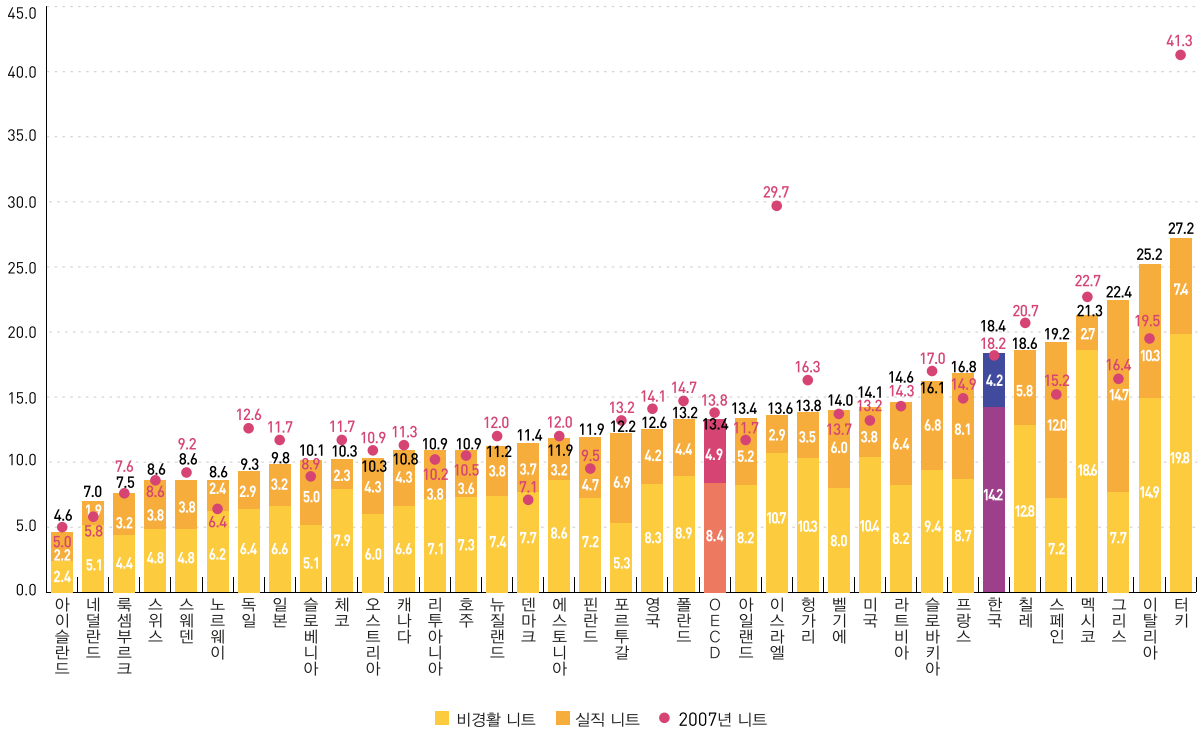
• 김기헌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KLI 패널 워킹페이퍼. 2017년 제8호.

•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그림 3-5 OECD 국가별 청년 니트 비율 (2007, 2017)

(단위: %)



주: 1) 일본의 비경활 니트, 실직니트는 2014년 자료
2) 미국의 비경활 니트, 실직니트는 2016년 자료
3) 스페인의 2007년 니트는 2006년 자료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9, 〈Figure 5.5.〉 More than one in seven young people are not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발췌
(원자료: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OECD Education database, www.oecd.org/education/database.htm)

05
대 표

청년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youth

지표 정의

청년 빈곤율은 18세~25세 청년 중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청년 비율을 의미한다.**

-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있는데, 여기서는 OECD의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였다.
 전통적으로 청년은 근로연령대에 속해 기초생활보장의 주된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최근 청년이 경험하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위험을 고려할 때 청년들의 빈곤 위험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청년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시장소득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 – 조세 – 사회보장분담금

**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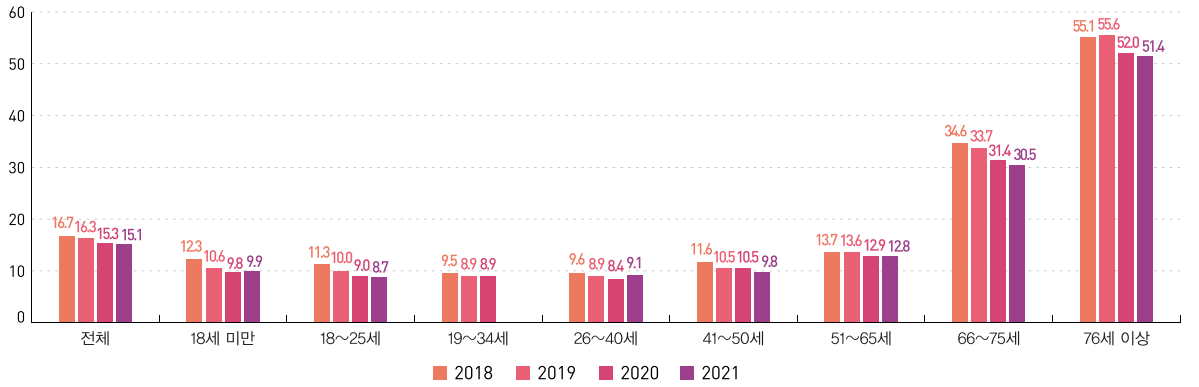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18~25세 인구수}}{\text{18~25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2016년부터 빈곤과 불평등 지표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공표함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빈곤율을 산출한 빈곤통계연보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OECD는 고용률 산정 시 청년 연령을 15~29세로,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산정 시 청년 연령은 18~25세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OECD의 상대적 빈곤율 산정 방식에 따른 청년 연령과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연령인 19~34세를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그림 3-6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2018~2021)

(단위: %)



주: 1)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개인 빈곤율
2) 19~34세의 경우 2020년도 자료까지만 제공

자료: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conn_path=I3에서 2023.03.15. 인출)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내부자료)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2005	2022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	2021	1년

참고문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06 대 표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

Youth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지표 정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은 20~34세 청년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방수, 면적, 시설)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가구의 비율로 정의한다.

- 최저주거기준이란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5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 및 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최저주거기준은 크게 방수기준, 면적기준, 시설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분류한다(이태진 외, 2016, p.149).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은 주거불안정성이 높은 청년의 주거실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저주거기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표 3-5 가구유형별 · 수도권 여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2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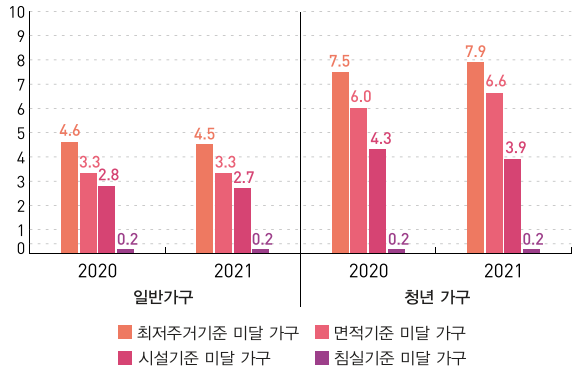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면적기준 미달 가구	시설기준 미달 가구	침실기준 미달 가구
일반가구	전체	2020	4.6	3.3	2.8	0.2
		2021	4.5	3.3	2.7	0.2
	수도권	2020	5.6	4.6	3.0	0.2
		2021	5.5	4.7	2.7	0.3
	수도권 외	2020	3.6	2.1	2.6	0.2
		2021	3.5	1.9	2.7	0.2
청년가구	전체	2020	7.5	6.0	4.3	0.2
		2021	7.9	6.6	3.9	0.2
	수도권	2020	10.4	8.1	6.0	0.3
		2021	10.8	9.0	4.9	0.2
	수도권 외	2020	4.1	3.5	2.3	0.1
		2021	4.7	3.9	2.8	0.2

주: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경우임.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2022.

그림 3-7 가구유형별 · 일반/청년 가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20~2021)

(단위: %)



주: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경우임.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21	1년

참고문헌

-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7
대 표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The general health-checkup rate among 20~30s

지표 정의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검진 대상인 20~39세 청년 중 건강검진을 받은 청년의 비율을 의미한다.

-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만 19~3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만 대상이었는데, 2019년부터 20~30대 세대원과 피부양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었다.

측정 산식

- $\frac{\text{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수검대상자 수}}{\text{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 20~39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청년 건강검진은 암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는 청년의 불건강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검진 대상 청년의 수검률이므로 전체 청년 중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과 다른 지표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3-6 연령대별 건강검진 수검률 (2021)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수	수검자 수	수검률(%)
전체	22,836,830	16,953,007	74.2
20~29세	2,858,464	1,885,876	66.0
30~39세	3,722,199	2,796,328	75.1
40~49세	4,769,086	3,745,035	78.5
50~59세	4,935,199	3,827,320	77.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202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2008	2021	1년

08 대 표

청년 우울감 경험률

Rat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ages 19~29

지표 정의

청년 우울감 경험률은 19~29세 청년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 최근 청년의 어려움이 고용을 넘어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변금선, 김기헌, 2019), 가장 대표적인 근거로 지목되는 것이 우울감, 우울증, 불안감, 불안장애 등을 경험하는 청년의 증가이다(김지경, 이윤주, 2018). 청년 우울감 경험률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연령집단으로 여겨져 온 청년이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청년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우울감을 경험한 19~29세 청년의 수}}{\text{19~29세 청년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전체 자료는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이다(국민건강영양조사 설명자료).

표 3-7 연령대별 우울감 경험률 (200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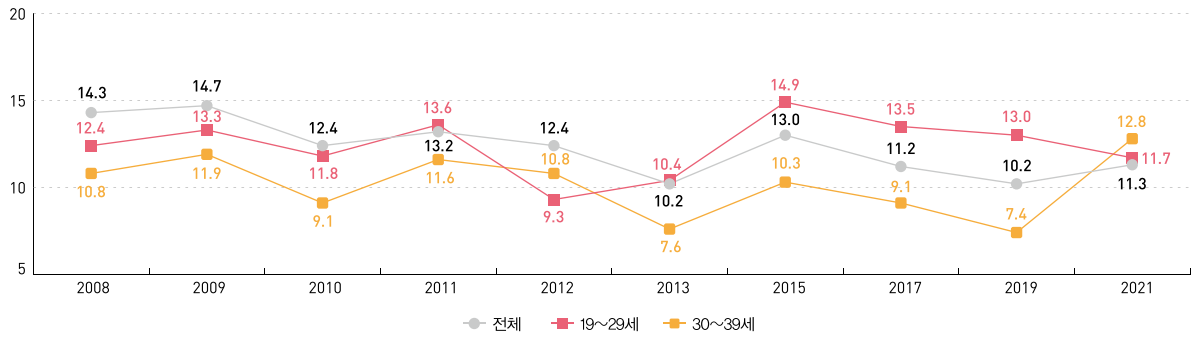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9	2021
전체		14.3	14.7	12.4	13.2	12.4	10.2	13.0	11.2	10.2	11.3
연령집단	19~29세(청년)	12.4	13.3	11.8	13.6	9.3	10.4	14.9	13.5	13.0	11.7
	30~39세	10.8	11.9	9.1	11.6	10.8	7.6	10.3	9.1	7.4	12.8
	40~49세	13.4	13.4	11.0	11.4	12.9	8.3	10.8	7.8	8.9	10.2
	50~59세	17.4	17.8	16.9	15.2	15.0	13.1	13.1	11.0	10.6	8.3
	60~69세	19.2	17.9	15.5	15.0	15.1	12.4	18.2	14.7	11.0	11.9
	70세 이상	21.6	21.5	16.9	15.9	17.9	16.1	15.2	17.3	13.0	13.6

주: 2013년도부터 2년 주기로 공시
자료: 질병관리청, 2021 국민건강통계, 2022 (http://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6에서 2023.03.15. 인출)

그림 3-8 전체 연령집단과 청년의 우울감 경험률 변화 (2008~2021)

(단위: %)



주: 1) 2013년도부터 2년 주기로 공시
2)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3) 전체 및 성별 자료는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자료: 질병관리청, 2021 국민건강통계, 2022 (http://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6에서 2023.03.1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2년

참고문헌 • 김지경, 이윤주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9
대 표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of the youth

지표 정의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9~29세 청년이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0~10점 척도 평균값이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 수준을 보여준다.

• 삶의 질 지표는 주관적, 객관적 지표로 구별되는데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지표와 달리 개인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 수준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 지표가 갖는 질적 측면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삶의 질 향상이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유의사항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동일한 조건에서도 개인 간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설명자료 발췌).

표 3-8 연령대별 주관적 삶의 만족도 (2015~2021)

(단위: 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5.8	5.9	6.0	6.1	6.0	6.0	6.3
연령대	19~29세 (청년)	5.8	6.1	6.1	6.1	6.0	6.2	6.4
	30대	5.8	5.9	6.2	6.2	6.1	6.1	6.5
	40대	5.8	5.8	6.0	6.2	5.9	6.1	6.4
	50대	5.8	5.8	5.9	6.1	6.1	6.1	6.3
	60~69세	5.9	5.9	5.9	5.9	5.8	-	-
	60세 이상	-	-	-	-	-	5.7	6.1
	65세 이상	-	-	-	-	-	5.6	6.0

주 1) 삶의 만족도는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임.
2) 2020년도부터 조사대상이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60세~69세' 항목에서 '6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변경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4에서 2023.03.1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21	1년

참고문헌 • 변금선, 김기헌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57-258.

10 대 표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

Social participation rate of the youth

지표 정의

청년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20~29세 청년 중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시민사회 단체, 취미 · 레저 · 스포츠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 정의한다.

- 우리나라는 청년 의원 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이다.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만 30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은 0%로 유럽 47개국 평균 3.9%에 한참 못 미친다(IPU, 2018).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은 청년의 정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정치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비율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당사자의 권한 부여와 사회적 자본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지난 1년간 단체참여 경험자 중 20~29세 인구수}}{\text{조사대상 인구 중 20~29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사회조사의 조사대상 인구는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이며, 2011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로 하향 조정되었다.

표 3-9 연령대별 사회단체 참여율 (2019, 2021)

(단위: %)

구분		연도	전체	친목 ·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 스포츠 · 레저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 모임	기타
연령 집단	전체	2019	66.1	77.4	28.7	47.3	12.6	7.6	4.3	1.7	11.5	0.0
		2021	35.8	61.0	26.6	49.4	8.2	5.6	3.2	1.8	6.8	0.0
	13~19세	2019	48.9	45.3	23.5	63.1	35.1	12.3	0.6	0.2	0.7	0.0
		2021	34.7	47.4	26.2	60.4	14.1	11.1	1.1	0.4	0.7	0.0
	20~29세(청년)	2019	60.8	73.1	21.2	55.7	10.6	14.3	3.0	0.7	1.7	0.0
		2021	39.1	65.2	16.7	58.3	7.1	9.6	2.1	1.3	1.2	0.0
	30~39세	2019	67.0	80.2	21.6	52.7	7.5	9.4	5.3	1.4	6.4	0.0
		2021	34.0	64.7	17.3	51.2	4.5	5.5	3.7	1.3	5.0	0.0
	40~49세	2019	71.0	79.5	25.5	52.2	13.5	7.5	7.1	2.3	11.2	0.0
		2021	37.1	58.7	24.9	52.4	8.1	5.9	5.4	2.6	7.0	0.0
	50~59세	2019	74.8	84.6	30.1	45.5	13.7	6.1	5.4	2.9	16.1	0.0
		2021	40.5	65.6	26.6	48.9	9.6	5.3	4.7	2.8	8.9	0.0
	60세 이상	2019	63.7	77.2	40.4	32.8	9.9	3.0	1.7	1.2	19.3	0.0
		2021	31.1	57.5	40.5	37.2	8.4	1.5	1.3	1.4	11.2	0.0

주: 1) 2019년 이후 기존 참여단체 3개 선택형 문항에서 참여단체 전체 선택형 문항으로 조사표 변경
2) 참여자 – 지난 1년간, 13세 이상 인구로 단체 참여 조사항목의 세부 단체참여 항목에 1개 이상 '참여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1 (http://kosis.kr에서 2021.12.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회조사*	1999	2021	2년**

* 사회참여 부문

** 사회참여 부문은 홀수년 공표

참고문헌 • IPU (2018).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 2018.

4

노인

01 65세 기대여명
02 노인의 ADL 제한율
03 노인의 운동 실천율
04 노인의 학대경험률
05 노인 진료비
06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07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08 장기요양기관 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노인 건강수준	65세 기대여명	
	노인의 ADL 제한율	
	노인의 운동 실천율	노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노인의 학대경험률	
노인 의료이용	노인 진료비	의료기관 종별 노인 외래환자 수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노인 장기요양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장기요양기관 수	장기요양기관의 전문 인력

01
대 표

65세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at 65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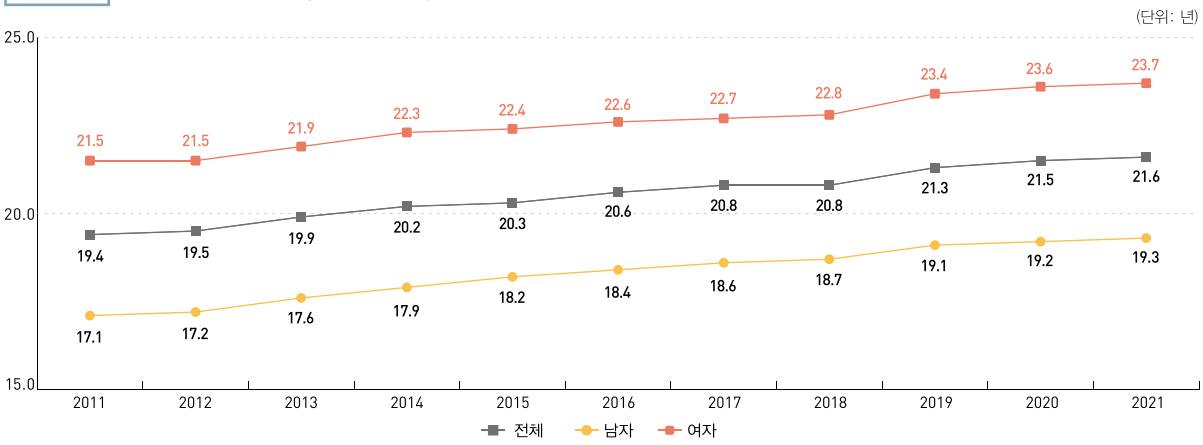
지표 정의

65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65세 이후의 총 생존연수 (정지인구)}}{\text{65세의 생존 인구수}}$

그림 4-1 성별 65세 기대여명 (2011~2021)



주: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3에서 2023.03.1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명표*	1970	2021	1년

*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시도별 통계는 3년 주기로 공표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표 4-1 연도별 · 시도별 65세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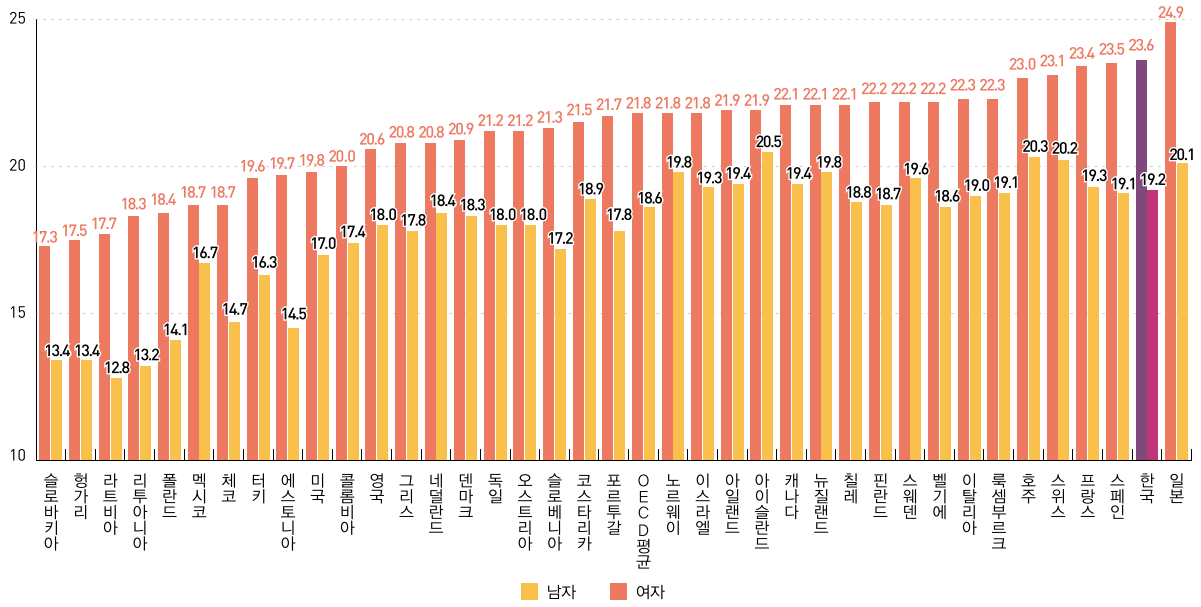
(단위: 년)

시도	전체				남자				여자			
	2011	2014	2017	2020	2011	2014	2017	2020	2011	2014	2017	2020
전국	19.4	20.2	20.8	21.5	17.1	17.9	18.6	19.2	21.5	22.3	22.7	23.6
서울	20.3	21.0	21.8	22.5	18.1	19.0	19.8	20.3	22.2	22.8	23.7	24.5
부산	18.7	19.7	20.1	20.9	16.5	17.7	18.1	18.6	20.6	21.5	22.0	23.1
대구	18.9	19.9	20.4	21.1	16.8	17.8	18.4	19.0	20.8	21.7	22.1	23.1
인천	19.0	19.9	20.6	21.1	16.9	17.8	18.2	18.8	20.8	21.8	22.7	23.2
광주	18.8	19.6	20.3	21.0	16.5	17.6	18.5	18.9	20.9	21.5	21.9	23.0
대전	19.4	20.3	20.8	21.5	17.3	18.3	19.2	19.3	21.4	22.1	22.3	23.6
울산	18.0	18.8	19.9	20.5	15.6	17.0	17.8	18.7	20.2	20.5	21.8	22.2
세종	-	20.5	20.5	21.5	-	18.0	18.1	19.6	-	22.7	22.7	23.3
경기	19.6	20.4	20.9	21.7	17.5	18.3	19.0	19.6	21.6	22.4	22.7	23.7
강원	19.7	20.1	20.7	21.4	17.3	17.6	18.2	19.1	21.8	22.4	23.0	23.5
충북	18.9	19.9	20.3	21.0	16.5	17.5	18.2	18.8	21.1	22.1	22.2	23.1
충남	19.8	20.3	20.8	21.6	17.3	17.8	18.5	19.4	22.0	22.6	22.9	23.7
전북	19.5	20.2	20.6	21.4	17.0	17.7	18.4	19.2	21.7	22.5	22.7	23.5
전남	19.1	20.2	20.5	21.2	16.3	17.1	17.9	18.5	21.6	22.9	22.9	23.6
경북	19.0	20.0	20.5	21.0	16.4	17.3	18.2	18.6	21.2	22.3	22.7	23.3
경남	18.8	19.7	20.1	21.0	16.3	17.1	17.7	18.5	21.0	22.0	22.3	23.2
제주	20.7	21.1	21.5	22.6	17.5	18.5	18.8	19.9	23.5	23.4	23.8	25.1

주: 1)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2) 세종은 2008년과 2011년의 자료가 없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3에서 2023.03.15. 인출)

그림 4-2 OECD 국가의 성별 65세 기대여명 (2021)

(단위: 년)



주: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칠레, 독일, 영국, 미국, 터키, 멕시코는 2019년 수치임.
자료: OECD Health Data, 2021 (stats.oecd.org에서 2023.03.31. 인출)

02 대 표

노인의 ADL 제한율

Rate of ADL limitations among adult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은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노년기에 있어서 신체적 독립성의 유지능력과 자립적 노후생활의 영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지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옷 입기, 세수 · 양치질 · 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의 7개 항목으로 조사된다. 한편,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은 몸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구매하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 사용하기, 약 챙겨먹기의 10개 항목으로 조사된다.

측정 산식

$$\frac{\text{ADL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text{65세 이상 조사자 수}} \times 100$$

표 4-2 연도별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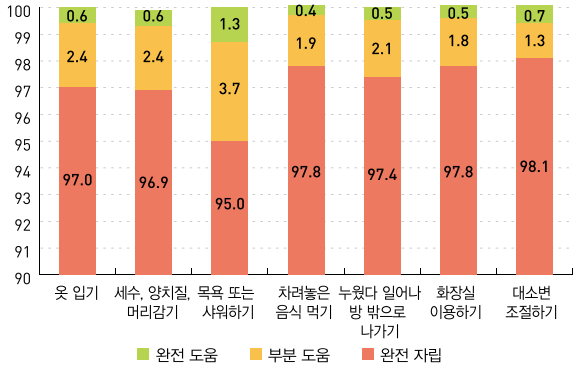
(단위: %)

연도	기능제한 없음	IADL만 제한 경험	ADL도 제한 경험	계
1998	52.7	15.6	31.7	100.0
2004	80.7	12.4	6.9	100.0
2008	81.6	10.4	8.0	100.0
2011	85.1	7.7	7.2	100.0
2014	81.8	11.3	6.9	100.0
2017	74.7	16.6	8.7	100.0
2020	87.8	6.6	5.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4-3 ADL 항목별 기능상태 (2020)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20

표 4-3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 현황 (2020)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별					지역별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동	읍면	남자	여자
기능제한 없음		87.8	95.7	91.9	86.5	78.2	58.0	87.9	87.4	88.3	87.4
IADL만 제한 경험		6.6	2.8	4.7	7.6	11.4	19.2	6.4	7.4	6.7	6.6
ADL도 제한 경험		5.6	1.5	3.4	5.8	10.5	22.8	5.7	5.2	5.0	6.0
IADL	완전 자립	88.0	95.8	92.0	86.9	78.7	58.5	88.2	87.4	88.6	87.6
	1~2개 도움	4.3	2.1	3.0	5.3	7.2	9.7	4.1	4.9	4.5	4.1
	3~4개 도움	2.5	1.0	2.3	2.6	3.7	7.2	2.5	2.6	2.8	2.3
	5~6개 도움	1.4	0.4	0.8	1.4	2.2	6.4	1.4	1.3	0.9	1.7
	7~8개 도움	1.2	0.2	1.0	1.1	2.8	4.0	1.3	0.9	1.2	1.2
	9~10개 도움	2.7	0.6	0.9	2.6	5.4	14.2	2.6	2.9	2.1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20	3년

03
대 표

노인의 운동 실천율

Rate of physical activity in adult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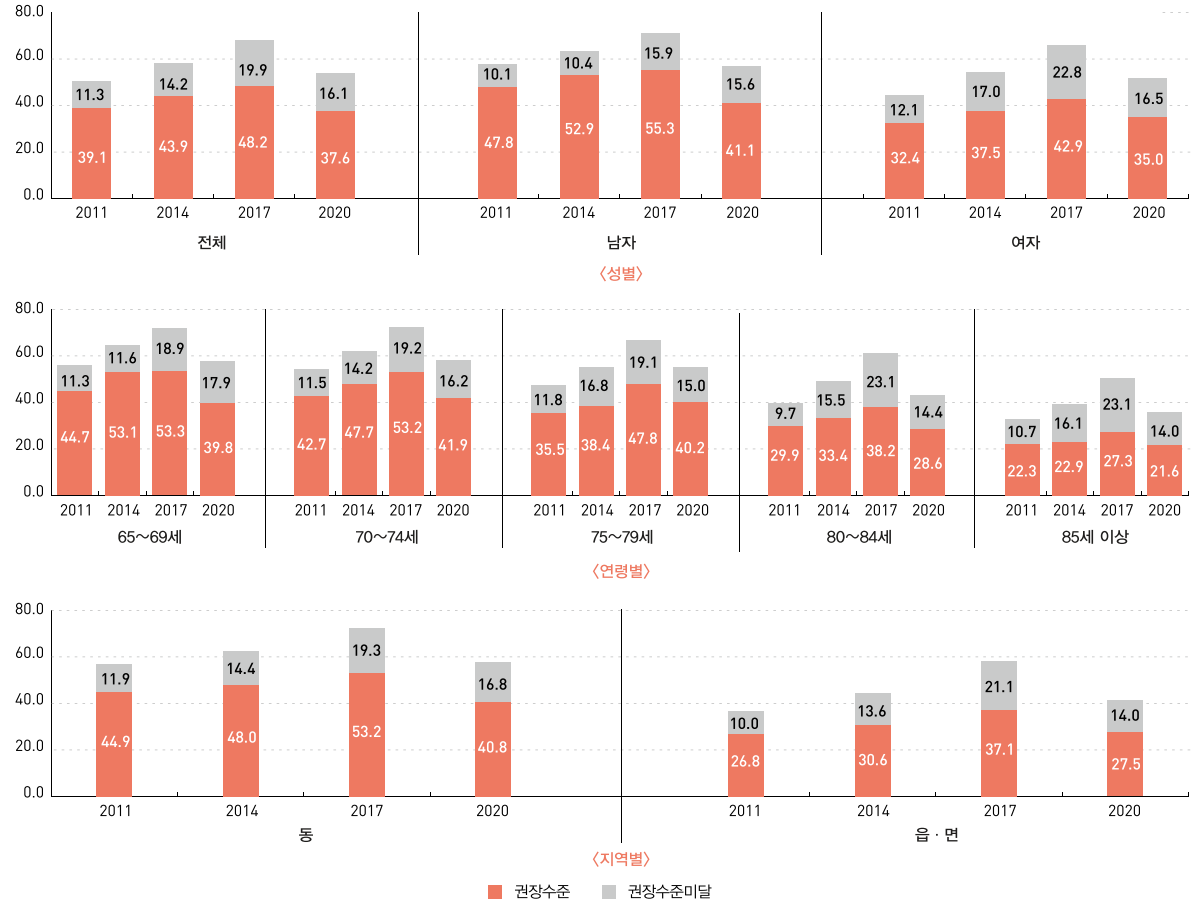
조사 대상 노인인구 중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운동 실천 응답 노인 수}}{\text{65세 이상 조사자 수}} \times 100$

그림 4-4 연도별 · 특성별 노인의 권장수준 운동 실천율

(단위: %)



주: 권장수준이란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한 것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20	3년

03-1
연 관

노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Current smoking rate and high risk alcohol consumption,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현재 흡연율은 조사 대상 노인인구 중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다. 고위험 음주율은 조사 대상 노인인구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현재 흡연율(%) = $\frac{\text{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자이면서, 현재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만 65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 고위험 음주율(%) = $\frac{\text{최근 1년간 음주빈도 문항 주 2회 이상 응답자이면서, 1회 음주량 문항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 응답자}}{\text{만 65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4-4 성별 노인의 현재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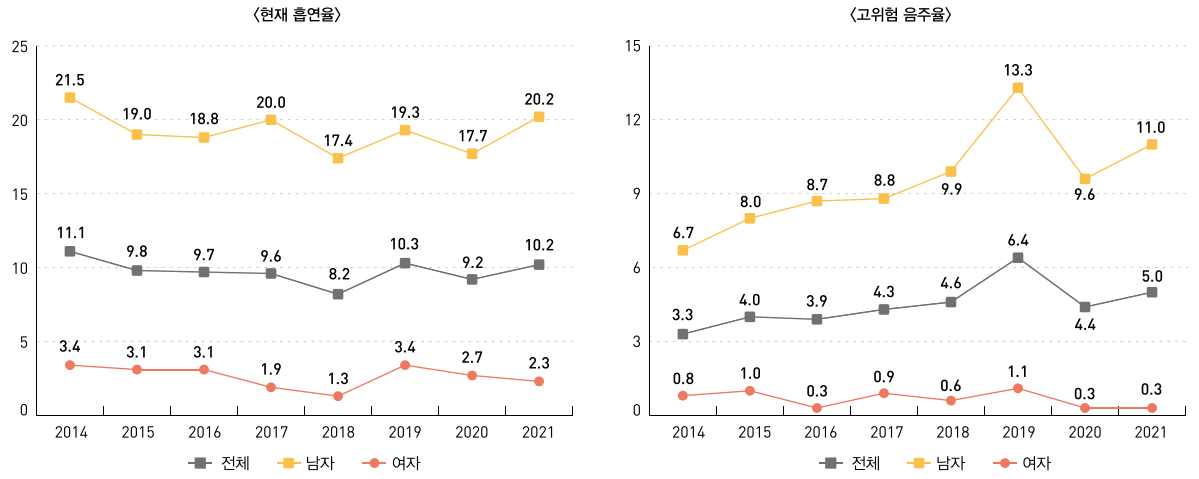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현재 흡연율	11.1	9.8	9.7	9.6	8.2	10.3	9.2	10.2	21.5	19.0	18.8	20.0	17.4	19.3	17.7	20.2	3.4	3.1	3.1	1.9	1.3	3.4	2.7	2.3
고위험 음주율	3.3	4.0	3.9	4.3	4.6	6.4	4.4	5.0	6.7	8.0	8.7	8.8	9.9	13.3	9.6	11.0	0.8	1.0	0.3	0.9	0.6	1.1	0.3	0.3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1 국민건강통계, 2022

그림 4-5 성별 노인의 현재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2014~2021)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1 국민건강통계,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04
대 표

노인의 학대경험률

Rate of self-reported elderly abuse

지표 정의

노인의 학대경험률은 조사에 참여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및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인학대를 유형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언어학대), 경제학대, 방임학대로 나누어 경험률을 파악하였다. 이는 노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의의가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학대경험 응답 노인 수}}{\text{65세 이상 조사자 수}} \times 100$

표 4-5 연도별 · 일반특성별 노인의 학대경험률

(단위: %)

구분		학대 유형별 경험률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	성폭력 또는 성추행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전체	2011	0.5	-	9.4	1.5	1.4	2.5
	2014	0.2	-	7.3	0.3	1.5	2.8
	2017	0.3	0.1	7.4	0.4	1.7	2.3
	2020	1.3	1.1	6.6	0.4	0.3	0.2
성	남자	1.0	0.1	7.1	0.3	0.2	0.3
	여자	1.5	1.8	6.2	0.4	0.3	0.2
연령	65~69세	0.9	0.8	6.0	0.5	0.1	0.1
	70~74세	1.4	1.2	6.1	0.4	0.3	0.1
	75~79세	1.9	1.7	7.7	0.3	0.3	0.3
	80~84세	1.2	0.8	6.5	0.0	0.2	0.3
	85세 이상	1.2	0.2	7.8	0.6	1.0	0.8
지역	동부	0.9	0.5	5.6	0.4	0.3	0.3
	읍 · 면부	2.7	2.9	9.5	0.2	0.2	0.1

주 : 성폭력 또는 성추행 조사는 2017년부터 시작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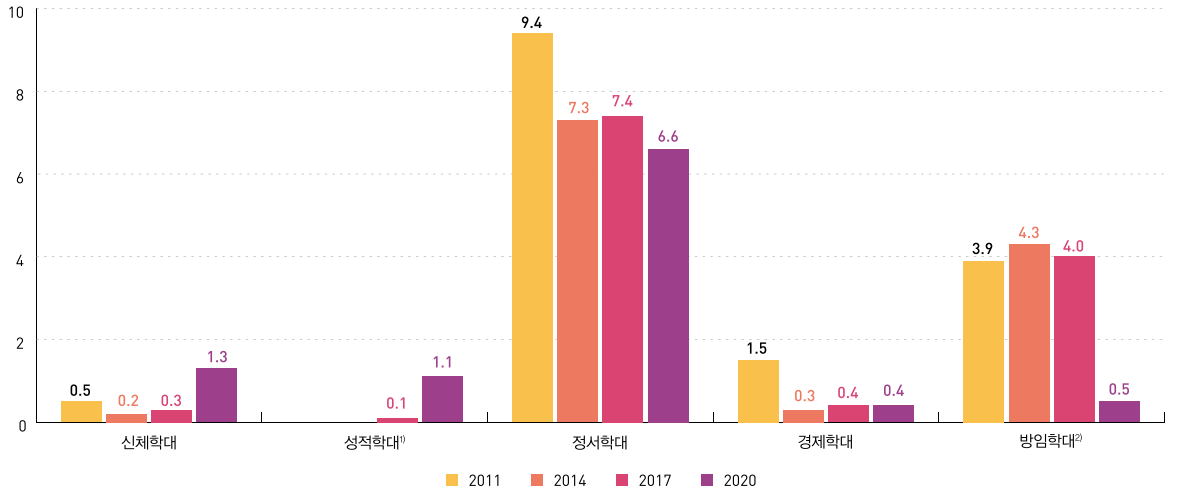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20	3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0

그림 4-6 연도별 노인의 학대경험률 및 학대유형별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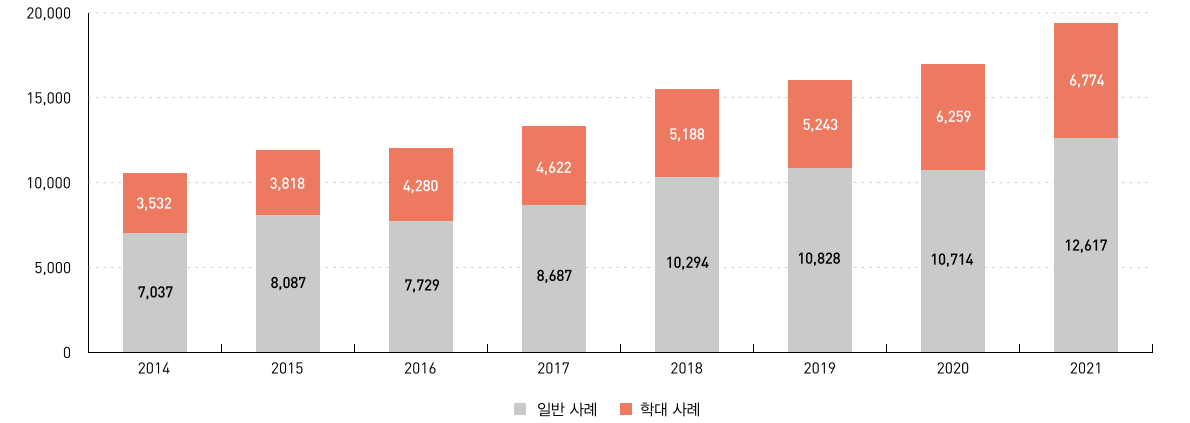
(단위: %)



주: 1) 성적학대는 2017년 조사에서만 실시
2) 방임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그림 4-7 노인학대 신고 건수 (2014~2021)

(단위: 건)



주: 1) 일반 사례: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
2) 학대 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로 판정된 사례
자료: 보건복지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1

05
대 표

노인 진료비

Medical expenditures on adult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진료비이다.

- '노인 진료비의 비율'과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를 통해 노인이 지출한 진료비 수준을 확인하고, 노인 1인의 부담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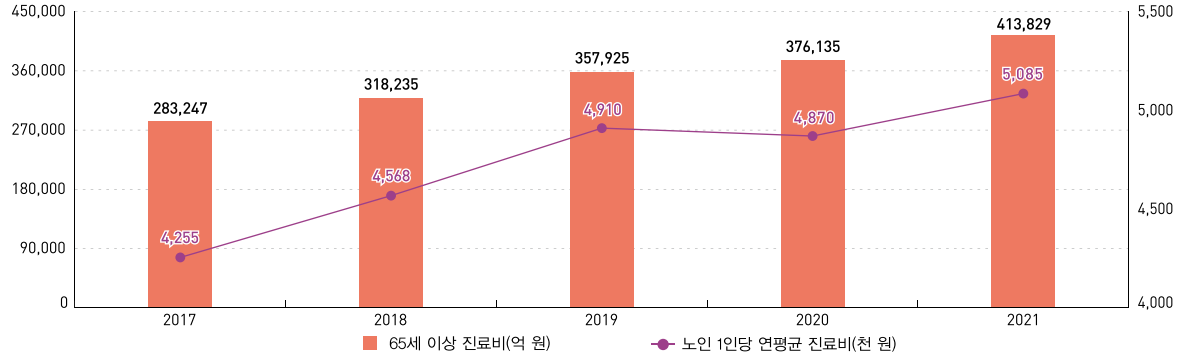
측정 산식

-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

유의사항
- '노인 진료비 비율'은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세 이상 인구의 연간 진료비를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한 달 분으로 환산해 준 값이다.
- 진료비는 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의 합으로 구성된다.

그림 4-8 노인 진료비 및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017~2021)

(단위: 억 원, 천 원)



주: 1) 수진 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 기준)
2) 전체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는 연도 말 기준
3)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65세 이상 진료비/65세 이상 연평균 적용인구(2021년: 8,137,798명)
4)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전체 진료비/연평균 적용인구(2021년: 51,392,452명)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22

표 4-6 노인 진료비 비율 및 노인(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017~2021)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인구(천 명)	50,941	51,072	51,391	51,345	51,412
65세 이상 인구(천 명) (구성비)	6,806 (13.4)	7,092 (13.9)	7,463 (14.5)	7,904 (15.4)	8,320 (16.2)
65세 이상 진료비(억 원) (전년 대비 증감률 (%))	283,247 (12.1)	318,235 (12.4)	357,925 (12.5)	376,135 (5.1)	413,829 (10.0)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천 원)	4,255	4,568	4,910	4,870	5,085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천 원)	1,391	1,528	1,681	1,688	1,857

주: 1) 수진 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 기준)
2) 전체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는 연도 말 기준
3)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65세 이상 진료비/65세 이상 연평균 적용인구(2021년: 8,137,798명)
4)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전체 진료비/연평균 적용인구(2021년: 51,392,452명)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21	1년

05-1
연 관

의료기관 종별 노인 외래환자 수

Number of outpatient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외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이며, 외래환자 수는 외래환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한 횟수(외래방문일수)에 대한 값이다.

측정 산식

• 외래환자 중 노인 비율 = $\frac{\text{65세 이상 외래환자 수}}{\text{전체 외래환자 수}}$

표 4-7 의료기관 종별 노인 외래환자 수 (2020)

(단위: 명, %)

구분		전연령	65세 이상 외래환자 수			외래환자 중 노인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678,201	224,237	92,925	131,312	33.8	14.0	19.8
상급종합		41,847	15,325	7,747	7,578	37.0	18.7	18.3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29,406	11,468	5,881	5,587	40.7	20.9	19.8
	300~499병상	18,362	7,067	3,739	3,328	41.9	22.2	19.7
	100~299병상	23,902	8,671	3,987	4,684	37.2	17.1	20.1
병원	100병상 이상	23,049	6,989	2,953	4,036	32.8	13.9	18.9
	30~99병상	37,361	6,845	2,707	4,138	19.2	7.6	11.6
요양병원	300병상 이상	558	217	83	134	40.3	15.3	25.0
	100~299병상	3,103	1,073	380	693	47.5	16.8	30.7
	30~99병상	407	164	63	101	41.1	15.8	25.3
의원	병상 있음	99,315	28,575	11,251	17,324	29.8	11.7	18.1
	병상 없음	392,447	135,186	53,077	82,109	34.7	13.6	21.1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01	2020	5년

06
대 표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Inspection rate of general health check-up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 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반건강검진으로 이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거나, 인지기능 장애 위험이 높다고 판정된 사람은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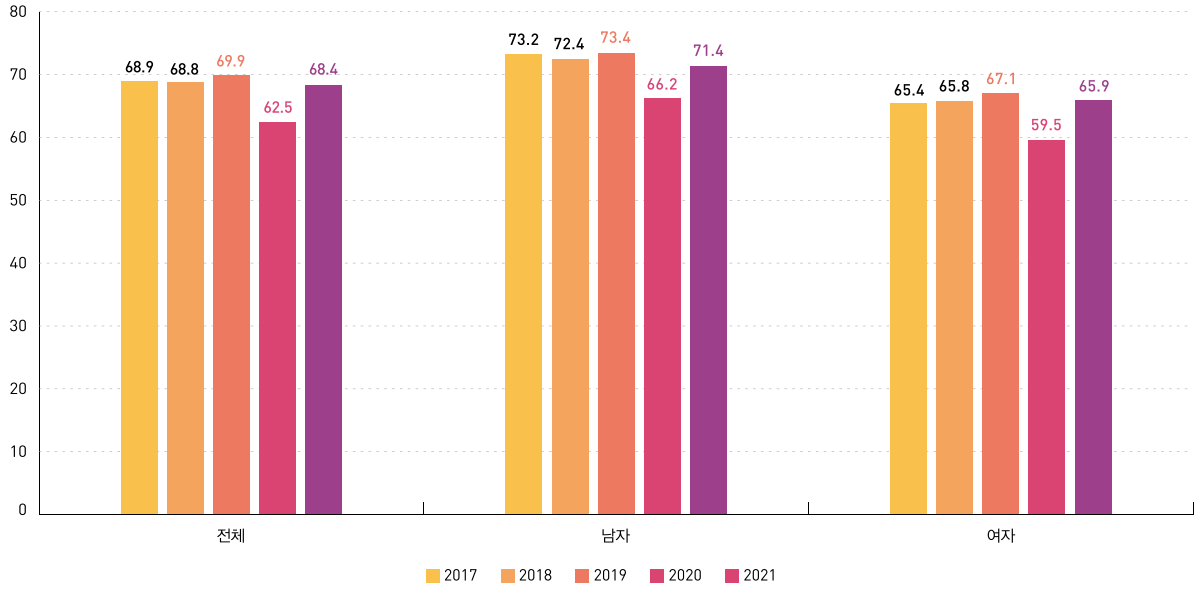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수검 인원}}{\text{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times 100$

유의사항 여기에서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검진 실적만 검토한다.

그림 4-9 성별 노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17~2021)

(단위: %)



주: 2018년부터 일반건강검진 중 2차 검진이 삭제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http://nhis.or.kr에서 2023.04.0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21	1년

표 4-8 시도별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만 40, 50, 60, 70세 대상, 2021)

(단위: 명)

구분	전체				
	계	우울 증상이 없음	가벼운 우울 증상	중간 정도	심한 우울증 의심
전체	2,135,704	1,736,088	301,322	91,181	7,113
서울	374,475	295,300	59,583	18,251	1,341
부산	145,199	120,902	18,318	5,534	445
대구	100,788	83,179	13,591	3,731	287
인천	125,688	100,284	18,888	6,071	445
광주	60,695	50,647	7,735	2,129	184
대전	60,081	48,260	8,765	2,846	210
울산	51,134	42,349	6,705	1,930	150
세종	15,849	12,649	2,446	717	37
경기	554,898	439,388	86,726	26,791	1,993
강원	59,485	49,069	7,766	2,440	210
충북	67,400	55,528	8,935	2,704	233
충남	86,074	70,662	11,522	3,612	278
전북	74,263	63,221	8,424	2,404	214
전남	78,713	68,675	7,713	2,147	178
경북	110,347	93,794	12,566	3,585	402
경남	144,422	121,344	17,669	5,010	399
제주	26,193	20,837	3,970	1,279	107

주: 2018년부터 해당 검진 결과표가 변경되었으며, 대상 연령이 만 70, 74세에서 만 40, 50, 60, 70세로 변경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건강검진통계연보, 2021 (http://nhis.or.kr에서 2023.04.03. 인출)

06-1
연 관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Inspection rate of general health check-ups by core item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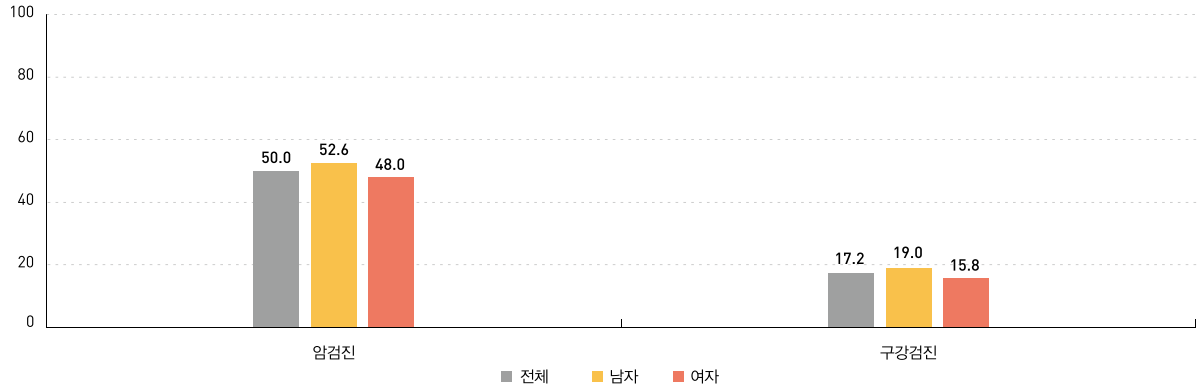
건강검진 대상 인원 중 특정 항목의 검진을 받은 인원의 비율이다. 특정 검진항목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 이외의 암검진, 구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해당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특정항목 건강검진 수검자}}{\text{특정항목 건강검진 대상자}} \times 100$

그림 4-10 성별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성별 수검률 (2021)

(단위: %)



주: 1) 암검진 대상 부위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임.
2) 2018년부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삭제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 2022 (http://nhis.or.kr에서 2023.04.0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건강검진통계	2008	2021	1년

07
대 표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Coverage of public long-term care,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공적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공적장기요양보호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해당된다.

- 인구구조와 가족구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능상 제약이 있는 노인이 일상생활 중에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의 삶을 돌보고, 이들에 대한 주변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측정 산식

- $\frac{\text{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text{65세 이상 인구수}} \times 100$

표 4-9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2011~2021)

(단위: 명, %)

연도	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65세 이상 노인 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소계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011	325,970	288,242	37,728	5,700,972	5.7
2012	338,140	300,869	37,271	5,980,060	5.7
2013	373,807	331,525	42,282	6,250,986	6.0
2014	411,355	364,596	46,759	6,520,607	6.3
2015	443,189	399,761	43,428	6,775,101	6.5
2016	487,112	442,819	44,293	6,995,652	7.0
2017	545,080	497,394	47,686	7,356,106	7.4
2018	609,903	560,391	49,512	7,650,408	8.0
2019	688,780	641,173	47,607	8,026,915	8.6
2020	-	712,502	-	8,496,077	-
2021	-	794,809	-	8,851,033	-

주: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 기준으로, 인정자 중 각 연도 1월~12월까지 누적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자(중복자, 사망자 제외)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2019년 이후 종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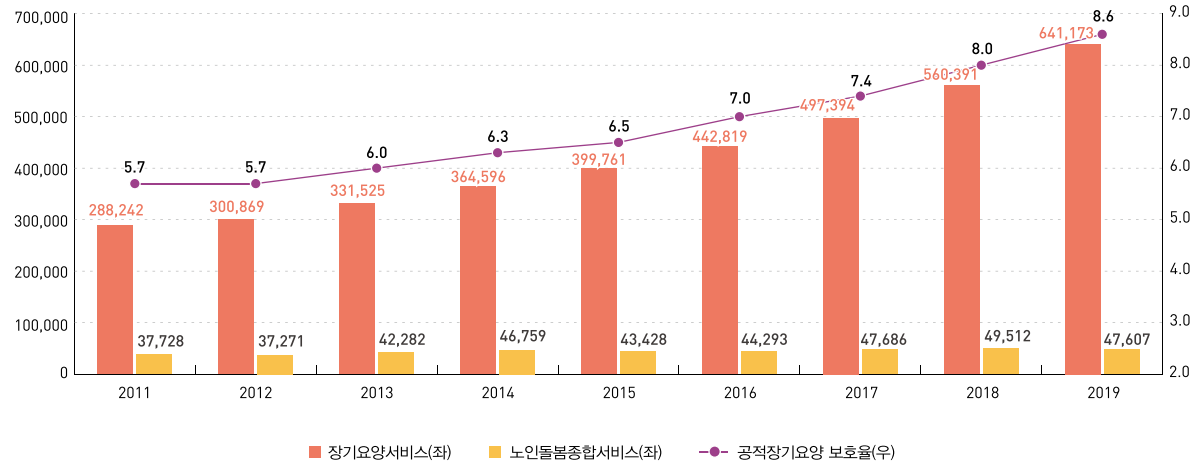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내부자료), 2022; KOSIS, 고령인구 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에서 2023.04.2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내부자료)	-	2020	부정기

그림 4-11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2011~2019)

(단위: 명, %)



주: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 기준으로, 인정자 중 각 연도 1월~12월까지 누적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자(중복자, 사망자 제외)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2019년 이후 종료됨.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내부자료), 2020; KOSIS, 고령인구 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에서 2021.03.12 인출)

07-1
연 관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Rate of people in receipt of long-term care,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인구 중 유급 장기요양서비스(시설 또는 재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 시설 장기요양 수급자(병원 외)는 재원(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상관없이 공식적인 시설에서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며,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는 움직임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서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인구}}{\text{65세 이상 인구수}} \times 100$

표 4-10 성별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수급자 및 장기요양 수급률 (2013~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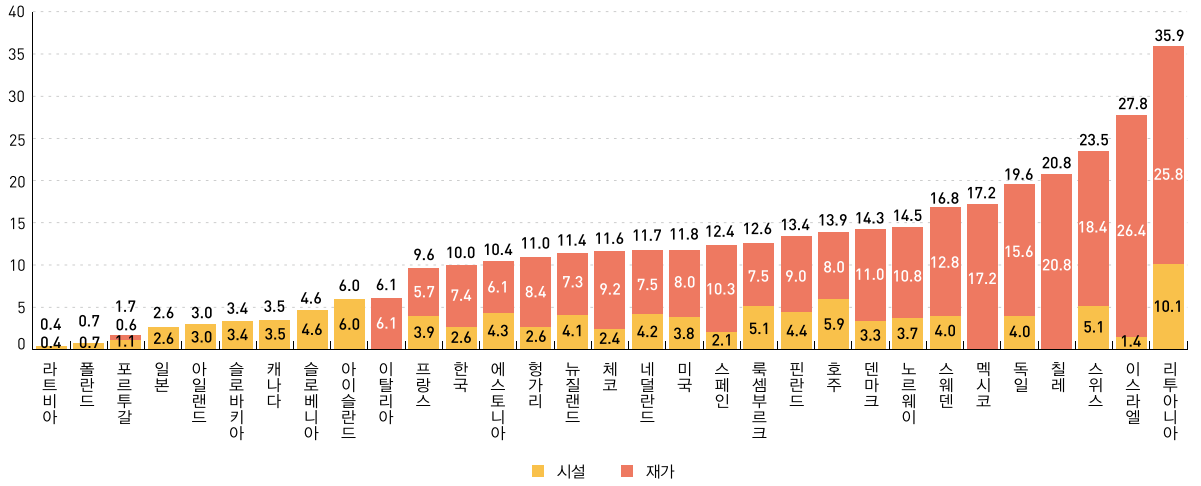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계	시설	재가	계	시설	재가	계	시설	재가
2013	403,611 (6.7)	149,454 (2.5)	254,157 (4.2)	108,118 (4.3)	33,188 (1.3)	74,930 (3.0)	295,493 (8.4)	116,266 (3.3)	179,227 (5.1)
2014	437,734 (7.0)	157,363 (2.5)	280,371 (4.5)	115,820 (4.4)	34,405 (1.3)	81,415 (3.1)	321,914 (8.8)	122,958 (3.4)	198,956 (5.4)
2015	481,383 (7.4)	168,717 (2.6)	312,666 (4.8)	127,157 (4.7)	37,133 (1.4)	90,024 (3.3)	354,226 (9.4)	131,584 (3.5)	222,642 (5.9)
2016	526,032 (7.8)	177,597 (2.6)	348,435 (5.2)	137,876 (4.8)	39,140 (1.4)	98,736 (3.5)	388,156 (9.9)	138,457 (3.5)	249,699 (6.4)
2017	587,429 (8.3)	189,144 (2.7)	398,285 (5.6)	154,062 (5.1)	41,924 (1.4)	112,138 (3.7)	433,367 (10.7)	147,220 (3.6)	286,147 (7.0)
2018	660,121 (8.9)	202,193 (2.7)	457,928 (6.2)	174,856 (5.6)	44,941 (1.4)	129,915 (4.1)	485,265 (11.5)	157,252 (3.7)	328,013 (7.8)
2019	742,558 (9.6)	210,284 (2.7)	532,274 (6.9)	198,518 (6.0)	46,905 (1.4)	151,613 (4.6)	544,040 (12.4)	163,379 (3.7)	380,661 (8.7)
2020	816,291 (10.0)	213,922 (2.6)	602,369 (7.4)	218,928 (5.9)	47,382 (1.3)	171,546 (4.6)	597,363 (12.4)	166,540 (3.5)	430,823 (8.9)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http://stat.oecd.org에서 2023.03.31. 인출)

그림 4-12 OECD 국가의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수급률 (2021년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단위: %)



주 1) 시설: 아이슬란드는 2010년 수치, 미국은 2018년 수치,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네덜란드는 2019년 수치, 캐나다, 덴마크, 일본,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은 2021년도 수치이고, 그 외의 국가는 2020년 수치임.

2) 멕시코는 2016년 수치, 칠레, 미국은 2017년 수치, 슬로베니아, 네덜란드는 2019년 수치, 이스라엘,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은 2021년도 수치이고, 그 외 국가는 2020년 수치임.

자료: OECD, Health Data (http://stats.oecd.org에서 2023.04.21.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	2020	1년

08
대 표

장기요양기관 수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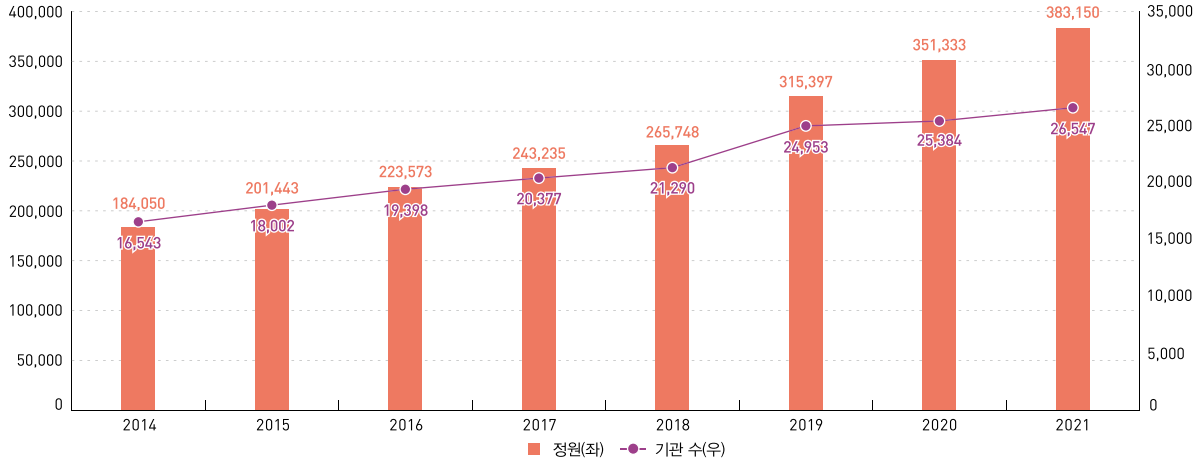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이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재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와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모두 해당한다.

측정 산식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

그림 4-13 장기요양기관 수 (2014~2021)

(단위: 명, 개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08	2021	1년

표 4-11 시도별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수 (2021)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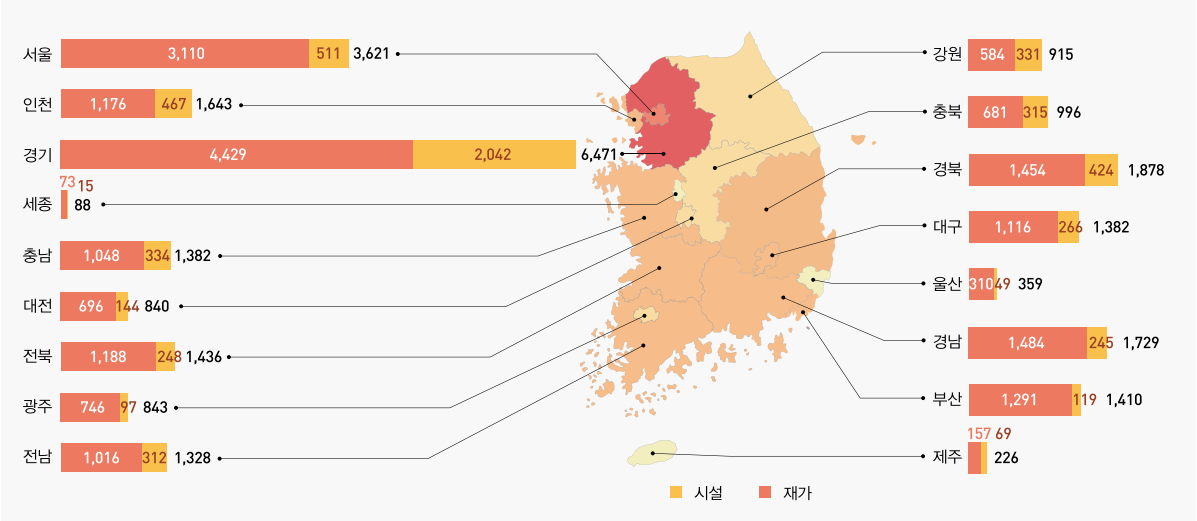
구분	전체	재가							시설		
		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전국	26,547	20,559	16,214	11,506	801	4,832	137	1,954	5,988	4,132	1,856
서울	3,621	3,110	2,412	1,978	145	488	44	312	511	221	290
부산	1,410	1,291	1,132	712	39	229	1	126	119	98	21
대구	1,382	1,116	900	490	29	325	12	94	266	132	134
인천	1,643	1,176	980	810	57	214	7	108	467	363	104
광주	843	746	627	361	30	154	1	67	97	81	16
대전	840	696	548	433	38	157	2	75	144	98	46
울산	359	310	248	134	15	109	2	25	49	35	14
세종	88	73	57	29	4	20	0	8	15	12	3
경기	6,471	4,429	3,365	2,647	185	1,048	28	430	2,042	1,447	595
강원	915	584	444	269	33	157	6	53	331	224	107
충북	996	681	479	248	17	233	4	71	315	214	101
충남	1,382	1,048	826	587	39	302	7	89	334	234	100
전북	1,436	1,188	877	650	56	313	2	134	248	180	68
전남	1,328	1,016	833	538	30	267	5	77	312	234	78
경북	1,878	1,454	1,156	717	38	423	11	130	424	301	123
경남	1,729	1,484	1,228	821	38	329	5	129	245	198	47
제주	226	157	102	82	8	64	0	26	69	60	9

주: 1) 연도 말 기준임.
2) 재가의 소계는 급여종류에 따른 중복을 제외한 것임.
3)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구법),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은 2013년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2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그림 4-14 시도별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수 (2021)

(단위: 개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 인력

Number of long-term care workers

지표 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사(촉탁의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수이다.

측정 산식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의 수

표 4-12 급여종류별 전문 인력 현황 (2018~2021)

(단위: 명)

구분	전체				재가				시설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2018	2019	2020	2021
계	421,326	470,440	503,983	565,281	341,541	383,664	411,718	467,857	88,742	95,193	99,879	104,995
요양보호사	379,822	423,057	450,970	507,473	319,498	357,254	381,359	434,041	68,216	73,075	76,011	79,799
사회복지사	22,305	26,371	30,268	33,736	16,314	19,593	22,642	25,509	6,052	6,828	7,685	8,294
간호사	2,999	3,280	3,504	3,645	1,584	1,765	1,940	2,100	1,472	1,582	1,623	1,594
간호조무사	10,726	11,987	13,221	14,196	3,671	4,512	5,185	5,589	7,806	8,300	8,932	9,495
물리(작업)치료사	2,122	2,348	2,558	2,349	294	360	407	88	1,937	2,113	2,276	2,322
의사(촉탁포함)	2,210	2,260	2,312	2,723	112	104	99	441	2,179	2,229	2,283	2,416
치과위생사	10	7	14	12	10	7	14	12	0	0	0	0
영양사	1,132	1,130	1,136	1,147	58	69	72	77	1,080	1,066	1,069	1,075

주: 1) 연도 말 기준임.
2) 전체 계는 급여종류에 따른 중복을 제거한 것임.
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 포함임.
4) 각 전문 인력은 재가와 시설에서 중복 집계되므로 재가와 시설의 합은 전체 수치보다 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08	2021	1년

표 4-13 시도별 · 급여종류별 주요 전문인력 현황 (2021)

(단위: 명)

구분	전체			재가			시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전국	33,736	14,196	507,473	25,509	5,589	434,041	8,294	9,495	79,799
서울	4,320	1,524	87,312	3,739	858	81,320	583	739	6,431
부산	1,980	480	35,638	1,757	242	33,478	223	260	2,255
대구	1,620	639	24,228	1,268	330	21,043	356	398	3,344
인천	2,034	993	32,672	1,349	248	26,816	688	792	6,239
광주	1,023	296	19,360	875	184	18,165	151	132	1,282
대전	952	442	17,056	732	176	14,925	222	289	2,273
울산	466	195	8,283	391	113	7,524	75	89	797
세종	119	51	1,898	92	28	1,699	28	26	216
경기	7,997	4,334	122,445	5,217	1,223	97,795	2,802	3,302	26,782
강원	1,298	573	16,431	858	148	12,416	443	452	4,168
충북	1,330	684	17,179	912	243	13,553	419	472	3,901
충남	1,809	823	26,385	1,360	330	22,516	455	558	4,383
전북	1,848	735	24,115	1,510	381	21,224	339	404	3,081
전남	1,828	695	24,085	1,406	306	20,647	427	438	3,636
경북	2,501	958	34,414	1,929	464	29,357	576	615	5,365
경남	2,283	713	37,943	1,899	355	34,069	389	405	4,152
제주	351	173	4,358	228	59	2,886	123	129	1,512

주: 1) 연도 말 기준임.
2) 전체 계는 급여종류에 따른 중복을 제거한 것임.
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 포함임.
4) 각 전문 인력은 재가와 시설에서 중복 집계되므로 재가와 시설의 합은 전체 수치보다 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2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5

장애인

01 등록장애인 수
02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03 장애인 복지시설 수
0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05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7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08 특수교육 대상자 수
09 장애인 교육 수준
10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1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2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13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14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15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장애인 인구 및 생활	등록장애인 수	장애출현율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시설 수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장애인 보육 · 교육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장애인 교육 수준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실업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장애수당 수급자 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01
대 표

등록장애인 수

Number of the registered disabled

지표 정의

등록장애인 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유형 및 기준에 부합하여 시 · 군 · 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를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 요루, 뇌전증 장애 등 15가지 유형의 법정 장애를 명시하고 있다*.

- 장애인 등록 현황은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등록장애인 수는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장애인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측정 산식

- **우리나라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되어 등록한 장애인의 수**

표 5-1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수 (2002~2021)

(단위: 천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294	1,454	1,611	1,789	1,967	2,105	2,247	2,430	2,517	2,519	2,511	2,501	2,494	2,490	2,511	2,546	2,586	2,619	2,633	2,645
지체장애	755	814	883	965	1,049	1,114	1,191	1,293	1,338	1,333	1,322	1,309	1,296	1,281	1,267	1,254	1,239	1,223	1,207	1,191
시각장애	136	153	170	190	197	217	228	241	249	251	253	253	253	253	252	253	253	253	252	252
청각장애	-	126	142	161	182	203	223	246	260	261	259	255	253	250	272	302	343	377	396	412
언어장애	-	13	13	15	23	15	15	16	17	17	18	18	18	19	19	20	21	21	22	23
지적장애	104	112	119	128	138	143	147	155	161	167	173	179	184	190	195	201	207	212	217	222
뇌병변장애	92	118	143	169	195	215	232	252	262	261	258	253	252	251	250	253	253	252	250	248
자폐성장애	4	6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3	25	27	29	31	34
정신장애	39	47	54	64	75	82	87	95	96	95	95	96	97	99	100	101	102	103	104	104
신장장애	32	35	38	42	45	48	50	54	57	60	63	67	70	74	78	84	88	92	98	102
심장장애	9	10	12	13	14	14	15	15	13	10	8	7	6	6	6	5	5	5	5	5
호흡기장애	-	7	10	12	13	14	15	16	16	15	14	13	12	12	12	12	12	12	12	12
간장애	-	3	4	5	6	6	7	8	8	8	9	9	10	10	11	12	13	13	14	14
안면장애	-	1	1	1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장루 · 요루장애	-	7	8	10	10	11	12	12	13	13	13	14	14	14	14	15	15	15	15	16
뇌전증장애	-	3	5	7	8	9	9	10	10	9	8	7	7	7	7	7	7	7	7	7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3.04.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	2006	2021	1년

* 장애범주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2003년에는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 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포함되었다. 한편, 2007년에는 기존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2014년에는 기존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표 5-2 시도별 · 성별 등록장애인 수 (2021)

(단위: 명, %)

시도	등록장애인 수			인구대비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국	2,633,026	1,521,260	1,111,766	5.12	5.94	4.31
서울	394,190	228,386	165,804	4.12	4.92	3.37
부산	176,293	103,880	72,413	5.27	6.33	4.24
대구	126,398	73,475	52,923	5.34	6.29	4.41
인천	146,321	87,305	59,016	5.04	5.99	4.09
광주	70,061	39,638	30,423	4.84	5.55	4.15
대전	72,853	42,447	30,406	4.99	5.84	4.15
울산	51,122	30,905	20,217	4.58	5.39	3.72
세종	12,346	7,364	4,982	3.40	4.06	2.74
경기	569,726	338,704	231,022	4.27	5.04	3.48
강원	101,615	58,829	42,786	6.61	7.59	5.61
충북	97,932	56,117	41,815	6.12	6.92	5.30
충남	134,250	76,783	57,467	6.36	7.11	5.57
전북	132,207	71,808	60,399	7.39	8.07	6.71
전남	140,942	75,050	65,892	7.63	8.09	7.17
경북	181,366	101,449	79,917	6.95	7.71	6.18
경남	188,749	108,876	79,873	5.72	6.56	4.87
제주	36,655	20,244	16,411	5.45	6.01	4.89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 2021 (http://kosis.kr에서 2023.04.10.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21 (http://kosis.kr에서 2023.04.1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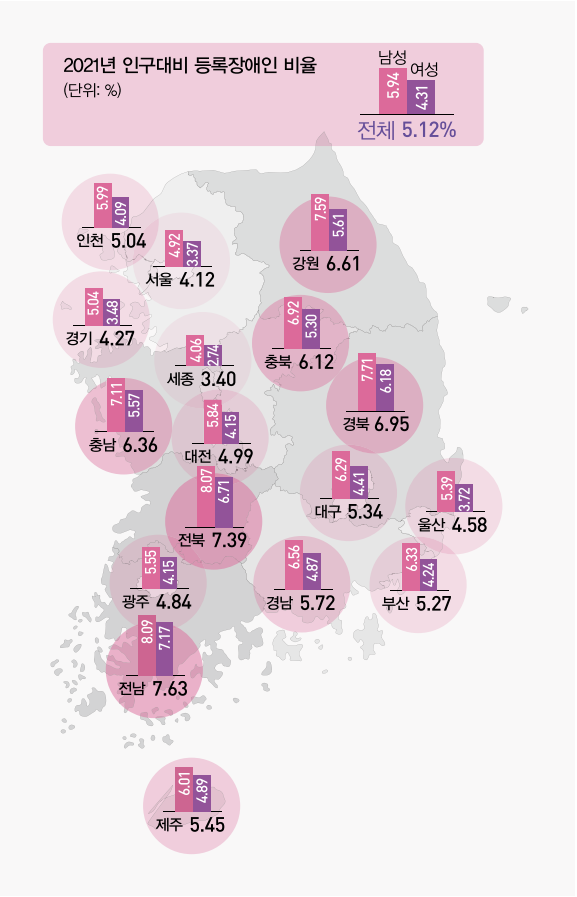


표 5-3 연령별 ·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수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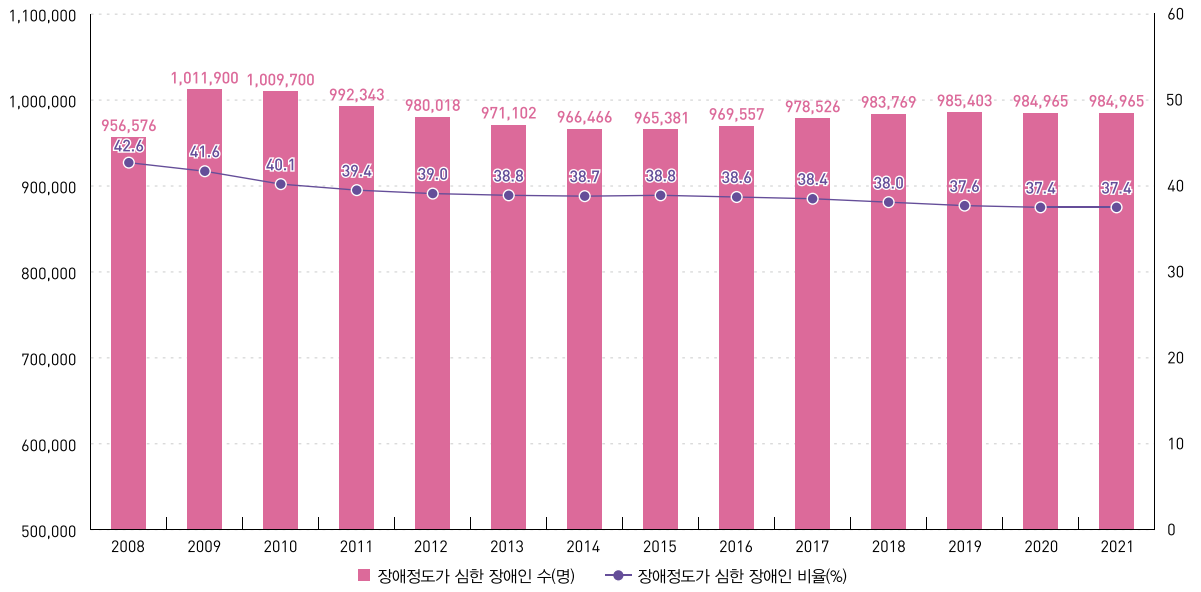
(단위: 명)

연령 구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계
계	984,813	586,019	398,794	1,659,887	942,261	717,626	2,644,700	1,528,280	1,116,420
0~9세	25,978	17,584	8,394	6,326	4,119	2,207	32,304	21,703	10,601
10~19세	52,488	35,018	17,470	7,196	4,099	3,097	59,684	39,117	20,567
20~29세	79,423	51,583	27,840	17,919	11,288	6,631	97,342	62,871	34,471
30~39세	73,692	46,191	27,501	43,215	31,725	11,490	116,907	77,916	38,991
40~49세	107,315	65,685	41,630	124,073	94,952	29,121	231,388	160,637	70,751
50~59세	172,771	108,744	64,027	257,071	186,805	70,266	429,842	295,549	134,293
60~69세	206,634	128,679	77,955	417,505	263,355	154,150	624,139	392,034	232,105
70~79세	155,657	87,044	68,613	422,806	213,928	208,878	578,463	300,972	277,491
80~89세	96,619	41,395	55,224	315,612	118,969	196,643	412,231	160,364	251,867
90~99세	13,900	4,025	9,875	47,161	12,815	34,346	61,061	16,840	44,221
100세 이상	336	71	265	1,003	206	797	1,339	277	1,062

주: 2019년도 이전자료는 1~6급의 등급으로 구분되었으나, 2019년도 이후자료는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현황, 2021 (http://kosis.kr에서 2023.04.10. 인출)

그림 5-1 장애인구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율 (2008~2021)

(단위: 명, %)



주: 2007~2018년 자료는 기존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3.04.10. 인출)

장애출현율

Prevalence of disability

지표 정의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은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근거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해 추정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우리나라 법정 장애 범주에 해당되는 추정장애인 수}}{\text{전체 인구}} \times 100$

표 5-4 연도별 장애출현율

(단위: 명, %)

구분	2000	2005	2011	2014	2017
등록장애인 수	907,571	1,669,329	2,517,312	2,501,112	2,511,051
추정장애인 수	1,449,496	2,148,686	2,683,477	2,726,910	2,668,411
장애인 등록률	62.6	77.7	93.8	91.7	94.1
장애출현율	3.09	4.59	5.61	5.59	5.39

주 1) 등록장애인 수는 각 조사 당시 보고된 자료를 활용함.
2)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기존 가구표본조사방식이 아닌 등록장애인 2,622,950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미등록장애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장애인 수(해당년도의 장애판정기준에 해당되는 미등록 장애인(추정)과 등록된 장애인)와 장애인 등록률(등록장애인 수÷장애인실태조사 추정 장애인 수), 장애출현율을 추산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1.11.1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20	3년

02
대 표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Prevalence of ADL(IADL) limitation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신체활동으로, 자신의 육체를 돌보는데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주로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되는 옷 입기나 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이 이에 속한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몸단장하기, 식사 준비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등 단순한 신체적 기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ADL(IADL) 제한 응답 장애인 수}}{\text{조사대상 장애인 수}} \times 100$

표 5-5 장애 정도별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제한율 (2020)

(단위: %)

구분	전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옷 벗고 입기	84.0	12.3	4.3	70.8	21.3	8.6	91.9	7.0	1.8
목욕하기	78.2	16.0	6.0	63.2	24.7	10.5	87.1	10.8	3.3
양치질하기	88.1	8.7	3.2	76.4	16.4	6.8	95.2	4.0	1.0
음식물 넘기기	93.8	4.2	1.2	88.1	7.6	2.5	97.3	2.2	0.5
식사하기	90.7	6.9	2.1	82.3	12.7	4.2	95.8	3.5	0.9
누운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91.3	6.2	1.7	83.8	10.9	3.3	95.9	3.4	0.8
옮겨 앉기	90.3	7.0	2.2	81.5	12.6	4.3	95.5	3.6	1.0
앉은자세 유지	90.5	7.1	2.2	82.7	11.8	4.1	95.2	4.1	1.0
보행	80.5	14.7	5.1	70.7	19.2	8.1	86.4	12.1	3.3
이동	77.8	16.0	7.3	66.5	21.2	10.9	84.5	12.9	5.1
배변	90.5	6.6	2.6	81.7	12.0	5.1	95.8	3.2	1.0
배뇨	90.9	6.2	2.4	82.4	11.5	4.7	95.9	3.1	1.0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1

표 5-6 장애 정도별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제한율 (2020)

(단위: %)

구분	전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전화 사용하기	83.4	10.7	5.9	67.7	19.1	13.2	92.7	5.7	1.6
물건 사기	71.9	19.0	9.1	51.2	29.4	19.4	84.2	12.9	2.9
식사 준비(만 13세 이상)	64.7	25.1	10.2	45.5	33.5	21.1	75.4	20.4	4.2
청소(만 13세 이상)	64.7	25.2	10.1	46.2	32.9	20.8	75.1	20.8	4.0
빨래하기(만 13세 이상)	64.7	24.9	10.4	45.6	32.8	21.6	75.5	20.4	4.2
약 챙겨먹기(만 13세 이상)	82.2	12.7	5.1	66.3	22.2	11.6	91.0	7.5	1.4
금전 관리	73.5	17.2	9.3	52.7	27.0	20.4	85.9	11.4	2.7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66.9	20.3	12.7	47.4	27.3	25.2	78.6	16.2	5.2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20	3년

02-1
연 관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Need for help with daily activitie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정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혹은 남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의 분율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를 '1. 혼자서 스스로, 2. 대부분 혼자서, 3. 일부 도움 필요, 4. 대부분 필요, 5. 거의 남의 도움 필요'와 같이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frac{\text{도움 필요 정도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장애인 수}}{\text{조사대상 장애인 수}} \times 100$

표 5-7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2020)

(단위: %)

구분	계	혼자서 스스로	대부분 혼자서	일부 도움 필요	대부분 도움 필요	거의 남의 도움 필요
전체	100.0	47.8	20.1	17.2	8.7	6.2
지체장애	100.0	57.8	20.3	13.8	5.0	3.1
뇌병변장애	100.0	19.0	13.7	23.4	20.7	23.2
시각장애	100.0	59.4	16.6	13.5	6.4	4.0
청각장애	100.0	49.9	24.1	17.4	6.0	2.7
언어장애	100.0	38.1	15.9	28.4	8.4	9.2
지적장애	100.0	14.6	23.3	28.7	20.3	13.1
자폐성장애	100.0	6.6	15.0	21.4	39.0	18.0
정신장애	100.0	36.0	24.2	26.0	9.2	4.6
신장장애	100.0	54.5	18.4	16.6	6.8	3.7
심장장애	100.0	64.2	17.7	12.0	5.1	1.0
호흡기장애	100.0	33.6	30.0	19.4	12.0	5.0
간장애	100.0	77.2	12.9	5.4	3.4	1.1
안면장애	100.0	70.0	17.8	10.6	0.7	0.9
장루 · 요루장애	100.0	53.0	24.7	13.7	6.5	2.1
뇌전증장애	100.0	51.7	14.3	20.0	10.2	3.8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20	3년

03
대 표

장애인 복지시설 수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 치료 ·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지표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 복지시설 수 = 거주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재활시설**

표 5-8 장애인 복지시설 수 (200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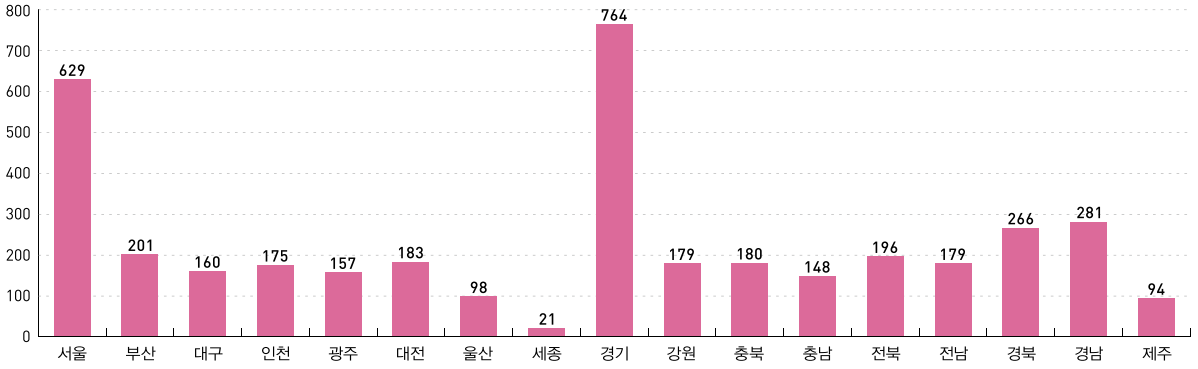
(단위: 개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거주시설	288	314	347	397	452	490	1,348	1,397	1,457	1,484	1,505	1,517	1,527	1,557	1,539	1,535
지역사회재활시설	1,125	1,286	1,419	1,563	1,701	1,820	1,140	1,184	1,213	1,248	1,303	1,333	1,373	1,468	1,519	1,568
직업재활시설	319	339	364	386	417	456	478	511	539	560	582	625	651	683	720	77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	-	-	-	16	16	16	17	17	17	17	17	17	17	17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	-	-	17	17	18	18	18	19	19	19	19	18	18
계	1,732	1,939	2,130	2,346	2,570	2,799	2,999	3,126	3,244	3,327	3,426	3,511	3,587	3,744	3,813	3,911

자료: 1) 보건복지부, 2022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2021.12월 말 기준), 각 연도
2)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2021

그림 5-2 시도별 장애인 복지시설 수 (2021)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21	1년

03-1
연 관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Number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sidents

지표 정의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본 지표를 통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 및 현황 등 시설 장애인 복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지체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 언어장애인, 지적 · 자폐성장애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

• 본 지표는 각각의 시설 수와 연도 말 기준 거주하는 실인원 수를 측정한다.

표 5-9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2010~2021)

(단위: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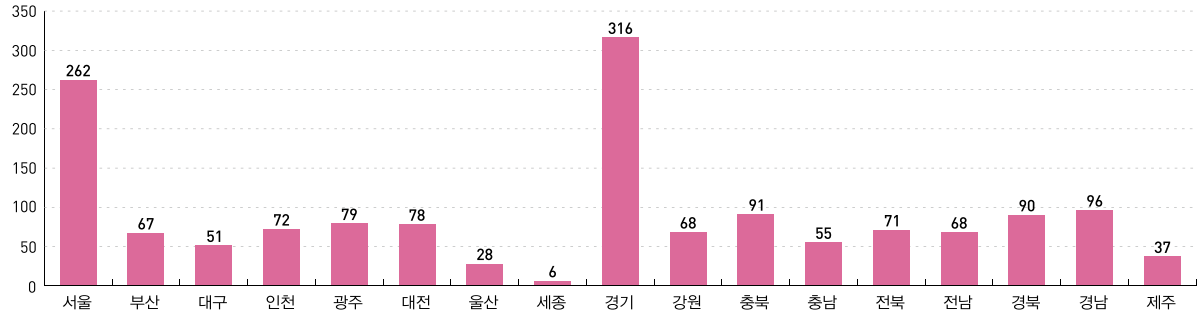
구분	총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 시설		공동생활 가정	
			소계		지체 ·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 언어 장애인		지적 · 자폐성 장애인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2010	452	24,395	260	19,270	40	3,673	14	873	10	386	196	14,338	182	4,813	10	312	103	-	589	-
2011	490	25,345	289	14,038	39	2,102	15	787	9	361	226	10,788	191	10,798	10	509	119	-	637	-
2012	1,348	30,640	342	14,926	40	2,057	16	786	8	335	278	11,748	201	11,006	10	510	128	1,438	667	2,760
2013	1,397	31,152	356	15,069	39	1,978	16	770	8	320	293	12,001	216	11,412	9	473	131	1,432	685	2,766
2014	1,457	31,406	375	15,246	44	2,208	15	632	7	270	309	12,136	223	11,344	9	466	137	1,495	713	2,855
2015	1,484	31,222	383	14,920	39	1,668	16	628	7	255	321	12,369	233	11,314	10	541	141	1,548	717	2,899
2016	1,505	30,980	381	14,817	40	1,766	17	711	7	228	317	12,112	233	11,192	9	452	146	1,616	736	2,903
2017	1,517	30,693	376	14,630	39	1,690	17	700	7	232	313	12,008	233	10,996	9	429	147	1,699	752	2,939
2018	1,527	30,152	376	14,168	33	1,418	16	662	7	223	320	11,865	239	10,995	9	398	150	1,671	753	2,920
2019	1,557	29,662	368	13,620	33	1,304	15	615	7	216	313	11,485	251	10,978	9	382	159	1,733	770	2,949
2020	1,539	29,086	368	13,254	28	1,121	16	579	7	205	317	11,349	251	10,866	9	361	157	1,733	754	2,872
2021	1,535	28,565	360	13,073	28	1,055	15	569	7	196	310	11,253	249	10,520	9	357	164	1,783	753	2,832

주: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었던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거주시설로 재편됨.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거주시설 수와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그림 5-3 시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수 (2021)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21	1년

03-2
연 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Number of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 치료 ·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본 지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전국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수를 말한다.**

표 5-10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2008~2021)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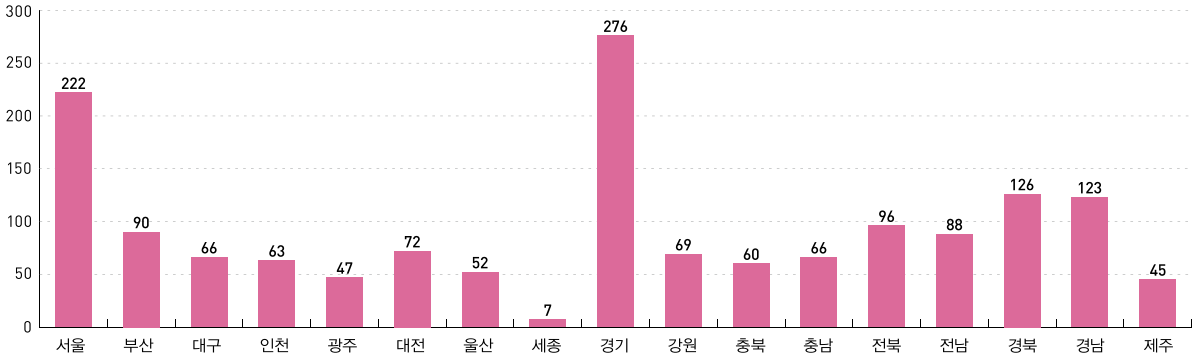
구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	공동생활 가정	의료재활 시설
	계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 시설	장애인 체육관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화통역 센터	기타			
2008	1,419	171	365	26	152	154	-	84	450	17
2009	1,563	185	395	27	154	162	-	91	531	18
2010	1,701	191	443	27	154	176	-	103	589	18
2011	1,820	199	485	27	156	180	-	119	637	17
2012	1,140	205	526	28	156	191	-	-	-	-
2013	1,184	219	558	29	155	199	-	-	-	18
2014	1,213	223	592	29	156	193	20	-	-	18
2015	1,248	224	625	30	156	193	20	-	-	18
2016	1,303	231	663	34	159	194	22	-	-	20
2017	1,333	237	690	33	157	194	22	-	-	19
2018	1,373	241	724	33	159	195	21	-	-	19
2019	1,468	254	769	28	164	197	24	-	-	18
2020	1,466	258	797	28	164	199	20	-	-	18
2021	1,568	261	818	31	165	202	24	-	-	18

주: 1) 의료재활시설은 201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위 자료에서는 함께 표기함.
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2012년부터 거주시설로 포함되었음.
3) 2014년부터 점자도서관 및 점자도서출판시설이 기타 시설로 통계 산입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그림 5-4 시도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2021)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21	1년

03-3
연 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Number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본 지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지원정책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표는 각각의 시설 수를 측정한다.**

표 5-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및 이용 인원 (200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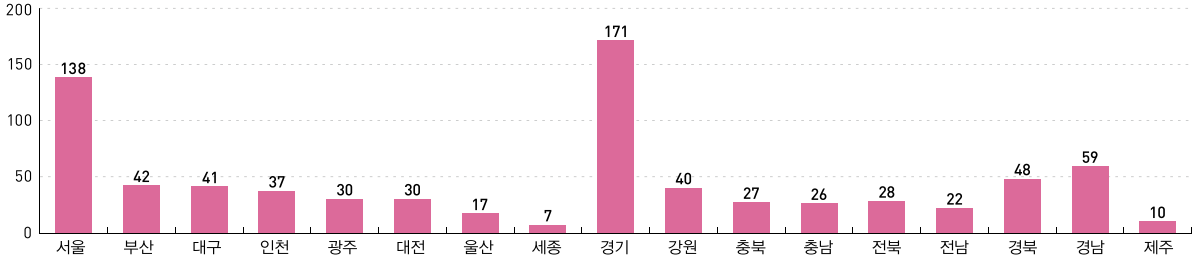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호작업장	시설 수	189	212	250	373	403	422	447	477	496	516	553	573	593	619	667
	이용 인원	5,238	5,559	6,574	10,009	10,680	11,374	12,086	12,930	13,616	14,335	14,960	15,262	15,796	16,147	16,791
근로사업장	시설 수	29	31	33	44	53	56	64	64	64	63	62	63	65	67	68
	이용 인원	1,344	1,422	1,516	1,761	2,190	2,384	2,653	2,721	2,798	2,762	2,724	2,690	2,823	2,875	2,923
직업적응훈련시설	시설 수	-	-	-	-	-	-	-	-	-	-	10	15	25	34	38
	이용 인원	-	-	-	-	-	-	-	-	-	-	157	253	437	712	790
총계	시설 수	339	364	386	417	456	478	511	541	560	579	625	651	683	720	773
	이용 인원	10,059	10,422	11,048	11,770	12,870	13,758	14,739	15,651	16,414	17,097	17,841	18,205	19,056	19,734	20,504

주: 이용 인원은 12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그림 5-5 시도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2021)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21	1년

04
대 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Installation rate of convenienc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 중 정해진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비율이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편의증진법)은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대상시설은 전국적으로 14만 2천여 개이며, 설치대상 편의시설은 모두 630여 만 개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전반적인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편의시설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text{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times 100$

표 5-12 연도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2013, 2018)

(단위: 개소, %)

편의시설 종류	2013					2018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2,729,583	1,897,877	69.5	1,706,129	62.5	3,873,162	3,167,681	81.8	2,998,098	77.4
내부시설	1,929,421	1,555,422	80.6	1,392,127	72.2	3,299,282	2,762,138	83.7	2,560,854	77.6
위생시설	1,250,126	583,869	46.7	478,392	38.3	1,482,821	1,049,239	70.8	953,768	64.3
안내시설	195,730	82,643	42.2	70,711	36.1	214,343	146,173	68.2	133,581	62.3
기타시설	200,514	163,868	81.7	147,789	73.7	124,179	93,540	75.3	84,392	68.0
비치용품	-	-	-	-	-	34,626	18,685	54.0	-	-
계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9,028,413	7,237,456	80.2	6,749,378	74.8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8

표 5-13 핵심항목 기준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2018)

(단위: 개소, %)

편의시설 종류	핵심 세부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1,354,654	1,183,889	87.4	1,112,339	82.1
내부시설	1,115,619	1,061,126	95.1	1,015,005	91.0
위생시설	625,863	466,585	74.6	429,608	68.6
안내시설	68,931	53,308	77.3	48,786	70.8
기타시설	40,767	29,442	72.2	27,618	67.7
계	3,205,834	2,794,350	87.2	2,633,406	82.1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8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995	2018	5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8

표 5-14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 (2018)

(단위: 개소, %)

시도	대상건물 수	설치기준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전국	185,947	9,034,890	7,243,294	80.2	6,754,701	74.8
서울	27,856	1,281,950	1,126,201	87.9	1,084,340	84.6
부산	11,542	556,144	450,345	81.0	412,842	74.2
대구	8,206	426,993	344,582	80.7	322,959	75.6
인천	12,260	539,621	429,301	79.6	394,810	73.2
광주	7,065	352,632	289,910	82.2	282,980	80.2
대전	3,881	210,210	174,163	82.9	161,341	76.8
울산	3,887	191,761	163,218	85.1	157,194	82.0
세종	919	49,855	44,316	88.9	42,248	84.7
경기	38,247	1,760,119	1,446,055	82.2	1,366,155	77.6
강원	5,794	318,419	250,496	78.7	231,362	72.7
충북	8,632	446,844	316,577	70.8	279,507	62.6
충남	8,016	416,073	324,729	78.0	296,256	71.2
전북	11,317	551,305	425,521	77.2	392,363	71.2
전남	10,440	517,090	378,530	73.2	338,328	65.4
경북	11,842	605,288	450,702	74.5	412,590	68.2
경남	12,466	639,345	495,402	77.5	454,976	71.2
제주	3,577	171,241	133,246	77.8	124,450	72.7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8

05 대 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발달재활서비스는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급여를 지급한다.

측정 산식

- 급여액 : 서비스 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제한 금액
- 본인부담금 : 소득별로 차등 지원

(2022년 기준)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차상위계층 (가형)	차상위계층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정부지원금	월 22만 원	월 20만 원	월 18만 원	월 16만 원	월 14만 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 원	월 4만 원	월 6만 원	월 8만 원

표 5-15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5~2022)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용자 수	51,609	52,200	52,830	55,802	62,360	60,334	68,604	73,977
이용액	8,622,253	8,652,818	8,691,978	9,070,412	10,071,097	11,057,717	12,509,706	13,695,230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표 5-16 월별 ·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2022)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66,478	65,113	66,058	68,509	69,644	70,096	70,835	70,761	71,505	71,886	73,089	74,051
서울	9,593	9,411	9,257	9,555	9,633	9,711	9,804	9,759	9,884	9,978	10,167	10,291
부산	5,491	5,336	5,388	5,580	5,691	5,765	5,822	5,776	5,821	5,873	5,938	5,983
대구	3,004	2,910	3,127	3,281	3,464	3,537	3,563	3,642	3,696	3,741	3,781	3,903
인천	3,700	3,599	3,552	3,635	3,673	3,669	3,722	3,724	3,717	3,738	3,794	3,837
광주	3,030	2,994	3,060	3,155	3,206	3,259	3,339	3,305	3,326	3,298	3,319	3,321
대전	2,243	2,238	2,189	2,240	2,252	2,262	2,321	2,290	2,297	2,289	2,359	2,352
울산	1,525	1,487	1,460	1,482	1,593	1,599	1,591	1,557	1,544	1,543	1,622	1,634
세종	420	423	418	420	480	481	462	456	456	458	532	576
경기	16,345	16,077	16,295	16,886	17,070	17,108	17,262	17,212	17,304	17,376	17,659	18,001
강원	2,157	2,067	2,130	2,254	2,304	2,354	2,392	2,422	2,441	2,430	2,459	2,423
충북	1,868	1,825	1,785	1,837	1,851	1,900	1,896	1,835	1,868	1,864	1,880	2,036
충남	2,237	2,218	2,343	2,406	2,446	2,444	2,472	2,492	2,490	2,566	2,600	2,589
전북	2,810	2,739	2,868	3,106	3,134	3,121	3,093	3,025	3,196	3,221	3,298	3,410
전남	2,578	2,513	2,548	2,609	2,646	2,654	2,687	2,703	2,747	2,768	2,822	2,889
경북	4,001	3,907	4,012	4,154	4,245	4,296	4,317	4,421	4,435	4,446	4,499	4,500
경남	3,823	3,807	3,804	3,974	4,017	3,990	4,063	4,046	4,155	4,136	4,210	4,187
제주	1,653	1,562	1,822	1,935	1,939	1,946	2,029	2,096	2,128	2,161	2,150	2,1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22	월

표 5-17 월별 · 등급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22)

(단위: 명, 천 원)

구분	이용자 수						이용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합계	
1월	6,549	4,798	16,702	25,819	12,610	66,478	10,264,442
2월	6,362	4,655	16,508	25,510	12,043	65,078	9,516,322
3월	6,212	4,668	16,858	26,037	12,223	65,998	9,913,768
4월	6,630	4,797	17,524	26,939	12,555	68,445	11,359,472
5월	6,775	4,830	17,920	27,354	12,682	69,561	11,536,342
6월	6,848	4,884	17,995	27,582	12,733	70,042	11,462,540
7월	6,861	4,923	18,159	27,906	12,923	70,772	11,499,576
8월	6,834	4,883	18,009	27,756	13,226	70,708	11,294,941
9월	6,869	4,973	18,122	28,035	13,452	71,451	11,556,792
10월	6,898	4,993	18,243	28,089	13,553	71,776	11,903,458
11월	6,986	5,029	18,582	28,600	13,785	72,982	12,738,884
12월	7,036	5,050	18,834	28,946	14,111	73,977	13,695,23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신체기능과 자립생활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의거 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일 때 선정되며, 각 활동지원등급,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바우처를 지원한다.

측정 산식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 등급을 설정하여(15등급) 각 등급별 최저 88.9만 원(15구간)에서 최대 710만 원(1구간)까지 산정
- 특별지원급여 : 출산(118만 원), 자립준비(29만 원), 보호자일시부재(29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 지원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금 차등 부과**(특별지원급여는 별도 본인부담금 없음)

표 5-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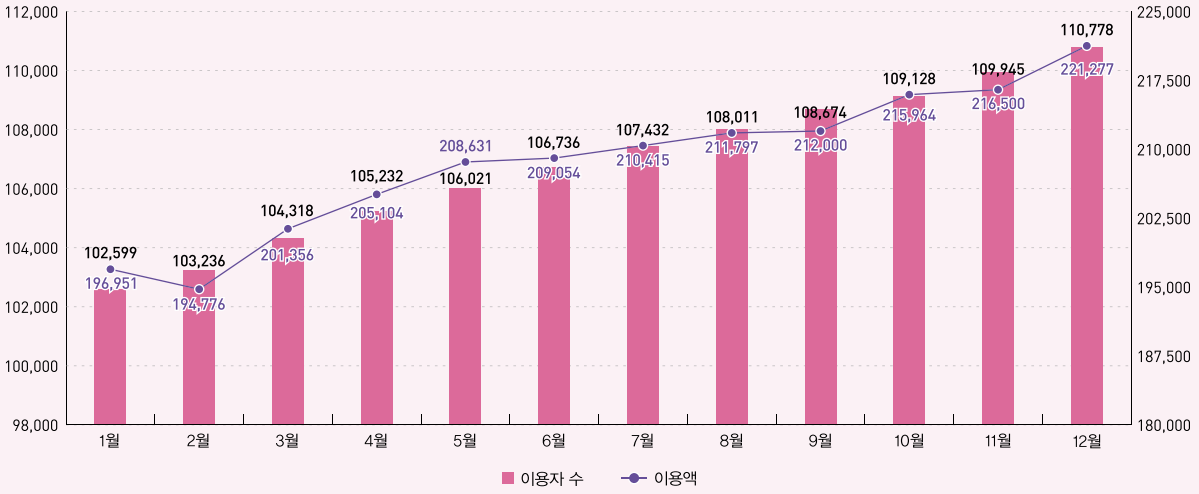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용자 수	60,521	66,534	72,193	78,202	86,730	93,115	102,575	110,658
이용액	66,203,438	73,955,751	81,734,439	102,590,834	139,313,650	163,584,489	192,109,666	221,276,575

주: 각 연도 12월 기준

그림 5-6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22)

(단위: 명, 백만 원)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22	월

* 만 65세가 도래한 대상자 중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과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 원 정액 부과, 차상위 초과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180% 초과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함.

표 5-19 시도별 ·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2022)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02,599	103,236	104,318	105,232	106,021	106,736	107,432	108,011	108,674	109,128	109,945	110,778
서울	19,179	19,285	19,436	19,570	19,663	19,782	19,895	19,989	20,076	20,153	20,256	20,376
부산	7,495	7,556	7,623	7,662	7,715	7,781	7,815	7,855	7,900	7,937	7,998	8,055
대구	4,780	4,797	4,853	4,867	4,912	4,925	4,946	4,956	4,983	5,012	5,044	5,087
인천	5,707	5,733	5,765	5,820	5,868	5,898	5,905	5,935	5,975	6,006	6,048	6,099
광주	4,658	4,672	4,703	4,735	4,762	4,777	4,819	4,837	4,861	4,868	4,905	4,944
대전	3,999	4,029	4,043	4,071	4,084	4,132	4,139	4,160	4,185	4,224	4,243	4,259
울산	1,462	1,477	1,512	1,544	1,523	1,540	1,557	1,590	1,600	1,606	1,626	1,649
세종	536	541	543	549	555	548	564	563	565	568	574	579
경기	21,987	22,142	22,424	22,642	22,844	23,053	23,204	23,351	23,520	23,653	23,901	24,079
강원	2,561	2,574	2,601	2,612	2,639	2,649	2,662	2,673	2,685	2,678	2,682	2,685
충북	3,199	3,218	3,243	3,281	3,301	3,326	3,355	3,354	3,382	3,373	3,403	3,425
충남	4,589	4,601	4,677	4,749	4,799	4,820	4,875	4,901	4,963	4,978	5,010	5,059
전북	4,228	4,252	4,319	4,367	4,406	4,432	4,456	4,489	4,503	4,500	4,523	4,538
전남	4,709	4,745	4,795	4,838	4,915	4,955	5,023	5,051	5,079	5,088	5,127	5,201
경북	4,604	4,647	4,711	4,760	4,819	4,857	4,871	4,888	4,921	4,943	4,995	5,048
경남	7,435	7,483	7,563	7,647	7,685	7,724	7,791	7,859	7,917	7,968	8,023	8,093
제주	1,471	1,484	1,507	1,518	1,531	1,537	1,555	1,560	1,559	1,573	1,587	1,602

표 5-20 시도별 ·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액 (2022)

(단위: 천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96,950,865	194,776,419	201,356,316	205,103,751	208,631,179	209,053,925	210,415,357	211,797,123	212,000,142	215,963,825	216,500,471	221,276,575
서울	40,088,938	39,688,359	40,968,352	41,811,255	42,200,813	42,327,122	42,593,409	42,890,310	42,871,533	43,641,190	43,721,736	44,723,180
부산	15,655,891	15,440,209	16,031,816	16,309,801	16,459,380	16,482,550	16,580,024	16,713,064	16,735,124	17,108,812	17,082,047	17,497,749
대구	9,955,361	9,799,262	10,205,054	10,280,191	10,480,641	10,470,995	10,538,210	10,562,256	10,610,119	10,850,000	10,754,470	11,072,672
인천	11,367,143	11,204,545	11,612,172	11,914,446	12,010,574	11,991,603	12,050,203	12,116,505	12,146,681	12,382,261	12,450,549	12,731,082
광주	9,194,710	9,113,556	9,384,389	9,482,687	9,609,162	9,619,330	9,694,763	9,709,252	9,704,430	9,900,522	9,878,437	10,167,179
대전	7,320,258	7,296,055	7,400,617	7,462,201	7,622,566	7,698,894	7,723,320	7,750,196	7,767,655	7,924,725	7,922,822	8,057,558
울산	2,481,729	2,438,992	2,534,634	2,617,763	2,602,761	2,624,156	2,654,874	2,725,000	2,728,262	2,755,041	2,798,972	2,874,786
세종	900,417	896,983	921,886	944,559	966,543	948,624	978,979	968,641	957,632	980,019	978,782	991,439
경기	43,272,831	42,967,631	44,322,904	45,306,383	46,093,125	46,285,607	46,578,318	46,941,016	47,103,449	47,739,492	48,104,682	48,996,303
강원	4,635,004	4,517,401	4,689,066	4,759,418	4,946,352	4,928,903	4,926,647	4,945,998	4,904,937	4,961,313	4,959,501	5,137,016
충북	5,960,147	5,860,533	6,025,920	6,116,105	6,309,870	6,313,768	6,364,934	6,358,724	6,350,349	6,486,995	6,502,683	6,645,192
충남	7,857,035	7,773,417	8,090,192	8,261,607	8,441,659	8,456,446	8,534,451	8,583,957	8,619,087	8,770,675	8,784,587	8,928,490
전북	7,492,619	7,331,536	7,672,864	7,703,402	8,021,941	8,000,288	8,035,900	8,085,882	8,070,682	8,236,130	8,190,990	8,337,975
전남	7,933,251	7,881,228	8,150,607	8,312,191	8,529,180	8,542,138	8,674,018	8,726,591	8,755,267	8,907,823	8,970,628	9,167,941
경북	7,716,838	7,615,591	7,947,160	8,074,397	8,362,375	8,353,962	8,361,300	8,397,992	8,345,194	8,623,694	8,636,564	8,907,405
경남	12,487,837	12,322,621	12,689,748	13,003,265	13,176,616	13,186,457	13,308,585	13,460,040	13,468,054	13,769,405	13,848,677	14,091,606
제주	2,630,856	2,628,500	2,708,933	2,744,079	2,797,622	2,823,084	2,817,423	2,861,698	2,861,687	2,925,727	2,914,343	2,949,002

06-1
연 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An overview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providing organization and provider

지표 정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공기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공모에 의거 심사를 통해 지정되며, 활동보조기관,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기관으로 구분된다. 활동지원인력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로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등 자격기준은 활동내역에 따라 상이하다. 본 지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별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청에 지정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결제이력이 있는 제공기관 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활동지원인력 수

표 5-2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2015~2022)

(단위: 개소, 명)

구분	제공기관 수								제공 인력 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862	883	904	908	919	952	1,002	1,027	52,761	58,102	62,629	68,673	78,044	87,908	98,469	106,872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표 5-22 월별 · 시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수 (2022)

(단위: 개소)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009	1,010	1,011	1,012	1,015	1,015	1,020	1,019	1,022	1,023	1,025	1,027
서울	142	141	138	139	141	140	140	143	144	148	149	151
부산	73	72	72	72	71	71	72	72	72	72	72	71
대구	36	36	37	38	38	38	36	37	38	38	39	40
인천	49	49	50	49	47	47	48	47	47	46	48	49
광주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3
대전	22	22	22	22	22	21	21	21	22	22	21	21
울산	14	14	14	14	14	14	14	13	13	13	12	12
세종	8	8	9	9	8	8	8	8	8	8	8	8
경기	200	203	202	203	207	207	208	206	205	203	203	202
강원	43	46	43	44	43	44	44	43	43	43	43	43
충북	36	35	35	35	36	36	36	36	36	36	36	36
충남	53	54	57	57	57	58	59	57	58	57	57	57
전북	57	57	57	57	57	58	58	58	58	58	58	58
전남	73	71	72	72	72	72	73	73	72	73	73	72
경북	69	69	69	68	68	67	70	72	72	72	72	72
경남	92	91	92	91	92	92	91	91	92	92	92	92
제주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수는 1건 이상 결제이력이 있는 기관 수이며, 합계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제공기관 수의 합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22	월

* ①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표 5-23 시도별 ·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수 (2022)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97,940	98,814	101,876	103,011	101,986	102,309	103,263	104,514	104,952	104,811	105,922	106,872
서울	18,917	18,721	19,693	19,708	18,683	18,865	19,560	19,724	19,778	19,905	20,155	20,412
부산	7,144	7,172	7,420	7,467	7,373	7,412	7,473	7,578	7,620	7,598	7,724	7,796
대구	4,235	4,275	4,505	4,709	4,623	4,592	4,332	4,153	4,185	4,132	4,161	4,209
인천	4,718	4,640	4,975	4,979	4,871	4,865	4,884	4,843	4,858	4,864	4,903	4,967
광주	4,457	4,462	4,525	4,568	4,562	4,567	4,604	4,653	4,638	4,640	4,686	4,859
대전	3,399	3,605	3,433	3,465	3,471	3,333	3,355	3,372	3,409	3,413	3,444	3,462
울산	1,336	1,353	1,502	1,538	1,421	1,421	1,453	1,403	1,375	1,347	1,382	1,403
세종	1,035	866	951	959	888	893	914	918	935	933	942	956
경기	23,691	24,503	24,551	24,842	25,502	25,174	24,945	25,534	25,588	25,379	25,667	25,826
강원	2,130	2,265	2,135	2,285	2,153	2,408	2,419	2,172	2,185	2,190	2,171	2,190
충북	3,017	2,930	2,971	3,005	3,019	3,034	3,052	3,060	3,077	3,081	3,092	3,102
충남	3,913	4,032	4,585	4,718	4,663	4,711	4,778	4,729	4,911	4,796	4,827	4,873
전북	3,527	3,570	3,621	3,667	3,700	3,886	3,913	3,935	3,941	3,960	4,002	3,989
전남	4,229	4,174	4,358	4,399	4,440	4,503	4,571	4,612	4,574	4,679	4,710	4,613
경북	4,309	4,313	4,396	4,357	4,406	4,442	4,749	5,402	5,426	5,447	5,505	5,588
경남	6,664	6,707	6,996	7,092	6,959	6,943	6,986	7,141	7,166	7,139	7,229	7,301
제주	1,219	1,226	1,259	1,253	1,252	1,260	1,275	1,285	1,286	1,308	1,322	1,326

07 대 표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Number of the child care facilit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users

지표 정의

장애아 어린이집은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보다 장애아가 많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구분한다. 이용 아동은 각각 시설의 연도 말 이용 현원을 의미한다.

• 본 지표를 통해 장애아 보육정책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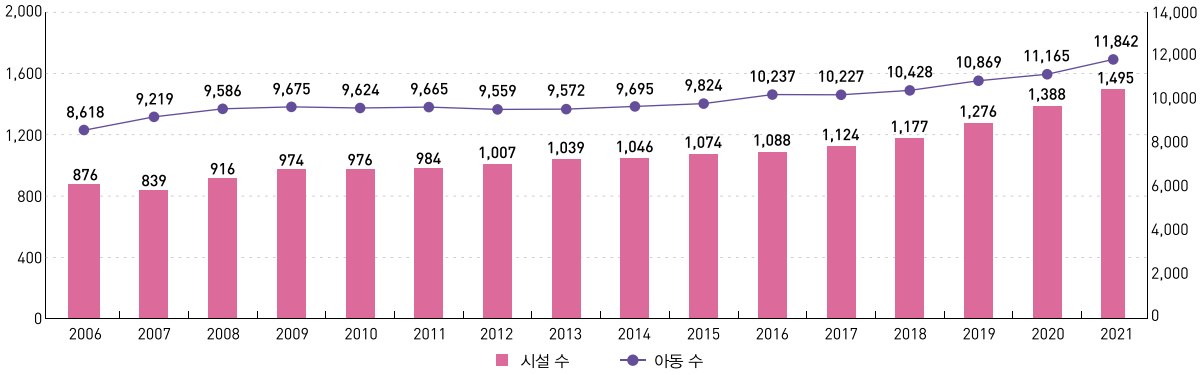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및 이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현 인원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통합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및 이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현 인원

그림 5-7 장애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인원 (2006~2021)

(단위: 개소, 명)



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수와 장애아동 현원 합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표 5-24 유형별 장애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인원 (2006~2021)

(단위: 개소, 명)

유형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설 수	장애아 전문	144	154	160	168	166	169	171	172	174	175	177	178	177	176	177	178
	장애아 통합	732	685	756	806	810	815	836	867	872	899	911	946	1,000	1,100	1,211	1,317
이용 아동 수	장애아 전문	5,406	5,887	6,068	6,206	6,137	6,152	5,994	5,883	5,860	5,895	6,158	6,161	6,239	6,301	6,206	6,264
	장애아 통합	3,212	3,332	3,518	3,469	3,487	3,513	3,565	3,689	3,835	3,929	4,079	4,066	4,189	4,568	4,959	5,578
시설 소계		876	839	916	974	976	984	1,007	1,039	1,046	1,074	1,088	1,124	1,177	1,276	1,388	1,495
이용 아동 소계		8,618	9,219	9,586	9,675	9,624	9,665	9,559	9,572	9,695	9,824	10,237	10,227	10,428	10,869	11,165	11,842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2004	2021	1년

표 5-25 시도별 · 유형별 장애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인원 (2021)

(단위: 개소, 명)

시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합계	
	시설 수	이용 아동	시설 수	이용 아동	시설 수	이용 아동
전국	177	6,264	1,317	5,578	1,494	11,842
서울	8	193	388	1,810	396	2,003
부산	16	528	58	190	74	718
대구	17	771	10	74	27	845
인천	6	117	87	512	93	629
광주	11	502	1	12	12	514
대전	4	92	24	75	28	167
울산	9	365	18	117	27	482
세종	1	24	7	33	8	57
경기	21	626	420	1,969	441	2,595
강원	4	125	19	107	23	232
충북	7	224	10	34	17	258
충남	11	315	30	92	41	407
전북	10	335	11	45	21	380
전남	13	538	17	56	30	594
경북	14	708	21	129	35	837
경남	21	667	32	156	53	823
제주	4	134	58	167	62	301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통계, 2022

08
대 표

특수교육 대상자 수

Number of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지표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 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한 장애영유아 및 학생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영아 및 학생 수

표 5-26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2008~2022)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54	103,695
장애영아	-	288	290	356	403	578	680	742	656	5,986	6,212	6,521	6,975	369	359
유치원	3,236	3,303	3,225	3,367	3,675	4,190	4,219	4,744	5,186					7,197	8,248
초등학교	33,974	34,035	35,294	35,124	34,458	33,518	33,184	33,591	33,770	35,505	38,031	41,091	43,205	44,814	48,448
중학교	16,833	17,946	19,375	20,508	21,535	22,241	22,159	21,108	19,793	19,218	18,788	18,462	19,140	20,212	21,462
고등학교	15,686	17,553	19,111	20,439	21,649	22,466	22,973	23,422	23,943	28,644	27,749	26,884	26,100	20,169	19,867
전공과	1,755	2,062	2,416	2,871	3,292	3,640	4,063	4,460	4,602					5,393	5,311

주: 장애영아는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등임.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표 5-27 장애유형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2008~2022)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54	103,695
시각장애	2,103	2,113	2,398	2,315	2,303	2,220	2,130	2,088	2,035	2,026	1,981	1,937	1,908	1,826	1,753
청각장애	3,073	3,385	3,726	3,676	3,744	3,666	3,581	3,491	3,401	3,358	3,268	3,225	3,132	3,026	2,961
지적장애	40,222	40,601	42,690	45,132	46,265	47,120	47,667	47,716	47,258	48,084	48,747	49,624	50,693	51,788	53,718
지체장애	8,788	9,659	10,367	10,727	11,279	11,233	11,209	11,134	11,019	10,777	10,439	10,200	9,928	9,695	9,639
정서행동장애	7,681	3,537	3,588	2,817	2,713	2,754	2,605	2,530	2,221	2,269	2,221	2,182	1,993	1,874	1,865
자폐성장애	-	4,647	5,463	6,809	7,922	8,722	9,334	10,045	10,985	11,422	12,156	13,105	13,917	15,215	17,024
의사소통장애	1,226	1,324	1,591	1,631	1,819	1,953	1,966	2,045	2,089	2,038	2,081	2,204	2,404	2,450	2,622
학습장애	6,754	6,526	6,320	5,606	4,724	4,060	3,362	2,770	2,327	2,040	1,627	1,409	1,226	1,114	1,078
건강장애	1,637	1,945	2,174	2,229	2,195	2,157	2,029	1,935	1,675	1,626	1,758	1,763	1,785	1,799	1,948
발달지체	-	1,450	1,394	1,723	2,048	2,748	3,395	4,313	4,940	5,713	6,502	7,309	8,434	9,367	11,087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표 5-28 교육환경별 특수교육 대상자 수 (2008~2022)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09	103,695
일반학교 일반학급	10,227	12,006	13,746	14,741	15,647	15,930	15,648	15,622	15,344	15,590	15,595	15,687	16,061	16,600	17,514
일반학교 특수학급	37,857	39,380	42,021	43,183	44,433	45,181	45,803	46,351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57,948
특수학교	23,400	23,606	23,776	24,580	24,720	25,138	25,288	25,531	25,467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27,979
특수교육지원센터	-	195	168	161	212	384	539	563	494	401	418	375	316	216	254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08	2022	1년

*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서 최초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아 특수교육실태조사가 실시됨.

08-1
연 관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Inclusion rate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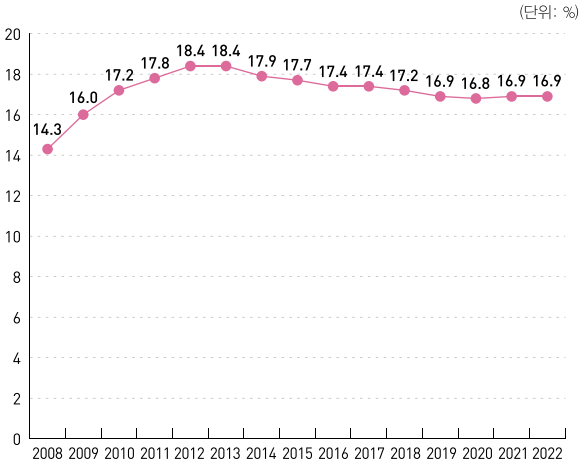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전일제 통합학급에서 완전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지표는 장애학생 개개인이 성공적으로 질 높은 통합교육을 제공받는지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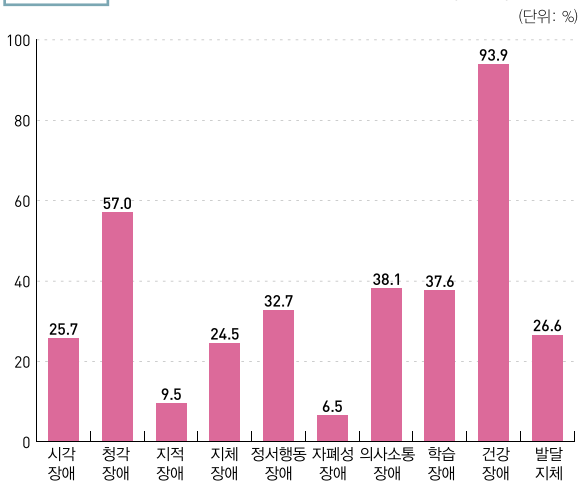
- $\frac{\text{일반학교 일반 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text{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 수}} \times 100$

그림 5-8 전일제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0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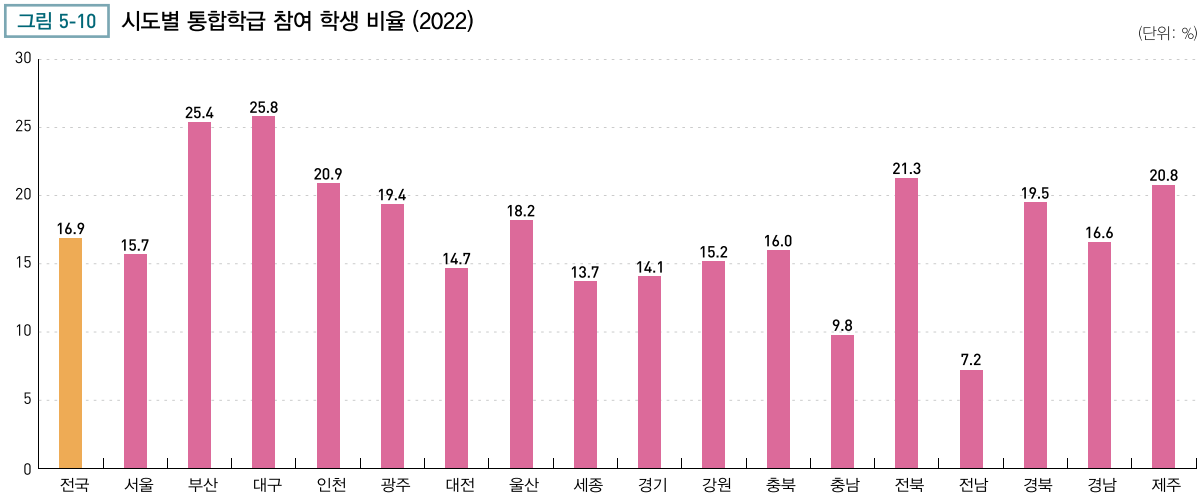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그림 5-9 장애유형별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22)



자료: 교육부, 2022 특수교육통계, 2022

그림 5-10 시도별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22)



자료: 교육부, 2022 특수교육통계,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08	2022	1년

*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서 최초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아 특수교육실태조사가 실시됨.

09
대 표

장애인 교육 수준

Education statu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조사대상 장애인의 최종학력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따라 측정한 값의 분율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교육 수준을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3년제 이하), 대학(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과 같이 8점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frac{\text{교육 수준(최종학력)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장애인 수}}{\text{조사대상 장애인 수}} \times 100$$

표 5-29 장애유형별 장애인 교육 수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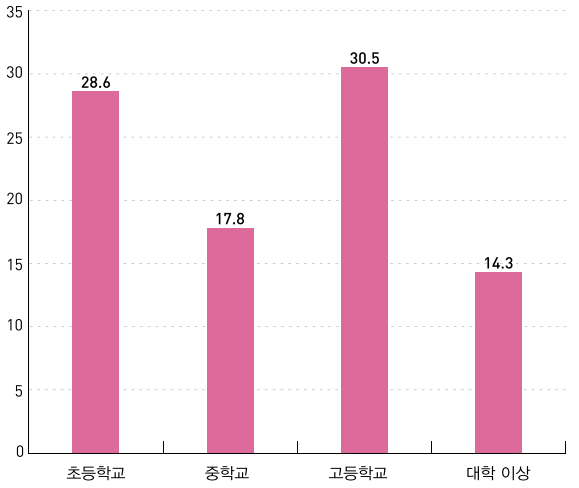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전체	100.0	8.9	28.6	17.8	30.5	14.3
지체장애	100.0	9.1	28.9	20.1	27.9	14.0
뇌병변 장애	100.0	6.6	28.3	18.2	32.3	14.7
시각장애	100.0	7.5	27.5	14.7	31.7	18.4
청각장애	100.0	16.4	37.6	16.5	19.9	9.7
언어장애	100.0	5.3	28.2	18.2	36.5	11.8
지적장애	100.0	6.5	25.2	13.4	45.6	9.3
자폐성 장애	100.0	0.0	41.9	8.2	38.3	11.6
정신장애	100.0	1.6	13.9	15.2	47.1	22.3
신장장애	100.0	4.2	16.1	14.1	39.5	26.2
심장장애	100.0	1.5	17.4	16.1	47.4	17.7
호흡기 장애	100.0	1.1	30.8	24.2	34.5	9.4
간장애	100.0	0.0	13.9	15.8	41.6	28.7
안면장애	100.0	3.2	19.3	13.0	39.8	24.8
장루·요루장애	100.0	5.8	29.5	20.2	32.1	12.4
뇌전증 장애	100.0	2.3	14.9	16.0	45.7	21.1

주 : 만 7세 이상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1

그림 5-11 학령별 장애인 교육 수준 (2020)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1990	2020	3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1

10
대 표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장애인 취업자와 취업률,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장애인 실업자와 실업률,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 장애인의 경제활동 전반을 진단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 $\frac{\text{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수}}{\text{장애인 인구수}} \times 100$

• 비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 장애인 인구수 –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수

표 5-30 일반특성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2021)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체	2016	2,441,165	941,050	880,090	60,960	1,500,115	38.5	6.5	36.1
	2017	2,460,080	953,008	898,475	54,533	1,507,072	38.7	5.7	36.5
	2018	2,495,043	922,897	861,648	61,249	1,572,146	37.0	6.6	34.5
	2019	2,526,201	941,136	881,890	59,247	1,585,065	37.3	6.3	34.9
	2020	2,562,873	949,047	893,392	55,654	1,613,826	37.0	5.9	34.9
	2021	2,574,907	959,950	891,804	68,146	1,614,957	37.3	7.1	34.6
성별	남성	1,482,416	697,101	649,036	48,065	785,315	47.0	6.9	43.8
	여성	1,092,491	262,849	242,768	20,081	829,642	24.1	7.6	22.2
연령대별	15~29세	129,917	51,385	46,965	4,420	78,532	39.6	8.6	36.2
	30~39세	122,303	76,695	68,937	7,758	45,608	62.7	10.1	56.4
	40~49세	242,691	143,630	133,464	10,166	99,061	59.2	7.1	55.0
	50~59세	451,634	241,544	227,320	14,225	210,090	53.5	5.9	50.3
	60세 이상	1,628,362	446,696	415,118	31,578	1,181,666	27.4	7.1	25.5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453,046	377,908	351,007	26,902	1,075,138	26.0	7.1	24.2
	고졸	753,280	348,714	323,537	25,177	404,566	46.3	7.2	43.0
	대졸 이상	368,581	233,328	217,260	16,067	135,254	63.3	6.9	58.9
장애정도별	중증	792,521	188,423	173,008	15,415	604,098	23.8	8.2	21.8
	경증	1,782,386	771,527	718,796	52,731	1,010,859	43.3	6.8	40.3
장애유형별	지체장애	1,205,579	552,865	516,256	36,609	652,714	45.9	6.6	42.8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	244,846	39,754	33,549	6,205	205,092	16.2	15.6	13.7
	시각장애	250,859	107,972	99,600	8,372	142,887	43.0	7.8	39.7
	시각 외 감각장애	410,824	139,747	132,120	7,627	271,077	34.0	5.5	32.2
	정신적 장애	313,019	76,433	69,903	6,530	236,586	24.4	8.5	22.3
	발달장애*	209,497	63,114	58,602	4,512	146,383	30.1	7.1	28.0
	신체내부장애	149,780	43,178	40,376	2,802	106,602	28.8	6.5	27.0
지역별	서울	385,485	120,204	111,763	8,441	265,281	31.2	7.0	29.0
	경기도	554,220	215,182	194,897	20,285	339,038	38.8	9.4	35.2
	광역시도	628,137	227,502	213,052	14,449	400,635	36.2	6.4	33.9
	기타 시도	1,007,065	397,063	372,092	24,970	610,002	39.4	6.3	36.9

주: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발달장애는 정신적 장애에 포함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21	1년

10-1
연 관

장애인 고용률

Employment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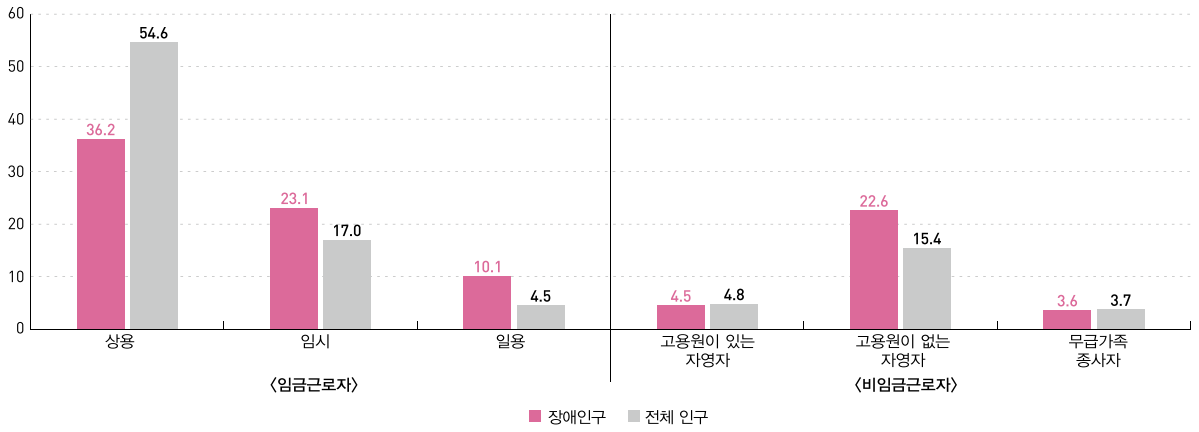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구 중 취업인구 비율을 의미하며, 생산가능 장애인구 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로 정의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장애인 취업자 수}}{\text{생산가능 장애인 인구수}} \times 100$

그림 5-12 장애인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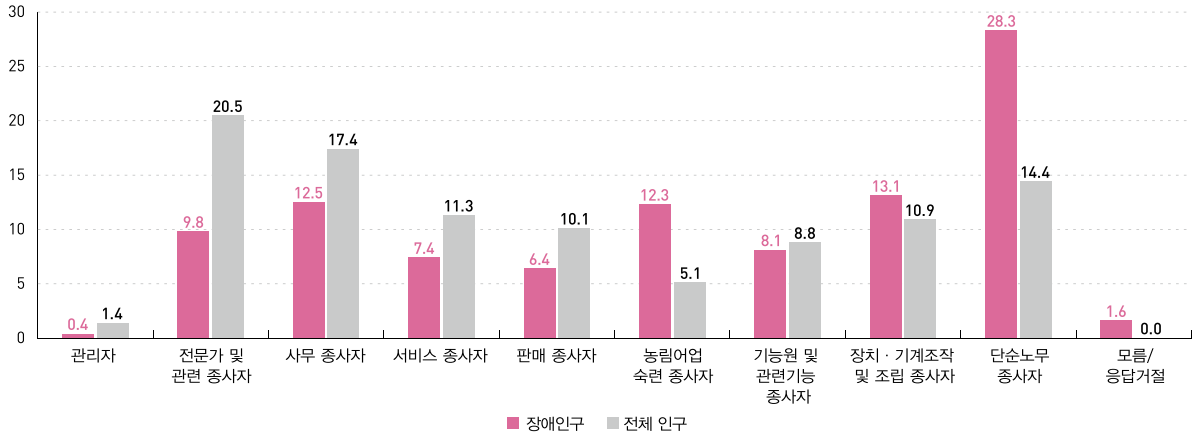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1)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1

그림 5-13 장애인 취업자 직업별 구성비 (2021)

(단위: %)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1)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21	1년

10-2
연 관

장애인 실업률

Unemployment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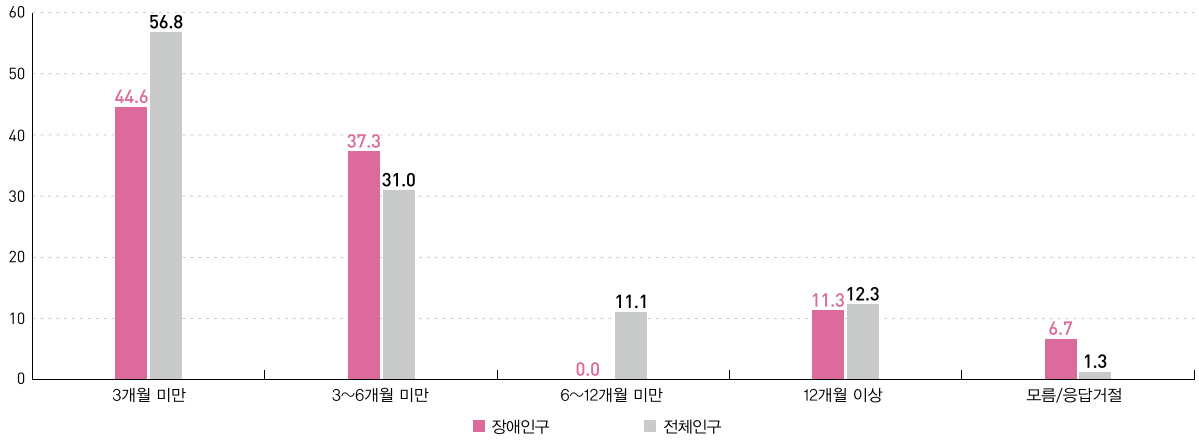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측정 산식

$$\frac{\text{장애인 실업자 수}}{\text{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수}} \times 100$$

그림 5-14 장애인 실업자 구직기간별 구성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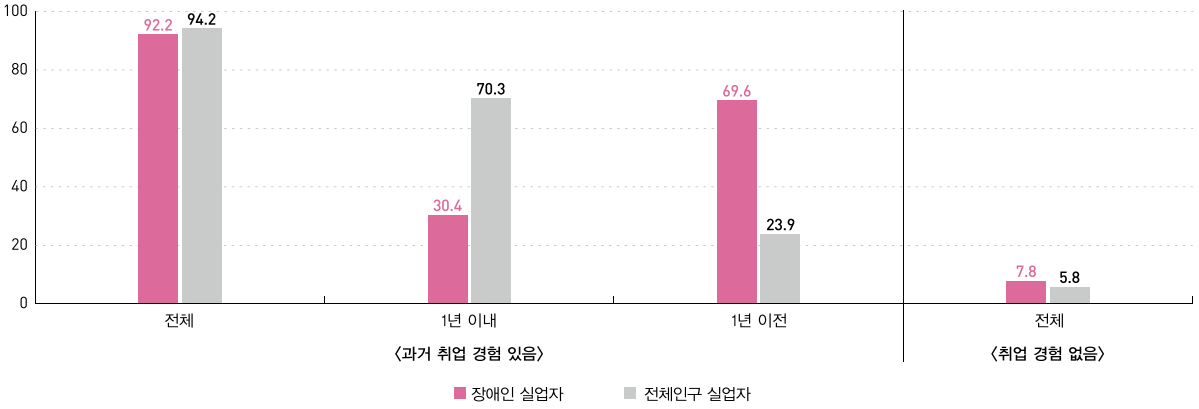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1)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1

그림 5-15 장애인 실업자의 과거 취업 경험 구성비 (2021)

(단위: %)



주: 전체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1)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21	1년

11 대 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Current status of mandatory employ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본 지표를 통해서 의무고용제도 이행 현황을 파악한다.

• 본 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및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frac{\text{장애인 근로자 수}}{\text{상시 근로자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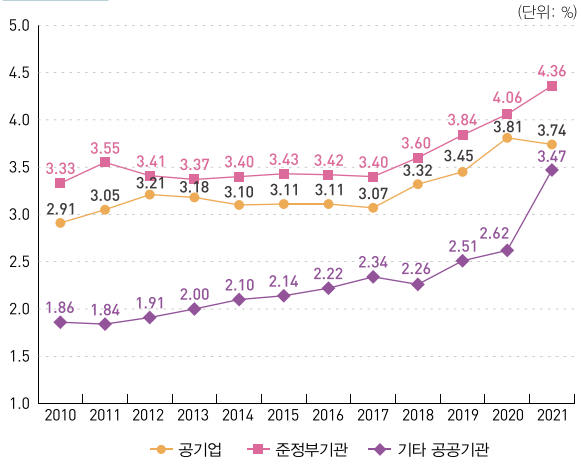
표 5-3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10~2021)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24	2.28	2.35	2.48	2.54	2.62	2.66	2.76	2.78	2.92	3.08	3.10
정부부문	2.39	2.48	2.61	2.85	2.91	3.11	3.50	3.30	3.20	3.40	3.75	3.83
공무원	2.40	2.52	2.57	2.63	2.65	2.80	2.81	2.88	2.78	2.86	3.00	2.97
공무원 아닌 근로자	2.36	2.35	2.75	3.51	3.75	4.05	4.19	4.61	4.32	5.06	5.54	5.83
공공기관	2.56	2.72	2.80	2.81	2.91	2.93	2.96	3.02	3.16	3.33	3.52	3.78
민간기업	2.19	2.22	2.27	2.39	2.45	2.51	2.56	2.64	2.67	2.79	2.91	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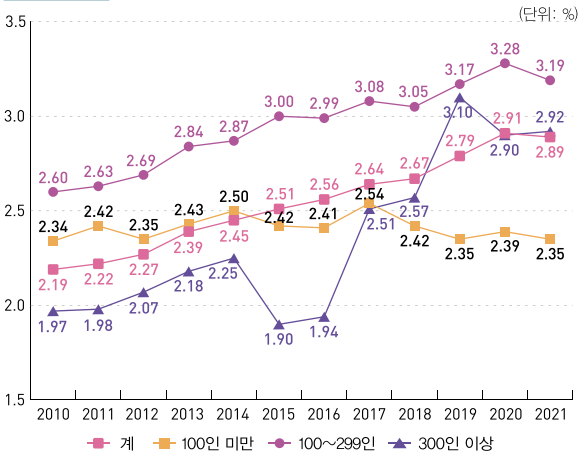
주: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각 연도

그림 5-16 공공기관 유형별 장애인 고용률 (2010~2021)



주: 1)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2) 2014년에 지방공기업, 2019년 출연기관이 별도로 산정되었음.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각 연도

그림 5-17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현황 (2010~2021)



주: 1) 2008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1.70이며 50~299인 기업은 1.93임.
2009년부터 사업장 규모가 세분화됨.
2)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06	2021	1년

12
대 표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Average wage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recent 3 months

지표 정의

취업장애인은 조사대상 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의미하며,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이들의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말한다.

- 취업한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취업장애인의 월소득 및 취업 분야를 파악하여 장 · 단기 장애인 소득보장정책과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취업장애인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표 5-32 연도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단위: 명, 만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27,712	213.8	313,384	227.4	333,105	220.5	314,515	239.2	319,752	236.6	338,258	267.6	330,662	263.0	309,932	261.6
	임시근로자	132,818	80.3	127,363	90.7	160,827	92.4	156,642	90.9	156,779	102.0	180,047	92.7	191,096	92.8	197,976	98.5
	일용근로자	98,198	100.0	89,303	109.1	98,463	120.5	107,997	126.3	88,516	133.2	83,321	136.5	70,283	129.3	89,486	140.3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328,438	111.4	307,479	117.1	361,473	122.5	344,808	119.3	337,390	124.6	359,234	129.8	360,284	127.6	409,322	139.0
	정규직	230,289	234.2	222,571	254.2	230,921	242.1	233,982	264.5	232,232	269.6	242,391	296.9	231,756	292.7	188,071	298.9
종사자 규모	1~4인	124,891	121.2	94,274	112.6	131,069	122.3	113,973	129.8	118,041	135.7	119,933	139.2	98,580	147.8	104,292	134.8
	5~49인	267,186	153.2	272,707	151.5	302,267	161.6	279,790	163.1	272,942	176.5	304,428	190.8	305,346	168.9	130,328	178.9
	50~299인	117,695	190.1	106,846	225.5	109,066	203.0	118,275	200.1	107,289	205.0	112,626	225.9	132,574	216.3	310,723	226.4
	300인 이상	45,456	258.3	51,700	306.3	41,969	292.8	52,918	324.9	61,275	270.4	52,661	325.9	54,112	346.5	48,777	326.4
합계		558,727	162.0	530,050	174.7	592,395	169.1	578,790	178.0	565,047	183.1	601,625	197.1	592,041	192.2	597,394	189.4
전체인구			223.4		231.4		241.2		242.3		255.8		264.3		268.1		273.4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21	1년

13 대 표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ility pension recipients

지표 정의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본 지표는 장애인연금의 수급자 수를 이용한다.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표 5-33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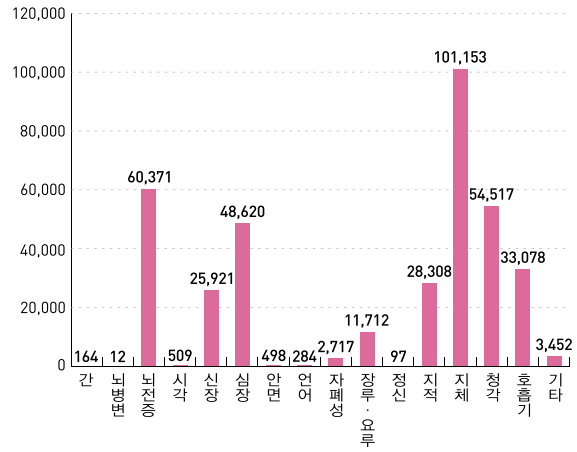
(단위: %, 명)

연도	수급률	총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시설)
2011	55.6	293,122	139,299	61,690	81,983	10,150
2012	59.0	305,913	134,322	55,824	88,070	27,697
2013	59.7	305,394	131,668	52,663	92,592	28,471
2014	64.5	328,414	130,428	51,512	118,157	28,317
2015	67.3	342,444	134,489	46,306	133,431	28,218
2016	68.4	350,161	134,432	45,085	142,769	27,875
2017	69.4	359,986	136,213	42,464	153,681	27,628
2018	70.0	364,712	146,606	34,539	155,812	27,755
2019	70.7	368,716	154,029	29,780	157,345	27,562
2020	72.2	375,759	161,806	26,413	159,355	27,974
2021	71.6	360,685	169,896	17,690	145,537	27,562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www.bokjiro.go.kr에서 2023.04.13. 인출)

그림 5-18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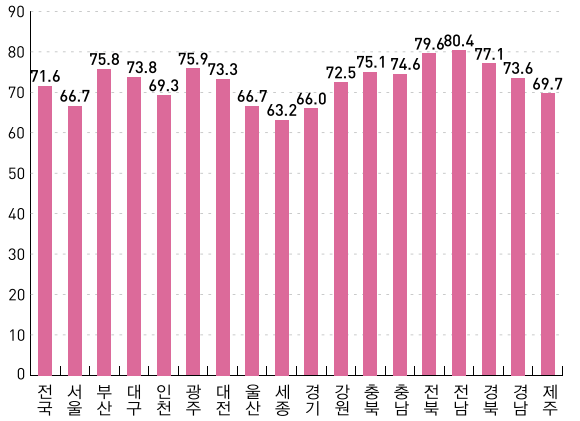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www.bokjiro.go.kr에서 2023.04.13. 인출)

그림 5-19 시도별 장애인연금 수급률 (2021)

(단위: %)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www.bokjiro.go.kr에서 2023.04.1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2010	2021	1년

13-1
연 관

장애수당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ility allowance recipients

지표 정의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일반 재가 및 보장시설)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은 3급(중복제외)과 4급~6급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측정 산식

- 장애수당 수급자 수

표 5-34 유형별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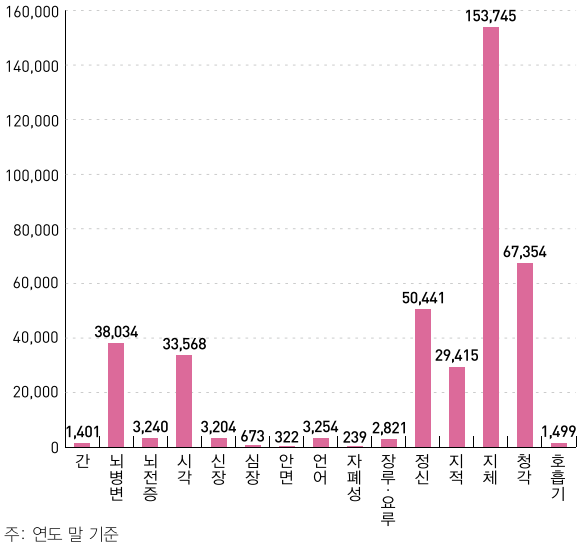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총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시설)	차상위
2010	308,243	212,914	11,202	84,127
2011	316,861	210,471	10,381	96,009
2012	318,483	204,717	15,428	98,338
2013	320,029	204,710	11,989	103,330
2014	320,318	207,819	11,766	100,733
2015	327,881	219,845	12,130	95,906
2016	336,224	223,744	12,528	99,952
2017	343,662	226,342	12,579	104,741
2018	365,706	234,141	13,112	118,453
2019	365,804	234,439	12,988	118,377
2020	378,946	241,211	13,022	124,713
2021	389,210	266,655	13,362	109,193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www.bokjiro.go.kr에서 2023.04.13. 인출)

그림 5-20 장애유형별 장애수당 수급자 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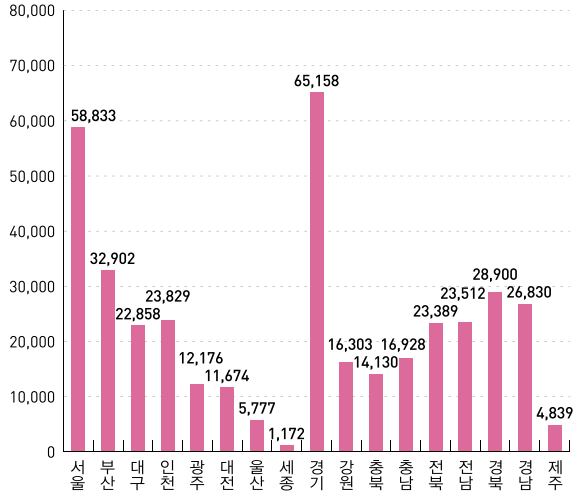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www.bokjiro.go.kr에서 2023.04.13. 인출)

그림 5-21 시도별 장애수당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www.bokjiro.go.kr에서 2023.04.1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지급 현황	2010	2021	1년

13-2
연 관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led children allowance recipients

지표 정의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측정 산식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표 5-35 유형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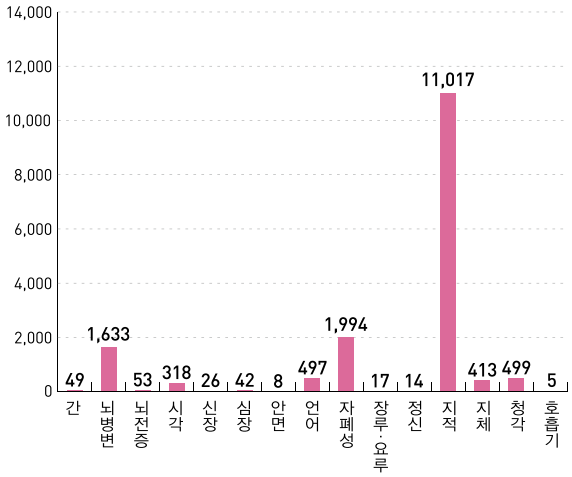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총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시설)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2010	23,057	12,637	7,982	4,655	6,308	4,229	2,079	4,112	3,231	881
2011	23,586	12,493	7,833	4,660	6,973	4,670	2,303	4,120	3,216	904
2012	22,813	11,541	7,104	4,437	7,090	4,664	2,426	4,182	3,186	996
2013	21,777	11,172	6,782	4,390	7,127	6,235	4,677	3,478	2,598	880
2014	21,121	10,818	6,511	4,307	6,388	4,518	2,230	3,915	2,916	999
2015	20,464	10,993	6,466	4,527	5,681	3,675	2,006	3,790	2,742	1,048
2016	19,934	10,652	6,197	4,455	5,771	3,668	2,103	3,511	2,500	1,011
2017	19,323	10,203	5,844	4,359	5,860	3,636	2,224	3,260	2,233	1,027
2018	18,568	9,758	5,483	4,275	5,727	3,527	2,200	3,083	2,040	1,043
2019	17,990	9,454	5,159	4,295	5,725	3,374	2,351	2,811	1,761	1,050
2020	16,565	8,262	3,900	4,362	5,926	3,141	2,785	2,377	1,303	1,074
2021	16,585	8,245	3,744	4,501	5,979	3,052	2,927	2,361	1,259	1,102

주: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장애수당 지급, 2010년부터 장애아동수당 지급,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구분별 연령구간별 수급자 수 (http://www.bokjiro.go.kr 에서 2023.04.13. 인출)

그림 5-22 장애유형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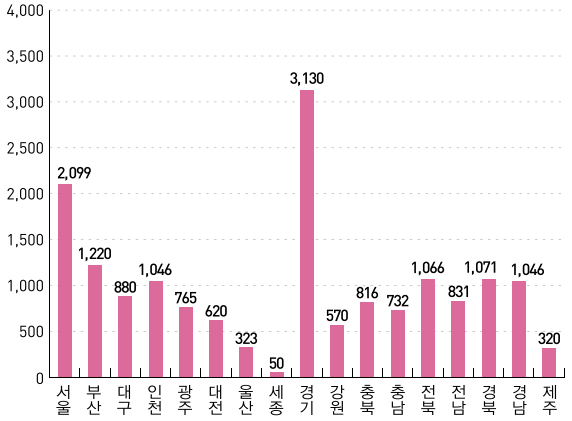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장애아동수당 장애유형별 성별 수급자 수 (http://www.bokjiro.go.kr에서 2023.04.13. 인출)

그림 5-23 시도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장애아동수당 (http://www.bokjiro.go.kr에서 2023.04.1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지급 현황	2010	2021	1년

14 대 표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led persons in near poverty group

지표 정의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장애수당(만 18세 이상의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등록장애인)과 장애아동수당(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지급)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지원 금액: 차상위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아동수당은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차상위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15만 원, 차상위 경증장애아동은 월 10만 원 지급

(2022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표 5-36 연도별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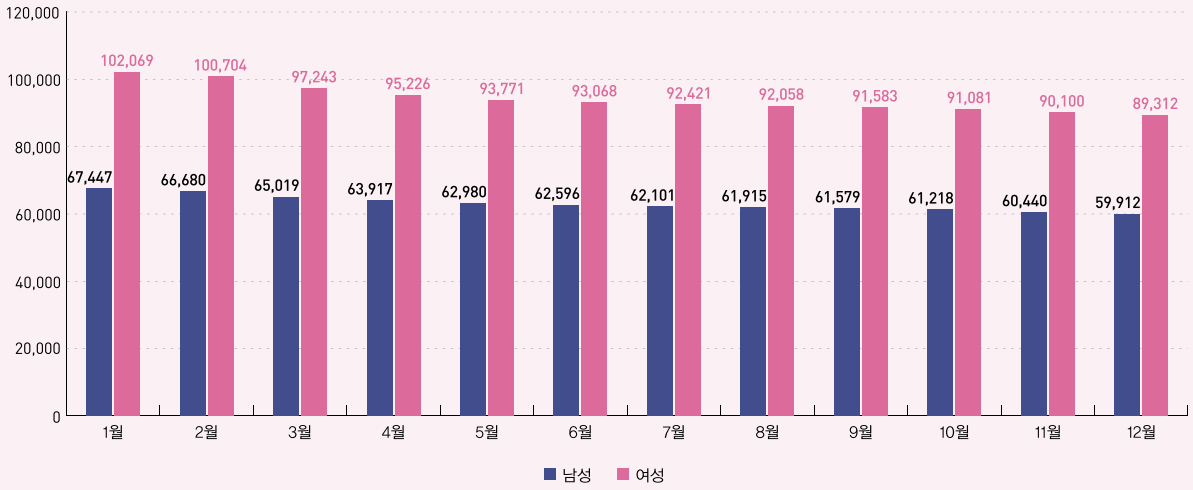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107,121	101,587	105,723	110,601	159,196	166,407	170,424	149,224

주: 각 연도 12월 기준

그림 5-24 월별 · 성별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1	월

표 5-37 시도별 · 월별 · 성별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남	67,447	66,680	65,019	63,917	62,980	62,596	62,101	61,915	61,579	61,218	60,440	59,912
	여	102,069	100,704	97,243	95,226	93,771	93,068	92,421	92,058	91,583	91,081	90,100	89,312
	계	169,516	167,384	162,262	159,143	156,751	155,664	154,522	153,973	153,162	152,299	150,540	149,224
서울	남	10,570	10,457	10,149	9,965	9,828	9,747	9,724	9,690	9,639	9,611	9,521	9,409
	여	12,741	12,516	12,097	11,822	11,630	11,565	11,487	11,432	11,337	11,278	11,163	11,044
	계	23,311	22,973	22,246	21,787	21,458	21,312	21,211	21,122	20,976	20,889	20,684	20,453
부산	남	4,953	4,825	4,669	4,567	4,497	4,480	4,477	4,460	4,442	4,437	4,374	4,341
	여	6,710	6,536	6,264	6,125	6,069	6,039	5,987	5,963	5,930	5,899	5,817	5,738
	계	11,663	11,361	10,933	10,692	10,566	10,519	10,464	10,423	10,372	10,336	10,191	10,079
대구	남	3,350	3,271	3,146	3,072	3,037	3,059	3,051	3,045	3,031	3,000	2,950	2,949
	여	4,828	4,694	4,444	4,316	4,273	4,282	4,274	4,279	4,264	4,260	4,234	4,206
	계	8,178	7,965	7,590	7,388	7,310	7,341	7,325	7,324	7,295	7,260	7,184	7,155
인천	남	3,822	3,793	3,709	3,649	3,564	3,537	3,515	3,528	3,523	3,509	3,466	3,439
	여	5,251	5,189	5,026	4,885	4,767	4,732	4,740	4,731	4,711	4,667	4,628	4,622
	계	9,073	8,982	8,735	8,534	8,331	8,269	8,255	8,259	8,234	8,176	8,094	8,061
광주	남	2,068	2,047	2,007	1,982	1,957	1,941	1,914	1,921	1,909	1,891	1,878	1,869
	여	3,036	2,990	2,903	2,864	2,827	2,803	2,792	2,805	2,808	2,784	2,759	2,738
	계	5,104	5,037	4,910	4,846	4,784	4,744	4,706	4,726	4,717	4,675	4,637	4,607
대전	남	1,916	1,886	1,839	1,815	1,792	1,770	1,753	1,747	1,747	1,749	1,735	1,729
	여	2,550	2,518	2,418	2,375	2,360	2,351	2,328	2,313	2,300	2,290	2,263	2,231
	계	4,466	4,404	4,257	4,190	4,152	4,121	4,081	4,060	4,047	4,039	3,998	3,960
울산	남	1,218	1,201	1,191	1,167	1,164	1,178	1,169	1,163	1,161	1,151	1,132	1,121
	여	1,692	1,670	1,638	1,611	1,604	1,590	1,576	1,564	1,561	1,558	1,543	1,534
	계	2,910	2,871	2,829	2,778	2,768	2,768	2,745	2,727	2,722	2,709	2,675	2,655
세종	남	223	219	217	222	215	218	207	201	201	198	192	195
	여	344	349	348	342	345	346	347	353	352	350	345	347
	계	567	568	565	564	560	564	554	554	553	548	537	542
경기	남	13,266	13,199	13,022	12,915	12,787	12,722	12,620	12,595	12,497	12,470	12,339	12,216
	여	17,102	17,053	16,828	16,656	16,429	16,366	16,261	16,212	16,161	16,096	15,957	15,795
	계	30,368	30,252	29,850	29,571	29,216	29,088	28,881	28,807	28,658	28,566	28,296	28,011
강원	남	2,860	2,828	2,734	2,660	2,620	2,595	2,573	2,572	2,554	2,526	2,475	2,454
	여	4,979	4,924	4,789	4,696	4,616	4,572	4,518	4,481	4,432	4,395	4,318	4,276
	계	7,839	7,752	7,523	7,356	7,236	7,167	7,091	7,053	6,986	6,921	6,793	6,730
충북	남	2,509	2,470	2,377	2,326	2,281	2,268	2,249	2,235	2,222	2,202	2,171	2,134
	여	4,223	4,144	3,903	3,791	3,716	3,686	3,660	3,627	3,606	3,581	3,538	3,511
	계	6,732	6,614	6,280	6,117	5,997	5,954	5,909	5,862	5,828	5,783	5,709	5,645
충남	남	2,820	2,795	2,698	2,637	2,569	2,571	2,554	2,549	2,544	2,533	2,512	2,482
	여	4,732	4,699	4,480	4,364	4,277	4,249	4,202	4,190	4,167	4,147	4,117	4,105
	계	7,552	7,494	7,178	7,001	6,846	6,820	6,756	6,739	6,711	6,680	6,629	6,587
전북	남	3,808	3,743	3,647	3,580	3,503	3,429	3,390	3,384	3,367	3,328	3,276	3,256
	여	7,434	7,304	7,005	6,821	6,720	6,644	6,593	6,566	6,539	6,497	6,414	6,365
	계	11,242	11,047	10,652	10,401	10,223	10,073	9,983	9,950	9,906	9,825	9,690	9,621
전남	남	4,124	4,060	3,932	3,836	3,785	3,736	3,671	3,632	3,595	3,548	3,490	3,457
	여	8,791	8,640	8,242	8,013	7,840	7,702	7,577	7,532	7,487	7,433	7,342	7,274
	계	12,915	12,700	12,174	11,849	11,625	11,438	11,248	11,164	11,082	10,981	10,832	10,731
경북	남	4,610	4,580	4,460	4,358	4,273	4,243	4,191	4,190	4,183	4,161	4,111	4,069
	여	8,620	8,539	8,149	7,981	7,850	7,789	7,761	7,741	7,686	7,665	7,585	7,523
	계	13,230	13,119	12,609	12,339	12,123	12,032	11,952	11,931	11,869	11,826	11,696	11,592
경남	남	4,536	4,512	4,443	4,398	4,342	4,348	4,300	4,261	4,231	4,176	4,103	4,093
	여	7,740	7,656	7,452	7,329	7,211	7,123	7,087	7,054	7,023	6,974	6,884	6,826
	계	12,276	12,168	11,895	11,727	11,553	11,471	11,387	11,315	11,254	11,150	10,987	10,919
제주	남	794	794	779	768	766	754	743	742	733	728	715	699
	여	1,296	1,283	1,257	1,235	1,237	1,229	1,231	1,215	1,219	1,207	1,193	1,177
	계	2,090	2,077	2,036	2,003	2,003	1,983	1,974	1,957	1,952	1,935	1,908	1,876

15
대 표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disability as % of GDP

지표 정의

OECD SOCX 기준 장애인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근로무능력 관련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로 발표되고 있으며,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어 있다.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지출되는 장애 관련 복지예산의 규모를 의미한다.

- 현금급여(Cash benefits)는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s), 산재보험(Pensions on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상병급여(Paid sick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로 구성되고, 현물급여(Benefits in kind)는 돌봄 및 가사보조서비스(Residential care/Home-help service),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 기타 현물급여(Other benefits in kind)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장애인복지 지출 (현금 + 현물급여)}}{\text{국가별 GDP}}$

유의사항 현금급여(Cash benefits) 중 상병급여(Paid sick leave)는 2010년부터 산재급여(Pensions on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로부터 분리되어 산출되고 있지만 본 글에서는 포함된 수치를 이용하였다.

표 5-38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규모 (2000~2020)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0.32	0.36	0.38	0.43	0.49	0.52	0.55	0.55	0.58	0.59	0.50	0.52	0.55	0.54	0.53	0.56	0.56	0.60	0.61	0.71	0.82
현금급여	0.23	0.25	0.26	0.30	0.32	0.34	0.34	0.36	0.36	0.35	0.33	0.33	0.34	0.34	0.34	0.34	0.33	0.33	0.34	0.39	0.41
현물급여	0.09	0.10	0.12	0.13	0.17	0.18	0.21	0.19	0.22	0.24	0.17	0.19	0.21	0.20	0.19	0.21	0.23	0.27	0.27	0.32	0.41

주: 2002~2019는 확정치, 2020은 예측치

자료: OECD SOCX Database,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3.04.1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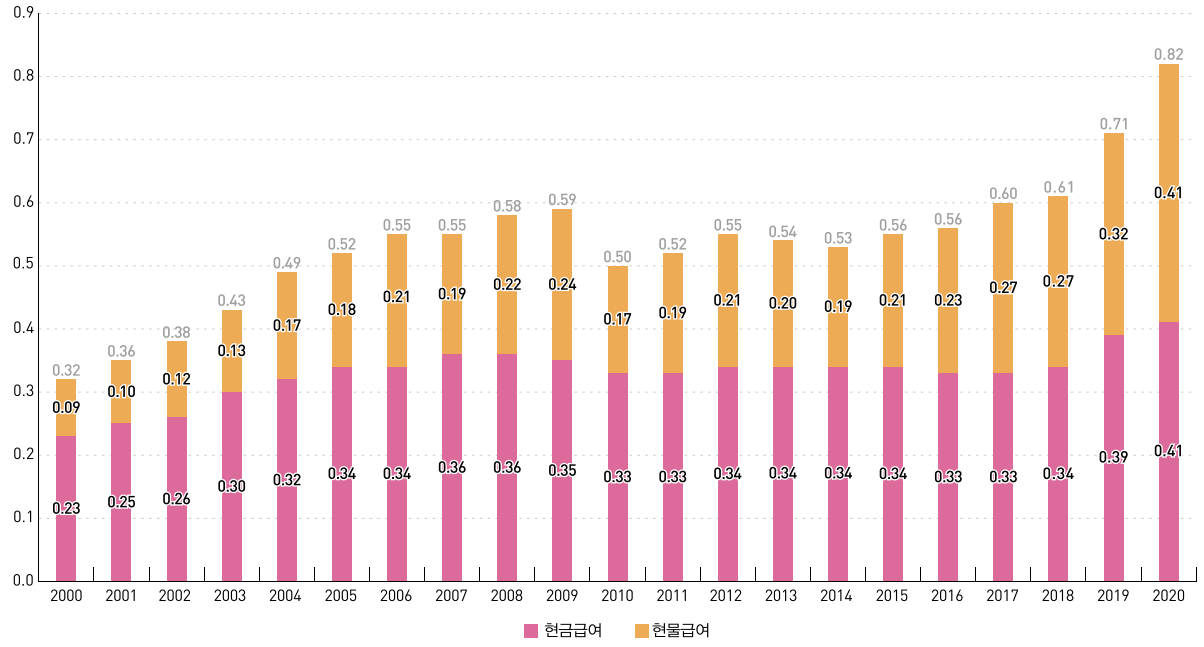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발표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1990	2020 [확정치 '08~'19]	2년

참고문헌 • OECD SOCX Database (2023.04.13.)

그림 5-25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중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비중 (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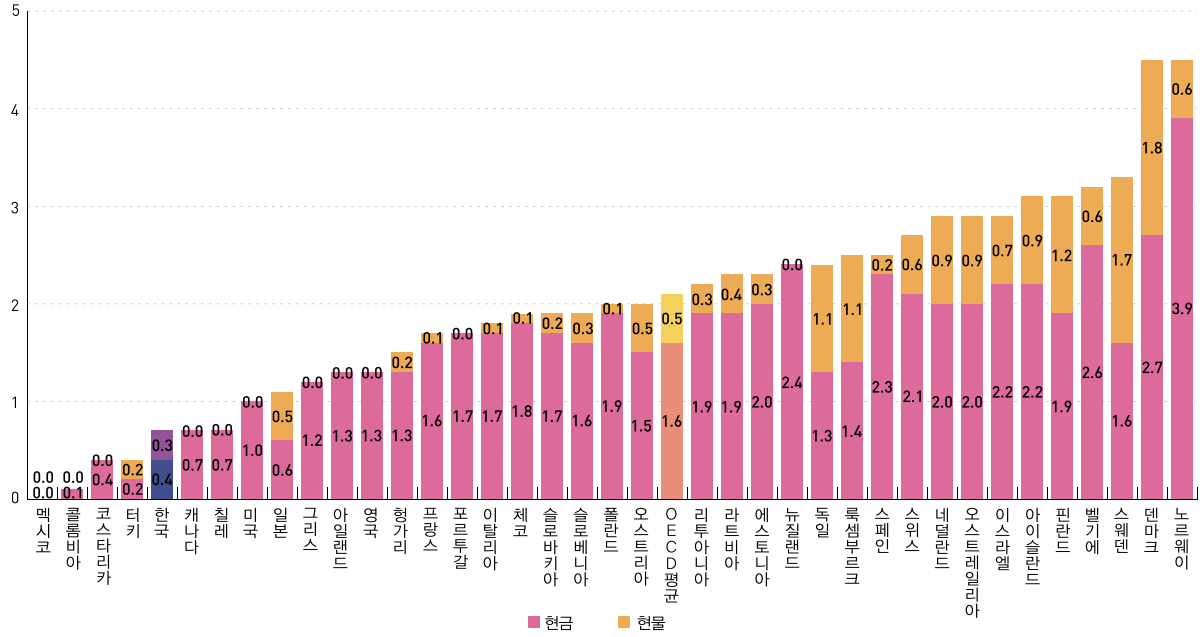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OCX Database,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3.04.13 인출)

그림 5-26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2019)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OCX Database,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3.04.13 인출)

6

근로

01 경제활동참가율
02 고용률
03 실업률
04 실업급여 수급자 수
05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06 총 근로시간
0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08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09 사회보험 가입률
10 산업재해율
11 저임금근로자 비율
12 시간급 최저임금
13 시간당 임금총액
14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15 자활사업 대상자 수
16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17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안정성	실업급여 수급자 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일자리의 질	총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사회보험 가입률	
	산업재해율	
근로빈곤	저임금근로자 비율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영향률
	시간당 임금총액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활	자활사업 대상자 수	자활사업 참여자 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01 대 표

경제활동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지표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만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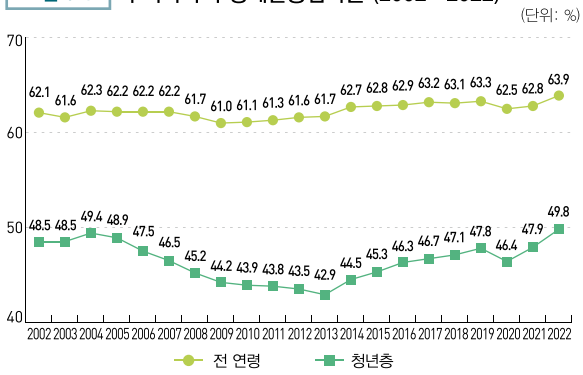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위해 활용 가능한 노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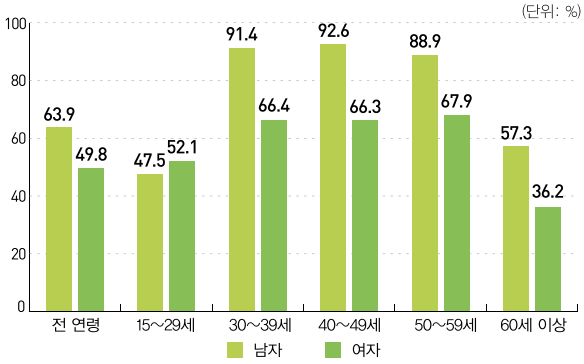
유의사항 OECD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연령 기준을 15~64세로 적용했음에 유의해야 함.

그림 6-1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2002~20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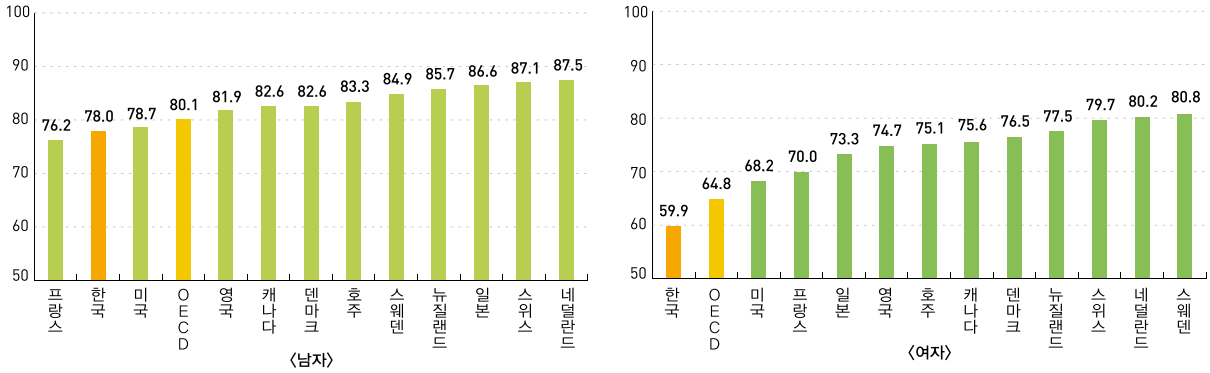
그림 6-2 성별 · 연령계층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20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3. 인출)

그림 6-3 성별 OECD 주요국가 경제활동참가율 (2021)

(단위: %)



주: 15세~64세 기준임.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3.05.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2	1개월

02 대 표

고용률

Employment rate

지표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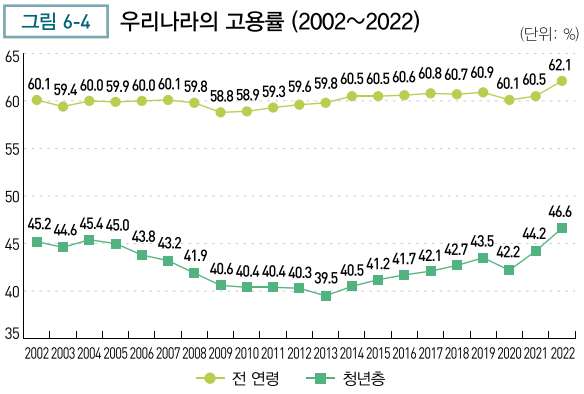
- 취업자는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시휴직자"이며, 고용률은 조사대상 기간에 인구 대비 노동을 공급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률은 노동력의 활용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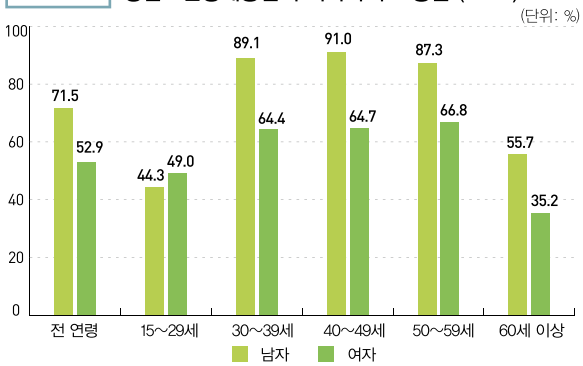
유의사항 OECD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연령 기준을 15~64세로 적용했음에 유의해야 함.

그림 6-4 우리나라의 고용률 (200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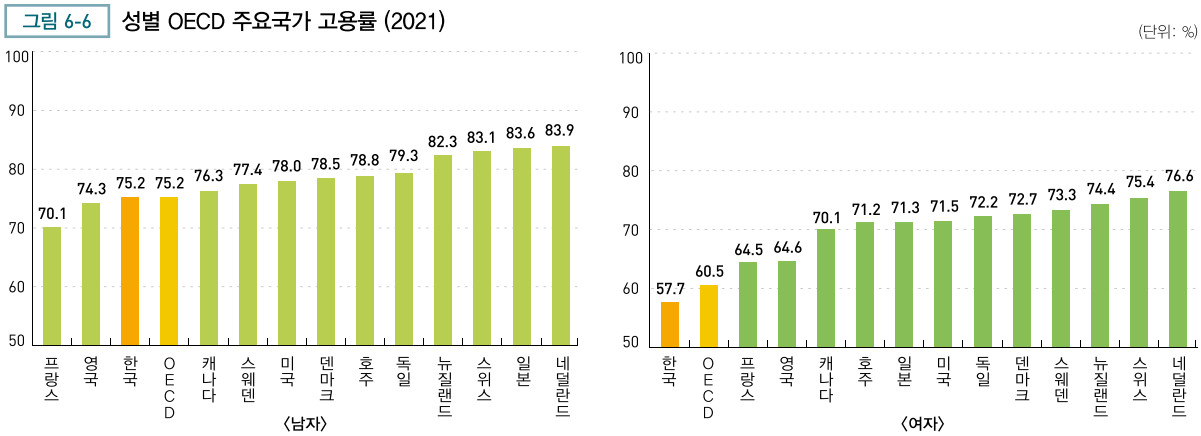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3. 인출)

그림 6-5 성별 · 연령계층별 우리나라의 고용률 (20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3. 인출)

그림 6-6 성별 OECD 주요국가 고용률 (2021)



주: 15세~64세 기준임.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3.05.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2	1개월

03
대 표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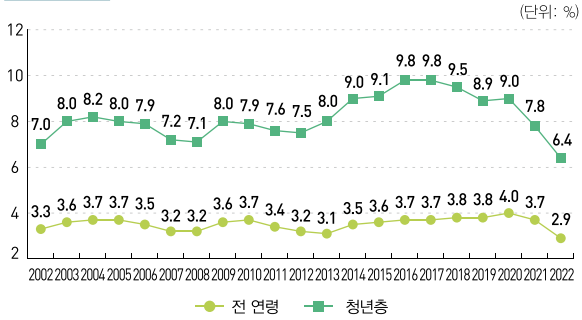
실업자는 조사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의미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별도로 파악하는 "고용보조지표"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고용시장 상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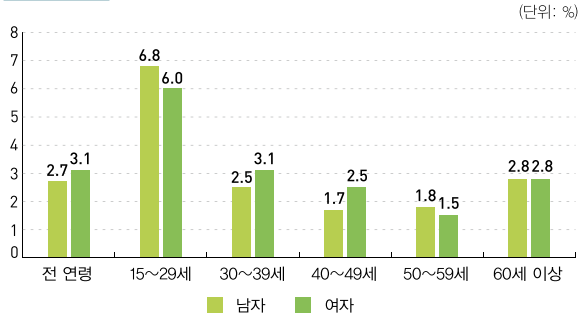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그림 6-7 우리나라의 실업률 (200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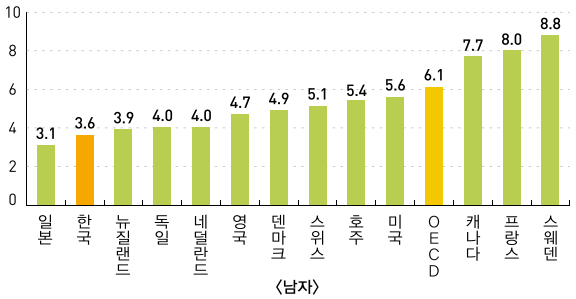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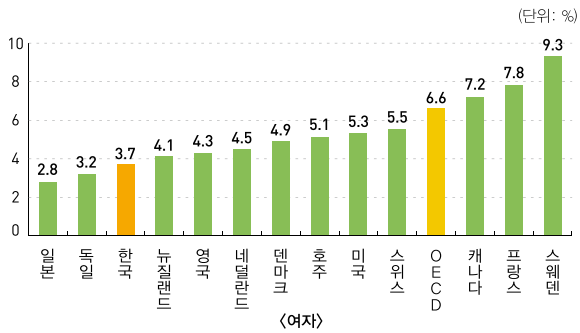
그림 6-8 성별 · 연령계층별 우리나라의 실업률 (20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3. 인출)

그림 6-9 성별 OECD 주요국가 실업률 (2021)





주: 15세~64세 기준임.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3.05.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2	1개월

표 6-1 시도별 실업률 (2008~2022)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3.2	3.6	3.7	3.4	3.2	3.1	3.5	3.6	3.7	3.7	3.8	3.8	4.0	3.7	2.9
서울	3.9	4.5	4.7	4.5	4.2	3.9	4.4	4.2	4.2	4.5	4.8	4.4	4.6	4.8	3.4
부산	3.8	4.3	3.6	3.6	3.9	3.8	3.8	4.1	3.9	4.6	4.1	3.7	4.2	3.4	3.0
대구	3.7	4.3	4.0	3.7	3.3	3.3	3.8	3.5	4.1	4.0	4.4	3.7	3.9	3.7	2.9
인천	3.9	4.5	5.0	4.7	4.5	4.1	4.7	5.0	4.9	4.6	4.3	4.4	4.6	4.0	3.3
광주	3.8	3.8	3.5	3.1	2.7	2.8	2.8	2.9	3.1	2.9	3.8	3.7	3.9	3.6	2.9
대전	3.7	3.7	3.7	3.6	3.7	3.0	3.4	3.4	3.2	3.4	4.2	4.2	4.4	3.3	2.4
울산	3.4	4.1	3.5	2.7	2.6	2.1	2.7	2.9	3.8	3.5	4.6	4.2	4.2	3.6	3.2
세종	-	-	-	-	-	-	-	-	-	2.3	2.3	2.7	2.8	2.1	2.0
경기	3.2	3.8	4.0	3.4	3.3	3.0	3.3	3.9	3.9	3.9	3.8	3.8	4.0	3.7	2.7
강원	1.7	2.1	2.6	2.2	2.5	2.3	3.1	3.2	2.8	2.6	2.9	3.6	3.9	3.6	3.2
충북	2.2	2.1	2.2	2.4	2.0	2.0	3.0	2.6	2.6	2.2	2.4	3.1	3.2	2.5	2.5
충남	2.5	3.1	3.0	2.4	2.3	2.8	3.3	3.5	3.2	2.8	3.1	2.9	3.5	2.3	2.3
전북	2.2	2.0	2.2	2.3	2.0	2.0	2.5	1.7	2.1	2.5	2.7	2.7	2.5	2.2	2.4
전남	2.0	1.6	2.1	2.0	1.6	2.1	2.9	2.5	3.0	3.2	2.8	2.6	2.4	2.3	2.2
경북	2.1	2.7	2.8	2.6	2.5	3.1	2.9	3.0	3.2	2.8	4.1	3.9	4.0	3.2	2.5
경남	2.2	3.1	2.8	2.2	1.8	2.1	2.5	2.6	3.3	2.9	3.0	3.8	4.0	4.1	3.3
제주	1.8	1.6	1.8	1.7	1.5	1.8	2.0	1.9	2.2	1.9	2.0	2.1	2.5	3.1	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04
대 표

실업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지표 정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대표적인 제도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로, 수급자 수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급여를 수급한 인원을 말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일용인 경우 90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수급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지급수준, 요건, 기간 등이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이전과 그 이후는 시계열 비교에 있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측정 산식

- 수급자 수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급여를 수급한 인원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 수

*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80% × 1일 근로시간(8시간),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표 6-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수급인원, 수급금액 (1997~2021)

(단위: 명, 십억 원)

구분	수급자격 인정자	증가율	수급인원	증가율	수급 금액	증가율
1997	50,774	-	49,117	-	79	-
1998	434,199	755.2%	411,686	738.2%	799	915.3%
1999	325,220	△25.1%	484,772	17.8%	936	17.1%
2000	258,727	△20.4%	332,692	△31.4%	471	△49.7%
2001	346,671	34.0%	428,156	28.7%	845	79.5%
2002	297,109	△14.3%	416,041	△2.8%	839	△0.7%
2003	375,561	26.4%	502,211	20.7%	1,030	22.8%
2004	467,730	24.5%	707,432	40.9%	1,448	40.6%
2005	562,524	20.3%	812,768	14.9%	1,752	21.0%
2006	609,691	8.4%	943,542	16.1%	2,074	18.4%
2007	685,024	12.4%	1,009,180	7.0%	2,434	17.4%
2008	835,140	21.9%	1,162,534	15.2%	2,865	17.7%
2009	1,068,389	27.9%	1,301,132	11.9%	4,116	43.7%
2010	973,026	△8.9%	1,238,665	△4.8%	3,687	△10.4%
2011	902,362	△7.3%	1,202,066	△3.0%	3,561	△3.4%
2012	898,054	△0.5%	1,187,247	△1.2%	3,677	3.2%
2013	919,118	2.3%	1,210,263	1.9%	3,884	5.6%
2014	971,068	5.7%	1,252,677	3.5%	4,156	7.0%
2015	950,754	△2.1%	1,272,470	1.6%	4,547	9.4%
2016	953,901	0.3%	1,278,833	0.5%	4,895	7.7%
2017	940,183	△1.4%	1,295,789	1.3%	5,243	7.1%
2018	1,062,933	13.1%	1,417,296	9.4%	6,688	27.6%
2019	1,144,090	7.6%	1,546,993	9.2%	8,386	25.4%
2020	1,365,547	19.4%	1,804,372	16.6%	12,184	45.3%
2021	1,283,366	△6.0%	1,903,190	5.5%	12,515	2.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keis.or.kr/에서 2023.04.17. 인출)

표 6-3 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수 (2021)

(단위: 명)

구분	계	남	여
계	1,283,366	627,762	655,604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39,089	10,094	28,995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16,595	8,314	8,281
폐업, 도산	44,109	14,137	29,97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492,553	234,856	257,697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39,931	19,842	20,089
정년	48,807	30,377	18,430
계약 만료, 공사 종료	474,192	205,185	269,007
고용보험 비적용, 기타, 분류 불능	128,090	104,957	23,13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https://www.keis.or.kr/에서 2023.04.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21	1년

05
대 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Public expenditure on labor market policies

지표 정의

노동시장정책(Labour Market Policies; LMP)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 재진입, 이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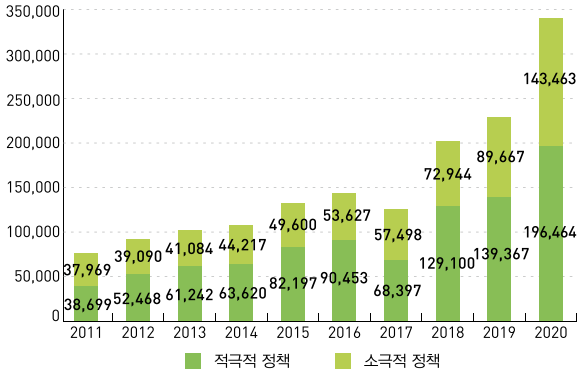
• OECD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으로 나누고 있다.

측정 산식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1) 직접일자리 창출 + 2) 직업능력개발 + 3) 고용서비스 + 4) 창업지원 + 5) 고용장려금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실업자에 대한 소득 유지 및 지원사업

그림 6-10 노동시장정책 투입비용 (2011~2020)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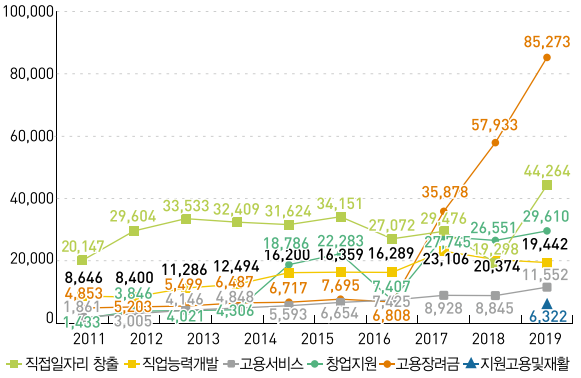


주: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기준과 OECD Labor market programs의 기준이 달라, 두 값 간에는 차이가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6-1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투입비용 (2011~2020)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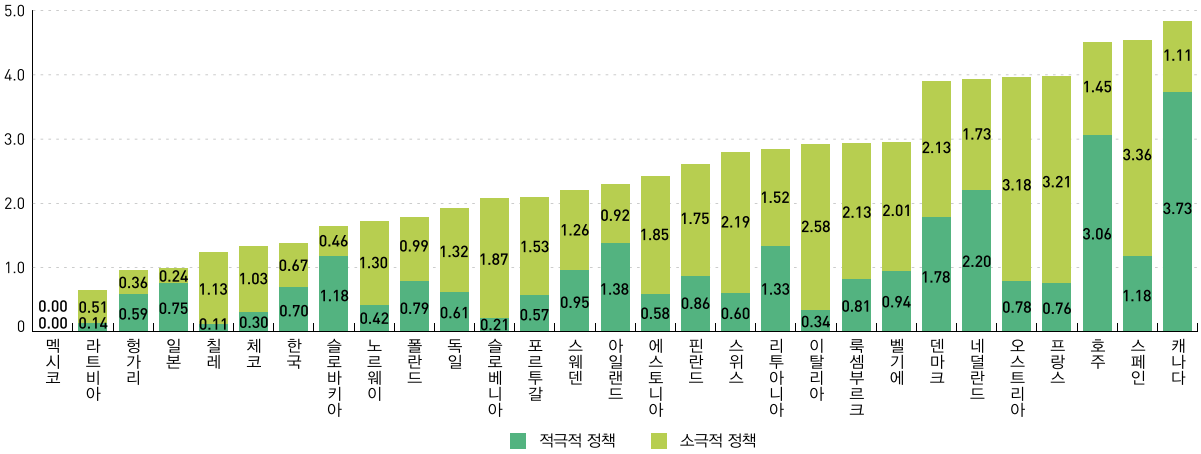


주: 1)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기준과 OECD Labor market programs의 기준이 달라, 두 값 간에는 차이가 있음.
2) 2020년부터 지원고용및재활 추가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6-12 OECD 노동시장 지출수준 (GDP 대비 비중) (2020)

(단위: %)



주: 1)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기준과 OECD Labor market programs의 기준이 달라, 두 값 간에는 차이가 있음.
2) 2020년이 없는 경우 제외

자료: OECD, Labour Market Programmes, (http://stats.oecd.org//에서 2023.05.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내부자료)	2010	2020	1년

06
대 표

총 근로시간
Total hours worked

지표 정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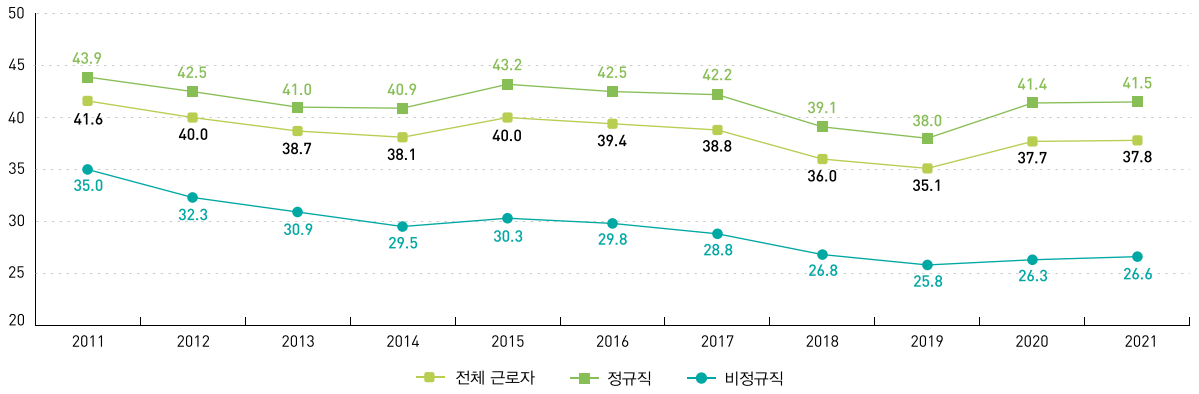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이 근로자의 삶과 일자리 만들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근로시간은 중요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그림 6-13 전체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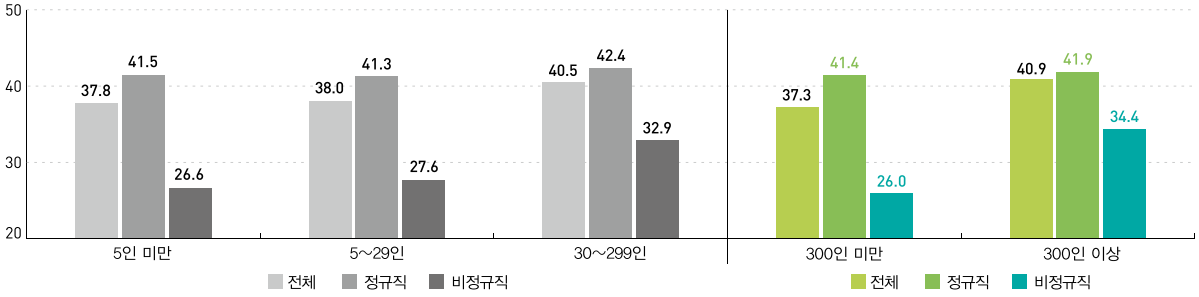
(단위: 시간)



주: 1) 주당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2) 특수형태근로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그림 6-14 사업체 규모별 · 근로형태별 주당 근로시간 (2021)

(단위: 시간)



주: 1) 주당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2) 특수형태근로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1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21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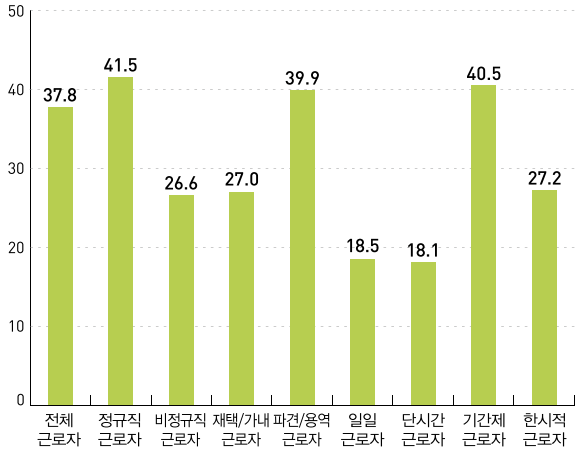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반근로자 8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유해위험작업근로자 6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의 연소근로자 7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주휴일, 취업규칙상의 휴일은 제외)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 종료시각 사이의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한다. 이때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초과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 200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통합하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그림 6-15 근로형태별 주당 근로시간 (2021)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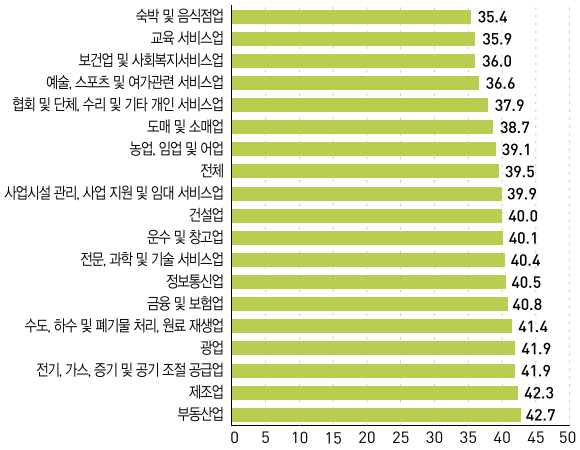


주: 1) 주당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2) 특수형태근로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1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그림 6-16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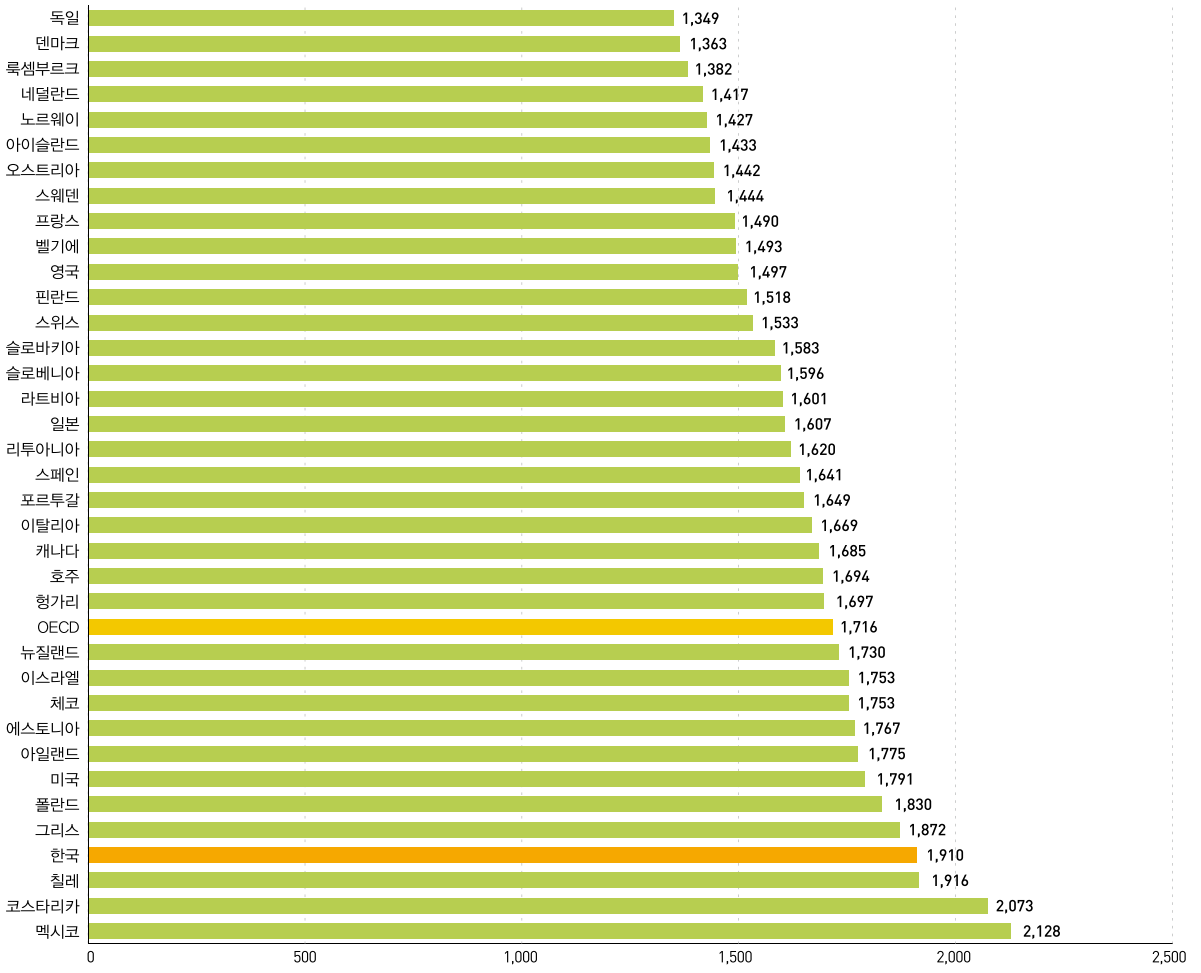
(단위: 시간)



주: 주당 근로시간은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1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그림 6-17 OECD 주요국가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2021)

(단위: 시간)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stats.oecd.org에서 2023.05.10. 인출)

07
대 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Employment by status of workers

지표 정의

종사상 지위란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 상태를 말하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한다.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와 한 사람 이상의 유급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고용주)로 구분되며, 무급가족종사자는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한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고용계약을 미설정한 경우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자이며,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다.

• 종사상 지위는 고용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측정 산식

• 종사상 지위별 정의에 따른 취업자 수

표 6-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와 비율 (2006~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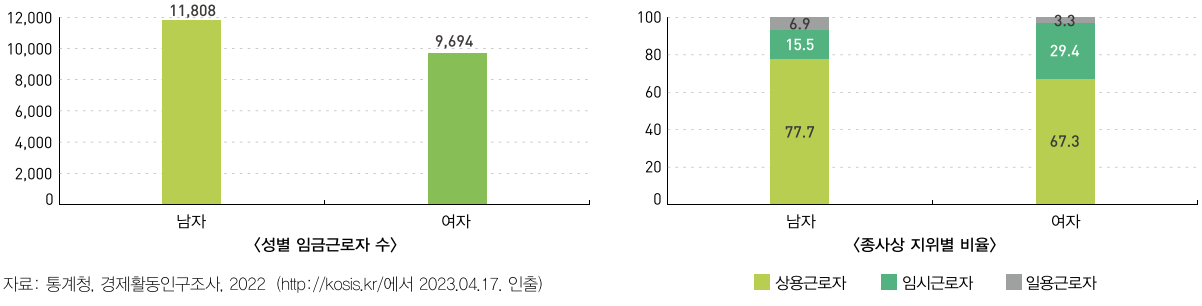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3,188 (100.0)	23,561 (100.0)	23,775 (100.0)	23,688 (100.0)	24,033 (100.0)	24,527 (100.0)	24,955 (100.0)	25,299 (100.0)	25,897 (100.0)	26,178 (100.0)	26,409 (100.0)	26,725 (100.0)	26,822 (100.0)	27,123 (100.0)	26,904 (100.0)	27,273 (100.0)	28,089 (100.0)
자영업자	6,109 (26.3)	6,048 (25.7)	6,005 (25.3)	5,749 (24.3)	5,643 (23.5)	5,657 (23.1)	5,768 (23.1)	5,703 (22.5)	5,720 (22.1)	5,622 (21.5)	5,614 (21.3)	5,682 (21.3)	5,638 (21.0)	5,606 (20.7)	5,531 (20.6)	5,513 (20.2)	5,632 (20.1)
무급가족종사자	1,471 (6.3)	1,419 (6.0)	1,413 (5.9)	1,352 (5.7)	1,279 (5.3)	1,273 (5.2)	1,266 (5.1)	1,232 (4.9)	1,219 (4.7)	1,153 (4.4)	1,126 (4.3)	1,110 (4.2)	1,101 (4.1)	1,077 (4.0)	1,042 (3.9)	1,007 (3.7)	955 (3.4)
상용근로자	8,248 (35.6)	8,715 (37.0)	9,105 (38.3)	9,479 (40.0)	10,178 (42.4)	10,786 (44.0)	11,250 (45.1)	11,847 (46.8)	12,319 (47.6)	12,716 (48.6)	13,062 (49.5)	13,428 (50.2)	13,772 (51.3)	14,216 (52.4)	14,521 (54.0)	14,887 (54.6)	15,692 (55.9)
임시근로자	5,163 (22.3)	5,202 (22.1)	5,122 (21.5)	5,134 (21.7)	5,107 (21.2)	5,045 (20.6)	5,032 (20.2)	4,919 (19.4)	5,069 (19.6)	5,114 (19.5)	5,124 (19.4)	4,992 (18.7)	4,851 (18.1)	4,795 (17.7)	4,483 (16.7)	4,634 (17.0)	4,678 (16.7)
일용근로자	2,197 (9.5)	2,178 (9.2)	2,130 (9.0)	1,973 (8.3)	1,826 (7.6)	1,765 (7.2)	1,639 (6.6)	1,600 (6.3)	1,570 (6.1)	1,572 (6.0)	1,483 (5.6)	1,514 (5.7)	1,460 (5.4)	1,429 (5.3)	1,328 (4.9)	1,231 (4.5)	1,132 (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그림 6-18 성별 임금근로자 수와 종사상 지위별 비율 (2022)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1	1개월

08
대 표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Employment by employment type

지표 정의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포괄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정의된다. 한시적 근로자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눠진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비전형 근로자는 근로제공방식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재택, 가내), 일일(호출) 근로자로 분류된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형태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측정 산식

• 근로형태별 정의에 따른 취업자 수

유의사항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통상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temporary workers」를 파악 · 수록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 단기기대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일근로자」 제공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는 제외

표 6-5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와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 (2007~2022)

(단위: 천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근로자 수	임금근로자	16,006	16,258	16,609	17,189	17,715	17,941	18,403	18,992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20,992	21,724
	정규직	10,274	10,770	10,826	11,475	11,662	11,987	12,426	12,869	13,166	13,262	13,428	13,431	13,078	13,020	12,927	13,568
	비정규직	5,732	5,488	5,783	5,715	6,053	5,954	5,977	6,123	6,308	6,481	6,578	6,614	7,481	7,426	8,066	8,156
	– 한시적 근로자	3,580	3,322	3,528	3,298	3,474	3,427	3,446	3,529	3,655	3,671	3,725	3,823	4,785	4,608	5,171	5,348
	* 기간제	2,556	2,388	2,828	2,500	2,687	2,729	2,770	2,763	2,872	2,939	2,930	3,005	3,799	3,933	4,537	4,689
	– 시간제 근로	1,199	1,231	1,428	1,623	1,708	1,828	1,883	2,035	2,236	2,488	2,663	2,709	3,156	3,252	3,512	3,687
	– 비전형 근로	2,204	2,147	2,288	2,300	2,452	2,304	2,234	2,137	2,229	2,245	2,112	2,071	2,045	2,073	2,278	2,131
비율	임금근로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4.1	66.2	65.1	66.6	65.8	66.7	67.4	67.6	68.0	68.0	67.1	67.0	63.6	63.7	61.6	62.5
	비정규직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32.5	32.0	32.9	33.0	36.4	36.3	38.4	37.5
	– 한시적 근로자	22.3	20.4	21.3	19.2	19.7	19.2	18.8	18.7	18.8	18.6	18.6	19.1	23.3	22.5	24.6	24.6
	* 기간제	16.0	14.7	17.0	14.5	15.2	15.2	15.1	14.5	14.7	14.9	14.6	15.0	18.5	19.2	21.6	21.6
	– 시간제 근로	7.6	7.6	8.7	9.5	9.7	10.3	10.3	10.8	11.6	11.6	13.3	13.5	15.3	15.9	16.7	17.0
	– 비전형 근로	13.9	13.3	13.9	13.4	13.9	12.9	12.1	11.2	11.4	11.1	10.6	10.3	9.9	10.1	10.8	9.8

주: 1) 매년 8월 기준임.

2)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이거나 시간제 근로자이거나 비전형 근로자이므로 세 유형의 합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과 일치하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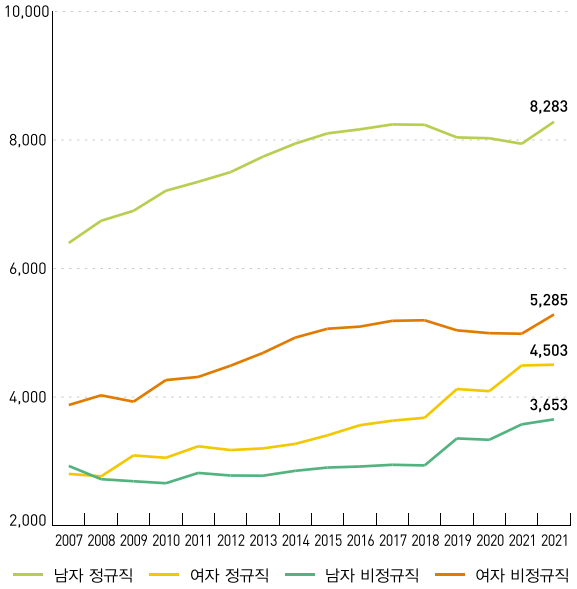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3	2022	1년

그림 6-19 성별 · 근로형태별 취업자의 수 (2007~2022)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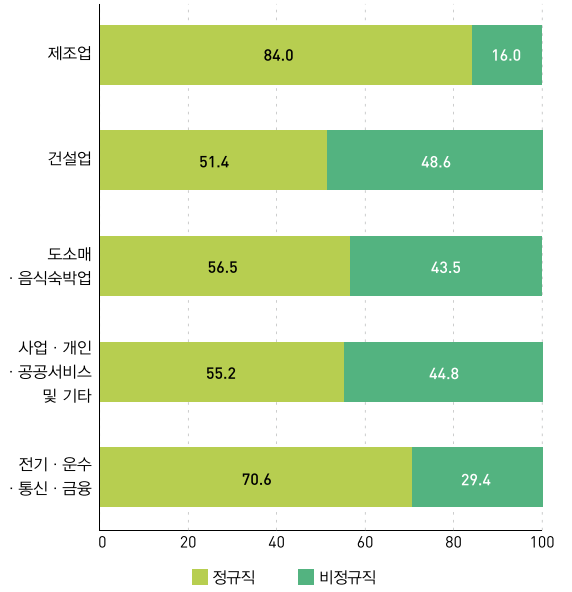


주: 매년 8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그림 6-20 산업별 · 근로형태별 취업자의 비율 (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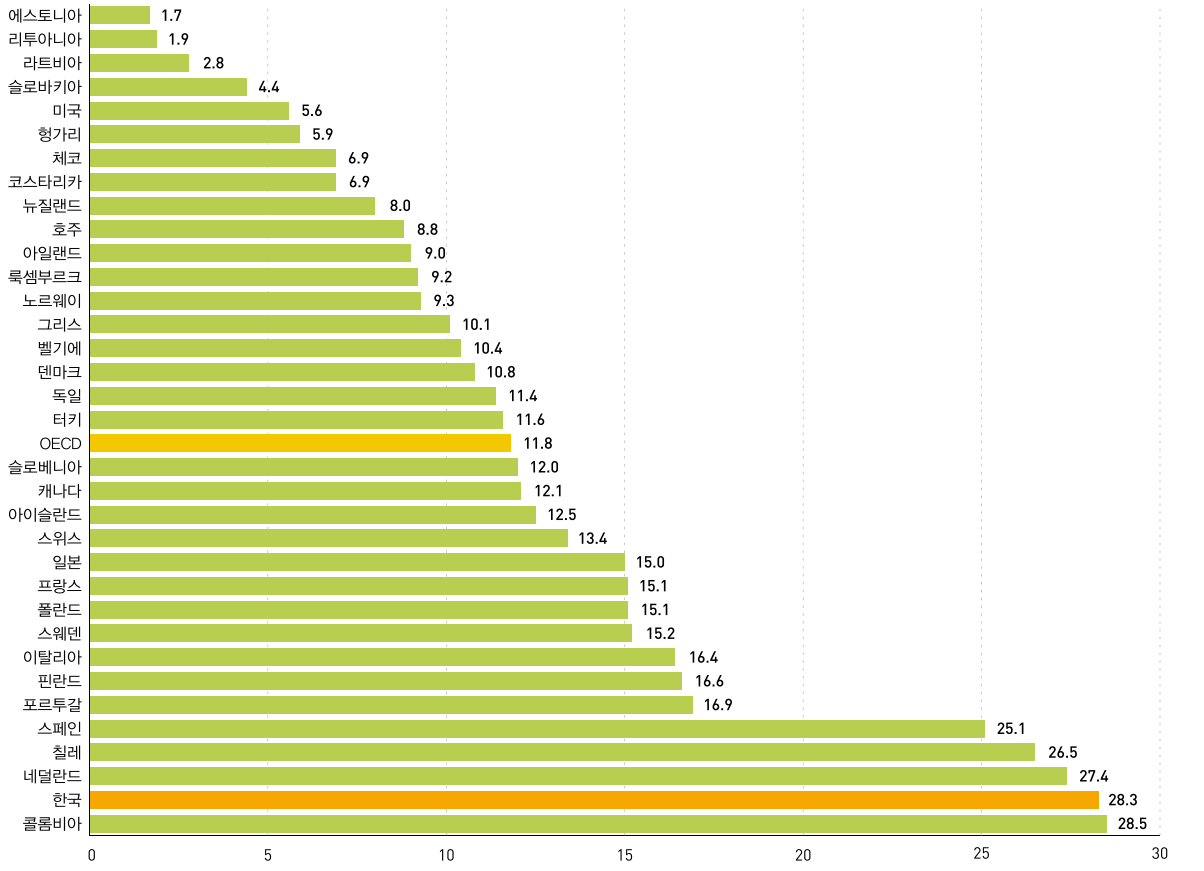


주: 매년 8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2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그림 6-21 OECD 주요국가 임시직의 비율 (2021)

(단위: %)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3.05.10. 인출)

09
대 표

사회보험 가입률

Social insurance coverage

지표 정의

각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다. 사회보험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노령에 대비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건강보험은 질병발생 시, 고용보험은 실업,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 시를 대비해 각각 1977년, 1995년, 1964년 시행되었다.

•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은퇴, 실업,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므로 사회보험 가입률은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는지 보여준다.

측정 산식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frac{\text{직장가입자 수}}{\text{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 단, 고용보험의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frac{\text{각 보험가입 근로자 수}}{\text{각 보험가입 대상 근로자 수}} \times 100$$

표 6-6 사업체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2021)

(단위: %)

고용형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	90.5	91.5	91.7	97.8
5인 미만	72.6	78.3	78.6	91.3
5~29인	94.9	93.2	93.3	99.6
30~299인	98.4	97.4	97.3	99.9
300인 미만	89.7	90.2	90.5	97.4
300인 이상	95.6	99.6	98.5	99.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1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표 6-7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증감률 (2022)

(단위: %, %p)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건강보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고용보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계	70.0	0.6	78.5	1.5	77.0	1.8
정규직	89.1	0.3	94.5	0.9	92.2	1.3
비정규직	38.3	△0.1	51.7	1.4	54.0	1.4
한시적	48.1	△2.0	65.2	0.0	60.5	△1.5
기간제	50.9	△2.1	68.7	△0.4	62.1	△2.3
비기간제	28.1	△0.8	40.5	2.8	48.6	4.1
시간제	19.9	△1.1	29.6	0.1	32.1	0.8
비전형	18.3	0.6	33.1	2.0	49.5	5.7

주: 1)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가입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 내 거주하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 낮음.
2)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3)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4)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대상에서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2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3	2022	1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21	1년

10 대 표

산업재해율

Industrial accident rate

지표 정의

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재해자를 말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재해자 수}}{\text{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times 100$

표 6-8 산업별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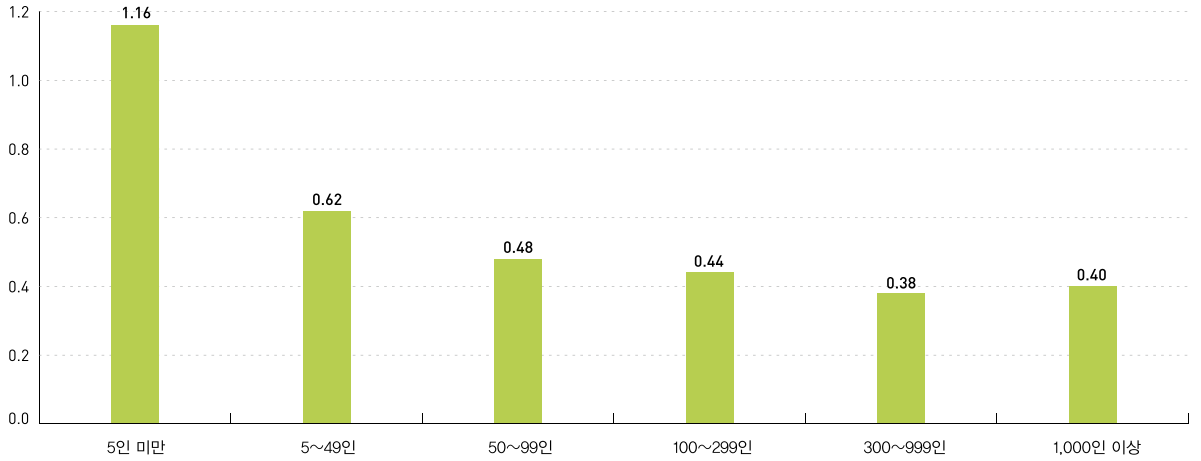
(단위: 명, %, ‰)

구분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사망자 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전체	19,378,565	122,713	2,080	0.63	1.07
광업	10,257	3,336	349	32.52	340.26
제조업	3,959,780	31,709	512	0.80	1.29
건설업	79,791	130	4	0.16	0.50
전기 · 가스 · 수도업	2,378,751	29943	551	1.26	2.32
운수창고 · 통신업	993,678	10,091	158	1.02	1.59
기타 산업	10,980,274	45,408	461	0.41	0.42

주: 1) 산재사망만인율은 (산재 사망자 수/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10,000 임. 재해율은 (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2)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및 보험업은 기타산업에 포함함.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2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그림 6-22 사업체 규모별 재해율 (2021)

(단위: %)



주: 재해율은 (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2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1977	2021	분기

11
대 표

저임금근로자 비율

Low pay incidence

지표 정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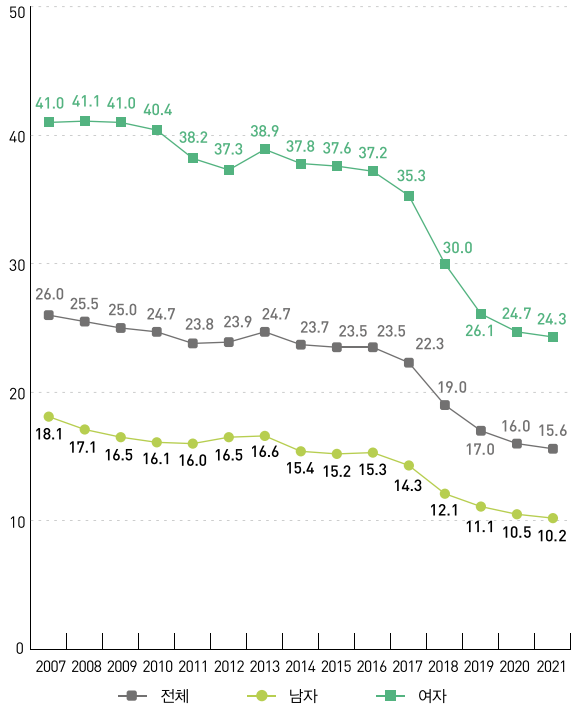
•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임금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뜻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임금이 임금 중위값의 2/3보다 적은 임금근로자의 수}}{\text{전체 임금근로자의 수}} \times 100$$

그림 6-23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200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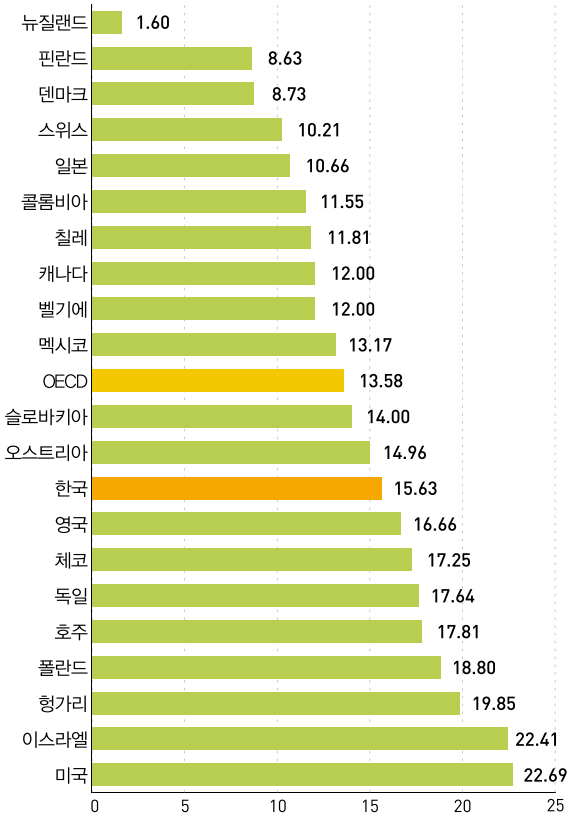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가지표체계, 저임금근로자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65 에서 2023.04.17. 인출)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http://stats.oecd.org/ 에서 2023.05.10. 인출)

그림 6-24 OECD 주요국가 저임금근로자 비율 (2021)

(단위: %)



주: 1) 2016년: 스위스
2) 2018년: 덴마크
3) 2019년: 호주, 핀란드, 이스라엘
4) 2020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독일, 헝가리, 폴란드
5) 2021년: 콜롬비아, 체코,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영국, 미국, OECD 평균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http://stats.oecd.org/ 에서 2023.05.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Employment Outlook	-	2021	1년

12
대 표

시간급 최저임금

Hourly minimum wag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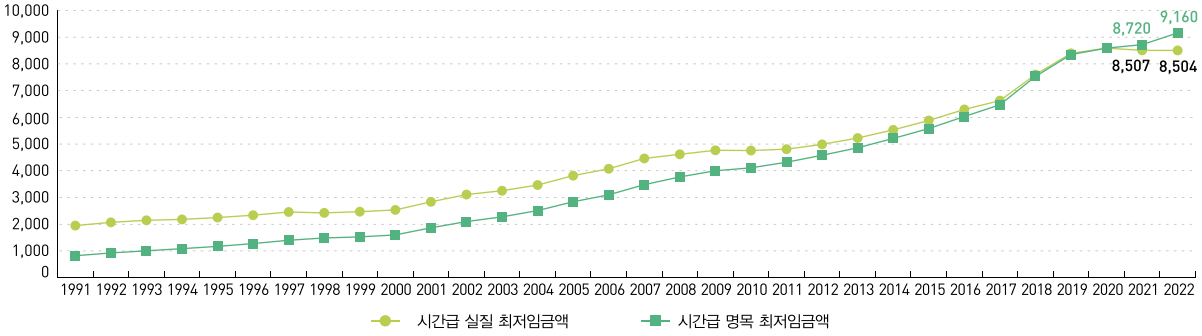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보면 시행 초년도인 1988년도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1990년 전 산업으로 확대되었고 1999년에는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1년 이후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측정 산식

-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산출

그림 6-25 시간급 명목 최저임금액과 실질 최저임금액 (199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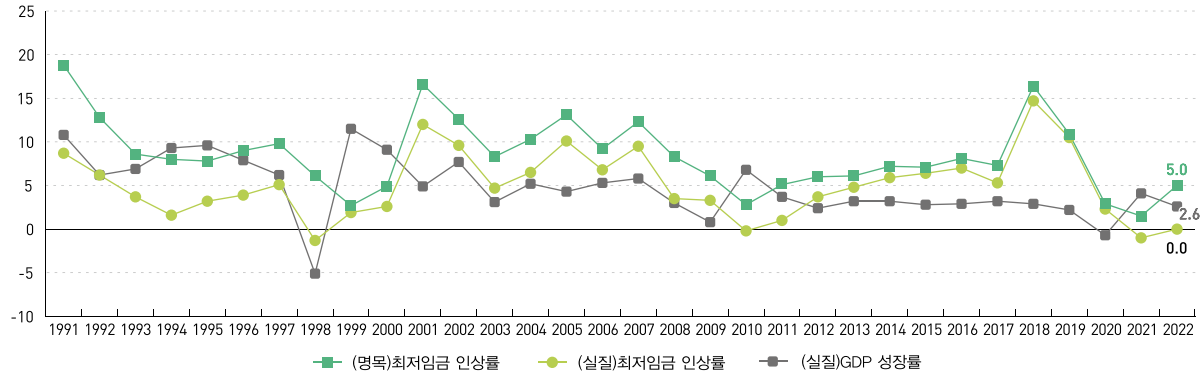
(단위: 원)



주: 실질 최저임금액은 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실질화한 것으로 연구진에서 자체적으로 산출
자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위원회, 각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https://kosis.kr/에서 2023.05.16. 인출)

그림 6-26 실질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1991~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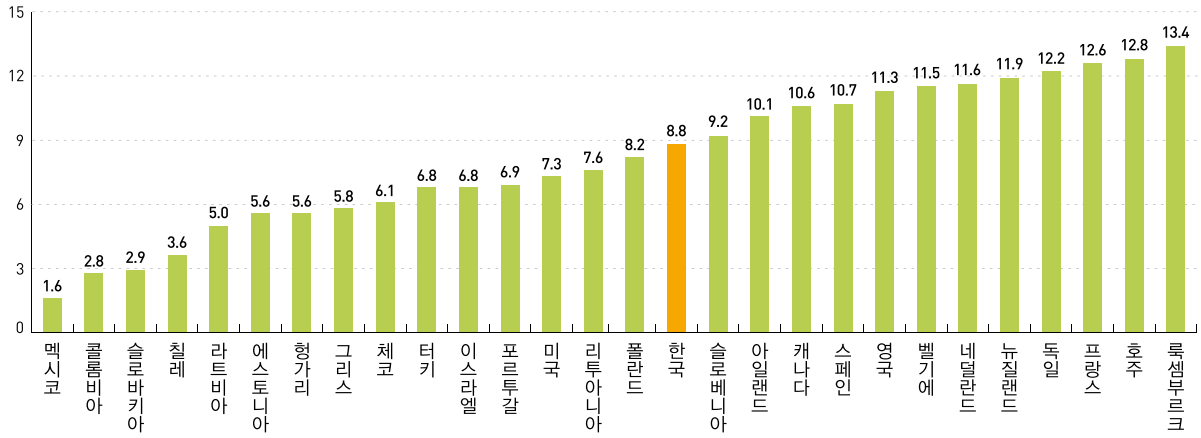
주: 1) 실질 최저인상률은 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실질화한 것으로 연구진에서 자체적으로 산출
2)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100
3) 실질 GDP는 2015년 기준임.
4) 2021년 이후는 잠정치임.
자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위원회, 각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https://kosis.kr/에서 2023.05.16. 인출)
실질GDP성장률: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s://kosis.kr/에서 2023.05.1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내부자료)	1989	2022	1년

그림 6-27 OECD 주요국가 시간당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최저임금액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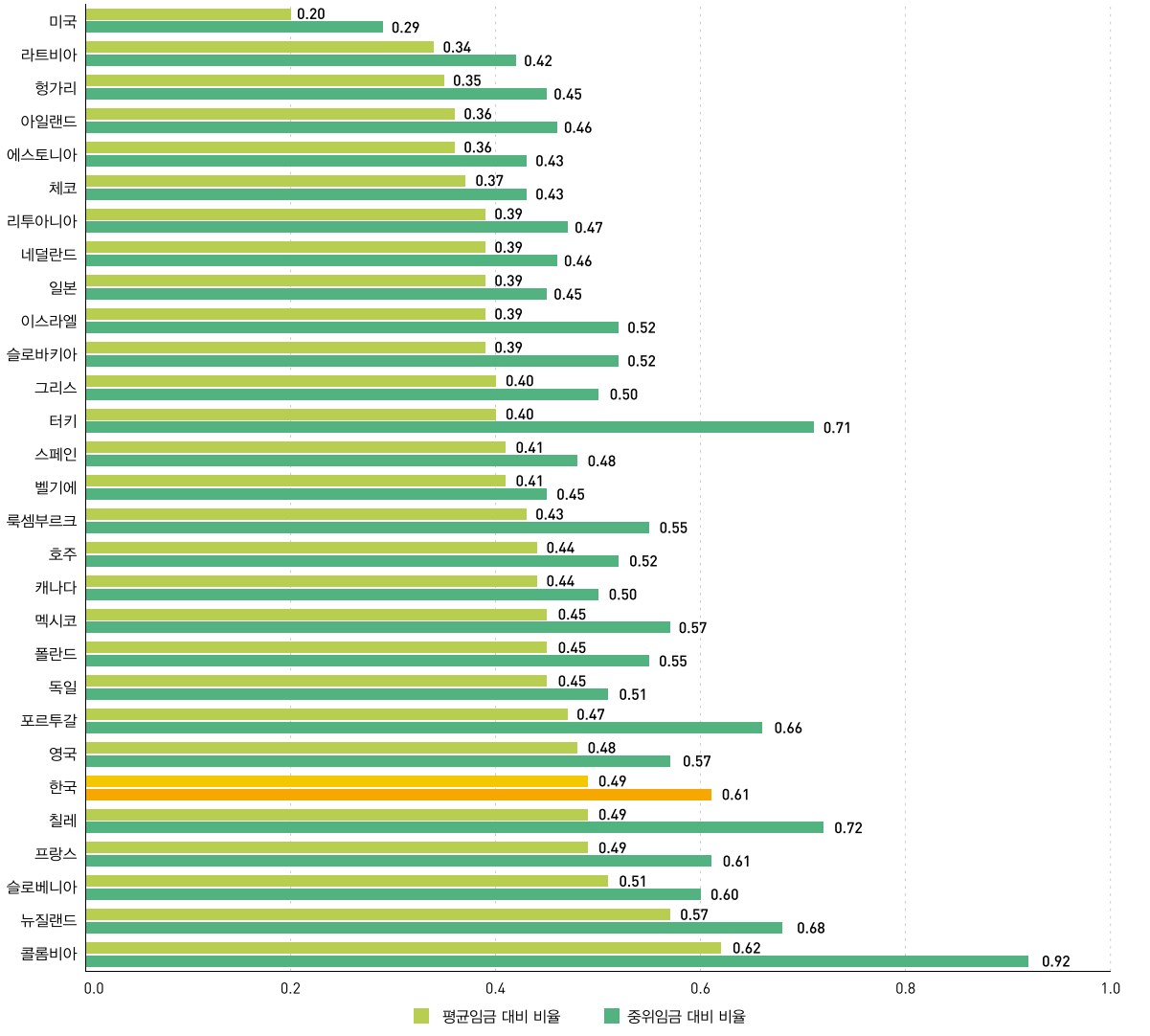
(단위: US$ PPP)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에서 2023.05.16. 인출)

그림 6-28 OECD 국가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 (2021)

(단위: %)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에서 2023.05.16. 인출)

12-1
연 관

최저임금 영향률

Proportion of employees expected directly by new minimum wage

지표 정의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최저임금 변경(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수 비율의 추정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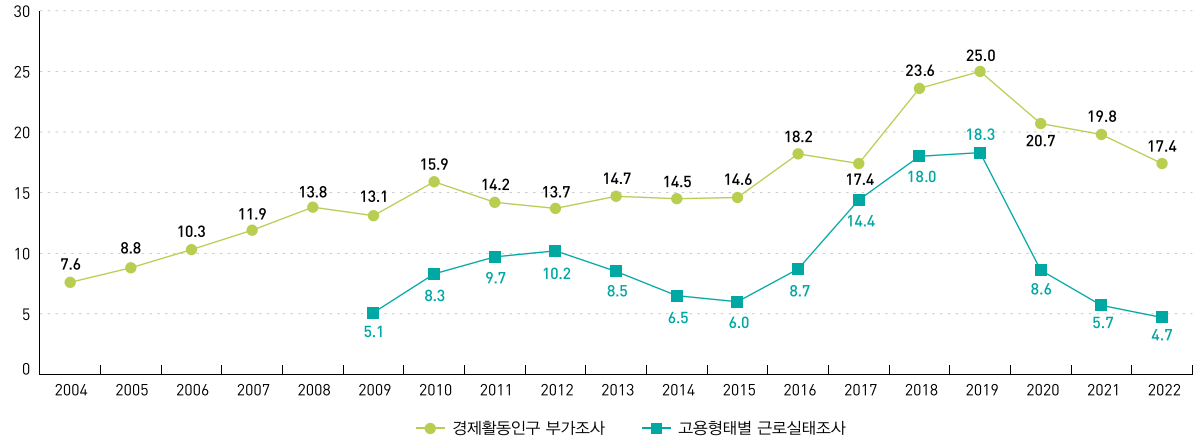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전년도 시간당 임금액에 금년도 임금상승률 전망치를 결합하여 금년도 시간당 임금액과 근로자 수의 분포를 추정한 후,

$$\frac{\text{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text{전체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그림 6-29 최저임금 영향률 (2004~2022)

(단위: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영향률, 각 연도(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influenceMain.do?division=S에서 2023.05.1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내부자료)	-	2022	-

13 대 표

시간당 임금총액

Hourly wage

지표 정의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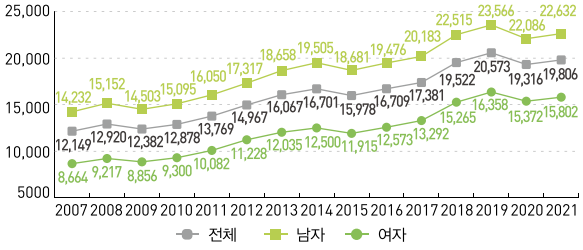
- 근로자와 그 가족은 임금총액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곧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월 임금총액}}{\text{월 근로시간}}$ (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그림 6-30 성별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시간당 임금액 (2007~2021)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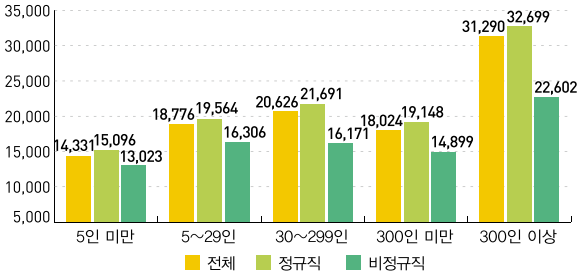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그림 6-31 사업체 규모별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액 (2021)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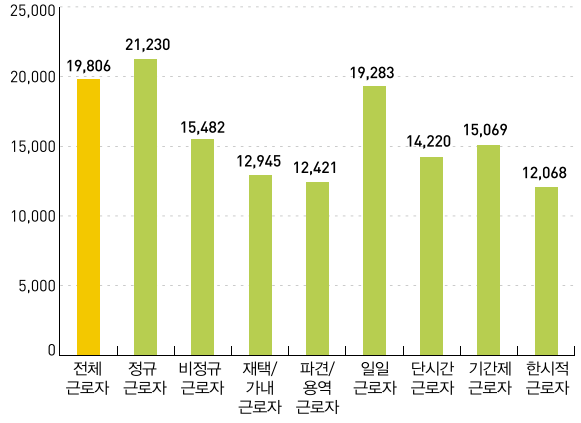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1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그림 6-32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액 (2021)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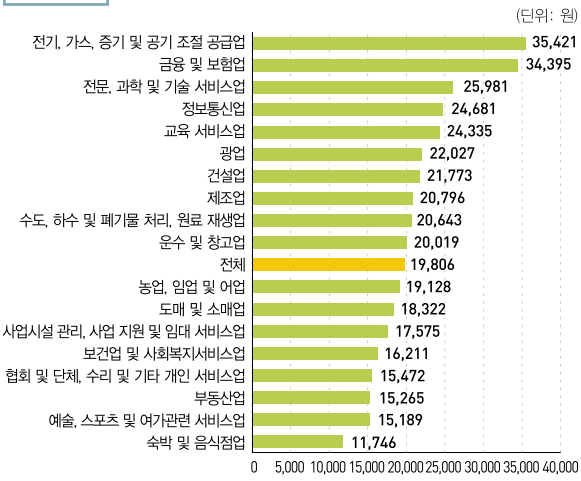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1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그림 6-33 산업별 시간당 임금액 (2021)

(단위: 원)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1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21	1년

* 임금총액은 정액, 초과, 특별 등의 세 가지 급여를 합한 것이며, 정액급여란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연차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하고, 초과급여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특별급여란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한다.

14
대 표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Payment of earned income tax credit/child tax credit

지표 정의

근로장려금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 또는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요건 검토 후 지급된다.

측정 산식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1]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2]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150 / 400
	400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 ~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 150 / 1,100
• 홑벌이 가족가구[3]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260 / 700
	700 ~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 ~ 3,000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260 / 1,600
• 맞벌이 가족가구[4]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300 / 800
	800 ~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 ~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 300 / 1,900

주: 1)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2)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3)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4)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 20 / 1,900]
•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 20 / 1,50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세청	국세통계	1967	2021	1년

표 6-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가구 수와 지급액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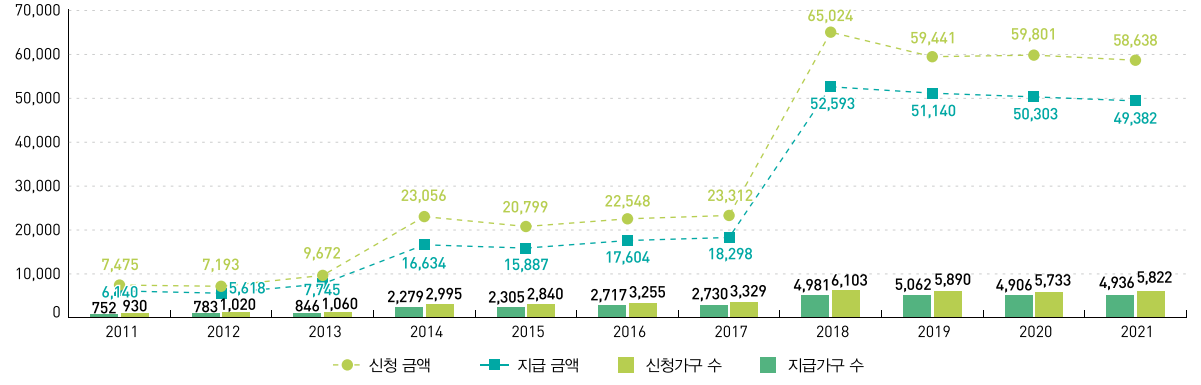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억 원)

구분	신청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 · 자녀장려금		
연도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근로)	금액(자녀)
2011	930	7,475	930	7,475	-	-	-	-	-
2012	1,020	7,193	1,020	7,193	-	-	-	-	-
2013	1,060	9,672	1,060	9,672	-	-	-	-	-
2014	2,995	23,056	1,584	13,610	1,411	9,446	716	6,873	5,254
2015	2,840	20,799	1,695	13,048	1,145	7,751	608	5,737	4,511
2016	3,255	22,548	1,985	14,779	1,270	7,769	560	5,560	4,044
2017	3,329	23,312	2,178	16,585	1,151	6,727	489	5,039	3,397
2018	6,103	65,024	5,021	55,595	1,082	9,429	790	11,503	7,459
2019	5,890	59,441	5,010	51,584	880	7,857	663	9,244	6,299
2020	5,733	59,801	4,915	52,568	818	7,233	589	8,372	5,600
2021	5,822	58,638	5,102	52,274	720	6,364	559	7,751	5,235
지급									
2011	752	6,140	752	6,140	-	-	-	-	-
2012	783	5,618	783	5,618	-	-	-	-	-
2013	846	7,745	846	7,745	-	-	-	-	-
2014	2,279	16,634	1,233	10,217	1,047	6,417	555	5,200	4,015
2015	2,305	15,887	1,379	10,280	926	5,607	496	4,595	3,519
2016	2,717	17,604	1,655	11,967	1,062	5,637	466	4,551	3,216
2017	2,730	18,298	1,793	13,381	937	4,917	403	4,205	2,753
2018	4,981	52,592	4,102	45,049	879	7,544	652	9,564	6,090
2019	5,062	51,140	4,319	44,683	743	6,457	563	8,029	5,242
2020	4,906	50,303	4,207	44,286	699	6,017	516	7,282	4,786
2021	4,936	49,382	4,362	44,447	574	4,935	451	6,291	4,13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2 (http://kosis.kr/에서 2023.04.18. 인출)

그림 6-3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가구 수와 지급액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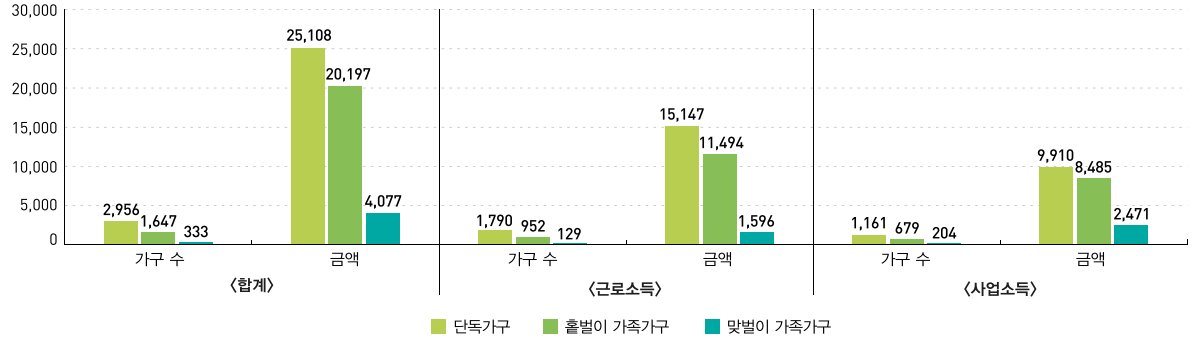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억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2 (http://kosis.kr/에서 2023.04.18. 인출)

그림 6-35 가구유형별 · 소득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수와 지급액 (2021)

(단위: 천 가구, 억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2 (http://kosis.kr/에서 2023.04.18. 인출)

15 대 표

자활사업 대상자 수

Number of people targeted by self-sufficiency program

지표 정의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활사업 대상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받는 수급자 수를 집계한 값이다.

측정 산식

- 자활사업 대상자: (1)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2)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특례자 (3) 일반수급자* 중 참여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가능) (4)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 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인 차상위자(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만 65세 이상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6) 시설수급자 중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 (7) 일반시설생활자(주거 · 교육급여수급자)는 차상위자 참여 결정 준용
 *일반수급자: (1)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2)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자활사업 범위: 2017년을 기준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생업자금 지원 등을 포함

표 6-10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14~2021)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활사업 대상자 수	1,256,139	1,569,566	1,551,707	1,502,461	1,663,098	1,801,635	2,055,672	2,276,667

주: 연도 말 기준

표 6-11 월별 · 수급지위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2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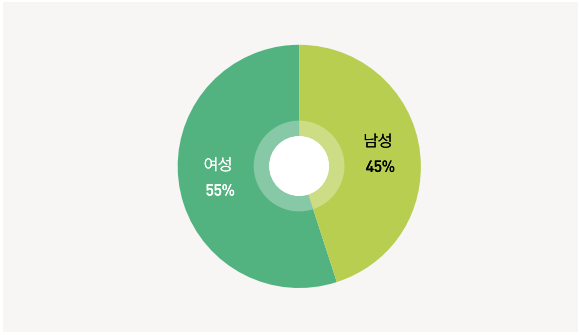
구분	자활사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계 (시설 수급자 제외)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								
			소계	자활사업 미참여자	자활사업 희망 참여자	소계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제시 유예자	조건부수급자			자활 특례자	기타	
									소계	취업 대상자	비취업 대상자			
1월	2,065,406	2,056,041	1,363,902	1,359,892	4,010	90,511	82,400	8,111	109,357	44,490	64,867	2,881	485,651	13,104
2월	2,084,999	2,075,650	1,377,243	1,375,905	1,338	90,667	82,738	7,929	110,260	45,254	65,006	2,843	490,786	13,200
3월	2,118,803	2,109,522	1,402,516	1,401,005	1,511	97,352	89,184	8,168	111,756	46,427	65,329	2,774	491,169	13,236
4월	2,158,412	2,149,158	1,428,616	1,427,279	1,337	98,730	89,923	8,807	112,708	47,113	65,595	2,787	502,258	13,313
5월	2,189,868	2,180,708	1,447,718	1,446,411	1,307	98,697	89,800	8,897	113,675	47,762	65,913	2,725	513,753	13,300
6월	2,213,938	2,205,038	1,463,953	1,462,556	1,397	98,127	88,827	9,300	114,203	48,328	65,875	2,699	521,898	13,058
7월	2,221,270	2,212,563	1,473,324	1,471,979	1,345	96,800	87,891	8,909	114,335	48,540	65,795	2,704	521,273	12,834
8월	2,235,975	2,227,589	1,485,327	1,484,017	1,310	96,515	87,663	8,852	114,820	49,134	65,686	2,703	524,102	12,508
9월	2,241,158	2,232,949	1,491,886	1,490,561	1,325	95,504	86,828	8,676	115,072	49,434	65,638	2,718	523,707	12,271
10월	2,248,403	2,240,283	1,498,969	1,497,684	1,285	94,935	86,636	8,299	115,384	49,761	65,623	2,661	524,252	12,202
11월	2,263,852	2,255,809	1,514,072	1,512,740	1,332	95,545	87,023	8,522	115,951	50,256	65,695	2,598	523,629	12,057
12월	2,276,667	2,268,852	1,529,104	1,527,755	1,349	96,057	87,382	8,675	116,220	50,653	65,567	2,555	520,990	11,74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1	월

그림 6-36 성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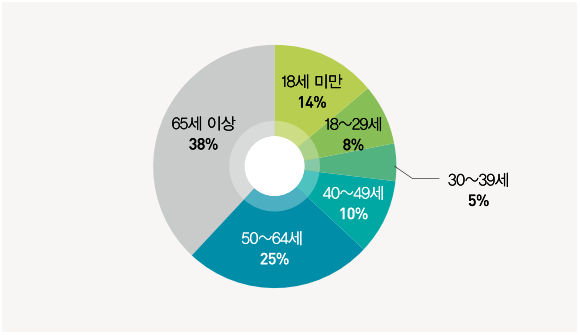
(단위: %)



주: 연도 말 기준

그림 6-37 연령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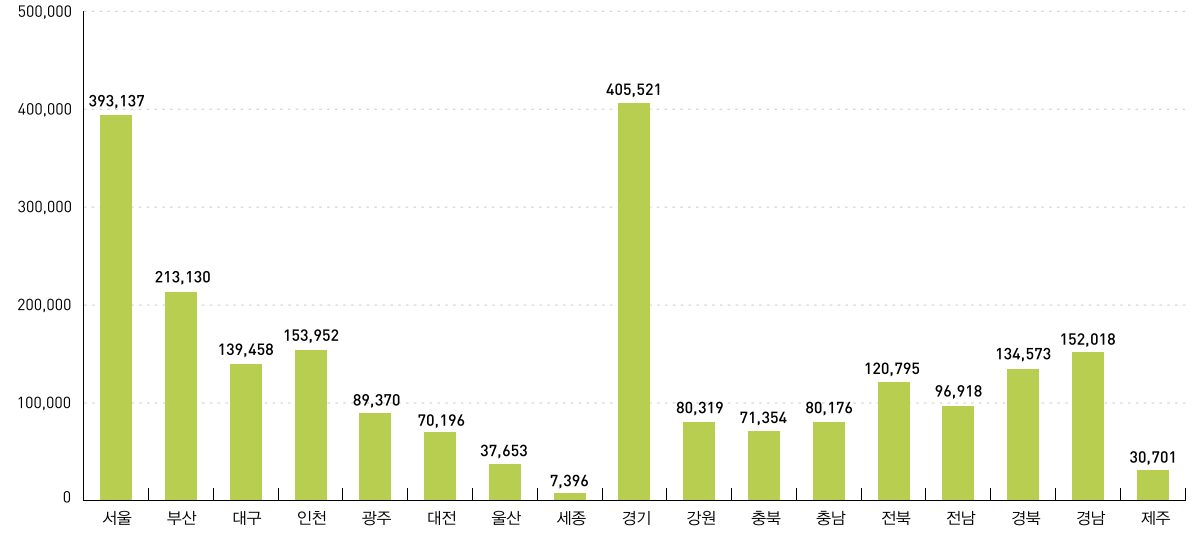
(단위: %)



주: 연도 말 기준

그림 6-38 시도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21)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15-1
연 관

자활사업 참여자 수

Number of people participations in self-sufficiency program

지표 정의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자활사업* 대상자 중 실제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수를 집계한 값이다.

* 자활근로, GateWay 과정, 취업성공패키지 등

측정 산식

- 자활사업 참여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표 6-12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14~2021)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활사업 참여자 수	46,250	50,131	48,208	50,224	52,064	60,342	64,577	66,167

주: 연도 말 기준

표 6-13 월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21)

(단위: 명)

구분	자활근로	Gateway 과정	희망리본사업	기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계
1월	33,179	4,567	-	19,358	5,280	62,384
2월	34,271	5,027	-	20,017	5,446	64,761
3월	34,760	5,503	-	17,646	5,557	63,466
4월	35,105	5,172	-	18,416	5,519	64,212
5월	35,029	5,044	-	18,857	5,813	64,743
6월	35,507	4,953	-	19,230	5,897	65,587
7월	35,953	4,569	-	18,614	5,799	64,935
8월	35,350	4,368	-	21,504	6,200	67,422
9월	35,453	4,508	-	20,253	6,070	66,284
10월	36,074	4,266	-	20,962	6,133	67,435
11월	35,842	4,627	-	21,838	5,835	68,142
12월	35,290	4,722	-	17,822	6,201	64,035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참여자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1	월

표 6-14 수급유형별 · 업종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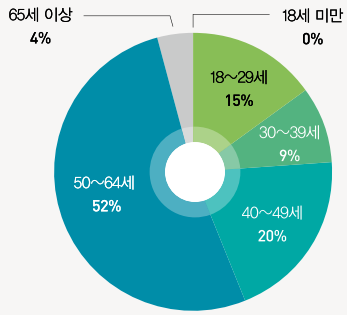
(단위: 명)

수급자 구분	값없음	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도시락	세차	영농	세탁	음식점 (외식)	장애 통합	산모 도우미	환경 정비	택배	기타	전체
일반 수급자가구	308	98	119	772	262	7	104	74	398	184	651	36	0	586	323	6,407	10,329
조건부 수급자가구	5,762	167	212	1,780	610	5	146	148	537	404	1,179	53	4	2,272	809	29,462	43,550
시설수급자	9	3	2	3	2	0	1	0	3	0	14	0	0	1	1	82	121
차상위 자활가구	0	51	102	551	192	1	95	58	463	120	354	11	0	188	197	2,108	4,491
특례수급자 가구	17	102	92	805	372	1	73	95	362	191	494	38	0	384	486	3,621	7,133
기타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값없음	112	2	9	34	8	1	2	3	18	4	17	2	0	13	16	301	542
합계	6,208	423	536	3,945	1,446	15	421	378	1,782	903	2,709	140	4	3,444	1,832	41,981	66,167

주: 연도 말 기준

그림 6-39 연령별 자활사업 참여자 비율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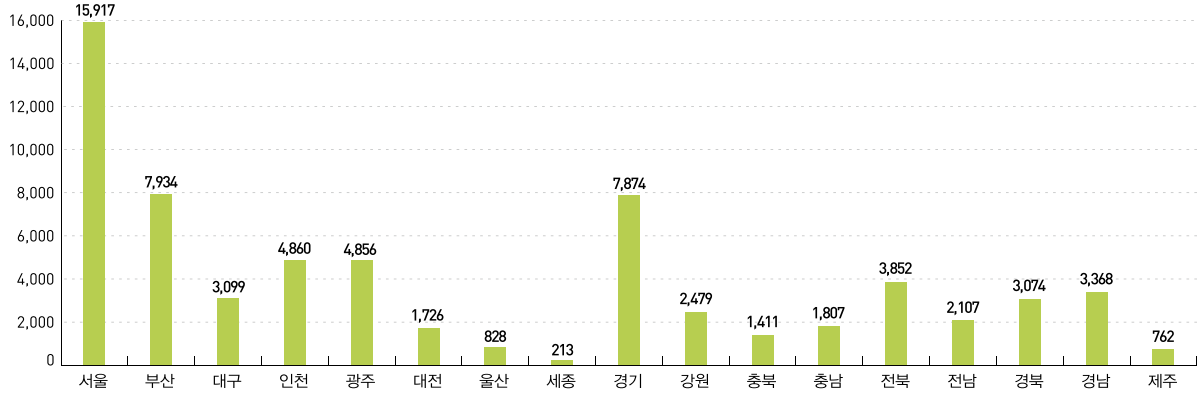
(단위: %)



주: 연도 말 기준

그림 6-40 시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21)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16
대 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Number of people participations in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지표 정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자활사업 대상자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집계한 값이다.

측정 산식

- 자활근로사업 범위: 2017년을 기준으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이 해당되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합계는 중복을 제외한 인원수로 산정

표 6-15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014~2021)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30,713	28,955	25,387	24,666	24,505	29,977	34,402	35,290

주: 1) 연도 말 기준
2)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포함함.

표 6-16 월별 · 수급자격별 · 자활근로 유형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021)

(단위: 명)

수급자격	자활근로 유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맞춤형) 기초생계급여	시장진입형	1,614	1,661	1,730	1,792	1,766	1,710	1,747	1,680	1,647	1,631	1,567	1,437
	인턴도우미형	1,054	1,119	1,144	1,140	1,127	1,092	1,074	1,091	1,074	1,048	1,071	1,022
	사회서비스형	4,768	5,072	5,200	5,351	5,345	5,311	5,502	5,315	5,263	5,285	5,223	4,848
	근로유지형	4,228	4,361	4,435	4,457	4,479	4,495	4,504	4,536	4,533	4,576	4,602	4,551
	시간제형	583	597	626	645	673	668	693	717	766	795	807	790
(맞춤형) 기초의료급여	시장진입형	3,172	3,279	3,269	3,322	3,280	3,396	3,554	3,468	3,544	3,622	3,628	3,627
	인턴도우미형	1,108	1,120	1,131	1,124	1,158	1,175	1,170	1,159	1,152	1,171	1,156	1,186
	사회서비스형	8,331	8,528	8,580	8,560	8,643	8,847	8,901	8,820	8,933	9,278	9,237	9,345
	근로유지형	1,487	1,466	1,437	1,428	1,391	1,375	1,354	1,332	1,337	1,313	1,291	1,235
	시간제형	106	104	97	96	106	119	121	127	132	126	120	112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시장진입형	437	448	480	509	516	536	566	552	584	605	606	607
	인턴도우미형	233	258	267	275	274	280	274	283	275	286	293	297
	사회서비스형	1,067	1,137	1,199	1,246	1,278	1,364	1,421	1,430	1,447	1,510	1,516	1,534
	근로유지형	47	35	34	43	48	57	59	59	58	59	62	81
	시간제형	49	55	54	59	50	53	61	63	63	65	63	65
(맞춤형) 기초교육급여	시장진입형	0	0	0	0	0	0	0	0	0	0	1	1
	사회서비스형	0	0	0	0	0	0	0	0	0	0	0	0
차상위 자활	시장진입형	1,328	1,340	1,368	1,363	1,385	1,405	1,349	1,348	1,316	1,310	1,299	1,268
	인턴도우미형	306	326	350	363	365	369	371	369	365	367	359	352
	사회서비스형	3,139	3,140	3,276	3,228	3,273	3,376	3,378	3,409	3,328	3,273	3,362	3,288
	근로유지형	46	45	45	24	22	21	20	23	21	22	21	19
	시간제형	64	62	60	57	64	65	63	68	67	69	62	60
기타	시장진입형	10	20	20	27	27	27	21	19	36	15	18	39
	인턴도우미형	8	13	9	6	8	9	11	4	6	4	11	7
	사회서비스형	19	49	61	50	55	71	61	42	61	52	65	68
	근로유지형	5	8	6	4	2	2	5	9	5	4	10	10
전체		33,209	34,243	34,878	35,169	35,335	35,823	36,280	35,923	36,013	36,486	36,450	35,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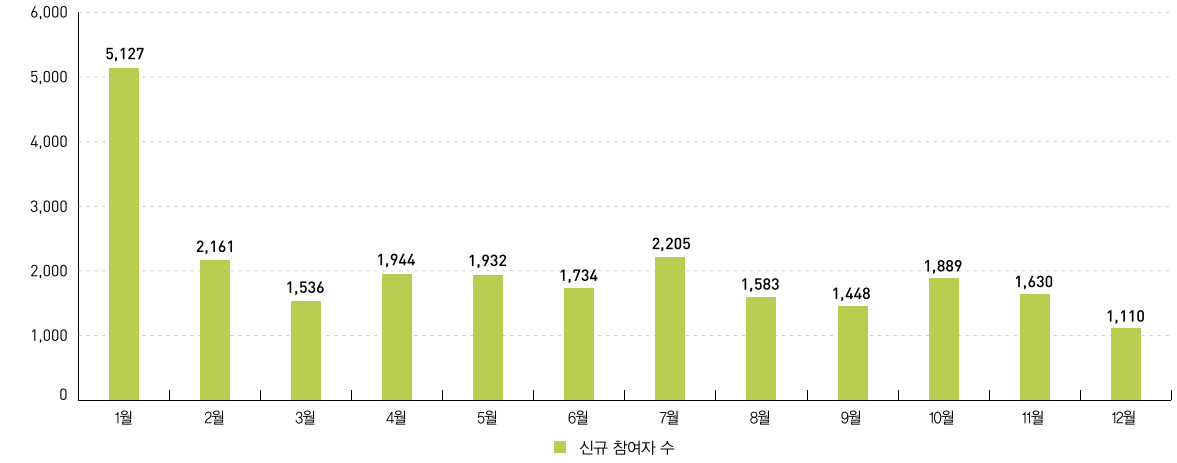
주: 1) 기타는 수급자격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2)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포함함.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및 자활급여지급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1	월

그림 6-41 월별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 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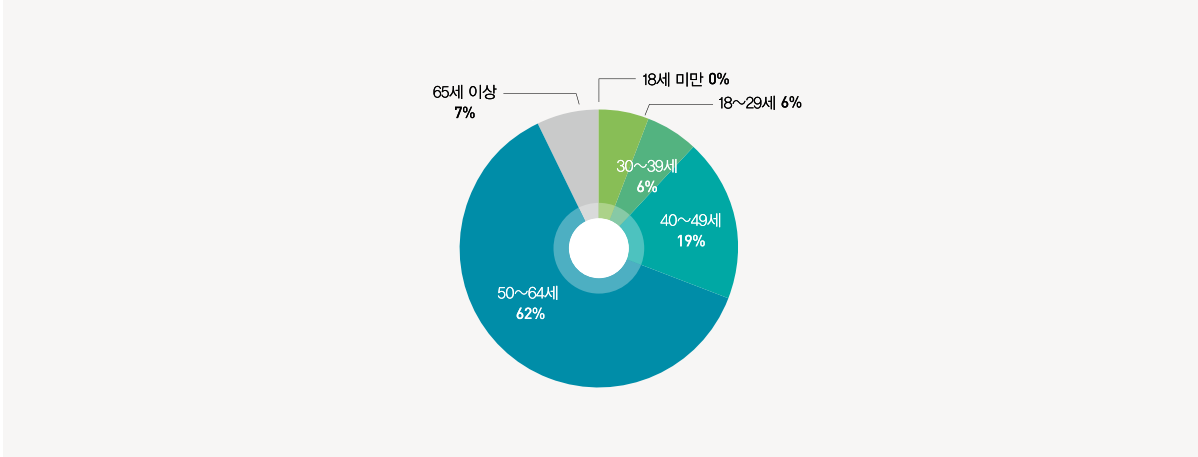
(단위: 명)



주: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포함함.

그림 6-42 연령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비율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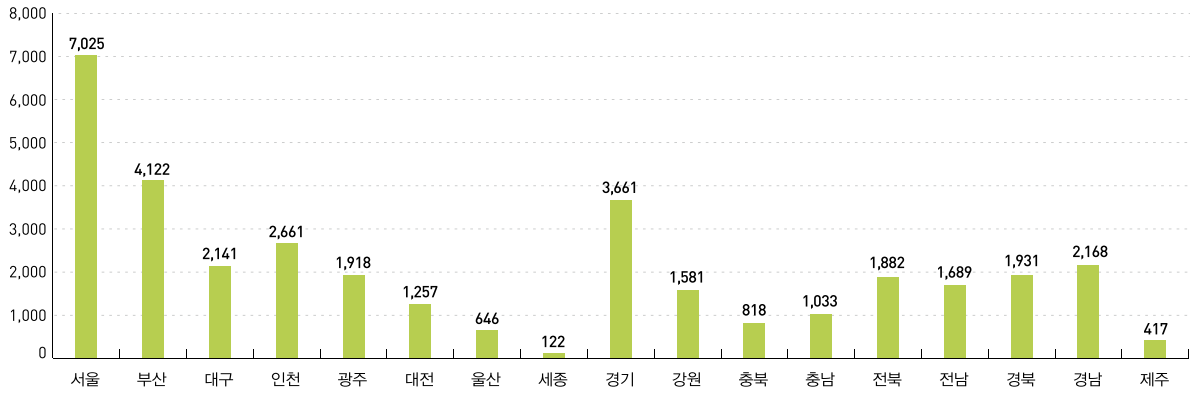
(단위: %)



주: 1) 연도 말 기준
2)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포함함.

그림 6-43 시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021)

(단위: 명)



주: 1) 연도 말 기준
2)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포함함.

16-1
연 관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Expenditure on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benefits

지표 정의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자활근로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 · 구분된다. 본 지표에서는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지급 현황을 제시한다.

측정 산식

- 자활기관별로 자활급여 지급액(자활인건비) 계산
 - 시군구직접 사업시행 = 전체지급금액 – {(국민연금+건강보험액+고용보험액+산재보험액)}
 - 타기관 = 자활소득금액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자활 참여정보(고용지원센터(취업성공패키지사업) 제외)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성별, 자활지원유형별 중복을 제외

표 6-17 연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급여지급) 수 및 급여지급액 (2014~2021)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4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참여자 수	28,849	25,301	24,666	24,505	29,977	33,665	34,848
급여지급액	23,800,292	22,935,268	22,141,027	23,185,123	35,432,076	43,543,437	47,429,108

주: 1) 연도 말 기준
2)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포함함.

표 6-18 시도별 · 성별 · 월별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 참여자 수 (2021)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14,735	18,340	15,218	18,861	15,372	19,066	15,307	19,022	15,548	19,177	15,664	19,334	15,670	19,281	15,691	19,275	15,717	19,274	15,862	19,382	15,980	19,493	15,701	19,147
서울	3,445	2,903	3,590	3,019	3,660	3,035	3,688	3,049	3,691	3,078	3,706	3,076	3,697	3,101	3,736	3,120	3,756	3,135	3,820	3,152	3,883	3,185	3,808	3,162
부산	1,704	2,183	1,725	2,214	1,752	2,243	1,767	2,266	1,782	2,274	1,793	2,279	1,791	2,247	1,790	2,241	1,789	2,272	1,797	2,283	1,837	2,303	1,812	2,278
대구	856	1,195	872	1,221	883	1,235	867	1,239	876	1,244	884	1,268	883	1,258	909	1,272	890	1,262	892	1,261	899	1,269	889	1,249
인천	1,045	1,380	1,074	1,398	1,069	1,409	1,028	1,338	1,111	1,440	1,134	1,470	1,128	1,475	1,124	1,473	1,150	1,499	1,184	1,532	1,180	1,534	1,156	1,508
광주	646	1,193	672	1,208	673	1,226	689	1,243	694	1,248	694	1,239	694	1,233	688	1,226	703	1,230	697	1,243	719	1,240	705	1,210
대전	437	744	439	758	442	765	455	756	454	746	460	740	464	739	469	746	478	739	465	741	493	759	496	765
울산	289	260	297	263	299	272	301	275	306	274	317	283	323	290	324	294	327	300	335	304	332	309	333	305
세종	58	66	63	66	64	65	59	64	59	65	59	67	59	67	62	69	63	67	61	65	60	63	59	60
경기	1,595	1,873	1,643	1,902	1,638	1,914	1,667	1,914	1,701	1,915	1,716	1,936	1,730	1,925	1,724	1,941	1,686	1,897	1,702	1,905	1,713	1,946	1,690	1,913
강원	697	889	701	899	704	914	716	916	714	926	709	919	708	911	701	903	699	894	690	869	711	900	705	891
충북	284	416	311	467	318	476	328	485	330	476	312	468	339	486	328	477	341	474	345	484	355	482	354	469
충남	448	613	449	620	450	623	439	614	448	624	447	624	429	616	429	621	439	611	444	599	436	591	422	579
전북	683	1,149	712	1,186	733	1,199	716	1,204	703	1,162	720	1,211	719	1,214	723	1,204	706	1,165	737	1,211	730	1,210	700	1,166
전남	634	1,035	686	1,108	700	1,125	678	1,110	691	1,078	707	1,131	710	1,106	689	1,094	677	1,097	679	1,096	658	1,090	630	1,041
경북	787	1,044	832	1,115	830	1,132	744	1,098	827	1,164	833	1,153	826	1,154	822	1,133	830	1,163	838	1,165	809	1,137	793	1,114
경남	915	1,151	936	1,169	937	1,183	951	1,206	948	1,209	964	1,218	965	1,214	965	1,218	971	1,224	965	1,229	956	1,231	951	1,211
제주	212	246	216	248	220	250	214	245	213	254	209	252	205	245	208	243	212	245	211	243	209	244	198	226

주: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포함함.

표 6-19 월별 지원유형별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2021)

(단위: 백만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시장진입형	8,917	8,912	10,071	9,726	10,088	9,913	10,084	10,268	10,024	10,006	9,963	11,504	119,478
인턴도우미형	3,467	3,518	4,023	3,924	4,000	3,912	3,875	3,933	3,822	3,819	3,827	4,265	46,383
사회서비스형	20,012	20,169	22,882	21,993	22,890	22,584	22,496	23,060	22,393	22,615	22,911	26,207	270,211
근로유지형	3,774	3,753	4,172	4,094	4,137	4,087	4,091	4,138	4,056	4,061	4,084	4,620	49,065
계	554	553	638	623	674	665	678	722	742	759	769	834	8,213

주: 시간제 자활근로자를 제외함.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1	월

17
대 표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Number of near-poor people participation in self-sufficiency program

지표 정의

차상위 자활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비수급권자에게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 기회와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자는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다. 또한, 근로 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 군,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하다.

측정 산식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수급 인정을 받은 근로 능력이 없는 차상위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2021, 단위: 원)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표 6-20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2014~2021)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18,912	15,611	12,085	10,647	10,324	11,525	13,136	11,741

주: 연도 말 기준

표 6-21 시도별 · 성별 · 월별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5,187	7,917	5,219	7,981	5,268	7,968	5,313	8,000	5,319	7,981	5,251	7,807	5,143	7,691	5,029	7,479	4,953	7,318	4,924	7,278	4,838	7,219	4,706	7,035
서울	621	619	618	618	627	609	628	613	624	618	615	622	610	628	596	622	605	613	616	613	582	609	555	596
부산	358	565	343	568	325	552	329	554	329	546	321	520	318	530	316	532	313	516	310	515	300	505	277	474
대구	163	316	163	309	175	314	167	327	165	319	159	312	156	308	155	302	155	294	153	290	149	293	144	296
인천	208	289	207	290	206	288	211	290	213	292	215	284	211	288	201	289	199	284	197	285	193	282	189	272
광주	122	346	129	344	129	352	133	341	134	343	139	326	137	321	135	305	132	288	128	278	133	282	127	282
대전	247	407	250	410	248	405	253	408	251	406	251	407	248	399	248	400	246	390	242	386	240	378	237	369
울산	124	200	128	220	137	224	138	230	142	235	142	236	143	239	150	234	154	228	155	228	157	230	152	232
세종	28	30	29	31	27	31	26	31	26	30	28	29	34	30	31	30	33	32	30	33	30	32	27	29
경기	737	994	739	989	735	948	744	959	756	946	741	912	722	905	704	863	677	825	680	828	670	823	643	799
강원	295	516	297	535	309	542	322	548	322	549	319	542	306	519	295	500	302	493	301	488	308	484	314	471
충북	219	292	220	291	223	289	217	287	209	280	197	286	186	276	175	256	169	259	174	257	173	254	160	246
충남	243	408	245	414	246	417	243	418	251	419	243	395	231	378	220	365	218	360	221	361	216	359	213	351
전북	366	663	378	657	378	651	377	662	377	664	370	643	362	621	352	598	347	582	340	575	327	569	322	551
전남	502	813	507	830	519	844	522	848	517	848	509	841	490	816	479	796	467	788	455	773	448	764	447	746
경북	352	526	353	528	358	535	358	539	357	543	359	542	367	537	360	522	361	528	359	527	354	528	348	509
경남	556	857	567	874	576	890	592	865	592	858	589	827	571	812	560	784	525	758	515	761	512	752	505	738
제주	46	76	46	73	50	77	53	80	54	85	54	83	51	84	52	81	50	80	48	80	46	75	46	7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자활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1	월

7

소득보장과 빈곤

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02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03 상대적 빈곤율
04 상대적 노인 빈곤율
05 소득5분위배율
06 지니계수
07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08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09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10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최저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주거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의료급여 수급자 수
		교육급여 수급자 수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노인 빈곤율	
불평등	소득5분위배율	
	지니계수	
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01
대 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Total recipients and take-up rat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지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에게 각 가구의 처한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 수급률은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빈곤율과의 비교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 추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text{총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수급자 수는 일반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를 합친 숫자이며, 수급률 역시 일반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를 합친 전체 수급자 수를 인구로 나누어 구하였다. 여기서 일반 수급자는 시설(에이즈쉼터, 노숙인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말한다.

표 7-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급가구) 현황 (2002~2021)

(단위: 천 명, %, 천 가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급자 수	1,351	1,374	1,424	1,513	1,535	1,550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9	1,646	1,631	1,582	1,744	1,881	2,134	2,360
수급률	2.8	2.8	2.9	3.1	3.1	3.1	3.1	3.2	3.1	2.9	2.7	2.6	2.6	3.2	3.2	3.1	3.4	3.6	4.1	4.6
일반 수급가구 수	691	718	754	810	832	852	854	883	879	851	822	811	814	1,014	1,035	1,032	1,165	1,282	1,459	1,638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3.10. 인출)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3.03.10. 인출)

표 7-2 성별 ·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비중 (2021)

(단위: 천 명, %)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계	385	135	103	226	353	426	641	2,269
남자(%)	50.9	45.9	42.6	43.5	54.5	52.0	30.9	44.6
여자(%)	49.1	54.1	57.4	56.5	45.5	48.0	69.1	55.4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2 (http://kosis.or.kr에서 2023.03.21. 인출)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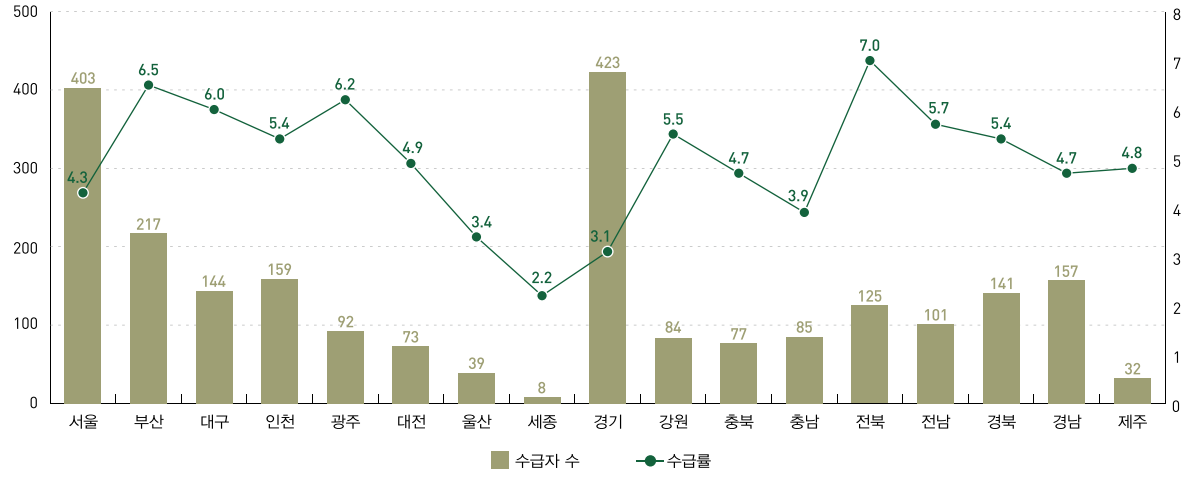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977	2021	1년

참고문헌

- e-나라지표(부문별지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그림 7-1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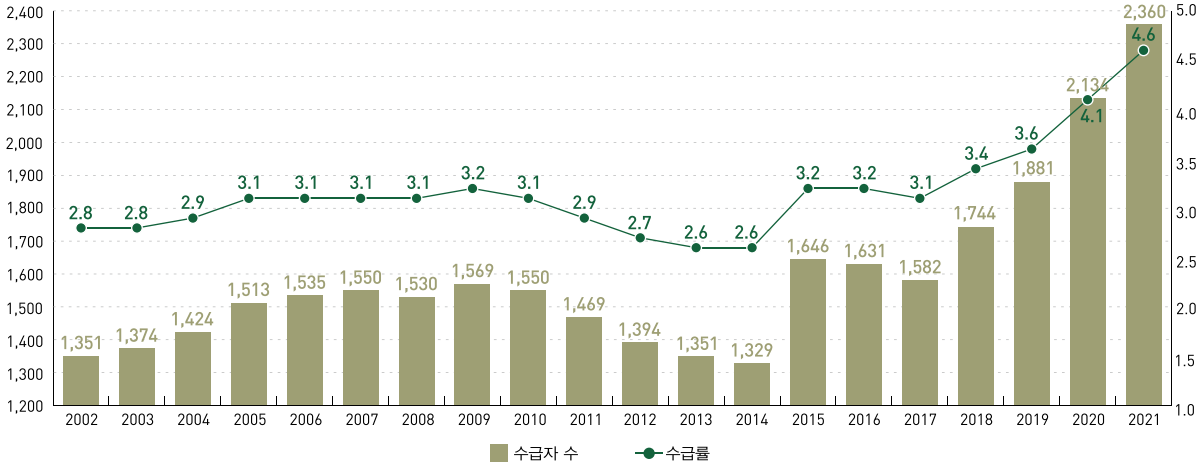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2 (http://kosis.or.kr에서 2023.03.21. 인출)
통계청, 2021년 인구총조사, 2022 (http://kosis.or.kr에서 2023.03.21. 인출)

그림 7-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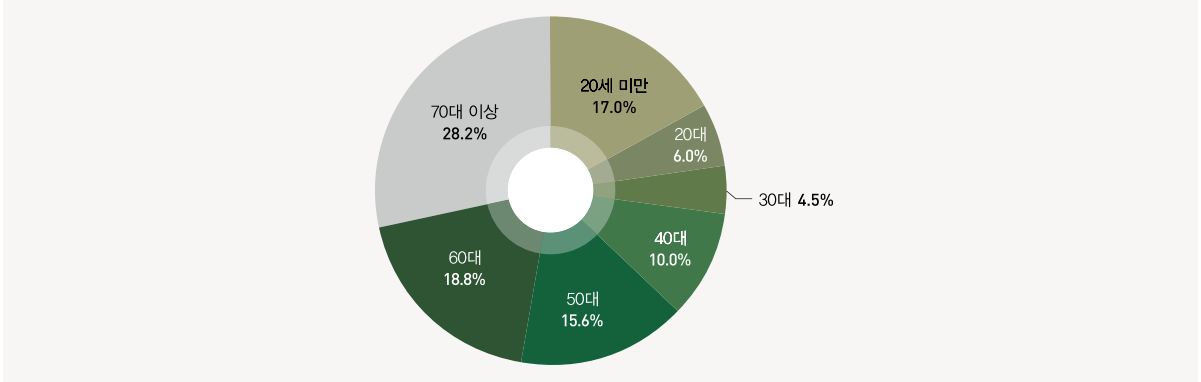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3.03.10. 인출)

그림 7-3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분포 (2021)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2 (http://kosis.or.kr에서 2023.03.21. 인출)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Overview of customize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 individuals and households

지표 정의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동안 통합급여로 지원하였던 것을 중위소득 50% 이하인 지원대상의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맞춤형 급여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현 운영 방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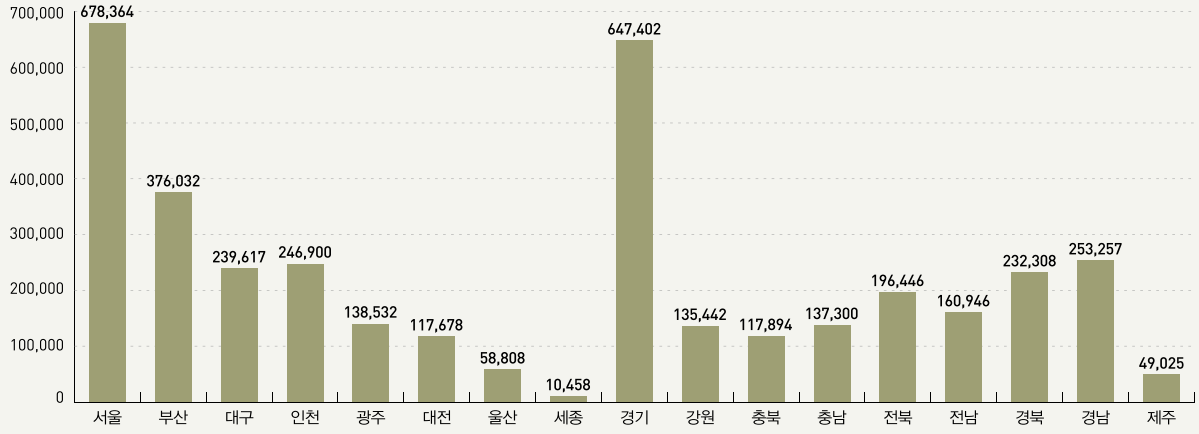
측정 산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급여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선정된 급여종류별 수급자 및 수급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그림 7-4 시도별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전체 수급가구 수 (2021)

(단위: 가구)



주: 맞춤형 급여 자격 있는 가구 기준 (가구중복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연도 말 기준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21	월

표 7-3 시도별 맞춤형 급여별 수급가구 및 수급자 수 (2021)

(단위: 가구, 명)

구분	수급가구 수		수급자 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전국	1,081,655	1,492,799	1,347,289	301,545
서울	193,478	273,759	238,274	39,928
부산	109,801	147,019	135,112	22,567
대구	68,840	93,938	87,791	16,701
인천	67,933	98,113	90,599	22,686
광주	37,446	55,031	52,975	14,138
대전	33,175	45,204	44,201	10,282
울산	15,886	25,473	19,772	2,704
세종	2,679	4,290	3,495	1,399
경기	174,401	264,854	218,872	59,526
강원	39,365	51,730	48,424	10,404
충북	34,038	46,290	40,239	10,564
충남	41,081	51,338	48,456	11,808
전북	57,572	74,005	73,841	18,385
전남	49,919	58,974	57,068	13,771
경북	69,890	86,638	83,086	17,195
경남	72,579	97,350	87,061	23,757
제주	13,572	18,793	18,023	5,730

주: 각각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교육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및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Number of livelihood benefit recipients : households

지표 정의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받는 가구로서 대상자 선정 기준인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급받는다.

측정 산식

- 생계급여 수급 신청가구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인정받은 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선정기준(2021)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단위: 원/월)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표 7-4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2015~2021)

(단위: 가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803,385	808,575	822,417	837,310	861,409	923,873	1,081,655

주: 연도 말 기준

표 7-5 월별 · 시도별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2021)

(단위: 가구)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931,138	946,035	978,934	998,467	1,012,200	1,026,199	1,034,475	1,043,551	1,048,226	1,053,314	1,066,784	1,081,655
서울	167,991	170,679	175,581	179,051	181,680	184,099	185,587	187,098	187,736	188,738	190,849	193,478
부산	94,118	96,181	99,684	101,538	102,739	104,045	104,723	105,653	106,081	106,613	108,285	109,801
대구	60,663	61,954	63,922	64,858	65,551	66,161	66,549	66,926	67,135	67,267	67,966	68,840
인천	58,516	59,252	60,760	62,321	63,442	64,414	65,200	65,934	66,251	66,540	67,069	67,933
광주	32,967	33,456	34,386	34,867	35,155	35,591	35,816	36,062	36,202	36,461	36,954	37,446
대전	29,152	29,414	30,241	30,820	31,163	31,533	31,785	32,050	32,145	32,354	32,742	33,175
울산	13,362	13,613	14,115	14,339	14,565	14,832	14,999	15,215	15,319	15,369	15,623	15,886
세종	2,299	2,325	2,372	2,431	2,457	2,503	2,524	2,546	2,577	2,580	2,614	2,679
경기	150,311	152,131	156,434	159,456	161,832	164,078	165,743	167,550	168,510	169,634	172,052	174,401
강원	34,601	35,011	36,238	36,707	37,114	37,599	37,830	38,050	38,273	38,320	38,785	39,365
충북	28,788	29,327	30,798	31,543	31,972	32,379	32,622	32,851	32,953	33,143	33,501	34,038
충남	34,622	35,224	37,029	37,767	38,460	39,172	39,424	39,799	39,998	40,121	40,600	41,081
전북	50,094	50,997	53,034	54,071	54,620	55,266	55,582	56,056	56,267	56,462	57,006	57,572
전남	41,733	42,493	44,987	46,265	46,931	47,711	48,017	48,314	48,482	48,593	49,257	49,919
경북	59,056	60,010	62,687	64,342	65,187	66,122	66,622	67,099	67,491	67,805	68,797	69,890
경남	61,162	62,089	64,459	65,636	66,699	67,887	68,546	69,338	69,745	70,139	71,389	72,579
제주	11,703	11,879	12,207	12,455	12,633	12,807	12,906	13,010	13,061	13,175	13,295	13,572

주: 맞춤형급여 기초생계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21	월

01-3
연 관

주거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Number of housing benefit recipients : individuals and households

지표 정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임차료, 수선유지금 등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받는 가구로서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지원받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금을 차등 지원받는다.

측정 산식

- 주거급여 수급 신청가구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인정받은 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급여 선정기준(2021)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5% 이하(단위: 원)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표 7-6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15~2021)

(단위: 가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879,597	880,356	885,964	1,027,572	1,150,930	1,331,334	1,492,799

주: 연도 말 기준

표 7-7 월별 · 시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21)

(단위: 가구)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340,355	1,354,062	1,380,561	1,401,157	1,418,179	1,434,628	1,443,861	1,456,622	1,462,547	1,468,487	1,480,695	1,492,799
서울	245,690	248,252	252,469	256,356	259,789	263,213	265,117	267,429	268,344	269,602	271,524	273,759
부산	131,556	132,965	135,869	137,804	139,429	140,932	141,742	142,979	143,563	144,188	145,669	147,019
대구	84,616	85,511	87,368	88,680	89,783	90,661	91,159	91,742	92,152	92,437	93,159	93,938
인천	86,928	87,798	89,327	90,656	91,966	93,297	94,464	95,915	96,275	96,740	97,553	98,113
광주	49,803	50,359	51,297	52,027	52,524	53,150	53,440	53,740	53,965	54,229	54,625	55,031
대전	40,706	40,987	41,690	42,376	42,969	43,422	43,727	44,154	44,273	44,491	44,863	45,204
울산	21,980	22,267	22,919	23,320	23,708	24,084	24,355	24,614	24,795	24,857	25,175	25,473
세종	3,795	3,867	3,925	3,986	4,053	4,080	4,094	4,147	4,173	4,185	4,204	4,290
경기	234,567	237,351	242,010	245,959	249,330	252,650	254,629	257,273	258,708	260,254	262,751	264,854
강원	48,570	48,893	49,643	50,019	50,356	50,724	50,863	51,081	51,262	51,150	51,342	51,730
충북	41,781	42,109	43,015	43,810	44,271	44,736	44,976	45,296	45,441	45,651	45,931	46,290
충남	46,008	46,463	47,424	48,067	48,734	49,246	49,512	50,004	50,267	50,471	50,933	51,338
전북	68,281	68,804	70,041	70,935	71,540	72,045	72,182	72,635	72,851	73,059	73,566	74,005
전남	55,690	55,971	56,850	57,511	57,843	58,221	58,250	58,538	58,534	58,244	58,639	58,974
경북	78,104	78,890	80,457	81,751	82,590	83,471	83,882	84,402	84,744	85,166	85,890	86,638
경남	85,804	86,913	89,155	90,414	91,555	92,712	93,367	94,426	94,882	95,302	96,309	97,350
제주	16,476	16,662	17,102	17,486	17,739	17,984	18,102	18,247	18,318	18,461	18,562	18,793

주: 맞춤형급여 기초주거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21	월

표 7-8 시도별 · 주거유형별 맞춤형 급여(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21)

(단위: 가구)

구분	자가	임차											개인운영시설	시설입소(급여미지급)	기타
		공공임대	민간임대	사용대차											
				전체사용대차				부분사용대차							
				기타대가유	기타대가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별도가구특례	기타대가유	기타대가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별도가구특례	급여미지급			
전국	107,669	519,471	562,238	21,993	578	142	2,341	19,432	671	337	98,944	96,470	8,137	1,746	52,630
서울	3,636	116,528	117,457	1,337	40	3	291	2,647	63	12	16,622	9,892	1,056	234	3,941
부산	11,578	43,115	67,112	1,521	102	1	318	1,524	160	3	7,386	9,233	258	53	4,655
대구	3,654	34,474	40,610	880	37	4	243	888	58	6	5,593	4,977	159	93	2,262
인천	7,915	36,129	36,131	1,166	15	7	119	1,109	17	6	7,020	5,787	433	193	2,066
광주	2,917	25,679	16,637	494	9	1	63	521	8	1	2,755	3,820	383	23	1,720
대전	2,323	20,160	15,920	292	11	2	118	260	24	3	2,367	2,284	391	43	1,006
울산	827	7,391	12,813	207	22	-	20	306	7	1	1,484	1,330	56	25	984
세종	286	1,504	1,401	106	-	-	11	118	5	1	341	278	27	-	212
경기	7,878	113,266	90,992	2,310	71	8	194	3,162	132	17	22,857	14,041	2,344	719	6,863
강원	6,744	12,965	19,163	1,301	36	15	190	952	22	14	3,956	3,724	226	40	2,382
충북	5,906	13,969	14,193	1,073	8	5	76	897	3	3	3,487	3,969	527	40	2,134
충남	7,153	12,938	16,069	1,886	30	1	94	1,484	59	4	4,300	4,139	353	26	2,802
전북	10,934	23,384	20,097	812	15	55	131	499	4	249	4,134	8,643	510	29	4,509
전남	12,374	10,793	14,758	2,963	58	30	94	1,843	35	6	4,102	6,871	655	64	4,328
경북	13,658	17,221	31,880	2,954	82	5	166	1,669	43	2	4,568	7,790	267	68	6,265
경남	9,250	25,442	37,734	2,342	38	3	143	1,314	30	8	6,597	7,992	406	82	5,969
제주	636	4,513	9,271	349	4	2	70	239	1	1	1,375	1,700	86	14	532

주: 1) 시설 수급자 포함
2) 맞춤형 급여 도입 후 주거유형이 5개에서 15개로 확대됨에 따라 1:1 매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그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 따라서 '기타'에는 입력값 오류와 주거유형 비매칭 수급자로 구성됨.
3) 연도 말 기준

표 7-9 시도별 · 급여종류별 주거약자가 포함된 맞춤형 급여(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21)

(단위: 가구)

시도	합계 (A+C)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65세 이상 장애인 (A=aUb, 중복제거)	65세 이상 (a)	장애인 (b)	65세 이상 장애인 (C=cUd, 중복제거)	65세 이상 (c)	장애인 (d)
전국	946,827	853,904	633,116	405,951	92,923	80,805	41,072
서울	174,208	171,224	133,138	75,838	2,984	2,671	1,109
부산	95,086	85,429	66,489	36,879	9,657	8,751	3,578
대구	57,306	54,377	40,597	26,062	2,929	2,578	1,262
인천	59,725	53,369	39,740	26,043	6,356	5,600	2,743
광주	30,605	28,398	19,820	14,224	2,207	1,862	945
대전	27,519	25,626	17,976	13,172	1,893	1,614	847
울산	15,205	14,536	10,986	6,577	669	570	289
세종	2,543	2,296	1,717	1,075	247	222	108
경기	170,289	163,604	122,673	76,626	6,685	5,779	2,897
강원	34,591	28,559	20,938	13,850	6,032	5,336	2,690
충북	30,577	25,359	17,799	12,821	5,218	4,480	2,395
충남	34,830	28,303	19,520	14,856	6,527	5,670	2,952
전북	46,803	37,257	26,063	19,896	9,546	8,282	4,427
전남	40,697	29,416	19,610	15,909	11,281	9,682	5,254
경북	55,412	43,298	30,760	21,652	12,114	10,407	5,595
경남	60,376	52,316	37,761	25,196	8,060	6,905	3,687
제주	11,055	10,537	7,529	5,275	518	396	294

주: 시설 수급자 제외, 연도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medical aid benefit recipients : individuals

지표 정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분류되어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측정 산식

- 의료급여 수급 신청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의료급여 선정기준(2021)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단위: 원)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표 7-10 의료급여 수급자 수 (2015~2021)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급여 수급자 수	1,343,775	1,319,780	1,302,248	1,306,568	1,309,695	1,353,764	1,347,289

주: 연도 말 기준

표 7-11 월별 · 시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354,159	1,356,445	1,361,354	1,363,652	1,363,644	1,353,298	1,352,002	1,355,085	1,355,197	1,355,317	1,355,989	1,347,289
서울	238,444	239,009	239,769	240,430	240,971	239,439	239,128	239,597	239,367	239,505	239,735	238,274
부산	134,090	134,433	135,360	135,870	136,021	135,287	135,165	135,658	135,739	135,724	135,994	135,112
대구	88,667	88,790	89,142	88,974	89,016	88,576	88,425	88,477	88,474	88,185	88,114	87,791
인천	89,848	90,058	90,389	90,712	90,788	90,357	90,612	90,915	91,071	91,141	91,086	90,599
광주	54,242	54,289	54,378	54,269	54,076	53,594	53,503	53,532	53,493	53,449	53,414	52,975
대전	44,172	44,160	44,264	44,487	44,587	44,238	44,226	44,345	44,272	44,361	44,417	44,201
울산	19,144	19,225	19,406	19,477	19,566	19,545	19,549	19,684	19,740	19,754	19,850	19,772
세종	3,483	3,474	3,475	3,470	3,450	3,441	3,445	3,459	3,475	3,464	3,478	3,495
경기	218,774	219,336	220,166	220,822	220,912	219,014	219,097	219,721	219,907	220,256	220,573	218,872
강원	49,946	49,859	49,950	49,889	49,786	49,192	48,996	48,973	48,983	48,876	48,831	48,424
충북	40,661	40,701	40,883	41,049	41,030	40,709	40,607	40,648	40,613	40,603	40,555	40,239
충남	49,039	49,076	49,256	49,215	49,132	48,560	48,577	48,743	48,785	48,809	48,793	48,456
전북	76,066	76,031	76,095	76,017	75,883	75,017	74,621	74,716	74,651	74,526	74,477	73,841
전남	60,089	59,912	59,806	59,615	59,025	58,164	57,999	57,979	57,841	57,754	57,600	57,068
경북	83,788	83,982	84,218	84,478	84,421	83,537	83,425	83,609	83,632	83,660	83,602	83,086
경남	85,975	86,273	86,848	86,860	86,911	86,652	86,651	86,998	87,094	87,143	87,384	87,061
제주	17,731	17,837	17,949	18,018	18,069	17,976	17,976	18,031	18,060	18,107	18,086	18,023

주: 맞춤형 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21	월

표 7-12 시도별 · 종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구분	1종	2종	값없음	계
전국	978,761	365,449	3,079	1,347,289
서울	167,481	70,112	681	238,274
부산	96,322	38,593	197	135,112
대구	62,219	25,484	88	87,791
인천	62,591	27,714	294	90,599
광주	32,570	20,343	62	52,975
대전	29,561	14,556	84	44,201
울산	14,913	4,785	74	19,772
세종	2,490	997	8	3,495
경기	167,077	51,087	708	218,872
강원	36,719	11,635	70	48,424
충북	30,640	9,493	106	40,239
충남	38,219	10,095	142	48,456
전북	51,323	22,440	78	73,841
전남	44,394	12,539	135	57,068
경북	63,910	19,018	158	83,086
경남	66,559	20,341	161	87,061
제주	11,773	6,217	33	18,023

주: 실수급자 기준임. 연도 말 기준

01-5
연 관

교육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education benefit recipients : individuals

지표 정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받는다.

측정 산식

- 교육급여 수급 신청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교육급여 선정기준(2021)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원)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표 7-13 교육급여 수급자 수 (2015~2021)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교육급여 수급자 수	377,638	370,062	324,735	299,829	283,258	294,362	301,545

주: 연도 말 기준

표 7-14 월별 · 시도별 교육급여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294,383	294,916	273,551	287,835	298,911	303,115	302,934	302,480	302,155	302,509	302,603	301,545
서울	41,608	41,652	37,490	38,424	39,444	40,056	40,122	40,146	40,079	40,121	40,087	39,928
부산	22,054	22,099	19,950	21,555	22,192	22,509	22,536	22,554	22,594	22,632	22,666	22,567
대구	16,524	16,529	15,451	16,114	16,589	16,734	16,743	16,676	16,702	16,720	16,694	16,701
인천	21,708	21,765	20,896	21,445	22,221	22,801	22,898	22,845	22,818	22,821	22,823	22,686
광주	13,805	13,825	12,658	13,916	14,153	14,277	14,254	14,234	14,223	14,224	14,186	14,138
대전	10,193	10,194	9,376	9,806	10,165	10,273	10,283	10,291	10,263	10,307	10,316	10,282
울산	2,548	2,540	2,330	2,481	2,644	2,670	2,660	2,683	2,691	2,690	2,695	2,704
세종	1,312	1,316	1,231	1,259	1,363	1,381	1,395	1,382	1,380	1,385	1,372	1,399
경기	57,583	57,664	55,671	57,503	59,678	60,621	60,420	60,129	59,943	59,998	59,922	59,526
강원	10,477	10,494	9,494	9,925	10,358	10,498	10,415	10,396	10,399	10,399	10,381	10,404
충북	10,220	10,239	9,365	9,915	10,498	10,635	10,649	10,641	10,602	10,610	10,637	10,564
충남	11,377	11,404	10,416	10,939	11,486	11,682	11,703	11,722	11,745	11,756	11,819	11,808
전북	18,036	18,078	16,695	17,779	18,444	18,544	18,478	18,440	18,427	18,427	18,411	18,385
전남	13,586	13,576	12,391	13,386	13,857	13,970	13,921	13,924	13,862	13,843	13,878	13,771
경북	16,332	16,385	15,061	16,403	16,972	17,139	17,054	17,058	17,076	17,139	17,223	17,195
경남	21,816	21,899	20,207	21,806	23,233	23,663	23,744	23,663	23,659	23,696	23,765	23,757
제주	5,204	5,257	4,869	5,179	5,614	5,662	5,659	5,696	5,692	5,741	5,728	5,730

주: 맞춤형 급여 기초교육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21	월

02
대 표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Number of near-poor people in receipt of priority care

지표 정의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는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 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중앙부처 10개 기관 20여 개 사업과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연계되는 대상자들을 말한다.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달리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출(실제소득-부양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측정 산식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사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연계된 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2021)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단위: 원)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표 7-15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2015~2021)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차상위 확인서발급 수급자 수	127,217	128,997	149,647	149,312	142,886	173,278	213,228

주: 연도 말 기준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1	월

표 7-16 월별 · 시도별 · 성별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시도	성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남	59,925	59,757	59,555	59,736	59,823	58,924	57,253	81,112	84,372	83,691	82,399	79,803
	여	112,876	112,310	110,273	109,611	109,119	107,443	104,991	135,116	139,743	138,982	137,120	133,425
서울	남	15,112	15,075	14,964	14,973	14,960	14,577	14,157	16,053	16,565	16,441	16,205	15,698
	여	22,336	22,292	22,176	22,057	21,941	21,425	20,858	23,261	23,924	23,772	23,493	22,838
부산	남	4,551	4,521	4,486	4,480	4,458	4,358	4,213	6,531	6,658	6,590	6,473	6,214
	여	7,740	7,654	7,534	7,466	7,395	7,264	7,063	9,955	10,168	10,117	9,969	9,640
대구	남	2,597	2,605	2,547	2,523	2,528	2,501	2,436	4,173	4,251	4,187	4,107	3,996
	여	4,783	4,751	4,575	4,516	4,473	4,454	4,352	6,633	6,782	6,700	6,598	6,467
인천	남	2,560	2,563	2,554	2,542	2,545	2,537	2,505	4,414	4,664	4,613	4,507	4,340
	여	4,454	4,451	4,396	4,357	4,331	4,295	4,196	6,793	7,131	7,101	6,950	6,760
광주	남	1,232	1,210	1,212	1,222	1,186	1,138	1,082	1,982	2,184	2,143	2,077	2,011
	여	2,164	2,148	2,113	2,086	2,068	2,020	1,961	3,019	3,333	3,295	3,202	3,094
대전	남	2,123	2,115	2,120	2,131	2,144	2,089	2,049	2,857	2,936	2,910	2,859	2,769
	여	3,606	3,609	3,572	3,543	3,536	3,432	3,356	4,418	4,515	4,477	4,434	4,291
울산	남	786	799	786	776	779	781	763	1,119	1,181	1,164	1,154	1,123
	여	1,398	1,417	1,400	1,402	1,401	1,396	1,363	1,829	1,981	1,956	1,959	1,909
세종	남	162	155	145	144	143	126	110	189	202	191	196	197
	여	254	250	245	248	252	230	223	324	337	327	321	327
경기	남	11,309	11,332	11,404	11,420	11,477	11,336	11,085	15,599	16,594	16,514	16,356	15,786
	여	16,712	16,758	16,797	16,882	16,986	16,760	16,426	22,520	24,043	24,014	23,748	23,027
강원	남	2,202	2,185	2,180	2,196	2,148	2,177	2,080	2,632	2,769	2,773	2,754	2,690
	여	4,805	4,782	4,711	4,678	4,629	4,630	4,500	5,243	5,387	5,365	5,315	5,187
충북	남	1,586	1,555	1,570	1,584	1,617	1,593	1,540	2,328	2,416	2,393	2,361	2,263
	여	3,592	3,537	3,382	3,350	3,361	3,347	3,263	4,254	4,353	4,330	4,294	4,153
충남	남	2,240	2,221	2,217	2,244	2,245	2,254	2,200	3,241	3,310	3,271	3,207	3,137
	여	5,936	5,848	5,598	5,551	5,484	5,413	5,293	6,690	6,743	6,691	6,585	6,434
전북	남	2,535	2,504	2,490	2,500	2,528	2,475	2,408	4,115	4,193	4,151	4,045	3,927
	여	6,656	6,536	6,211	6,107	6,057	5,922	5,795	7,657	7,810	7,735	7,561	7,359
전남	남	2,753	2,768	2,748	2,740	2,711	2,682	2,582	3,860	4,256	4,208	4,140	4,044
	여	8,686	8,633	8,331	8,163	8,028	7,914	7,705	9,161	9,649	9,594	9,439	9,246
경북	남	3,952	3,942	3,910	3,962	3,992	3,963	3,821	5,339	5,476	5,458	5,404	5,239
	여	10,324	10,289	9,997	9,948	9,928	9,773	9,621	11,384	11,567	11,508	11,415	11,139
경남	남	3,699	3,674	3,681	3,734	3,777	3,757	3,667	5,573	5,616	5,592	5,497	5,352
	여	8,515	8,439	8,313	8,315	8,310	8,229	8,104	10,386	10,414	10,387	10,268	10,047
제주	남	526	533	541	565	585	580	555	1,107	1,101	1,092	1,057	1,017
	여	915	916	922	942	939	939	912	1,589	1,606	1,613	1,569	1,507

03
대 표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지표 정의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된 소득의 중위값 일정 비율(보통 40%, 50%, 60%)을 빈곤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선으로 설정한 후 이 기준선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과 전체 인구와의 비율로 정의한다.

• 과거에는 최저생계비와 같은 절대적 빈곤선을 가지고 빈곤율을 계측해왔으나,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제도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이 적용되고 있다.

측정 산식

$$\bullet \ \frac{\text{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인구수}}{\text{전체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소득 기준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상대적 빈곤율의 기준선(기준중위소득의 40%, 50%, 60%)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50%의 상대적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표 7-17 소득별 · 자료원별 중위소득 50% 상대적 빈곤율 (2006~2021)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16.6	17.3	17.5	18.1	18.0	18.3	17.6	17.8	17.9	18.6	19.5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19.6	19.0	19.1	19.6	19.5	19.8	19.7	19.9	20.8	21.3	20.8
처분가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4.6	14.4	13.8	14.7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18.6	18.3	18.4	18.2	17.5	17.6	17.3	16.7	16.3	15.3	15.1

주: 1)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는 2016년까지 공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를 공표함.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 횡단면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그룹별 5년 주기로 순환되는 연동패널이 도입됨.
2011~2014년 과거계열은 소득분배지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계열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하여 공표함.
2) 중위소득 50%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전을 받은 뒤, 국민 상위 50% 소득(중앙값)의 절반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 상대적 빈곤율(가계금융복지조사) (http://kosis.kr에서 2023.03.21. 인출)
통계청. 상대적 빈곤율(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3.03.21. 인출)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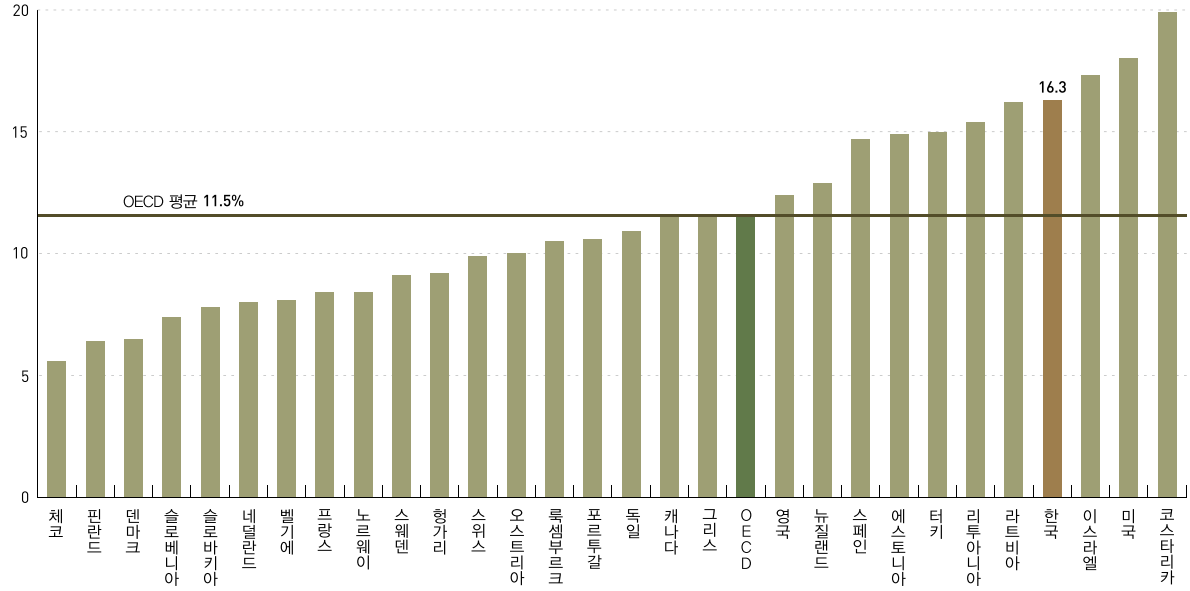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21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21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21	1년

참고문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그림 7-5 OECD 국가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비교 (2019)

(단위: %)



주: 2019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에서 2023.03.22. 인출)

04
대 표

상대적 노인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지표 정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균등화된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40 · 50 · 60%) 미만인 노인(65세 이상 또는 66세 이상)의 비율로 정의한다.

• 노인은 통상 근로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은 빈곤정책, 노후소득보장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정립하는데 참고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text{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노인 수} \div \text{전체 노인 수} \times 100$$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소득 기준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노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계산된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표 7-18 소득별 · 자료원별 중위 50% 기준 상대적 노인 빈곤율 (2006~2021)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장소득	66세 이상	가계동향조사	53.7	54.8	54.9	58.3	60.0	61.1	61.6	62.8	63.8	64.0	66.5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57.8	56.7	56.9	57.3	57.8	58.7	58.3	59.9	61.0	60.2	59.5
	65세 이상	가계동향조사	52.3	53.7	53.9	57.3	59.1	60.2	60.3	61.3	62.5	63.2	65.5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56.9	55.4	55.7	55.9	56.6	57.5	56.7	58.5	59.0	58.6	57.6
처분가능소득	66세 이상	가계동향조사	43.9	44.6	45.5	47.0	47.2	48.6	48.5	49.6	48.8	45.7	47.7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47.8	47.0	47.7	46.0	44.3	45.0	44.0	43.4	43.2	40.4	39.3
	65세 이상	가계동향조사	42.8	43.6	44.1	45.9	46.3	47.6	47.2	48.1	47.4	44.8	46.5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46.5	45.4	46.3	44.5	43.2	43.6	42.3	42.0	41.4	38.9	37.6

주: 1) 노인빈곤에서 노인인구는 OECD 기준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과 노인복지법 기준(65세 이상)을 구분하여 제시
2)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는 2016년까지 공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를 공표함.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 횡단면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그룹별 5년 주기로 순환되는 연동패널이 도입됨.
2011~2014년 과거계열은 소득분배지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계열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하여 공표함.
3) 중위소득 50%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전을 받은 뒤, 국민 상위 50% 소득(중앙값)의 절반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 상대적 노인 빈곤율(가계금융복지조사) (http://kosis.or.kr에서 2023.03.22. 인출)
통계청, 상대적 노인 빈곤율(가계동향조사) (http://kosis.or.kr에서 2023.03.22.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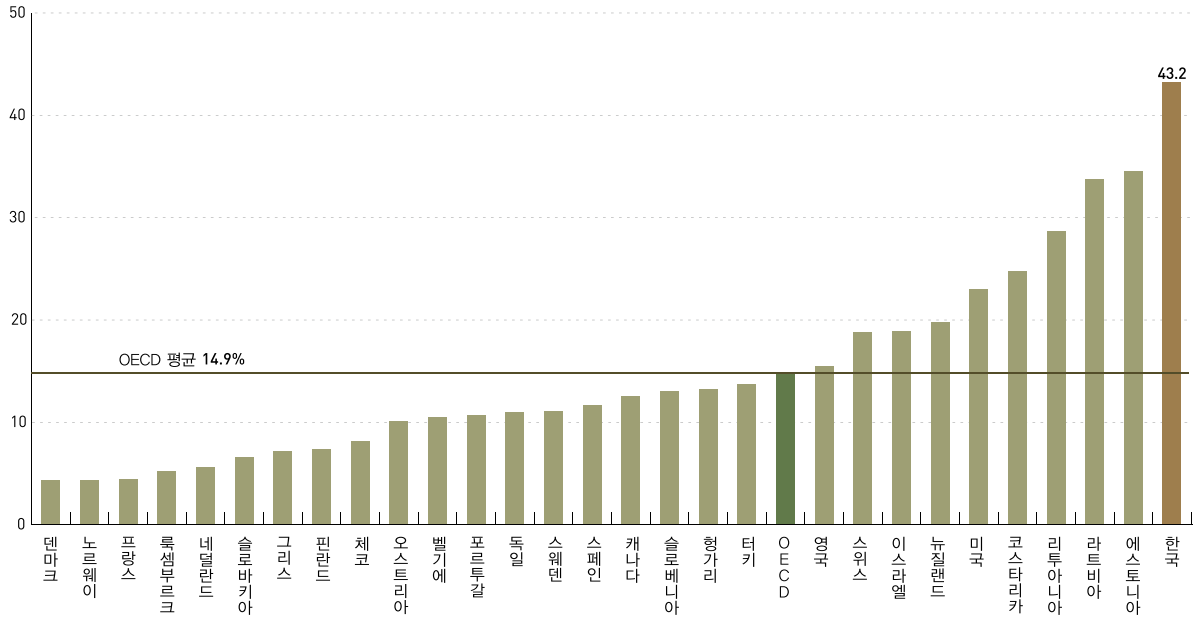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21	분기,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2005	2021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21	1년

참고문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그림 7-6 OECD 국가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 빈곤율 비교 (2019) : 66세 이상 노인 대상

(단위: %)



주: 2019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에서 2023.03.23. 인출)

05 대 표

소득5분위배율

Income quintile share ratio (s80/s20)

지표 정의

소득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 소득10분위배율과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frac{\text{상위 20\% 평균 소득}}{\text{하위 20\% 평균 소득}}$$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소득 기준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표 7-19 소득별 · 자료원별 소득5분위배율 (2006~2021)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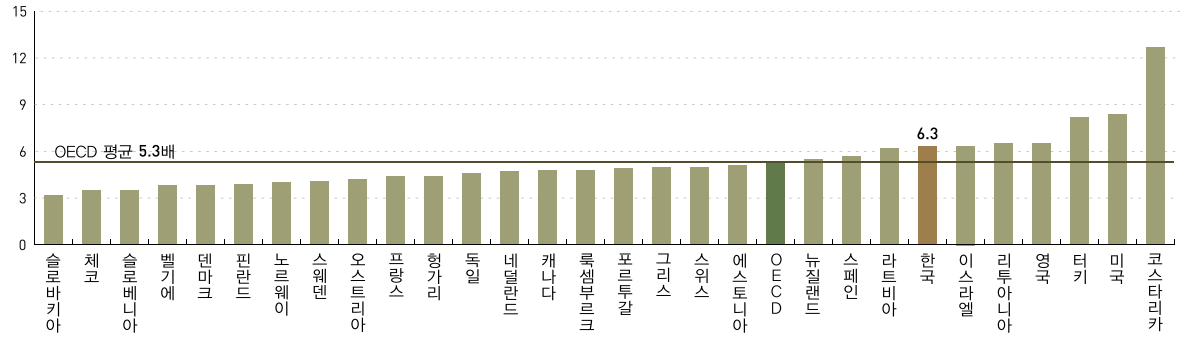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6.65	7.09	7.38	7.70	7.74	7.86	7.51	7.59	8.08	8.24	9.32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11.21	10.65	10.29	10.32	10.41	10.88	11.27	11.15	11.56	11.37	11.52
처분가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5.38	5.60	5.71	5.75	5.66	5.73	5.54	5.43	5.41	5.11	5.45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8.32	8.10	7.68	7.37	6.91	6.98	6.96	6.54	6.25	5.85	5.96

주: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는 2016년까지 공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를 공표함.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 횡단면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그룹별 5년 주기로 순환되는 연동패널이 도입됨.
2011~2014년 과거계열은 소득분배지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계열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하여 공표함.

자료: 통계청, 소득5분위배율(가계금융복지조사) (http://kosis.kr에서 2023.03.23. 인출)
통계청, 소득5분위배율(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3.03.23. 인출)

그림 7-7 OECD 국가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 비교 (2019)

(단위: 배)



주: 2019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에서 2023.03.2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21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21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21	1년

참고문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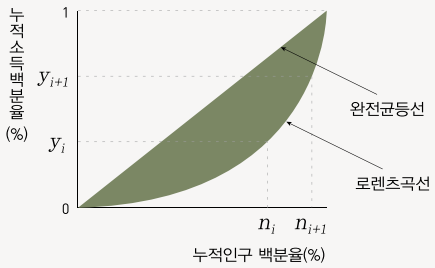
06
대 표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지표 정의

지니계수는 전체 인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로렌츠 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 면적의 비율로 작성된다. 로렌츠 곡선은 가로축에 소득 순위에 따른 인구의 누적 백분율, 세로축에는 각 가구의 소득을 균등화하여 개인화한 균등화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한 그래프이다.

- 지니계수는 0(완전균등)에서 1(완전불균등)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며 소득불평등의 국제 비교에 많이 활용된다.
- 지니계수 그래프



측정 산식

- $\frac{1}{n}\left(n + 1 - 2\left(\frac{\sum_{i=1}^{n}(n + 1 - i)y_i}{\sum_{i=1}^{n} y_i}\right)\right)^*$

* n: 전체 인구수, y_i: i번째 인구의 소득, i: 1, ···, n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소득 기준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표 7-20 소득별 · 자료원별 지니계수 (2006~2021)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0.330	0.340	0.344	0.345	0.341	0.342	0.338	0.336	0.341	0.341	0.353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0.418	0.411	0.401	0.397	0.396	0.402	0.406	0.402	0.404	0.405	0.405
처분가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0.302	0.302	0.295	0.304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0.388	0.385	0.372	0.363	0.352	0.355	0.354	0.345	0.339	0.331	0.333

주: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는 2016년까지 공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를 공표함.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 횡단면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그룹별 5년 주기로 순환되는 연동패널이 도입됨.
2011~2014년 과거계열은 소득분배지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계열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하여 공표함.
자료: 통계청, 지니계수(가계금융복지조사) (http://kosis.kr에서 2023.03.24. 인출)
통계청, 지니계수(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3.03.24.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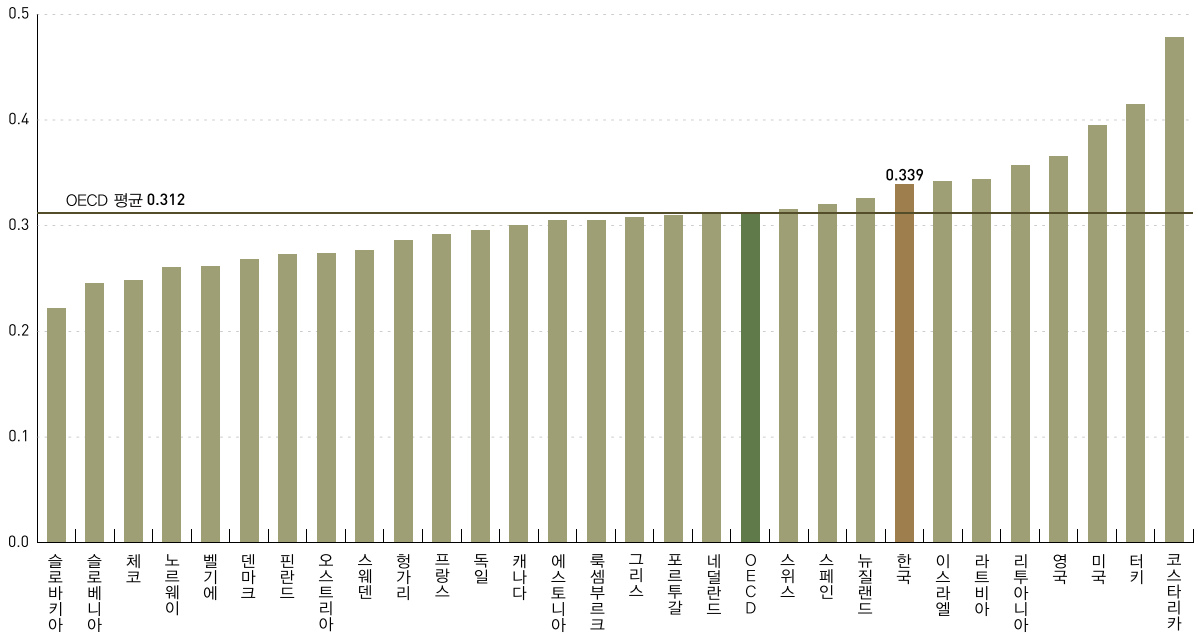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21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21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21	1년

참고문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그림 7-8 OECD 국가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비교 (2019)



주: 2019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에서 2023.03.24. 인출)

07
대 표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Total recipients and take-up rates of basic (old-age) pension allowance

지표 정의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에 대해 매월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이다.

•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들의 소득 일정부문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text{기초연금 수급자 수} \div \text{65세 이상 노인 수} \times 100$$

표 7-21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8~2022)

(단위: 천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5,069	5,268	5,506	5,701	5,980	6,251	6,521	6,771	6,987	7,346	7,639	8,014	8,482	8,835	9,250
수급자 수	2,898	3,630	3,728	3,818	3,933	4,066	4,353	4,495	4,581	4,869	5,126	5,346	5,660	5,973	6,239
수급률	57.2	68.9	67.7	67.0	65.8	65.0	66.8	66.4	65.6	66.3	67.1	66.7	66.7	67.6	67.4

주: 1)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인구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한 수치임.
2) 2008~2013년은 기초노령연금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2023

표 7-22 성별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8~2022)

(단위: 천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남성	916 (44.9)	1,259 (59.1)	1,302 (58.1)	1,341 (57.5)	1,386 (56.2)	1,442 (55.5)	1,580 (57.9)	1,644 (57.7)	1,684 (57.0)	1,822 (58.3)	1,952 (59.8)	2,057 (59.6)	2,205 (60.0)	2,358 (61.2)	2,484 (61.2)
여성	1,982 (65.4)	2,371 (75.6)	2,426 (74.3)	2,478 (73.6)	2,547 (72.5)	2,624 (71.8)	2,774 (73.1)	2,851 (72.7)	2,898 (71.8)	3,046 (72.2)	3,173 (72.6)	3,289 (72.1)	3,454 (71.9)	3,615 (72.6)	3,755 (72.4)

주: 1) 각 연도 12월 기준임.
2) 2008~2013년은 기초노령연금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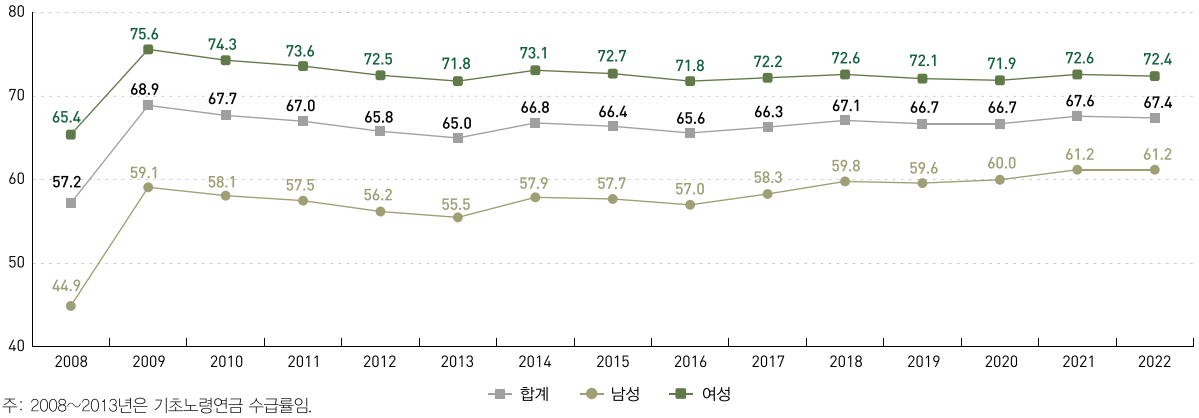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2023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2008	2014	1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015	2022	1년

그림 7-9 성별 기초연금 수급률 (200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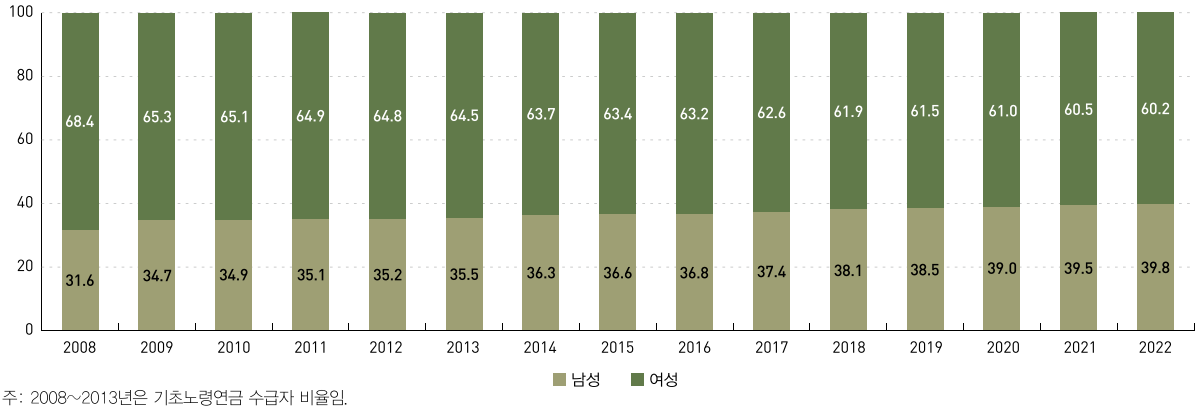
(단위: %)



주: 2008~2013년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2023

그림 7-10 성별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200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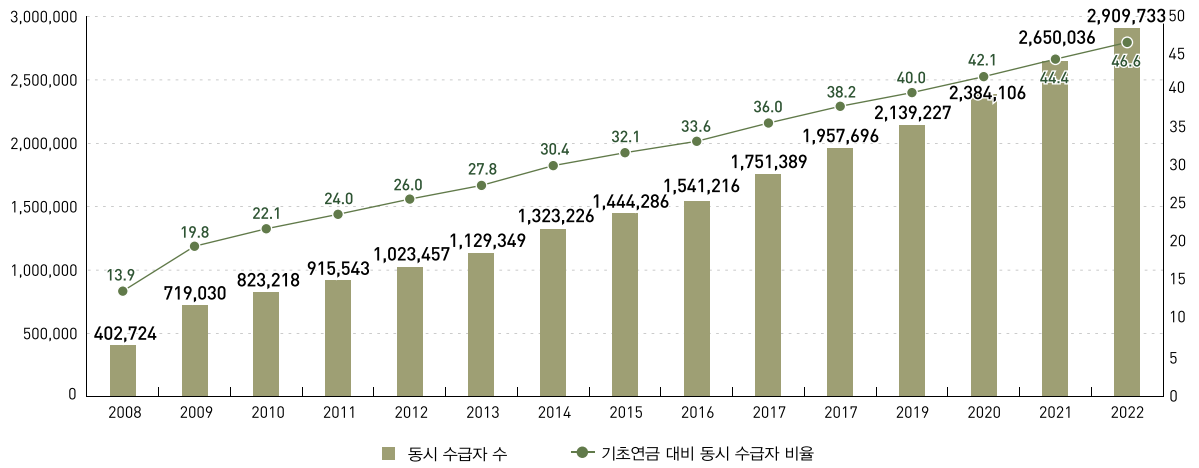
(단위: %)



주: 2008~2013년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2023

그림 7-1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2008~2022)

(단위: 명, %)



주: 2008~2013년은 기초노령연금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2023

08
대 표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National pension participants by insurance type

지표 정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노령 및 장애 발생 그리고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국민연금 가입자 지표를 통해 최근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노후준비가 점점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가입종별 가입자 수}}{\text{전체 가입자 수}} \times 100$

표 7-23 연도별 · 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1995	7,496,623	5,541,966	1,650,958	239,229	48,710	15,760
	(100.0)	(73.9)	(22.0)	(3.2)	(0.6)	(0.2)
1999	16,261,889	5,238,149	5,309,735	5,512,567	32,868	168,570
	(100.0)	(32.2)	(32.7)	(33.9)	(0.2)	(1.0)
2010	19,228,875	10,414,780	3,574,709	5,099,783	90,222	49,381
	(100.0)	(54.2)	(18.6)	(26.5)	(0.5)	(0.3)
2011	19,885,911	10,976,501	3,775,873	4,899,557	171,134	62,846
	(100.0)	(55.2)	(19.0)	(24.6)	(0.9)	(0.3)
2012	20,329,060	11,464,198	3,903,217	4,665,179	207,890	88,576
	(100.0)	(56.4)	(19.2)	(22.9)	(1.0)	(0.4)
2013	20,744,780	11,935,759	3,938,993	4,575,441	177,569	117,018
	(100.0)	(57.5)	(19.0)	(22.1)	(0.9)	(0.6)
2014	21,125,135	12,309,856	3,873,696	4,571,014	202,536	168,033
	(100.0)	(58.3)	(18.3)	(21.6)	(1.0)	(0.8)
2015	21,568,354	12,805,852	3,791,244	4,511,565	240,582	219,111
	(100.0)	(59.4)	(17.6)	(20.9)	(1.1)	(1.0)
2016	21,832,524	13,192,436	3,886,930	4,173,269	296,757	283,132
	(100.0)	(60.4)	(17.8)	(19.1)	(1.4)	(1.3)
2017	21,824,172	13,459,240	3,865,800	3,826,117	327,723	345,292
	(100.0)	(61.7)	(17.7)	(17.5)	(1.5)	(1.6)
2018	22,313,869	13,817,963	3,993,598	3,701,287	330,422	470,599
	(100.0)	(61.9)	(17.9)	(16.6)	(1.5)	(2.1)
2019	22,216,229	14,157,574	3,955,403	3,276,660	328,727	497,865
	(100.0)	(63.7)	(17.8)	(14.7)	(1.5)	(2.2)
2020	22,107,028	14,320,025	3,800,104	3,098,014	362,328	526,557
	(100.0)	(64.8)	(17.2)	(14.0)	(1.6)	(2.4)
2021	22,347,586	14,580,825	3,742,040	3,084,969	396,632	543,120
	(100.0)	(65.2)	(16.7)	(13.8)	(1.8)	(2.4)

주1: 납부예외자 포함
주2: 1)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2)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3)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를 의미
4)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를 의미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3.2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88	2021	1년

참고문헌

-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표 7-24 시도별 · 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21)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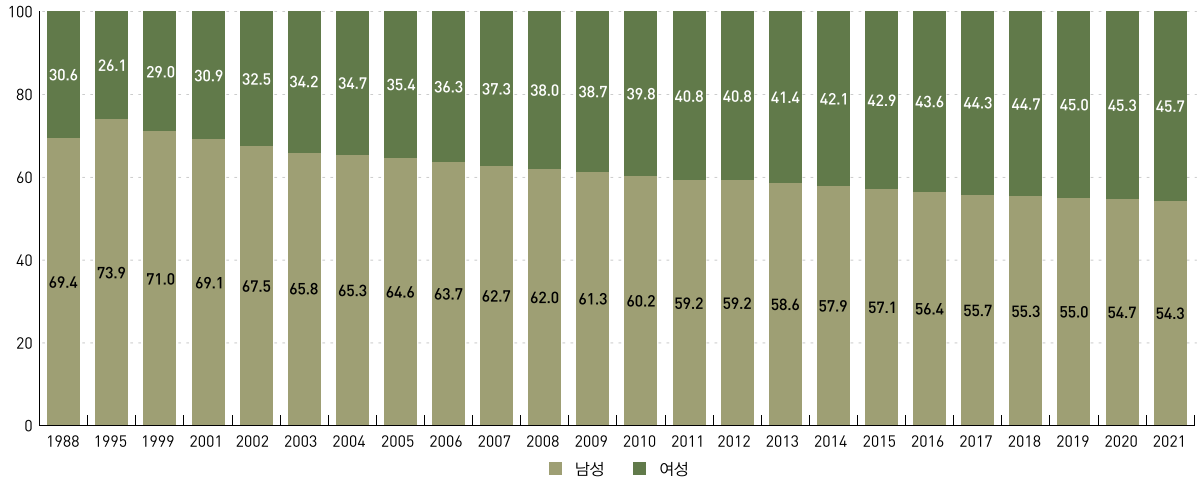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가입자	6,024	1,231	850	1,100	524	594	434	117	5,570	542	629	860	617	701	1,018	1,263	274
사업장	4,489	725	488	649	310	378	278	75	3,559	324	403	561	357	424	628	774	159
지역	1,341	449	320	403	189	188	140	35	1,767	191	198	262	226	239	341	435	104
임의	90	24	19	20	11	13	9	4	120	9	9	12	10	9	16	19	2
임의(계속)	103	32	24	27	14	15	8	3	125	18	20	26	24	29	33	34	8

주: 납부예외자 포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1년 국민연금통계연보(제34호), 2022 (http://kosis.kr에서 2023.03.28. 인출)

그림 7-12 연도별 ·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 (1988~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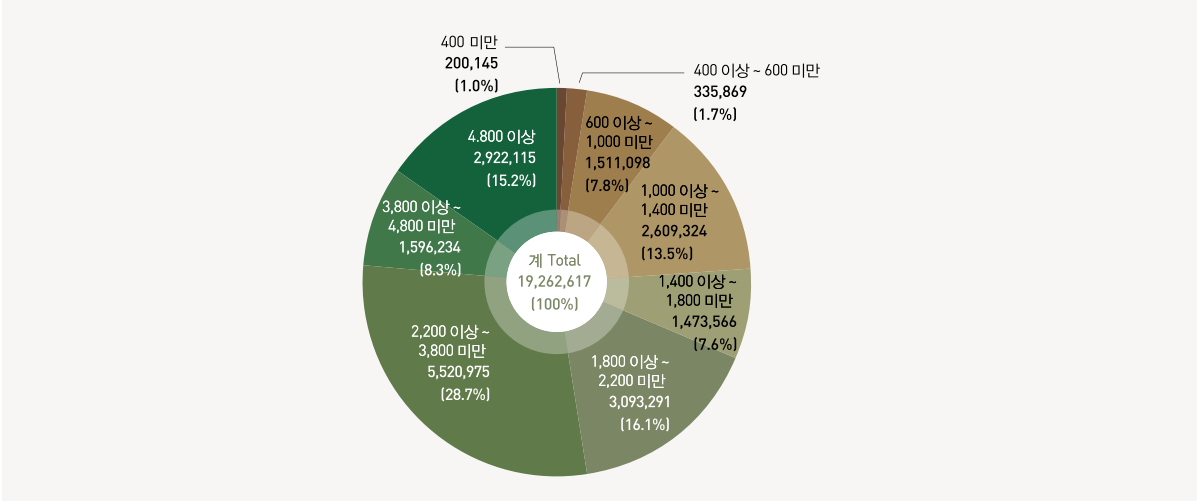


주: 납부예외자 포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3.28. 인출)

그림 7-13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 (2021)

(단위: 천 원, 명)



주: 국민연금공단, 2021년 국민연금통계연보(제34호), 2022 (http://kosis.kr에서 2023.03.28. 인출)

09
대 표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Number of all beneficiaries in national pension by type of benefit

지표 정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급여유형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된다.

측정 산식

$$\frac{\text{각 급여종별 수급자 수}}{\text{전체 수급자 수}} \times 100$$

표 7-25 연도별 · 종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1988	1993	1998	2004	200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금	노령연금	-	10,971 (30.3)	112,946 (56.3)	1,156,098 (80.8)	1,949,867 (82.1)	2,748,455 (82.8)	2,840,660 (82.3)	2,947,422 (81.9)	3,151,349 (82.0)	3,412,350 (82.3)	3,706,516 (82.6)	3,778,824 (82.0)	4,090,497 (82.2)	4,468,126 (82.7)	4,894,452 (83.2)
	장애연금	-	3,896 (10.7)	13,245 (6.6)	47,260 (3.3)	72,166 (3.0)	75,934 (2.3)	75,041 (2.2)	75,387 (2.1)	75,688 (2.0)	75,497 (1.8)	75,486 (1.7)	75,734 (1.6)	77,872 (1.6)	78,079 (1.4)	77,726 (1.3)
	유족연금	-	21,387 (59.0)	74,334 (37.1)	226,806 (15.9)	353,594 (14.9)	496,073 (14.9)	536,161 (15.5)	575,706 (16.0)	617,084 (16.1)	659,124 (15.9)	705,619 (15.7)	756,425 (16.4)	808,253 (16.2)	857,698 (15.9)	908,731 (15.5)
	소계	-	36,254	200,525	1,430,164	2,375,627	3,320,462	3,451,862	3,598,515	3,844,121	4,146,971	4,487,621	4,610,983	4,976,622	5,403,903	5,880,909
일시금	반환일시금	3,136 (100.0)	545,611 (99.6)	1,061,643 (99.4)	100,296 (90.0)	138,456 (87.4)	176,531 (89.3)	180,233 (89.6)	147,035 (86.0)	180,705 (87.2)	208,620 (87.7)	203,449 (89.0)	159,967 (87.2)	188,851 (88.5)	186,422 (87.8)	191,240 (87.6)
	장애일시보상금	-	2,341 (0.4)	1,625 (0.2)	3,609 (3.2)	4,902 (3.1)	2,862 (1.4)	2,993 (1.5)	2,651 (1.6)	2,597 (1.3)	2,577 (1.1)	2,916 (1.3)	3,072 (1.7)	3,028 (1.4)	2,904 (1.4)	2,897 (1.3)
	사망일시금	-	-	4,529 (0.4)	7,561 (6.8)	15,129 (9.5)	18,235 (9.2)	18,025 (9.0)	21,219 (12.4)	23,949 (11.6)	26,578 (11.2)	22,240 (9.7)	20,354 (11.1)	21,509 (10.1)	22,976 (10.8)	24,159 (11.1)
	소계	3,136	547,952	1,067,797	111,466	158,487	197,628	201,251	170,905	207,251	237,775	228,605	183,393	213,388	212,302	218,296
총계		3,136	584,206	1,268,984	1,541,630	2,534,114	3,518,090	3,653,113	3,769,420	4,051,372	4,384,746	4,716,226	4,794,376	5,190,010	5,616,205	6,099,205

주: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말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3.28. 인출)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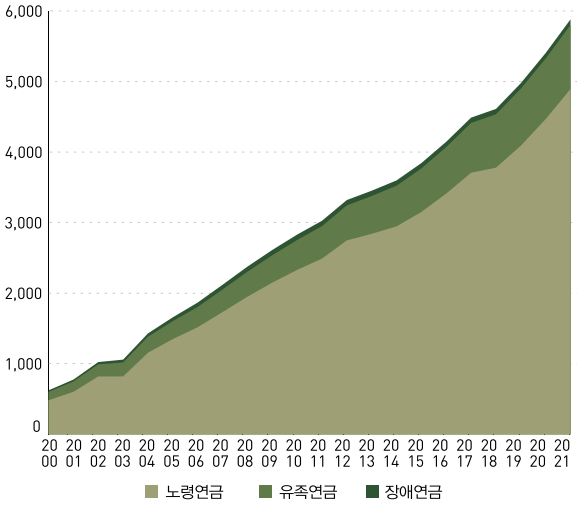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1988	2021	1년

참고문헌

-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7-14 종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 (200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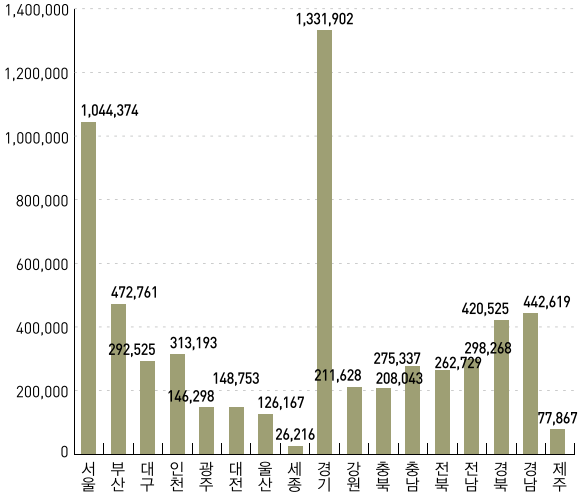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제외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3.28. 인출)

그림 7-15 시도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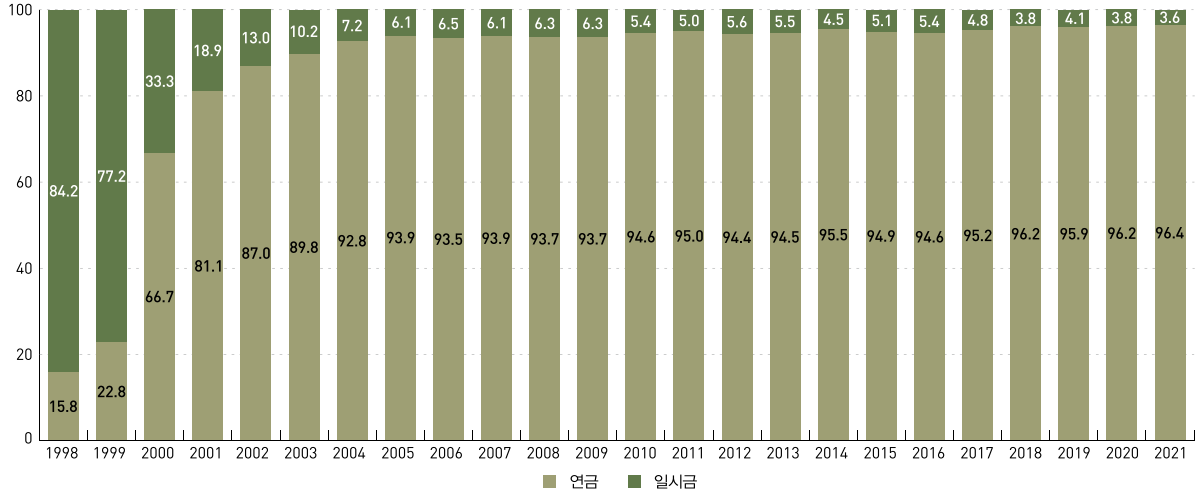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1년 국민연금통계연보(제34호), 2022 (http://kosis.kr에서 2023.03.28. 인출)

그림 7-16 지급유형별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 (199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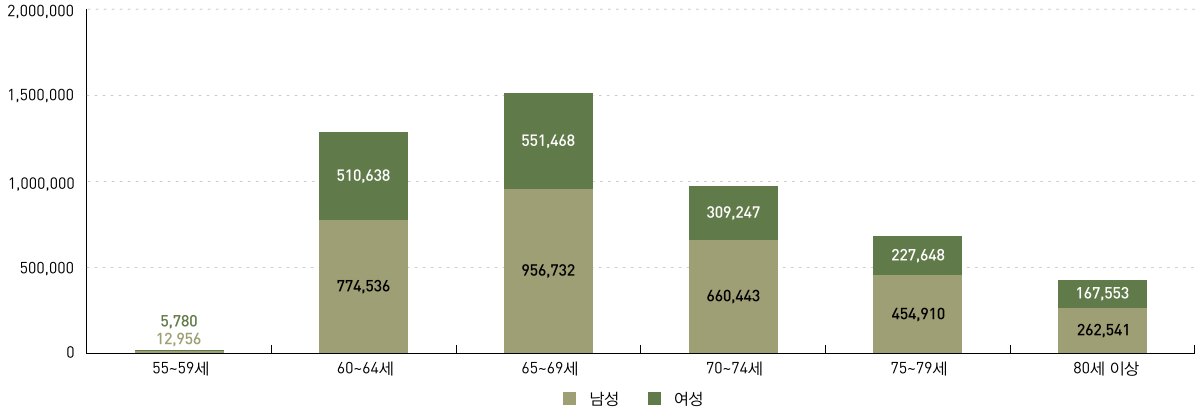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3.28. 인출)

그림 7-17 연령별 · 성별 노령연금 수급자 분포 (2021)

(단위: 명)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1년 국민연금통계연보(제34호), 2022 (http://kosis.kr에서 2023.03.28. 인출)

09-1
연 관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Public pension take-up rates for people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의 합계를 65세 이상 추계인구로 나눈 비율임.

측정 산식

- $\frac{\text{각 연금 65세 이상 수급자의 합}}{\text{65세 이상 추계 인구}} \times 100$

표 7-26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8~2021)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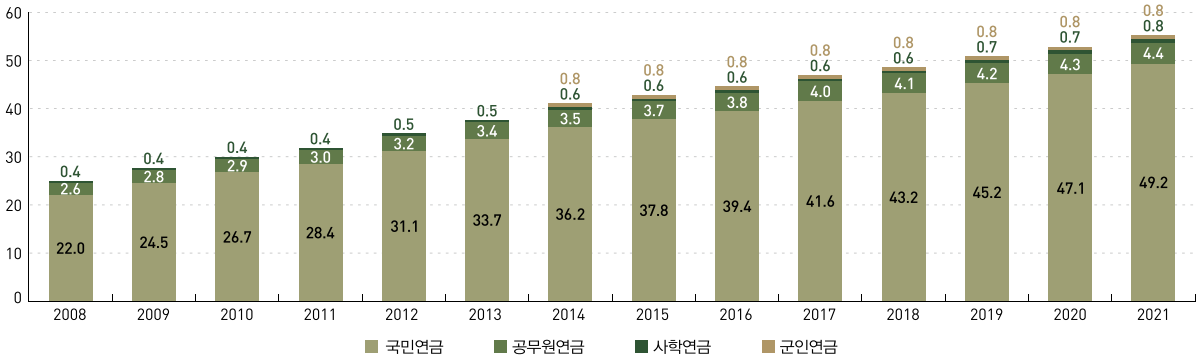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252,152	1,432,387	1,606,025	1,800,167	2,050,717	2,305,340	2,580,260	2,802,065	3,015,710	3,313,618	3,584,900	3,914,457	4,315,019	4,723,381
	(25.0)	(27.6)	(30.0)	(31.8)	(34.8)	(37.6)	(41.1)	(42.8)	(44.6)	(46.9)	(48.7)	(50.9)	(52.9)	(55.1)
국민연금	1,103,007	1,268,935	1,428,414	1,605,959	1,835,624	2,067,085	2,273,816	2,473,690	2,664,358	2,936,683	3,180,045	3,478,558	3,842,189	4,215,028
	(22.0)	(24.5)	(26.7)	(28.4)	(31.1)	(33.7)	(36.2)	(37.8)	(39.4)	(41.6)	(43.2)	(45.2)	(47.1)	(49.2)
공무원연금	131,482	143,882	155,778	169,979	188,006	206,163	222,325	240,041	256,695	279,524	300,037	323,430	351,922	379,008
	(2.6)	(2.8)	(2.9)	(3.0)	(3.2)	(3.4)	(3.5)	(3.7)	(3.8)	(4.0)	(4.1)	(4.2)	(4.3)	(4.4)
사학연금	19,570	19,570	21,833	24,229	27,087	32,092	34,894	37,737	41,736	42,508	47,084	52,326	58,749	65,040
	(0.4)	(0.4)	(0.4)	(0.4)	(0.5)	(0.5)	(0.6)	(0.6)	(0.6)	(0.6)	(0.6)	(0.7)	(0.7)	(0.8)
군인연금	-	-	-	-	-	-	49,225	50,597	52,921	54,903	57,734	60,143	62,159	64,305
	-	-	-	-	-	-	(0.8)	(0.8)	(0.8)	(0.8)	(0.8)	(0.8)	(0.8)	(0.8)

주: 1)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 수급자 수(65세 이상)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
2) 각 연금별 노령(퇴직, 퇴역)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수급자 수의 합계임.
3) 군인연금은 2014년부터 포함됨.

자료: 통계청, 고령자통계, 각 연도 (https://kostat.go.kr에서 2023.03.28. 인출)

그림 7-18 연금종류별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2008~2021)

(단위: %)



주: 1)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 수급자 수(65세 이상)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
2) 각 연금별 노령(퇴직, 퇴역)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수급자 수의 합계임.
3) 군인연금은 2015년부터 포함됨.

자료: 통계청, 고령자통계, 각 연도 (https://kostat.go.kr에서 2023.03.28. 인출)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21	1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	2021	1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	1998	2021	1년
국방부	군인연금통계	-	2021	1년

10 대 표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Average benefit amount in national pension by type of benefit

지표 정의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상실과 주소득자의 사망, 그리고 본인이 경험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각각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지표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금수급액 수준을 알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총 연금지급액}}{\text{전체 수급자 수}}$

표 7-27 연도별 · 종별 국민연금 연평균 급여액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04	200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금	소계	총 급여액	2,568,966,021	5,764,985,965	10,837,243,194	12,361,972,797	13,087,467,966	14,342,682,741	16,107,102,923	18,155,323,381	19,800,819,509	21,711,563,871	21,711,563,871	28,080,663,753
		평균 급여액	1,796	2,427	3,264	3,581	3,637	3,731	3,884	4,046	4,294	4,363	4,018	4,775
	노령	총 급여액	1,987,450,647	4,765,527,612	9,327,086,191	10,705,594,320	11,295,917,329	12,415,110,788	14,047,956,805	15,931,616,455	17,384,044,152	19,069,257,910	19,069,257,910	25,083,265,801
		평균 급여액	1,719	2,444	3,394	3,769	3,832	3,940	4,117	4,298	4,600	4,662	4,268	5,125
	장애	총 급여액	163,629,119	268,100,552	314,462,857	326,167,915	331,603,350	336,567,621	337,332,457	349,016,676	359,198,132	378,719,802	378,719,802	384,943,732
		평균 급여액	3,462	3,715	4,141	4,347	4,399	4,447	4,468	4,624	4,743	4,863	4,850	4,953
	유족	총 급여액	417,886,255	731,357,801	1,195,694,146	1,330,210,562	1,459,947,287	1,591,004,332	1,721,813,661	1,874,690,250	2,057,577,225	2,263,586,159	2,263,586,159	2,612,454,220
		평균 급여액	1,842	2,068	2,410	2,481	2,536	2,578	2,612	2,657	2,720	2,801	2,639	2,875
일시금	소계	총 급여액	345,048,750	415,817,731	713,511,379	750,778,622	692,474,556	841,327,088	961,056,130	928,562,845	951,864,390	1,052,779,601	1,052,779,601	1,056,127,419
		평균 급여액	3,096	2,624	3,610	3,731	4,052	4,059	4,042	4,062	5,190	4,934	4,959	4,838
	장애	총 급여액	29,297,315	47,920,508	34,653,608	38,736,640	34,471,226	35,522,321	36,048,008	42,130,805	46,669,363	48,846,663	48,846,663	49,745,990
		평균 급여액	8,118	9,776	12,108	12,942	13,003	13,678	13,988	14,448	15,192	16,132	2,126	17,172
	반환	총 급여액	303,193,832	348,026,409	648,045,442	679,144,836	618,468,248	759,703,922	874,649,129	842,325,211	859,081,687	953,068,325	953,068,325	940,751,259
		평균 급여액	3,023	2,514	3,671	3,768	4,206	4,204	4,193	4,140	5,370	5,047	328,192	4,919
	사망	총 급여액	12,557,603	19,870,814	30,812,329	32,897,146	39,535,082	46,100,845	50,358,993	44,106,829	46,113,340	50,864,613	50,864,613	65,630,170
		평균 급여액	1,661	1,313	1,690	1,825	1,863	1,925	1,895	1,983	2,266	2,365	273	2,717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3.29. 인출)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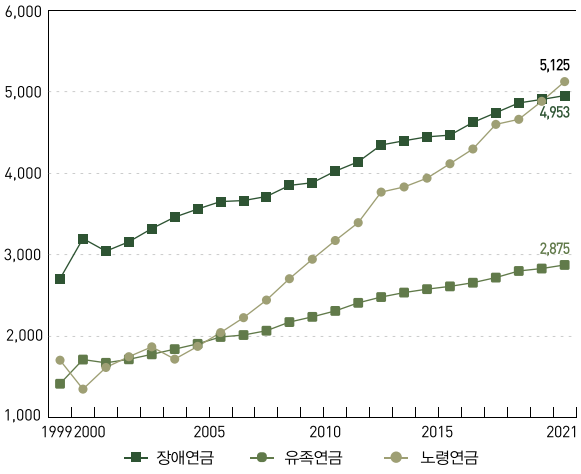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21	1년

참고문헌

•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7-19 급여종류별 연평균 급여액 (199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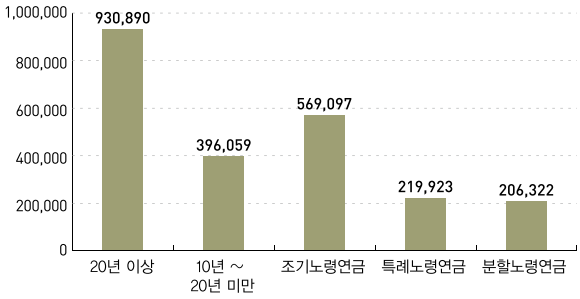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주: 통계연보 자료 기반으로 가공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3.31. 인출)

그림 7-20 가입 기간별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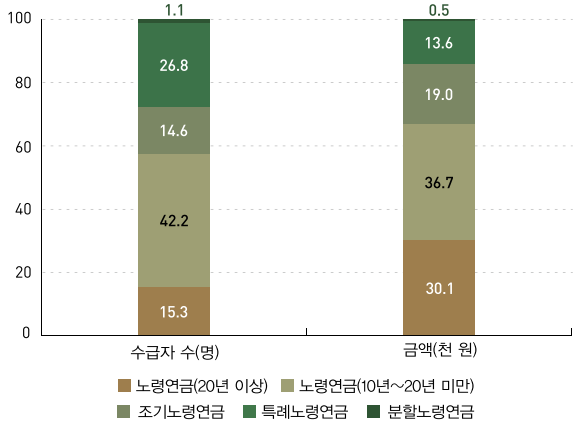
(단위: 원)



주1: 1) 소득활동 :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세후 월평균 국민연금 A값에 준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2) 조기노령연금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거나 세후 월평균 국민연금 A값에 준하는 소득에 미달할 경우, 정상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
3)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경우, 상대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1세가 되면, 상대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
주2: 2022.12.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 2023 (https://www.nps.or.kr에서 2023.03.31. 인출)

그림 7-21 가입기간별 노령연금 수급자 및 월평균 지급액 비중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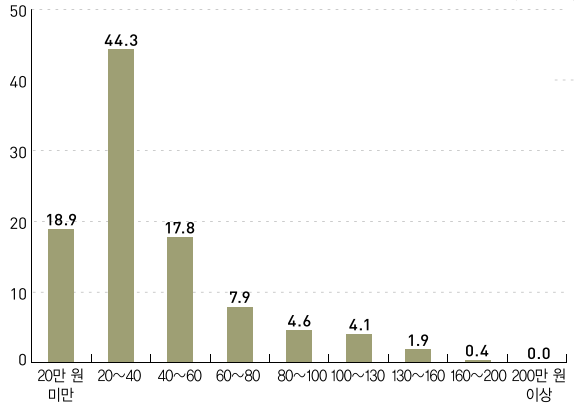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1년 국민연금통계연보(제34호), 2022 (http://kosis.kr에서 2023.03.31. 인출)

그림 7-22 월평균 급여액 수준별 연금 수급자 분포 (2022)

(단위 : %)



주: 1) 월평균 급여액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 연금액이 반영되며, 특례, 분할연금은 제외됨.
2) 2022.12. 기준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공표통계, 2023 (https://www.nps.or.kr에서 2023.03.31. 인출)

8

건강

01 기대수명
02 조사망률
03 저체중아 발생률
04 자살률
05 10대 다빈도 상병
06 현재 흡연율
07 고위험 음주율
08 비만율
09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10 평균 재원일수
11 1인당 의사 진료 건수
1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13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14 의료보장 적용 인구
15 의사 수
16 병상 수
17 GDP 대비 경상의료비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건강수준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인지율
	조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
		영아사망률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저체중아 발생률	조산율
	자살률	정신장애 유병률
		우울장애 유병률
	10대 다빈도 상병	암 발생률
		뇌졸중 의사진단 경험률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건강관리	현재 흡연율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청소년 현재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연간 음주율
		청소년 현재 음주율
		1인당 알코올소비량
	비만율	청소년 비만율
		걷기실천율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의료이용	평균 재원일수	
	1인당 의사 진료 건수	1인당 외래방문 횟수
		산전수진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1세 대상
		소아 ·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만 1~18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의료자원	의료보장 적용 인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의사 수	면허의료인 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GDP 대비 경상의료비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
		건강보험 급여비
		건강보험 보장률

01
대 표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지표 정의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몇 년을 더 생존할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기대치로, 0세에 대한 기대여명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기대여명(Life expectancy at age x)은 어느 연령(x)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로 몇 년을 더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이다.

• 기대수명은 보건, 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장래인구추계 작성, 국가 간 경제, 사회, 보건 수준의 비교에 널리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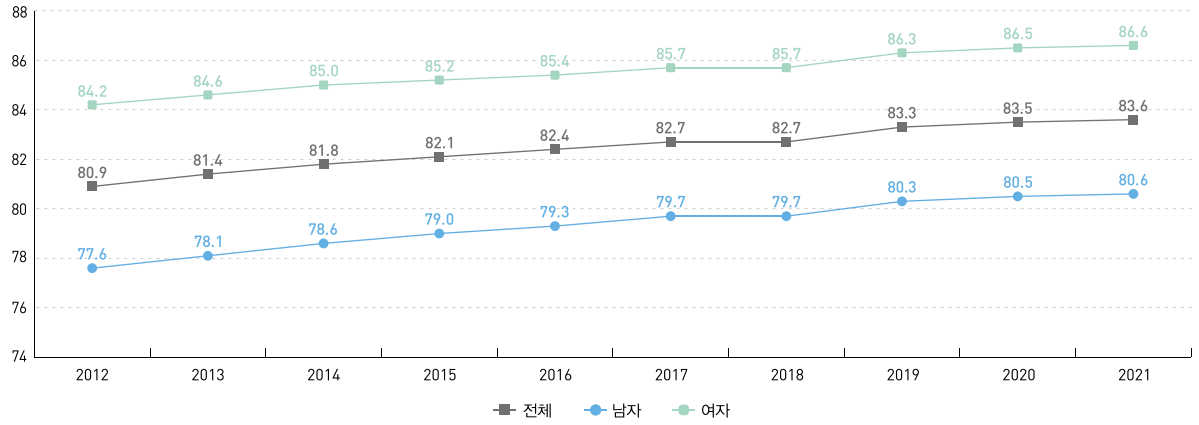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0세 이후의 총 생존연수 (정지인구)}}{\text{0세 생존자 수}}$$

유의사항 통계청 생명표와 OECD 통계의 기대수명이 다른 이유는 통계청 생명표는 우리나라 남녀 생존자 수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기대수명을 산출하는 반면에 OECD는 남녀 각각의 기대수명을 산술 평균하기 때문이다.

그림 8-1 성별 기대수명 (2012~2021)

(단위: 년)



주: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5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3.31.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명표*	1970	2021	1년

*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5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시도별 통계의 주기는 3년임.

참고문헌
•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표 8-1 연도별 · 시도별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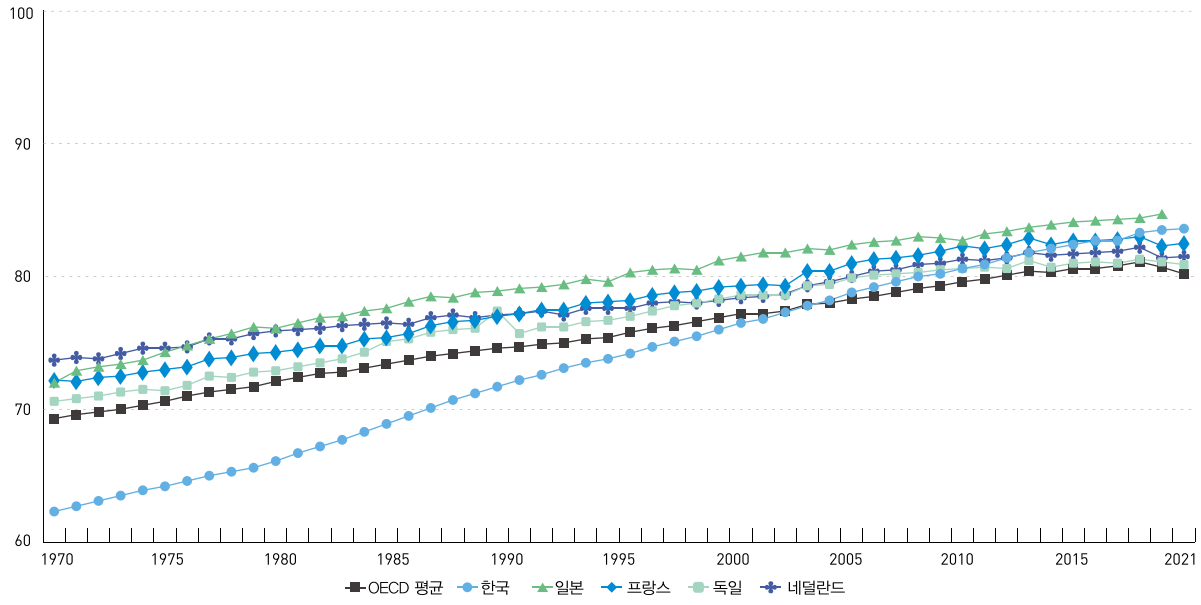
(단위: 년)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1	2014	2017	2020	2011	2014	2017	2020	2011	2014	2017	2020
전국	80.6	81.8	82.7	83.5	77.3	78.6	79.7	80.5	84.0	85.0	85.7	86.5
서울	82.0	83.0	84.1	84.8	78.9	80.1	81.2	82.0	85.1	85.8	87.0	87.6
부산	79.7	81.0	81.9	82.7	76.4	77.9	78.9	79.6	82.9	84.1	84.9	85.9
대구	80.0	81.4	82.2	82.9	76.8	78.4	79.2	79.9	83.2	84.3	85.1	85.9
인천	80.1	81.4	82.4	82.9	77.1	78.3	79.3	79.9	83.2	84.5	85.6	86.0
광주	80.2	81.4	82.0	83.0	76.8	78.3	79.3	80.2	83.6	84.4	84.8	85.9
대전	80.7	82.0	82.9	83.5	77.6	79.2	80.5	80.7	83.8	84.8	85.4	86.4
울산	79.6	80.7	82.0	82.7	76.3	78.2	79.1	80.4	82.9	83.2	84.9	85.1
세종	-	81.3	83.0	84.4	-	77.7	80.0	82.3	-	84.8	86.1	86.6
경기	81.1	82.2	83.1	83.9	78.0	79.2	80.4	81.2	84.2	85.2	85.7	86.7
강원	80.2	80.9	82.0	82.8	76.4	77.2	78.4	79.6	84.0	84.6	85.7	86.0
충북	79.6	81.2	81.9	82.6	76.0	77.6	78.8	79.5	83.3	84.8	84.9	85.7
충남	80.6	81.3	82.2	83.2	76.9	77.8	78.9	80.1	84.2	84.9	85.6	86.3
전북	80.1	81.4	82.3	83.3	76.3	77.8	79.0	80.1	84.0	85.0	85.5	86.5
전남	79.7	81.2	82.0	82.8	75.6	77.1	78.4	79.1	83.9	85.3	85.6	86.4
경북	79.6	81.1	82.0	82.6	75.9	77.6	78.6	79.3	83.3	84.7	85.5	85.9
경남	79.7	80.9	81.9	82.8	76.1	77.3	78.6	79.5	83.4	84.5	85.2	86.0
제주	81.4	82.1	82.7	84.0	77.1	78.3	78.7	80.2	85.6	85.9	86.7	87.7

주: 1)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5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2) 세종은 2011년의 자료가 없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3.31. 인출)

그림 8-2 OECD 주요 국가의 기대수명 (1970~2021)

(단위: 년)



주: OECD 평균은 통계가 있는 38개국 평균임.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3.31. 인출)

01-1
연 관

건강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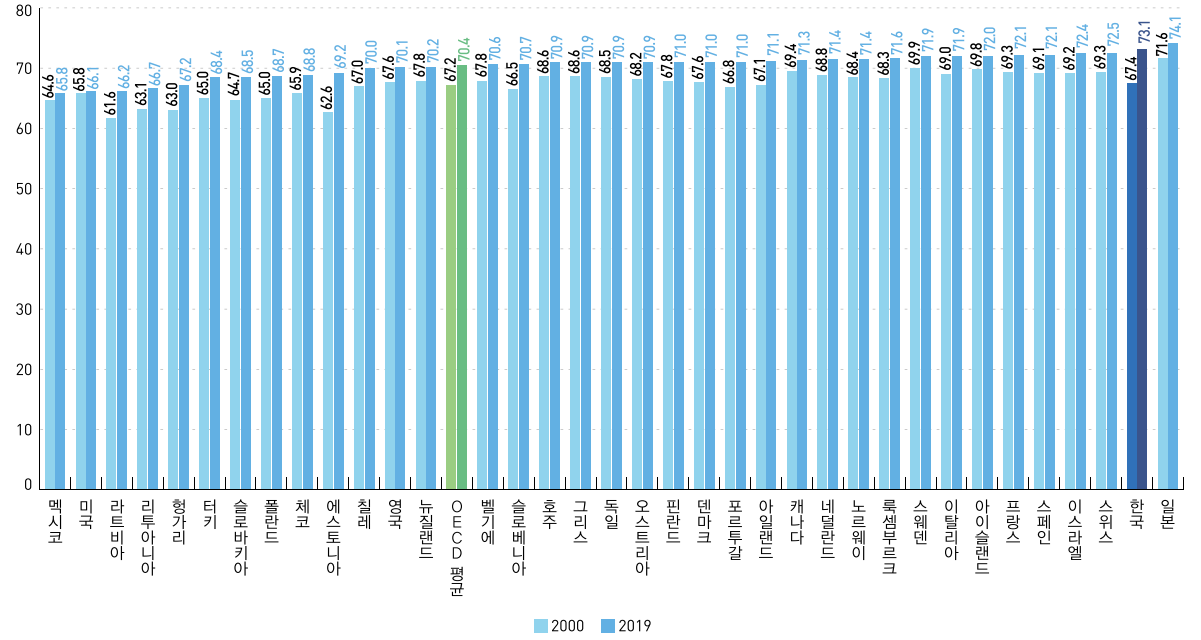
건강수명(HALE; Healthy Life Expectancy)은 장애나 부상으로 인해 줄어든 생명연수를 고려한 '온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수명이다.

측정 산식

• 출생 시점부터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생존연수

그림 8-3 연도별 OECD 국가의 건강수명

(단위: 년)



자료: WHO, Healthy life expectancy (HALE) Data by country, 2020 (https://apps.who.int에서 2023.04.0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	2019	부정기

참고문헌

•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2020

01-2
연 관

주관적 건강인지율

Perceived health statu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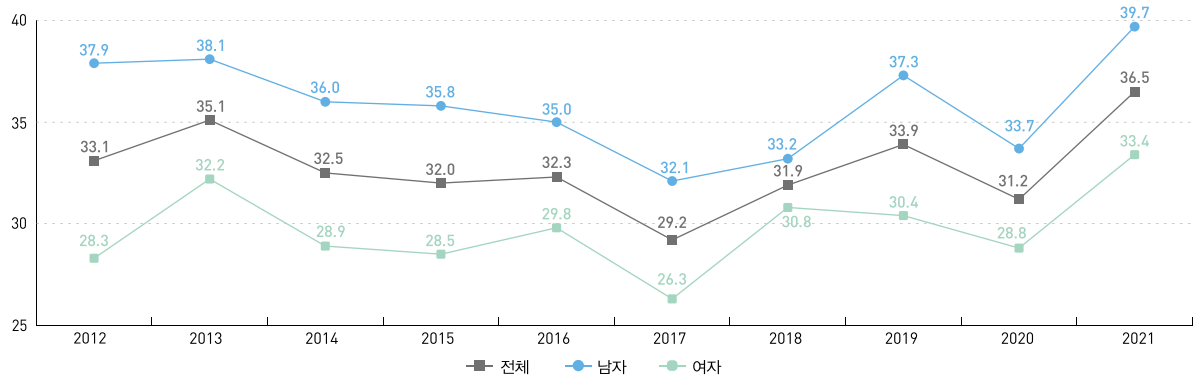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평소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4 성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2012~2021)

(단위: %)



주: 1)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을 의미함.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3)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표 8-2 특성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2012~2021)

(단위: %)

구분	전체[2]	연령별						거주지역별[2]		소득수준별[2][3]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하	중상	상
2012	33.1	46.1	31.4	34.7	26.8	23.2	18.8	33.3	32.8	28.0	29.2	36.0	34.7	39.1
2013	35.1	47.6	38.8	34.9	26.4	22.3	18.9	35.1	36.0	31.5	31.9	34.2	36.0	42.8
2014	32.5	42.9	33.3	32.1	27.1	23.2	21.4	33.1	28.4	26.5	29.9	31.7	35.2	39.7
2015	32.0	40.3	31.6	31.8	29.8	26.7	19.8	32.3	31.8	25.5	31.5	31.0	34.4	38.1
2016	32.3	43.6	31.1	31.3	28.1	26.2	20.6	33.3	26.4	28.0	30.4	32.1	33.4	37.7
2017	29.2	35.3	32.5	28.9	25.2	22.0	17.9	29.7	27.2	22.4	25.3	33.1	27.6	37.5
2018	31.9	40.8	33.1	29.4	29.4	26.2	20.6	32.4	29.0	26.0	28.5	32.8	34.2	38.7
2019	33.9	41.6	37.0	31.7	31.7	26.7	20.3	34.6	29.1	25.3	31.1	35.3	38.6	39.0
2020	31.2	40.9	30.1	29.9	27.1	28.2	21.0	31.3	31.8	26.2	30.3	30.6	31.7	36.5
2021	36.5	46.1	38.6	34.0	31.3	32.0	24.2	36.0	42.7	29.6	36.0	33.1	38.9	45.4

주: 1)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을 의미함.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3)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4)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sqrt{\text{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2 대 표

조사망률

Crude death rate

지표 정의

성별과 연령에 무관하게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 수를 그해 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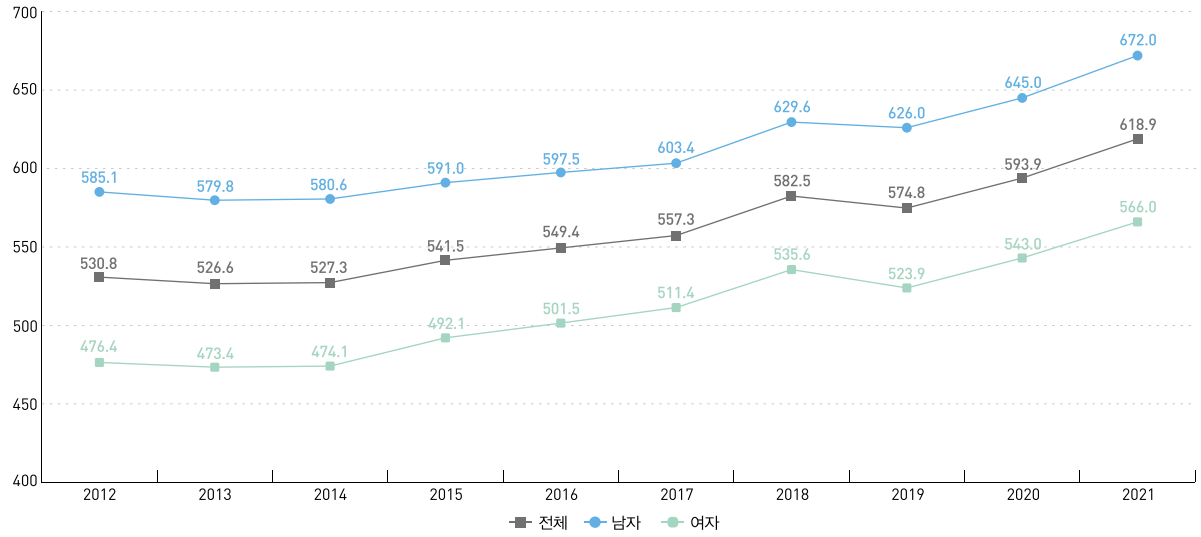
• 사망 수준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사망률은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동시에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frac{\text{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 수}}{\text{해당 연도 연앙인구}} \times 100{,}000$$

그림 8-5 성별 조사망률 (2012~2021)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21	1년

참고문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그해의 중간일인 7월 1일 기준 인구수

표 8-3 연도별 · 시도별 조사망률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1	2016	2021	2011년 대비 2021년	2011	2016	2021	2011년 대비 2021년	2011	2016	2021	2011년 대비 2021년
전국	513.6	549.4	618.9	17.0	571.1	597.5	672.0	15.0	456.0	501.5	566.0	19.4
서울	398.6	443.8	516.2	22.8	455.0	502.5	601.8	24.4	343.3	387.2	435.2	21.1
부산	558.7	607.8	703.8	20.6	633.3	684.2	797.7	20.6	485.2	533.3	613.8	21.0
대구	496.9	547.4	609.9	18.5	548.9	596.5	676.1	18.8	445.2	499.0	545.5	18.4
인천	454.7	485.9	564.5	19.5	502.2	529.6	613.6	18.2	406.6	442.0	515.2	21.1
광주	454.9	495.8	554.7	18.0	498.8	525.3	600.5	16.9	411.7	466.9	509.9	19.3
대전	423.1	462.2	544.2	22.3	464.0	500.9	593.8	21.9	382.1	423.6	494.9	22.8
울산	397.2	424.2	488.7	18.7	428.4	435.5	519.1	17.5	364.4	412.2	456.6	20.2
세종	-	471.3	373.1	-	-	504.7	391.4	-	-	437.7	354.8	-
경기	411.7	441.4	503.0	18.2	457.5	478.3	541.0	15.4	365.2	404.1	464.6	21.4
강원	692.7	744.5	833.0	16.8	775.0	823.3	910.6	14.9	609.3	664.3	754.3	19.2
충북	658.4	684.0	750.4	12.3	729.5	749.7	790.2	7.7	586.3	617.0	709.5	17.4
충남	676.4	704.4	774.1	12.6	750.6	758.0	820.1	8.5	600.4	649.1	726.1	17.3
전북	706.3	758.2	842.5	16.2	778.7	807.7	882.8	11.8	634.4	709.1	802.6	21.0
전남	846.0	874.8	958.4	11.7	935.7	925.3	984.2	4.9	756.4	824.3	932.3	18.9
경북	756.4	781.7	875.2	13.6	829.3	824.3	901.9	8.0	682.8	738.8	848.0	19.5
경남	598.0	633.0	706.4	15.3	650.0	668.8	737.7	11.9	545.4	596.6	674.8	19.2
제주	531.6	564.0	630.3	15.7	567.8	586.7	675.1	15.9	495.3	541.0	585.1	15.3

주: 1) 세종은 2011년 자료가 없음.
2) 2011년 대비 2021년 비율은 2021을 분자로 2011을 분모로 사용하여 산출함.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02-1
연 관

연령표준화사망률

Age-adjusted mortality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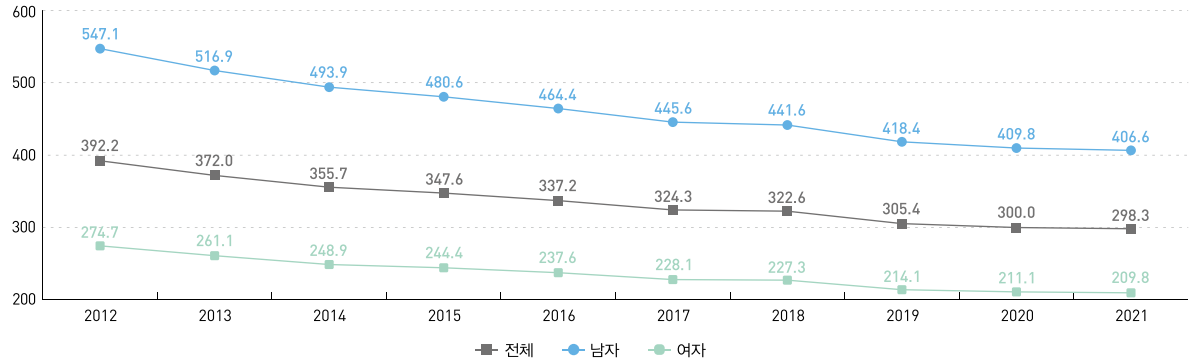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거한 사망률이다. 이를 위해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남녀 전체)를 사용한다.

측정 산식

$$\frac{\sum(\text{연령별 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text{표준인구}} \times 100{,}000$$

그림 8-6 성별 연령표준화사망률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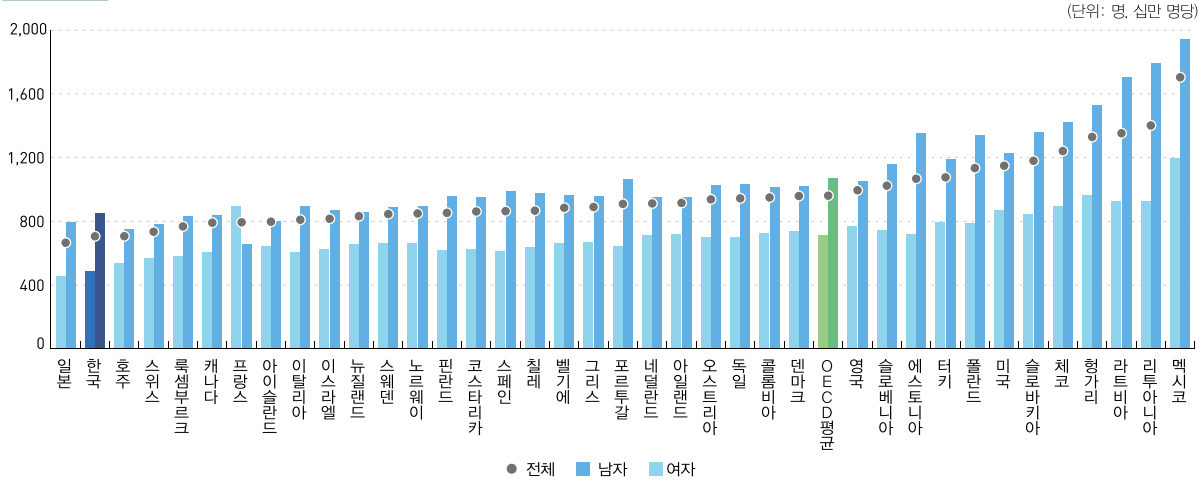
(단위: 명, 표준인구 십만 명당)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3. 인출)

그림 8-7 OECD 국가의 성별 연령표준화사망률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십만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2020년 기준이며, 캐나다, 콜롬비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는 2019년, 벨기에, 칠레,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2018년, 프랑스, 이탈리아는 2017년,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2016년이 비교됨.
※ OECD 통계는 발표 시점에서 t-2년도가 비교의 기준이 되지만, 질병 자료(사망원인)에 기반을 둔 사망률 정보는 t-3년이 기준이 됨. 이는 국제기구 간 자료 공유 시점의 차이에 기인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0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21	1년

참고문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02-2
연 관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지표 정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아 수를 그해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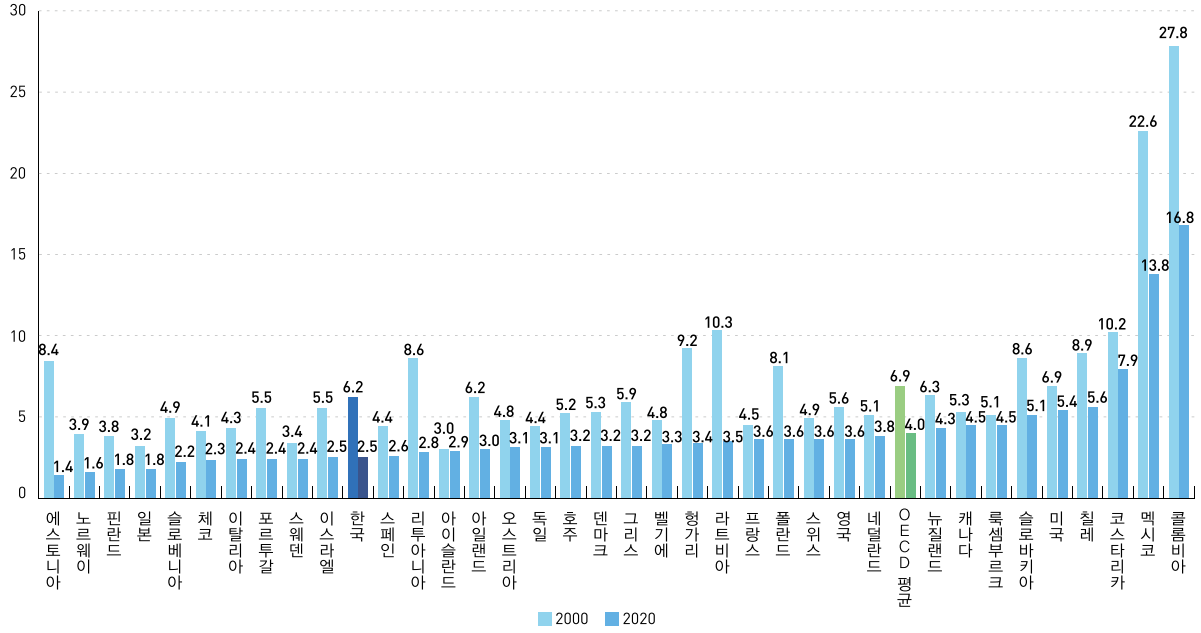
- 영아사망률은 보건의료제도의 특성과 효과뿐만 아니라, 아이와 산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와 사회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아 수}}{\text{해당 연도 총 출생아 수}} \times 1{,}000$$

그림 8-8 OECD 국가의 연도별 영아사망률 (2000년, 2020년)

(단위: 명, 출생아 천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2020년 기준이며, 뉴질랜드는 2018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0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20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02-3
연 관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Cause-specific mortality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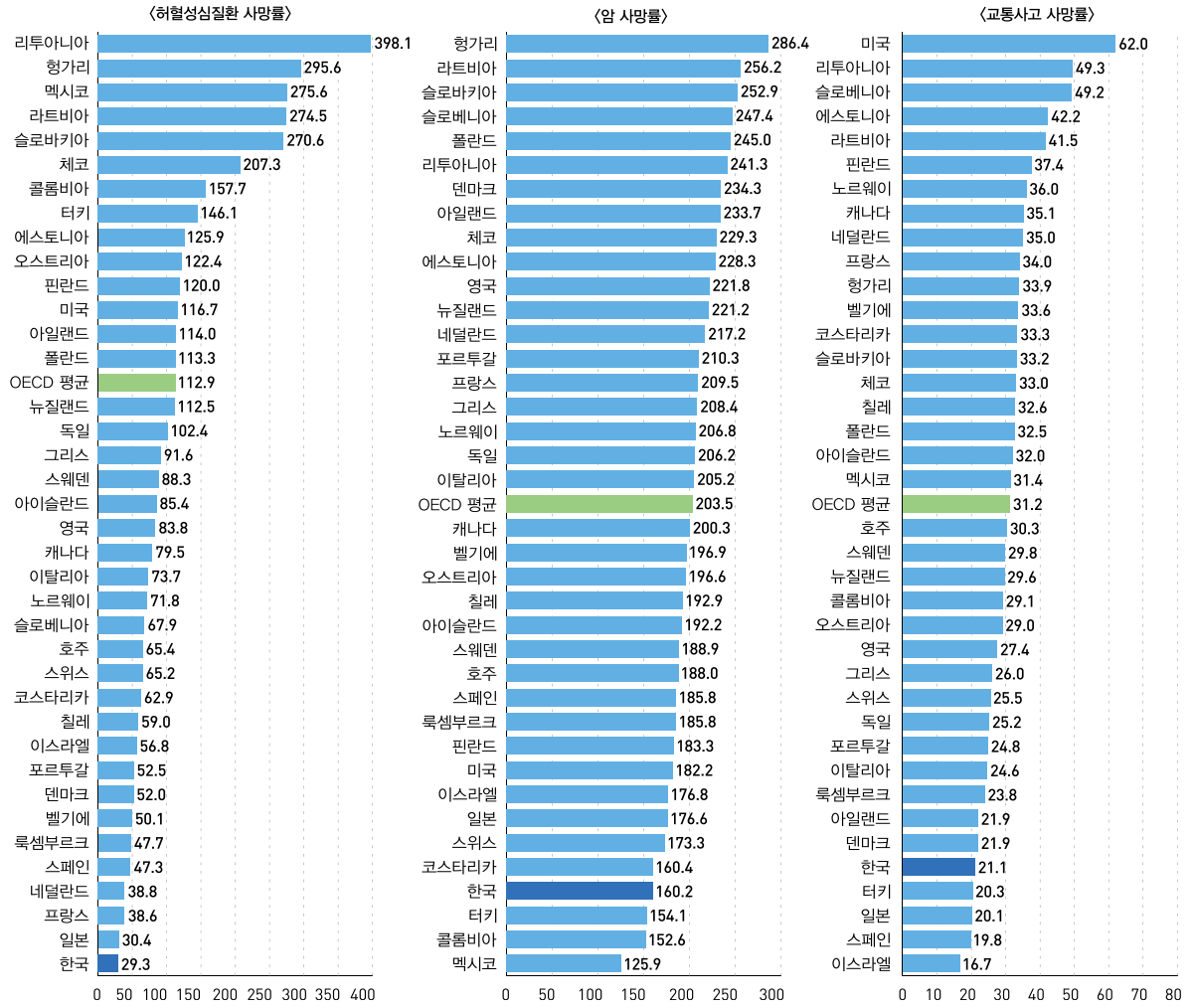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인구로 나누어 추정한다. 사망원인 분류는 ICD-10을 기반으로 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에 따른다. 여기에서 허혈성심질환은 I20-I25, 암은 C00-C97이다. 교통사고(육상 운수사고)는 외인사(인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사망) 중에 하나로 V01-V89이다.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010년 OECD 인구로 연령표준화를 해준다.

측정 산식

- $\frac{\text{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text{인구수}} \times 100{,}000$

그림 8-9 OECD 국가의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2020년 기준이며, 캐나다, 콜롬비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는 2019년, 벨기에, 칠레,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2018년, 프랑스, 이탈리아는 2017년,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2016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0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20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03
대 표

저체중아 발생률

Low birth weight rate

지표 정의

전체 출생아 중 출생체중 2.5kg 미만 출생아의 비율이다.

• 저체중아 발생률은 영아의 질병 및 사망과 관련 있는 중요 지표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모자보건의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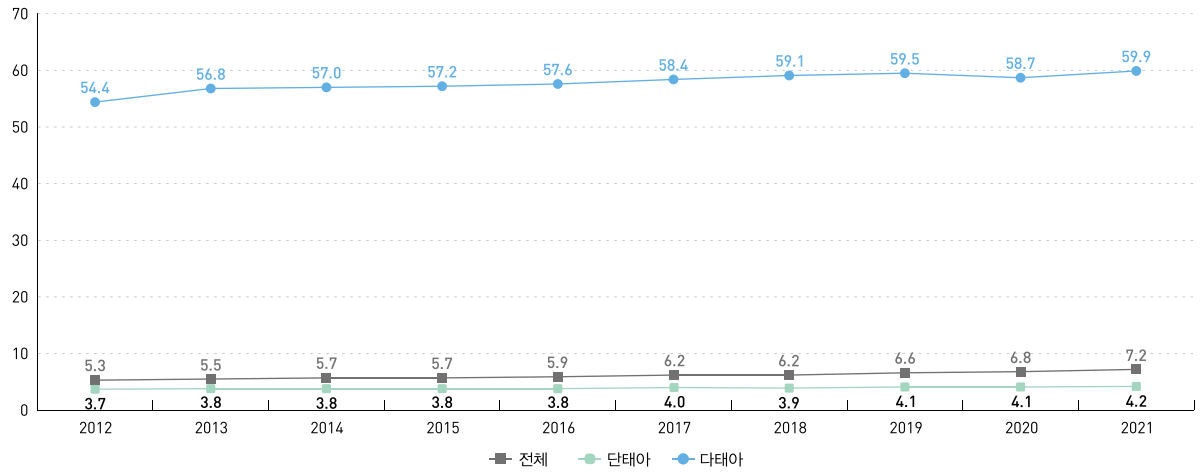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 수}}{\text{한 해 동안 출생한 출생아 수}} \times 100$$

유의사항 출생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년도 4월까지(16개월) 전국 행정기관에 출생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이다.

그림 8-10 출생아 수별 저체중 출생아 비율의 변화 (2012~2021)

(단위: %)



자료: 통계청, 「2021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2

표 8-4 체중별 출생아의 구성비 (2021)

(단위: %)

구분	전체	단태아	다태아
저체중아(2.5kg 미만)	7.2	4.2	59.9
정상체중아(2.5~4.0kg 미만)	90.4	93.3	40.1
과체중아(4.0kg 이상)	2.4	2.6	0.0

자료:통계청, 「2021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21	1년

참고문헌 • 통계청, 「2021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2

03-1
연 관

조산율

Premature birth rate

지표 정의

전체 출생아 중 임신(재태)주수 37주 미만에 출생한 출생아의 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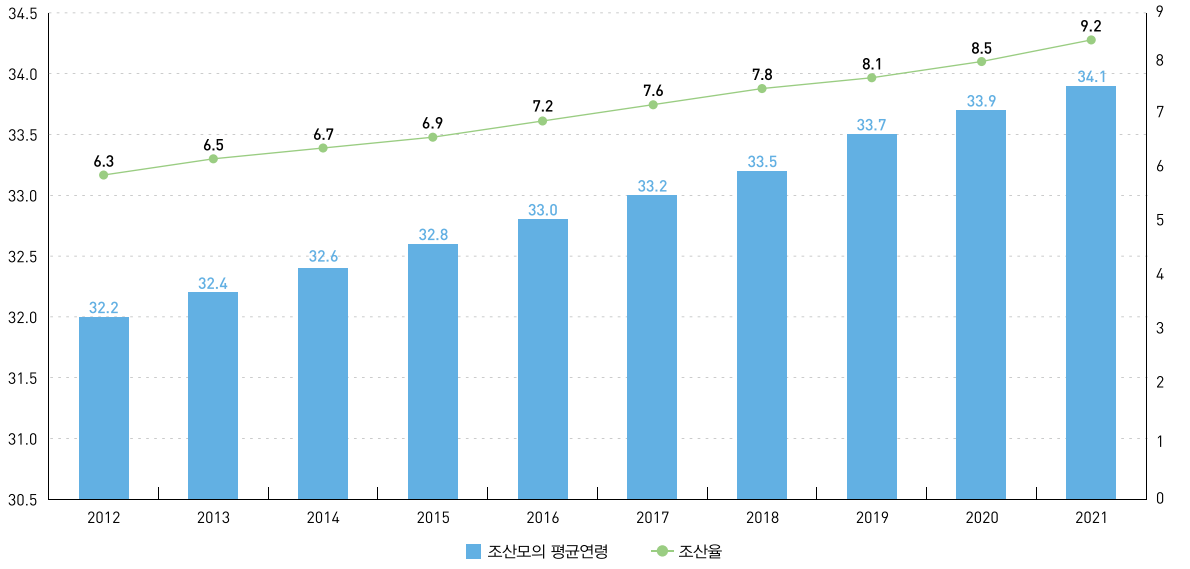
• 조산아는 저체중아와 함께 영아이환 및 사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 출생아이므로 조산율은 저출산에 대응한 모자보건의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이다.

측정 산식

$$\frac{\text{37주 미만 출생아 수}}{\text{한 해 출생한 출생아 수}} \times 100$$

그림 8-11 조산율 및 조산모의 평균 연령의 변화 (2012~2021)

(단위: 세, %)



자료: 통계청, 「2021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2

표 8-5 임신기간별 출생아의 구성비 (2021)

(단위: %)

구분	전체	단태아	다태아
37주 미만 출산	9.2	5.9	66.6
37주~41주 출산	90.7	94.0	33.3
42주 이상 출산	0.1	0.1	0.1

자료: 통계청, 「2021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21	1개월

참고문헌

• 통계청, 「2021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2

04
대 표

자살률
Suicide rate

지표 정의

자살률은 연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그해 연양인구*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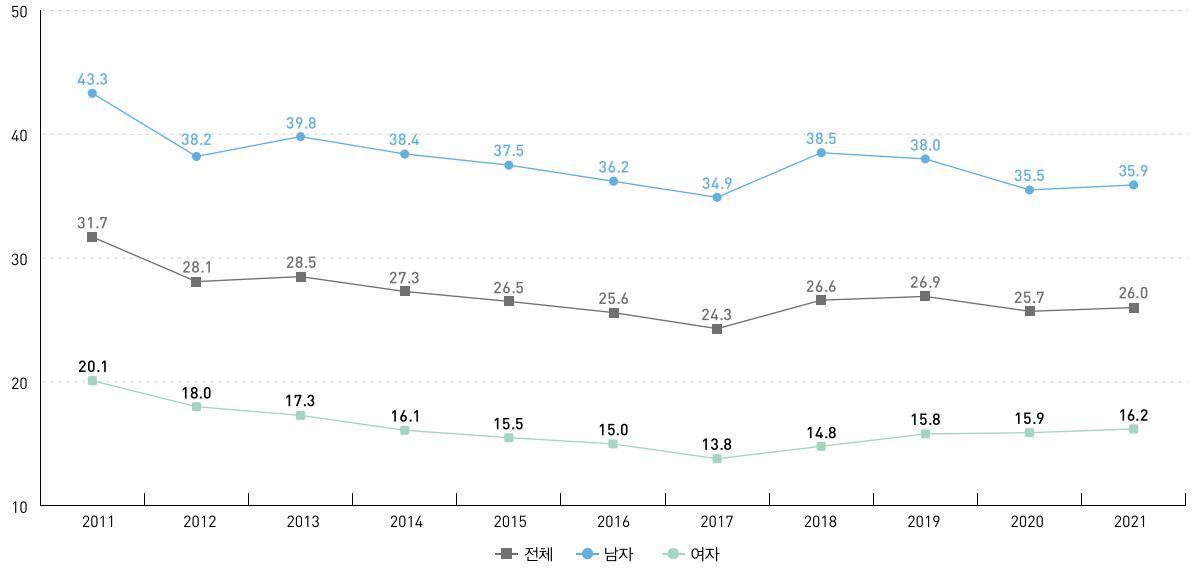
• 자살률은 국가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을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로 정신질환이나 신체질병이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측정 산식

$$\frac{\text{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text{해당 연도 연양인구}} \times 100{,}000$$

그림 8-12 성별 자살률 (2011~2021)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주: 연령표준화 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21	1년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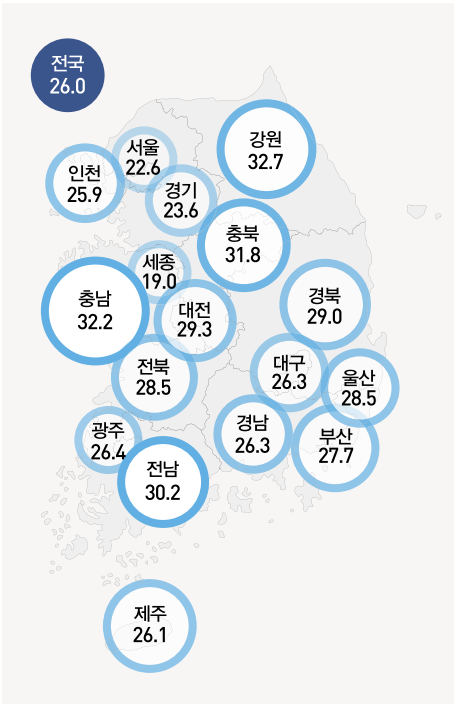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 그해의 중간일인 7.1일 기준 인구수

표 8-6 시도별 · 연령대별 자살률 (2021)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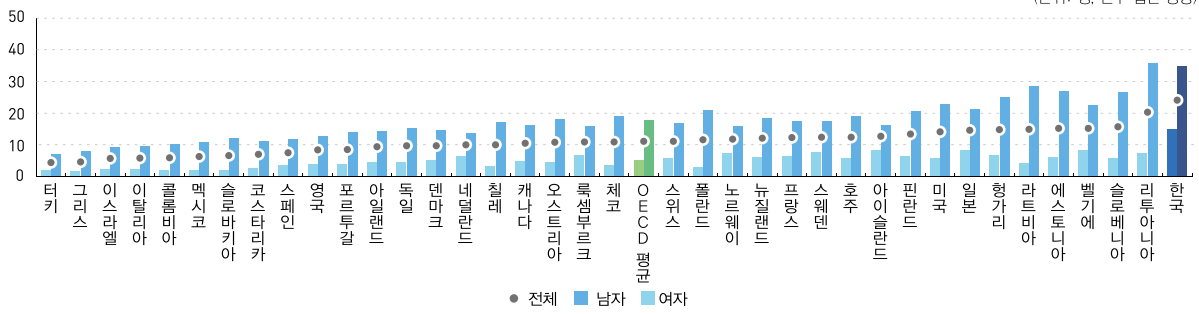
시도	전체				남자				여자			
	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전국	26.0	1.2	26.4	42.2	35.9	1.2	35.4	68.4	16.2	1.2	17.1	22.0
서울	22.6	0.8	22.5	36.5	30.5	1.6	28.8	60.3	15.0	-	16.4	17.6
부산	27.7	1.7	27.9	40.9	37.9	1.6	36.1	68.2	17.9	1.7	19.7	19.8
대구	26.3	0.4	26.6	42.9	38.2	0.7	38.8	66.7	14.7	-	14.1	25.3
인천	25.9	1.1	25.9	47.2	34.5	1.6	33.7	71.7	17.3	0.6	17.7	28.1
광주	26.4	1.0	28.1	41.3	38.0	2.0	39.1	70.7	15.1	-	16.9	19.3
대전	29.3	2.8	32.2	37.3	39.8	2.2	42.9	59.4	18.8	3.4	21.2	20.0
울산	28.5	1.3	29.7	49.5	40.7	-	43.1	72.9	15.5	2.7	15.0	30.0
세종	19.0	2.8	18.5	55.6	24.3	2.7	24.1	76.1	13.8	2.8	12.7	39.6
경기	23.6	1.2	24.2	42.4	31.3	1.3	30.9	68.1	15.7	1.0	17.1	22.0
강원	32.7	0.6	32.1	51.6	45.4	1.2	43.3	81.0	19.9	-	19.8	29.0
충북	31.8	1.6	31.0	54.9	44.5	-	42.4	88.8	18.7	3.2	18.3	28.9
충남	32.2	1.1	32.0	53.4	45.0	-	43.6	86.3	18.8	2.3	18.7	28.4
전북	28.5	1.4	29.9	38.5	42.5	2.8	42.6	68.0	14.6	-	16.3	16.9
전남	30.2	1.9	31.9	39.2	42.7	1.9	43.9	62.7	17.6	2.0	18.1	22.6
경북	29.0	1.0	30.2	39.7	40.8	0.7	40.8	65.2	17.1	1.4	18.2	20.9
경남	26.3	1.2	27.0	41.6	37.6	-	37.7	69.7	14.9	2.4	15.4	20.9
제주	26.1	2.1	27.9	39.2	41.0	-	44.6	65.6	11.1	4.3	10.1	19.5



주: 연령표준화 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22 (http://kosis.kr에서 2023.04.05. 인출)

그림 8-13 OECD 국가의 성별 자살률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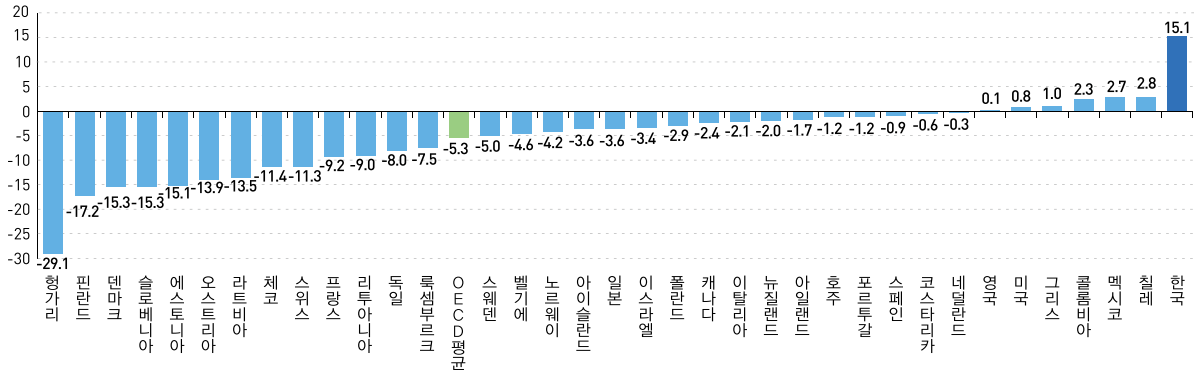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OECD 기준 인구에 따른 바, 국가 간 연령구조의 차이가 제거되어 통계청의 자살률과는 차이가 있음.
2) 2020년 기준으로,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일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는 2019년, 벨기에, 칠레,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2018년, 프랑스, 이탈리아는 2017년,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2016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05. 인출)

그림 8-14 OECD 국가의 자살률 변화폭, 1990년 대비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OECD 기준 인구에 따른 바, 국가 간 연령구조의 차이가 제거되어 통계청의 자살률과는 차이가 있음.
2) 2020년 기준이며, 캐나다, 콜롬비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는 2019년, 벨기에, 칠레,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2018년, 프랑스, 이탈리아는 2017년,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2016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05. 인출)

04-1
연 관

정신장애 유병률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지표 정의

지난 1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단, 조사의 시점에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혹은 입소 중인 환자는 제외하며, 조사 결과는 성과 연령을 보정한다.

측정 산식

$$\frac{\text{1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text{조사대상 인구수}} \times 100$$

표 8-7 연도별 · 성별 정신장애 유병률

(단위: %)

구분		2011			2016			2021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알코올사용장애		4.4	6.6	2.1	3.5	5.0	2.1	2.6	3.4	1.8
니코틴사용장애		4.0	7.0	0.9	2.5	4.5	0.6	2.7	4.9	0.5
우울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0.4	0.2	0.5	0.2	0.2	0.2	1.7	1.1	2.4
	기분장애	3.6	2.3	4.9	1.9	1.3	2.5			
불안장애		6.8	3.7	9.8	5.7	3.8	7.5	3.1	1.6	4.7
모든 정신장애		16.0	16.2	15.8	11.9	12.2	11.5	8.5	8.9	8.0

주: 1)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조현병 및 관련 장애, 단기정신병적장애를 포함함.
2) 모든 정신장애는 지난 일 년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대상자를 포함함.
3) 21년도 조사 항목에서는 양극성장애 항목이 제외되어, 주요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를 합친 진단군을 우울장애라고 구분함.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2001	2021	5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각 연도

04-2
연 관

우울장애 유병률

Prevalence of depressive disorder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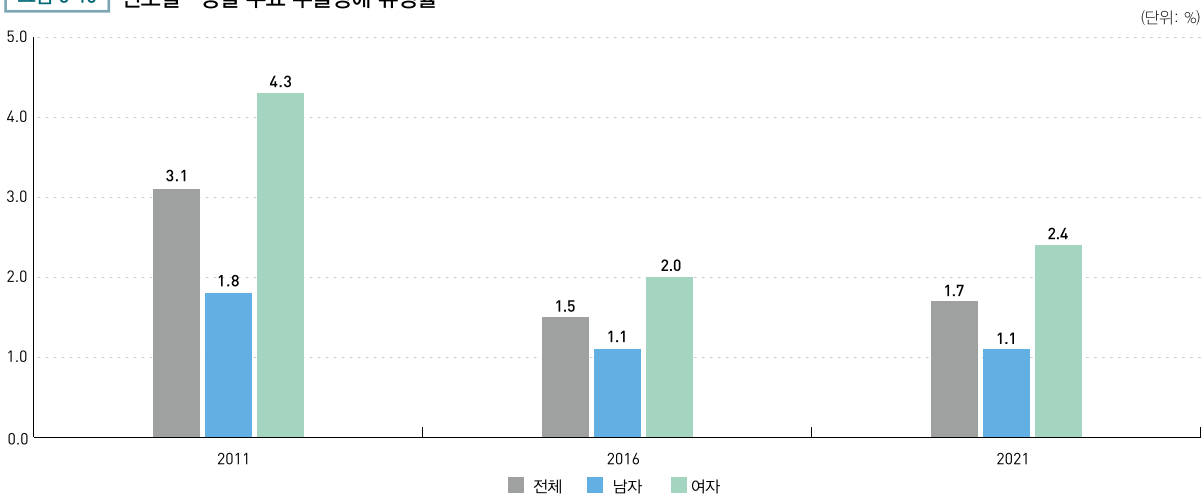
우울장애 유병률은 지난 1년 동안 '주요 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 우울장애는 기분장애의 하위 항목이다. 여기에서 기분장애는 기분이 지나치게 침울하거나 들떠 있어 기분의 조절이 어렵고,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가 어렵고, 직업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1년 동안 주요 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text{조사대상 인구수}} \times 100$

그림 8-15 연도별 · 성별 주요 우울장애 유병률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2001	2021	5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각 연도

05
대 표

10대 다빈도 상병

Ten most frequent diseases

지표 정의

우리나라 국민에게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된 상병을 의미한다. 입원서비스와 외래서비스 각각에 있어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측정 산식

• 특정 상병으로 발생된 의료서비스

표 8-8 입원서비스 다빈도 상병 (2021)

(단위: 명, 일, 천 원, 위)

구분	2021						과거 순위	
	진료실 인원	내원일 수	진료비	급여비	성별 내 순위		2016	2011
					남자	여자		
1.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Z11)	414,238	2,305,217	67,015,106	55,363,768	1	2	-	-
2. 노년백내장 (H25)	375,304	623,087	640,613,373	513,252,778	3	1	4	3
3. U07의 응급사용 (U07)	349,961	4,357,531	1,023,348,002	879,835,022	2	3	-	-
4. 기타 추간판장애 (M51)	228,297	1,691,086	389,296,558	288,453,458	5	5	5	6
5.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A09)	226,682	997,309	238,460,406	186,032,426	6	4	2	7
6. 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 (Z38)	223,053	1,070,352	98,962,611	97,772,942	4	6	1	1
7. 치핵 및 항문 주위 정맥혈전증 (K64)	151,041	379,286	184,963,623	141,584,717	7	9	6	5
8. 어깨병변 (M75)	130,159	1,054,311	345,069,363	256,296,664	10	10	11	24
9.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124,710	1,707,357	523,262,491	422,989,794	8	16	3	2
10. 무릎관절증 (M17)	117,743	2,444,139	824,864,387	627,474,910	41	7	8	11

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7차 개정으로 치핵(I84)이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K64)으로 변경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6. 인출)

표 8-9 외래서비스 다빈도 상병 (2021)

(단위: 명, 일, 천 원, 위)

구분	2021						과거 순위	
	진료실 인원	내원일 수	진료비	급여비	성별 내 순위		2016	2011
					남자	여자		
1.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17,638,170	37,681,634	1,900,427,506	1,327,356,928	1	1	2	2
2. 급성기관지염 (J20)	7,408,909	22,293,257	722,774,005	546,803,050	3	2	1	1
3.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6,787,220	46,808,032	3,978,471,995	2,839,588,705	2	4	7	9
4. 치아우식 (K02)	6,349,535	11,011,073	584,179,460	415,147,449	4	3	6	7
5. 등통증 (M54)	5,424,899	23,866,623	1,139,700,448	816,791,017	6	5	9	13
6. 혈관운동성 및 알러지성 비염 (J30)	5,003,407	11,877,765	435,614,752	319,125,458	5	8	3	5
7. 위-식도역류병 (K21)	4,903,662	10,539,901	703,131,379	482,185,605	7	7	16	18
8.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9)	4,902,555	8,686,475	493,198,441	339,999,681	8	6	8	6
9. 알러지성 접촉피부염 (L23)	4,347,582	8,681,372	284,275,313	208,468,688	11	9	11	14
10. 결막염 (H10)	3,919,553	6,607,434	286,771,866	208,848,512	14	10	13	12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21	1년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05-1
연 관

암 발생률

Incidence of cancer

지표 정의

암 발생률은 조사시점(2019년도)에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 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암환자 수를 나타낸다.

측정 산식

- $\frac{\text{새롭게 발생한 암환자 수}}{\text{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00$

표 8-10 주요 암 종별 발생률과 5년 상대생존율 (2019)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

구분	조발생률 (2019년, 인구 십만 명당)			연령표준화 발생률 (2019년, 인구 십만 명당)			5년 상대생존율 (2015년~2019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모든 암 (C00–C96)	496.2	523.9	468.5	295.8	308.1	297.4	70.7	64.5	77.3
갑상선 (C73)	59.8	29.3	90.0	52.3	25.9	79.6	100.0	100.3	99.9
폐 (C33–C34)	58.4	79.4	37.4	28.2	42.3	17.4	34.7	28.9	47.4
위 (C16)	57.4	77.2	37.8	30.8	43.5	19.7	77.5	78.3	75.8
대장 (C18–C20)	56.5	66.8	46.3	30.0	38.4	22.5	74.3	75.5	72.6
유방 (C50)	48.6	-	96.5	34.3	-	68.5	93.6	-	93.6
전립선 (C61)	32.7	65.6	-	15.5	34.4	-	94.4	94.4	-
간 (C22)	30.4	45.1	15.8	16.1	25.7	7.3	37.7	38.3	35.8
췌장 (C25)	15.8	16.2	15.3	7.8	9.0	6.8	13.9	13.0	14.9
담낭 및 기타 담도 (C23–C24)	14.4	15.2	13.6	6.6	8.1	5.4	28.5	28.8	28.1
신장 (C64)	11.7	16.2	7.3	7.4	10.6	4.3	84.7	84.7	84.8

주: 1) 2019년을 기준으로 조발생률이 높은 10개 암 종의 정보만 제시함.
2)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비율을 가중치로 주어 산출한 가중평균발생률임. 조발생률은 해당 인구집단에서의 암발생 정도를 절대적으로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며, 지역 간 혹은 시기에 따른 암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령구조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발생률을 사용함.
3) 상대생존율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동일한 연도, 성별, 연령인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함. 예를 들어,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일반인과 생존율이 같음을 의미함. 갑상선암의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100%를 넘는 것은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가 5년 동안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나이와 성별의 일반인구와 비교하였을 때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의미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9 암등록통계, 202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1999	2019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9 암등록통계, 2021

05-2
연 관

뇌졸중 의사진단 경험률

Prevalence of cerebrovascular diseases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의사로부터 뇌졸중을 진단받은 적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의사로부터 뇌졸중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 수}}{\text{만 30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 2015년까지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표가 측정되었으나, 2016년부터 만 30세 이상으로 변경됨.

표 8-11 특성별 뇌졸중 의사진단 경험률 (2012~2021)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2	1.3	0.1	0.7	0.9	3.5	4.6	1.5	0.7	1.7	1.4	0.9	1.4	0.8
2013	2.2	0.3	0.7	3.0	4.8	7.9	2.1	2.6	3.4	1.8	1.5	1.8	2.3
2014	1.7	0.1	0.6	1.2	4.6	7.1	1.7	1.5	3.1	1.8	1.1	1.1	1.4
2015	1.7	0.0	0.3	1.5	4.4	8.4	1.8	1.2	2.3	2.1	1.0	1.8	1.3
2016	1.7	0.1	0.6	2.1	3.7	6.7	1.7	1.6	2.8	1.7	1.4	1.2	1.1
2017	1.8	0.1	0.8	2.0	3.8	6.9	1.8	2.1	2.9	1.6	1.6	1.4	1.3
2018	1.8	0.3	0.6	1.8	3.7	8.0	1.7	2.5	2.5	2.6	1.6	0.8	1.5
2019	1.9	0.6	1.2	1.3	3.2	8.2	1.9	2.4	2.0	2.3	2.8	1.4	1.1
2020	1.7	0.6	0.7	1.2	3.3	7.5	1.6	2.1	2.9	1.5	2.0	1.2	1.1
2021	1.6	0.4	0.5	1.5	2.9	7.5	1.6	1.8	2.0	1.4	1.4	1.7	1.6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3) 2015년까지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표가 측정되었으나, 2016년부터 만 30세 이상으로 변경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5-3
연 관

고혈압 유병률

Prevalence of hypertension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 2019년까지는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표가 측정되었으나,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표 8-12 일반 특성별 고혈압 유병률 (2012~2021)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2	23.4	4.8	9.5	22.6	34.5	54.0	66.4	23.1	26.3	23.9	24.4	24.4	22.7	21.1
2013	22.0	4.2	9.7	19.5	35.9	48.7	62.3	21.9	23.5	21.7	22.8	24.3	20.1	21.1
2014	20.1	2.2	7.3	17.7	32.0	48.5	63.5	20.3	19.4	21.3	22.1	19.3	20.1	17.9
2015	22.1	2.7	8.7	20.7	33.9	51.8	67.5	21.7	25.2	25.2	24.8	19.6	20.9	20.4
2016	23.3	3.5	10.3	21.7	36.5	50.9	69.2	23.3	23.5	26.0	21.1	22.2	24.6	22.6
2017	22.0	5.1	11.3	19.2	32.1	46.9	64.7	22.0	21.8	24.6	22.2	21.3	20.3	21.5
2018	23.1	5.4	11.7	20.6	34.7	46.0	70.2	22.7	25.2	25.1	26.7	21.7	21.9	20.0
2019	22.2	5.2	9.5	19.0	32.3	51.5	67.2	22.0	22.7	25.1	22.9	21.2	20.4	21.7
2020	22.9	4.4	11.4	20.8	35.9	48.1	65.3	22.9	23.4	24.6	25.0	21.2	22.9	20.8
2021	21.4	2.8	10.0	19.7	31.2	48.0	66.4	20.5	26.3	22.2	23.8	21.8	19.6	19.8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3) 2019년까지는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표가 측정되었으나,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5-4
연 관

당뇨병 유병률

Prevalence of diabetes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당뇨병은 심혈관계 합병증과 실명, 조기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인병으로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노령화에 따라 당뇨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 2019년까지는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당화혈색소 기준은 없었음.

측정 산식

- $\frac{\text{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13 일반 특성별 당뇨병 유병률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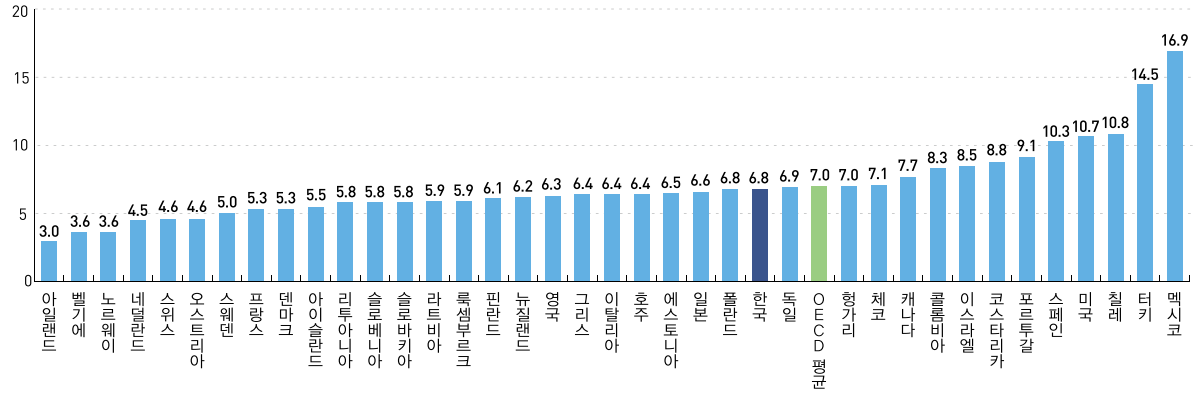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2	8.6	0.9	3.1	5.8	14.2	24.6	26.5	8.5	9.2	9.3	10.6	6.4	8.6	7.6
2013	10.7	1.7	2.7	8.3	15.6	31.1	34.8	10.8	10.3	12.4	11.2	10.3	9.9	9.7
2014	9.3	0.3	2.5	9.5	14.1	25.6	27.0	9.4	9.3	12.7	9.5	7.8	7.9	8.7
2015	8.0	0.6	3.1	7.1	10.3	21.5	27.1	8.0	7.9	10.6	9.6	6.4	6.0	7.8
2016	9.7	0.6	3.0	8.7	16.0	24.2	31.8	9.3	12.7	12.0	9.4	10.2	8.4	8.4
2017	9.1	1.5	2.3	7.3	16.4	21.0	30.4	9.0	10.2	12.2	9.1	9.2	8.2	7.4
2018	9.2	0.8	3.2	8.3	14.6	22.3	29.2	9.0	10.1	11.5	11.3	8.2	8.2	6.7
2019	9.5	1.8	2.7	8.1	14.4	24.2	31.0	9.0	12.7	10.6	10.4	9.2	8.7	8.9
2020	10.7	0.7	4.4	9.0	19.1	25.1	31.5	10.5	11.8	14.8	11.4	10.6	8.9	8.1
2021	10.3	0.5	3.6	10.6	15.9	24.8	31.8	10.0	12.2	12.6	11.6	9.7	9.8	8.2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2019년까지는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당화혈색소 기준은 없었음.
3)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7. 인출)

그림 8-16 OECD 국가의 당뇨병 유병률 (2020)

(단위: %)



주: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Atlas 10th Edition, 2021 (https://diabetesatlas.org)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Atlas 10th Edition, 2021

06
대 표

현재 흡연율

Current smoking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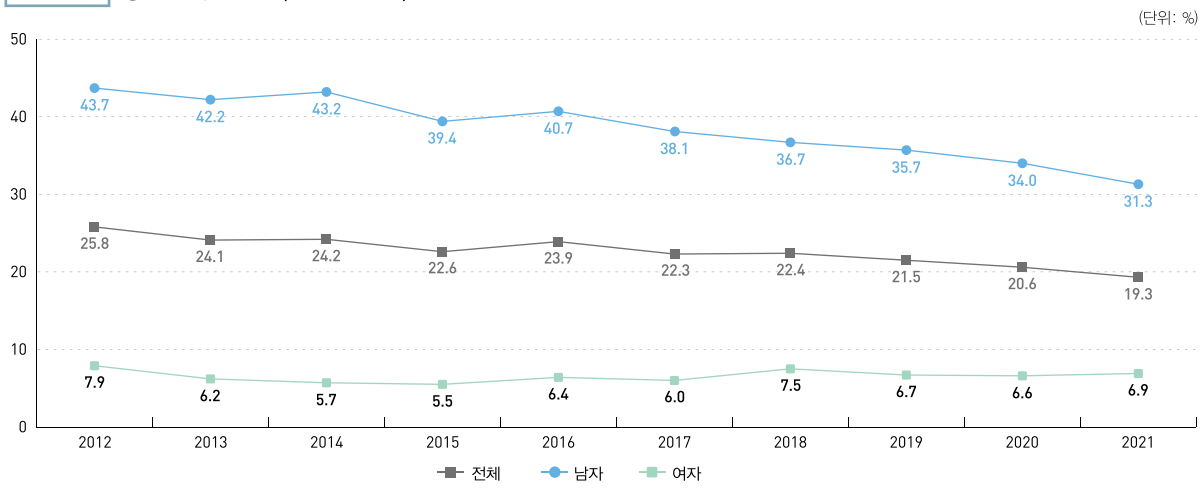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중 평생 일반담배(궐련)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궐련)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2019년부터 '담배'를 '일반담배(궐련)'로 변경 표기함.

측정 산식

- $\frac{\text{평생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17 성별 현재 흡연율 (2012~2021)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표 8-14 일반 특성별 현재 흡연율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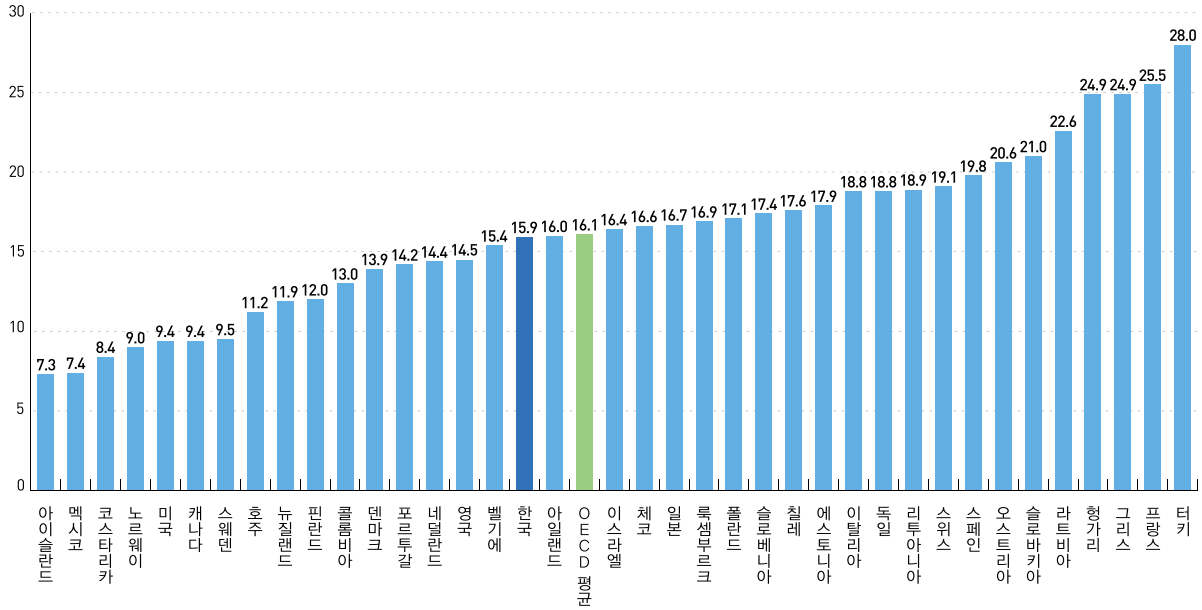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2	25.8	28.0	32.5	27.7	24.6	13.4	10.9	25.4	28.2	29.6	28.4	23.5	22.5	23.8
2013	24.1	24.1	30.7	26.9	22.0	17.4	8.0	23.3	27.5	28.9	26.5	24.0	20.9	20.7
2014	24.2	22.5	30.0	29.2	20.6	18.2	10.1	23.4	29.7	28.1	24.3	25.8	23.1	19.7
2015	22.6	23.7	27.7	25.4	20.8	14.1	9.0	22.4	23.6	26.0	21.6	24.2	21.7	18.9
2016	23.9	25.4	30.4	25.0	22.7	14.6	9.1	23.1	28.8	25.6	26.0	22.5	23.5	21.7
2017	22.3	24.4	25.5	26.3	20.2	14.4	8.5	21.5	27.5	26.0	24.9	22.7	21.7	15.9
2018	22.4	23.8	24.7	26.7	22.8	14.9	6.6	21.7	27.3	25.1	26.7	21.6	20.5	17.2
2019	21.5	24.8	24.0	22.4	20.3	16.8	8.4	21.3	21.5	27.9	21.8	23.7	20.5	14.0
2020	20.6	21.9	23.0	24.0	19.2	15.5	7.2	20.7	19.2	23.7	23.6	19.6	18.9	17.4
2021	19.3	22.3	18.9	22.4	19.7	15.1	7.2	19.3	18.4	21.3	26.4	17.5	18.0	13.7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7. 인출)

그림 8-18 OECD 국가의 흡연율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주: 1) OECD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매일 흡연하는 인구의 비율을 비교함.
2) 2020년 기준이며, 덴마크, 아일랜드는 2021년,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는 2019년, 벨기에는 2018년, 독일, 스위스는 2017년, 콜롬비아는 2013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07. 인출)

06-1
연 관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Cigarettes smoked per day among current smokers

지표 정의

만 19세 이상의 '현재 흡연자'가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 개비 수이다.

측정 산식

$$\frac{\text{하루 평균 흡연한 개비의 합}}{\text{만 19세 이상 현재 흡연자 수}}$$

표 8-15 일반 특성별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2012~2021)

(단위: 개비)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2	14.7	12.0	14.3	17.5	16.2	16.5	10.7	14.2	-	14.8	14.4	14.6	-	-
2013	14.6	12.9	14.4	16.1	16.8	15.3	11.0	14.5	-	-	-	-	-	-
2014	14.7	12.9	14.3	15.9	16.8	15.1	13.6	14.4	-	14.1	15.1	-	-	-
2015	13.4	10.3	13.2	15.4	16.0	14.8	10.5	13.3	-	-	-	-	-	-
2016	13.1	10.8	12.7	15.1	15.1	13.0	11.8	12.9	14.4	13.6	12.8	13.1	13.2	-
2017	13.3	11.8	12.5	14.4	16.6	13.4	10.1	13.2	-	13.4	14.1	13.3	-	-
2018	13.0	11.4	12.8	13.8	14.6	14.8	10.3	12.9	-	-	-	-	-	-
2019	12.4	10.0	11.9	13.3	15.4	14.3	10.6	12.2	13.6	12.2	-	12.4	-	-
2020	12.2	9.1	11.7	14.0	14.9	13.4	10.8	11.9	-	11.9	-	13.2	-	-
2021	12.6	10.1	11.0	14.1	16.1	13.8	11.9	12.3	-	-	-	-	-	-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3) 자료의 수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로 표시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6-2
연 관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Nonsmoker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in workplace

지표 정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일반담배(궐련) 비흡연자(과거 일반담배(궐련)흡연자 포함) 중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2019년부터 '담배'를 '일반담배(궐련)'으로 변경 표기함.

측정 산식

$$\frac{\text{최근 7일 동안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text{만 19세 이상,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비흡연자 수}} \times 100$$

* 2013년부터 '최근 7일 동안'이라는 기준이 포함됨.

표 8-16 일반 특성별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2012~2021)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2	46.1	59.1	52.4	45.8	40.3	32.8	15.0	46.4	44.1	43.8	40.0	52.2	45.1	48.7
2013	47.4	47.6	47.9	51.7	51.8	42.0	30.1	47.5	45.8	45.0	53.7	41.3	49.4	46.8
2014	40.1	43.0	42.1	42.5	44.5	29.7	22.5	41.3	37.0	46.3	32.5	41.9	40.5	40.8
2015	26.9	26.4	27.1	29.1	31.8	24.9	13.5	25.1	36.7	32.5	25.7	27.1	24.9	25.0
2016	17.4	20.3	15.9	18.8	21.0	13.1	8.3	16.6	23.2	21.3	17.1	14.1	18.5	16.7
2017	12.7	10.9	13.6	12.3	17.3	15.0	4.4	12.7	14.6	11.7	16.6	14.5	12.2	9.1
2018	11.5	10.9	12.2	12.1	14.9	9.9	4.2	11.2	15.4	17.6	12.5	12.2	10.1	5.9
2019	14.1	16.3	14.9	12.0	18.0	11.9	6.1	14.6	11.5	16.6	20.3	12.1	10.3	13.6
2020	10.3	7.9	12.3	11.5	12.3	10.1	3.8	10.4	10.0	12.0	11.2	10.0	12.1	6.8
2021	9.2	10.7	7.4	10.8	9.8	8.7	4.2	8.9	11.1	9.9	9.9	7.0	9.0	9.7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6-3
연 관

청소년 현재 흡연율

Current smoking rate of adolescent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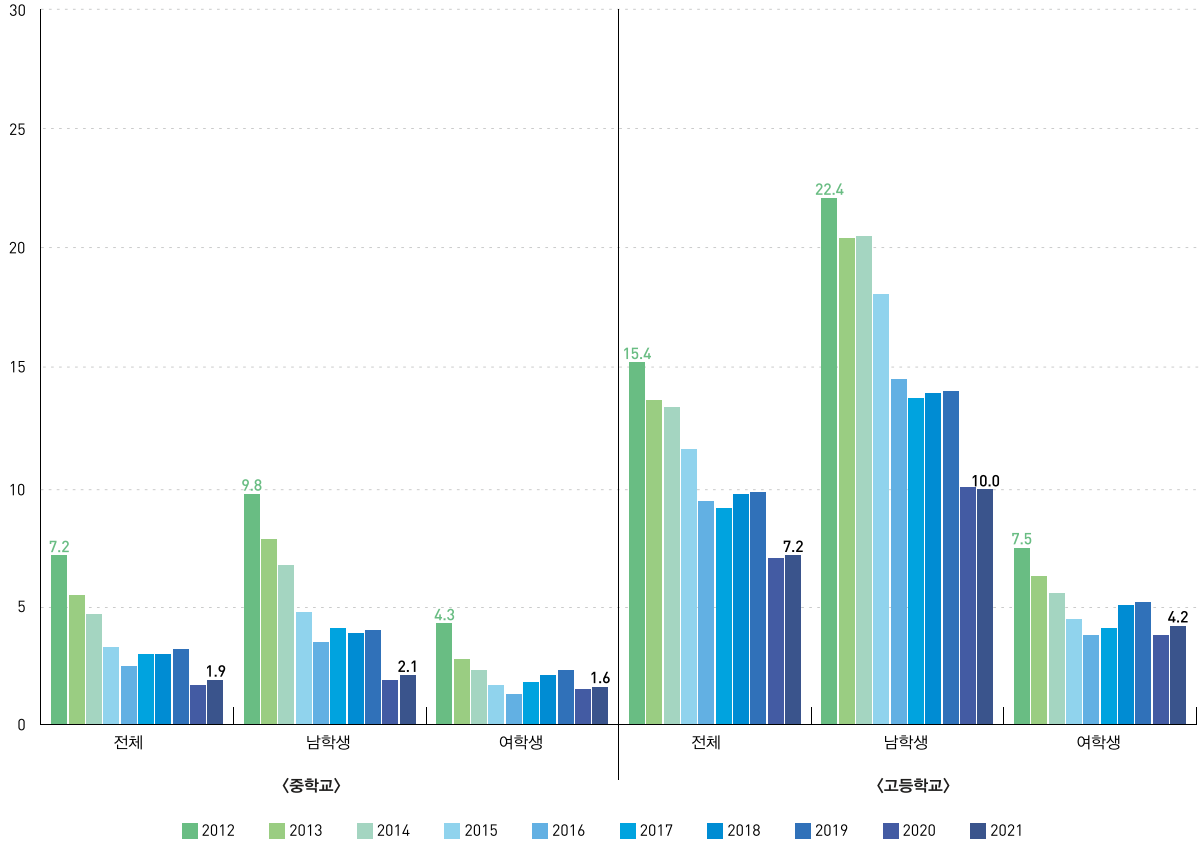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중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청소년(중1~고3)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수}}{\text{조사 대상자 전수}} \times 100$

그림 8-19 성별 · 학교급별 청소년 현재 흡연율 (2012~2021)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05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07
대 표

고위험 음주율

High risk alcohol consumption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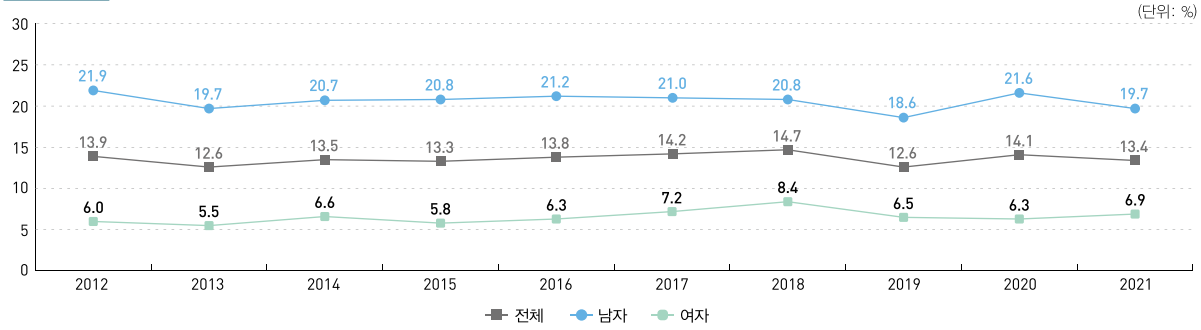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1년간 음주빈도 문항 주 2회 이상 응답자이면서 1회 음주량 문항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 응답자}}{\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20 성별 고위험 음주율 (2012~2021)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7. 인출)

표 8-17 특성별 고위험 음주율 (2012~2021)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2	13.9	14.4	17.2	17.2	13.3	6.5	2.8	13.9	14.2	13.4	12.4	16.5	12.5	15.5
2013	12.6	14.1	15.6	15.1	12.1	4.6	1.7	12.4	13.0	11.3	11.7	13.6	13.9	12.5
2014	13.5	11.9	17.6	16.4	14.5	7.4	3.3	13.2	16.1	14.5	14.1	12.8	12.4	13.2
2015	13.3	12.7	15.8	16.2	13.8	9.1	2.5	13.1	13.9	14.4	13.7	12.0	14.1	12.4
2016	13.8	13.8	16.4	15.8	15.4	9.0	2.7	13.3	17.1	13.7	14.6	10.7	15.6	14.4
2017	14.2	14.2	16.9	16.9	14.5	9.1	3.2	14.3	13.0	14.3	15.5	14.9	13.1	13.2
2018	14.7	15.9	15.2	18.1	14.6	11.2	3.0	14.3	16.3	14.2	15.9	14.4	16.4	12.3
2019	12.6	11.2	13.8	15.3	13.9	10.4	4.7	12.1	15.4	14.2	14.9	12.2	10.8	11.1
2020	14.1	11.4	16.6	19.0	13.9	10.9	3.5	13.9	14.8	13.2	14.7	14.9	13.0	14.7
2021	13.4	12.9	15.6	16.3	13.8	9.1	3.7	13.5	11.9	12.1	16.1	13.8	13.5	11.9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sqrt{\text{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7-1
연 관

연간 음주율

Current alcohol consumption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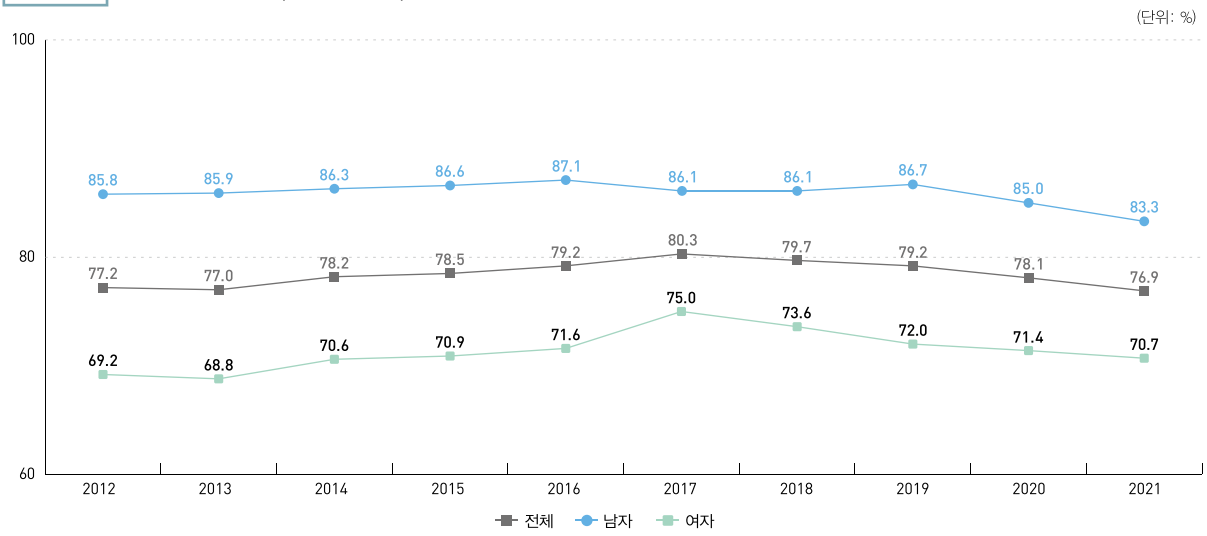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21 성별 연간 음주율 (2012~2021)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7-2
연 관

청소년 현재 음주율

Current alcohol consumption rate of adolescent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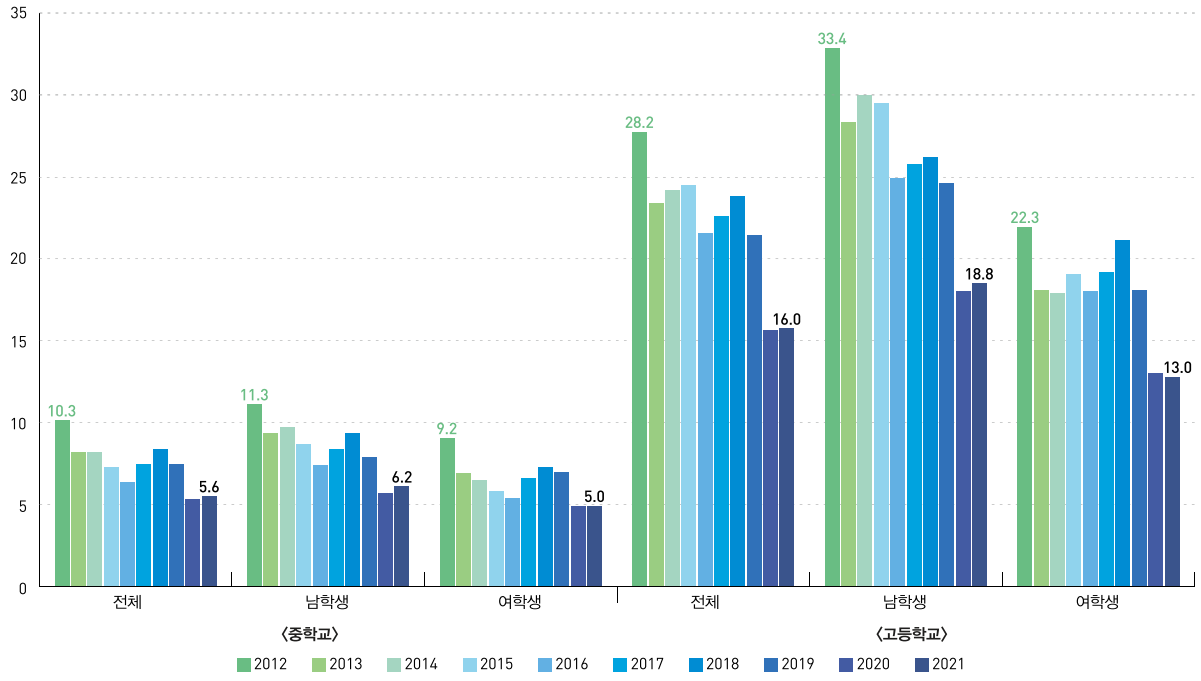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중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청소년(중1~고3)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수}}{\text{조사 대상자 전수}} \times 100$

그림 8-22 성별 · 학교급별 청소년 현재 음주율 (2012~2021)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05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07-3
연 관

1인당 알코올소비량

Alcohol consumption per capita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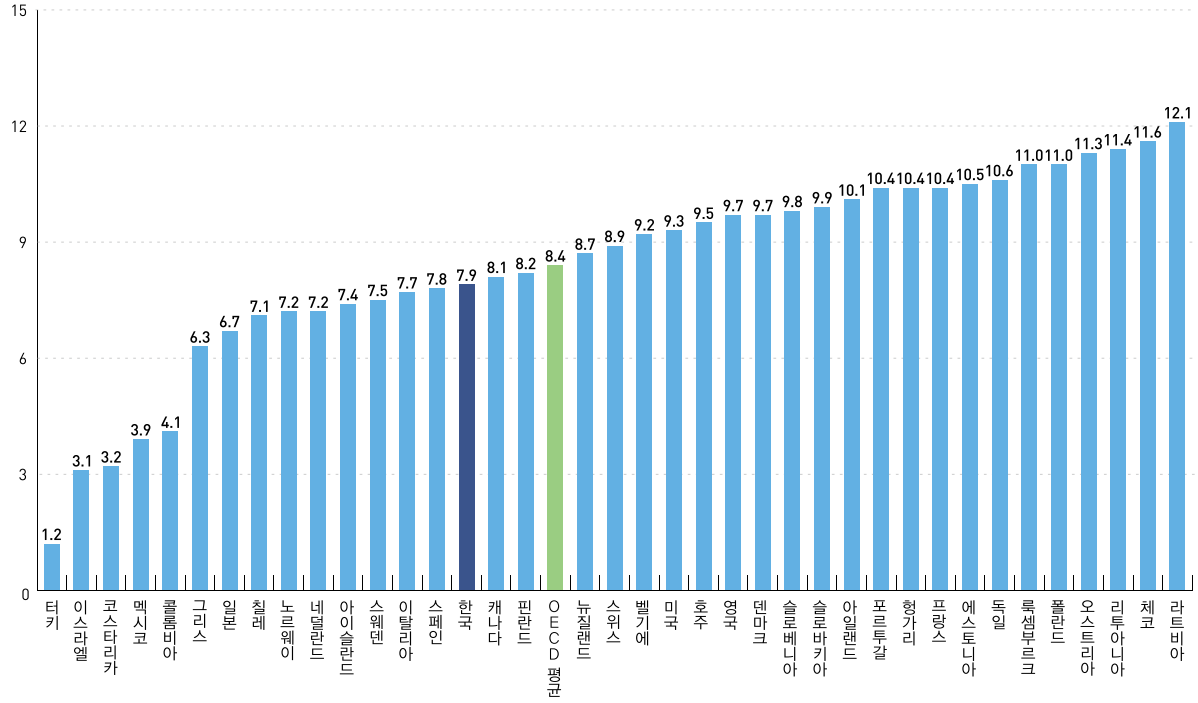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순수 알코올소비량을 1인당으로 환산한 값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주류 총 소비량}}{\text{15세 이상 인구수}}$

그림 8-23 OECD 국가의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소비량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ℓ)



주: 2019년 기준이며, 헝가리, 아이슬란드는 2018년, 호주는 2017년, 멕시코는 2016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20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08
대 표

비만율

Obesity rate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은 대한비만학회가 제시한 것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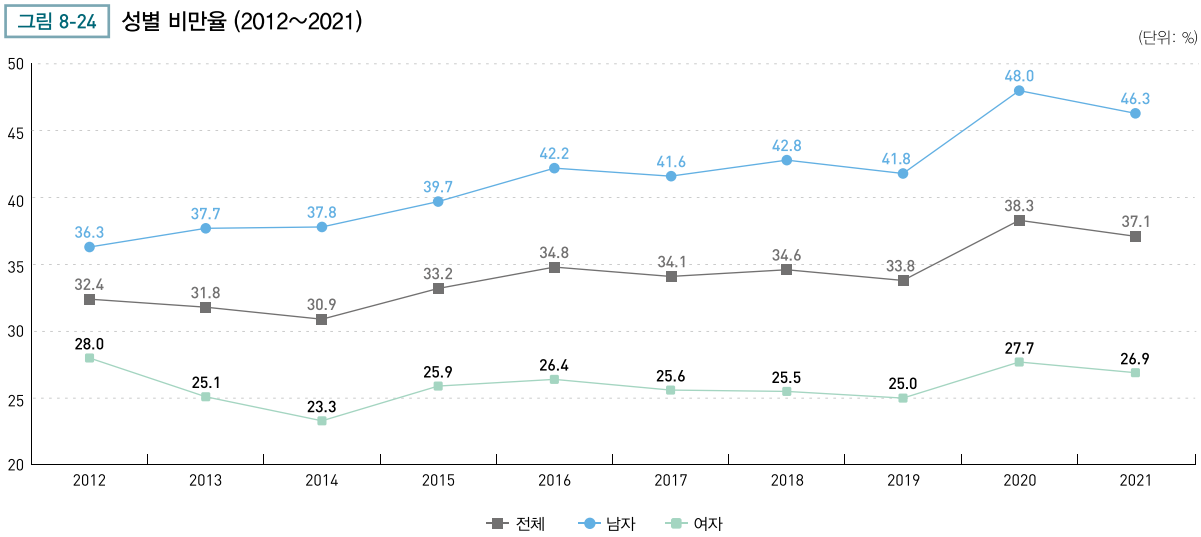
- WHO는 비만을 '건강을 해칠 정도로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하게 지방조직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본다. 한편, 대한비만학회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본다. BMI는 비교적 측정이 쉬워 건강조사나 임상검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만 지표로, 미래의 질병 부담을 나타낸다.

측정 산식

- $\dfrac{\text{체질량지수(BMI)}^{*}\ 25\ \text{이상인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 체질량지수(BMI) $= \dfrac{\text{체중(kg)}}{[\text{신장(m)}]^2}$

그림 8-24 성별 비만율 (2012~2021)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표 8-18 일반 특성별 비만율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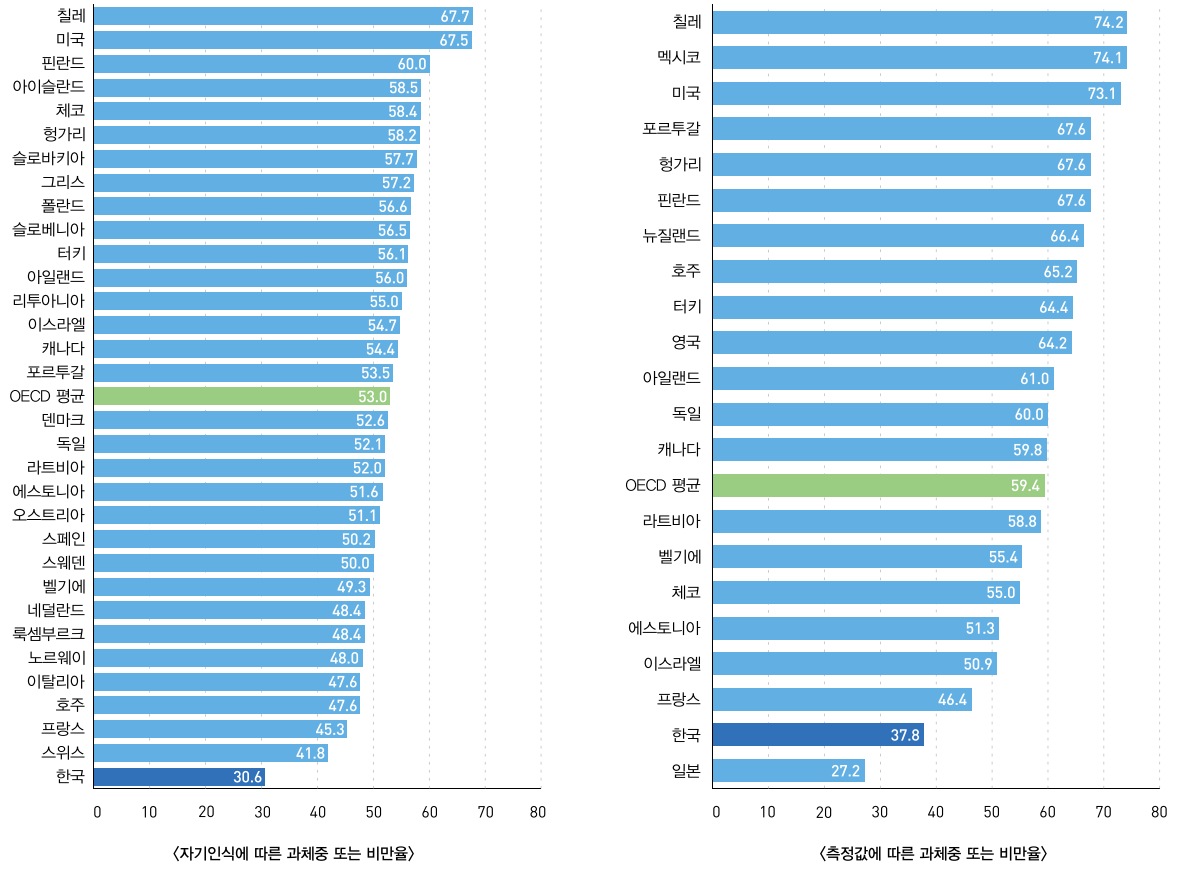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2	32.4	22.4	32.5	39.2	34.0	38.5	31.1	31.5	37.6	33.7	37.2	31.3	29.9	30.3
2013	31.8	22.4	33.2	33.7	37.3	36.3	33.8	31.3	33.5	32.1	34.2	30.4	30.7	31.3
2014	30.9	23.9	31.8	31.1	35.4	36.8	32.1	30.5	33.3	33.2	33.0	33.1	30.4	24.8
2015	33.2	23.5	32.9	35.6	38.3	40.1	37.4	32.4	37.4	38.4	34.1	32.2	32.0	30.1
2016	34.8	27.2	34.2	39.0	36.1	40.2	37.5	33.5	42.9	38.4	33.4	35.4	33.6	33.3
2017	34.1	29.4	33.4	35.3	38.0	38.0	34.7	33.6	38.8	38.5	35.8	32.3	33.8	30.6
2018	34.6	26.9	37.8	36.8	35.2	36.8	38.0	34.2	37.2	35.1	38.4	35.4	35.5	28.1
2019	33.8	27.6	34.9	35.6	36.5	37.3	34.3	33.0	39.2	35.6	33.6	34.1	33.1	31.8
2020	38.3	32.6	41.6	39.0	40.2	41.1	35.3	38.1	40.0	40.6	40.0	39.7	38.1	33.5
2021	37.1	28.6	39.4	42.9	36.8	40.6	33.5	36.2	43.9	39.8	37.9	36.6	35.1	35.5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07. 인출)

그림 8-25 OECD 국가의 과체중 또는 비만율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주: 1) OECD는 전체 인구집단 중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의 비율을 비교함.
2) 자기인식에 따른 과체중 또는 비만율은 2020년 기준이며, 칠레, 덴마크는 2021년,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는 2019년, 벨기에, 한국은 2018년, 호주, 스위스는 2017년, 라트비아는 2014년이 비교됨.
3) 측정값에 따른 과체중 또는 비만율은 2020년도 기준이며, 캐나다,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영국, 미국은 2019년, 벨기에는 2018년, 호주, 핀란드, 프랑스, 터키는 2017년, 칠레는 2016년, 이스라엘, 포르투갈은 2015년, 에스토니아는 2014년, 독일은 2012년, 체코는 2010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10. 인출)

08-1
연 관

청소년 비만율

Adolescent obesity rate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2007년 소아 · 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기준 95백분위 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m^2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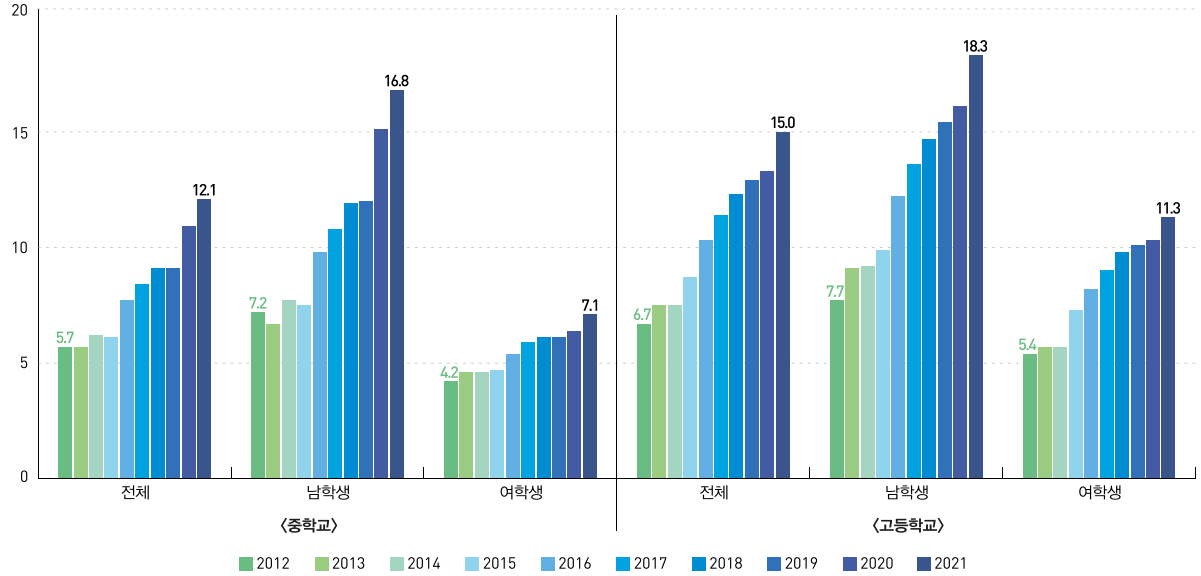
$$\frac{\text{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기준 95백분위 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m}^2\text{ 이상인 사람의 수}}{\text{조사 대상자 전수}} \times 100$$

* 체질량지수(BMI) = $\frac{\text{체중(㎏)}}{[\text{신장(m)}]^2}$

* 신장과 체중은 자기기입 방식으로 조사됨.

그림 8-26 성별 · 학교급별 청소년 비만율 (2012~2021)

(단위: %)



주: 기존('06~'17년)에는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2017년 소아성장도표 제정에 따라 연도비교를 위해 '06~'17년 결과 재산출함.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05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08-2
연 관

걷기실천율

Practice rate of physical activity (walking)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19 일반 특성별 걷기실천율 (2012~2021)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2	39.4	50.6	39.0	34.5	34.7	37.7	32.1	40.7	33.0	41.4	36.2	38.9	38.4	41.9
2013	38.0	49.0	35.7	36.0	31.5	34.7	35.1	39.0	33.9	37.8	36.9	37.3	40.2	37.9
2014	41.7	51.9	37.1	38.8	39.3	41.2	38.7	43.6	30.9	41.7	39.0	40.0	44.5	43.7
2015	41.2	50.8	39.0	38.4	37.7	42.7	32.6	42.9	33.4	43.7	37.0	40.2	40.9	44.1
2016	39.6	48.1	37.4	36.3	36.6	41.8	33.6	41.4	29.0	35.1	37.6	36.5	45.1	44.2
2017	39.0	47.9	34.7	37.2	39.4	38.4	31.4	40.7	28.3	36.1	39.9	38.0	39.2	41.4
2018	40.2	49.9	38.3	38.2	34.1	41.6	32.1	42.0	27.3	39.8	38.4	40.5	40.9	41.3
2019	43.5	57.0	40.6	37.3	40.7	41.5	38.9	45.0	34.8	41.5	42.4	44.8	43.4	45.3
2020	39.2	45.1	37.6	35.1	36.3	42.4	39.9	41.1	27.5	37.4	39.4	37.7	40.9	40.3
2021	39.6	43.1	35.3	39.0	36.8	45.2	42.3	40.9	32.2	36.0	40.2	41.1	37.7	43.1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9
대 표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Rates of undernutrition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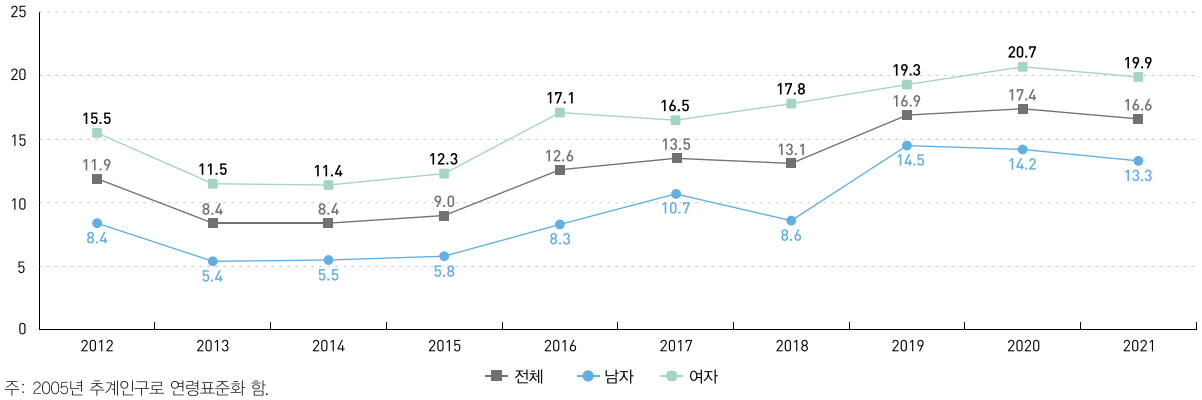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중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 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의 분율이다. 조사는 만 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대상자 수}}{\text{만 1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27 성별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2012~2021)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0. 인출)

표 8-20 일반 특성별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2012~2021)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2	11.9	7.4	15.6	17.1	11.0	9.7	8.3	8.7	17.7	11.2	15.3	17.7	10.7	13.0	9.0	8.1
2013	8.4	5.1	13.5	13.3	7.6	7.4	2.9	4.2	10.0	8.6	6.8	12.0	7.5	8.1	7.6	6.8
2014	8.4	5.7	13.3	12.4	9.1	6.8	3.4	3.5	10.0	8.3	9.3	11.9	9.0	6.0	8.7	6.3
2015	9.0	5.7	14.5	13.1	8.9	8.1	4.1	3.8	10.2	8.9	9.5	14.7	10.0	6.4	7.8	5.6
2016	12.6	6.1	16.5	15.4	13.7	12.3	8.7	9.7	16.6	12.0	16.0	16.0	12.2	13.0	10.0	11.0
2017	13.5	4.3	17.9	19.9	12.3	13.9	9.8	10.6	16.4	13.3	15.4	18.7	13.3	12.3	13.3	9.6
2018	13.1	5.6	16.2	16.2	13.7	15.0	8.2	10.1	16.5	13.1	13.5	16.7	12.5	14.0	11.3	10.7
2019	16.9	4.6	19.3	23.5	15.1	17.3	13.7	15.9	27.6	16.9	17.1	21.8	17.8	18.1	14.0	12.1
2020	17.4	6.6	24.9	19.9	16.3	18.4	12.0	15.8	27.4	17.2	18.9	20.9	15.6	15.5	19.2	15.7
2021	16.6	5.7	21.1	20.1	15.4	16.9	13.6	17.2	24.5	16.3	17.8	20.7	20.4	14.9	11.8	14.3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09-1
연 관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Practice rate of healthy dietary lifesyle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현황을 반영하는 4개 지표 중에서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사람의 분율이다. 조사는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지방은 지방 섭취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정의하는 지방에너지 적정비율 이내이고, 나트륨은 1일 섭취량이 2,000㎎ 미만인 경우, 과일 및 채소는 과일류와 채소류 섭취량의 합계가 1일 500g 이상인 경우이다. 그리고 영양표시는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는지 여부에 '예'로 응답한 경우이다.

- 지방에너지 적정비율은 2016년부터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을 따르고, 2015년까지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 및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을 따랐음.

측정 산식

- $\frac{\text{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대상자 수}}{\text{초등학생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21 일반 특성별 건강식생활 실천율 (2012~2021)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6~11세	12~18세	19~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2	33.7	32.1	35.6	35.7	38.7	30.2	15.7	34.2	32.4	27.6	32.0	32.2	37.5	40.8
2013	36.9	40.6	41.5	36.8	39.7	34.2	21.3	37.9	32.3	32.6	36.2	34.3	37.8	43.5
2014	37.5	37.4	41.7	31.7	42.0	38.5	24.0	38.3	32.5	33.2	35.9	36.9	39.0	42.3
2015	38.5	44.8	38.4	34.5	42.4	38.8	25.8	39.4	34.4	36.3	37.6	37.0	41.5	40.3
2016	44.8	45.8	40.3	43.4	47.9	49.2	31.2	45.4	41.6	43.2	42.4	43.6	47.1	47.6
2017	45.8	46.5	41.8	45.5	49.4	47.9	32.0	47.0	38.5	42.4	46.4	44.1	46.4	49.0
2018	42.0	38.5	40.0	42.5	45.2	44.2	30.1	42.7	38.4	39.4	42.2	42.5	41.8	44.6
2019	45.3	37.9	39.0	44.3	49.4	49.5	38.5	45.9	42.6	43.8	42.8	44.9	46.0	49.1
2020	43.6	41.3	39.7	40.4	46.2	47.2	41.0	43.9	42.3	43.3	43.0	42.3	47.1	41.8
2021	45.3	40.0	39.8	38.0	49.4	51.9	42.5	46.1	41.3	46.7	44.6	45.1	45.0	45.3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10
대 표

평균 재원일수

Average of inpatient day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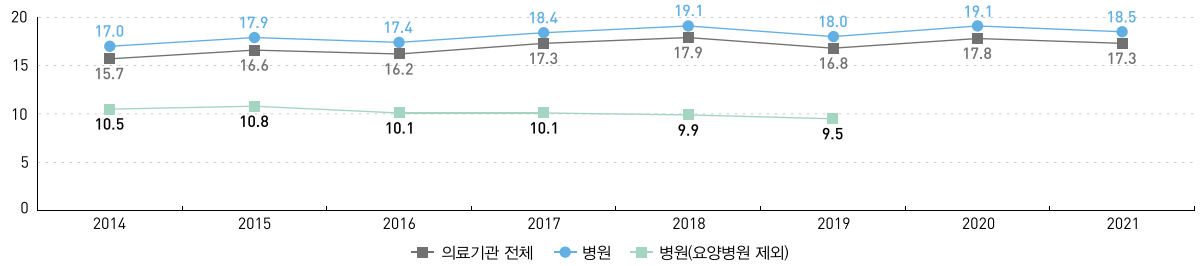
환자가 입원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머문 평균 일수를 의미한다. 퇴원환자의 재원일수 합계를 퇴원 환자 수로 나눈 값이다. 분석은 모든 유형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OECD 국가와의 비교 분석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퇴원환자의 총 재원일수}}{\text{퇴원환자 수}}$

그림 8-28 평균 재원일수 (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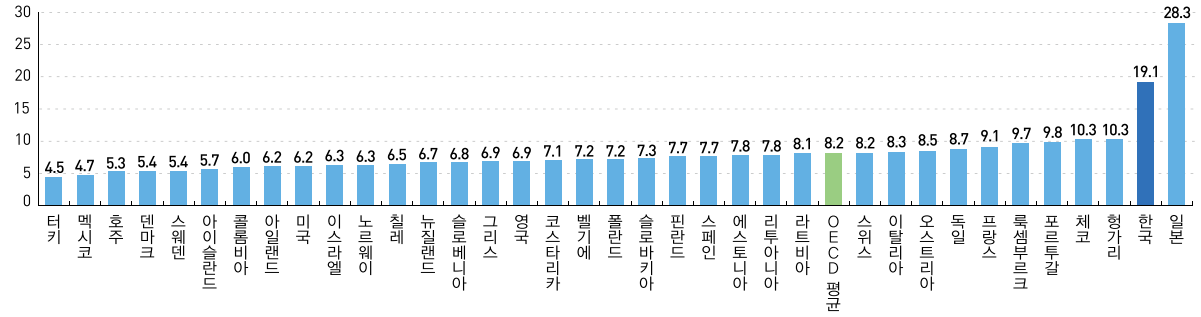
(단위: 일)



주: 1) 의료기관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포함함. 단, 2014~2019년까지는 산재보험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0년 이후 산재보험을 포함함.
2) 병원(요양병원제외) 항목의 2020년 이후 자료는 없음. 2014~2019년까지의 병원(요양병원제외)자료는 '2019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보고서를 인용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각 연도 (http://www.mohw.go.kr에서 2023.04.11. 인출)

그림 8-29 OECD 국가의 평균 재원일수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일)



주: 2020년 기준이며,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은 2019년, 콜롬비아는 2017년, 그리스는 2015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11.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이용현황*	2014	2021	1년

* 의료서비스이용현황 통계는 환자조사를 개선한 새로운 승인통계로 OECD 제공 자료임. 관련된 정보 중 2014년 이전의 수치는 환자조사 결과임.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11 대 표

1인당 의사 진료 건수

Number of consultations with doctor per capita

지표 정의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은 의사의 진료 건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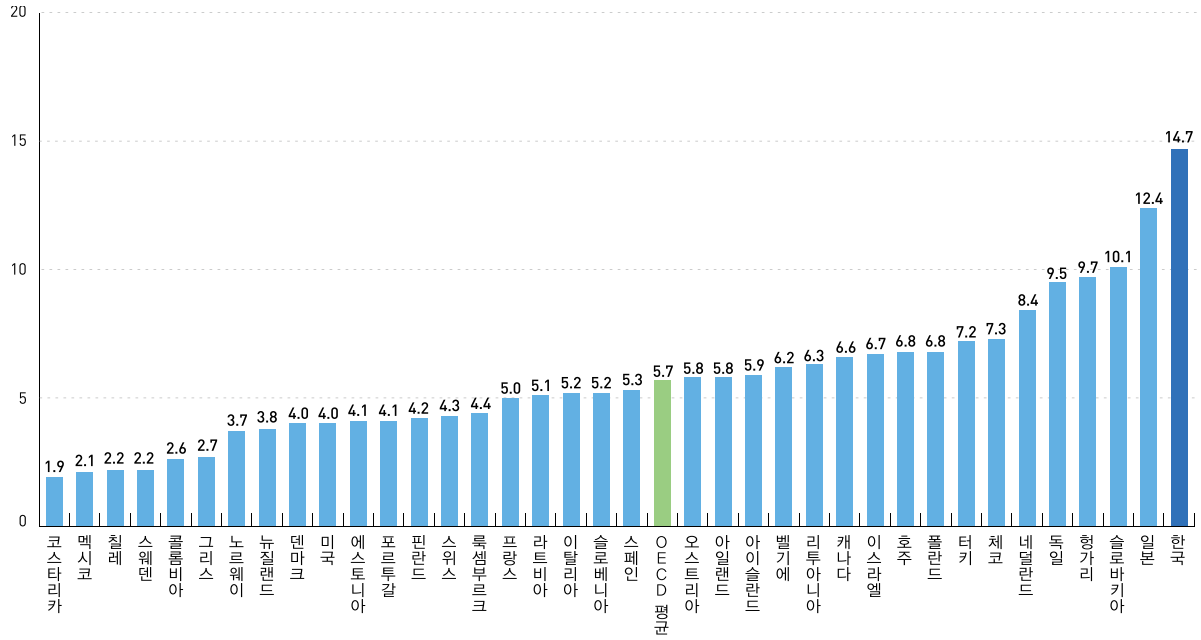
• 진료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을 의미한다. 국가마다 보건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진료가 포함하는 내용과 진료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를 수 있다. 진료는 의사의 진료실, 클리닉, 병원의 외래부서, 또는 환자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측정 산식

• $\frac{\text{모든 의료기관의 연간 의사진료 건수 합계}}{\text{장래추계 인구수}}$

그림 8-30 OECD 국가의 1인당 의사 진료 건수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건)



주: 2020년 기준이며, 캐나다, 콜롬비아, 아일랜드, 일본은 2019년, 뉴질랜드, 스위스는 2017년, 아이슬란드는 2014년, 포르투갈은 2012년, 미국은 2011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11.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20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11-1
연 관

1인당 외래방문 횟수

Averag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지표 정의

외래의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횟수를 외래방문 횟수(또는 내원 일수)라고 하며, 1인당 외래방문 횟수는 1년 동안의 총 외래방문 횟수를 2021년 장래인구추계 수로 나눈 값이다.

측정 산식

• 1인당 외래방문 횟수 = $\frac{\text{외래의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횟수}}{\text{2021년 장래인구추계 수}}$

표 8-22 시도별 1인당 의료 이용 현황 (2021)

(단위: 회)

시도	인구 1인당 외래진료 횟수		
	전체	남자	여자
전국	17.3	15.1	19.4
서울	20.0	17.7	22.1
부산	19.7	17.0	22.3
대구	20.1	17.7	22.5
인천	16.0	13.9	18.2
광주	17.7	15.9	19.4
대전	19.5	17.4	21.6
울산	16.4	14.6	18.3
세종	13.9	12.2	15.7
경기	15.0	13.1	16.9
강원	15.8	14.0	17.6
충북	16.7	14.5	18.9
충남	16.1	14.2	18.1
전북	19.6	17.3	21.9
전남	18.0	15.6	20.4
경북	15.3	13.4	17.3
경남	16.4	14.3	18.5
제주	18.2	15.5	20.9

주: 시도별 1인당 의료이용 현황 산출식: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의 외래진료횟수/해당 시도 인구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2021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2022 (http://www.mohw.go.kr에서 2023.04.11.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2014	2021	1년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2021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2022

11-2
연 관

산전수진율

Rate of prenatal car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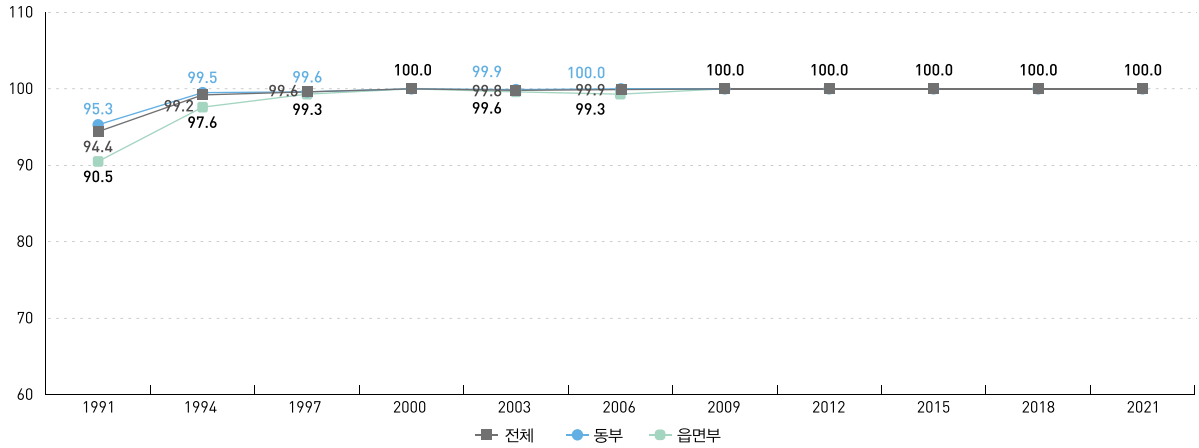
산전수진율이란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관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출산한 19–49세 기혼여성 중 의료기관을 방문한 여성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이는 의료의 접근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출산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3년 이내에 출산했고, 임신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전관리를 받은 19~49세 조사 대상 기혼여성 수}}{\text{최근 3년 이내에 출산한 19~49세 조사 대상 기혼여성 수}} \times 100$

그림 8-31 연도별 · 지역별 산전수진율 (1991~2021)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각 연도 (https://www.kihasa.re.kr에서 2023.04.12. 인출)

표 8-23 연도별 · 지역별 및 모의 연령구간별 산전진찰 초진시기 및 방문 횟수

(단위: 주, 회)

구분	2009		2012		2015		2018		2021	
	초진시기	방문 횟수	초진시기	방문 횟수	초진시기	방문 횟수	초진시기	방문 횟수	초진시기	방문 횟수
전체	5.5	13.5	5.4	13.4	5.3	13.3	5.4	13.5	5.3	13.4
지역										
동부	5.5	13.6	5.3	13.4	5.3	13.3	5.4	13.5	5.3	13.5
읍 · 면부	5.7	12.9	5.7	13.4	5.4	13.2	5.5	13.4	5.3	13.0
출산 시 모 연령										
24세 이하	6.8	13.3	7.4	13.5	6.0	13.1	5.4	13.3	5.7	12.0
25~29세	5.5	13.6	5.0	13.4	5.2	13.7	5.3	13.9	5.3	13.2
30~34세	5.4	13.2	5.0	13.2	5.2	13.2	5.4	13.5	5.3	13.6
35세 이상	5.4	14.3	6.2	13.7	5.4	13.3	5.6	13.2	5.6	12.6

주: 2009~2018년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출산한 경험이 있는 15–49세 기혼여성이었으며, 2021년부터 조사 대상이 최근 3년간 출산한 적 있는 19~49세 기혼여성으로 변경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3.04.1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964	2021	3년

참고문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각 연도

12
대 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rates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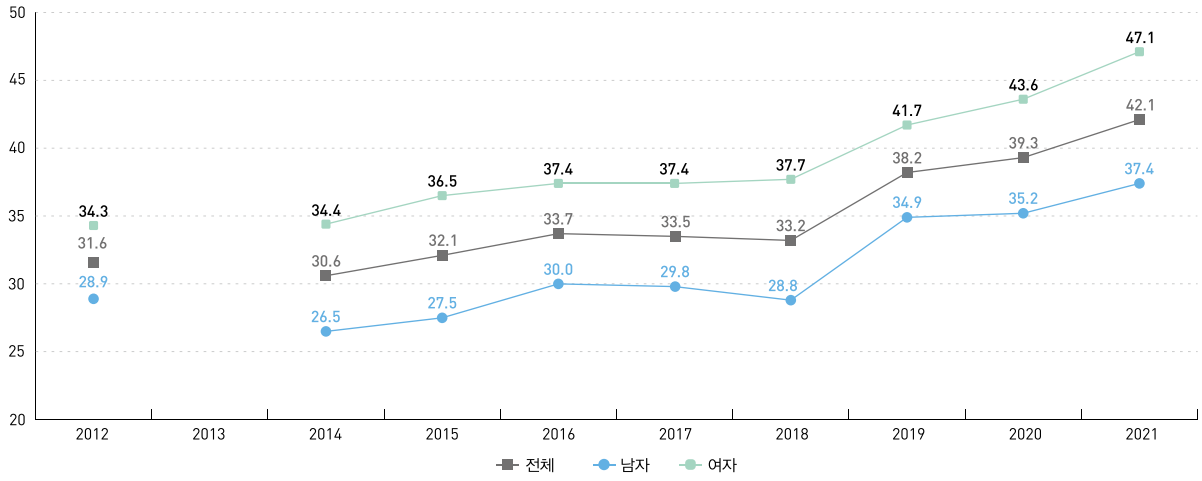
- 인플루엔자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며, 매년 예외 없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전 연령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이 면역력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증이나 사망의 위험을 겪게 된다.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가운데, 부작용이 많은 항바이러스제보다는 예방접종이 권장되는 편이다.

측정 산식

- $\dfrac{\text{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32 성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12~2021)

(단위: %)



주: 1) 2013년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표 8-24 일반 특성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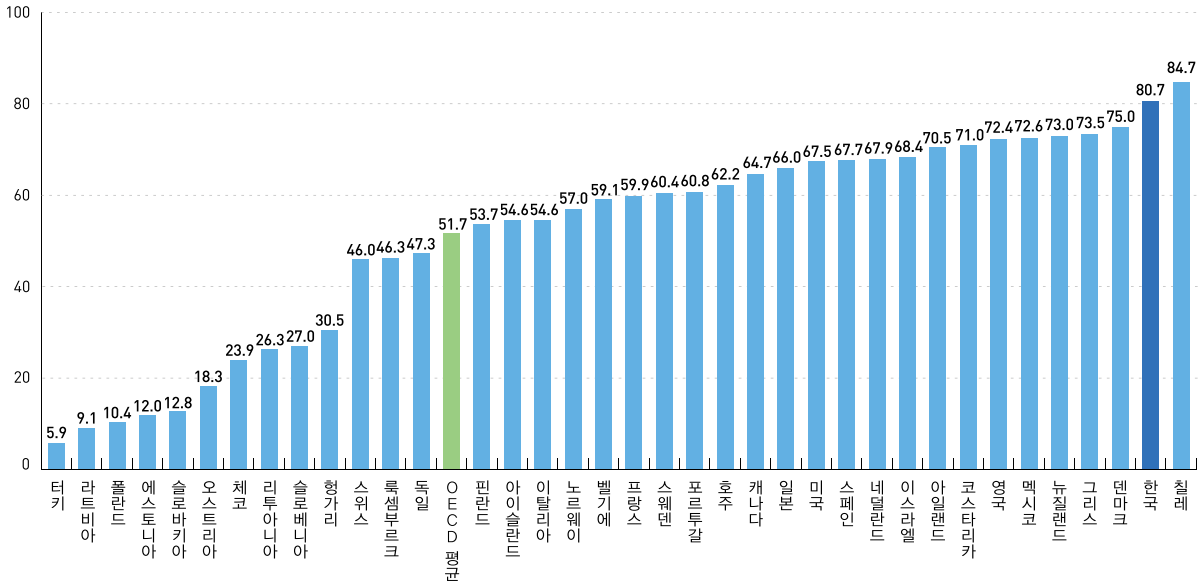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2]	연령별						거주지역별[2]		소득수준별[2][3]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2	31.6	18.0	29.5	21.7	28.6	58.7	80.9	31.3	33.1	33.0	28.0	32.9	31.4	33.0
2013	-	-	-	-	-	-	-	-	-	-	-	-	-	-
2014	30.6	16.2	29.0	20.1	26.7	57.4	83.6	30.8	29.6	31.5	26.8	28.9	34.8	31.0
2015	32.1	16.4	33.8	20.7	27.7	58.4	83.4	32.2	32.1	29.8	34.4	28.1	32.7	35.7
2016	33.7	14.8	34.3	22.0	33.1	63.7	87.0	33.3	36.3	33.8	31.7	33.4	35.1	34.3
2017	33.5	15.9	33.9	24.1	30.2	59.4	88.0	32.7	39.1	30.9	32.6	34.0	34.3	35.7
2018	33.2	16.9	33.9	22.4	27.0	60.9	89.1	33.3	32.1	32.8	34.6	30.7	33.2	34.6
2019	38.2	23.0	37.5	31.1	30.4	64.9	88.9	38.3	38.0	38.5	35.6	38.9	36.9	41.4
2020	39.3	26.0	38.0	34.3	33.9	59.0	84.7	39.5	38.1	34.5	39.7	40.7	41.7	39.5
2021	42.1	28.5	37.4	41.3	37.7	62.1	83.7	41.4	47.3	34.5	41.1	42.0	48.0	45.7

주: 1) 2013년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함.
3) 월 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2. 인출)

그림 8-33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예방접종률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주: 2020년도 기준이며, 오스트리아, 폴란드는 2019년, 벨기에, 터키는 2018년, 포르투갈은 2017년, 스위스는 2010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12. 인출)

12-1
연 관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1세 대상

DPT(diphtheria, tetanus, pertussis) vaccination coverage rates for children age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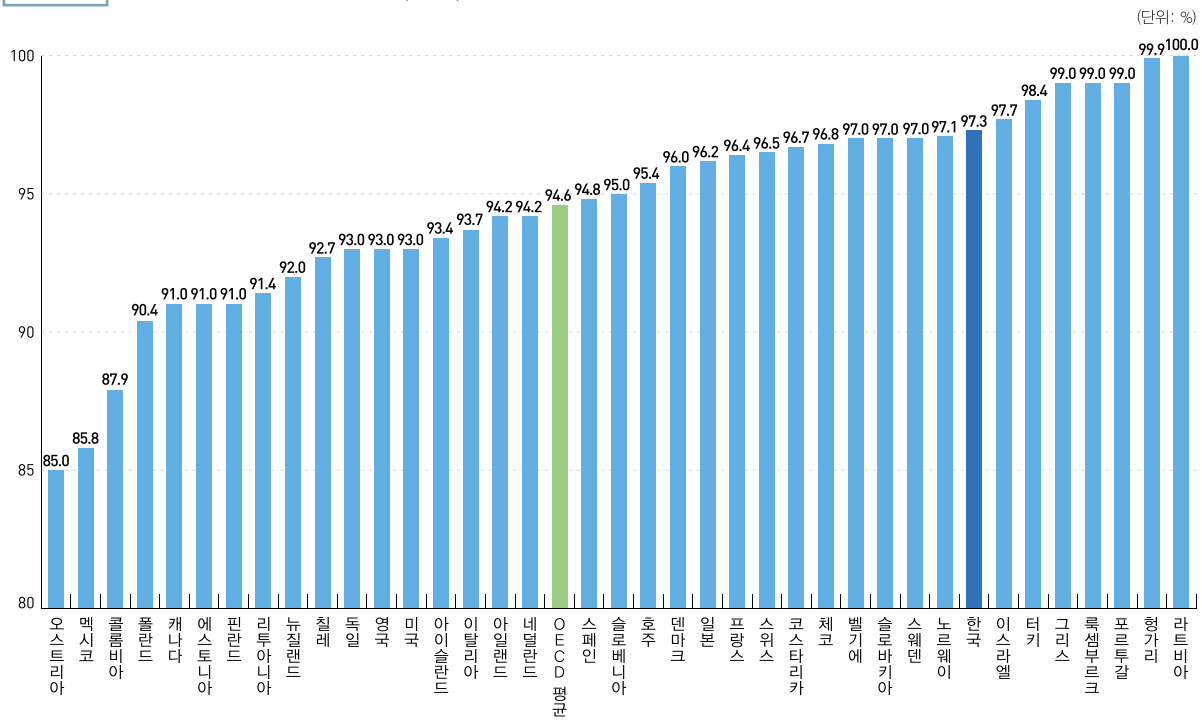
지표 정의

1세의 소아 중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1세 이하 중 DPT 접종을 받은 사람의 수}}{\text{1세 이하 인구수}} \times 100$

그림 8-34 OECD 국가의 DPT 예방접종률 (2020)



주: 2020년도 기준이며, 프랑스는 2021년, 한국은 2019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1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20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12-2
연 관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만 1~18세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rates for pediatric(1-18 year old)

지표 정의

만 1~18세 중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text{만 1~18세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25 일반 특성별 소아 ·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12~2021)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별				성별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남자	여자
2012	49.7	78.6	59.7	38.3	23.5	51.9	47.0
2013	-	-	-	-	-	-	-
2014	47.8	79.2	55.2	31.4	20.1	47.0	48.6
2015	49.3	76.7	56.2	42.1	19.8	47.0	51.9
2016	45.7	73.3	55.6	33.6	17.1	43.5	48.2
2017	50.7	77.3	60.4	44.9	18.9	49.3	52.3
2018	56.3	84.2	66.3	41.5	24.7	55.0	57.8
2019	64.4	91.6	80.2	52.2	24.6	63.0	65.9
2020	70.8	92.8	80.2	62.3	41.4	72.0	69.6
2021	70.9	83.7	80.5	71.0	44.0	70.4	71.4

주: 2013년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21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각 연도

13
대 표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Rate of recipients of general health check-ups

지표 정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로, 1차 검진 수검에 대한 지표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 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반 건강검진으로 이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거나, 만 70세와 만 74세 중에서 인지기능 장애 위험이 높다고 판정된 사람은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지역 가입자, 사무직 직장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 직장 가입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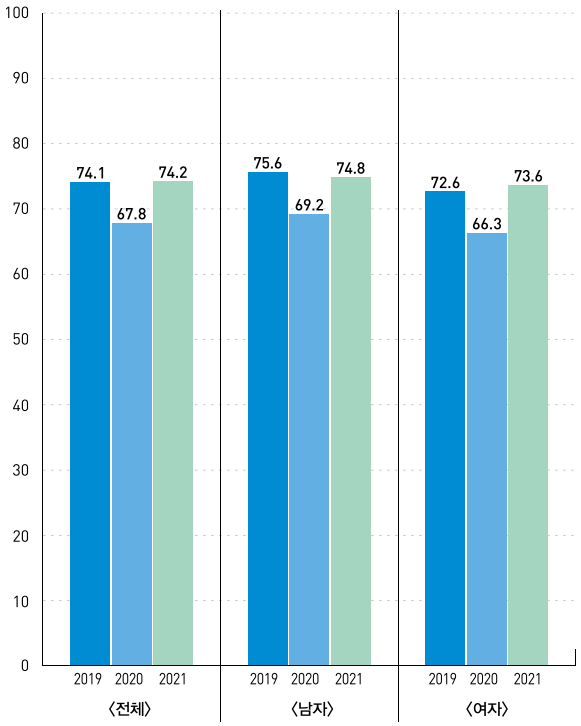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일반건강검진 수검 인원}}{\text{일반건강검진 대상자}} \times 100$

유의사항 여기에서는 건강보험대상자의 검진 실적만 검토한다.

그림 8-35 성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19~2021)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3. 인출)

표 8-26 시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21)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전국	22,836,830	16,953,007	74.2
서울	4,160,560	3,012,862	72.4
부산	1,479,041	1,097,984	74.2
대구	1,060,064	778,134	73.4
인천	1,308,184	993,167	75.9
광주	618,302	474,461	76.7
대전	644,014	501,196	77.8
울산	536,087	420,571	78.5
세종	151,605	119,940	79.1
경기	5,953,929	4,413,498	74.1
강원	673,669	501,397	74.4
충북	745,844	571,465	76.6
충남	969,523	712,302	73.5
전북	778,967	584,068	75.0
전남	805,722	598,785	74.3
경북	1,183,597	861,939	72.8
경남	1,487,757	1,111,793	74.7
제주	279,965	199,445	71.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 2022
(http://kosis.kr에서 2022.04.1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21	1년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13-1
연 관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Rate of recipients of general health check-ups, by core items

지표 정의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대상자 중 이 항목의 검진을 실시한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특정 검진항목 수검자 수}}{\text{특정 검진항목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27 시도별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2021)

(단위: 명, %)

구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전국	23,967,362	13,554,851	56.6	2,467,721	2,149,447	87.1	23,847,757	6,724,199	28.2
서울	4,421,271	2,421,044	54.8	456,255	389,977	85.5	4,349,912	1,188,062	27.3
부산	1,571,961	899,219	57.2	141,574	124,695	88.1	1,537,797	417,560	27.2
대구	1,106,247	606,402	54.8	103,896	91,827	88.4	1,103,236	227,526	20.6
인천	1,343,833	800,467	59.6	143,574	123,980	86.4	1,366,982	453,968	33.2
광주	633,714	383,659	57.8	68,376	59,687	87.3	646,001	174,256	27.0
대전	647,640	388,209	59.9	72,824	63,808	87.6	674,173	253,445	37.6
울산	531,683	299,700	56.4	62,389	55,721	89.3	562,231	257,830	45.9
세종	142,231	88,818	62.4	25,362	21,937	86.5	161,563	54,092	33.5
경기	6,040,677	3,431,046	56.8	677,829	586,096	86.5	6,226,611	1,695,558	27.2
강원	758,680	414,159	54.6	63,792	55,878	87.6	699,298	174,533	25.0
충북	752,145	427,971	56.9	76,742	68,115	88.8	777,358	300,763	38.7
충남	998,625	552,673	55.3	108,236	95,331	88.1	1,013,938	297,750	29.4
전북	862,402	508,525	59.0	73,252	63,978	87.3	809,309	281,280	34.8
전남	924,719	542,668	58.7	82,451	72,754	88.2	839,771	177,718	21.2
경북	1,323,357	723,511	54.7	118,299	104,945	88.7	1,232,317	275,350	22.3
경남	1,570,824	906,497	57.7	158,099	139,836	88.4	1,553,126	407,456	26.2
제주	307,354	160,283	52.1	34,771	30,882	88.8	294,134	87,052	29.6

주: 1) 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해당함.
2) 영유아건강검진은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을 대상으로 실시됨.
3) 구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 사례를 합산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 2022 (http://kosis.kr에서 2023.04.1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21	1년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 2022

14 대 표

의료보장 적용 인구

Beneficiaries of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지표 정의

정부나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으로부터 기본 의료서비스(예방, 증진, 치료, 재활, 완화치료)를 받는 인구를 의미한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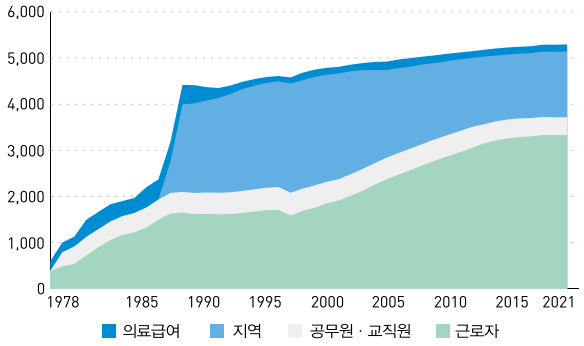
-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의료비지출에 사회적으로 공동 대처하여 재정적 보장을 제공해주는 제도로써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가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은 의료급여제도에 의해서, 이외의 나머지 국민은 건강보험제도에 의해서 보호된다. WHO는 2010년 World Health Report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방안으로 '보장인구의 확대', '급여서비스 영역의 확대', '환자 직접부담 금액의 감소'를 제안하였다.

측정 산식

- **건강보험 적용 인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림 8-36 의료보장 적용인구 (197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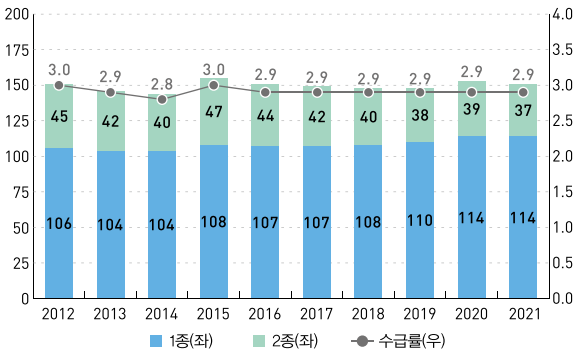
(단위: 만 명)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3. 인출)

그림 8-37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12~2021)

(단위: 만 명, %)



주: 수급률=총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수, 총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연말 기준 자료임.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3. 인출)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04.13. 인출)

표 8-28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2012~2021)

(단위: 만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보장	5,117	5,145	5,176	5,203	5,227	5,243	5,256	5,288	5,287	5,293
건강보험	4,966	4,999	5,032	5,049	5,076	5,094	5,107	5,139	5,134	5,141
직장	3,411	3,501	3,560	3,622	3,667	3,690	3,699	3,723	3,715	3,718
근로자	2,953	3,045	3,143	3,210	3,257	3,284	3,303	3,331	3,329	3,337
공무원 · 교직원	458	455	417	413	410	406	396	392	386	381
지역	1,556	1,498	1,471	1,427	1,409	1,404	1,408	1,416	1,420	1,423
의료급여	151	146	144	154	151	149	148	149	153	152
1종	106	104	104	108	107	107	108	110	114	114
2종	45	42	40	47	44	42	40	38	39	37

주: 1) 의료보장인구는 연도 말 기준으로, 통계청의 추계연앙인구와는 다를 수 있음.
2) 수치는 사사오입으로 인하여 항목별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21	1년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Number of priority caring programs recipients in near poor

지표 정의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사업 지원 대상자의 수. 지원 대상자는 기존 세대에서 별도 세대로 분리 후 보험료를 산정

측정 산식

•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수급 받은 자의 수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 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심 · 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 시 30일), 기본 식대의 20%

표 8-29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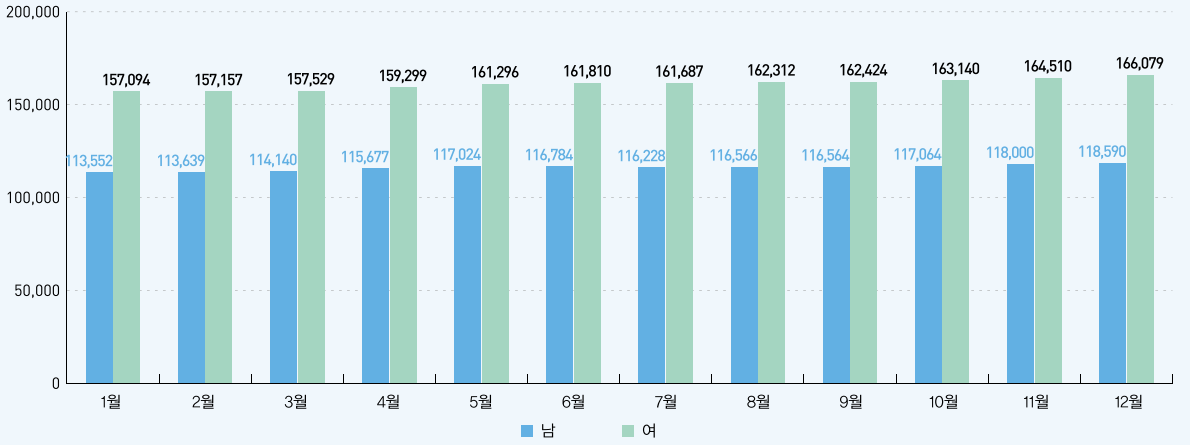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316,203	349,522	345,349	300,520	289,737	279,904	273,880	271,022	276,997	284,669

주: 각 연도 12월 기준

그림 8-38 월별 · 성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1	월

참고문헌 •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각 연도

표 8-30 월별 · 시도별 · 성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남	113,552	113,639	114,140	115,677	117,024	116,784	116,228	116,566	116,564	117,064	118,000	118,590
	여	157,094	157,157	157,529	159,299	161,296	161,810	161,687	162,312	162,424	163,140	164,510	166,079
	계	270,646	270,796	271,669	274,976	278,320	278,594	277,915	278,878	278,988	280,204	282,510	284,669
서울	남	18,245	18,327	18,460	18,614	18,820	18,789	18,783	18,881	18,852	18,930	19,093	19,128
	여	23,798	23,827	23,995	24,224	24,579	24,597	24,659	24,805	24,832	24,939	25,153	25,383
부산	남	7,653	7,680	7,781	7,952	8,109	8,187	8,252	8,295	8,321	8,386	8,485	8,610
	여	11,381	11,436	11,578	11,803	12,027	12,188	12,285	12,374	12,417	12,514	12,730	12,945
대구	남	7,721	7,700	7,682	7,812	7,975	7,881	7,803	7,810	7,787	7,817	7,874	7,893
	여	10,509	10,516	10,467	10,634	10,847	10,829	10,817	10,840	10,831	10,878	10,978	11,084
인천	남	6,056	6,085	6,146	6,243	6,342	6,481	6,472	6,536	6,578	6,620	6,704	6,759
	여	7,771	7,787	7,854	8,000	8,197	8,386	8,412	8,492	8,523	8,592	8,691	8,837
광주	남	5,333	5,354	5,385	5,461	5,499	5,448	5,385	5,357	5,338	5,347	5,367	5,372
	여	6,734	6,762	6,757	6,847	6,906	6,925	6,889	6,871	6,859	6,882	6,909	6,974
대전	남	3,626	3,619	3,613	3,659	3,716	3,721	3,695	3,691	3,689	3,697	3,707	3,726
	여	4,781	4,777	4,771	4,841	4,904	4,900	4,896	4,907	4,887	4,889	4,917	4,933
울산	남	1,718	1,730	1,775	1,775	1,789	1,765	1,756	1,767	1,758	1,760	1,801	1,814
	여	2,110	2,141	2,169	2,200	2,237	2,217	2,230	2,253	2,262	2,266	2,294	2,320
세종	남	438	427	423	423	425	414	408	411	406	407	413	417
	여	573	567	564	559	560	547	540	553	559	560	562	557
경기	남	20,811	20,821	20,866	21,185	21,406	21,472	21,222	21,355	21,391	21,526	21,708	21,835
	여	26,722	26,773	26,803	27,173	27,433	27,592	27,384	27,532	27,614	27,814	28,049	28,226
강원	남	4,220	4,215	4,222	4,248	4,268	4,235	4,216	4,250	4,249	4,239	4,280	4,309
	여	6,213	6,228	6,247	6,294	6,359	6,357	6,324	6,316	6,315	6,318	6,357	6,436
충북	남	3,271	3,286	3,316	3,382	3,416	3,379	3,351	3,373	3,378	3,380	3,384	3,387
	여	4,734	4,728	4,718	4,770	4,844	4,841	4,854	4,883	4,891	4,888	4,923	4,926
충남	남	3,095	3,085	3,123	3,143	3,184	3,191	3,206	3,207	3,189	3,190	3,207	3,242
	여	4,626	4,618	4,620	4,647	4,702	4,726	4,734	4,745	4,738	4,755	4,780	4,819
전북	남	9,237	9,229	9,245	9,399	9,467	9,309	9,276	9,236	9,219	9,254	9,263	9,258
	여	13,742	13,652	13,608	13,678	13,729	13,647	13,592	13,583	13,554	13,589	13,602	13,716
전남	남	6,733	6,680	6,649	6,702	6,745	6,731	6,635	6,621	6,583	6,590	6,612	6,620
	여	11,330	11,194	11,105	11,147	11,209	11,236	11,120	11,125	11,084	11,094	11,199	11,282
경북	남	6,174	6,174	6,105	6,135	6,160	6,169	6,150	6,138	6,138	6,166	6,208	6,274
	여	9,636	9,666	9,642	9,692	9,759	9,821	9,874	9,890	9,885	9,907	10,001	10,141
경남	남	7,124	7,156	7,247	7,382	7,507	7,404	7,433	7,455	7,500	7,544	7,675	7,725
	여	9,890	9,939	10,058	10,178	10,343	10,333	10,421	10,456	10,480	10,558	10,645	10,771
제주	남	2,097	2,071	2,102	2,162	2,196	2,208	2,185	2,183	2,188	2,211	2,219	2,221
	여	2,544	2,546	2,573	2,612	2,661	2,668	2,656	2,687	2,693	2,697	2,720	2,729

15
대 표

의사 수

Number of physician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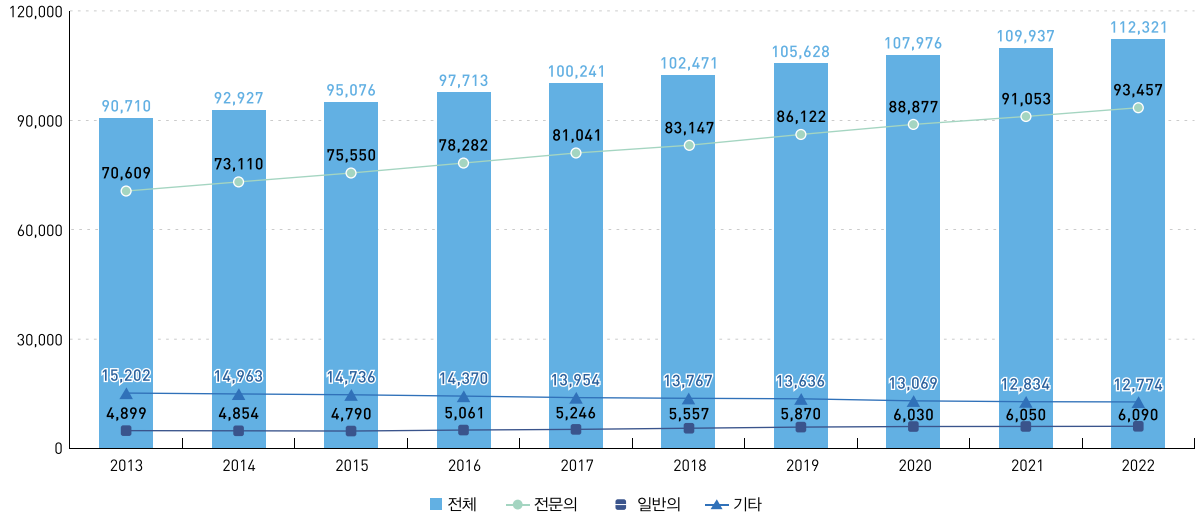
의료법 제2조에 의거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사의 수이다. 여기에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주요 업무로 하는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까지를 포함하며, 치과의사와 한방의사는 제외한다.

측정 산식

• 요양기관이 신고한 상근 의사 수

그림 8-39 의사 수 (2013~2022)

(단위: 명)



주: 1) 연도 말 기준임.
2) 인턴과 레지던트는 기타로 분류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22	1년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행정안전부, 2022 주민등록인구통계, 2023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표 8-31 시도별 의사 수 (2022)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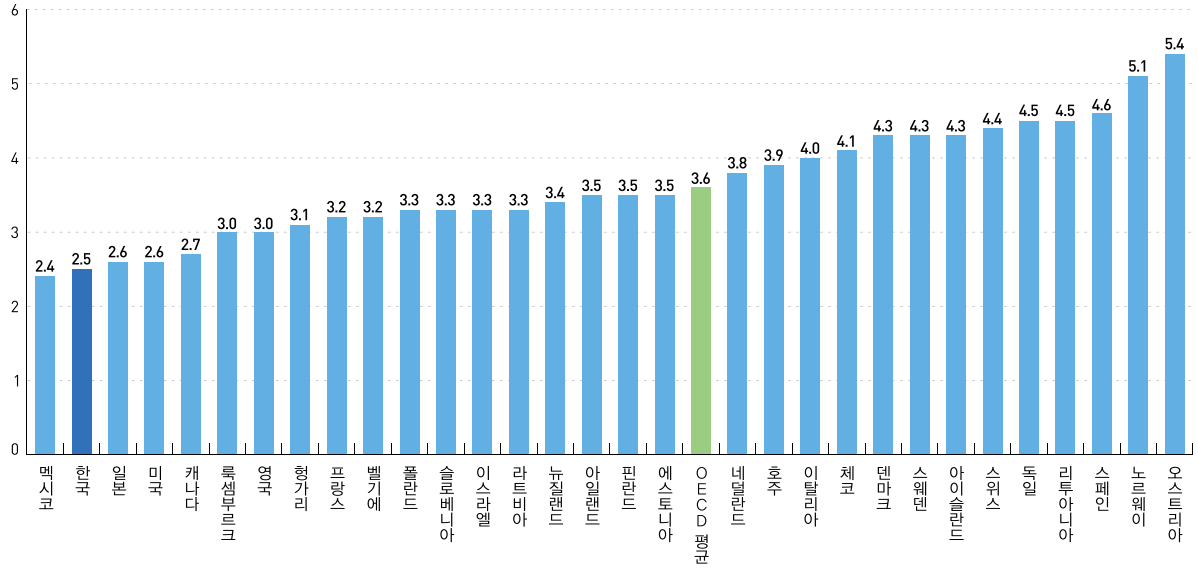
구분	의사 수[1]				인구 천 명당 의사 수[2]			
	전체	전문의	일반의	기타[3]	전체	전문의	일반의	기타[3]
전국	112,321	93,457	6,090	12,774	2.2	1.8	0.1	0.2
서울	32,704	25,806	1,362	5,536	3.5	2.7	0.1	0.6
부산	8,356	7,100	377	879	2.5	2.1	0.1	0.3
대구	6,192	5,180	191	821	2.6	2.2	0.1	0.3
인천	5,375	4,554	276	545	1.8	1.5	0.1	0.2
광주	3,751	3,186	157	408	2.6	2.2	0.1	0.3
대전	3,773	3,066	184	523	2.6	2.1	0.1	0.4
울산	1,808	1,588	103	117	1.6	1.4	0.1	0.1
세종	496	464	32	-	1.3	1.2	0.1	0.0
경기	23,893	20,719	1,088	2,086	1.8	1.5	0.1	0.2
강원	2,778	2,228	204	346	1.8	1.5	0.1	0.2
충북	2,542	2,171	224	147	1.6	1.4	0.1	0.1
충남	3,242	2,673	321	248	1.5	1.3	0.2	0.1
전북	3,694	2,998	302	394	2.1	1.7	0.2	0.2
전남	3,172	2,615	418	139	1.7	1.4	0.2	0.1
경북	3,615	3,168	380	67	1.4	1.2	0.1	0.0
경남	5,716	4,891	395	430	1.7	1.5	0.1	0.1
제주	1,214	1,050	76	88	1.8	1.5	0.1	0.1

주: 1) OECD에서 발표하는 의사 수와의 차이는 한의사의 포함 여부에 따름. OECD는 한의사를 의사 항목에 포함하여 집계함.
2)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행정안전부의 연말 기준 '총인구' 대비 '요양기관 종사 의사 수'를 의미함.
3) 인턴과 레지던트는 기타로 분류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 2023 (http://kosis.kr에서 2023.04.13.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3 (http://jumin.mois.go.kr에서 2023.04.13. 인출)

그림 8-40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천 명당)



주: 2020년도 기준이며, 폴란드, 미국, 덴마크, 스웨덴은 2019년, 핀란드는 2018년, 룩셈부르크는 2017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13. 인출)

15-1 연 관

면허의료인 수

Number of licensed health care workers

지표 정의

주요 의료 인력의 해당 분야 면허인 수이다. 주요 의료 인력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가 해당된다.

측정 산식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 수

표 8-32 연도별 · 성별 면허의료인 현황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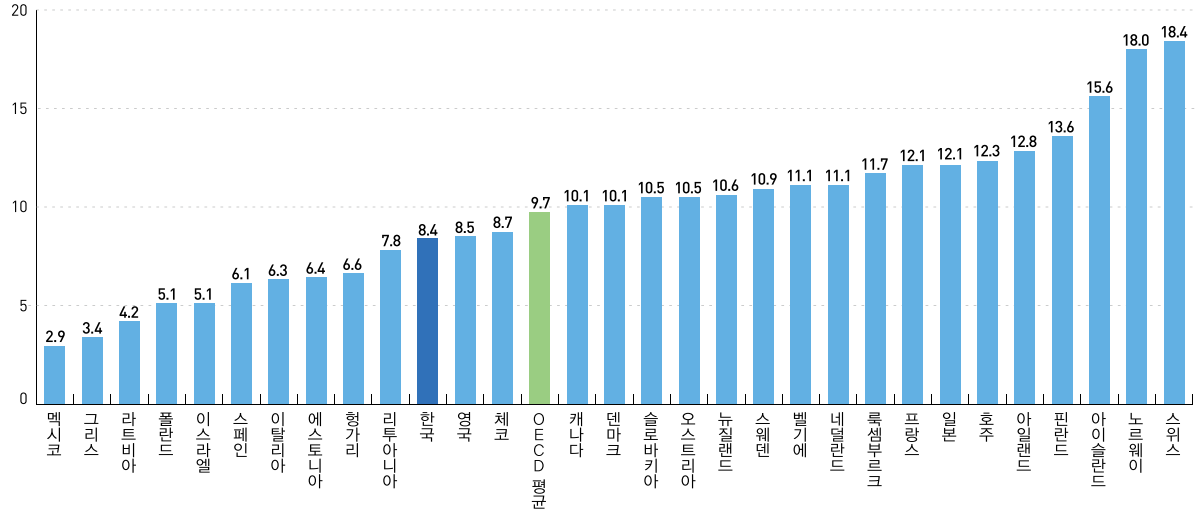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1	2016	2021	2011년 대비 2021년(%)	2011	2016	2021	2011년 대비 2021년(%)	2011	2016	2021	2011년 대비 2021년(%)
의사[1)]	104,397	118,765	132,065	26.5	80,411	88,962	96,736	20.3	23,986	29,803	35,329	47.3
치과의사[1)]	26,098	29,643	33,036	26.6	19,418	21,690	23,818	22.7	6,680	7,953	9,218	38.0
한의사[1)]	19,912	23,460	26,807	34.6	16,441	18,594	20,549	25.0	3,471	4,866	6,258	80.3
약사[1)]	62,245	66,992	73,948	18.8	22,418	24,118	26,072	16.3	39,827	42,874	47,876	20.2
간호사	282,656	355,772	457,849	62.0	-	-	-	-	-	-	-	-

주: 1)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 한약사를 포함함.
2) 사망자(말소자 포함)는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2022 (https://www.mohw.go.kr에서 2023.04.14. 인출)

그림 8-41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 수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천 명당)



주: 2020년도 기준으로, 아일랜드 2021년,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은 2019년, 벨기에, 핀란드는 2018년, 룩셈부르크, 폴란드는 2017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1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	1988	2022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2022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16 대 표

병상 수

Number of inpatient care beds

지표 정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의 전체 병상 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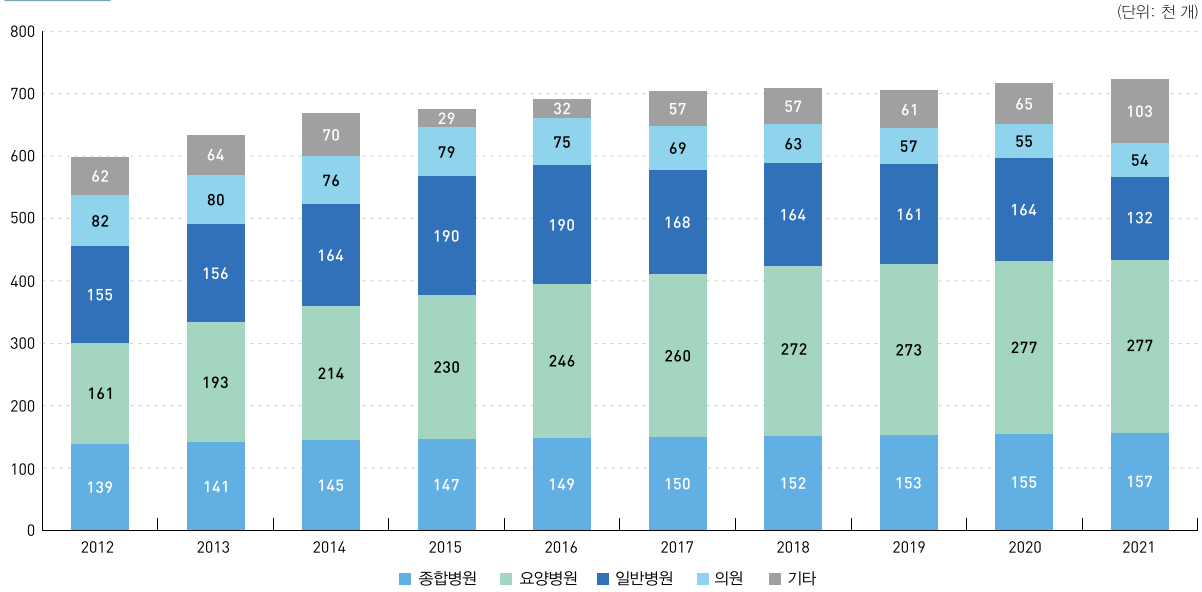
- 병상 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자원을 보여준다. 연도별 추이, 지역별 병상 현황을 관찰함으로써 병상 수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측정 산식

- **등록 병상 수**

유의사항 우리나라 병상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신고 병상 자료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등록 병상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OECD Health Statistics의 작성은 등록 병상 자료에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등록 병상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림 8-42 의료기관 종류별 병상 수 (2012~2021)



주: 기타에는 특수병원, 치과 병 · 의원, 한방 병 · 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2022 (https://www.mohw.go.kr에서 2023.04.1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	1988	2021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2022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표 8-33 시도별 · 의료기관 종류별 병상 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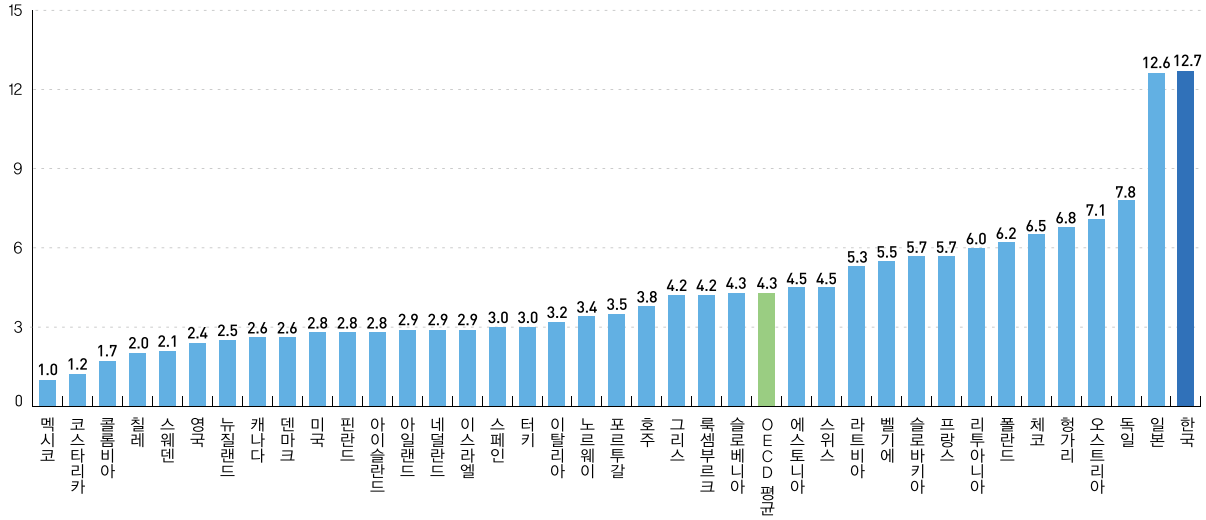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병상 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1]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기타[2]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기타[2]
전국	722,813	156,783	276,654	132,060	54,141	103,175	14.0	3.0	5.4	2.6	1.0	2.0
서울	91,773	33,806	22,513	16,782	9,455	9,217	9.7	3.6	2.4	1.8	1.0	1.0
부산	70,729	12,587	33,345	13,442	3,530	7,825	21.1	3.8	10.0	4.0	1.1	2.3
대구	39,753	8,585	13,704	9,593	2,817	5,054	16.7	3.6	5.7	4.0	1.2	2.1
인천	36,278	8,410	12,608	5,244	3,611	6,405	12.3	2.9	4.3	1.8	1.2	2.2
광주	39,375	7,601	14,480	7,648	2,174	7,472	27.3	5.3	10.0	5.3	1.5	5.2
대전	23,749	5,266	8,896	4,541	2,394	2,652	16.4	3.6	6.1	3.1	1.6	1.8
울산	15,469	3,298	6,945	2,358	1,046	1,822	13.8	2.9	6.2	2.1	0.9	1.6
세종	2,082	599	692	73	348	370	5.6	1.6	1.9	0.2	0.9	1.0
경기	141,343	27,190	55,479	25,690	11,909	21,075	10.4	2.0	4.1	1.9	0.9	1.6
강원	17,498	5,363	4,206	4,064	1,674	2,191	11.4	3.5	2.7	2.6	1.1	1.4
충북	21,693	4,724	6,769	3,970	2,264	3,966	13.6	3.0	4.2	2.5	1.4	2.5
충남	29,058	5,502	11,937	4,026	2,423	5,170	13.7	2.6	5.6	1.9	1.1	2.4
전북	39,714	5,875	18,829	5,947	3,166	5,897	22.2	3.3	10.5	3.3	1.8	3.3
전남	41,256	8,086	17,378	7,920	2,117	5,755	22.5	4.4	9.5	4.3	1.2	3.1
경북	43,320	7,733	20,770	5,799	1,967	7,051	16.5	2.9	7.9	2.2	0.7	2.7
경남	64,633	9,858	26,793	14,154	2,925	10,903	19.5	3.0	8.1	4.3	0.9	3.3
제주	5,090	2,300	1,310	809	321	350	7.5	3.4	1.9	1.2	0.5	0.5

주: 1)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행정안전부의 연말기준 '총인구' 대비 요양기관별 '병상 수'를 의미함.
2) 기타에는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2022 (https://www.mohw.go.kr에서 2023.04.14. 인출)

그림 8-43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병원 병상 수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개, 인구 천 명당)



주: 1) OECD 통계에는 병원급만 포함됨. 따라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은 제외됨.
2) 2020년도 기준이며, 그리스, 미국은 2019년, 호주는 2016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14. 인출)

16-1
연 관

의료기관 수

Number of healthcare providers

지표 정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등록된 수이다.

측정 산식

• 등록 기관 수

표 8-34 시도별 의료기관 현황 (2021)

(단위: 개)

시도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조산원	기타
전국	71,422	365	1,467	1,394	33,818	18,816	15,036	16	510
서울	18,320	56	124	222	9,168	4,950	3,713	3	84
부산	5,325	28	169	136	2,466	1,332	1,160	1	33
대구	3,898	18	74	88	1,883	918	893	0	24
인천	3,474	20	67	56	1,633	966	709	1	22
광주	2,200	24	59	84	968	649	401	0	15
대전	2,307	10	48	46	1,110	551	522	1	19
울산	1,382	9	41	33	610	392	280	0	17
세종	390	2	5	1	194	97	83	0	8
경기	16,114	67	320	277	7,478	4,521	3,349	6	96
강원	1,691	15	34	37	785	423	382	0	15
충북	1,901	13	42	37	906	462	421	1	19
충남	2,351	13	67	46	1,083	587	523	0	32
전북	2,491	13	84	64	1,178	596	542	0	14
전남	2,056	25	82	72	955	503	397	0	22
경북	2,833	20	113	55	1,265	690	642	1	47
경남	3,772	26	129	133	1,673	949	823	1	38
제주	917	6	9	7	463	230	196	1	5

주: 1) 연도 말 기준임.
2) 병원에는 특수병원(결핵, 한센, 정신) 포함, 의원에는 산업체 부속의원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2022 (https://www.mohw.go.kr에서 2023.04.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	1988	2021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2022

17 대 표

GDP 대비 경상의료비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as % GDP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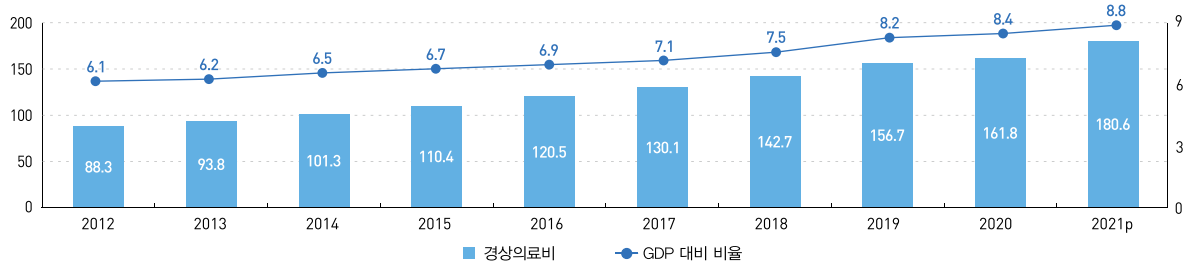
GDP에서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경상의료비는 국민 전체가 1년간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최종 소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료서비스와 집합보건의료서비스(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보건행정관리)에 대한 정부 · 의무가입제도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경상의료비}}{\text{GDP}} \times 100$

그림 8-44 경상의료비 (2012~202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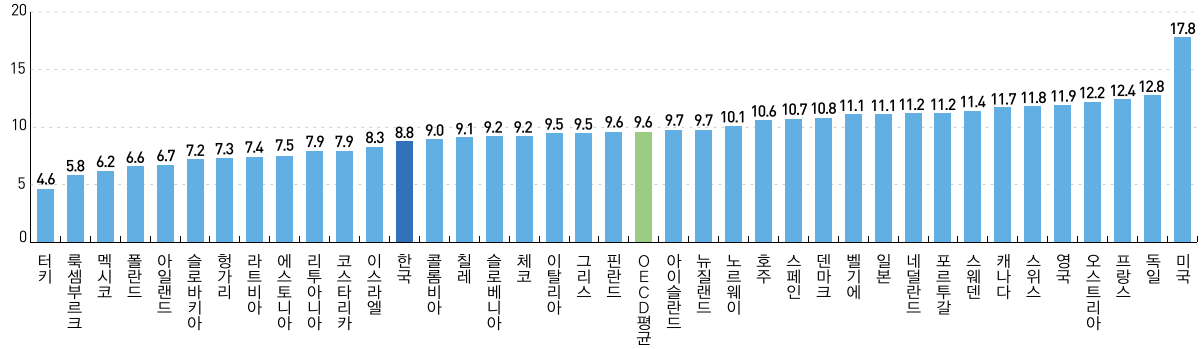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주: 2021p는 2021년 잠정치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그림 8-45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2021p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주: 1) 2021p 기준이며, 호주, 벨기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는 2020년이 비교됨.
2) 2021p는 2021년 잠정치를 의미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1970	2021p*	1년

* 잠정치임. OECD는 의료비 통계의 시의성과 정책 활용성을 높이고자 2021년 OECD 통계 포털(stats.oecd.org)에 2019년 확정치와 함께 2020년 잠정치를 함께 발표함. 우리나라는 OECD에 공표된 자료를 통계청 통계 포털(http://kosis.kr)에서도 함께 제시함.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 보건계정의 신 매뉴얼인 'SHA2011'에서는 의료비 총량지의 대표 지표로 국민의료비 대신 경상의료비를 사용하기로 정하고 있음. OECD는 Health Statistics 2015(2015.7. 발표)부터 이러한 방침을 국제비교 시에 적용함. 국민의료비는 경상의료비와 고정자본형성을 더한 것으로, 2000년대 초반 보건계정이 시작된 이후 2015년까지 보건의료비용의 대표 지표로 사용됐음.

** OECD Health Statistics 2016의 산출 기준이 되는 SHA2011에서는 재원 구분을 크게 정부 · 의무가입제도와 민간재원으로 구분함. 정부 · 의무가입제도는 기존 매뉴얼(SHA1.0)에서의 공공재원과 민영사회보험인 '자동차보험'을 더한 개념임.

17-1
연 관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Out-of-pocket expenditure, as % of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지표 정의

경상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에서 가계직접부담은 의료이용 시 이용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본인부담의 합으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frac{\text{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총합}}{\text{경상의료비}} \times 100$$

표 8-35 연도별 경상의료비 재원구성 (1981~2021p)

(단위: 십억 원, %)

연도	경상의료비	정부 · 의무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 및 가계직접부담			
		정부	의무가입 (건강)보험	임의가입 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
1981	1,774	116	237	-	10	7	1,404
	(100.0)	(6.5)	(13.4)		(0.6)	(0.4)	(79.1)
1991	8,409	599	2,566	-	62	21	5,161
	(100.0)	(7.1)	(30.5)		(0.7)	(0.3)	(61.4)
2001	31,304	3,194	15,155	442	195	45	12,273
	(100.0)	(10.2)	(48.4)	(1.4)	(0.6)	(0.1)	(39.2)
2011	83,454	9,153	40,945	4,136	607	118	28,495
	(100.0)	(11.0)	(49.1)	(5.0)	(0.7)	(0.1)	34.1)
2021p	180,609	29,264	87,706	13,791	1,627	247	47,974
	(100.0)	(16.2)	(48.6)	(7.6)	(0.9)	(0.1)	(26.6)

주: 2021p는 2021년 잠정치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1980	2021p*	1년

* 잠정치임. OECD는 의료비 통계의 시의성과 정책 활용성을 높이고자 2022년 OECD 통계 포털(stats.oecd.org)에 2020년 확정치와 함께 2021년 잠정치를 함께 발표함. 우리나라는 OECD에 공표된 자료를 통계청 통계 포털(http://kosis.kr)에서도 함께 제시함.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외, 국민보건계정, 각 연도

17-2
연 관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

Pharmaceuticals and other medical non-durables expenditure, as % of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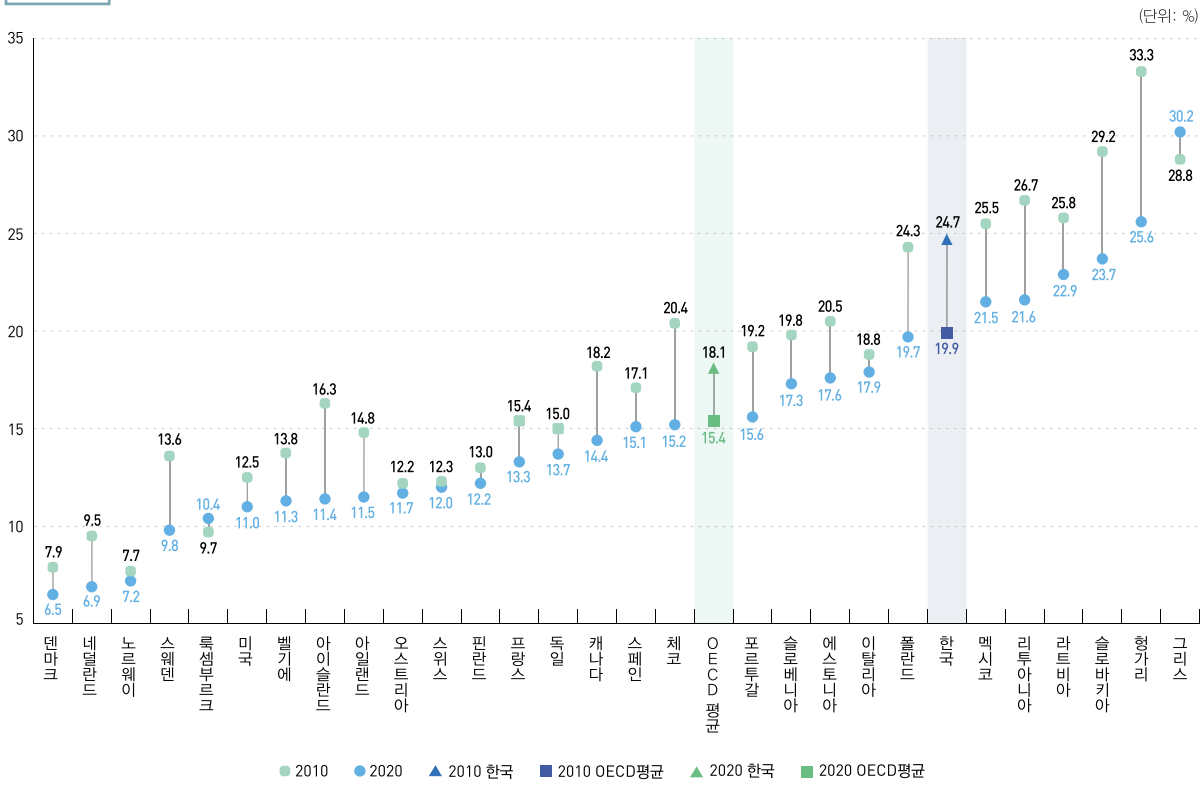
지표 정의

경상의료비 중에서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에서 의약품은 처방의약품과 비처방의약품으로, 의료용 소모품은 반창고, 요실금용품, 피임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총합}}{\text{경상의료비}} \times 100$

그림 8-46 OECD 국가의 연도별 의약품 및 의료용소모품비의 비중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4.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1970	2020	1년

* OECD는 의료비 통계의 시의성과 정책 활용성을 높이고자 2022년 OECD 통계 포털(stats.oecd.org)에 2020년 확정치와 함께 2021년 잠정치를 함께 발표하는 가운데, 기능별, 공급자별 세부 항목까지 잠정치 생산을 권고하지만, 강제하지는 않음. 의료비의 기능별, 공급자별 세부 수치의 잠정치를 생산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뿐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2022

17-3
연 관

건강보험 급여비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amount

지표 정의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든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다. 이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합이며, 현물급여는 요양급여(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분 포함), 건강진단비로,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비,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분, 임신출산 진료비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 현물급여 + 현금급여

표 8-36 건강보험 급여비 (2012~2021)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7,334	39,862	42,586	45,730	50,891	54,625	61,670	68,456	69,351	74,607
현물급여 (비중)	36,674 (98.2)	39,123 (98.1)	41,899 (98.4)	44,582 (97.5)	49,705 (97.7)	53,322 (97.6)	60,141 (97.5)	66,571 (97.3)	67,103 (96.8)	71,992 (96.5)
현금급여 (비중)	660 (1.8)	739 (1.9)	687 (1.6)	1,148 (2.5)	1,185 (2.3)	1,303 (2.4)	1,528 (2.5)	1,885 (2.7)	2,248 (3.2)	2,614 (3.5)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2005	2021	1년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17-4
연 관

건강보험 보장률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지표 정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치료 목적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발생하는 전체 의료비(보험자 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단, 건강보험 보장률에 있어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미용성형수술, 집단검진, 개별검진, 시력 교정술, 예방접종, 기타 예방진료, 임플란트*, 미용목적의 보철 · 교정, 건강증진 목적의 한약첩약,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한 건강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급여 항목만을 포함한 것이다.

* 2006~2013 보장률은 임플란트 전체를 미포함, 2014년 보장률은 75세 이상 임플란트를 포함, 2015년 보장률은 70세 이상 임플란트를 포함, 2016년 보장률은 65세 이상 임플란트를 포함함. 이와 같이 급여 확대에 따라 포함 항목이 시계열적으로 일관되지 않음.

측정 산식

- $\dfrac{\text{보험자부담금}}{\text{전체 의료비 (보험자 부담금 + 법정 본인 부담금 + 비급여 본인 부담금)}} \times 100$

표 8-37 건강보험 보장률 (2012~2021)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현금급여 포함	62.5	62.0	63.2	63.4	62.6	62.7	63.8	64.2	65.3	64.5

주: 현금급여를 제외한 경우는 2011년 이후 발표되지 않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2.01.2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05	2021	1년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

9

보육 및 교육

0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0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03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0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05 학교급별 취학률
06 학급당 학생 수
07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08 교원 1인당 학생 수
09 학생 1인당 사교육비
10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11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12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13 고등교육 이수율
14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교육의 질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학교급별 취학률	
	학급당 학생 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교육 기회보장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01
대 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Number of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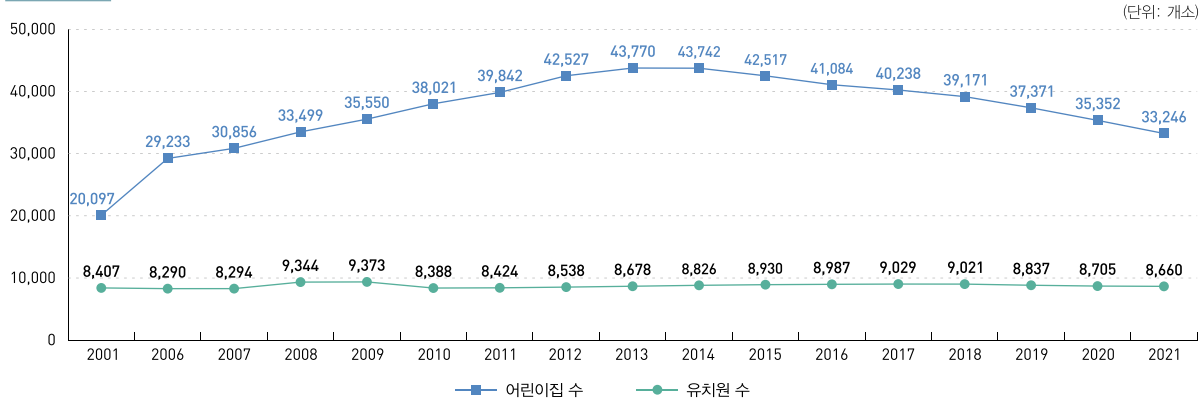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정의되며,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 운영되는 학교로 유아교육법에 의해 정의된다. 본 지표는 각각의 기관의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어린이집 수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7개 유형 어린이집 수
- 유치원 수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수

그림 9-1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 (200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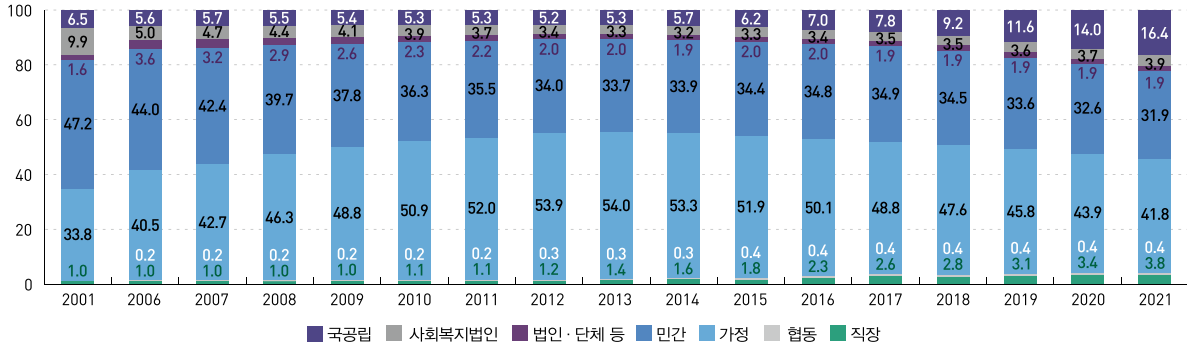
(단위: 개소)



자료: 1)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8. 인출)
2)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4.18. 인출)

그림 9-2 전국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비중 (2001~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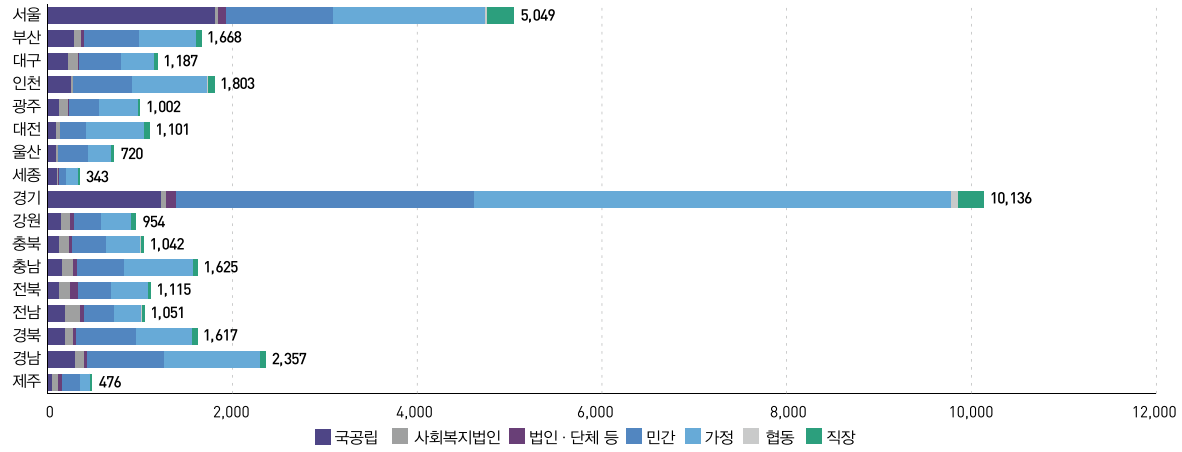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0	2021	1년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21	1년

그림 9-3 시도별 ·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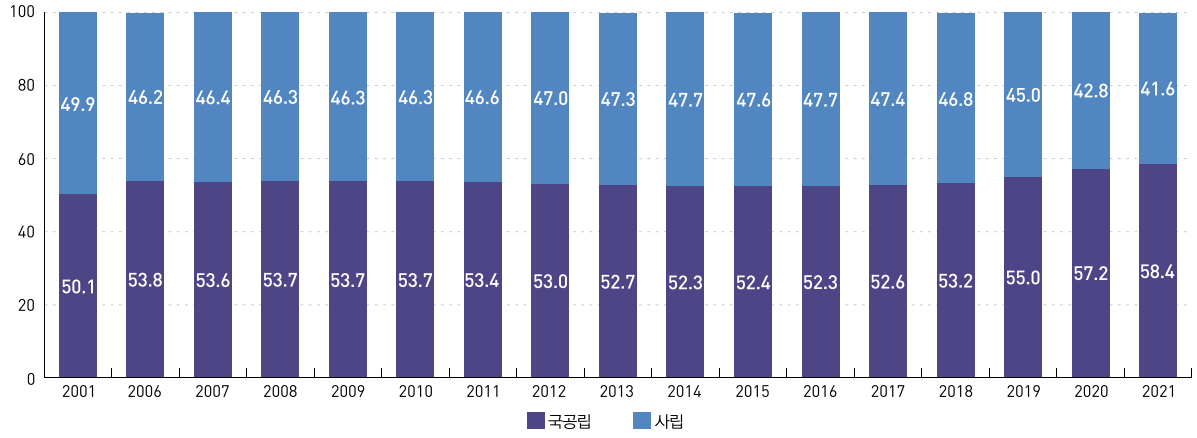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통계, 2021 (http://www.mohw.go.kr에서 2023.04.18. 인출)

그림 9-4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분포 (200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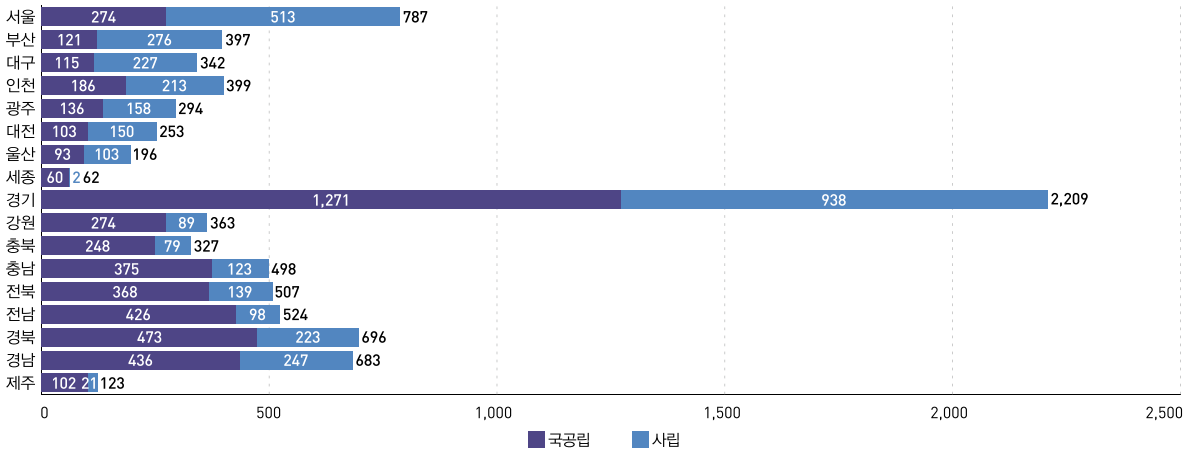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4.18. 인출)

그림 9-5 시도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수 (2021)

(단위: 개소)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22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4.24. 인출)

02
대 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to-5 year-olds

지표 정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해당 연령의 아동 수 대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유아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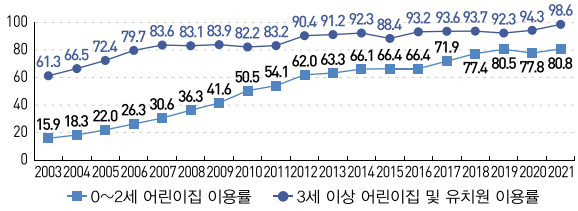
측정 산식

- 0~2세 이용률 = $\frac{\text{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수 (보육아동 수)}}{\text{전체 0~2세 아동 수}} \times 100$
- 3세 이상 이용률 = $\frac{\text{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3세 이상 아동 수}}{\text{전체 3~5세 아동 수}} \times 100$

유의사항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와 주민등록 인구 현황은 연말 기준이나 교육기본통계는 4월 1일 기준으로 시점이 다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0~2세 이용률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만 2세 보육아동 수를 기준으로 한다. 만 3세 이상 이용률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게 공통으로 제공되는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원 수 총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즉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이상 유아의 총합을 기준으로 산출함에 유의한다.

그림 9-6 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0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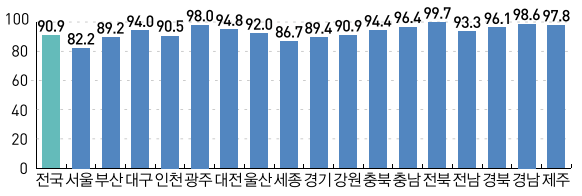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http://www.mohw.go.kr에서 2023.04.25. 인출)
2)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4.25. 인출)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04.25. 인출)

그림 9-7 시도별 0~5세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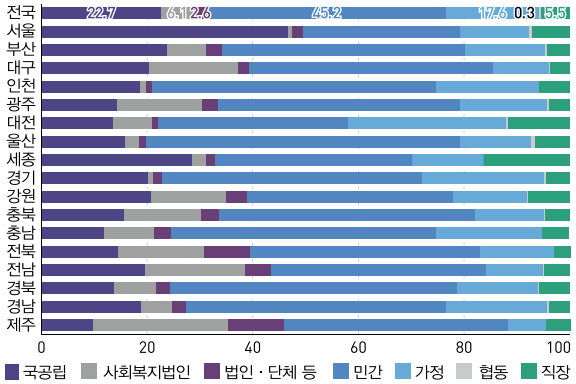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통계, 2021 (http://www.mohw.go.kr에서 2023.04.25. 인출)
2)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21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4.25. 인출)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21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04.25. 인출)

그림 9-8 시도별 어린이집 설립 주체 유형에 따른 이용 비중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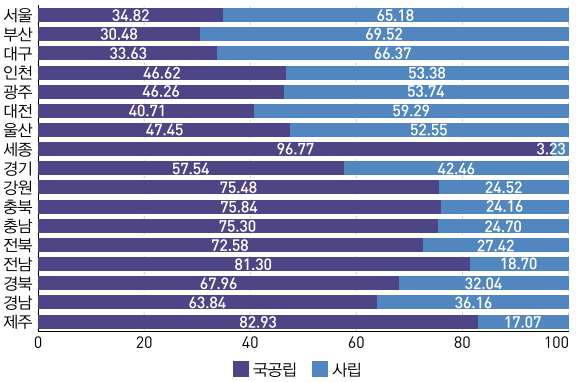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통계, 2021 (http://www.mohw.go.kr에서 2023.04.25. 인출)

그림 9-9 시도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이용 비중 (2021)

(단위: %)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21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4.2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0	2021	1년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21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08	2021	1개월

03
대 표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 home care allowance

지표 정의

가정 양육수당은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이 포함되며,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이다. 본 지표는 전체 양육수당 수급 아동 수를 의미한다.

• 2021년 기준 연령별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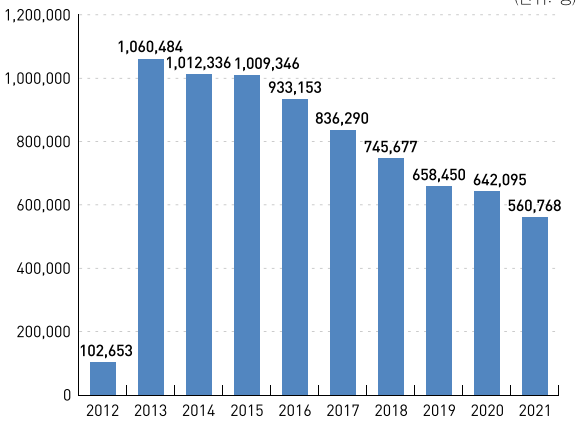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 원	0~11	200천 원	0~35	200천 원
12~23	150천 원	12~23	177천 원		
24~35	100천 원	24~35	156천 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 원	36~47	129천 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 원
	100천 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 원		
	100천 원		100천 원		
	100천 원		100천 원		

측정 산식

• 0~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수급자 수

그림 9-10 양육수당 수급자 수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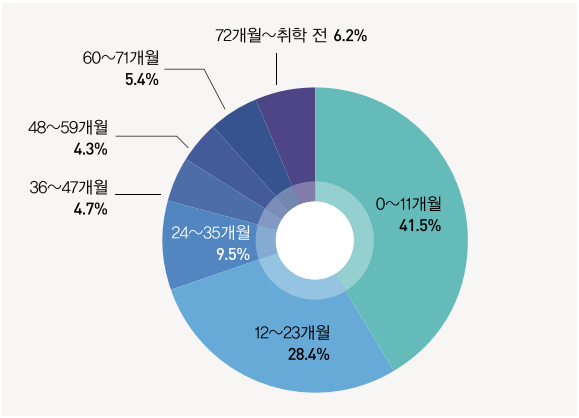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http://www.mohw.go.kr에서 2023.04.25. 인출)

그림 9-11 연령별 양육수당 수급 비중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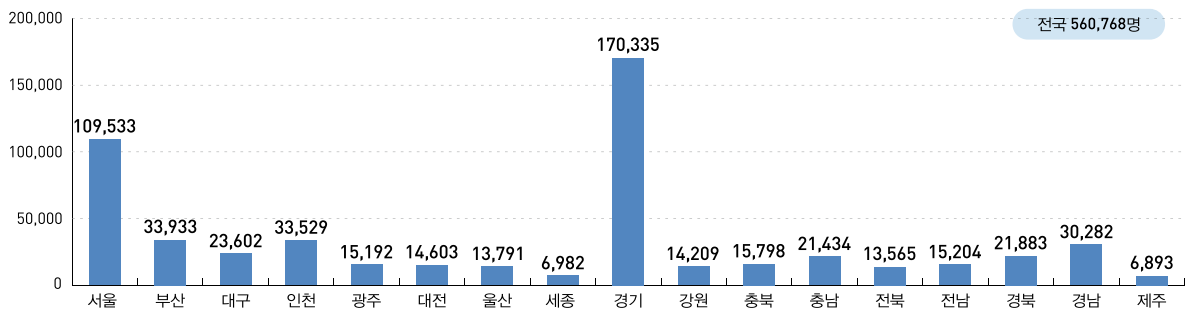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통계, 2021 (http://www.mohw.go.kr에서 2023.04.25. 인출)

그림 9-12 시도별 양육수당 수급자 수 (2021)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보육통계, 2021 (http://www.mohw.go.kr에서 2023.04.2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4	2021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08	2021	1개월

03-1
연 관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 home care benefit

지표 정의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신청일 기준)에 대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현금성 급여이다. 단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등록장애인인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측정 산식

- 월령별로 다음과 같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은 아동 수 (2021년 기준)
 - ※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월 200천 원, 12~24개월 미만 월 150천 원, 24~86개월 미만 월 100천 원
 - ※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200천 원, 12~24개월 미만 177천 원, 24~36개월 미만 156천 원, 36~48개월 미만 129천 원, 48~86개월 미만 100천 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36개월 미만 200천 원, 36~86개월 미만 100천 원

표 9-1 성별 가정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2021)

(단위: 명)

구분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계
합계	남성	306,636	828	1,327	308,791
	여성	295,897	667	1,278	297,842
	전체	602,533	1,495	2,605	606,633

표 9-2 시도별 가정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2021)

(단위: 명)

시도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계
전국	602,533	1,495	2,605	606,633
서울	121,476	279	0	121,755
부산	36,665	114	14	36,793
대구	25,078	68	14	25,160
인천	36,080	76	24	36,180
광주	15,781	37	5	15,823
대전	15,658	68	0	15,726
울산	14,430	23	3	14,456
세종	7,387	17	10	7,414
경기	184,458	462	134	185,054
강원	15,053	26	118	15,197
충북	16,678	32	104	16,814
충남	22,434	61	258	22,753
전북	14,125	33	317	14,475
전남	15,362	28	621	16,011
경북	22,985	56	433	23,474
경남	31,921	97	248	32,266
제주	6,962	18	302	7,28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양육수당 지원 아동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1	월

표 9-3 월별 ·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및 지원금액 (2021)

(단위: 건수, 천 원)

구분	0~1세 미만		1세 이상~2세 미만		2세 이상~3세 미만		3세 이상		계	
	지원 수	지원금액	지원 수	지원금액	지원 수	지원금액	지원 수	지원금액	지원 수	지원금액
1월	237,858	51,201,300	195,556	29,369,123	73,136	7,324,956	194,189	19,457,225	700,739	107,352,604
2월	239,741	52,261,950	200,804	30,157,973	80,166	8,032,700	214,419	21,510,050	735,130	111,962,673
3월	218,334	42,367,800	116,848	17,376,150	37,238	5,659,350	88,332	8,843,200	460,752	74,246,500
4월	221,114	42,768,800	119,385	17,684,100	37,063	5,644,100	91,374	9,018,200	468,936	75,115,200
5월	235,670	44,534,350	113,824	16,757,000	35,521	5,506,450	94,586	9,525,400	479,601	76,323,200
6월	227,290	43,888,950	128,340	18,778,350	39,565	5,849,050	95,332	9,290,950	490,527	77,807,300
7월	227,143	43,216,550	133,341	19,391,550	41,337	5,997,350	98,196	9,504,500	500,017	78,109,950
8월	229,355	43,963,450	139,941	20,195,000	43,911	6,215,450	103,367	9,919,550	516,574	80,293,450
9월	227,494	43,498,400	143,986	20,661,950	45,301	6,329,655	105,498	10,043,252	522,279	80,533,257
10월	229,241	44,117,250	147,581	21,089,200	47,342	6,503,350	108,223	10,242,352	532,387	81,952,152
11월	232,761	44,508,400	151,633	21,590,850	49,394	6,684,950	110,669	10,441,592	544,457	83,225,792
12월	231,727	43,692,600	157,981	22,365,650	52,666	6,964,500	114,425	10,773,502	556,799	83,796,252

04 대 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Number of prim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after-school care programs

지표 정의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는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년별 학생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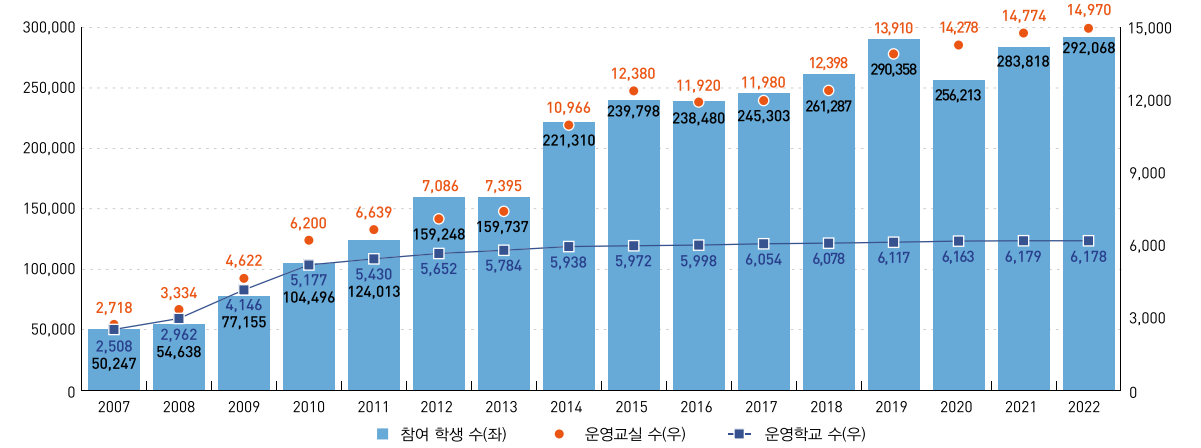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여건에 따라 오전 또는 저녁시간에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측정 산식

-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 교실 수,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

그림 9-13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 (2007~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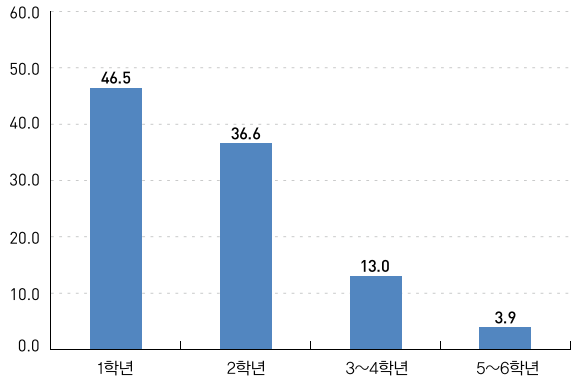
(단위: 명, 교, 개)



자료: 교육부,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9-14 학년별 초등 돌봄교실 참여 현황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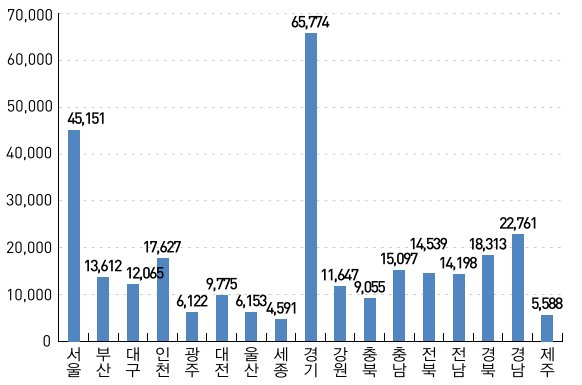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내부자료), 2023

그림 9-15 시도별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현황 (2022)

(단위: 명)



자료: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내부자료), 2023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내부자료)	2007	2022	1년

05
대 표

학교급별 취학률

Enrollment rates by school level

지표 정의

학교급별 취학률은 초 · 중 · 고 취학적령인구 대비 해당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취학적령은 초등학교(만 6~11세), 중학교(만 12~14세), 고등학교(만 15~17세)로 구분된다.

측정 산식

$$\text{취학적령의 재적 학생 수} \div \text{취학적령인구} \times 100$$

유의사항 • OECD 교육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연령별 취학률(연령별 학생 수/연령별 인구수)을 산출하고 있으며, 연령은 6~14세 및 15~19세로 구분된다.

표 9-4 연도별 · 학교급별 취학률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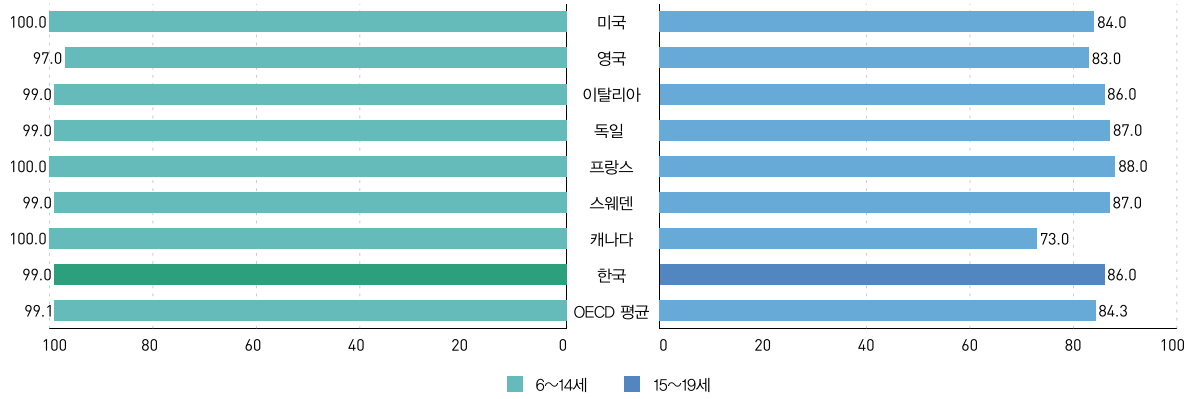
(단위: %)

학교급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초등학교	98.5	97.3	96.7	99.1	98.6	97.6	97.7	98.6	98.2	98.1	98.5
중학교	95.6	95.7	96.4	95.3	94.3	94.3	98.0	96.7	95.3	97.4	98.2
고등학교	92.2	92.5	93.2	92.5	93.1	93.8	92.4	91.4	90.8	95.7	94.5

주: 1) 취학률(%) = 취학적령의 학생 수 / 취학적령인구 X 100
2) 취학적령 : 초등학교(만 6~11세), 중학교(만 12~14세), 고등학교(만 15~17세)
자료: 교육부, 2022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2022 (https://www.moe.go.kr에서 2023.05.15. 인출)

그림 9-16 OECD 주요국의 연령별 취학률 (2020)

(단위: %)



주: 1) 캐나다는 중등 후 비고등교육은 제외됨.
2) 6~14세의 연령 자료에는 초등교육에 취학 중인 14세 초과 아동이 포함됨.
3) 기준연도는 2019년임.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22, 2022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5.0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22	1년

06 대 표

학급당 학생 수

Average class siz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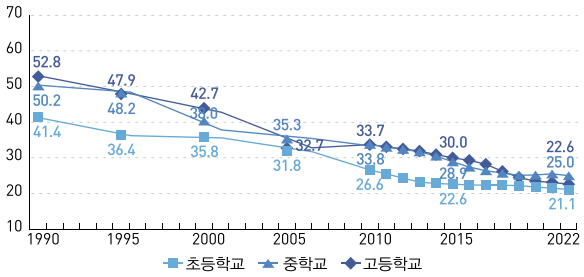
학급당 학생 수는 초 · 중 · 고 학교급별로 전체 학급 수 대비 재적하고 있는 학생 수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급별로 한 학급당 평균적으로 배정된 학생 수를 의미하며, 교육여건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에 해당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총 재적 학생 수}}{\text{총 학급 수}}$ (단위: 명)

그림 9-17 연도별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단위: 명)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5.09. 인출)

표 9-5 지역규모별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22)

(단위: 명)

지역규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1.1	25.0	22.6
대도시	21.5	24.6	22.3
중소도시	23.3	27.2	23.7
읍 · 면지역	16.9	21.3	20.9
도서벽지	8.0	14.2	16.7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2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2022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5.10. 인출)

표 9-6 시도별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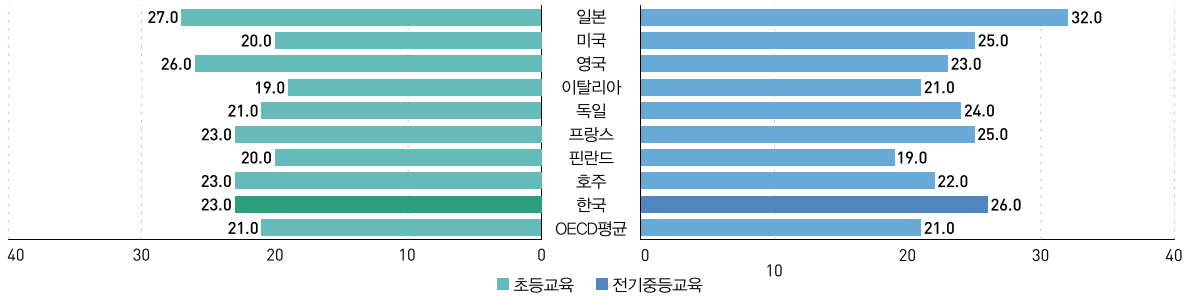
(단위: 명)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21.4	24.2	22.9
부산	21.8	24.6	20.4
대구	22.2	23.8	22.0
인천	22.0	26.3	22.6
광주	20.9	24.2	23.9
대전	20.0	24.5	21.3
울산	21.4	25.0	22.3
세종	20.3	23.0	22.7
경기	23.4	27.7	24.4
강원	16.8	23.1	20.9
충북	19.2	23.3	22.9
충남	18.9	25.2	23.3
전북	17.7	22.9	21.3
전남	16.8	21.9	19.5
경북	19.3	21.4	20.2
경남	20.3	24.9	22.5
제주	21.9	26.0	25.4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2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2022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5.10. 인출)

그림 9-18 OECD 주요국의 학급당 학생 수 (2019)

(단위: 명)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21, 2021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5.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22	1년

07
대 표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High school dropout rates

지표 정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고등학교 총 재적 학생 중 자퇴, 퇴학, 유예, 면제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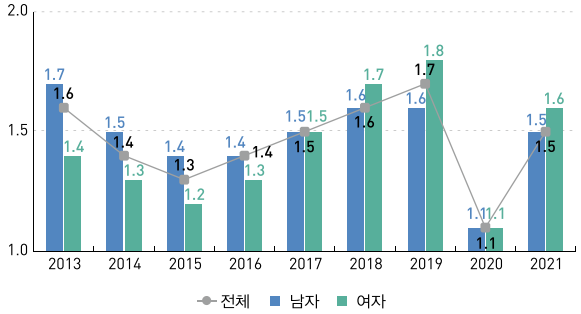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수}}{\text{전년도 고등학교 재적 학생 수}} \times 100$$

유의사항 학업중단자 수는 전년도 3월부터 조사 연도 2월까지 학년도를 기준으로 조사되므로 다른 통계와 자료 기준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9-19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2013~2021)

(단위: %)



주: 연도는 해당 학년도를 의미함.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5.10. 인출)

표 9-7 지역규모별 ·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 (2021)

(단위: %)

지역규모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전체	1.5	1.3	1.3	3.1	0.8
대도시	1.5	1.2	1.2	2.9	0.9
중소도시	1.5	1.3	1.3	2.9	0.6
읍 · 면지역	1.8	1.4	1.6	4.0	0.8
도서벽지	1.6	1.4	-	1.9	1.5

주: 1) 연도는 해당 학년도를 의미함.
2)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사유), 제적, 유예, 면제된 자들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2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2022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5.10. 인출)

표 9-8 시도별 ·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 (2021)

(단위: %)

시도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서울	1.6	1.4	1.1	2.7	1.1
부산	1.4	1.2	1.5	2.6	0.3
대구	1.5	1.0	1.5	3.9	0.9
인천	1.5	1.2	0.9	2.8	0.8
광주	1.5	1.1	0.8	3.4	0.9
대전	1.5	1.2	1.3	3.9	1.0
울산	1.0	0.7	0.5	3.0	0.7
세종	2.2	2.0	2.1	4.4	2.5
경기	1.6	1.5	1.4	2.9	0.6
강원	1.6	1.2	1.5	3.8	0.6
충북	1.8	1.3	1.8	3.6	0.6
충남	1.7	1.3	2.2	3.9	0.6
전북	1.5	1.3	1.4	3.1	0.6
전남	1.6	1.2	1.2	2.8	1.0
경북	1.6	1.2	1.0	3.8	0.9
경남	1.3	1.1	1.0	2.8	0.2
제주	0.9	0.8	2.1	1.6	-

주: 1) 연도는 해당 학년도를 의미함.
2)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사유), 제적, 유예, 면제된 자들을 의미함.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2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2022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5.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21	1년

08
대 표

교원 1인당 학생 수

Ratio of students to teacher

지표 정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원 수에 대한 재적 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한 교사가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을 대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학급당 학생 수와 함께 교육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교원에는 휴직교원과 기간제교사가 모두 포함된다.

측정 산식

$$\text{재적 학생 수} \over \text{교원 수(휴직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 퇴직교원 및 강사 제외)}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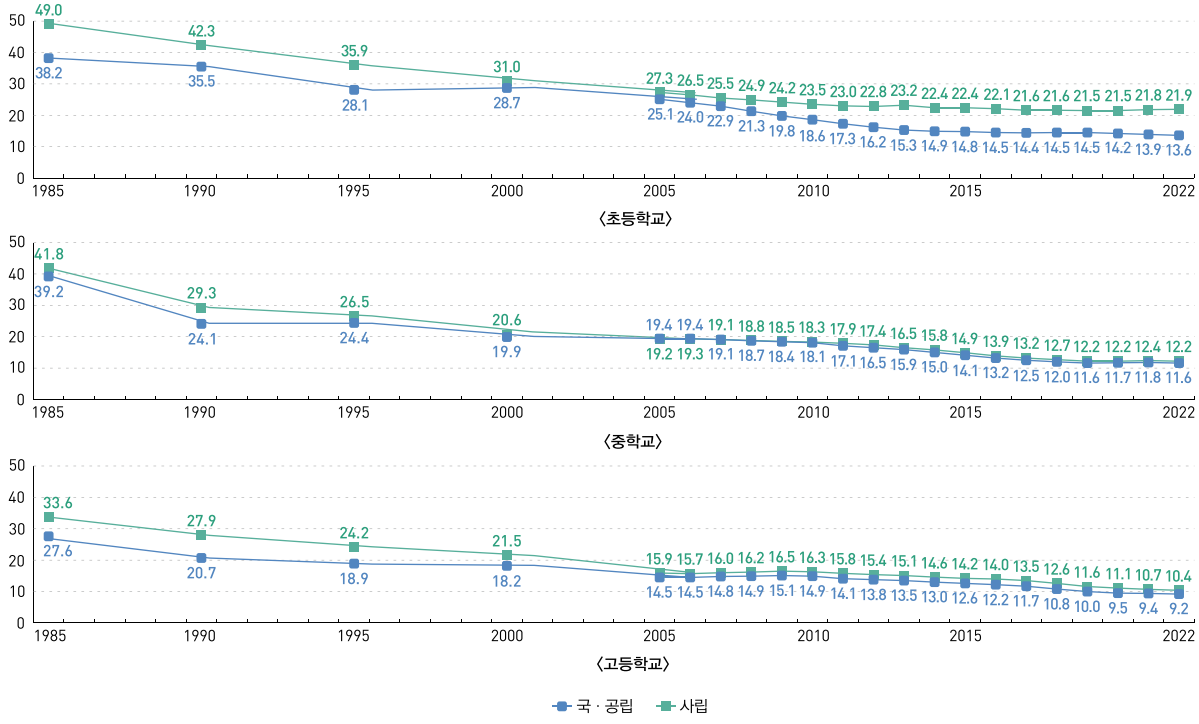
유의사항 OECD 교육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하고 있다. OECD 기준상 교사는 기간제교사 및 휴직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로 전일제 환산치를 적용하고 있다.

$$\text{교사 1인당 학생 수(OECD 기준)} = \frac{\text{전일제 환산치 학생 수}}{\text{전일제 환산치 교사 수}}$$

자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22 보도자료

그림 9-20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1985~2022)

(단위: 명)



주: 1)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교원 수(이하 동일)
2) 교원 수에는 정규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과 기간제교원이 포함되며, 강사 및 퇴직교원은 제외됨(단, 휴직교원은 포함됨, 이하 동일).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각 연도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5.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22	1년

표 9-9 지역별 ·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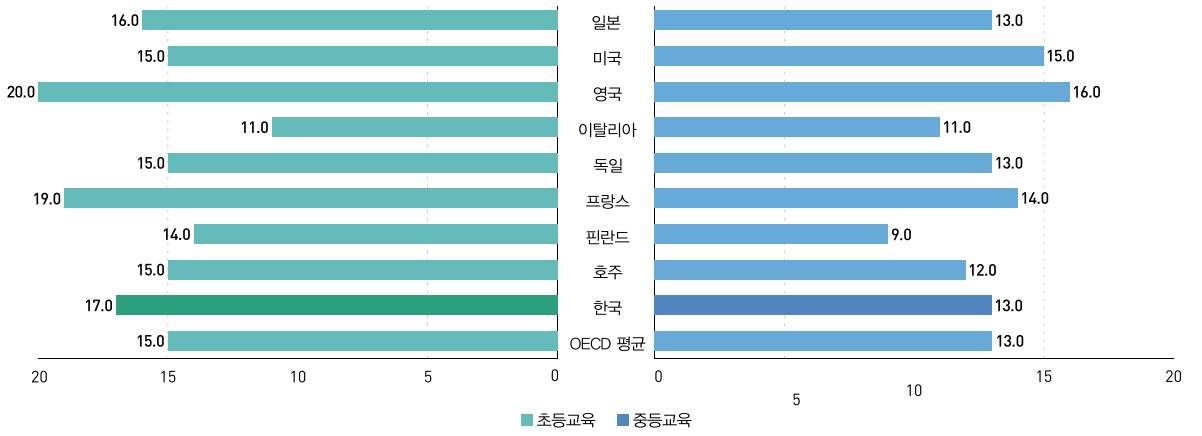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 · 공립	사립	전체	국 · 공립	사립	전체	국 · 공립	사립
전체		13.7	13.6	21.9	11.7	11.6	12.2	9.6	9.2	10.4
지역규모	대도시	14.1	14.0	22.3	12.0	11.9	12.6	9.6	9.0	10.3
	중소도시	15.4	15.4	21.1	12.9	12.8	13.6	10.2	9.9	10.9
	읍 · 면지역	10.4	10.4	18.1	8.9	8.8	9.5	8.4	7.8	9.5
	도서벽지	4.8	4.8	-	5.1	5.1	6.5	5.9	5.4	10.4
시도	서울	13.9	13.6	22.2	11.9	11.8	12.2	10.0	8.9	10.7
	부산	14.7	14.6	22.4	12.0	11.9	12.0	9.0	8.8	9.1
	대구	13.6	13.5	25.8	11.3	10.6	13.6	9.2	8.6	9.7
	인천	15.0	15.0	18.5	13.3	13.3	13.1	9.6	9.3	10.5
	광주	13.9	13.8	25.9	11.8	11.4	13.3	10.5	9.7	11.1
	대전	12.7	12.7	20.9	11.6	11.7	10.8	9.1	8.9	9.5
	울산	14.6	14.6	-	11.8	11.7	14.2	9.4	9.5	8.8
	세종	13.3	13.3	-	11.0	11.0	-	9.1	9.0	11.2
	경기	15.5	15.5	21.0	12.8	12.9	12.0	10.4	10.3	10.9
	강원	10.6	10.5	22.6	10.0	9.8	11.6	8.2	7.6	10.6
	충북	12.3	12.2	22.5	10.4	10.3	11.1	9.5	8.9	11.5
	충남	12.2	12.2	17.9	11.2	11.0	12.0	9.7	9.2	11.0
	전북	10.9	10.9	-	10.0	9.5	11.6	8.9	7.6	10.3
	전남	10.3	10.3	19.4	9.1	8.7	11.5	8.0	7.3	9.2
	경북	11.7	11.6	21.3	9.6	9.0	11.4	8.7	7.7	9.8
	경남	13.3	13.2	17.5	11.7	11.6	12.4	9.6	9.4	10.0
	제주	13.7	13.7	-	12.1	11.7	15.0	10.4	8.9	13.8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2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2022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5.10. 인출)

그림 9-21 OECD 주요국의 교육과정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2019)

(단위: 명)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21, 2021 (https://kess.kedi.re.kr에서 2023.05.10. 인출)

09 대 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A monthly averag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per student

지표 정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초 · 중 ·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으로 정의된다.

• 사교육비에는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비, 인터넷 및 통신 수강료(EBS 제외) 등이 포함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학교급별 사교육비 연간총액}}{\text{학교급별 재적 학생 수}} \div 12$

표 9-10 학교급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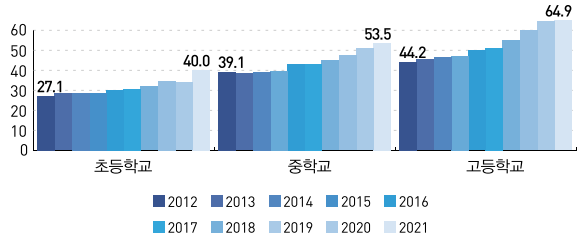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만 원, %)

연도	학교급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사교육비 (억 원)	전체	190,395	185,960	182,297	178,346	180,606	186,223	194,852	209,970	193,532	234,158
	초등학교	77,554	77,375	75,949	75,287	77,438	81,195	85,531	95,597	76,107	105,279
	중학교	61,162	57,831	55,678	52,384	48,102	48,181	49,972	52,554	53,943	63,480
	고등학교	51,679	50,754	50,671	50,675	55,065	56,847	59,348	61,819	63,482	65,399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 원)	전체	23.6	23.9	24.2	24.4	25.6	27.2	29.1	32.1	30.2	36.7
	초등학교	21.9	23.2	23.2	23.1	24.1	25.3	26.3	29.0	23.5	32.8
	중학교	27.6	26.7	27.0	27.5	27.5	29.1	31.2	33.8	34.2	39.2
	고등학교	22.4	22.3	23.0	23.6	26.2	28.5	32.1	36.5	39.6	41.9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 원)	전체	34.0	34.7	35.2	35.5	37.8	38.2	39.9	42.9	45.0	48.5
	초등학교	27.1	28.3	28.6	28.6	30.2	30.7	31.9	34.7	33.8	40.0
	중학교	39.1	38.4	39.1	39.7	43.1	43.2	44.8	47.4	50.8	53.5
	고등학교	44.2	45.4	46.4	47.1	49.9	51.0	54.9	59.9	64.3	64.9
사교육 참여율 (%)	전체	69.4	68.8	68.6	68.8	67.8	71.2	72.8	74.8	67.1	75.5
	초등학교	80.9	81.8	81.1	80.7	80.0	82.7	82.5	83.5	69.7	82.0
	중학교	70.6	69.5	69.1	69.4	63.8	67.4	69.6	71.4	67.3	73.1
	고등학교	50.7	49.2	49.5	50.2	52.4	55.9	58.5	61.0	61.6	64.6

자료: 통계청, 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3.05.12. 인출)

그림 9-22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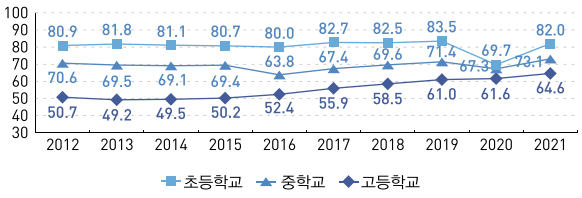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 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3.05.12. 인출)

그림 9-23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 (2012~2021)

(단위: %)



자료: 통계청, 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3.05.1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2007	2021	1년

09-1
연 관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Public expenditure on tertiary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지표 정의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국제지표다. 정부부담 교육비(초기 재원)에는 교육기관에 지불하도록 교육 외 민간부문에 제공된 정부 이전금/지불금, 교육기관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생활비를 위해 가계에 지원된 정부보조금이 포함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용}}{\text{GDP}} \times 100$

표 9-11 OECD 주요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200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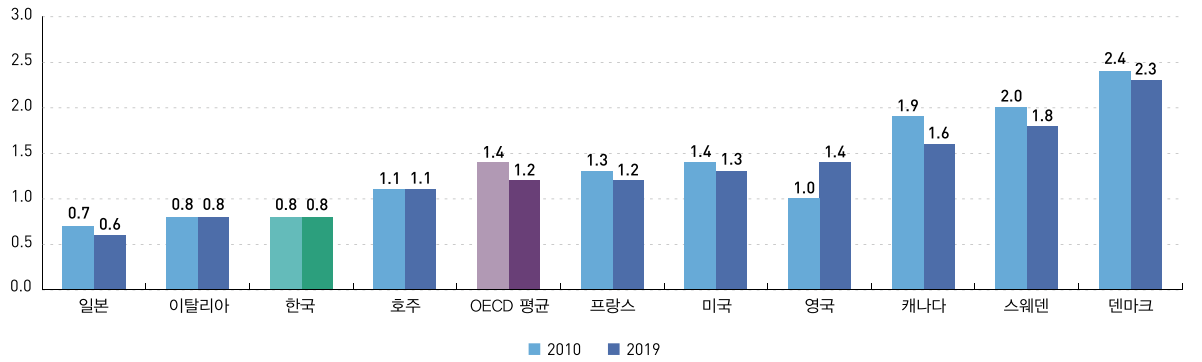
(단위: GDP%)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	0.6	0.7	0.6	0.7	0.9	0.8	0.8	0.9	1.0	1.1	0.9	0.9	0.8	0.9	0.8
일본	0.6	0.6	0.6	0.6	0.8	0.7	0.8	0.8	0.8	0.7	0.7	0.6	0.6	0.6	0.6
호주	1.1	1.1	1.0	1.0	1.1	1.1	1.1	1.1	1.3	1.4	1.5	1.4	1.3	1.1	1.1
캐나다	1.7	1.8	1.8	1.7	1.8	1.9	2.0	1.7	1.3	1.7	1.2	1.6	1.6	1.6	1.6
덴마크	2.4	2.3	2.3	2.2	2.4	2.4	2.4	2.4	2.3	2.3	-	-	2.5	2.2	2.3
프랑스	1.2	1.2	1.2	1.2	1.3	1.3	1.3	1.2	1.2	1.3	1.2	1.2	1.2	1.2	1.2
이탈리아	0.8	0.8	0.8	0.8	0.9	0.8	0.8	0.8	0.8	0.8	0.8	0.7	0.8	0.8	0.8
스웨덴	1.9	1.9	1.8	1.8	2.0	2.0	2.0	1.9	2.0	1.9	1.9	1.8	1.8	1.8	1.8
영국	1.2	1.1	0.9	0.8	0.8	1.0	1.3	1.4	1.4	1.3	1.3	1.4	1.4	1.4	1.4
미국	1.3	1.4	1.2	1.3	1.3	1.4	1.3	1.5	1.6	1.4	1.3	1.2	1.4	1.2	1.3
OECD 평균	1.3	1.3	1.2	1.3	1.4	1.4	1.4	1.3	1.3	1.3	1.2	1.2	1.2	1.2	1.2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연도

그림 9-24 OECD 주요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2010, 2019)

(단위: GDP%)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Education at a Glance	1992	2019	1년

10 대 표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Proportion of students who have a loan

지표 정의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은 재학생 수 대비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 비중을 의미한다.

- 소득 차이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 * 2005년 정부보증 방식으로 시행되었던 학자금 대출제도는 2009년 대폭 정비되어 국가장학금 사업과 학자금 대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일반상환제도와 함께 취업 후 상환제도가 도입되었다.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등을 대출해 주고 상환 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징수 폐지 등을 통해 학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또한 지속되고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text{재학생 수}} \times 100$

표 9-12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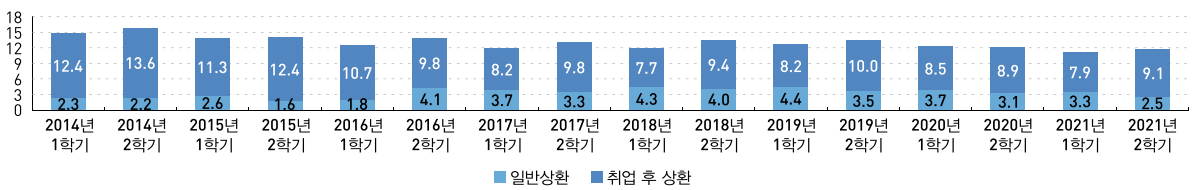
(단위: 명, %)

학기	재학생 수 (A)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인원 (B)	이용률 (B/A*100)	인원 (C)	이용률 (C/A*100)	인원(D)	이용률 (D/A*100)
2014년 1학기	2,322,503	53,345	2.3	288,914	12.4	342,259	14.7
2014년 2학기	2,155,239	47,363	2.2	292,403	13.6	339,766	15.8
2015년 1학기	2,290,572	59,690	2.6	257,857	11.3	317,547	13.9
2015년 2학기	2,111,058	33,140	1.6	261,541	12.4	294,681	14.0
2016년 1학기	2,233,832	40,106	1.8	239,431	10.7	279,537	12.5
2016년 2학기	2,330,575	96,029	4.1	227,651	9.8	323,680	13.9
2017년 1학기	2,183,155	80,358	3.7	179,741	8.2	260,099	11.9
2017년 2학기	2,020,379	66,414	3.3	197,009	9.8	263,423	13.0
2018년 1학기	2,166,767	92,433	4.3	167,725	7.7	260,158	12.0
2018년 2학기	2,026,485	80,555	4.0	189,617	9.4	270,172	13.3
2019년 1학기	2,154,579	93,978	4.4	177,608	8.2	271,586	12.6
2019년 2학기	2,019,683	70,765	3.5	202,168	10.0	272,933	13.5
2020년 1학기	2,139,570	78,210	3.7	180,913	8.5	259,123	12.1
2020년 2학기	1,991,699	62,429	3.1	177,916	8.9	240,345	12.1
2021년 1학기	2,088,584	68,853	3.3	164,429	7.9	233,282	11.2
2021년 2학기	1,927,215	49,070	2.5	176,301	9.1	225,371	11.7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3.05.14. 추출)
주: 전문대학과 대학을 포함함.

그림 9-25 학자금 대출 유형별 이용률 (2014~2021)

(단위: %)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3.05.14. 추출)
주: 전문대학과 대학을 포함함.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학자금 대출 현황 (내부자료)*	2008	2021	6개월

*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도 통계구득 가능

표 9-13 대학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2014~2021)

(단위: 명, %)

학기	재학생 수 (A)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인원 (B)	이용률 (B/A*100)	인원 (C)	이용률 (C/A*100)	인원(D)	이용률 (D/A*100)
2014년 1학기	1,825,623	39,863	2.2	205,410	11.3	245,273	13.4
2014년 2학기	1,684,826	36,626	2.2	206,110	12.2	242,736	14.4
2015년 1학기	1,800,475	42,477	2.4	185,936	10.3	228,413	12.7
2015년 2학기	1,654,047	25,756	1.6	186,091	11.3	211,847	12.8
2016년 1학기	1,755,259	29,062	1.7	173,010	9.9	202,072	11.5
2016년 2학기	1,883,393	82,214	4.4	163,647	8.7	245,861	13.1
2017년 1학기	1,715,784	55,823	3.3	132,765	7.7	188,588	11.0
2017년 2학기	1,585,303	48,748	3.1	141,869	8.9	190,617	12.0
2018년 1학기	1,704,144	65,440	3.8	124,302	7.3	189,742	11.1
2018년 2학기	1,592,401	59,742	3.8	137,608	8.6	197,350	12.4
2019년 1학기	1,691,711	68,765	4.1	130,259	7.7	199,024	11.8
2019년 2학기	1,582,163	53,729	3.4	145,416	9.2	199,024	12.6
2020년 1학기	1,682,711	58,508	3.5	133,828	8.0	199,024	11.8
2020년 2학기	1,569,906	47,845	3.0	129,653	8.3	177,498	11.3
2021년 1학기	1,667,220	51,687	3.1	122,291	7.3	173,978	10.4
2021년 2학기	1,527,331	38,456	2.5	128,553	8.4	167,009	10.9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3.05.14. 추출)

표 9-14 전문대학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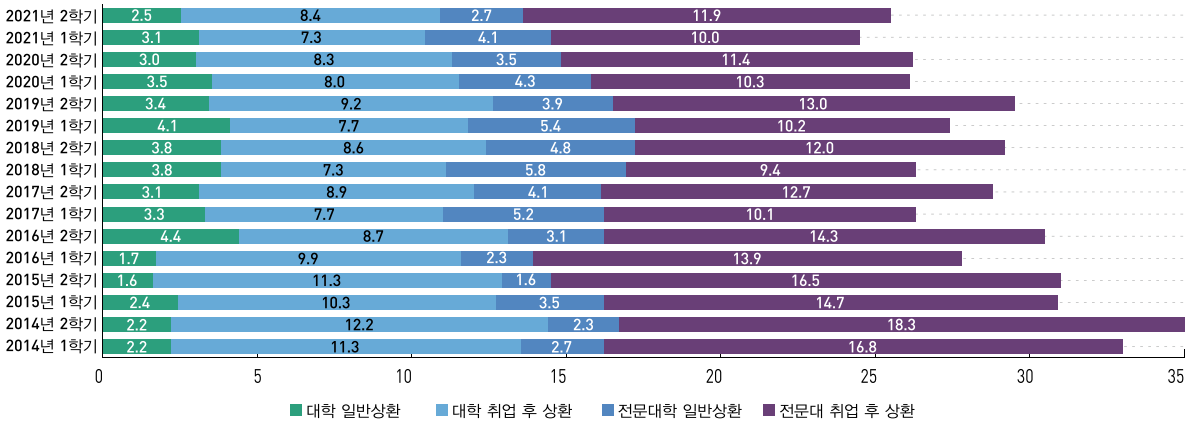
(단위: 명, %)

학기	재학생 수 (A)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인원 (B)	이용률 (B/A*100)	인원 (C)	이용률 (C/A*100)	인원(D)	이용률 (D/A*100)
2014년 1학기	496,880	13,482	2.7	83,504	16.8	96,986	19.5
2014년 2학기	470,413	10,737	2.3	86,293	18.3	97,030	20.6
2015년 1학기	490,097	17,213	3.5	71,921	14.7	89,134	18.2
2015년 2학기	457,011	7,384	1.6	75,450	16.5	82,834	18.1
2016년 1학기	478,573	11,044	2.3	66,421	13.9	77,465	16.2
2016년 2학기	447,182	13,815	3.1	64,004	14.3	77,819	17.4
2017년 1학기	467,371	24,535	5.2	46,976	10.1	71,511	15.3
2017년 2학기	435,076	17,666	4.1	55,140	12.7	72,806	16.7
2018년 1학기	462,623	26,993	5.8	43,423	9.4	70,416	15.2
2018년 2학기	434,084	20,813	4.8	52,009	12.0	72,822	16.8
2019년 1학기	462,868	25,213	5.4	47,349	10.2	72,562	15.7
2019년 2학기	437,520	17,036	3.9	56,752	13.0	73,788	16.9
2020년 1학기	456,859	19,702	4.3	47,085	10.3	66,787	14.6
2020년 2학기	421,793	14,584	3.5	48,263	11.4	62,847	14.9
2021년 1학기	421,364	17,166	4.1	42,138	10.0	59,304	14.1
2021년 2학기	399,884	10,614	2.7	47,748	11.9	58,362	14.6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3.05.14. 추출)

그림 9-26 학기별 학자금 대출 유형별 이용률 (2014~2021)

(단위: %)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3.05.14. 추출)

10-1
연 관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Amount of loan per student who has a loan

지표 정의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은 학자금 대출 총금액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은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과 더불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도를 보여준다.

측정 산식

- $\frac{\text{학자금 대출 금액 총액}}{\text{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

표 9-15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201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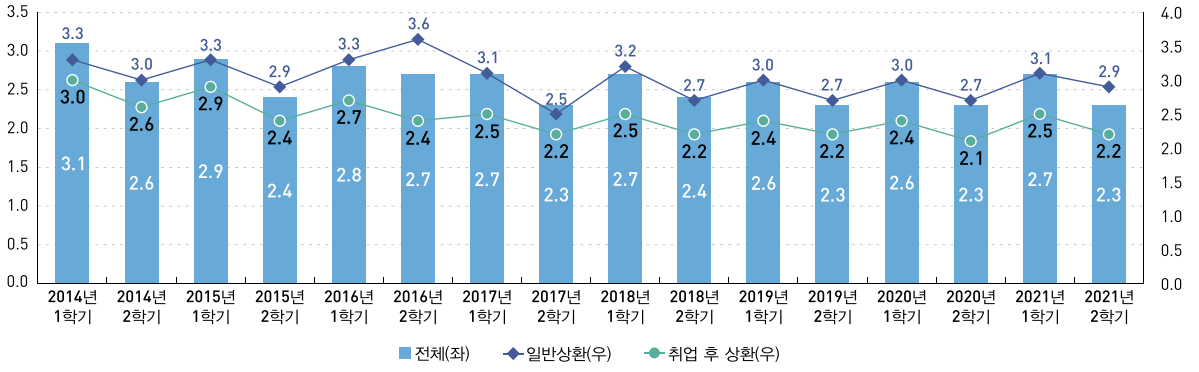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 원)

학기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4년 1학기	53,345	178,404	288,914	868,966	342,259	1,047,370	3.3	3.0	3.1
2014년 2학기	47,363	141,481	292,403	757,249	339,766	898,730	3.0	2.6	2.6
2015년 1학기	59,690	198,925	257,857	735,954	317,547	934,879	3.3	2.9	2.9
2015년 2학기	33,140	96,727	261,541	624,744	294,681	721,471	2.9	2.4	2.4
2016년 1학기	40,106	130,757	239,431	650,438	279,537	781,195	3.3	2.7	2.8
2016년 2학기	96,029	344,289	227,651	535,689	323,680	879,978	3.6	2.4	2.7
2017년 1학기	80,358	250,865	179,741	455,538	260,099	706,404	3.1	2.5	2.7
2017년 2학기	66,414	166,767	197,009	441,552	263,423	608,319	2.5	2.2	2.3
2018년 1학기	92,433	291,235	167,725	411,602	260,158	702,836	3.2	2.5	2.7
2018년 2학기	80,555	216,630	189,617	419,119	270,172	635,749	2.7	2.2	2.4
2019년 1학기	93,978	281,715	177,608	425,412	271,586	707,126	3.0	2.4	2.6
2019년 2학기	70,765	193,266	202,168	443,311	272,933	636,577	2.7	2.2	2.3
2020년 1학기	78,132	236,114	180,752	433,733	258,884	669,847	3.0	2.4	2.6
2020년 2학기	62,429	171,262	177,916	378,784	240,345	550,046	2.7	2.1	2.3
2021년 1학기	68,853	216,500	164,429	402,977	233,282	619,478	3.1	2.5	2.7
2021년 2학기	49,070	142,687	176,301	383,419	225,371	526,105	2.9	2.2	2.3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3.05.14. 추출)
주: 전문대학과 대학을 포함함.

그림 9-27 학자금 대출 유형별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2014~2021)

(단위: 백만 원)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3.05.14. 추출)
주: 전문대학과 대학을 포함함.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학자금 대출 현황 (내부자료)*	2008	2021	6개월

*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도 통계구득 가능

표 9-16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 대학 (2014~2021)

(단위: 명, 백만 원)

학기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4년 1학기	39,863	135,021	205,410	614,539	245,273	749,560	3.4	3.0	3.1
2014년 2학기	36,626	112,818	206,110	544,827	242,736	657,645	3.1	2.6	2.7
2015년 1학기	42,477	142,195	185,936	525,758	228,413	667,952	3.3	2.8	2.9
2015년 2학기	25,756	77,425	186,091	452,617	211,847	530,042	3.0	2.4	2.5
2016년 1학기	29,062	95,663	173,010	466,254	202,072	561,917	3.3	2.7	2.8
2016년 2학기	82,214	310,865	163,647	390,124	245,861	700,989	3.8	2.4	2.9
2017년 1학기	55,823	174,228	132,765	332,729	188,588	506,957	3.1	2.5	2.7
2017년 2학기	48,748	122,926	141,869	322,758	190,617	445,683	2.5	2.3	2.3
2018년 1학기	65,440	206,735	124,302	303,098	189,742	509,833	3.2	2.4	2.7
2018년 2학기	59,742	165,214	137,608	309,303	197,350	474,516	2.8	2.2	2.4
2019년 1학기	68,765	208,750	130,259	311,561	199,024	520,311	3.0	2.4	2.6
2019년 2학기	53,729	150,142	145,416	324,630	199,145	474,772	2.8	2.2	2.4
2020년 1학기	58,508	178,857	133,828	322,377	192,336	501,234	3.1	2.4	2.6
2020년 2학기	47,845	134,553	129,653	281,841	129,653	416,394	2.8	2.2	2.3
2021년 1학기	51,687	164,624	122,291	300,334	173,978	464,959	3.2	2.5	2.7
2021년 2학기	38,456	114,227	128,553	283,298	167,009	397,525	3.0	2.2	2.4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3.05.14. 추출)

표 9-17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 전문대학 (2014~2021)

(단위: 명, 백만 원)

학기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4년 1학기	13,482	43,383	83,504	254,427	96,986	297,810	3.2	3.0	3.1
2014년 2학기	10,737	28,662	86,293	212,423	97,030	241,085	2.7	2.5	2.5
2015년 1학기	17,213	56,731	71,921	210,196	89,134	266,927	3.3	2.9	3.0
2015년 2학기	7,384	19,301	75,450	172,127	82,834	191,428	2.6	2.3	2.3
2016년 1학기	11,044	35,095	66,421	184,184	77,465	219,279	3.2	2.8	2.8
2016년 2학기	13,815	33,424	64,004	145,564	77,819	178,988	2.4	2.3	2.3
2017년 1학기	24,535	76,638	46,976	122,809	71,511	199,447	3.1	2.6	2.8
2017년 2학기	17,666	40,250	55,140	118,794	72,806	159,044	2.3	2.2	2.2
2018년 1학기	26,993	84,500	43,423	108,503	70,416	193,003	3.1	2.5	2.7
2018년 2학기	20,813	51,417	52,009	109,816	72,822	161,232	2.5	2.1	2.2
2019년 1학기	25,213	72,965	47,349	113,851	72,562	186,815	2.9	2.4	2.6
2019년 2학기	17,036	43,124	56,752	118,682	73,788	161,806	2.5	2.1	2.2
2020년 1학기	19,624	57,257	46,924	111,356	66,548	168,613	2.9	2.4	2.5
2020년 2학기	14,584	36,709	48,263	96,943	62,847	133,652	2.5	2.0	2.1
2021년 1학기	17,166	51,876	42,138	102,643	59,304	154,519	3.0	2.4	2.6
2021년 2학기	10,614	28,460	47,748	100,121	58,362	128,581	2.7	2.1	2.2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3.05.14. 추출)

11 대 표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Amount of national scholarship per student

지표 정의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은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의미한다.

• 이 지표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준다.

* 경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국가장학사업을 도입하였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차등 지원하는 유형(Ⅰ유형)과 등록금 동결 · 인하, 교내장학금 추가 확충 등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유형(Ⅱ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에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자녀유형이 신설되었다.

* 국가장학금은 Ⅰ유형, Ⅱ유형 및 다자녀유형 모두 기초수급자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수혜한 학생의 비율이고, 국가장학금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국가장학금 수혜학생 1인당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말한다.

*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학생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소득 ·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하다.

측정 산식

• $\frac{\text{국가장학금 지원액}}{\text{실 수혜인원}}$

표 9-18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 현황 (2021년 2학기)

(단위: 명, 백만 원)

학기 / 소득 구분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Ⅱ유형			합계(인원 건수)		
	수혜인원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기초	33,018	75,058	2.27	6,921	16,382	2.37	12,739	9,200	0.72	40,990	100,641	2.46
차상위	38,562	89,273	2.32	8,556	20,441	2.39	19,783	12,057	0.61	48,187	121,772	2.53
1구간	92,097	205,485	2.23	19,465	45,811	2.35	44,545	26,291	0.59	113,824	277,587	2.44
2구간	71,294	162,735	2.28	15,441	36,679	2.38	37,064	20,162	0.54	88,574	219,577	2.48
3구간	75,615	172,261	2.28	16,584	39,316	2.37	39,355	21,374	0.54	94,090	232,951	2.48
4구간	63,591	114,324	1.80	14,844	31,372	2.11	42,744	22,048	0.52	80,873	167,744	2.07
5구간	30,897	52,846	1.71	7,346	15,519	2.11	20,903	9,591	0.46	39,234	77,955	1.99
6구간	91,226	157,101	1.72	21,286	45,104	2.12	59,530	23,526	0.40	114,788	225,731	1.97
7구간	48,239	28,478	0.59	14,131	29,825	2.11	36,307	16,297	0.45	63,509	74,601	1.17
8구간	103,530	34,854	0.34	31,651	67,046	2.12	80,710	35,504	0.44	137,167	137,404	1.00
9구간	-	-	-	-	-	-	902	440	0.49	902	439	0.49
10구간	-	-	-	-	-	-	937	494	0.53	937	494	0.53
소득미산정	-	-	-	-	-	-	10	28	2.80	10	28	2.80
합계	648,069	1,092,416	1.69	156,225	347,497	2.22	395,529	197,012	0.50	823,085	1,636,925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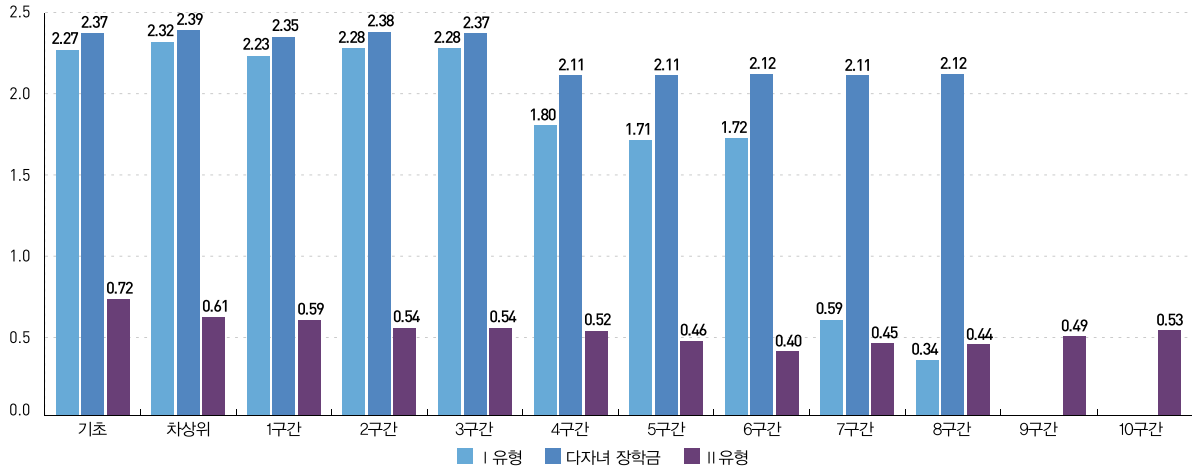
주: 중복수혜가 가능한 Ⅰ유형과 Ⅱ유형, Ⅱ유형과 다자녀장학금을 고려하여, 중복수혜인원을 제거한 합계임.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내부자료), 2023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내부자료)	2012	2021	1년

그림 9-28 국가장학금 유형별 학생 1인당 지원 금액 (2021년 2학기)

(단위: 백만 원)



주: 중복수혜가 가능한 Ⅰ유형과 Ⅱ유형, Ⅱ유형과 다자녀장학금을 고려하여, 중복수혜인원을 제거한 합계임.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내부자료), 2023

표 9-19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2020~2021)

(단위: 명, 백만 원)

학기 / 소득구분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2021년 1학기			2021년 2학기		
	수혜인원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지원금액
기초	44,625	109,190	2.45	41,733	102,855	2.46	43,986	106,637	2.42	40,990	100,641	2.46
차상위	50,603	128,255	2.53	45,259	114,490	2.53	54,247	135,677	2.50	48,187	121,772	2.53
1구간	117,579	284,305	2.42	116,303	284,532	2.45	121,657	290,575	2.39	113,824	277,587	2.44
2구간	94,391	233,468	2.47	92,667	230,964	2.49	93,244	227,065	2.44	88,574	219,577	2.48
3구간	99,065	243,842	2.46	99,011	245,726	2.48	96,354	233,590	2.42	94,090	232,951	2.48
4구간	88,391	180,922	2.05	85,818	178,347	2.08	88,430	179,749	2.03	80,873	167,744	2.07
5구간	42,820	84,439	1.97	41,684	83,159	1.99	42,534	83,445	1.96	39,234	77,955	1.99
6구간	121,752	236,904	1.95	122,921	241,828	1.97	120,358	232,352	1.93	114,788	225,731	1.97
7구간	72,417	82,536	1.14	67,833	79,657	1.17	70,614	79,663	1.13	63,509	74,601	1.17
8구간	148,870	145,328	0.98	146,266	146,460	1.00	143,625	136,562	0.95	137,167	137,404	1.00
9구간	1,082	854	-	687	653	-	1,803	861	0.48	902	439	0.49
10구간	862	960	-	659	818	-	1,909	1,021	0.53	937	494	0.53
소득미산정	16	50	-	8	23	-	4	10	2.50	10	28	2.80
합계	882,473	1,731,054	1.96	860,849	1,709,511	1.99	878,765	1,707,206	1.94	823,085	1,636,925	1.99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내부자료), 2023

표 9-20 국가장학금 신청 대비 수혜율 (2016~2021)

(단위: %)

학기 / 유형구분	2016년 1학기	2016년 2학기	2017년 1학기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2019년 1학기	2019년 2학기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2021년 1학기	2021년 2학기
수혜율	64.26	70.71	66.78	69.53	61.45	65.45	61.00	64.61	61.95	68.39	64.60	66.69

주: 국가장학금 수혜율=국가장학금 수혜인원/국가장학금 신청인원 × 100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내부자료), 2023

12 대 표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The percentage of students selected by the equality of opportunity among tertiary new entrants

지표 정의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은 고등교육기관 총 입학자 수 대비 기회균형 선발학생의 비중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들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원 내 또는 정원 외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고 있다. 이 지표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 및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보여준다.
 기회균형 선발은 정원 외와 정원 내로 구분된다. 정원 외 선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농어촌지역학생, 기타(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서해5도 학생 등)가 포함되며, 정원 내 선발에는 고른기회대상과 대학독자기준이 포함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기회균형 선발학생 수(정원 내외)}}{\text{총 입학자 수}} \times 100$

표 9-21 기회균형 선발 학생 현황 (2018~2022)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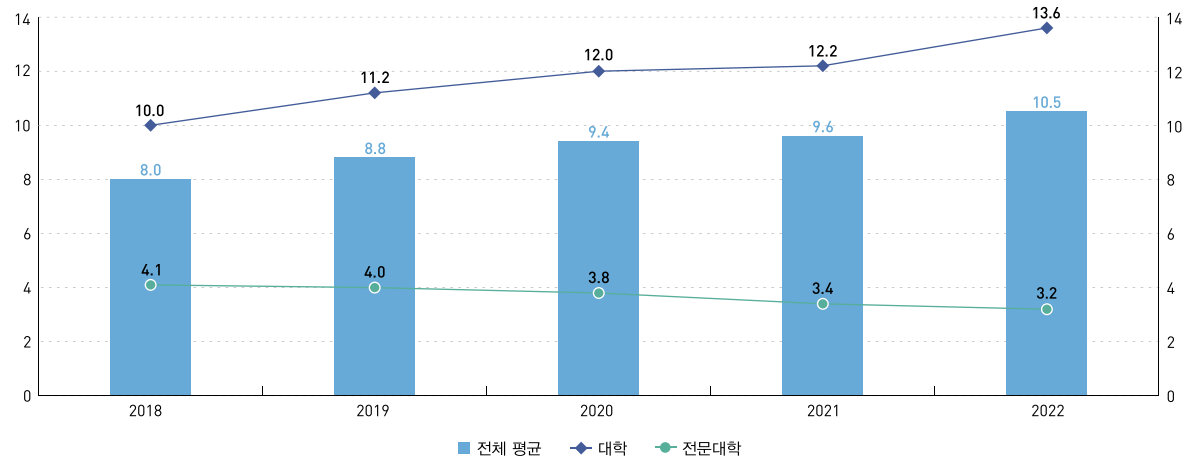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 (B)	비율 (B/A*100)
대학	382,511	38,291	10.0	380,265	42,638	11.2	378,640	45,481	12.0	365,612	44,632	12.2	362,200	49,209	13.6
전문대학	188,604	7,650	4.1	186,158	7,385	4.0	176,594	6,711	3.8	153,540	5,293	3.4	149,833	4,785	3.2
합계	571,115	45,941	8.0	566,423	50,023	8.8	555,234	52,192	9.4	519,152	49,925	9.6	512,033	53,994	10.5

주: 1) 전문대학에는 전문대학(2, 3, 4년제), 기능대학 포함
2) 대학에는 대학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3.05.14. 추출)

그림 9-29 기회균형 선발 비율 (2018~2022)

(단위: %)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3.05.14. 추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2008	2022	1년

표 9-22 지역별 · 설립별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학생 현황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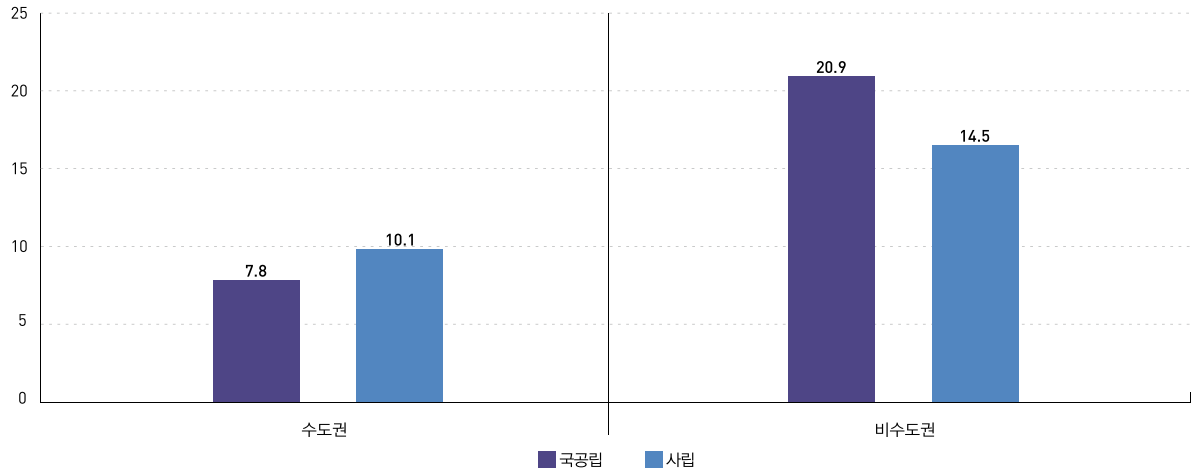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국공립			사립			계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 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 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 학생 (B)	비율 (B/A*100)
전국	87,558	15,333	17.5	274,642	33,876	12.3	362,200	49,209	13.6
수도권	22,771	1,784	7.8	135,044	13,606	10.1	157,815	15,390	9.8
비수도권	64,787	13,549	20.9	139,598	20,270	14.5	204,385	33,819	16.5

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일컬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 외 지역임. 국공립은 공립, 국립,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을 포함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3.05.14. 추출)

그림 9-30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학생 비율 (2022)

(단위: %)



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일컬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 외 지역임. 국공립은 공립, 국립,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을 포함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3.05.14. 추출)

13
대 표

고등교육 이수율

Tertiary education attainment

지표 정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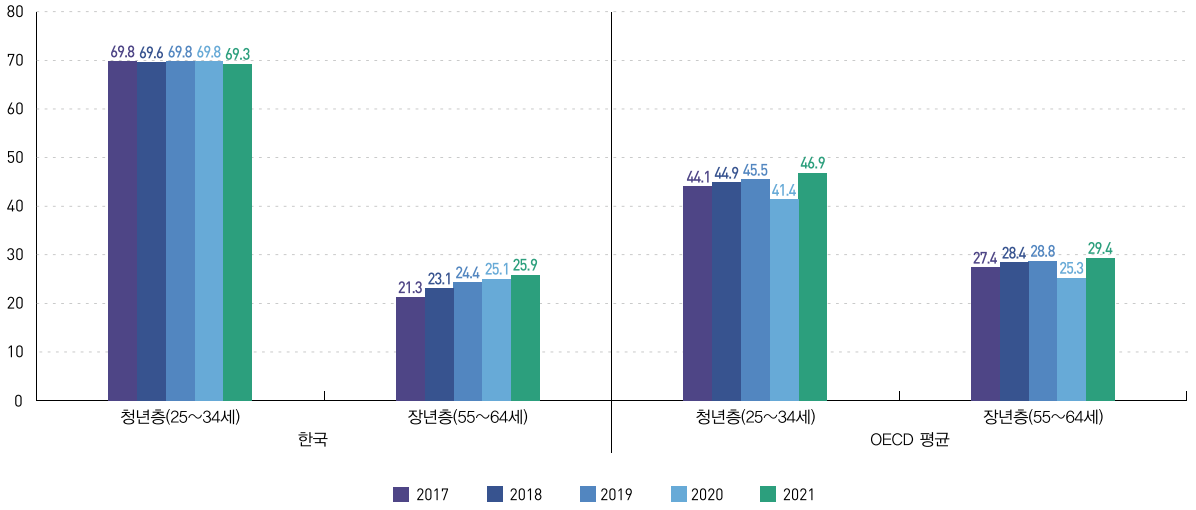
- OECD에서는 25세~64세 인구 중 25세~34세 인구를 청년층, 55세~64세 인구를 장년층으로 구분한다. 고등교육은 단기고등교육(전문대학 과정)과 대학(학사),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과정으로 구분하며, 단기고등교육은 전문대학, 각종 학교 · 기술대학 ·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전공대학, 기능대학이 해당된다. 대학(학사)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 · 기술대학 · 사내대학(대학과정), 전문대학 · 기능대학(학사학위 심화과정)이 포함되며, 대학원(석사)은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석사과정)이, 대학원(박사)은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박사과정)이 해당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해당 연령 고등교육 이수자 수}}{\text{해당 연령 전체 인구수}} \times 100$

그림 9-31 고등교육 이수율 (2017~2021)

(단위: %)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5.1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1963	2021	1년

표 9-23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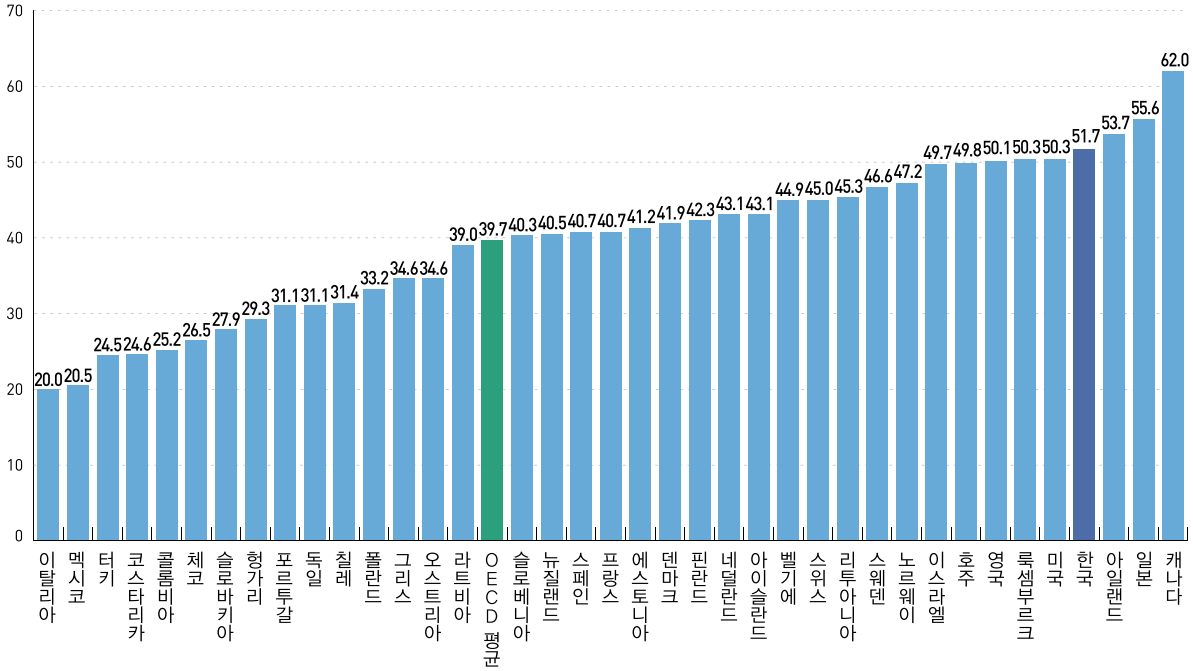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국가	단기고등교육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고등교육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017	한국	13.5	21.4	4.3	34.2	48.3	17.0	-	-	-	-	-	-	47.7	69.8	21.3
	OECD 평균	7.3	7.6	7.0	17.1	23.3	11.4	12.2	14.1	8.7	1.1	0.8	1.0	35.8	43.3	26.3
2018	한국	13.7	21.0	4.7	30.7	45.3	14.5	4.7	3.2	3.8	-	-	-	49.0	69.6	23.1
	OECD 평균	7.2	7.8	7.0	17.5	23.7	11.7	12.7	14.3	9.3	1.1	0.8	1.0	36.9	44.1	27.4
2019	한국	13.9	20.9	5.0	31.5	45.6	16.0	4.6	3.3	3.4	-	-	-	50.0	69.8	24.4
	OECD 평균	7.2	7.8	7.2	17.9	24.1	11.9	13.4	14.7	9.9	1.2	0.9	1.0	38.0	44.9	28.4
2020	한국	14.1	21.1	5.1	32.2	45.3	16.7	4.4	3.4	3.3	-	-	-	50.7	69.8	25.1
	OECD 평균	7.2	7.9	7.2	18.2	24.5	12.1	13.5	14.7	10.0	1.3	1.0	1.1	38.6	45.5	28.8
2021	한국	14.3	20.7	5.5	33.0	45.4	17.3	4.4	3.2	3.1	-	-	-	51.7	69.3	25.9
	OECD평균	7.1	7.7	6.9	18.9	25.3	12.5	13.9	15.2	10.1	1.3	0.9	1.1	39.7	46.9	29.4

주: 우리나라는 2017년에는 석박사과정이 학사과정에 포함되었으며, 2018~2020년에는 박사과정이 석사과정에 포함되었음.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5.15. 인출)

그림 9-32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 이수율 (2021)

(단위: %)



주: 1) 라트비아는 다른 범주의 자료도 포함된 수치임.
2) 25~64세를 대상으로 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2022 (stats.oecd.org에서 2023.05.15. 인출)

14 대 표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 금액

An overview of high school student educational benefit in single parent family : provision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업단절이나 학업중단 위기에 직면한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또는 청소년한부모 중 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교육비(수업료, 입학금)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초과 60% 이하인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72% 이하의 가구에게 고교생학비를 지원한 건수 및 지원 금액 (2021년 기준)

(단위: 원/월)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기준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기준중위소득 72%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표 9-24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규모 (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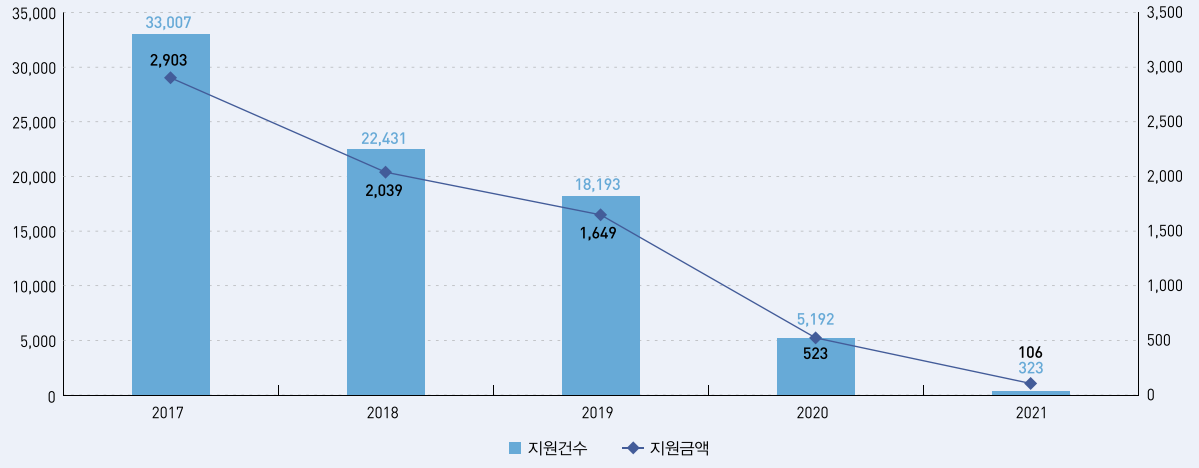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원 건수	33,007	22,431	18,193	5,192	323
지원 금액	2,903	2,039	1,649	523	106

주: 각 연도 12월 기준

그림 9-33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규모 (2017~2021)

(단위: 건, 백만 원)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한부모가족고교생학비지원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21	1년

10

문화

0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02 연간 독서량
03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0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05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06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활동 참여율
07 생활체육 참여율
08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09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10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11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1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13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14 GDP 대비 문화예산
1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문화 향유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연간 독서량	연간 독서율
문화 접근성 (인프라)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문화 참여	연간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문화 교육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 복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GDP 대비 문화예산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01 대 표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Visiting rate of annual culture arts events

지표 정의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만 15세 이상의 국민이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직접 문화예술행사(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를 관람한 응답자의 비율로 정의한다.

- 최소한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국민의 비율을 통하여 성별, 도시규모별, 소득수준별, 연령별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직접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15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통계청 사회조사와 유사한 지표처럼 보이나 질문 방식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다른 지표이다.

표 10-1 연도별·분야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2008~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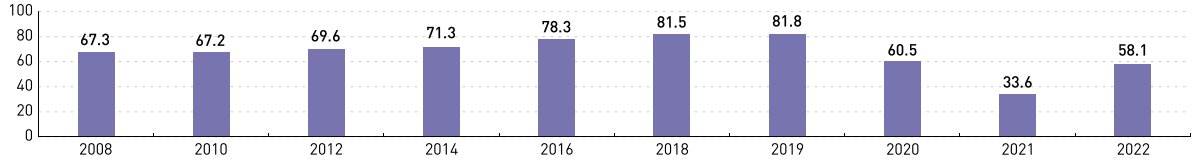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2022	21년대비 증감률
전체	67.3	67.2	69.6	71.3	78.3	81.5	81.8	60.5	33.6	58.1	+24.5
문학행사	4.0	3.8	6.1	6.2	5.8	8.9	6.7	2.6	1.2	2.4	+1.2
미술전시회	8.4	9.5	10.2	10.6	12.8	15.3	13.5	8.7	5.0	6.7	+1.7
서양음악	4.9	4.4	4.8	4.9	4.5	5.5	6.1	2.2	1.2	1.8	+0.6
전통예술	4.4	5.7	6.5	5.7	7.6	9.3	10.3	3.2	0.8	2.5	+1.7
연극	11.0	11.2	11.8	12.6	13.0	14.4	14.9	5.8	1.8	5.3	+3.5
뮤지컬			11.5	11.5	10.2	13.0	13.5	6.8	2.4	4.9	+2.5
무용	0.7	1.4	2.0	2.4	1.3	1.7	2.4	0.6	0.2	0.4	+0.2
영화	58.9	60.3	64.4	65.8	73.3	75.8	77.0	56.4	30.5	52.2	+21.7
대중음악/연예	10.0	7.6	13.5	14.4	14.6	21.1	23.3	7.2	1.3	7.4	+6.1

주: 1)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세분화하여 구성함.
2) 2016년 조사에만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이 추가됨['역사,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포함 관람률 79.3%].
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2.

그림 10-1 연도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0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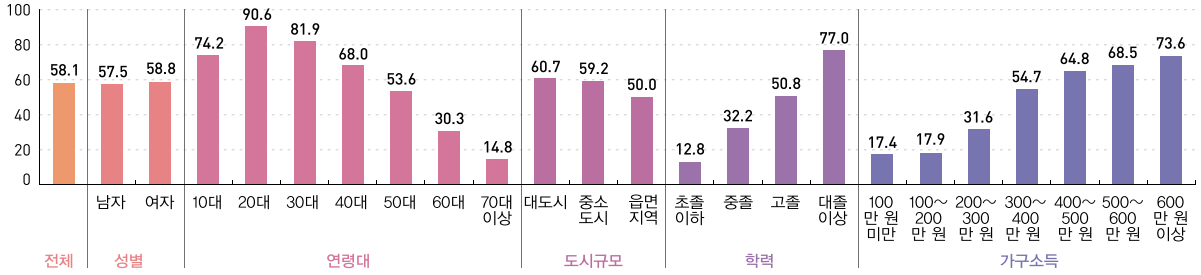
(단위: %)



주: 1)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세분화하여 구성함.
2) 2016년 조사에만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이 추가됨['역사,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포함 관람률 79.3%].
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그림 10-2 일반특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22)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22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22	1년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01-1
연 관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Annual average the visiting number of culture arts events

지표 정의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지난 1년 동안 직접 관람한 문화예술행사(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의 평균 횟수로 정의된다.

-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횟수를 파악하여, 실제 문화향유를 하는 정도를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문화예술 향유 빈도 격차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지난 1년 동안 직접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것으로 응답한 사람의 전체 횟수}}{\text{15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10-2 연도별 분야별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2008~2022)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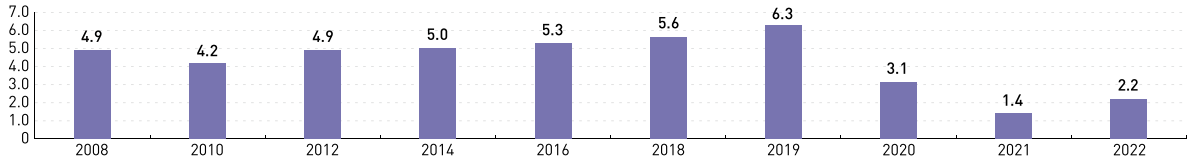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4.9	4.2	4.9	5.0	5.3	5.6	6.3	3.1	1.4	2.2
문학행사	0.1	0.1	0.1	0.1	0.1	0.2	0.1	0.1	0.0	0.0
미술전시회	0.2	0.2	0.2	0.2	0.3	0.3	0.3	0.2	0.1	0.1
서양음악	0.1	0.1	0.1	0.1	0.1	0.1	0.1	0.0	0.0	0.0
전통예술	0.1	0.1	0.1	0.1	0.1	0.2	0.2	0.1	0.0	0.0
연극	0.2	0.2	0.2	0.2	0.2	0.3	0.3	0.1	0.0	0.1
뮤지컬			0.2	0.2	0.2	0.2	0.2	0.1	0.0	0.1
무용	0.03	0.04	0.04	0.05	0.04	0.03	0.07	0.01	0.00	0.01
영화	4.0	3.3	3.6	3.6	3.7	4.0	4.6	2.4	1.1	1.6
대중음악/연예	0.1	0.1	0.3	0.5	0.5	0.3	0.5	0.2	0.00	0.1

주: 1)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세분화하여 구성함.
2) 2016년 조사에만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이 추가됨['역사,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포함 관람횟수 5.6회].
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2.

그림 10-3 연도별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2008~2022)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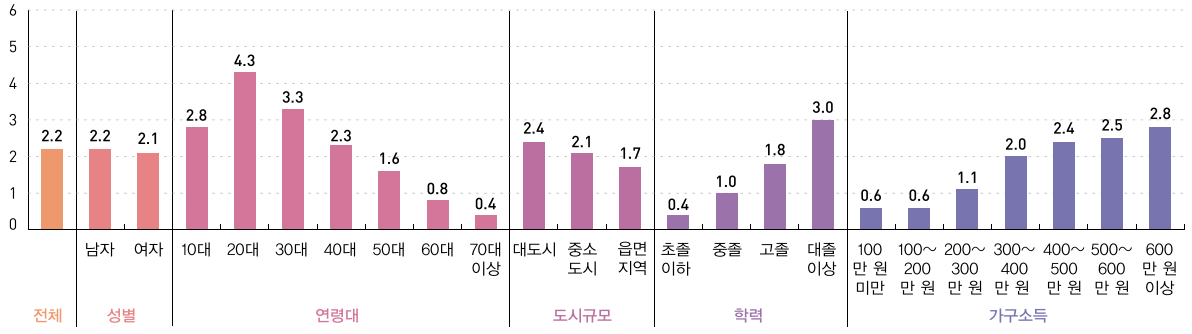


주: 1)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별도로 조사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2.

그림 10-4 일반특성별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2022)

(단위: 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22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22	1년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02 대 표

연간 독서량

Annual quantity of reading

지표 정의

연간 독서량*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읽은 종이책(일반도서 기준)의 평균 독서 권수로 정의한다.

- 연간 독서량을 통해 성인과 학생(초 · 중 · 고등학생)의 독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종이책과 전자책의 독서의 패턴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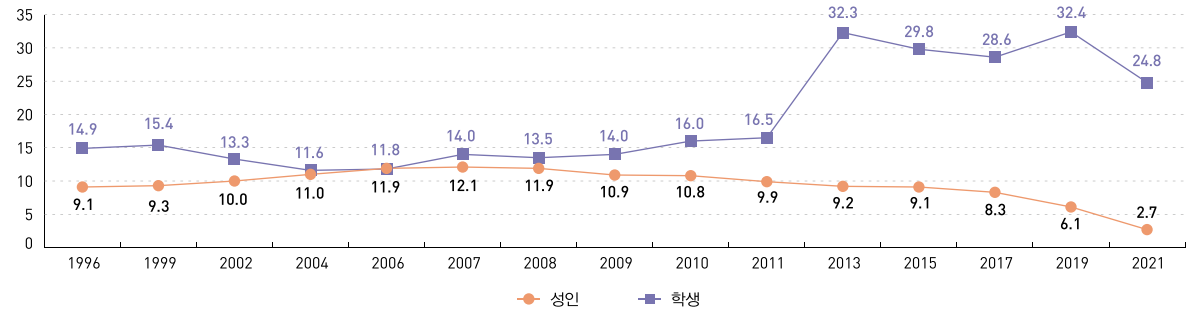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성인 독서량 = $\frac{\text{지난 1년 동안 성인 전체가 읽은 종이책 독서 권수의 합}}{\text{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전체의 수}} \times 100$
- 학생 독서량 = $\frac{\text{지난 1년 동안 학생 전체가 읽은 종이책 독서 권수의 합}}{\text{국내 거주하는 학생 전체의 수}} \times 100$

유의사항 성인과 학생(초 · 중 ·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집계하고, 성인은 만 19세 이상의 고졸이상자를,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림 10-5 연도별 연간 종이책 독서량 (199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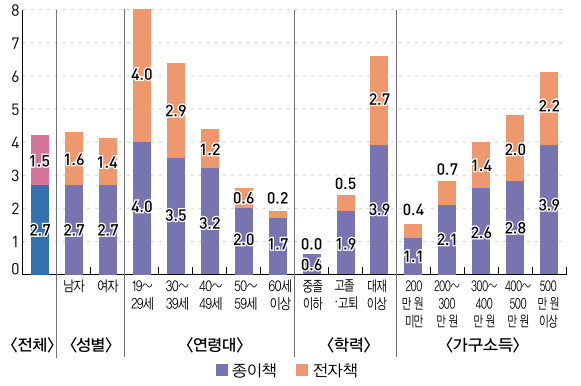
(단위: 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6 일반특성별 성인의 연간 독서량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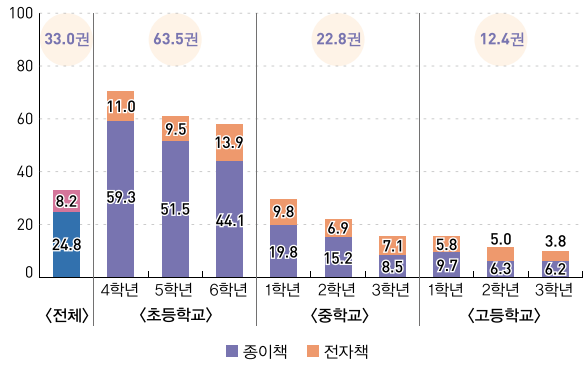
(단위: 권)



주: 소수점 2자리의 값에 의해 종이책과 전자책 독서량의 합이 전체의 값과 차이가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21

그림 10-7 학교급별 · 학년별 학생의 연간 독서량 (2021)

(단위: 권)



주: 학교급별 연간 독서량은 초등학생 63.5권, 중학생 22.8권, 고등학생 12.4권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2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1994	2021	2년

* 2010년 조사부터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부터 잡지와 만화책을 제외하여 집계함. 학생의 경우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외함.

02-1
연 관

연간 독서율

Annual rate of reading

지표 정의

연간 독서율*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종이책(일반도서 기준)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 및 학생(초 · 중 · 고등학생)의 비율로 정의한다.

• 연간 독서율은 국민들이 독서를 접하는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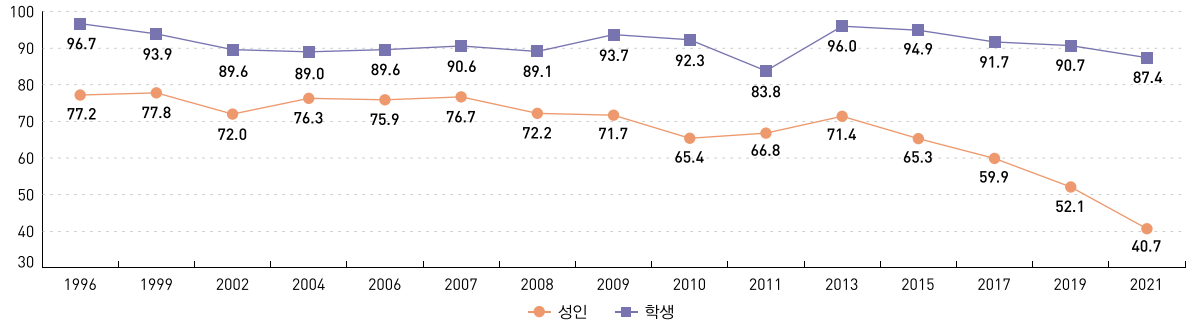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성인 독서율 = $\frac{\text{지난 1년 동안 종이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 전체의 수}}{\text{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전체의 수}} \times 100$

• 학생 독서율 = $\frac{\text{지난 1년 동안 종이책을 한 권 이상 읽은 학생 전체의 수}}{\text{국내 거주하는 학생 전체의 수}} \times 100$

그림 10-8 연도별 연간 종이책 독서율 (199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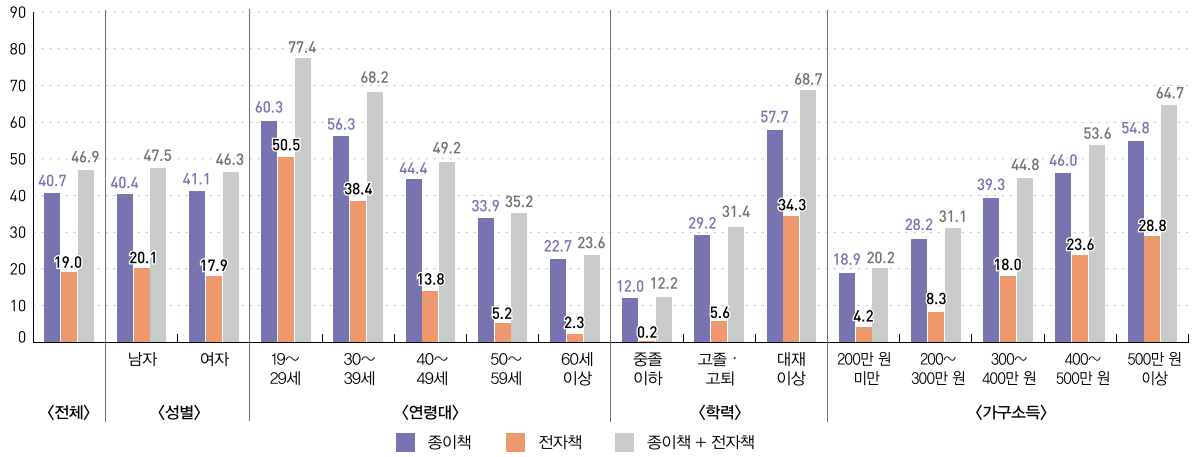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9 일반특성별 성인의 연간 독서율 (2021)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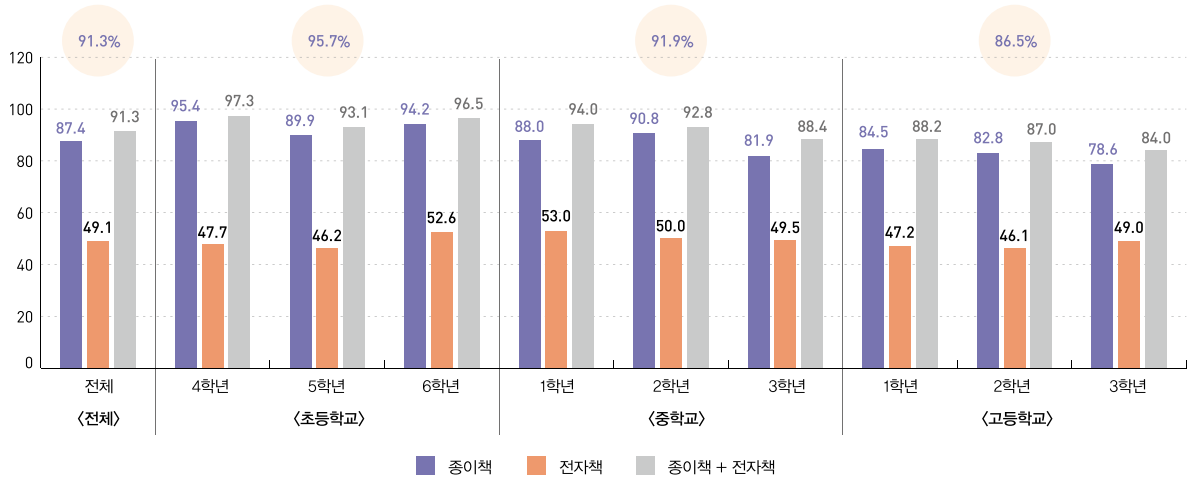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1994	2021	2년

* 2010년 조사부터 일반도서(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부터 잡지와 만화책을 제외하여 집계함. 학생의 경우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외함.

그림 10-10 학교급별 · 학년별 학생의 연간 독서율 (2021)

(단위: %)



주: 학교급별 연간 독서율(종이책+전자책)은 초등학생 95.7%, 중학생 91.9%, 고등학생 86.5%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21

03
대 표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per million people

지표 정의

주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 100만 명 대비 문화시설 수로 정의한다.

•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이 해당되며, 인구 대비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농어촌 산간지역 등 소외지역 문화 인프라 제고와 같은 사회보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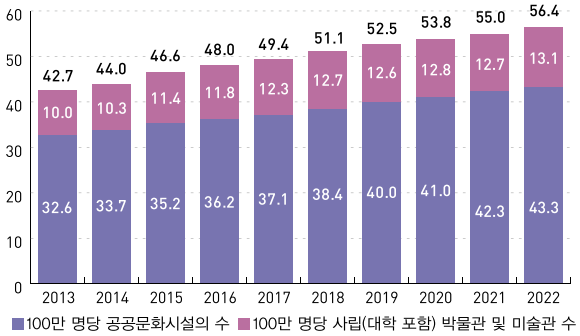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의 전체 문화시설 개수의 합계}}{\text{해당 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 \times 1{,}000{,}000$$

유의사항 동일한 기준으로 지표를 산정하기 위해, 주민등록 인구를 이용하여 재산출하여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과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다소 차이가 있음*.

그림 10-11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2013~2022)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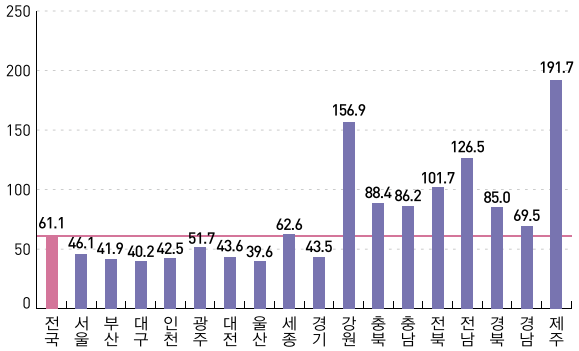


주: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만을 대상으로 함. 2013년부터 문화의 집이 추가되었으나 시계열을 위하여 통계산출에서는 제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03.28. 인출)

그림 10-12 시도별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2022)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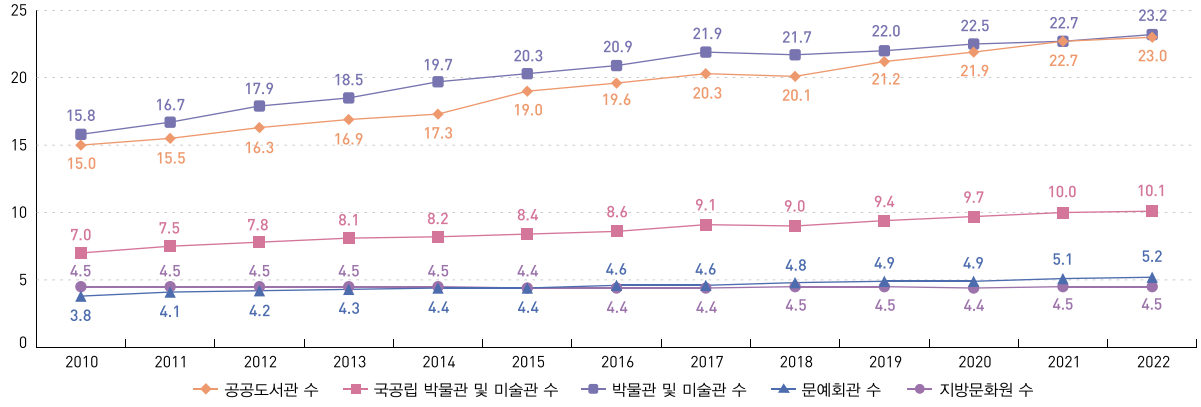


주: 시도별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2022년 해당 연도의 값이기 때문에 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2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03.29. 인출)

그림 10-13 유형별 인구 10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의 수 (2010~2022)

(단위: 개)



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전체와 국공립만의 통계를 별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03.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03	2022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거주자)	2008	2022	1개월

*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만을 대상으로 함. 2013년부터 문화의 집이 추가되었으나 시계열을 위하여 통계산출에서는 제외함.

04
대 표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ies per million people

지표 정의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 100만 명 대비 공공체육시설의 수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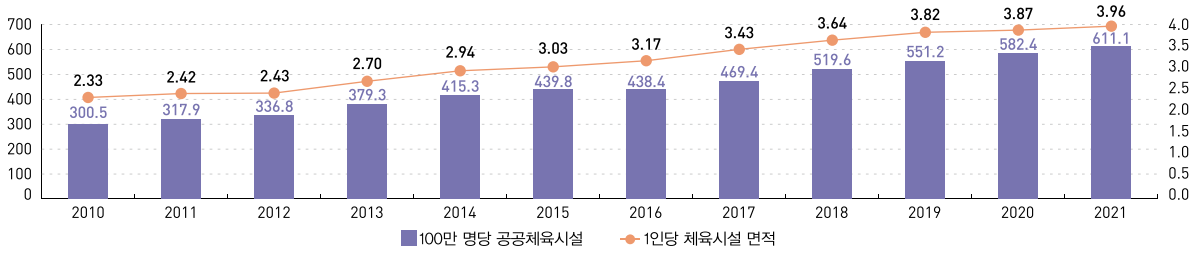
•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체육 및 여가 시설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의 공공 체육시설 수}}{\text{해당 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 \times 1{,}000{,}000$$

그림 10-1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2010~2021)

(단위: 개, ㎡)



주: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함)을 포함하며, 건립 중인 시설, 학교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체육시설 등은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각 연도 (http://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571&pDataCD=0417000000에서 2022.2.22.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03.30. 인출)

표 10-3 유형별 인구 100만 명당 체육시설의 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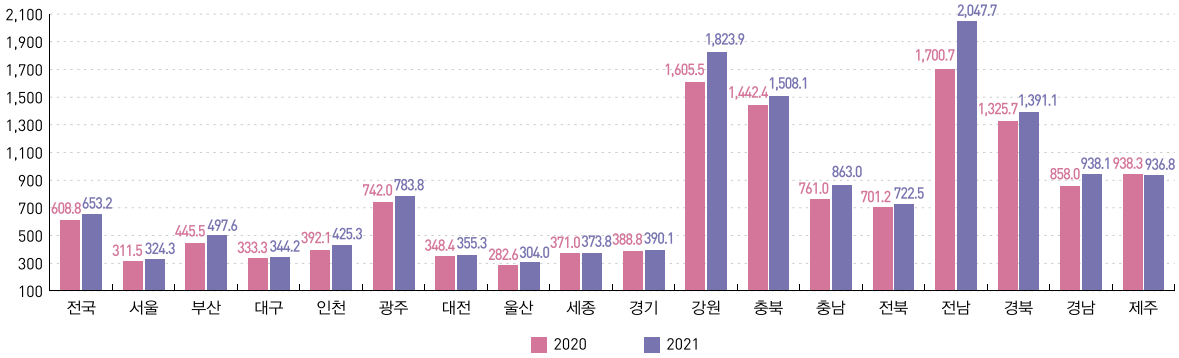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테니스장	기타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 수	21.2	24.7	492.9	16.6	97.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22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1에서 2023.03.30.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20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03.30. 인출)

그림 10-15 연도별 · 시도별 인구 100만 명당 체육시설의 수

(단위: 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각 연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1에서 2023.03.30.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03.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04	2021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08	2021	1개월

05
대 표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Annual utilization rate on art space

지표 정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문화예술공간(도서관, 박물관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 박물관, 도서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국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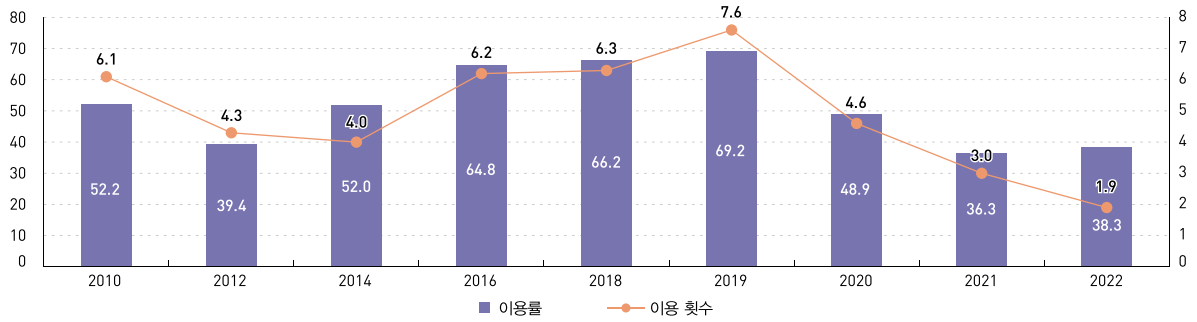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지난 1년간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공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15세 이상의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15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박물관, 도서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파악이 가능한 예술공간 위주로 조사하여 산출되었다.

그림 10-16 연도별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및 이용 횟수 (201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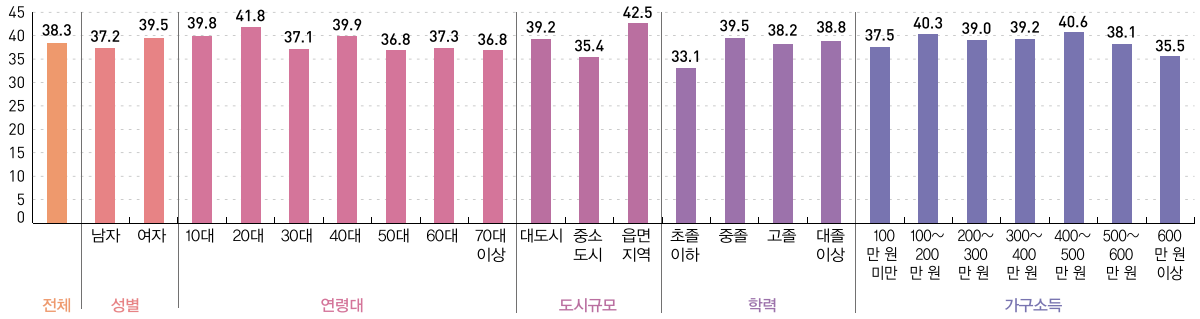
(단위: %, 회)



주: 1) 문화의 집은 2010년 조사부터, 주민자치단체와 민간공연장은 2012년 조사부터 추가되었으며, 문학관과 생활문화센터는 2016년도에 추가됨.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그림 10-17 일반특성별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2022)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8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22	1년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표 10-4 연도별 문화예술공간별 이용률 (2010~2022)

(단위: %)

문화예술 공간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52.2	39.4	52.0	64.8	66.2	69.2	48.9	36.3	38.3
시 · 군 · 구민회관	11.5	8.0	8.8	9.8	12.8	9.7	5.8	1.5	5.0
문화예술회관	11.5	6.6	6.6	5.5	8.0	5.4	2.6	1.4	2.2
복지회관	11.4	4.6	4.5	7.0	9.0	5.7	4.2	2.5	3.1
청소년회관	4.2	5.1	2.2	3.5	3.6	2.7	1.6	0.5	1.2
문화원	2.1	2.7	1.2	2.4	1.8	1.8	0.7	0.3	0.7
도서관	20.5	12.8	10.4	16.1	12.8	14.9	13.4	9.7	5.8
박물관	14.8	9.3	16.6	10.8	16.5	12.3	7.3	4.5	5.2
문화의 집	1.2	1.0	0.4	0.5	0.4	0.6	0.3	0.2	0.2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1.7	1.4	1.4	1.5	2.3	1.5	0.7	0.3	0.5
사설문화센터	6.0	5.3	7.7	6.1	6.7	5.8	2.6	1.1	3.4
주민자치센터	-	9.2	17.0	31.8	30.4	32.1	27.1	21.5	19.4
민간공연장	-	8.8	16.3	19.3	25.7	27.2	9.9	4.1	16.7
문학관	-	-	-	0.5	0.6	0.9	0.4	0.2	0.4
생활문화센터	-	-	-	2.0	1.7	2.5	1.2	0.5	1.5

주: 1) 문화의 집은 2010년 조사부터, 주민자치단체와 민간공연장은 2012년 조사부터 추가되었으며, 문학관과 생활문화센터는 2016년도에 추가됨.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2

06
대 표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활동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annual cultural arts activities

지표 정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창작 · 발표활동 등에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율로 정의한다.

-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성격을 가지며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 창작 참여기회의 제공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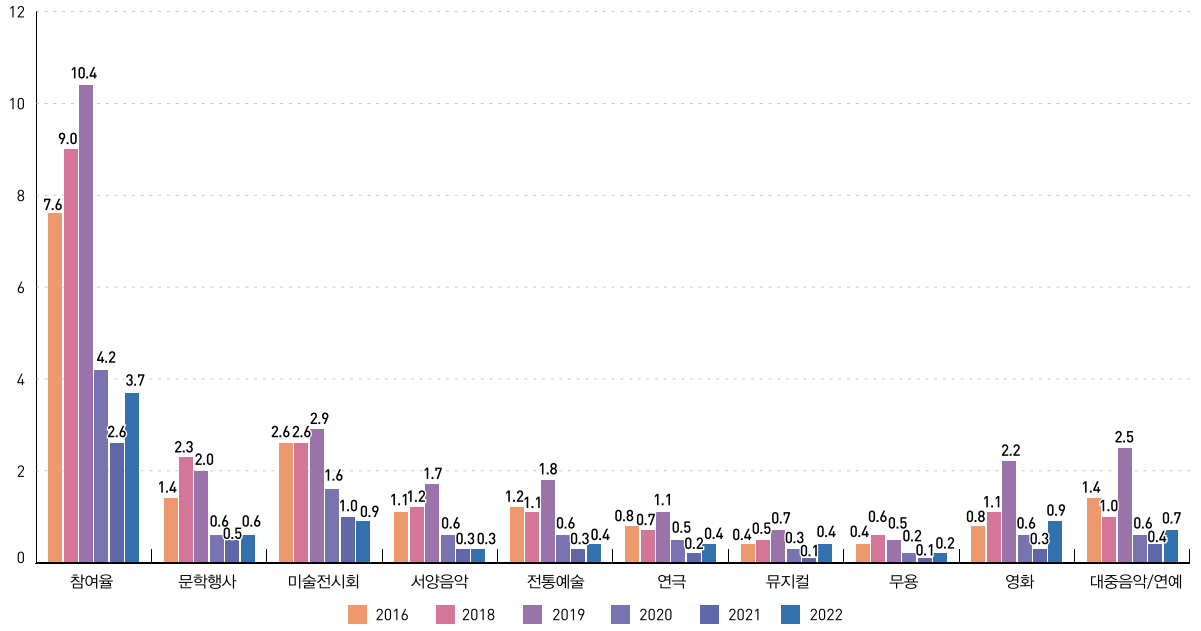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15세 이상의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15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2018년 예술활동 참여를 1회 이상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를 제외한 단순 방송출연 행위는 제외하였다.

그림 10-18 연도별 · 장르별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활동 참여율 (2012~2022)

(단위: %)



주: 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8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22	1년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표 10-5 일반특성별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 활동 참여율 (2022)

(단위: %)

구분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
전체		0.6	0.9	0.3	0.4	0.4	0.4	0.2	0.9	0.7
성별	남성	0.4	0.7	0.3	0.3	0.4	0.4	0.2	1.0	0.6
	여성	0.8	1.2	0.4	0.6	0.4	0.4	0.3	0.8	0.9
연령대	15~19세	2.4	1.0	0.6	0.2	0.9	-	1.0	0.6	1.6
	20대	1.1	2.1	0.6	0.9	1.5	0.8	0.4	2.6	2.3
	30대	0.3	1.2	0.2	0.6	0.3	0.4	0.2	1.2	0.7
	40대	0.6	1.0	0.5	0.3	0.3	0.7	0.4	0.9	0.8
	50대	0.2	0.9	0.5	0.3	0.2	0.1	0.1	0.6	0.3
	60대	0.5	0.2	0.1	0.4	0.1	0.2	0.0	0.1	0.1
	70세 이상	0.3	0.1	0.1	0.5	-	0.0	0.2	0.0	-
학력	초졸 이하	0.3	0.3	0.1	0.9	-	0.1	-	0.1	0.2
	중졸	0.9	0.2	0.2	0.1	0.3	0.0	0.2	0.2	0.5
	고졸	0.5	0.9	0.3	0.5	0.6	0.3	0.3	0.7	0.7
	대졸 이상	0.6	1.2	0.4	0.4	0.3	0.6	0.2	1.3	0.9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	0.0	-	0.6	-	0.2	-	0.3	0.2
	100~200만 원	0.5	0.2	0.1	0.3	-	-	0.2	0.1	0.1
	200~300만 원	0.2	0.4	0.3	0.4	0.0	0.4	0.2	0.2	0.2
	300~400만 원	0.3	1.2	0.2	0.5	0.6	0.3	0.4	0.5	0.5
	400~500만 원	0.8	0.8	0.4	0.3	0.5	0.5	0.2	1.1	0.6
	500~600만 원	0.8	1.4	0.4	0.5	0.7	0.3	0.3	0.8	1.2
	600만 원 이상	0.6	1.1	0.5	0.4	0.3	0.6	0.2	1.6	1.2
지역	수도권	0.6	0.9	0.2	0.4	0.5	0.4	0.2	1.3	1.0
	강원/제주권	0.8	1.5	0.4	1.0	0.3	0.8	0.3	0.9	1.0
	충청/세종권	0.2	0.5	0.4	0.2	0.2	0.1	0.1	0.4	0.3
	호남권	0.4	1.2	1.1	0.8	0.7	0.9	1.0	0.9	0.6
	대경권	0.1	0.2	0.2	0.5	-	0.1	0.2	0.2	0.2
	동남권	1.1	1.5	0.4	0.3	0.4	0.2	0.1	0.4	0.4
지역규모	대도시	1.1	1.2	0.4	0.6	0.4	0.4	0.2	0.9	0.8
	중소도시	0.2	0.8	0.3	0.3	0.4	0.5	0.3	1.2	0.7
	읍면지역	0.4	0.6	0.4	0.3	0.3	0.1	0.1	0.3	0.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2

07
대 표

생활체육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sport for all

지표 정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전체 응답자 중 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다.

-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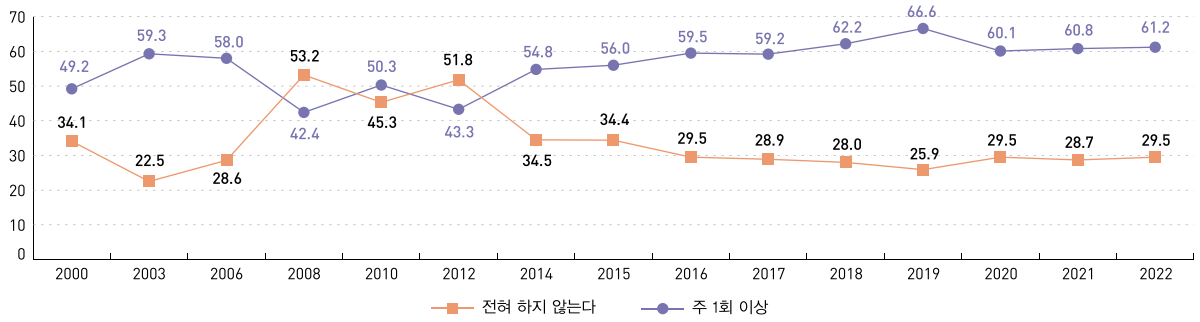
측정 산식

- $\dfrac{\text{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0세 이상의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10세 이상의 국민들이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운동을 1주일에 1회 이상 한 비율을 측정한다.

그림 10-19 연도별 생활체육 참여율 (200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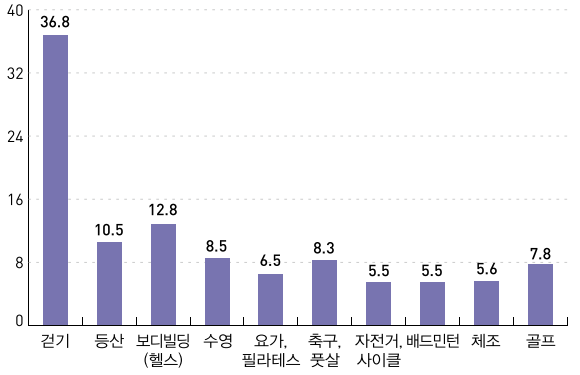
(단위: %)



주: 국민생활체육조사는 2012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4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20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상위 10개 종목별 참여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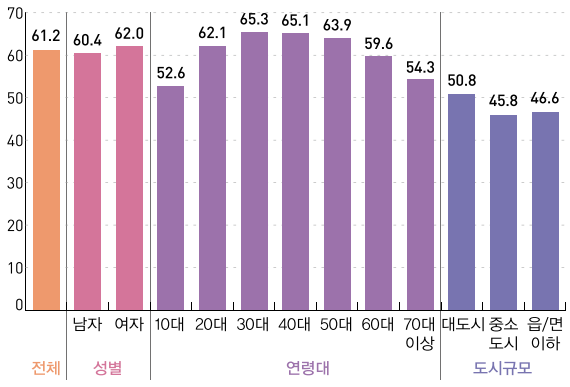
(단위: %)



주: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은 1+2+3순위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22

그림 10-21 일반특성별 생활체육 참여율 (2022)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1994	2018	2년, 1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19	2022	1년

*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는 2012년까지 2년 주기, 2014년 조사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명칭이 국민생활체육조사로 변경됨.

07-1
연 관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lifetime spo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장애인생활체육조사」에서 산출되는 통계로, 등록장애인들 중 생활체육 완전실행자에 해당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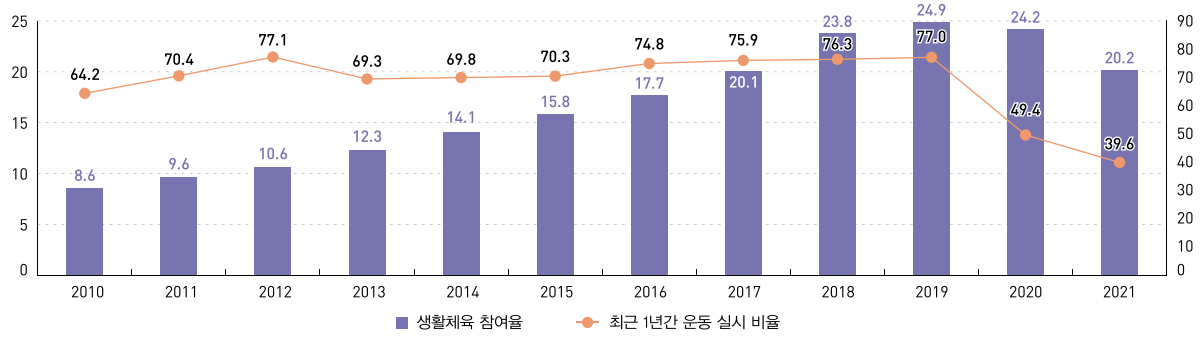
-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dfrac{\text{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으로 1주일에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수}}{\text{만 10세 이상 69세 미만 등록 재가 장애인 수}} \times 100$

그림 10-22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과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비율 (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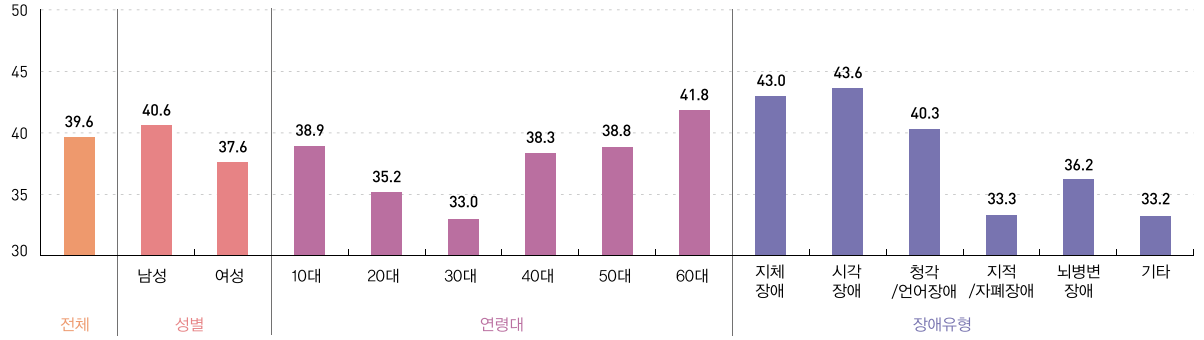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각 연도

그림 10-23 일반특성별 생활체육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비율 (2021)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조사, 202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조사*	2006	2021	1년

*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명칭이 장애인생활체육조사로 변경됨.

08
대 표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Benefit rate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지표 정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초 · 중 · 고등학교와 학생의 비율로 정의한다.

• 문화예술 경험 기회 및 향유 능력 제고, 공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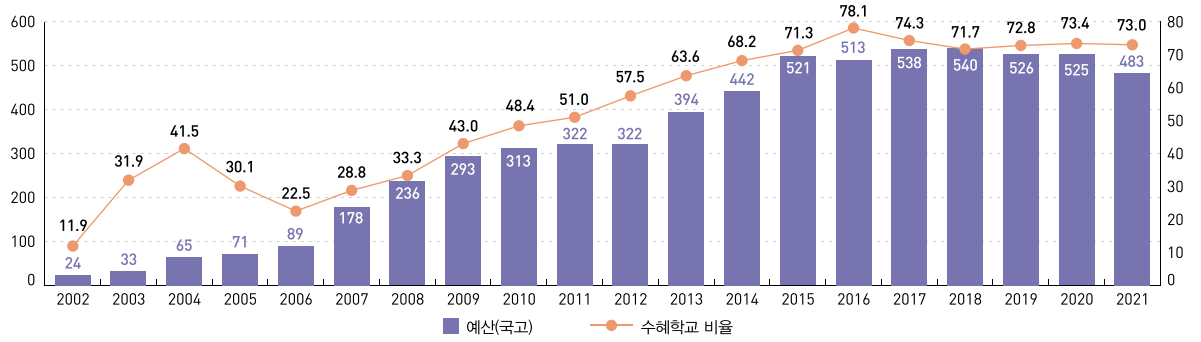
•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학교 비율 = $\frac{\text{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학교 수}}{\text{전체 초 · 중 · 고등학교 수}} \times 100$

•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비율 = $\frac{\text{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text{전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수}} \times 100$

유의사항 각 통계의 출처가 다르게 산출하였으므로 계산하는 기준에 따라 다소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

그림 10-24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혜학교 비율 및 지원예산 (200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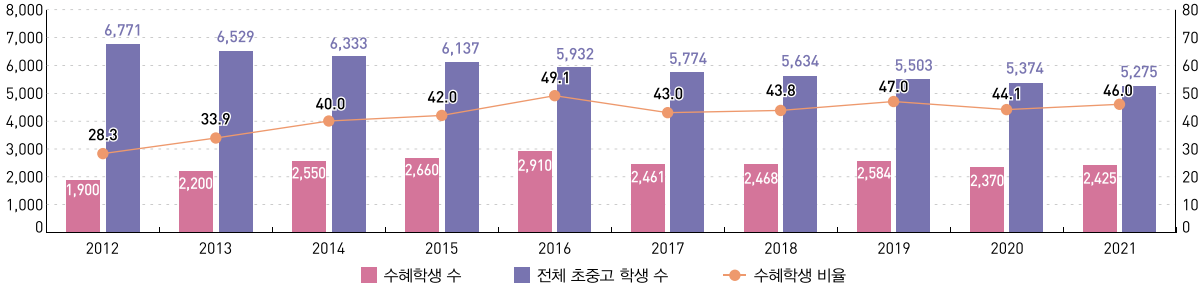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그림 10-25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2012~2021)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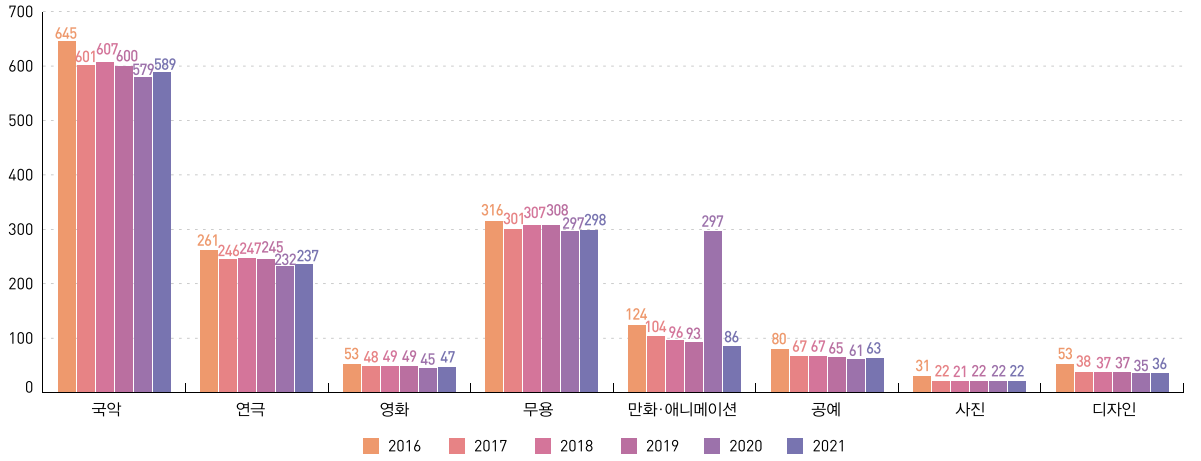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단위 수혜자 통계,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2005	2021	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단위 수혜자 통계	2019	2021	분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21	1년

그림 10-26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장르별 지원 시수 (201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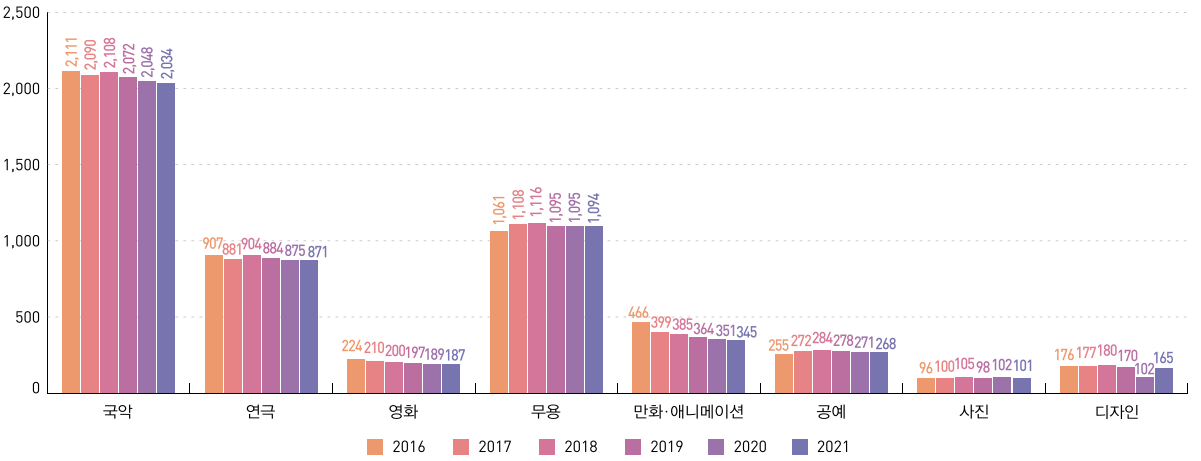
(단위: 천 시수)



주: 2016년에는 문학 1천, 미술 4천, 음악 2천 시수 지원하였음.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각 연도

그림 10-27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장르별 강사 수 (2016~2021)

(단위: 명)



주: 2016년에는 문학 8명, 미술 39명, 음악 14명 지원하였음.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각 연도

09
대 표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Experience rate of social arts and culture education

지표 정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정규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강좌나 강습(온라인 교육, 방송교육 포함)의 형태로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 초 · 중 · 고등학교 정규 학교 교육 외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안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수준, 문화예술 향유 능력 개발의 기회 정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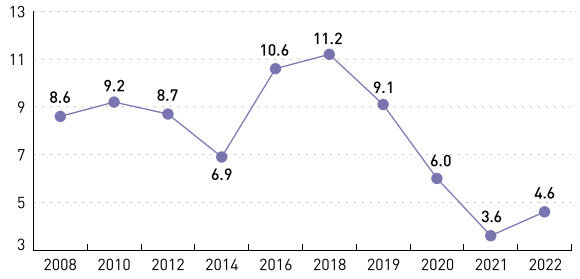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간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15세 이상의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산출하였음.

그림 10-28 연도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8~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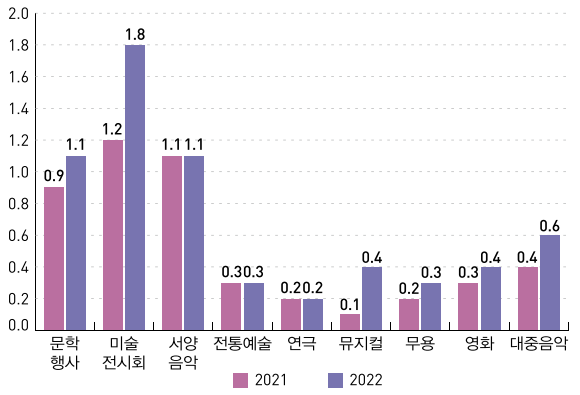


주: 1) 2010년 이전의 자료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경험률이며, 2012년 이후는 지난 1년 동안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임.
2) 2016년 사회 문화 예술교육 경험률은 역사, 철학 강의 및 역사탐방을 포함하지 않는 값이며, 포함했을 때는 11.5%임.
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그림 10-29 연도별 · 문화장르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2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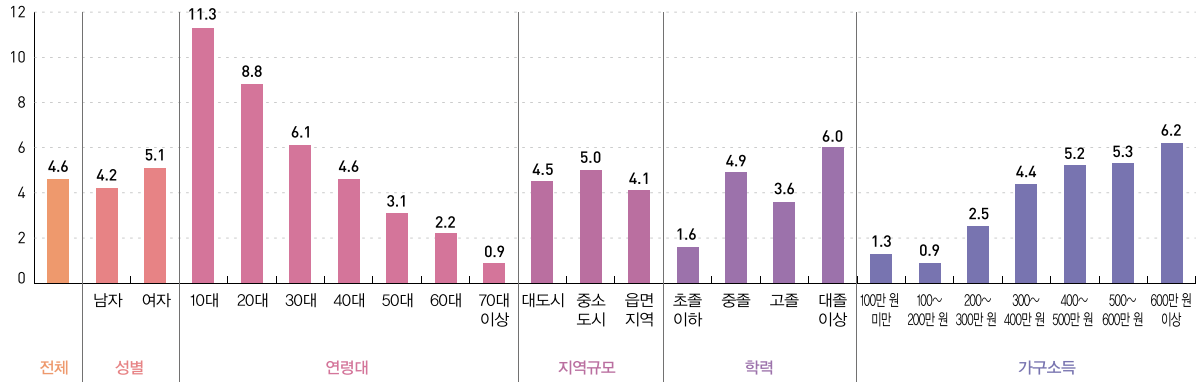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2

그림 10-30 일반특성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22)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8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22	1년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10
대 표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Benefit rate of integrated cultural voucher

지표 정의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수 대비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여 문화여가를 향유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로 경제적 이유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의 제공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text{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 \times 100$$

유의사항 본 통계의 모수는 문화소외계층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해당자의 합임.

표 10-6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와 수혜자 비율 (201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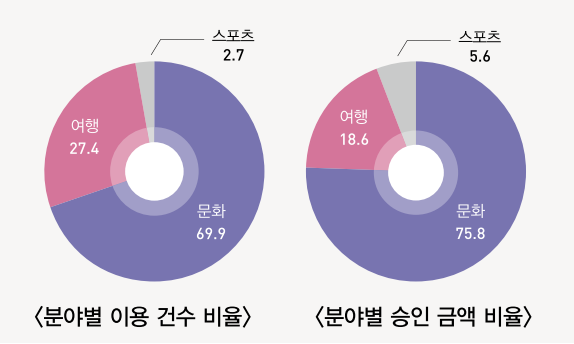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전체	1,592	62.2	1,629	74.2	1,753	73.8	1,975	81.7

주: 수혜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문화소외계층의 합 대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비율을 의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이용 현황 (내부자료)

그림 10-3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분야별 이용 비율 (2021)

(단위: %)



〈분야별 이용 건수 비율〉 〈분야별 승인 금액 비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이용 현황 (내부자료)

표 10-7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세부분야별 이용 건수와 승인 금액 (2021)

(단위: 천 건, 백만 원)

구분	이용 건수	승인 금액
전체	7,667	176,884
도서	3,460	95,220
음악	152	3,587
영상	1,150	17,249
공연	40	933
미술	244	9,755
문화체험	44	2,694
문화일반	270	4,577
교통수단	1,725	21,543
여행사	5	177
관광지	261	6,395
숙박	107	4,859
스포츠관람	3	66
체육용품	145	8,680
체육시설	60	1,14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이용 현황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이용 현황 (내부자료)	2014	2021	1년

* 2014년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으로 통합되었음.

11 대 표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Benefit rate of sports class voucher

지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만 5~18세 유소년 및 청소년들 중 스포츠바우처 지정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정과 같은 소외계층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text{기초생활수급자 만 5 ~ 18세 유 · 청소년의 수}} \times 100$$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의 만 5~18세 유소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

표 10-8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와 수혜자 비율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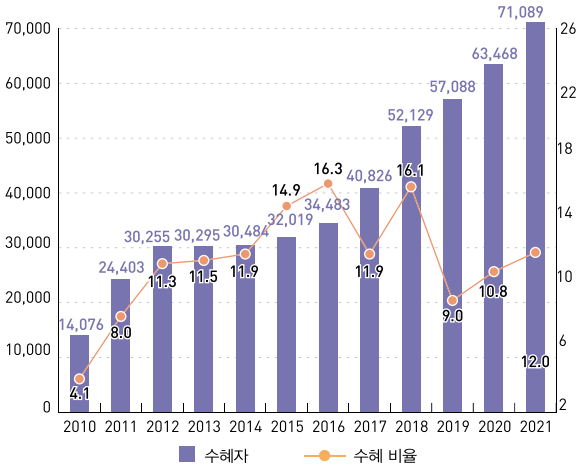
(단위: 명, %, 억, 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혜자 수	30,255	30,295	30,484	32,019	34,483	40,826	52,129	57,088	63,468	71,089
수혜 비율	11.3	11.5	11.9	14.9	16.3	6.5	8.2	9.0	10.8	12.0
예산	105.8	105.8	109.7	117.6	128.5	173.6	196.0	215.0	244.0	291.0
만족도	83.1	83.8	84.5	85.8	89.1	91.6	92.6	94.4	94.5	9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보고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0-32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및 수혜율 (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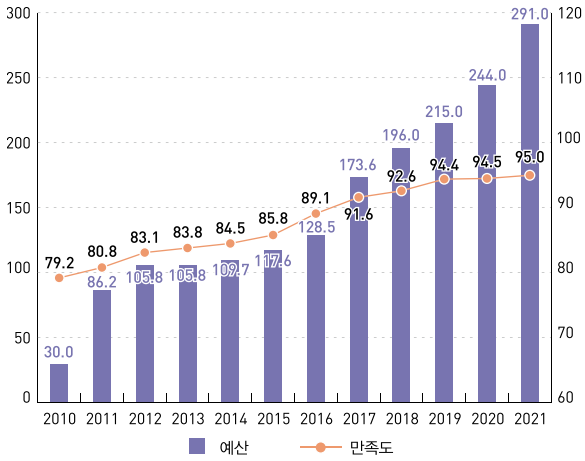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보고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0-33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및 만족도 (2010~2021)

(단위: 억 원, 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보고 (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보고 (내부자료)	2009	2021	1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977	2021	1년

12
대 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Number of elderly cultural programs beneficiary

지표 정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지방문화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로 측정한다.

• 고령화시대 어르신 세대의 여가기회 및 참여활동 확대로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수**

표 10-9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예산 및 수혜자 수 (2008~2021)

(단위: 억 원, 개,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지원액	15.0	19.0	23.0	21.9	34.5	32.0	40.5	38.5	46.8	42.1	37.9	32.7	27.7	25.0
참여문화시설 수	100	137	134	149	198	193	295	262	268	310	265	258	179	182
프로그램 수	100	137	183	202	334	311	415	435	391	332	297	311	202	187
수혜자 수	3,522	4,740	5,841	7,037	11,804	12,068	13,366	14,042	12,111	9,152	8,628	10,039	5,865	4,51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내부자료)

표 10-10 성별 · 지역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및 비율 (2021)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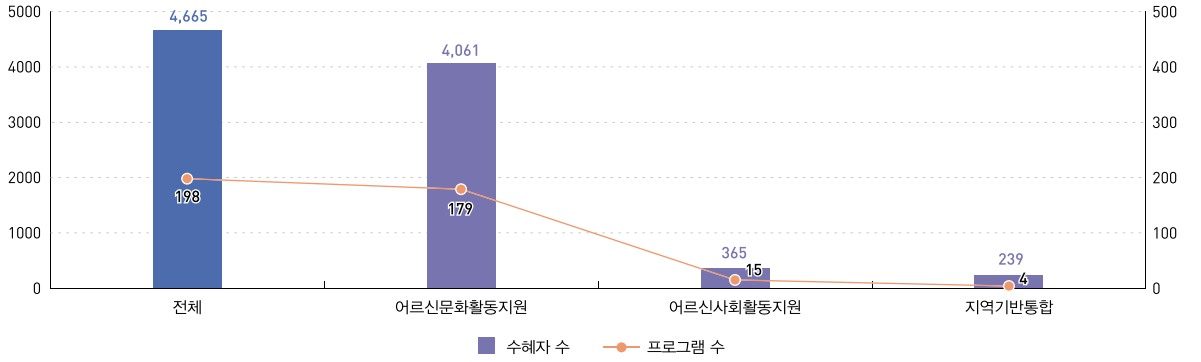
구분		수혜자 수	비율
성	남자	988	21.9
	여자	3,525	78.1

구분		수혜자 수	비율
지역	서울/경기	1,693	37.5
	강원/충청	751	16.6
	영남	1,253	27.8
	호남/제주	816	18.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내부자료)

그림 10-34 어르신 문화프로그램별 수혜자 수와 프로그램 수 (2022)

(단위: 명, 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보고 (내부자료)	2005	2021	1년

13
대 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Benefit rate of disabled sport leaders service

지표 정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수혜를 받은 비율로 정의된다.

•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확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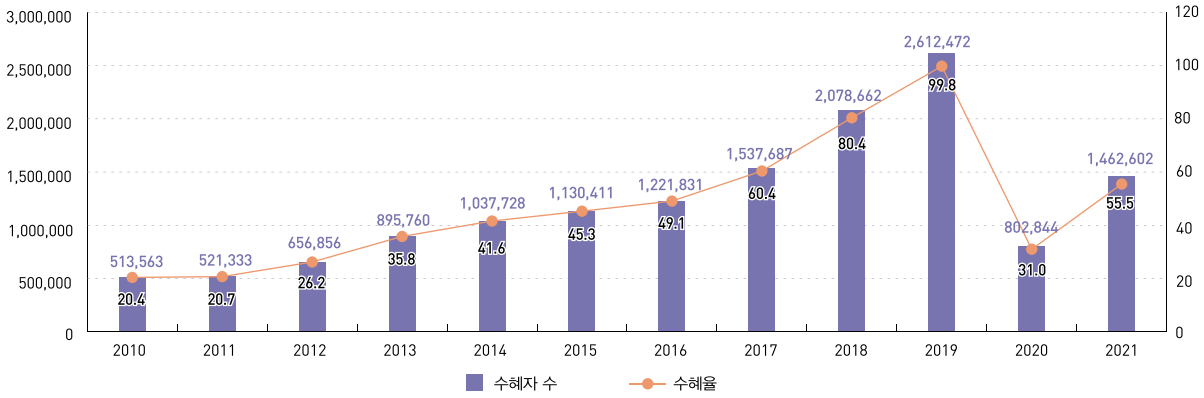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자 수}}{\text{등록 장애인 수}} \times 100$$

유의사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한 대상으로 작성한 지표임.

그림 10-35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혜자 수와 수혜율 (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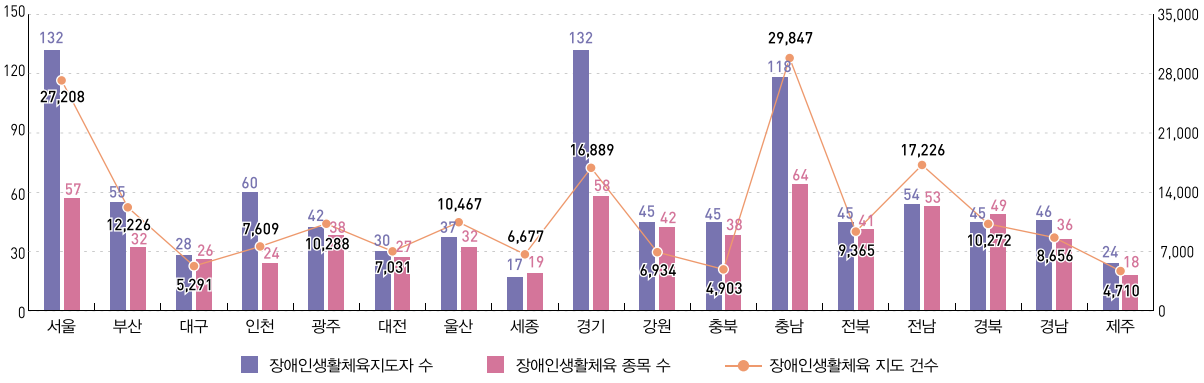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내부자료)

그림 10-36 시도별 장애인생활체육체육지도자 수와 종목 수, 지도 건수 (2021)

(단위: 명, 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사업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사업보고 (내부자료)	-	2021	1년
보건복지부	시 · 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1989	2021	1년

14 대 표

GDP 대비 문화예산

Cultural budget for GDP

지표 정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을 GDP로 나눈 값을 GDP 대비 문화예산*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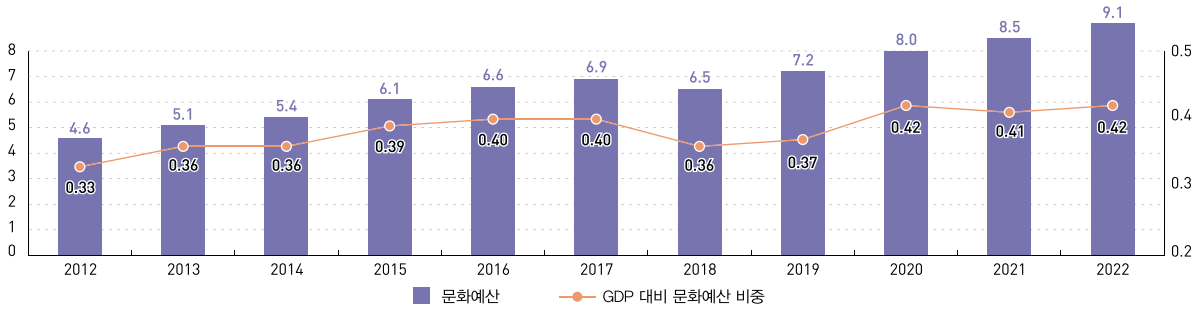
• GDP 대비 문화예산 비율을 통하여 정부예산 중 문화분야에 대한 지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text{GDP}}$

그림 10-37 GDP 대비 문화예산 비중 (2012~2022)

(단위: 조, %)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theme/themeDetail.do?itmId=T7000#none에서 2023.05.03. 인출); 통계청, 연간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111Y002&conn_path=I3에서 2023.05.03. 인출)

표 10-11 정부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비중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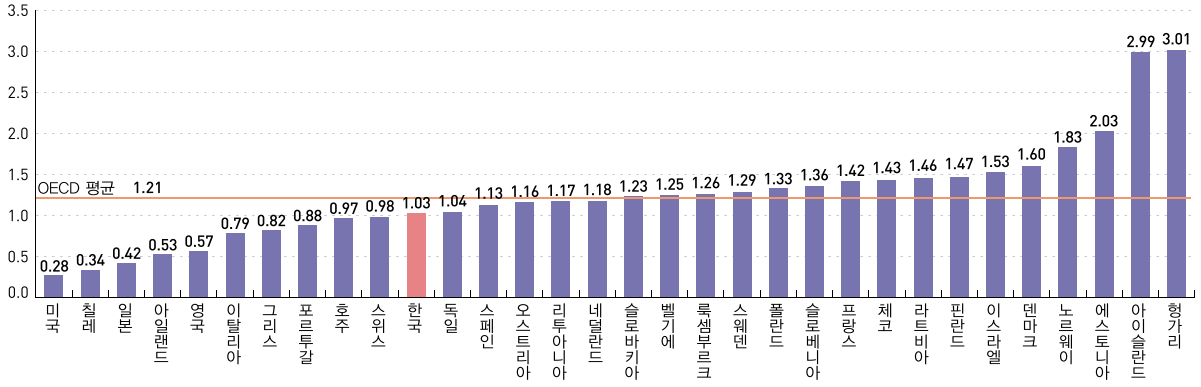
(단위: 조,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체육관광부(A)	3.7	4.1	4.4	5.0	5.5	5.7	5.3	5.9	6.5	6.9	7.4
정부(B)	325.4	341.9	355.8	375.4	386.3	400.5	428.8	469.6	512.3	558.0	607.7
비율(A/B)	1.14	1.2	1.24	1.33	1.42	1.42	1.24	1.26	1.27	1.24	1.22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3.05.03. 인출)

그림 10-38 OECD 국가의 GDP 대비 오락문화비 정부지출 비중 (2019)

(단위: %)



주: 1) 오락문화비는 일반정부 총지출 기준

자료: OECD.Stat, Government expenditure by function (COFOG) (https://stats.oecd.org/index.aspx?r=829815에서 2022.01.04. 인출); OECD.Stat, Gross domestic product(GDP)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TSI4_2018에서 2022.01.0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 예산	-	2022	1년

*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미래부와 방통위의 일부 문화 관련 예산을 의미

15 대 표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Leisure culture expenditure for household consumption

지표 정의

가계의 국내 최종지출최종소비* 중에서 오락, 문화 등의 명목 오락문화비 사용 비중을 산출하여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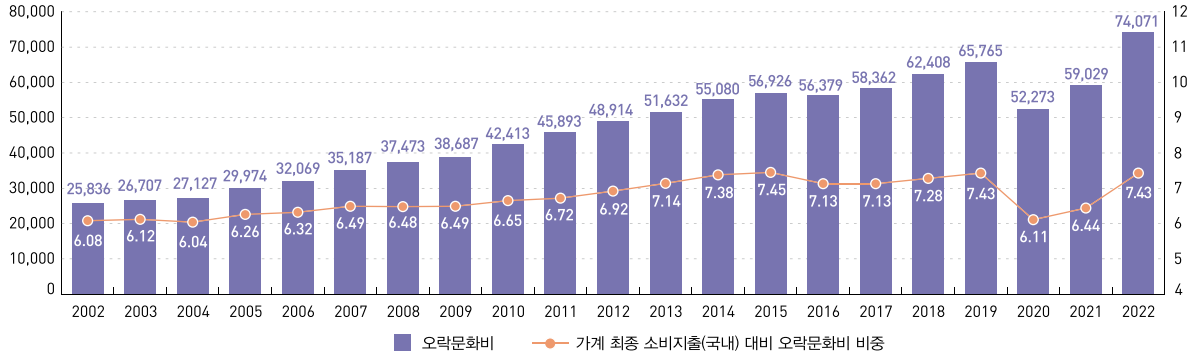
• 가계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지출 중 오락문화비 지출 비중의 정도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frac{\text{전체 가계의 국내 오락문화 최종 소비지출 금액}}{\text{전체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 금액}} \times 100$$

그림 10-39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2002~2022)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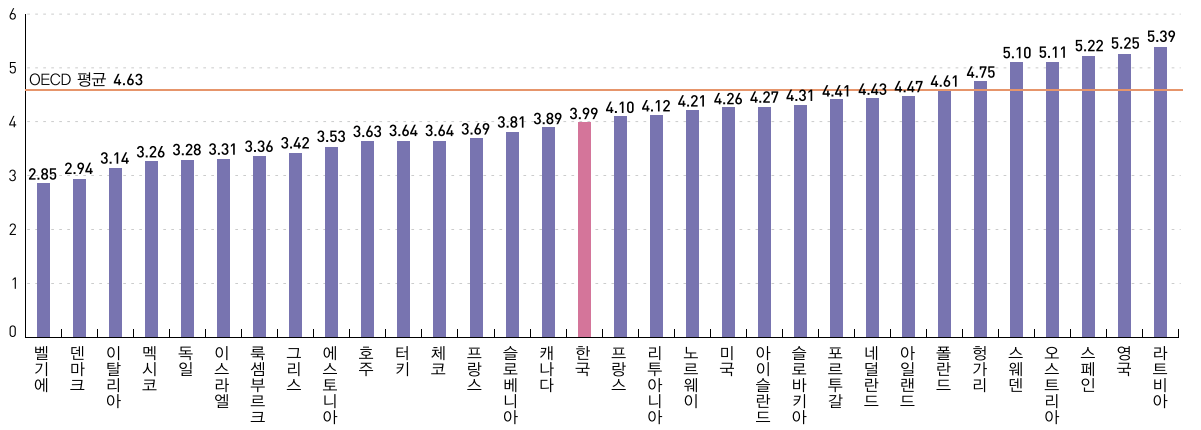


주: 오락문화비는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명목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에서 2023.05.03. 인출)

그림 10-40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2021)

(단위: %)



주: 1) 오락문화비는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명목가격 기준

2) 국가별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칠레와 이이슬란드는 2020년도 자료를 이용함.

자료: OECD.Stat,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5에서 2023.05.04. 인출); OECD.Stat, Gross domestic product(GDP),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TSI4_2018에서 2023.05.0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은행	국민계정	1953	2022	1년

* 가계의 국내 최종 소비지출 대비 여가문화비 지출 비중을 시계열로 비교하기 위해 명목금액으로 산출하였음.

11

주거

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2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03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04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05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06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07 노숙인 수
0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09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10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11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주거의 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주거의 안정성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노숙인 수	
주거비 부담 가능성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01
대 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Percentage of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지표 정의

전체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주거 수준으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 · 성능 및 환경 기준 등이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및 규모는 주거의 질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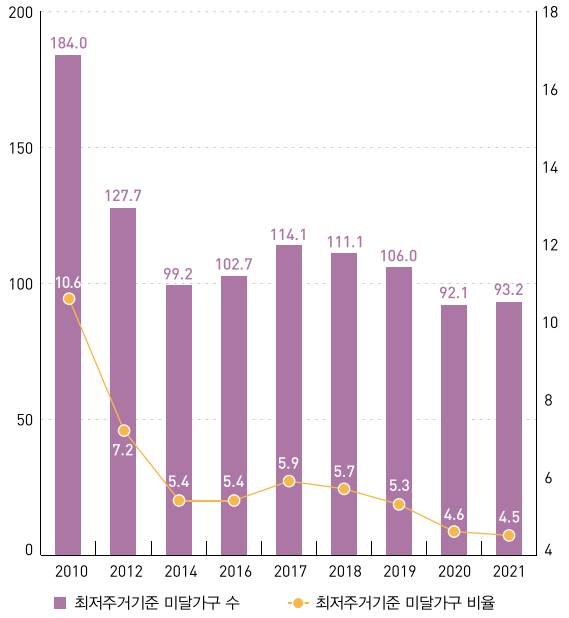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면적기준, 방수기준 및 설비기준 미달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유의사항 법으로 규정된 최저주거기준 중에서 정량적 정보 파악이 어려운 구조 · 성능 · 환경 기준은 제외하였고, 주거실태조사가 표본조사인 점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는 추정치이다.

그림 11-1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및 비율 (2010~2021)

(단위: 만 가구,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11-1 지역별 · 소득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21)

(단위: %)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	면적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침실기준 미달
전체		4.5	3.3	2.7	0.2
지역별	수도권	5.5	4.7	2.7	0.3
	광역시 등	3.1	2.4	2.7	0.1
	도지역	3.9	1.6	3.2	0.2
소득별	하위	7.3	5.3	5.1	0.2
	중위	3.1	2.2	1.4	0.2
	상위	1.4	1.1	0.4	0.2

주: 1)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소득계층은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 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22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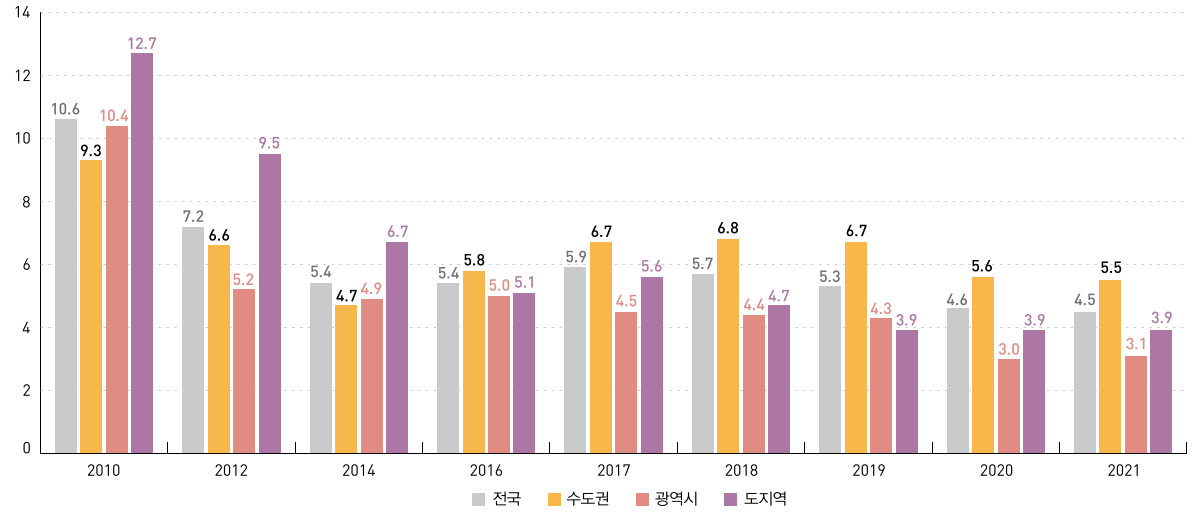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21	1년

* 2016년까지는 2년 주기,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에 따라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 ·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 ·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 성능 및 환경 기준을 최저주거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최저주거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그림 11-2 연도별 ·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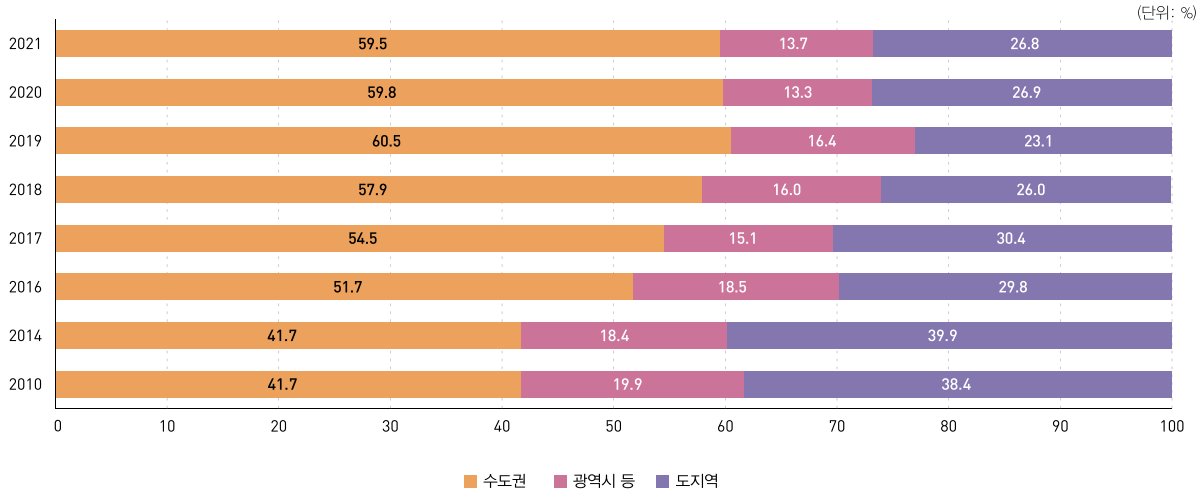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1-3 연도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11-2 연도별 · 점유형태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단위: %)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0.3	0.6	0.3	0.2	0.2	0.2	0.1	0.1	0.1
자가	0.1	0.1	0.1	0.1	0.0	0.1	0.1	0.0	0.0
전세	0.2	0.6	0.3	0.1	0.1	0.2	0.1	0.2	0.1
보증금 있는 월세	0.9	1.6	0.9	0.7	0.6	0.5	0.4	0.3	0.4
보증금 없는 월세	0.8	1.8	0.7	1.3	0.2	1.3	0.1	0.3	0.5
무상	0.4	1.5	0.2	0.2	0.4	0.1	0.1	0.4	0.3

주: 1) 거실 및 식당 수가 방의 개수에 포함됨.
2) 2012년도의 경우 부엌, 거실, 화장실, 창고를 제외한 방 수를 조사하였으므로 방의 개수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를 단칸방으로 간주함.
3)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02
대 표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Number of low-income households in receipt of housing improvement support households

지표 정의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이란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열악한 주택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물리적 보완이나 개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주거급여사업 중 수선유지급여사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2개 사업 지원가구 수의 합**
 - 2020년까지 포함된 집수리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지방정부로 이관

유의사항 관련 사업의 주무부처 이관 및 지방정부 이양 등을 감안하여 연간 지원가구 수 및 내용을 이해해야 함.

표 11-3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2011~2022)

(단위: 가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주거급여사업[1]	16,624	14,605	14,165	13,877	78,294	76,928	73,084	82,960	87,582	95,876	108,103	112,709
					(9,792)	(21,207)	(18,308)	(17,011)	(22,264)	(18,519)	(18,801)	(19,607)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2]	23,654	4,217	1,527	2,219	1,291	-	-	-	-	-	-	-
집수리사업	10,860	6,360	4,457	2,049	765	1,067	1,241	1,302	848	1,776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21,428	29,628	36,508	42,158	40,707	29,468	26,128	30,385	34,195	33,233	33,234	29,444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1,115	1,054	1,048	934	806	413	754	877	907	921	900	900
계[3]	77,293	64,514	75,859	83,557	149,351	134,597	101,207	115,524	123,532	131,806	109,003	113,609

주: 1) 2014년까지는 주거현물급여(보건복지부), 2015년은 수선유지급여, ()안은 연간수선완료 가구 실적임.
2) 환경부 사업이었으나 2016년 이후 주거급여사업(국토교통부)으로 통합
3) 2021년부터는 지방정부로 이양된 집수리 사업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미포함
자료 : 각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내부자료)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내부자료)	2015	2022	부정기
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내부자료)	-	2022	부정기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은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음.

03
대 표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Percentages of households residing in nonhousing accommodation

지표 정의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처가 있으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여관 등 숙박시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무허가 불량 건축물 등이 해당되나 오피스텔과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은 제외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 오피스텔과 기타로만 구분되어 있으므로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에서 오피스텔 거주가구를 제외한 가구로 계산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숙박업소의 객실 거주가구 수 + 판잣집,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수 + 기타 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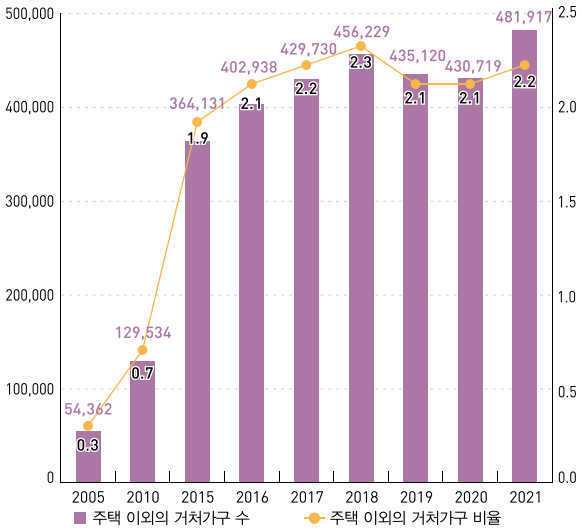
또는

$$\frac{\text{(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오피스텔 거주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유의사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및 오피스텔과 기숙사 · 특수 사회시설 등으로 구분해왔다. 다만, 2021년 조사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 유형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림 11-4 연도별 주택 이외 거처가구 규모 및 비율 (2005~2021)

(단위: 가구, %)



주 : 1) 2015년 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도입 이전에는 기본 항목에 대한 조사를 현장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 이후에는 등록센서스 기반의 조사 방식을 따름.
2) 2015년 이후 값은 등록센서스를 활용한 전수부문의 결과임.
3) 주택 이외의 거처는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으로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4.11. 인출)

표 11-4 연도별·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현황 (2016~2021)

(단위: %)

구분	주택 이외 거처가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세 미만	0.7	0.4	0.5	0.4	0.4	0.9
20~29세	14.4	20.7	15.1	14.4	14.1	31.6
30~39세	15.6	11.6	14.9	14.5	14.2	33.2
40~49세	18.4	28.7	16.9	16.2	15.7	17.5
50~64세	35.8	27.5	36.9	37.6	37.7	13.5
65세 이상	15.1	11.2	15.7	16.9	17.8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등록센서스를 활용한 전수부문의 결과임.
2) 주택 이외의 거처는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오피스텔,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하고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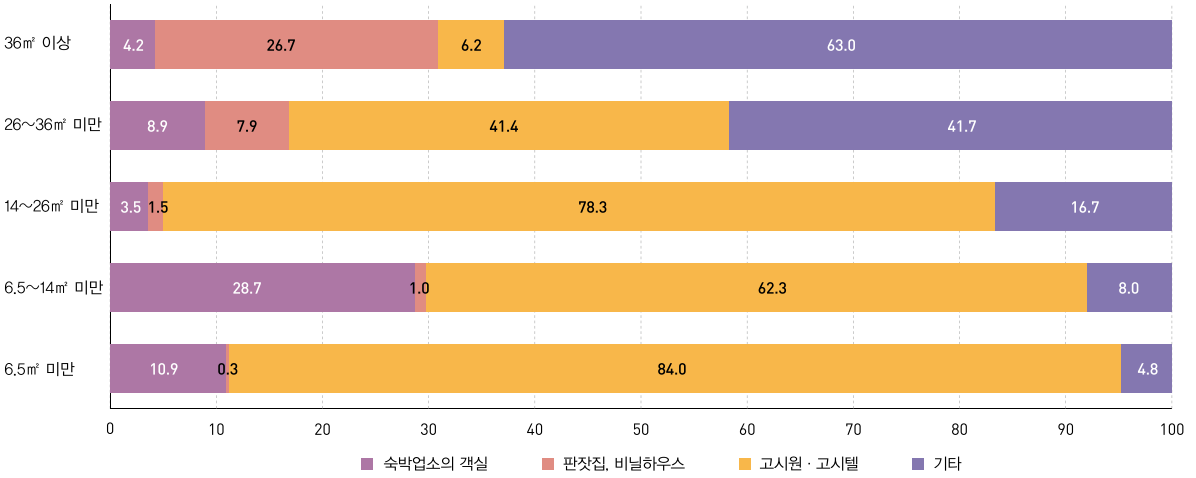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3.04.1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7	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21	1년

그림 11-5 주거전용면적별 · 거처 유형별 주택 이외의 거처 분포 (2017)

(단위: %)



주: 1) 무응답, 반올림, 신뢰도가 낮아 공표되지 않는 항목의 존재 등으로 인해 전체와 하위 구성항목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거처 유형의 기타 중 일터의 일부공간과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2019 (http://kosis.or.kr에서 2023.04.12. 인출)

표 11-5 지역별 · 거처 유형별 주택 이외의 거처 분포 (2017)

(단위: 가구, %)

구분	가구 수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 비닐하우스	고시원 · 고시텔	기타
계	369,501	8.2	1.8	41.0	49.0
수도권	190,186	3.5	1.6	68.7	26.2
비수도권	179,315	13.3	2.0	11.6	73.1

주: 1) 무응답, 반올림, 신뢰도가 낮아 공표되지 않는 항목의 존재 등으로 인해 전체와 하위 구성항목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거처 유형의 기타 중 일터의 일부공간과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2019 (http://kosis.or.kr에서 2023.04.12. 인출)

04
대 표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Number of housing units per 1,000 population

지표 정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전체 주택 수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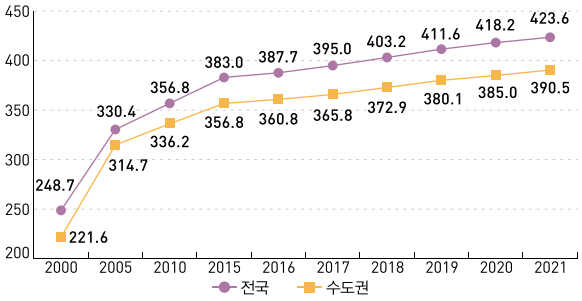
- 주택 주택의 양적 상태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적 지표이다. 가구 수보다는 총인구 측정이 용이하여 주택의 양적 수급여건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주택 수}}{\text{총인구}} \times 1{,}000$

유의사항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1채로 보는 경우와 구분거처 수로 산정하는 경우에 따라 수치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지표이기는 하나,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별로 주택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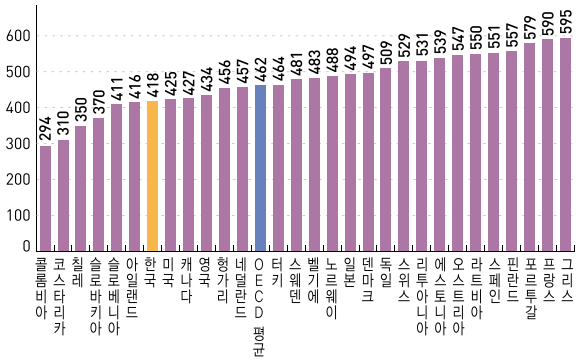
그림 11-6 연도별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2000~2021) (단위: 호)



주: 1) 주택 수 산정 관련, 1995년, 2000년은 다가구주택 1호로 산정, 2005년 이후는 구분 거처 수로 산정
2) 주택 수에는 빈집이 포함
3)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

자료: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http://www.kosis.kr에서 2023.04.12. 인출)

그림 11-7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2020년 또는 최신 연도) (단위: 호/천 명)



주: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2020년도 기준 e-나라지표 자료를 이용

자료: OECD,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https://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housing-database/housing-market.htm에서 2021.11.23. 인출);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서 2022.02.07. 인출)

표 11-6 연도별 ·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변화 (2020~2021) (단위: 호)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0(A)	418.2	385.0	394.2	436.0	417.2	385.3	433.3	416.7	430.9	378.5	480.6	469.4	457.1	421.7	462.7	479.5	493.8	453.0	419.5
2021(B)	423.6	390.5	402.4	440.0	422.1	390.3	436.3	419.7	437.3	382.2	487.6	478.1	462.3	426.4	470.7	488.5	499.2	458.9	422.9
천 인당 주택 수 변화 (B-A)	5.4	5.5	8.2	4.0	4.9	5.0	3.0	3.0	6.4	3.7	7.0	8.7	5.2	4.7	8.0	9.0	5.4	5.9	3.4

주: 2015년 이후는 등록센서스 기반

자료: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http://www.kosis.kr에서 2023.04.1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21	1년

05
대 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Percentage of households living in long term public rental housing

지표 정의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의 재원(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건설, 매입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장기간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하는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본 지표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하였다.

-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장기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책정되므로, 특히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수}}{\text{총 가구 수}} \times 100$$

유의사항 제도 변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외국의 사회주택과 유사한 유형 외에도 중간소득층 대상의 내집마련을 위한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가 비교 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사회주택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1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인 기준으로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1-7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2011~2021)

(단위: 천 가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가구 수		17,719	18,057	18,408	18,773	19,561	19,838	20,168	20,500	20,891	21,485	22,023
임대주택	수	1,460	1,487	1,616	1,709	1,938	2,273	2,444	2,985	3,045	3,270	3,290
	%	8.24	8.24	8.78	9.10	9.91	11.46	12.12	14.56	14.57	15.22	14.9
공공임대주택	수	1,019	1,038	1,125	1,177	1,257	1,358	1,441	1,570	1,660	1,737	1,775
	%	5.75	5.75	6.11	6.27	6.43	6.84	7.15	7.66	7.95	8.09	8.06
장기공공임대주택	수	890	748	783	820	1,163	1,256	1,350	1,484	1,584	1,690	1,740
	%	5.02	4.14	4.25	4.37	5.95	6.33	6.70	7.24	7.58	7.86	7.90

주: 전체 가구 수는 2007-2014년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 상 가구 수 활용, 2015년부터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함. 이는 장래가구추계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6.02. 인출);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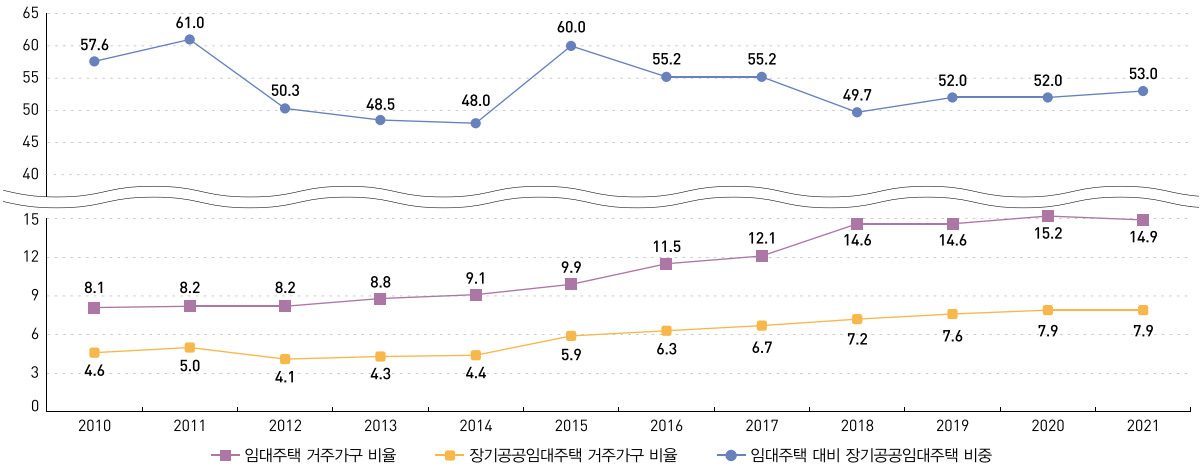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	2021	1년

* 주택업무편람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50년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10년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 포함), 행복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이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2020년 도입되어 현재 건설 중이므로, 2020년도 재고물량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 11-8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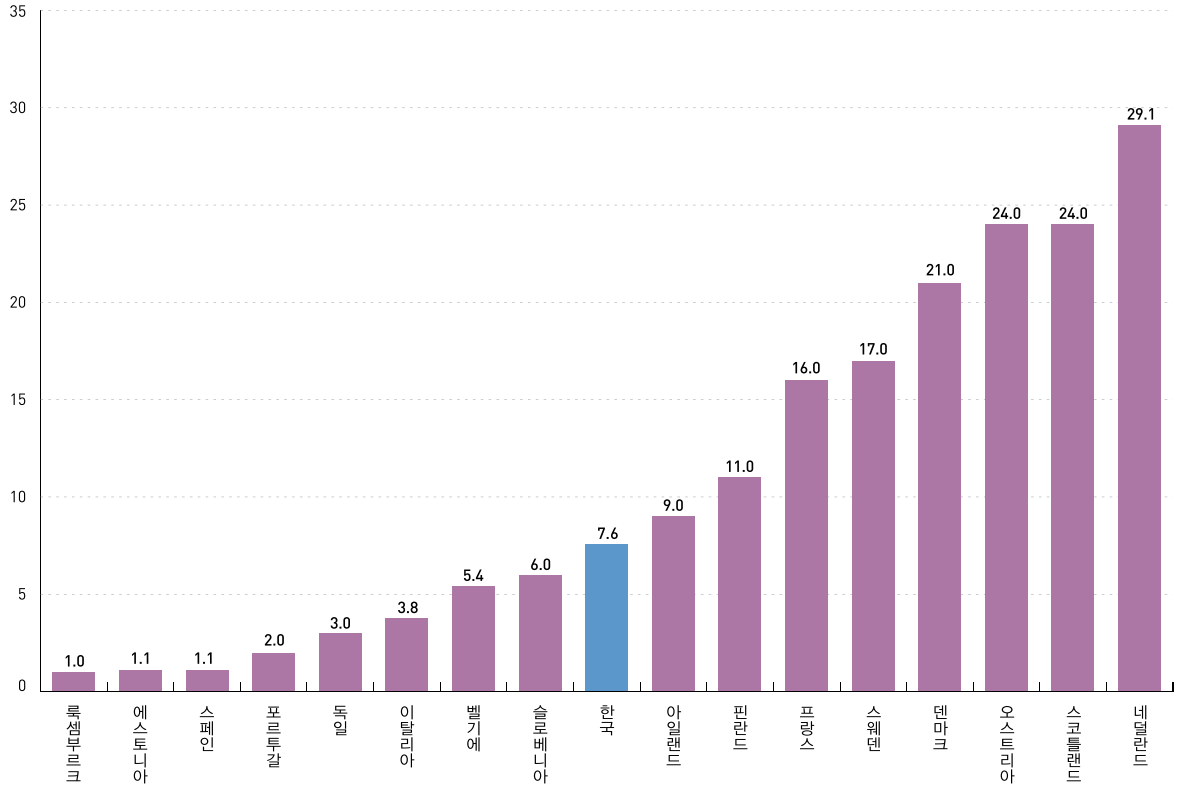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3.06.02. 인출);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각 연도

그림 11-9 EU 주요국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2019)

(단위: %)



주: 1) 유럽국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에는 사회주택, 자선단체, 시정부 공공임대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함.
2) 2019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 Housing Europe, The State oh Housing in the EU 2021, 2021

05-1
연 관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Public rental housing units as percentage of an new housing units

지표 정의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이란 매년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이는 공공부문의 시장개입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며,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수준도 전망할 수 있게 한다.

측정 산식

$$\frac{\text{당해 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 수}}{\text{당해 연도 주택공급 호 수}} \times 100$$

표 11-8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수 (2012~2022)

(단위: 천 호,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주택 건설(인허가)		586.9	440.1	515.3	765.3	726.0	653.4	554.1	488.0	457.5	545.4	521.8
공공임대 주택 건설	(인허가)	109.6	79.6	63.3	76.4	75.8	76.6	81.1	93.6	81.8	66.9	39.9
	%	18.7	18.1	12.3	10.0	10.4	11.7	14.6	19.2	17.9	12.3	7.6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3.05.17. 인출)

표 11-9 공급주체별 신규 공공임대주택 수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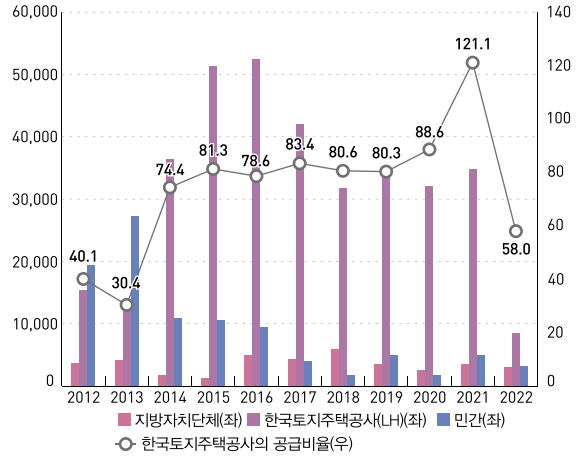
(단위: 호)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8,399	45,156	48,926	63,178	66,646	50,255	39,328	43,208	36,201	28,662	14,589
지방자치단체	3,595	4,142	1,695	1,263	4,907	4,296	5,897	3,512	2,446	3,619	3,010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5,399	13,739	36,421	51,366	52,353	41,932	31,691	34,715	32,090	24,037	8,468
민간	19,405	27,275	10,810	10,549	9,386	4,027	1,740	4,981	1,665	1,006	3,111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3.05.17. 인출)

그림 11-10 공급주체별 신규 공공임대주택 수 및 LH의 공급 비율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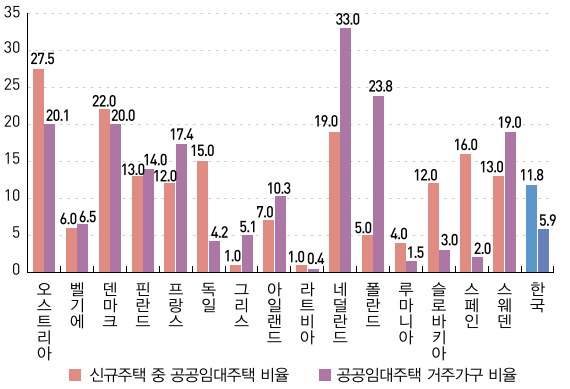
(단위: 호, %)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3.05.17. 인출)

그림 11-11 EU 국가의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2017)

(단위: %)



주: 1) 프랑스는 착공(starting) 기준, 그 외 국가는 준공(completion) 기준
2) 신규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수치가 없는 EU 국가는 제외
3) 벨기에의 경우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CECODHAS Housing Europe, 2012 기준
4)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의 경우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및 공공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CECODHAS Housing Europe, 2012 기준

자료: Housing Europe,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7, 2017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	2022	1년

06
대 표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Duration of residence in current housing

지표 정의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주거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능동적인 입장에 있는 자가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길다. 그러므로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더욱 의미가 있다.

측정 산식

- 현재 주택에 거주한 연도에서 조사 연도까지의 기간

유의사항 특성별 거주기간 비교를 통해 주택유형, 소득수준별 주거안정성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11-10 연도별 · 지역별 현재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 (2008~2021)

(단위: 년)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7.7	7.9	8.6	7.7	7.7	8.0	7.7	7.7	7.6	7.5
수도권	6.0	6.2	6.7	6.4	6.4	6.7	6.3	6.3	6.1	6.0
광역시	7.2	7.5	8.0	7.6	7.4	7.7	7.4	7.4	7.4	7.4
도지역	10.6	10.6	11.9	10.0	9.9	10.3	10.2	10.0	10.0	9.7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11-11 연도별 · 점유형태별 현재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 (2008~2021)

(단위: 년)

구 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가	10.8	11.4	12.5	11.2	10.6	11.1	10.7	10.7	10.6	10.5
전세	3.1	3.3	3.2	3.5	3.4	3.6	3.3	3.0	3.0	2.9
보증금 있는 월세	3.4	3.3	4.1	3.4	3.5	3.4	3.4	3.2	3.7	3.1
보증금 없는 월세	4.7	4.6	5.2	4.3	4.8	3.4	4.2	3.2	3.7	3.7
무상	8.7	8.5	10.5	7.4	7.0	7.8	6.7	7.2	6.9	7.1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21	1년

* 2016년까지는 2년 주기,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표 11-12 연도별 · 소득별 현 주택의 평균 거주기간 및 거주기간별 분포 변동 (200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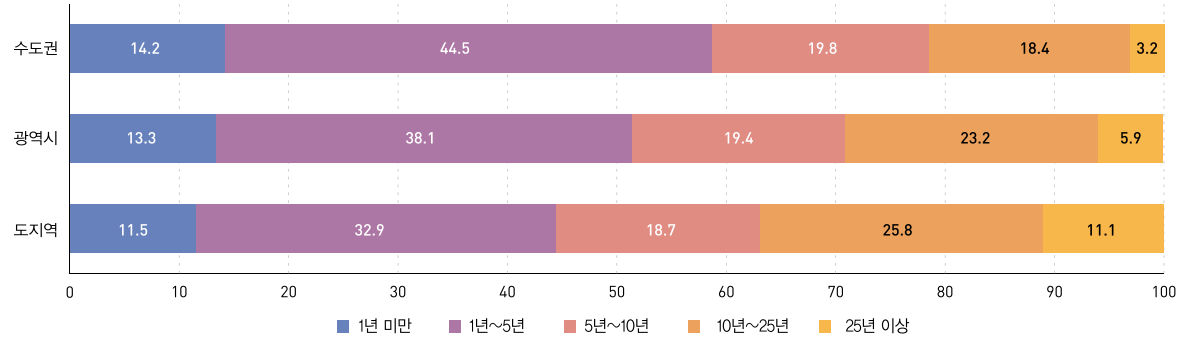
(단위: 년, %)

구분		1년 미만	1년~5년	5년~10년	10년~25년	25년 이상	계	평균 거주기간
하위	2008	12.1	29.7	18.4	27.0	12.8	100.0	10.6
	2010	10.9	33.5	17.3	25.8	12.5	100.0	10.3
	2012	8.6	31.5	17.1	29.0	13.8	100.0	11.5
	2014	13.6	31.9	15.7	27.2	11.6	100.0	10.1
	2016	13.6	33.2	17.4	25.9	9.9	100.0	9.3
	2017	11.9	36.0	15.3	25.8	11.1	100.0	9.7
	2018	14.1	33.8	15.6	25.3	11.2	100.0	9.6
	2019	15.8	33.6	15.3	23.7	11.6	100.0	9.5
	2020	13.0	37.7	15.4	23.2	10.7	100.0	9.0
	2021	16.8	34.9	15.4	22.6	10.3	100.0	8.8
중위	2008	13.5	43.4	21.7	18.5	2.9	100.0	6.0
	2010	10.8	43.3	20.5	22.1	3.4	100.0	6.6
	2012	8.3	46.4	20.3	21.4	3.5	100.0	6.8
	2014	13.8	42.1	18.4	22.3	3.3	100.0	6.4
	2016	12.2	42.8	19.3	22.2	3.5	100.0	6.6
	2017	9.4	44.1	19.4	23.5	3.7	100.0	6.8
	2018	12.1	44.8	18.2	21.4	3.6	100.0	6.5
	2019	13.0	43.2	19.6	20.4	3.9	100.0	6.5
	2020	9.7	44.8	20.6	21.0	4.0	100.0	6.6
	2021	11.7	43.0	21.0	20.4	3.9	100.0	6.6
상위	2008	10.5	44.6	26.0	17.4	1.5	100.0	5.6
	2010	8.8	43.5	24.8	20.9	2.1	100.0	6.2
	2012	7.3	44.7	21.6	24.0	2.4	100.0	6.6
	2014	10.5	40.8	23.6	23.4	1.8	100.0	6.4
	2016	9.6	41.4	22.4	24.0	2.6	100.0	6.7
	2017	7.7	42.4	21.1	26.2	2.7	100.0	7.0
	2018	9.4	42.5	20.7	24.9	2.5	100.0	6.7
	2019	8.9	42.2	21.8	24.7	2.4	100.0	6.8
	2020	9.1	43.1	22.6	23.0	2.3	100.0	6.4
	2021	8.2	42.4	24.6	22.5	2.3	100.0	6.6

주: 1)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소득계층은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1-12 지역별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비율 (2021)

(단위: %)



자료 :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22

07
대 표

노숙인 수

Number of homeless persons

지표 정의

노숙인은 정규적인 주거지가 없어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거하거나 일시적인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사람을 말한다.

-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노숙인이라 할 수 있으며, 노숙인 수는 노숙인 문제의 양상과 그 심각성을 보는 데 가장 기초적인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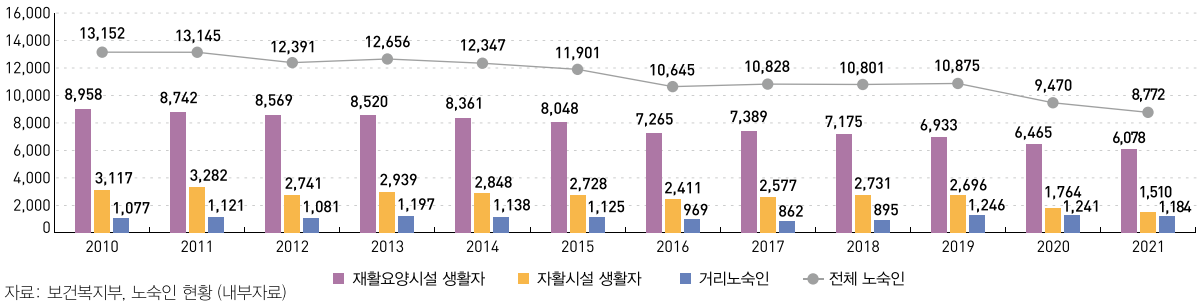
측정 산식

- **거리노숙인 수 + 노숙인시설 생활자 수(일시보호시설을 포함한 자활시설, 재활시설 및 요양시설)**

유의사항 노숙인에 준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와 연계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림 11-13 유형별 노숙인 수 (2010~2021)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노숙인 현황 (내부자료)

표 11-13 시도별 노숙인 현황 (2014~2021)

(단위: 명, %)

연도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	노숙인 수	12,347	4,248	884	1,251	809	167	359	53	112	1,181	341	802	78	229	764	391	510	168
	비중	100.0	34.4	7.2	10.1	6.6	1.4	2.9	0.4	0.9	9.6	2.8	6.5	0.6	1.9	6.2	3.2	4.1	1.4
2015	노숙인 수	11,901	4,046	850	1,197	763	211	336	79	128	1,045	295	810	80	222	764	364	516	195
	비중	100.0	34.0	7.1	10.1	6.4	1.8	2.8	0.7	1.1	8.8	2.5	6.8	0.7	1.9	6.4	3.1	4.3	1.6
2016	노숙인 수	10,645	3,682	767	1,106	527	154	311	22	132	1,002	323	774	48	232	720	349	343	153
	비중	100.0	34.6	7.2	10.4	5.0	1.4	2.9	0.2	1.2	9.4	3.0	7.3	0.5	2.2	6.8	3.3	3.2	1.4
2017	노숙인 수	10,828	3,653	880	1,001	718	154	293	43	115	924	287	712	76	235	735	345	498	159
	비중	100.0	33.7	8.1	9.2	6.6	1.4	2.7	0.4	1.1	8.5	2.7	6.6	0.7	2.2	6.8	3.2	4.6	1.5
2018	노숙인 수	10,801	3,628	784	1,014	680	158	315	41	111	947	307	729	144	233	683	329	540	158
	비중	100.0	33.6	7.3	9.4	6.3	1.5	2.9	0.4	1.0	8.8	2.8	6.7	1.3	2.2	6.3	3.0	5.0	1.5
2019	노숙인 수	10,875	3,589	775	1,024	716	344	299	145	118	931	256	697	52	247	689	321	528	144
	비중	100.0	33.0	7.1	9.4	6.6	3.2	2.7	1.3	1.1	8.6	2.4	6.4	0.5	2.3	6.3	3.0	4.9	1.3
2020	노숙인 수	9,470	3,237	678	888	605	126	266	38	100	851	225	655	66	235	643	311	405	141
	비중	100.0	34.2	7.2	9.4	6.4	1.3	2.8	0.4	1.1	9.0	2.4	6.9	0.7	2.5	6.8	3.3	4.3	1.5
2021	노숙인 수	8,772	2,877	657	804	565	108	247	29	88	761	238	619	53	228	618	304	437	139
	비중	100.0	32.8	7.5	9.2	6.4	1.2	2.8	0.3	1.0	8.7	2.7	7.1	0.6	2.6	7.0	3.5	5.0	1.6

자료: 보건복지부, 노숙인 현황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숙인 현황 (내부자료)	2005	2021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2021

08 대 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Housing price to income ratio

지표 정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PIR(Price to Income Ratio)이라고도 하며, 주택가격을 연소득 대비 배수로 나타난다.

•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지표이다. 지역별, 국가별 주택구입 능력을 비교해 봄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성이나 주택가격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연소득이나 주택가격 산정값에 따라 배율에 차이가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주택가격}}{\text{가구의 연소득}}$

유의사항 국제 비교 시 주택가격 대푯값(혹은 개별 가구의 주택가격)과 소득기준에 대한 기준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11-14 연도별 · 지역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PIR) (2008~2021)

(단위: 배)

구 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 국	중위수	4.3	4.3	5.1	4.7	5.6	5.6	5.5	5.4	5.5	6.7
	평균	6.0	5.6	7.6	5.7	6.3	6.4	6.7	6.8	7.3	8.9
수도권	중위수	6.9	6.9	6.7	6.9	6.7	6.7	6.9	6.8	8.0	10.1
	평균	8.5	7.9	10.1	7.1	7.6	7.9	8.6	9.0	9.6	11.7
광역시 등	중위수	3.3	3.5	5.0	4.7	5.3	5.5	5.6	5.5	6.0	7.1
	평균	4.0	4.1	7.1	5.1	5.7	5.8	6.2	6.2	6.8	8.1
도지역	중위수	3.0	2.9	3.6	4.2	4.0	4.0	3.6	3.6	3.9	4.2
	평균	3.3	3.1	5.4	4.1	4.7	4.5	4.5	4.3	4.5	5.0

주 : 2012년은 개별가구 PIR를 중위수 및 평균을 도출한 값이며, 그 외는 대상 집단의 중위수 및 평균으로 계산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11-15 연도별 · 소득계층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PIR) (2008~2021)

(단위: 배)

구 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 체	중위수	4.3	4.3	5.1	4.7	5.6	5.6	5.5	5.4	5.5	6.7
	평균	6.0	5.6	7.6	5.7	6.3	6.4	6.7	6.8	7.3	8.9
하 위	중위수	6.4	6.1	7.5	8.3	9.8	8.3	9.0	8.9	8.3	9.4
	평균	9.9	9.2	11.3	11.2	11.6	11.1	12.0	12.3	11.7	14.1
중 위	중위수	4.3	4.2	4.3	5.0	5.6	5.2	5.2	5.2	5.7	6.3
	평균	5.6	5.7	5.5	5.8	6.2	6.2	6.4	6.5	6.7	8.4
상 위	중위수	4.2	4.0	4.4	4.7	5.0	4.8	4.8	4.8	5.4	7.1
	평균	5.2	4.7	5.4	4.5	5.0	5.3	5.7	5.8	6.6	8.1

주: 1) 2012년은 개별가구 PIR를 중위수 및 평균을 도출한 값이며, 그 외는 대상 집단의 중위수 및 평균으로 계산
2) 소득계층은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 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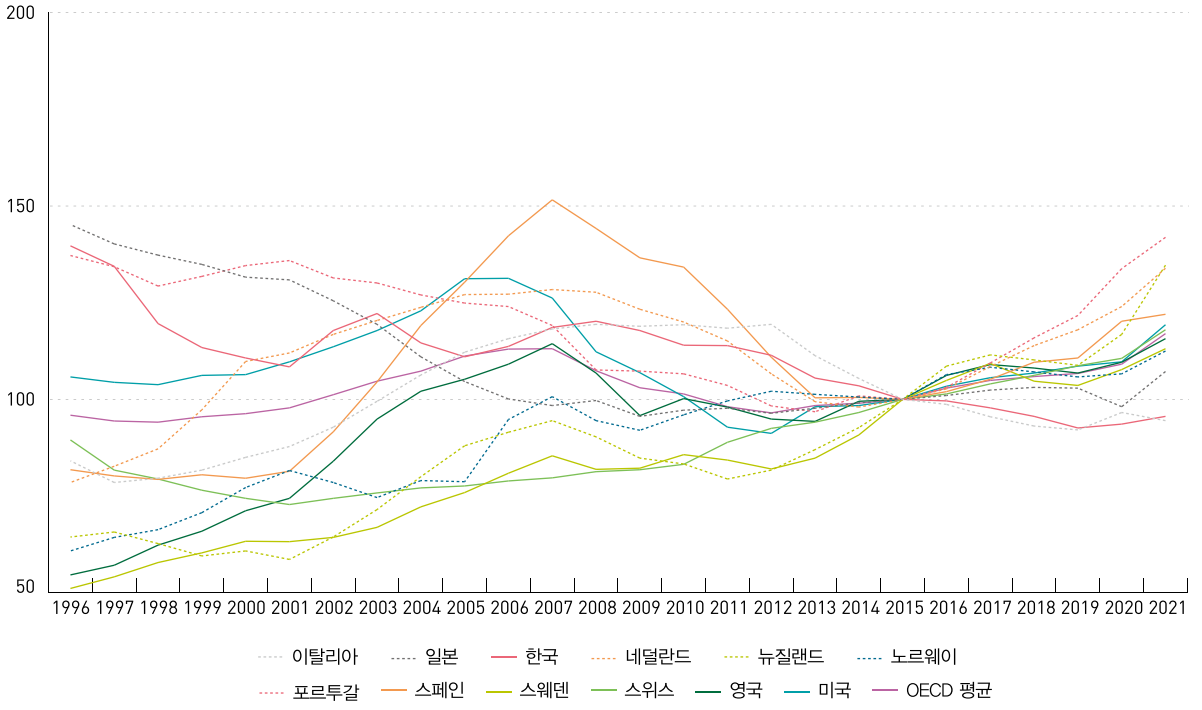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21	1년

* 2016년까지는 2년 주기,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그림 11-14 OECD 국가별 PIR 변화 추이 (199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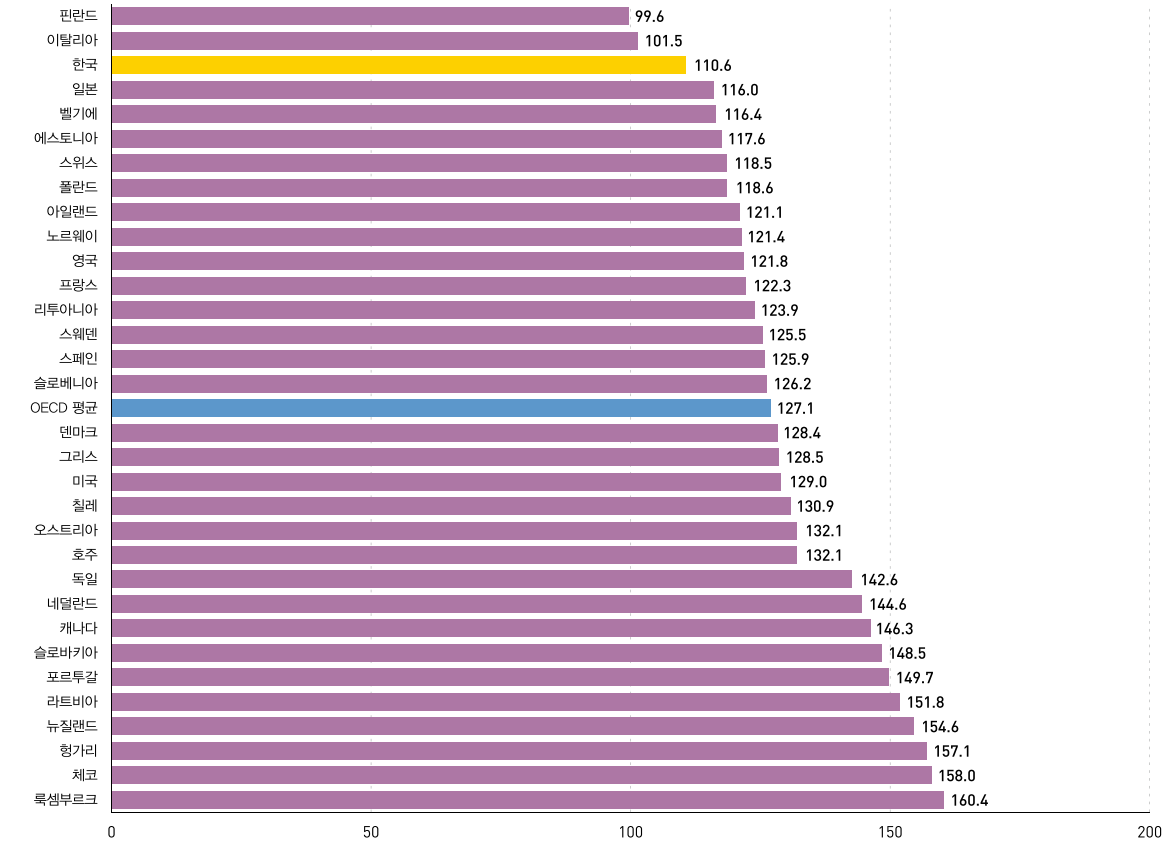
(단위: %)



주: 가구의 가처분소득 평균 대비 평균 주택가격으로 계산
자료: OECD. Stat, Housing prices – Standardised price-income ratio (http://data.oecd.org에서 2023.05.18. 인출)

그림 11-15 OECD 국가별 PIR (2015년 대비 2021년 수준)

(단위: %)



주: 1) 기준연도 2015(2015=100)
2) 가구의 가처분소득 평균 대비 평균 주택가격으로 계산
자료: OECD. Stat, Housing prices – Standardised price-income ratio (http://data.oecd.org에서 2023.05.18. 인출)

09 대 표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Monthly rent to income ratio

지표 정의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은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월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공공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이 25% 혹은 30%를 넘으면 임대료 과부담 가구로 간주되며, 이 경우 임대료 부담이 커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측정 산식

- $\frac{\text{가구의 월 임대료}}{\text{가구의 월소득}} \times 100$

※ 전세가구는 해당 시점에서 전세금의 월세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유의사항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율에 대한 이해 및 적정 월 임대료 비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아파트가 많은 국내의 경우, 임대료 외에 관리비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1-16 연도별 · 지역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 (2012~2021)

(단위: %)

구분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전국	19.8	26.4	20.3	24.2	18.1	21.4	17.0	21.8	15.5	21.1	16.1	21.3	16.6	20.9	15.7	21.5
수도권	23.3	30.5	21.6	27.4	17.9	24.6	18.4	24.7	18.6	24.0	20.0	24.6	18.6	23.7	17.8	24.7
광역시 등	16.8	22.0	16.6	20.5	15.4	16.9	15.3	17.5	16.3	17.6	16.3	17.7	15.1	17.9	14.4	18.0
도지역	14.5	19.3	15.8	17.3	14.2	15.1	15.0	15.9	15.0	15.4	12.7	14.6	12.7	14.6	12.6	14.8

주: 월세전환율(월세이율)은 조사시점을 고려하여 2012년 10.44%, 2014년 9.36%, 2016년 6.70%, 2017년 6.40%, 2018년 6.20%, 2019년 6.10%, 2020년 5.70%, 2021년 5.60%를 적용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11-17 연도별 · 소득계층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 (2012~2021)

(단위: %)

구분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하위	21.8	33.6	29.0	34.1	23.1	26.7	22.2	26.3	20.3	25.8	20.3	26.2	18.8	23.3	18.0	23.1
중위	17.3	20.3	17.0	23.1	14.9	18.9	15.7	19.2	16.7	18.8	16.7	19.2	15.8	18.7	16.0	19.6
상위	22.6	24.4	21.6	21.2	19.0	20.6	20.3	21.9	18.3	20.8	18.3	21.1	18.7	22.0	19.6	23.5

주: 월세전환율(월세이율)은 조사시점을 고려하여 2012년 10.44%, 2014년 9.36%, 2016년 6.70%, 2017년 6.40%, 2018년 6.20%, 2019년 6.10%, 2020년 5.70%, 2021년 5.60%를 적용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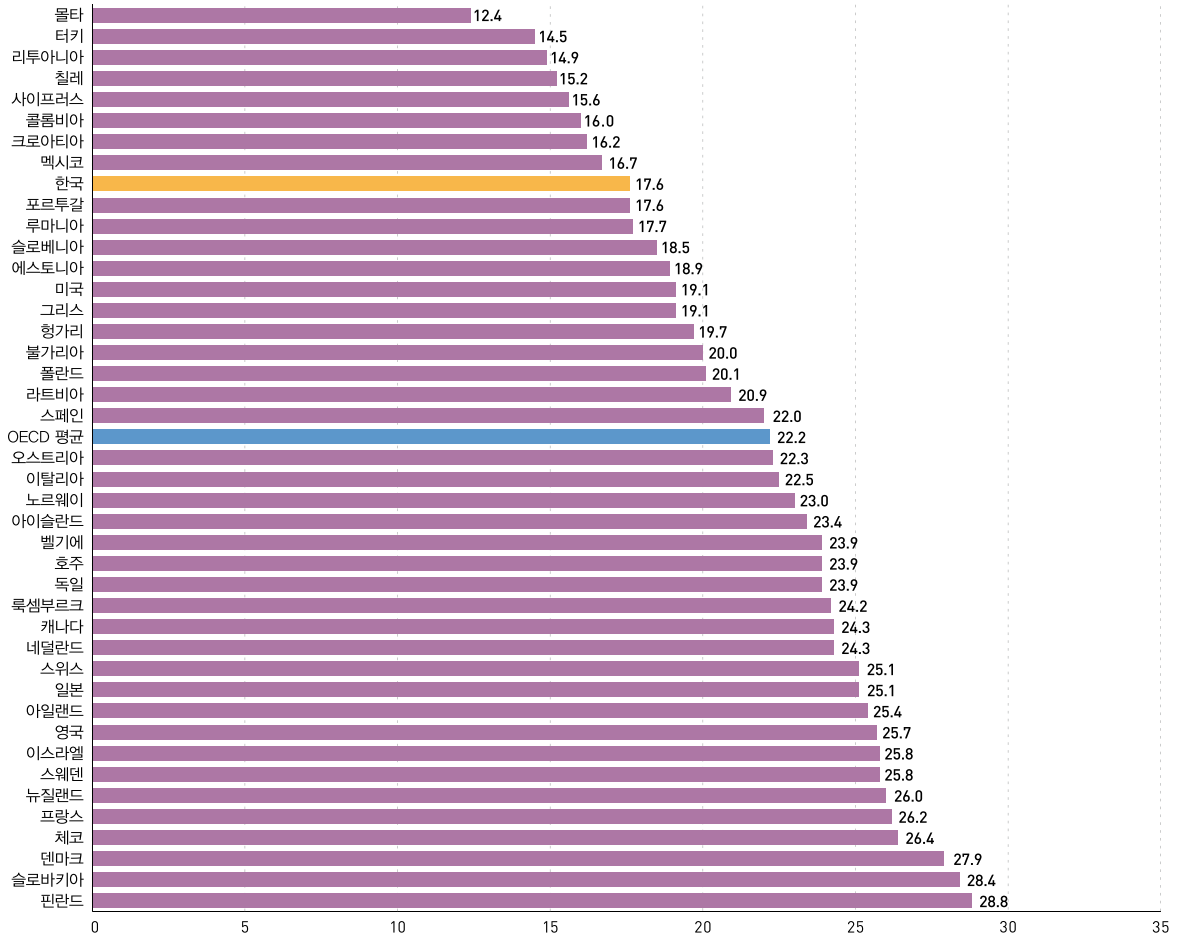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21	1년

* 2016년까지는 2년 주기,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그림 11-16 OECD 국가의 가구소비 지출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 (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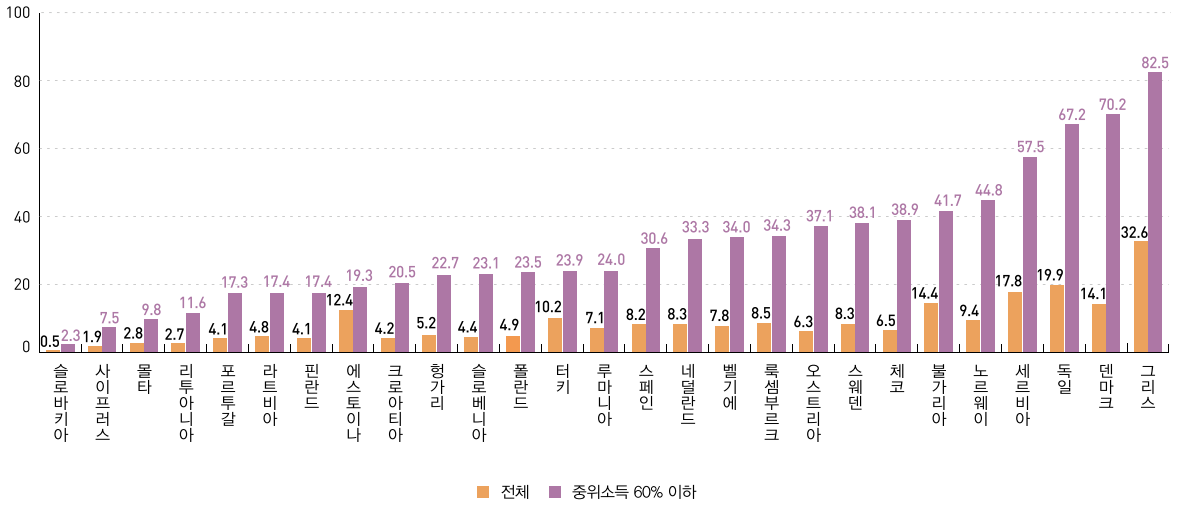


주: 2019년 또는 최근 연도 자료

자료: OECD.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housing-database/housing-conditions.htm에서 2021.11.25. 인출)

그림 11-17 국가별 주거비 과부담 비율 (2020)

(단위: %)



주: 주거비 과부담이란 가구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data (2021.11.26. 인출)

10 대 표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Number of households with loans from national housing fund

지표 정의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는 근로자 · 서민 등 일정한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한 가구 수를 의미한다. 또한 대출 조건이 무주택자라는 점에서 무주택 서민의 자가 취득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가 목적이다.

측정 산식

• 내집마련 디딤돌 융자가구 수 + 공유형 모기지 지원가구 수 + 기타(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유의사항 2014년부터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융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융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로 통합되어 운영한다.

표 11-18 유형별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201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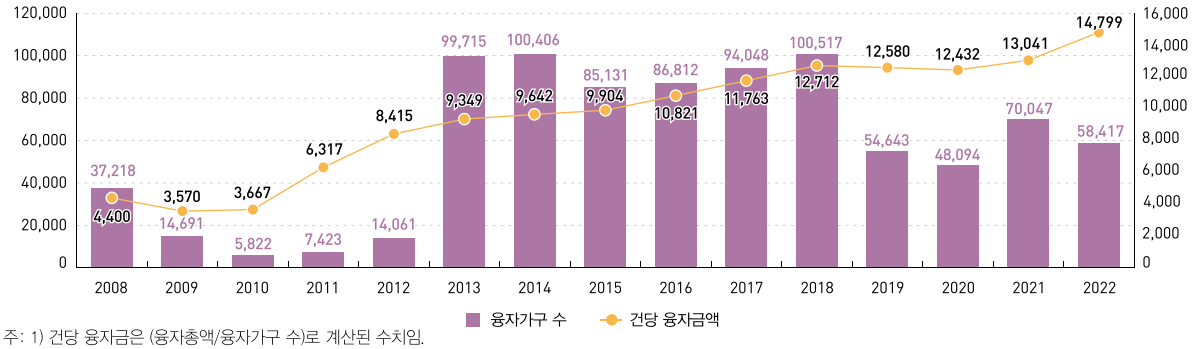
(단위: 가구,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융자가구 수		5,822	7,423	14,061	99,715	100,406	85,131	86,812	94,048	100,517	54,643	48,094	70,047	58,417
자금 융자 규모 (억 원)	내집마련 디딤돌	-	-	-	-	81,127	79,241	93,264	110,566	127,725	68,719	59,781	90,570	83,698
	근로자 · 서민 구입	1,576	281	130	3,028	395	7	1	-	-	-	-	-	-
	생애최초 주택구입	559	4,408	11,703	86,411	6,649	2,005	481	1	-	-	-	-	-
	공유형 모기지	-	-	-	3,782	7,747	1,955	188	58	49	21	3	780	2,750
	기타 (주거안정, 오피스텔)	-	-	-	-	2,359	2,099	22	1	5	1	6	1	5
	융자 총액	2,135	4,689	11,833	93,221	98,277	85,307	93,936	110,626	127,779	68,741	59,790	91,351	86,453
건당 융자금액(억 원)		3,667	6,317	8,415	9,349	9,642	9,904	10,821	11,763	12,712	12,580	12,432	13,041	14,799

주: 1) 건당 융자금은 (융자총액/융자가구 수)로 계산된 수치임.
2) 201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 내 유형별 기금이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건수 및 금액 (내부자료)

그림 11-18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및 건당 융자금액 (2008~2022)

(단위: 가구, 억 원)



주: 1) 건당 융자금은 (융자총액/융자가구 수)로 계산된 수치임.
2) 201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 내 유형별 기금이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건수 및 금액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1981	2022	1년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건수 및 금액 (내부자료)	-	2022	1년

*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용어 변경 (2015.7.1.)

10-1
연 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Number of low-income households with jeonse loans

지표 정의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전월세자금을 이용한 가구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구 수

유의사항 2015년부터 근로자 · 서민과 저소득 전세를 통합해 '버팀목' 대출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통계 수치와 비교 시 감안해야 한다.
대상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되, 일반가구, 신혼부부, 청년, 중소기업취업청년, 청년부증부 월세, 노후고시원 거주자이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소득기준을 달리한다.(일반가구 5천 만 원) 또한 대상주택의 전용 면적, 대출한도, 소득구간별 대출 이율 등도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편, 일반주택 뿐 아니라,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표 11-19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자금 운용실적 (201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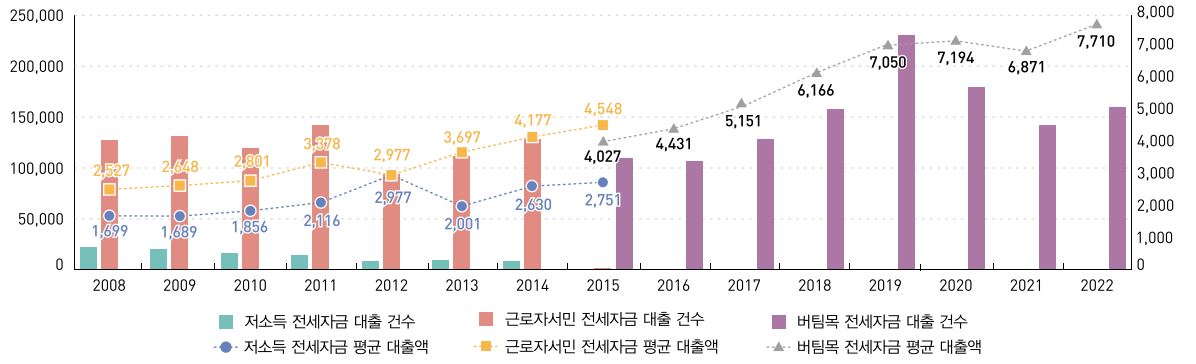
(단위: 건, 억 원, 만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저소득 전세 자금	대출 건수	16,038	14,084	8,613	8,864	8,330	229	-	-	-	-	-	-	-
	대출 총액(억 원)	2,976	2,980	1,889	1,774	2,191	63	-	-	-	-	-	-	-
	평균 대출액 (만 원)	1,856	2,116	2,977	2,001	2,630	2,751	-	-	-	-	-	-	-
근로자 서민 전세 자금	대출 건수	119,467	141,770	93,426	111,258	127,901	1,282	-	-	-	-	-	-	-
	대출 총액(억 원)	33,463	47,883	35,306	41,128	53,427	583	-	-	-	-	-	-	-
	평균 대출액 (만 원)	2,801	3,378	2,977	3,697	4,177	4,548	-	-	-	-	-	-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건수	-	-	-	-	-	109,360	106,016	128,419	157,809	230,002	179,182	141,994	159,935
	대출 총액(억 원)	-	-	-	-	-	44,043	46,980	66,151	97,301	162,146	128,911	97,562	123,309
	평균 대출액 (만 원)	-	-	-	-	-	4,027	4,431	5,151	6,166	7,050	7,194	6,871	7,710

주: 평균 대출액은 (대출 총액/대출 건수)로 계산된 수치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및 금액 (내부자료)

그림 11-19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건수 및 평균 대출액 (2008~2022)

(단위: 건, 만 원)



주: 1) 평균 대출액은 (대출 총액/대출 건수)로 계산된 수치임.
2) 저소득 전세자금 및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2015년 폐지되고, 버팀목 전세자금이 도입되었음.
3) 그래프에 표시된 값은 평균 대출액임.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및 금액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1981	2022	1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및 금액 (내부자료)	-	2022	1년

11 대 표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Percentage of housing benefit claimants

지표 정의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급여 중 하나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급여를 제공하되, 자가수급자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서비스를 통한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임차급여를 받는 임차가구 수 +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자가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표 11-20 주거급여 지원 실적 (2012~2021)

(단위: 천 가구,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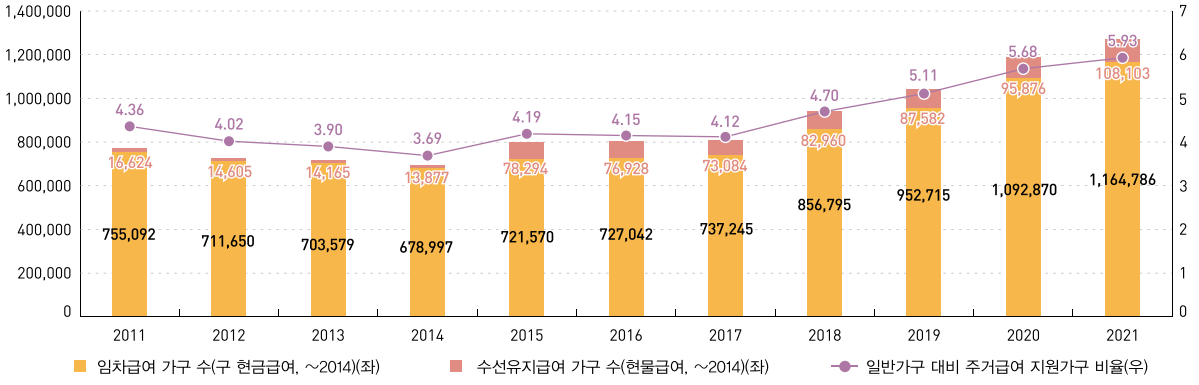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가구 수(A, 천 가구)		18,057	18,408	18,773	19,111	19,368	19,674	19,979	20,343	20,927	21,448
주거급여 지원가구 (가구)	합계(B=C+D)	726,255	717,744	692,874	799,864	803,970	810,329	939,155	1,040,297	1,188,746	1,272,889
	현금급여(C)	711,650	703,579	678,997	-	-	-	-	-	-	-
	현물급여(D)	14,605	14,165	13,877	-	-	-	-	-	-	-
	임차급여(C)	-	-	-	721,570	727,042	737,245	856,795	952,715	1,092,870	1,164,786
	수선유지급여 (D)	-	-	-	78,294 (9,792)	76,928 (21,207)	73,084 (18,308)	82,960 (17,011)	87,582 (22,264)	95,876 (18,519)	108,103 (18,801)
일반가구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B/A)		4.02	3.90	3.69	4.19	4.15	4.12	4.70	5.11	5.68	5.93

주: 1) 2010~2014년 보건복지부, 2015년 이후는 국토교통부 자료, ()안은 연간수선완료 호수 실적
2) 2015년부터 2018년 일반가구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3.05.18. 인출)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그림 11-20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및 지원가구 비율 (2011~2021)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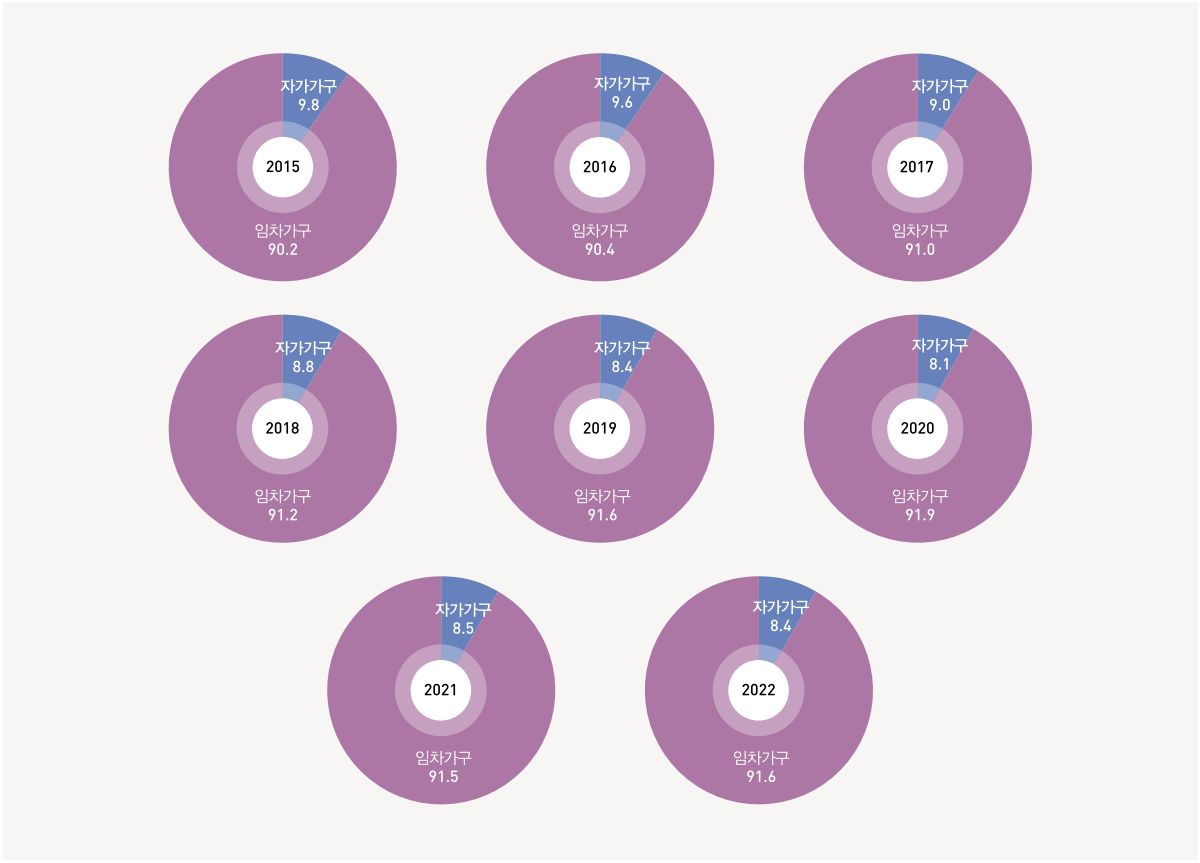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3.05.18. 인출)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2010	2014	1년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2015	2022	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25	2021	1년

그림 11-21 점유형태별 수급가구 분포 변화 (201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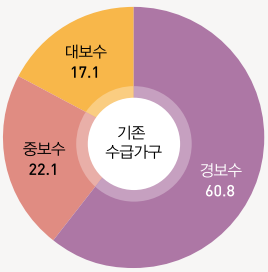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그림 11-22 수급가구의 주거상태 (2022)

(단위: %)



주: 1) 경보수 : 설비 부분 교체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2) 중보수 : 건축마감 불량 및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3)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12 대 표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Number of reverse mortgages guaranteed

지표 정의

주택연금대출 보증 건수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대출에 대한 보증 건수를 의미한다. 자산은 있으나 소득은 낮은(house-rich, income-poor)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이며 현재 만 55세 이상을 가입요건으로 한다.

측정 산식

- 매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한 주택연금 보증 건수

표 11-21 주택연금 보증 건수 및 보증공급액 (2008~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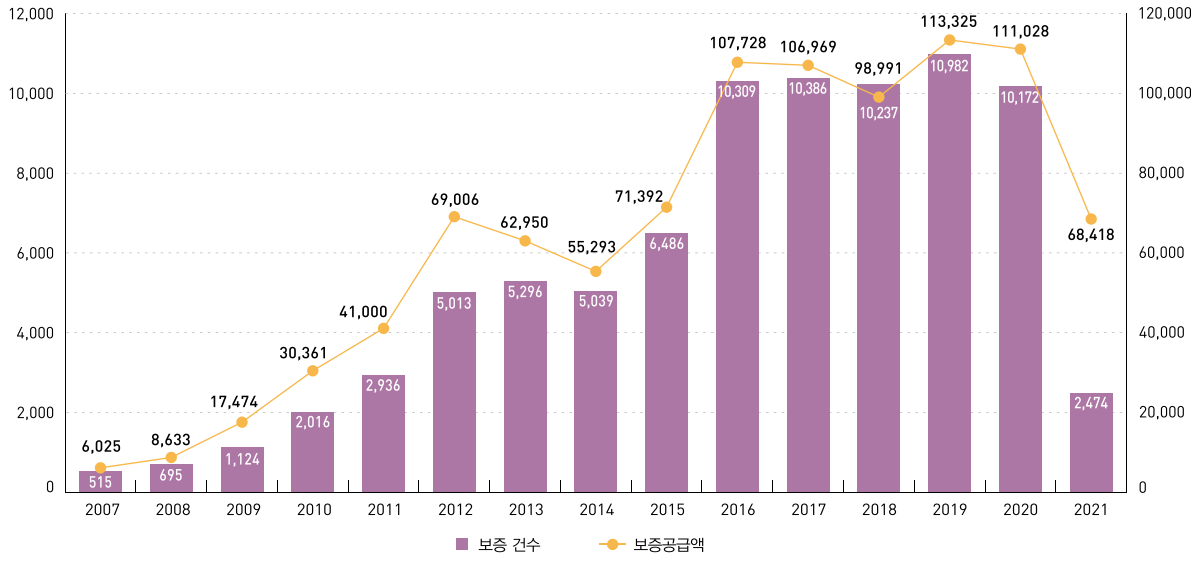
(단위: 건, 억 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증 건수	695	1,124	2,016	2,936	5,013	5,296	5,039	6,486	10,309	10,386	10,237	10,982	10,172	2,474
보증공급액	8,633	17,474	30,361	41,000	69,006	62,950	55,293	71,392	107,728	106,969	98,991	113,325	111,028	68,418

주: 보증공급액은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보증공급액(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대출이자 + 보증료) 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 주택연금 통계 현황 (https://www.hf.go.kr/research/portal/stat/easyStatPage/T188203126739755.do에서 2021.11.26. 인출)

그림 11-23 주택연금 보증 건수 및 보증공급액 (2007~2021)

(단위: 건, 억 원)



주: 보증공급액은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보증공급액(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대출이자 + 보증료)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 주택연금 통계 현황 (https://www.hf.go.kr/research/portal/stat/easyStatPage/T188203126739755.do에서 2023.05.1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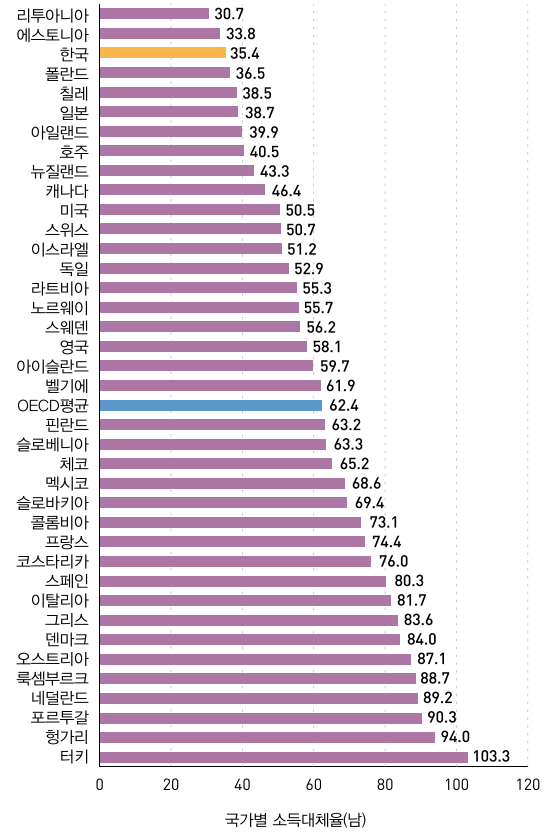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리서치 통계편	2007	2021	3개월

* 2017년까지는 1개월 주기, 2018년부터 분기(2, 5, 8, 11월 말)로 변경됨.

그림 11-24 국가별 소득대체율 (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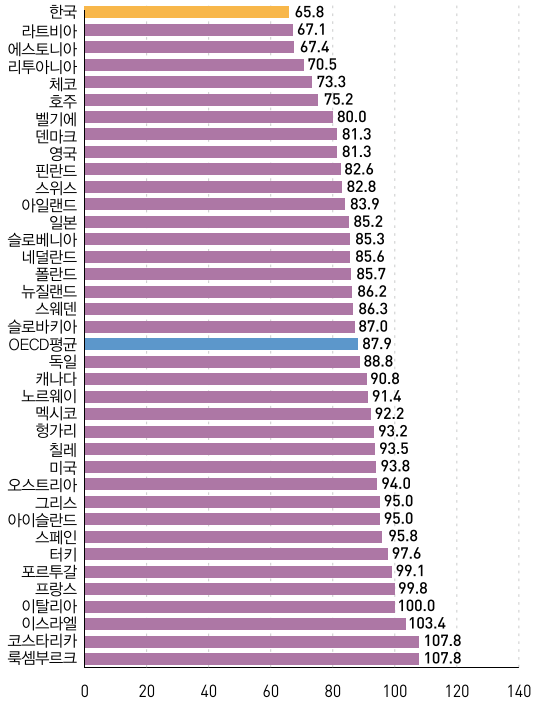


주: 공적연금의 순소득대체율(net pension replacement rates from mandatory(public and private)임.

자료: OECD. Stat, Pensions at a Glanc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AG에서 2022.01.04. 인출)

그림 11-25 국가별 총 인구 소득 대비 고령인구의 소득비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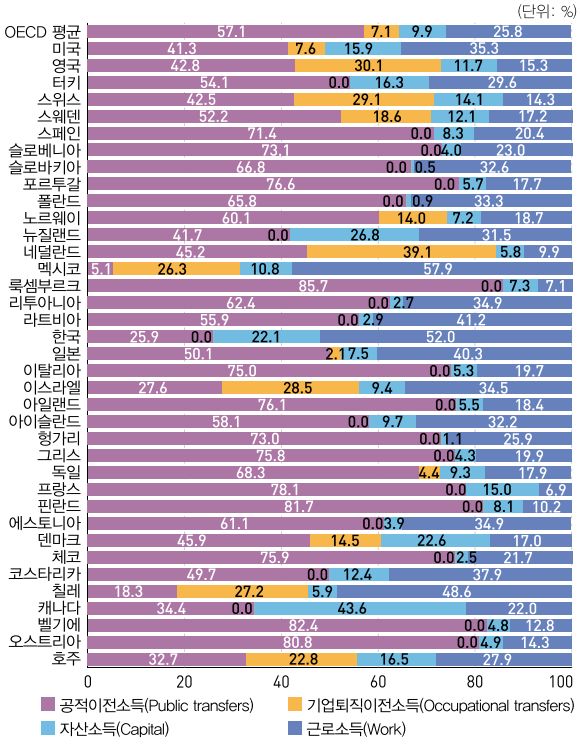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Stat, Pensions at a Glance: Income and poverty of older peopl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9414에서 2022.01.11 인출)

그림 11-26 국가별 고령인구의 소득구성비 (2018)

(단위: %)



자료: OECD. Stat, Pensions at a Glance: Income and poverty of older people (http://data.oecd.org에서 2022.01.11. 인출)

12

에너지

01 가전기기 보급률
02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03 도시가스 보급률
04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05 소득(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율
06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07 에너지효율 개선
08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09 연료비 지원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에너지 사용 유형	가전기기 보급률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도시가스 보급률	
에너지 소비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소득(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율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에너지복지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연료비 지원	

01 대 표

가전기기 보급률

Penetration rate of home appliances

지표 정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의 가구당 평균 보유 대수를 의미한다.

• 가구의 가전기기 사용 정도와 전력 소비의 필요성을 결부시켜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보급대수/가구, 가구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의 소득수준별 가구당 가전기기 보급률 조사에 기초한다.**

표 12-1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12~2020)

(단위: 대/가구)

구분	TV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	전기밥솥	청소기
2012	1.26	1.01	1.84	0.78	1.77	0.73	0.77	0.88	0.85
2013	1.23	1.01	1.77	0.77	1.74	0.71	0.80	0.89	0.85
2014	1.19	1.01	1.74	0.76	1.72	0.69	0.75	0.88	0.85
2015	1.19	1.00	1.65	0.71	1.68	0.66	0.67	0.89	0.77
2016	1.17	1.01	2.08	0.81	1.72	0.69	0.57	0.85	0.73
2017	1.17	1.02	1.77	0.92	1.75	0.71	0.63	0.89	0.78
2018	1.08	0.98	1.43	0.98	1.67	0.65	0.53	0.89	0.74
2019	1.04	0.93	1.36	0.93	1.57	0.71	0.50	0.83	0.71
2020	1.02	0.94	1.31	0.94	1.51	0.58	0.54	0.82	0.71

주: 2015년 가전기기 보급률은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에 대한 가중치 조정으로 다소 낮게 추정됨. 냉장고 보급률은 김치냉장고를 포함한 수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표본조사, 각 연도

표 12-2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20)

(단위: 대/가구)

구분	TV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	전기밥솥	청소기
200만 원 미만	1.01	0.91	1.21	0.04	1.53	0.60	0.22	0.80	0.51
200~400만 원	1.10	0.95	1.19	0.10	1.41	0.48	0.55	0.82	0.72
400~600만 원	1.04	0.95	1.45	0.18	1.58	0.63	0.71	0.85	0.81
600만 원 이상	1.10	0.94	1.55	0.23	1.65	0.70	0.84	0.83	0.87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표본조사, 2023

표 12-3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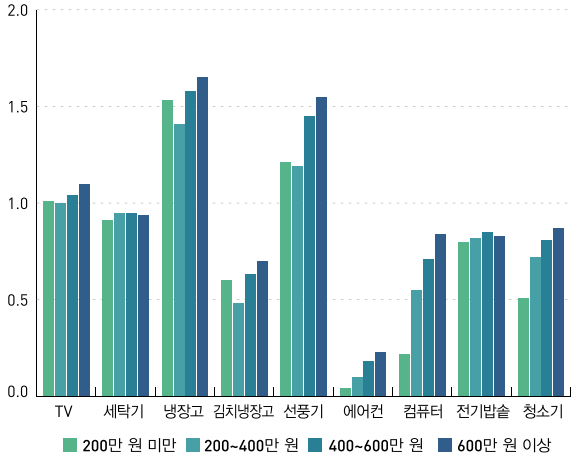
(단위: 대/가구)

구분	TV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	전기밥솥	청소기
200만 원 미만	1.04	0.94	1.19	0.70	1.61	0.61	0.15	0.83	0.47
200~400만 원	1.08	0.99	1.38	0.96	1.63	0.60	0.51	0.92	0.76
400~600만 원	1.10	1.00	1.60	1.16	1.73	0.71	0.79	0.89	0.90
600만 원 이상	1.17	1.01	1.85	1.28	1.83	0.80	0.96	0.90	0.93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년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표본조사, 2020

그림 12-1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20)

(단위: 대/가구)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표본조사, 2023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 에너지 상설표본조사	2011	2020	1년

02
대 표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Distribution of households by type of heating facility

지표 정의

난방설비는 크게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으로 구분된다.

• 가구의 에너지원별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 수립에 활용가능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난방시설(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별 가구 수, 인구총조사의 난방시설 조사에 기초한다.**

표 12-4 거처별 ·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2020)

(단위: 천 가구, %)

구분	난방 시설계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							
				소계	도시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화목 보일러	기타
계	20,927 (100.0)	633 (3.0)	3,172 (15.2)	17,122 (81.8)	13,939 (66.6)	1,849 (8.8)	502 (2.4)	559 (2.7)	82 (0.4)	111 (0.5)	80 (0.4)
주택	19,842 (100.0)	515 (2.6)	3,005 (15.1)	16,321 (82.3)	13,392 (67.5)	1,753 (8.8)	475 (2.4)	466 (2.4)	76 (0.4)	104 (0.5)	55 (0.3)
단독주택	6,352 (100.0)	0 (0.0)	0 (0.0)	6,352 (100.0)	3,828 (60.3)	1,619 (25.5)	251 (4.0)	427 (6.7)	74 (1.2)	102 (1.6)	51 (0.8)
아파트	10,782 (100.0)	505 (4.7)	2,972 (27.6)	7,306 (67.8)	7,147 (66.3)	31 (0.3)	125 (1.2)	3 (0.0)	0 (0.0)	0 (0.0)	0 (0.0)
연립주택	442 (100.0)	2 (0.5)	28 (6.4)	412 (93.1)	360 (81.5)	20 (4.5)	30 (6.8)	1 (0.3)	0 (0.1)	0 (0.0)	0 (0.0)
다세대주택	1,945 (100.0)	2 (0.1)	3 (0.2)	1,940 (99.7)	1,848 (95.0)	35 (1.8)	50 (2.6)	7 (0.3)	0 (0.0)	0 (0.0)	0 (0.0)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320 (100.0)	6 (2.0)	2 (0.7)	312 (97.3)	208 (65.0)	49 (15.1)	19 (6.0)	29 (8.9)	2 (0.5)	2 (0.5)	4 (1.1)
주택 이외의 거처	1,085 (100.0)	117 (10.8)	166 (15.3)	802 (73.9)	547 (50.4)	96 (8.8)	27 (2.5)	93 (8.6)	6 (0.6)	7 (0.7)	25 (2.3)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거처 종류의 난방시설 구성비를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 (http://kosis.kr에서 2023.05.0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총조사	1960	2020	5년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표 12-5 연도별 · 지역별 ·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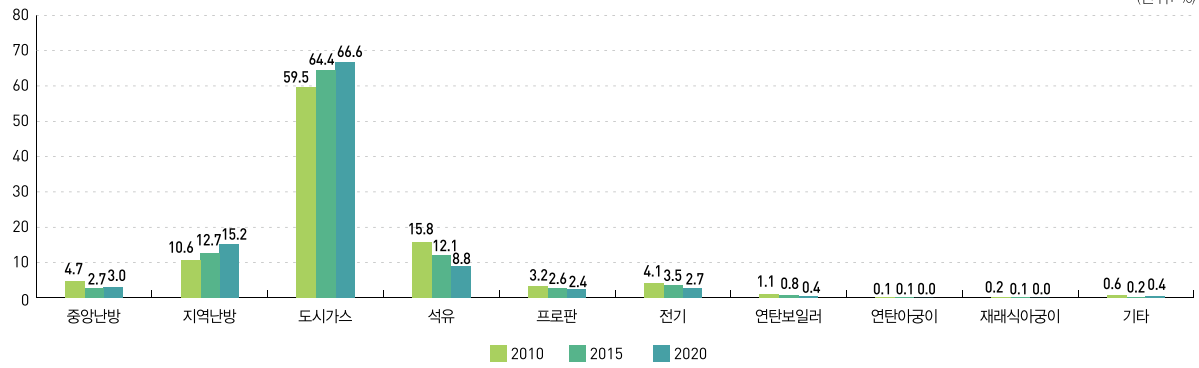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난방 시설계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								
					소계	도시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전국	2010	100.0	4.7	10.6	84.7	59.5	15.8	3.2	4.1	1.1	0.1	0.2	0.6
	2015	100.0	2.7	12.7	84.6	64.4	12.1	2.6	3.5	0.8	0.1	0.1	0.2
	2020	100.0	3.0	15.2	81.8	66.6	8.8	2.4	2.7	0.4	-	-	0.4
동부	2010	100.0	5.7	12.4	81.9	67.8	9.3	1.9	2.1	0.5	0.0	0.0	0.2
	2015	100.0	3.3	15.1	81.6	71.9	5.9	1.7	1.5	0.3	0.0	0.0	0.1
	2020	100.0	3.6	18.0	78.4	72.5	3.1	1.3	1.1	0.2	-	-	0.2
읍부	2010	100.0	0.9	4.1	95.0	41.3	30.4	11.4	7.8	2.6	0.2	0.3	1.1
	2015	100.0	0.7	4.4	94.9	51.6	24.6	7.8	7.0	2.0	0.1	0.2	0.4
	2020	100.0	0.7	5.7	93.6	62.1	17.7	6.5	5.0	0.8	-	-	0.6
면부	2010	100.0	0.3	2.0	97.7	10.2	54.8	6.0	16.3	4.8	0.4	1.7	3.5
	2015	100.0	0.1	0.3	99.6	15.2	51.2	5.8	16.3	3.8	0.4	0.8	0.8
	2020	100.0	0.5	0.7	98.8	21.1	48.1	7.9	13.8	1.8	-	-	1.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08. 인출)

그림 12-2 연도별 ·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변화 (2010~2020)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08. 인출)

표 12-6 표본가구의 난방연료별 분포 (2019)

(단위: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탄	0.7	0.3	0.0	0.9	0.3	0.4	0.0	0.0	0.0	0.1	3.2	1.7	1.6	1.4	0.0	3.1	0.5	0.8
등유	10.7	0.1	8.6	10.7	1.9	8.4	3.8	1.6	9.3	2.1	23.2	19.9	25.0	16.8	33.8	26.6	19.2	48.8
프로판	1.8	0.0	0.9	1.9	0.0	0.0	0.9	0.0	1.0	0.1	3.2	1.7	5.1	2.2	4.1	1.4	6.6	28.9
도시가스	68.6	86.6	76.9	8.4	75.7	85.0	82.5	94.8	40.2	65.3	56.0	56.0	55.4	69.5	55.6	58.6	49.9	11.6
지역난방	11.4	11.7	8.3	3.8	19.8	0.9	7.7	0.0	20.6	27.9	0.0	8.7	1.9	0.0	0.0	2.0	4.3	0.0
전기	5.8	0.5	5.3	1.6	1.3	4.4	4.3	3.7	25.8	3.3	13.6	11.6	10.3	4.1	4.1	6.3	18.8	9.9
기타	1.0	0.8	0.0	9.3	1.1	0.9	0.9	0.0	3.1	1.3	0.8	0.4	0.6	2.3	2.3	2.0	0.7	0.0

주: 기타는 실제 주로 이용하는 설비로 재래식아궁이, 화목보일러, 태양열, 중앙난방(BC유, 정제유), 또는 없음으로 응답한 가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에너지패널조사 (http://www.kesis.net에서 2023.06.01. 인출)

03
대 표

도시가스 보급률

Penetration rate of city gas

지표 정의

총가구에서 도시가스를 난방용 또는 취사용으로 공급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 해당 지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함으로써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text{도시가스 수용 가구 수} \div \text{총 가구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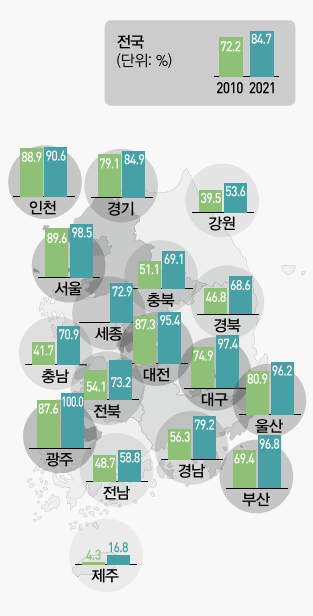
표 12-7 연도별 ·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추이 (2002~2021)

(단위: %)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2	62.6	87.2	41.8	53.4	81.6	59.1	64.0	51.8	-	71.5	29.4	48.4	16.6	48.8	37.8	31.0	17.8	-
2003	64.1	88.9	45.7	53.6	83.3	61.3	66.4	55.8	-	72.6	31.0	39.5	20.2	51.8	39.9	37.1	42.7	-
2004	65.5	89.4	49.6	57.6	85.4	63.4	67.8	61.2	-	73.9	33.1	41.0	21.9	46.5	41.0	41.2	44.1	-
2005	65.6	88.7	53.1	59.9	85.9	66.4	68.8	66.7	-	75.1	35.0	42.2	24.9	49.6	37.3	42.7	44.8	0.7
2006	67.1	87.4	56.6	66.5	85.3	69.4	76.4	69.1	-	75.2	37.2	46.6	29.0	52.8	39.3	45.9	46.8	2.3
2007	68.3	86.9	61.2	65.9	85.8	73.4	79.8	70.3	-	75.0	39.2	50.4	32.0	56.2	40.5	50.7	48.2	2.5
2008	69.8	86.8	65.6	70.1	86.8	80.6	83.4	75.7	-	76.4	39.2	45.5	35.8	59.7	42.9	51.4	51.8	2.6
2009	71.2	87.5	68.6	73.1	88.0	84.8	85.9	79.0	-	77.5	42.6	48.8	39.1	53.9	45.8	51.7	54.5	3.0
2010	72.2	89.6	69.4	74.9	88.9	87.6	87.3	80.9	-	79.1	39.5	51.1	41.7	54.1	48.7	46.8	56.3	4.3
2011	75.0	92.3	72.6	77.8	91.5	91.2	90.7	83.8	-	81.2	48.0	53.4	45.3	58.1	50.2	48.9	58.4	5.6
2012	75.8	92.0	74.8	80.1	91.0	92.4	91.0	85.7	-	82.1	49.4	55.0	48.4	58.4	46.6	49.6	57.1	6.2
2013	78.6	95.4	79.8	84.6	89.6	96.6	92.8	87.8	52.5	85.7	49.7	59.1	52.2	62.1	45.1	53.8	61.8	9.3
2014	79.4	95.6	82.9	87.5	90.4	99.7	93.4	89.2	72.2	85.5	46.2	61.8	54.8	64.3	47.0	56.1	63.7	10.1
2015	80.8	96.6	85.4	90.7	91.2	95.8	94.1	90.7	79.1	86.3	47.1	63.5	57.7	66.1	48.4	59.1	66.4	11.6
2016	82.0	98.0	87.6	94.0	92.0	97.6	94.4	91.8	79.3	87.0	47.8	62.9	61.2	68.0	49.8	61.6	67.4	12.6
2017	83.1	98.6	89.9	95.7	92.8	99.3	94.6	93.2	81.4	87.9	49.7	65.6	64.5	69.0	51.3	63.7	71.8	9.2
2018	84.4	98.2	92.3	96.4	92.9	99.9	94.8	93.9	81.0	88.1	52.5	66.8	67.3	70.0	53.4	65.9	75.3	14.0
2019	85.0	98.2	94.8	97.1	92.5	100.2	95.1	95.0	80.1	87.7	54.0	67.5	68.8	71.0	55.6	66.9	78.3	14.3
2020	84.7	97.6	95.5	97.3	91.1	99.7	95.3	95.9	76.9	86.0	55.5	68.2	70.0	71.8	57.1	67.6	79.0	15.1
2021	84.7	98.5	96.8	97.4	90.6	100.0	95.4	96.2	72.9	84.9	53.6	69.1	70.9	73.2	58.8	68.6	79.2	16.8

자료: 통계청, 도시가스 보급률(시도) (http://kosis/kr에서 2023.05.08. 인출)

그림 12-3 시도별 2010년 대비 2020년의 도시가스 보급률 변화 (2010년 대비 2021년)



자료: 통계청, 도시가스 보급률(시도)
(http://kosis/kr에서 2023.05.0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편람	1987	2020	1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1982	2020	1년

04
대 표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Fuel costs by income decile

지표 정의

연료비는 일반가구에서 조명, 냉난방 및 취사 등 일상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 소득분위별 연료비는 각 소득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을 의미하며,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가구당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및 지출 현황에 기초한다.**

유의사항 연료비에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에너지 가격 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가구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표 12-8 분기별 월평균 연료비 (2020~2022)

(단위: 원)

구분	2020				2021				202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료비	140,675	91,409	61,574	85,193	146,192	81,745	71,221	84,902	150,502	89,055	78,816	98,167

주: 2인 이상 비농림어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3.05.09. 인출)

표 12-9 소득분위별 월평균 연료비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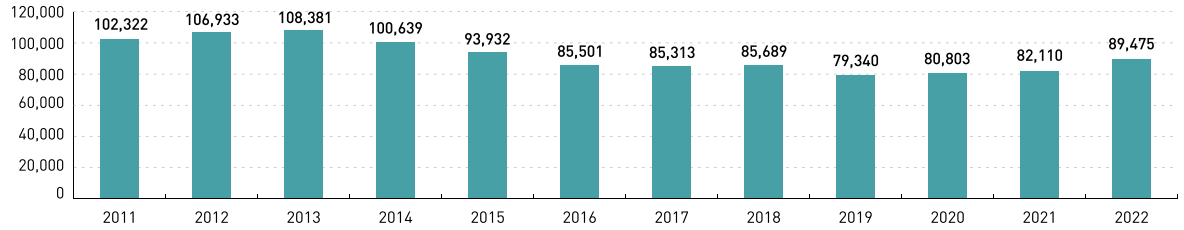
(단위: 원)

소득분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분위	62,065	63,859	56,770	50,493	49,088	58,246	54,946	52,480	52,325	55,446	63,044
2분위	73,882	75,269	71,580	67,429	59,155	60,633	62,518	60,615	62,511	64,132	71,931
3분위	89,858	90,009	80,377	76,388	73,369	72,414	69,004	67,003	67,967	68,759	72,853
4분위	101,387	100,655	93,742	84,868	78,089	77,993	76,831	70,649	68,602	71,697	73,951
5분위	107,164	111,189	103,742	95,731	84,637	78,293	83,547	74,523	77,571	78,853	84,269
6분위	117,098	115,392	110,010	99,906	92,663	87,906	86,526	84,169	84,563	83,873	92,871
7분위	120,715	120,034	115,640	108,294	95,851	92,951	96,096	87,906	87,660	87,619	97,573
8분위	122,223	127,997	116,198	111,216	101,038	100,653	101,189	91,250	95,552	94,821	105,068
9분위	129,571	131,998	121,467	117,281	104,987	103,047	107,179	97,888	99,345	105,310	111,333
10분위	145,274	147,292	136,790	127,669	116,052	120,946	119,022	106,898	111,896	110,525	121,840
전체 평균	106,933	108,381	100,639	93,932	85,501	85,313	85,689	79,340	80,803	82,110	89,475

주: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3.05.10. 인출)

그림 12-4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 (2011~2022)

(단위: 원)



주: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3.05.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22	분기, 1년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05
대 표

소득(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율

Fuel cost as percentage of income, by income decile

지표 정의

연료비/소득(소비지출) 비율은 소득 또는 총 소비지출에서 연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 비율은 각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 연료비/소득 비율을 의미하며, 가구의 에너지 비용부담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국민에게 적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월평균 연료비}}{\text{월평균 경상소득}} \times 100$,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및 지출 현황에 기초한다.

유의사항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는 지출과 소득부문이 분리되어 재설계되었으며, 지출부문은 연간통계로 개편되었다. 또한 연료비에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에너지 가격 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가구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표 12-10 분기별 연료비/소득 비율 (2020~2022)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분위	12.1	5.9	4.3	6.6	10.6	5.8	4.1	6.8	14.0	7.6	6.1	10.1
10분위	1.3	1.0	0.6	0.9	1.4	0.8	0.7	0.8	1.3	0.9	0.8	0.9
전체 평균	2.7	1.8	1.2	1.7	2.8	1.6	1.3	1.6	2.7	1.6	1.4	1.8

주: 2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3.05.10 인출)

표 12-11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비지출 비율 (2009~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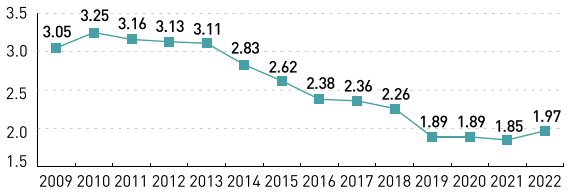
(단위: %)

소득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분위	8.4	9.1	9.2	9.5	10.2	8.6	8.3	7.3	5.3	5.2	6.0	5.8	5.4	6.0
2분위	7.1	7.7	7.6	7.6	7.8	7.8	7.2	6.6	5.1	5.0	5.2	5.2	5.0	5.2
3분위	6.4	6.8	6.5	6.8	7.0	6.2	5.9	5.8	4.4	4.3	4.2	4.4	4.3	4.3
4분위	5.8	5.8	5.6	6.1	5.8	5.5	5.0	4.9	4.0	4.0	4.0	3.9	4.0	4.3
5분위	5.2	5.4	5.2	5.4	5.3	5.1	4.8	4.4	3.5	3.6	3.5	3.8	3.7	3.7
6분위	4.9	5.1	4.9	5.2	5.3	4.7	4.4	4.1	3.4	3.4	3.3	3.6	3.5	3.6
7분위	4.6	4.8	4.7	4.8	4.7	4.3	4.1	3.7	3.2	3.4	3.1	3.3	3.1	3.2
8분위	4.2	4.4	4.3	4.2	4.3	4.0	3.7	3.5	3.1	3.1	2.9	3.1	2.9	3.1
9분위	3.7	4.1	4.0	4.0	4.1	3.6	3.5	3.2	2.7	2.8	2.7	2.7	2.8	2.9
10분위	3.3	3.6	3.6	3.6	3.6	3.2	3.0	2.7	2.5	2.5	2.2	2.4	2.3	2.4
전체 평균	4.7	5.0	4.9	5.0	5.0	4.6	4.3	3.9	3.3	3.4	3.2	3.4	3.3	3.4

주: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9. 인출)

그림 12-5 연료비/소득 비율 (2009~2022)

(단위: %)



주: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0. 인출)

표 12-12 가구주 연령별 연료비/소득 비율 (2011~2022)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9세 이하	2.8	2.9	2.7	2.5	2.3	2.1	1.7	1.7	1.6	1.6	1.6	1.7
40~49세	2.9	2.8	2.8	2.5	2.3	2.1	1.9	1.8	1.7	1.7	1.6	1.7
50~59세	3.0	2.8	2.9	2.6	2.4	2.1	2.1	2.0	1.7	1.7	1.7	1.9
60세 이상	4.8	4.7	4.9	4.4	4.0	3.6	4.2	3.9	2.7	2.7	2.5	2.7
전체 평균	3.2	3.1	3.1	2.8	2.6	2.4	2.4	2.3	1.9	1.9	1.9	2.0

주: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0. 인출)

표 12-13 가구원 수별 연료비/소득 비율 (2011~2022)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인	4.3	4.3	4.4	4.0	3.5	3.2	3.1	3.0	2.1	2.0	2.0	2.1
2인	3.6	3.6	3.5	3.2	3.0	2.7	2.8	2.7	2.3	2.2	2.1	2.3
3인	3.0	2.9	2.9	2.6	2.4	2.2	2.2	2.1	1.7	1.8	1.7	1.8
4인	2.8	2.8	2.7	2.5	2.3	2.0	2.1	1.9	1.6	1.6	1.6	1.7
5인 이상	3.1	3.1	3.1	2.8	2.6	2.4	2.4	2.2	1.9	1.9	1.9	2.0
전체 평균	3.2	3.1	3.1	2.8	2.6	2.4	2.4	2.3	1.9	1.9	1.9	2.0

주: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3.05.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22	분기, 1년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06
대 표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Energy consumption per household

지표 정의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산업, 수송, 가정, 상업 및 공공기타) 중 가정부문에서 소비되는 가구당 전력과 취사 및 난방용(온수용 포함) 에너지 소비를 의미한다.

• 가구당 에너지 소비는 가구의 평균 에너지 소비 수준을 통해 적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표 12-14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량 (2019)

(단위: Mcal)

구 분	200 만 원 미만	200-400 만 원 미만	400-600 만 원 미만	600 만 원 이상	합계
일반전기	2,471.0	2,654.3	2,987.0	3,104.8	2,749.1
심야전기	459.3	117.0	182.6	37.3	213.7
전기소계	2,930.3	2,771.3	3,169.6	3,142.1	2,962.9
등유	1,377.1	362.2	274.0	260.2	580.7
프로판	490.6	320.5	185.6	151.4	307.4
기타석유	4.4	14.9	9.8	-	9.3
석유소계	1,872.1	697.6	469.4	411.6	897.4
도시가스	3,521.1	5,371.7	6,190.4	6,447.6	5,251.4
지역난방	405.1	659.6	1,245.0	1,689.6	867.0
연탄	261.5	81.5	19.0	110.4	111.4
기타	67.6	46.3	40.3	130.7	58.3
합계	9,057.7	9,627.9	11,134.0	11,932.0	10,14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년 가구에너지패널조사(결과표3)

표 12-15 가구원 수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2019)

(단위: Mcal)

구 분	1명	2명	3명	4명 이상	합계
일반전기	2,215.4	2,818.0	3,016.9	3,144.3	2,749.1
심야전기	281.2	300.3	104.1	112.6	213.7
전기소계	2,496.6	3,118.2	3,121.0	3,256.9	2,962.9
등유	925.1	739.5	237.4	225.3	580.7
프로판	354.5	380.2	239.6	211.7	307.4
기타석유	26.2	5.2	-	0.3	9.3
석유소계	1,305.8	1,124.9	477.1	437.3	897.4
도시가스	3,492.9	5,152.5	6,365.8	6,754.7	5,251.4
지역난방	304.7	626.2	1,296.3	1,551.6	867.0
연탄	154.7	190.6	26.9	29.3	111.4
기타	29.9	71.8	87.5	51.6	58.3
합계	7,784.6	10,284.0	11,375.0	12,081.0	10,14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년 가구에너지패널조사(결과표3)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총조사	1981	2019	3년

표 12-16 사용건평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2019)

(단위: Mcal)

구 분	33㎡미만	33-66㎡미만	66-99㎡미만	99-132㎡미만	132㎡이상	합계
일반전기	1,812.8	2,601.5	2,958.9	3,121.3	3,178.1	2,749.1
심야전기	58.8	69.5	303.1	555.7	276.6	213.7
전기소계	1,871.6	2,670.9	3,262.0	3,677.0	3,454.7	2,962.9
등유	330.2	412.0	728.1	846.7	675.1	580.7
프로판	93.3	287.4	372.4	280.3	314.2	307.4
기타석유	-	23.0	-	-	-	9.3
석유소계	423.5	722.3	1,100.5	1,126.9	989.3	897.4
도시가스	3,966.7	4,907.7	5,676.0	5,535.4	6,957.8	5,251.4
지역난방	177.9	820.7	881.8	1,262.4	2,143.4	867.0
연탄	147.3	107.4	103.4	159.3	-	111.4
기타	12.0	9.6	67.1	260.7	77.0	58.3
합계	6,599.1	9,238.7	11,091.0	12,022.0	13,622.0	10,14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년 가구에너지패널조사(결과표3)

표 12-17 주택종류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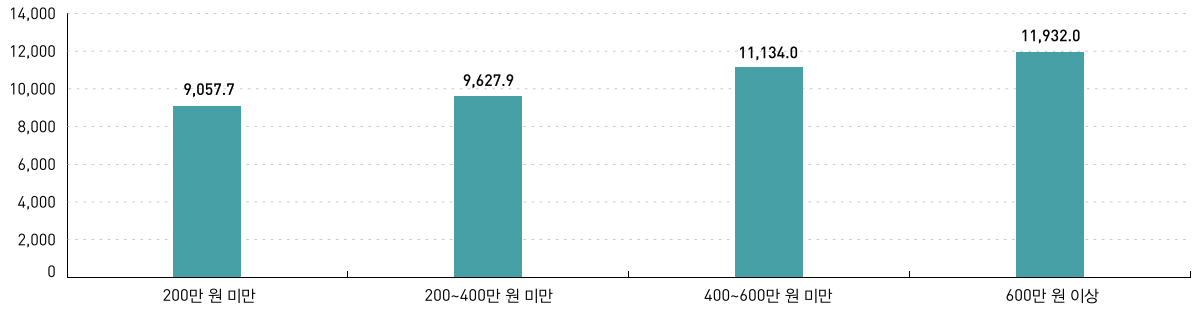
(단위: Mcal)

구 분	단독	다세대/연립	아파트	합계
일반전기	2,742.3	2,534.7	2,826.2	2,749.1
심야전기	649.1	54.6	-	213.7
전기소계	3,391.4	2,589.3	2,826.2	2,962.9
등유	1,768.2	114.1	8.9	580.7
프로판	572.3	126.2	205.9	307.4
기타석유	-	-	18.2	9.3
석유소계	2,340.5	240.3	233.1	897.4
도시가스	4,541.0	6,112.3	5,395.8	5,251.4
지역난방	-	201.6	1,626.5	867.0
연탄	353.0	2.0	-	111.4
기타	176.1	10.9	1.9	58.3
합계	10,802.0	9,156.3	10,083.0	10,14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년 가구에너지패널조사(결과표3)

그림 12-6 월평균 소득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2019)

(단위: Mcal)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8

07
대 표

에너지효율 개선

지표 정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총규모와 가구 수를 의미한다.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시켜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가구를 포함한다.

측정 산식

• **총지원액 및 지원 가구 수**

표 12-18 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 (2014~2021)

(단위: 억 원,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담기관
효율개선	전력효율향상 (고효율 조명 보급)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총지원액	356	260	240	233	234	222	211	162	"전력기금 (지자체)"
			지원 가구 수	76,800	34,780	29,761	32,779	35,653	35,694	20,473	21,17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 주택 창호·단열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가구당 220만 원 한도)	총지원액	671	613	489	489	639	819	767	869	에특회계 (한국 에너지 재단)
			지원 가구 수	42,158	40,707	29,468	26,128	30,385	30,053	37,606	43,22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	2021	1년

08
대 표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지표 정의

에너지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할인 사업의 지원 내용과 가구 수를 의미한다.

• 에너지 가격 할인을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경감시켜 준다.

측정 산식

• **총지원액 및 지원 가구 수**

표 12-19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사업 현황 (2014~2021)

(단위: 억 원, 천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담기관
가격할인사업	전기요금 할인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상이자/유공자(16천 원/월, 여름철 2만 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10천 원/월, 여름철 12천 원), 차상위(8천 원/월, 여름철 10천 원), 복지시설(주택 30%) 등	총지원액	2,617	2,623	2,748	4,831	5,540	5,712	5,854	5,835	민간자금 (한국전력공사)
			지원 가구 수	2,328	2,360	2,477	2,809	3,296	3,397	3,515	3,646	
	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유공자,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 12,400원, 주거급여, 차상위 월평균 6,200원 교육급여, 차상위확인서 월평균 3,100원	총지원액	936	997	1,027	1,121	1,188	1,296	1,393	1,514	민간자금 (한국가스공사)
			지원 가구 수	865	926	1,039	1,163	1,266	1,359	1,504	1,610	
	열요금 감면	기본요금 전액 감면 (10천 원/월)	총지원액	56	59	62	65	67	71	78	83	민간자금 (지역난방공사)
			지원 가구 수	157	168	175	181	189	203	220	235	

주 : '16.12월 이후 변경, 상세내용은 아래의 표 12-21 참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복지 주요 통계, 2023

표 12-20 지원대상별 전기요금 할인 현황 (2022)

(단위: 천 가구, 억 원)

구분	도입일	대상종별	할인내용(2016년)		호수 (천 가구)	할인액(억 원)	
			2016.11월까지	2016.12월 이후	2022	2021	2022
장애인	'04. 3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월 16천 원 한도 (여름철 2만 원 한도)	674	1,224	1,437
유공상이자	'04. 3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7	14	16
독립유공자	'05.12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7	12	15
기초생활 수급자	'05.12	주택용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8천 원 한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천 원 (여름철 2만 원) 한도	944	1,325	1,663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4천 원 한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천 원 (여름철 12천 원) 한도	278	249	364
	'08. 1	심야	갑 31.4%, 을 20.0%	갑 31.4%, 을 20.0%	18	30	40
사회복지시설	'07. 1	주택용	21.6%	30.0%	95	842	946
		일반용	20.0%	30.0%			
	'08. 1	심야	갑 31.4%, 을 20.0%	갑 31.4%, 을 20.0%			
차상위계층	'08. 7	주택용	월 2천 원 한도	월 8천 원 한도(여름철 1만 원 한도)	197	201	239
	'10. 8	심야	갑 29.7%, 을 18.0%	갑 29.7%, 을 18.0%			
3자녀 이상 가구	'09. 8	주택용	20.0%(월 1만 2천 원 한도)	30.0% (월 16천 원 한도)	582	849	915
대가족	'07. 1	주택용	한 단계 낮은 요율(월 1만 2천 원)		278	321	328
출산가구	'16. 12	주택용	–		600	741	804
생명유지장치	'07. 8	주택용	한 단계 낮은 요율(301~600kWh)	30.0%	19	27	33
합계					3,699	5,835	6,800

자료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7.jsp 2023.05.1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내부자료)	-	2021	1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	2022	1년

09
대 표

연료비 지원

지표 정의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용 및 여름철 냉방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적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유도한다.

측정 산식

• **총지원액 및 지원 가구 수**

표 12-21 연료비 지원사업 현황 (2015~2021)

(단위: 억 원,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담기관
연료비 지원 사업	등유 바우처	(가구당 310천 원)	총지원액	39	36	32	24	20	16	20	에특회계 (한국에너지재단)
			지원 가구 수	12,460	11,800	9,423	7,934	6,342	4,915	4,064	
	연탄쿠폰	(2016년까지 가구당 169천 원, 2017년 313천 원, 2019년 406천 원, 2020년 472천 원)	총지원액	131	172	221	183	222	268	218	에특회계 (한국광해 관리공단)
			지원 가구 수	77,413	73,175	63,712	58,791	54,670	49,743	46,051	
	순에너지 바우처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 등 구입 가능한 전자바우처	총지원액	405	512	512	498	578	632	806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가구 수	494,627	523,664	545,930	565,498	641,780	660,861	77,7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2011	2021	1년

13

환경

01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02 주요 도시 소음도
0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04 GPD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05 상수도 보급률
06 하수도 보급률
07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08 환경성질환자 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환경상태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주요 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주요 도시 소음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환경관리	GPD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환경예산 비율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하수도 설치율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환경 보건	환경성질환자 수	

01 대 표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Concentration level of particulate matter(PM-2.5) in major cities

지표 정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1㎥에 들어있는 미세먼지의 질량이다. 초미세먼지는 직경 2.5㎛ 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하며 PM-2.5이라 표기하고, 입자의 직경이 10.0㎛ 이하인 경우는 미세먼지라 부르고 PM-10이라 표기한다.

측정 산식

• 대기 1㎥에 들어있는 직경 2.5㎛ 이하의 먼지 입자(PM-2.5)의 질량

표 13-1 항목별 대기오염도 (200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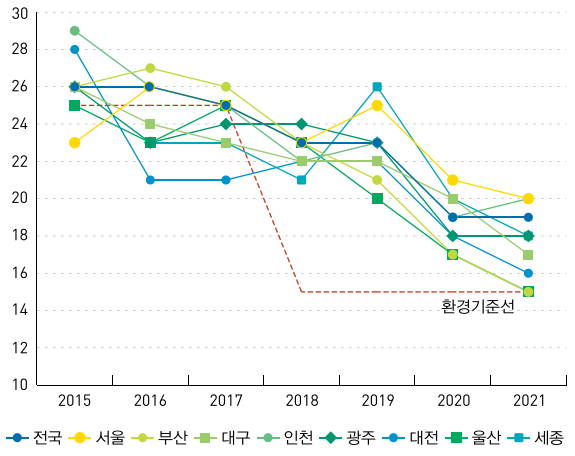
(단위: ppm, ㎍/㎥)

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SO_2 (ppm)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5 (0.020)	0.005 (0.020)	0.005 (0.020)	0.006 (0.020)	0.005 (0.020)	0.005 (0.020)	0.005 (0.020)	0.004 (0.020)	0.004 (0.020)	0.004 (0.020)	0.003 (0.020)	0.003 (0.020)
NO_2 (ppm)	0.025 (0.050)	0.026 (0.050)	0.026 (0.030)	0.026 (0.030)	0.025 (0.030)	0.025 (0.030)	0.024 (0.030)	0.023 (0.030)	0.024 (0.030)	0.024 (0.030)	0.023 (0.030)	0.023 (0.030)	0.022 (0.030)	0.020 (0.030)	0.018 (0.030)	0.016 (0.030)	0.015 (0.030)
O_3 (ppm)	0.021	0.021	0.022	0.023	0.024	0.023	0.024	0.025	0.026	0.027	0.027	0.027	0.029	0.027	0.030	0.030	0.032
CO (ppm)	0.6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4	0.4
PM-10 (㎍/㎥)	57 (70)	59 (70)	58 (50)	54 (50)	53 (50)	51 (50)	50 (50)	45 (50)	49 (50)	49 (50)	48 (50)	47 (50)	45 (50)	41 (50)	41 (50)	33 (50)	36 (50)
PM-2.5 (㎍/㎥)	-	-	-	-	-	-	-	-	-	-	26 (25)	26 (25)	25 (25)	23 (15)	23 (15)	19 (15)	18 (15)

주: 1) PM-2.5는 '15.1.1.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됨.
2) ()는 연평균 환경기준치
자료: 환경부, 2021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그림 13-1 주요 도시 연도별 PM-2.5 농도 (201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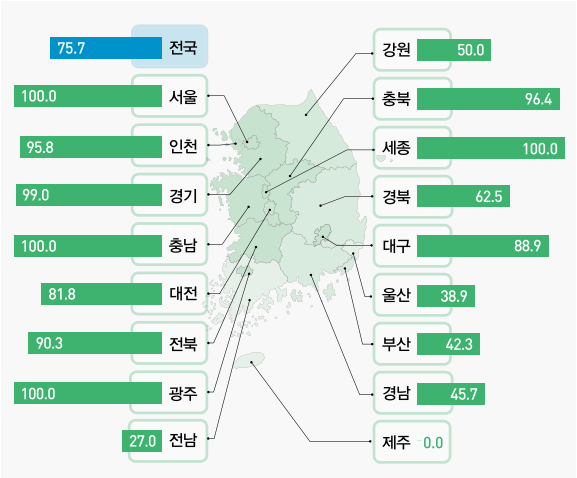
(단위: ㎍/㎥)



주 1) 전국 수치는 전체 측정망의 연평균 수치를 활용함.
2) 환경기준선은 2011년에 신설, 2015년부터 적용된 것으로 2017년까지는 환경기준선이 25㎍/㎥였으나, 2018년도부터 15으로 변경됨.
자료: 환경부, 2021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그림 13-2 시도별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초과율 (2021)

(단위: %)



주: 각 시도별 측정소 중 초과측정소/유효측정소 초과비율의 값임.
자료: 환경부, 2021 대기환경연보,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 현황	2015	2021	1개월

01-1
연 관

주요 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Concentration level of sulfur dioxide(SO_2) in major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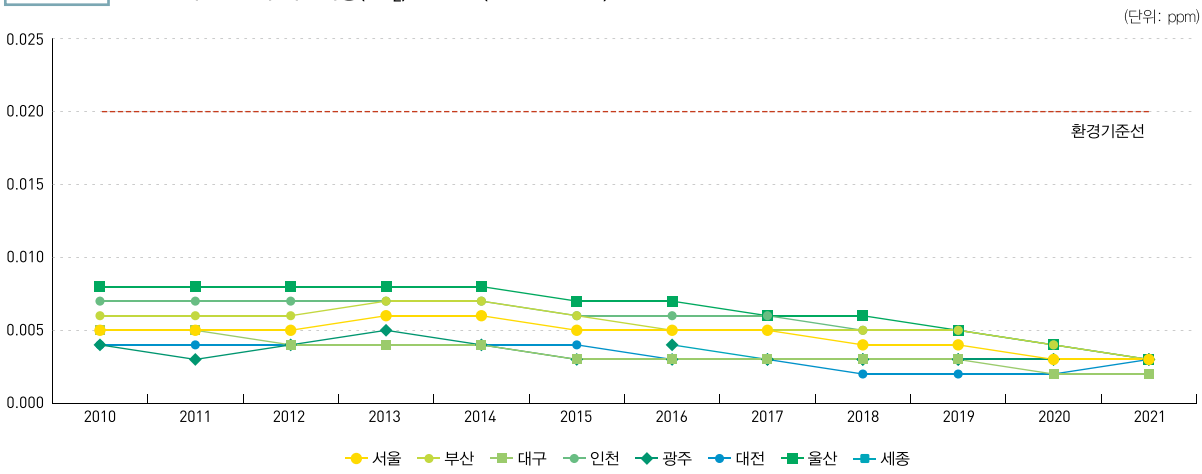
지표 정의

이산화황 오염도(ppm)는 대기 백만 리터(L)당 이산화황의 양이다.

측정 산식

- 대기 백만 리터에 들어있는 이산화황의 양(ppm, parts per million)

그림 13-3 연도별 주요 도시 이산화황(SO_2) 오염도 (2010~2021)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 현황	1980	2021	1개월

01-2
연 관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Concentration level of nitrogen dioxide(NO_2) in major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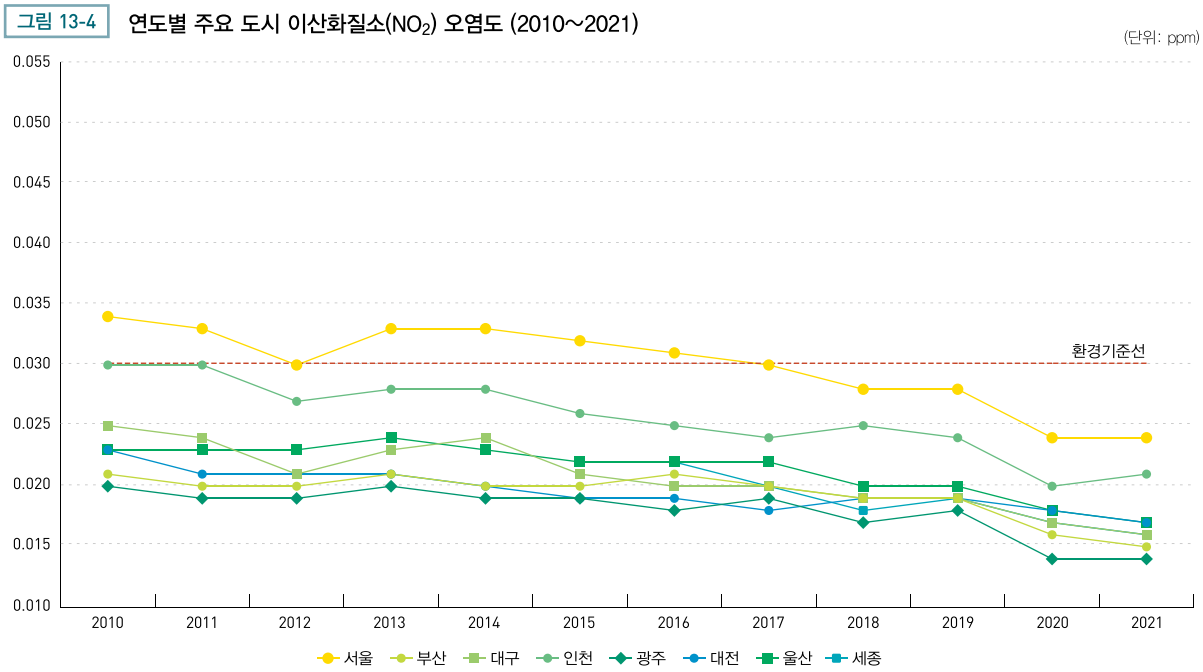
지표 정의

이산화질소 오염도(ppm)는 대기 백만 리터(L)에 들어있는 이산화질소의 양이다.

측정 산식

• 대기 백만 리터에 들어있는 이산화질소의 양(ppm, parts per million)

그림 13-4 연도별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NO_2) 오염도 (2010~2021)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 현황	1980	2021	1년

02
대 표

주요 도시 소음도

Noise level in major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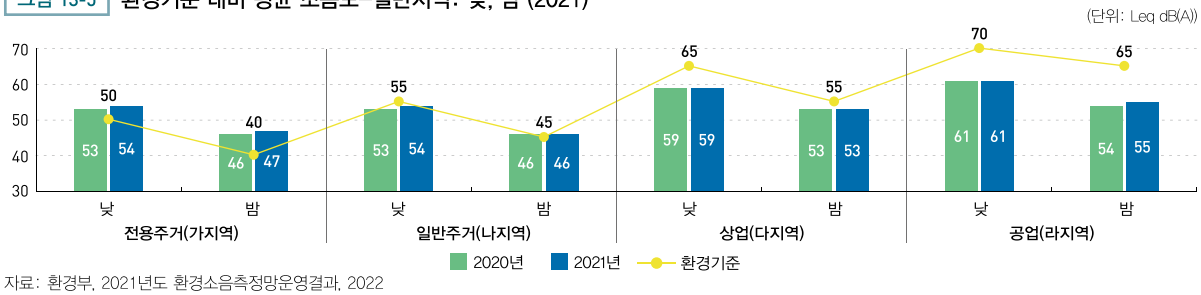
지표 정의

소음도는 소음의 크기를 뜻하며, 「소음 · 진동 관리법」 상 소음은 기계 · 기구 ·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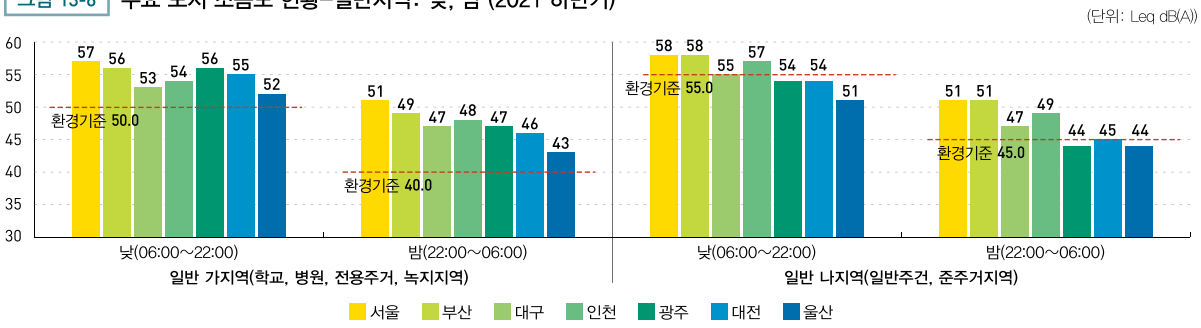
- 소음도는 데시벨(dB)로 측정한다.
- 낮 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점에서 2시간 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 밤 시간대에는 낮 시간대에 측정한 지점에서 2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그림 13-5 환경기준 대비 평균 소음도-일반지역: 낮, 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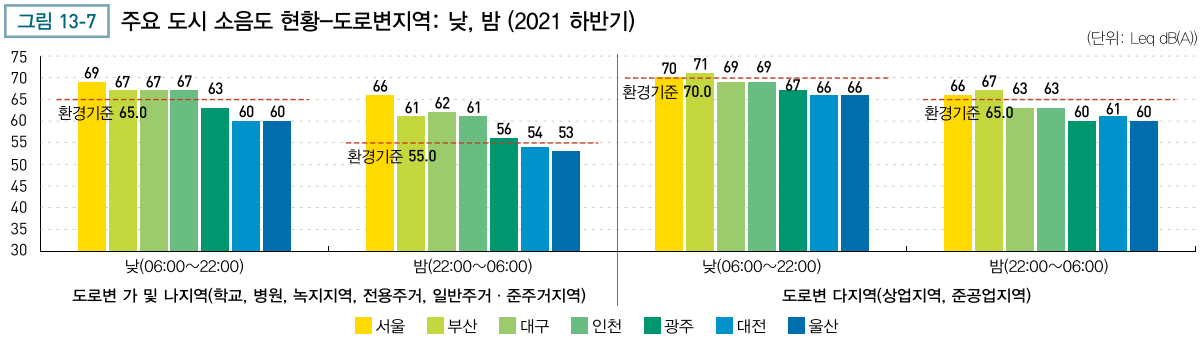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2021년도 환경소음측정망운영결과, 2022

그림 13-6 주요 도시 소음도 현황-일반지역: 낮, 밤 (2021 하반기)



자료: 환경부, 2021년도 환경소음측정망운영결과, 2022

그림 13-7 주요 도시 소음도 현황-도로변지역: 낮, 밤 (2021 하반기)



자료: 환경부, 2021년도 환경소음측정망운영결과,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주요 도시 환경소음도 현황	2000	2021	분기

03
대 표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Per capita park space

지표 정의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도시지역 인구 대비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도시공원의 규모는 도시 환경의 쾌적한 정도를 나타내며, 시민의 휴양과 건강을 위한 생활공간으로서 의미도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도시공원 조성 면적}}{\text{도시 지역 인구}}$

표 13-2 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200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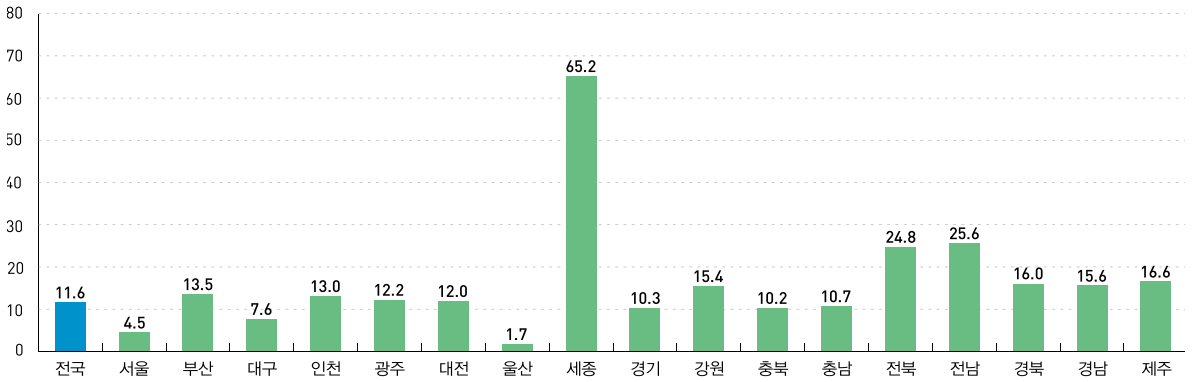
(단위: ㎢, ㎡/인)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도시공원 결정 면적	1,126	1,136	1,141	1,190	1,284	1,112	1,089	1,008	1,020	1,005	989	934	942	924	927	904	699	709
1인당 도시공원 결정 면적(㎡/인)	25.7	25.8	25.8	26.7	28.6	24.6	23.7	21.8	22.0	21.5	21.0	19.8	19.8	19.4	19.5	17.4	13.4	14.9
도시공원 조성 면적	361	304	293	330	461	368	384	386	412	404	406	418	437	455	480	498	525	551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인)	8.2	6.9	6.6	7.4	10.3	8.1	8.4	8.3	8.9	8.6	8.6	8.8	9.2	9.6	10.1	10.4	11.0	11.6

주: 1) 도시공원: 도시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간
2) 1인당 도시공원면적 = 도시공원 조성 면적 ÷ 도시 지역 총인구
3) 조성 면적 = 결정 면적 – 미집행 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2021 도시계획 현황, 각 연도

그림 13-8 시도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2021)

(단위: ㎡/인)



주: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도시지역 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자료: 국토교통부, 2021 도시계획 현황,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현황	2000	2021	1년

03-1
연 관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Number of city park per 10,000 city residents

지표 정의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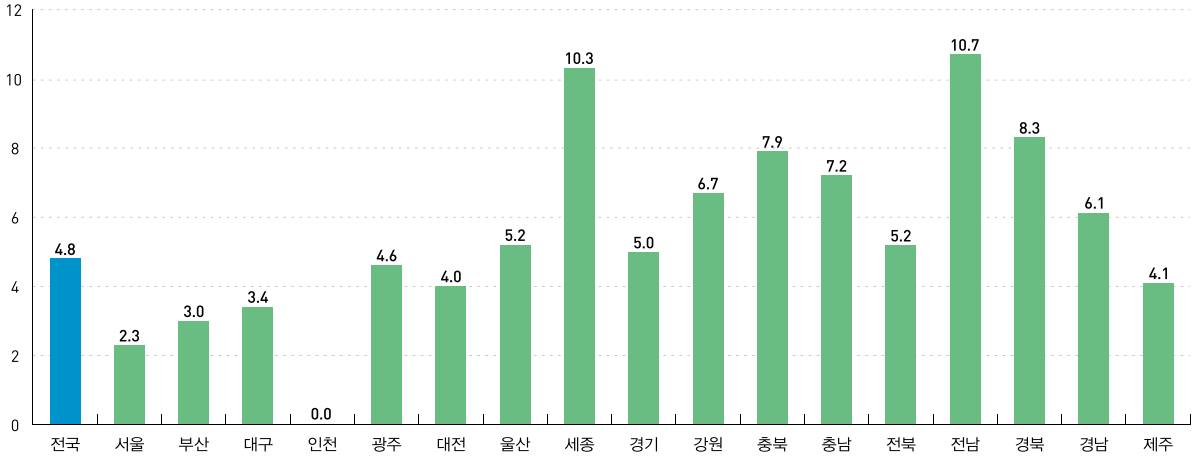
•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frac{\text{도시공원 개소}}{\text{도시지역 인구}} \times 10{,}000$$

그림 13-9 시도별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2021)

(단위: 개소/1만 명)



주: 1) 도시공원 수를 도시지역 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2) 결정 현황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조성 현황 기준과 차이가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2021 도시계획 현황, 2022 (http://kosis.kr에서 2023.04.1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현황	2006	2021	1년

03-2
연 관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Natural and artificial grasslands area per urban area population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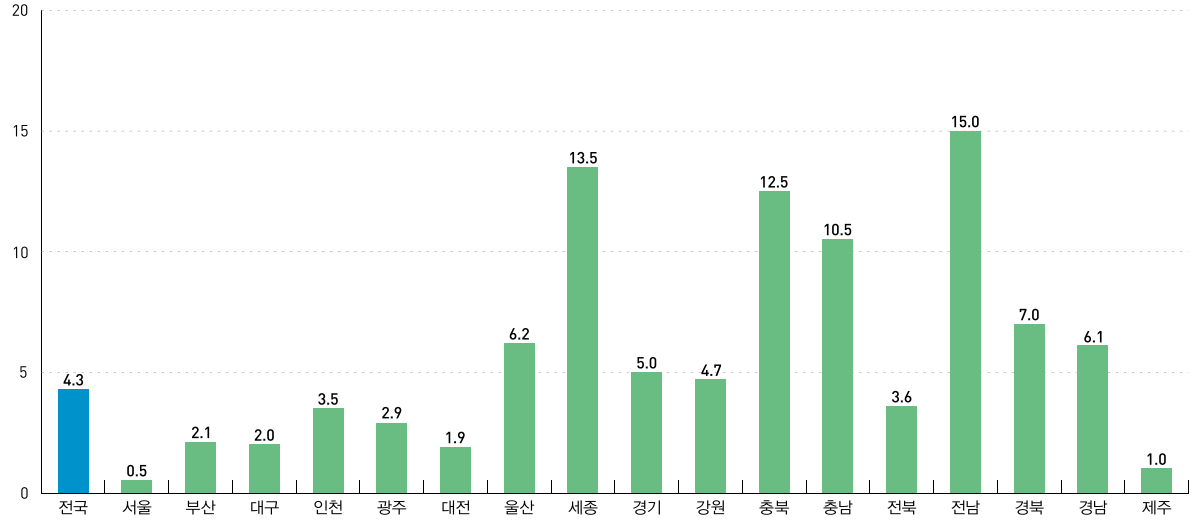
도시지역 인구 1인당 녹지조성 면적을 의미한다. 녹지란 도시공원과는 별개로 자연환경의 보전이나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측정 산식

$$\frac{\text{녹지조성 면적}}{\text{도시지역 인구}}$$

그림 13-10 시도별 도시지역 1인당 녹지조성 면적 (2021)

(단위: ㎡/인)



자료: 국토교통부, 2021 도시계획 현황,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현황	2006	2021	1년

04
대 표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s % of GDP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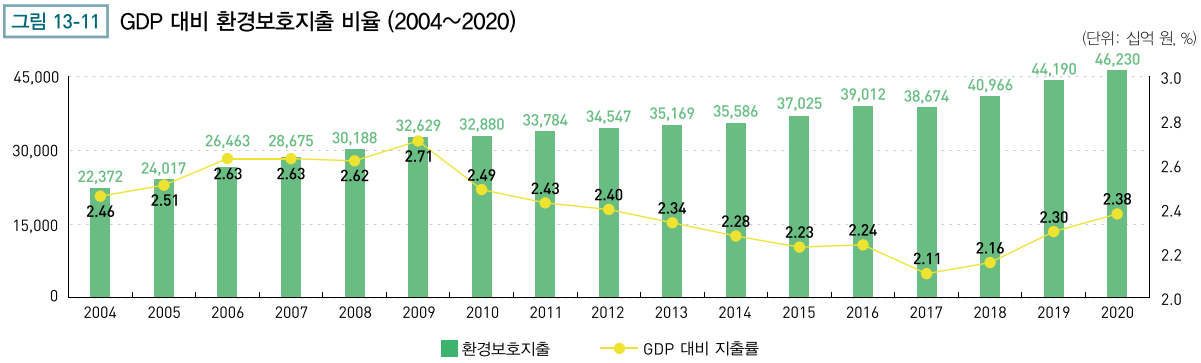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명목GDP에 대비한 국민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 금액의 비율이다. 환경보호지출은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 기업, 가계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말하며,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 지하수, 소음 · 진동, 생물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의 9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 국민경제 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행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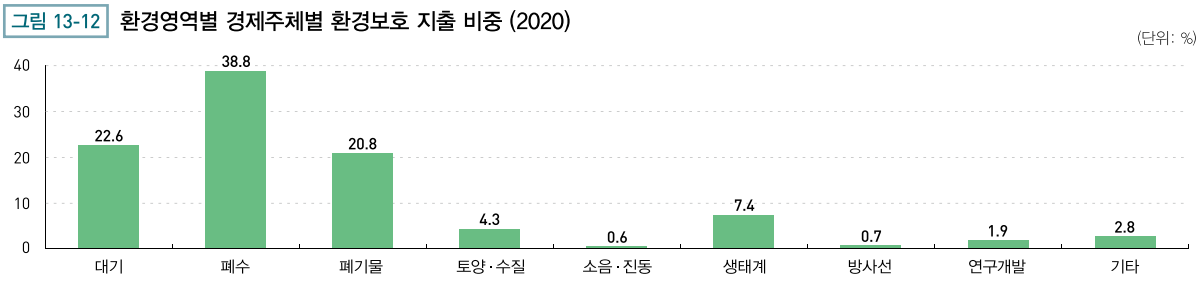
• $\frac{\text{환경보호 지출액}}{\text{명목 GDP}} \times 100$

그림 13-11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2004~2020)



주: 1) 국민환경보호지출(A표)
2)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 = (환경보호지출액 ÷ 명목 GDP) × 100
자료: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http://kosis.kr에서 2023.04.26. 인출)

그림 13-12 환경영역별 경제주체별 환경보호 지출 비중 (2020)



주: 국민환경보호지출(A표)
자료: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2021 (http://kosis.kr에서 2023.04.2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2004	2020	1년

04-1
연 관

환경예산 비율

Budget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 % of government budget

지표 정의

환경예산 비율은 정부예산 중 환경분야 예산(=환경부 예산 + 다른 부처 환경 관련 예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환경분야 예산}}{\text{정부 예산}}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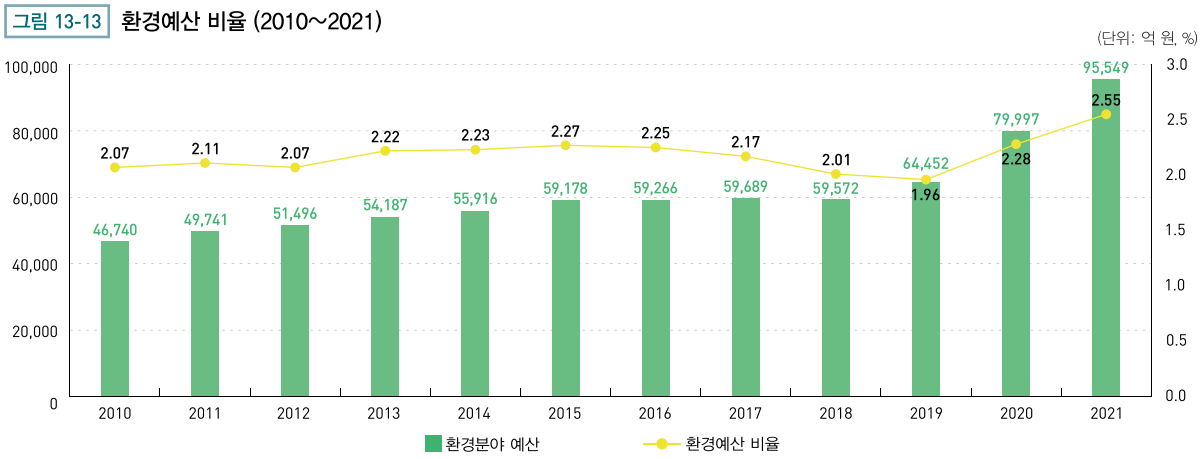
표 13-3 환경예산 비율 (2010~2021)

(단위: 억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정부예산	2,259,682	2,356,000	2,486,125	2,436,433	2,507,885	2,601,465	2,639,243	2,746,699	2,962,367	3,289,199	3,511,186	3,750,382
환경분야 예산	46,740	49,741	51,496	54,187	55,916	59,178	59,266	59,689	59,572	64,452	79,997	95,549
환경부 예산	44,832	47,778	49,897	52,206	54,121	57,191	56,975	57,287	57,082	61,855	77,713	93,274
환경예산 비율	2.07	2.11	2.07	2.22	2.23	2.27	2.25	2.17	2.01	1.96	2.28	2.55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그림 13-13 환경예산 비율 (2010~2021)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3	2021	1년

05
대 표

상수도 보급률

Water supply rate

지표 정의

상수도 보급률은 수돗물의 보급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인구 중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급수 인구}}{\text{총인구}} \times 100$

표 13-4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 (200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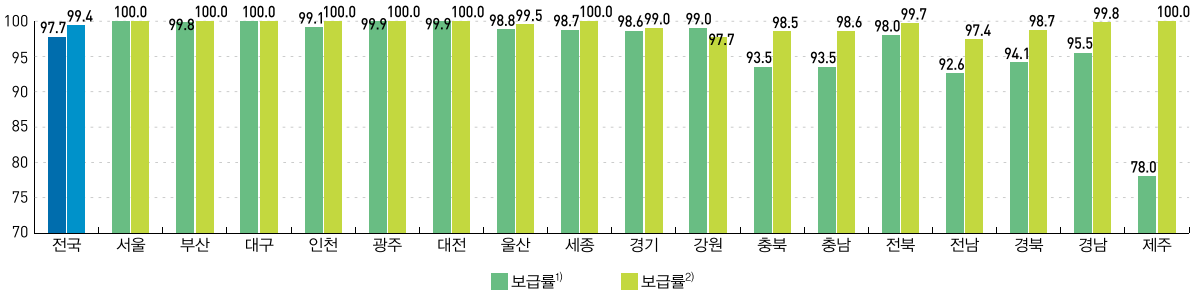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지역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급률1 (%)[1]	전국	93.5	94.1	94.6	95.1	95.7	96.1	96.5	96.4	96.8	97.0	97.3	97.4	97.7
	특 · 광역시	99.4	99.5	99.6	99.6	99.6	99.7	99.7	99.6	99.7	99.7	99.7	99.7	99.8
	농어촌[3]	51.0	55.9	58.8	62.6	66.4	69.1	71.0	72.8	75.6	77.0	78.6	80.2	81.6
보급률2 (%)[2]	전국	97.4	97.7	97.9	98.1	98.5	98.6	98.8	98.9	99.1	99.2	99.3	99.3	99.4
	특 · 광역시	99.5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100.0	100.0	100.0	100.0
	농어촌	61.6	85.4	86.7	88.2	90.2	91.5	92.3	92.7	94.3	94.8	95.4	95.6	95.9

주: 1) 수도사업자에 의한 급수 인구를 이용한 보급률
2)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보급률
3) 농어촌 보급률은 면지역 보급률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2021 상수도통계, 각 연도

그림 13-14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2021)

(단위: %)



주: 보급률[1]은 수도사업자에 의한 급수 인구를 이용한 보급률이며, 보급률[2]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보급률임.
자료: 환경부, 2021 상수도통계, 2022 (http://kosis.kr에서 2023.04.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상수도통계	1975	2021	1년

06
대 표

하수도 보급률

Total public sewerage(% of resident population connected to wastewater collecting system)

지표 정의

하수도 보급률은 총인구 중 하수처리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도로 배출할 수 있고, 동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용 개시가 공시된 구역을 말한다. 따라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또는 관할 행정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없지만 타 지역에 설치된 처리장으로 유입 · 처리하는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이다.

• 하수도 보급률은 해당 지역의 수질 환경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text{하수도 보급률} = \frac{\text{하수처리구역 내 인구}}{\text{총인구}} \times 100$$

표 13-5 하수도 보급률 (200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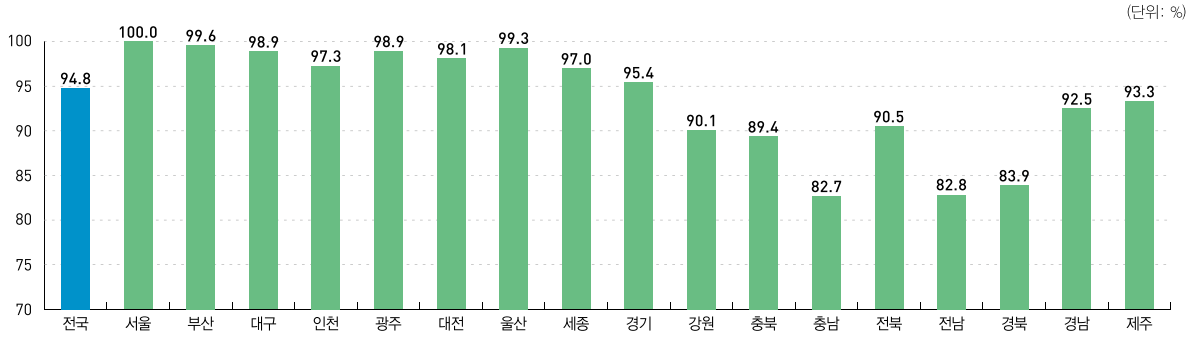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인구	49,053	49,268	49,624	50,034	50,394	50,644	51,435	51,717	51,881	52,127	52,419	52,672	52,858	52,950	53,073	53,122	52,975	52,733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39,924	41,157	42,450	43,569	44,631	45,264	46,358	47,034	47,538	48,016	48,507	48,925	49,275	49,546	49,834	50,075	50,081	49,968
공공하수처리 인구	39,680	40,910	42,175	43,286	44,343	44,972	46,060	46,710	47,202	47,672	48,151	48,571	48,944	49,171	49,451	49,701	49,641	49,566
폐수종말처리 인구	245	247	275	283	288	292	297	324	336	344	356	355	332	183	198	187	189	192
하수도 보급률	81.4	83.5	85.5	87.1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93.6	93.9	94.3	94.6	94.8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그림 13-15 시도별 하수도 보급률 (2021)

(단위: %)



자료: 환경부, 2021 하수도통계,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21	1년

표 13-6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 (200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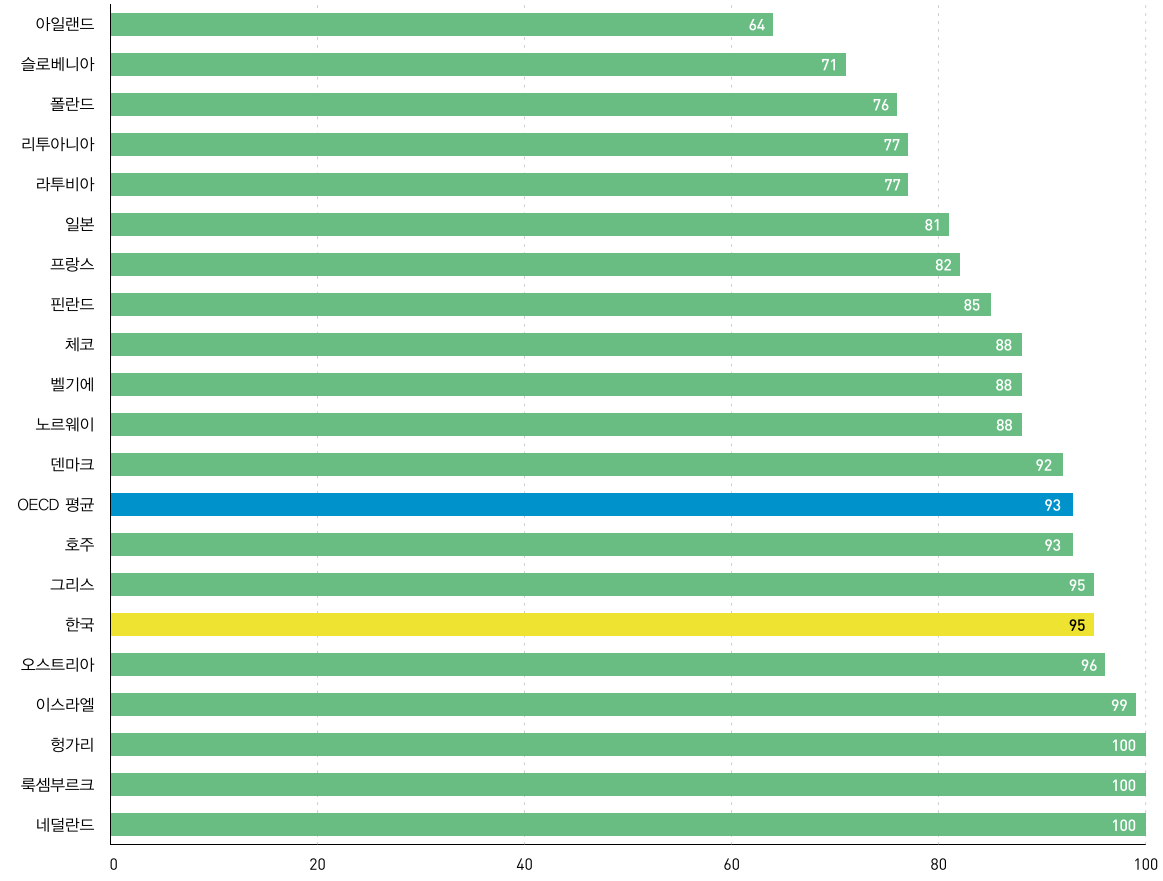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보급률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93.6	93.9	94.3	94.5
도시 보급률	93.4	93.8	94.2	94.6	94.9	95.0	95.1	95.5	95.8	96.0	96.2	96.4
농어촌 보급률	52.0	55.2	59.5	62.1	63.7	65.9	67.1	68.7	70.0	71.8	73.3	74.6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그림 13-16 OECD 주요국의 하수도 보급률 (2021)

(단위: %)



주: OECD 회원국 중 2021 하수도 보급률 수치가 있는 국가 선정
자료: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http://stats.oecd.or.kr에서 2023.04.25. 인출)

06-1
연 관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Population connected to tertiary sewerage treatment facility

지표 정의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이란 행정구역의 총인구 대비 고도처리가 이루어지는 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다. 여기서 고도처리란 질소, 인까지 하수처리하는 방법으로 3차 처리라고도 한다.

• 하수의 고도처리는 수질관리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frac{\text{3차 처리 인구}}{\text{행정구역의 총인구}} \times 100$$

표 13-7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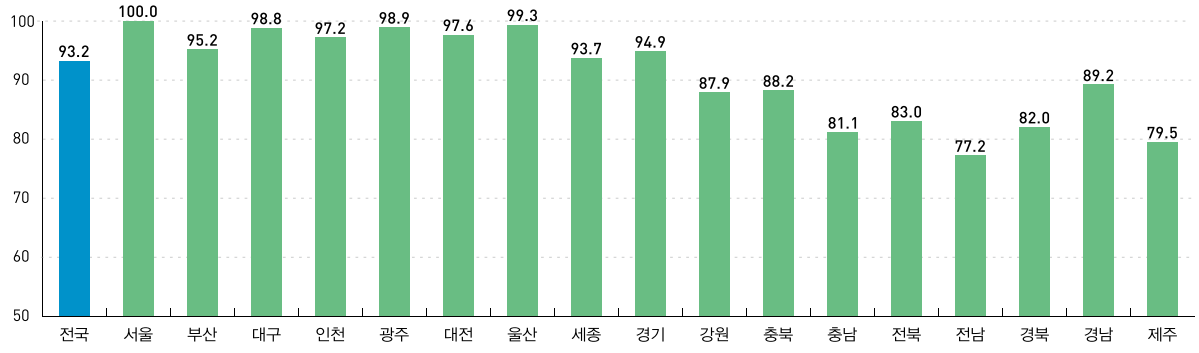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54.1	58.2	59.9	81.6	82.8	84.0	88.6	90.9	90.5	92.5	93.5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3.04.24. 인출)

그림 13-17 시도별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2021)

(단위: %)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3.04.2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21	1년

06-2
연 관

하수도 설치율

Total public sewage & sewerage installation rate

지표 정의

하수도 설치율은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하수관로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하수도 설치율은 공공하수처리 인구 보급률(하수도 보급률)과 계획연장 대비 시설연장을 의미하는 하수관로 보급률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공공하수처리 인구 보급률(\%)} \times \text{하수관로 보급률(\%)}}{100}$

표 13-8 하수도 설치율 (200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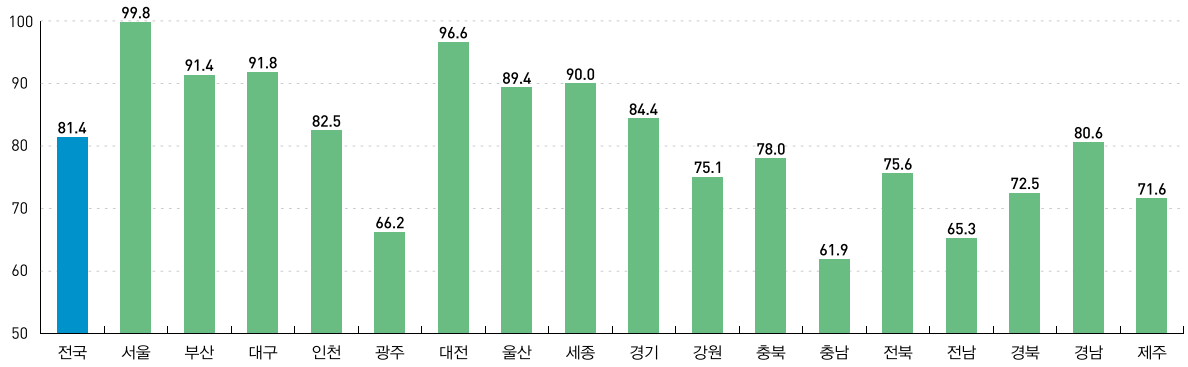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하수도 보급률	85.5	87.1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93.6	93.9	94.3	94.5
하수관로 보급률	64.5	66.1	67.8	75.4	78.0	73.4	75.8	76.5	77.8	79.9	80.0	80.7	81.8	82.3	82.8
하수도 설치율	55.2	57.6	60.0	61.6	64.3	66.7	69.5	70.5	72.0	74.2	74.8	75.4	76.8	77.6	78.2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그림 13-18 시도별 하수도 설치율 (2021)

(단위: %)



자료: 환경부, 2021 하수도통계, 2022 (http://kosis.or.kr에서 2023.04.2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20	1년

07
대 표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Recycling rate of municipal waste

지표 정의

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총 생계활폐기물 중에서 별도로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시설로 반입 처리된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 폐기물은 발생량과 더불어 처리과정도 중요하다. 환경정책 차원에서는 재활용률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재활용량}}{\text{생활계폐기물 발생량}} \times 100$

표 13-9 생활계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 (201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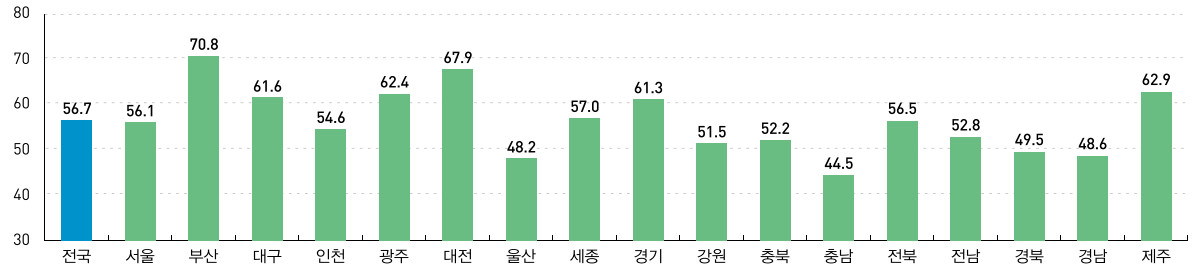
(단위: 만 톤/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량	1,871	1,963	1,952	2,045	2,116	2,254	2,270
매립	282 (15.1)	289 (14.7)	264 (13.5)	275 (13.4)	268 (12.7)	265 (11.8)	292 (12.9)
소각	481 (25.7)	497 (25.3)	486 (24.9)	502 (24.6)	545 (25.7)	575 (25.5)	564 (24.9)
재활용	1,108 (59.2)	1,177 (60.0)	1,202 (61.6)	1,268 (62.0)	1,263 (59.7)	1,342 (59.5)	1,287 (56.7)
기타	- -	- -	- -	- -	40 (1.9)	72 (3.2)	127 (5.6)

주: 1) 생활계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2) ()는 각 연도별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별 비중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각 연도

그림 13-19 시도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 (2021)

(단위: %)



주: 생활계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자료: 환경부, 2021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1993	2021	1년

07-1
연 관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Municipal waste generation per capita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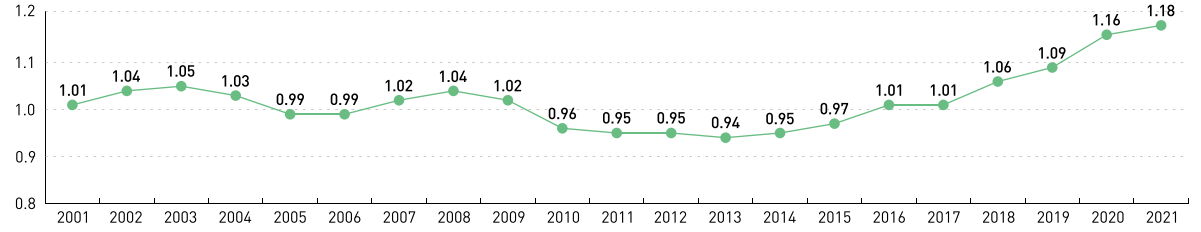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합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생활계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text{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인구}}$

그림 13-20 생활계폐기물 1일 1인당 발생량 (200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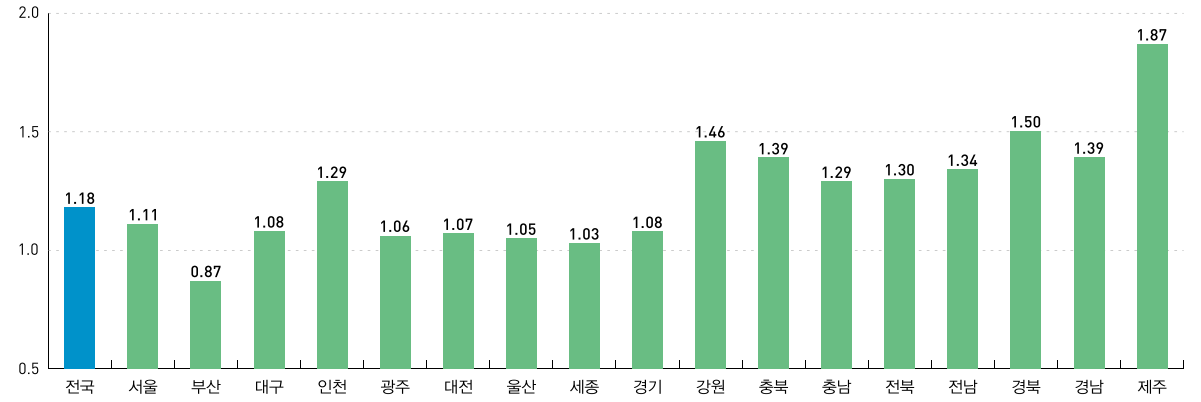
(단위: kg/일/인)



주: 생활계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각 연도

그림 13-21 시도별 1일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021)

(단위: kg/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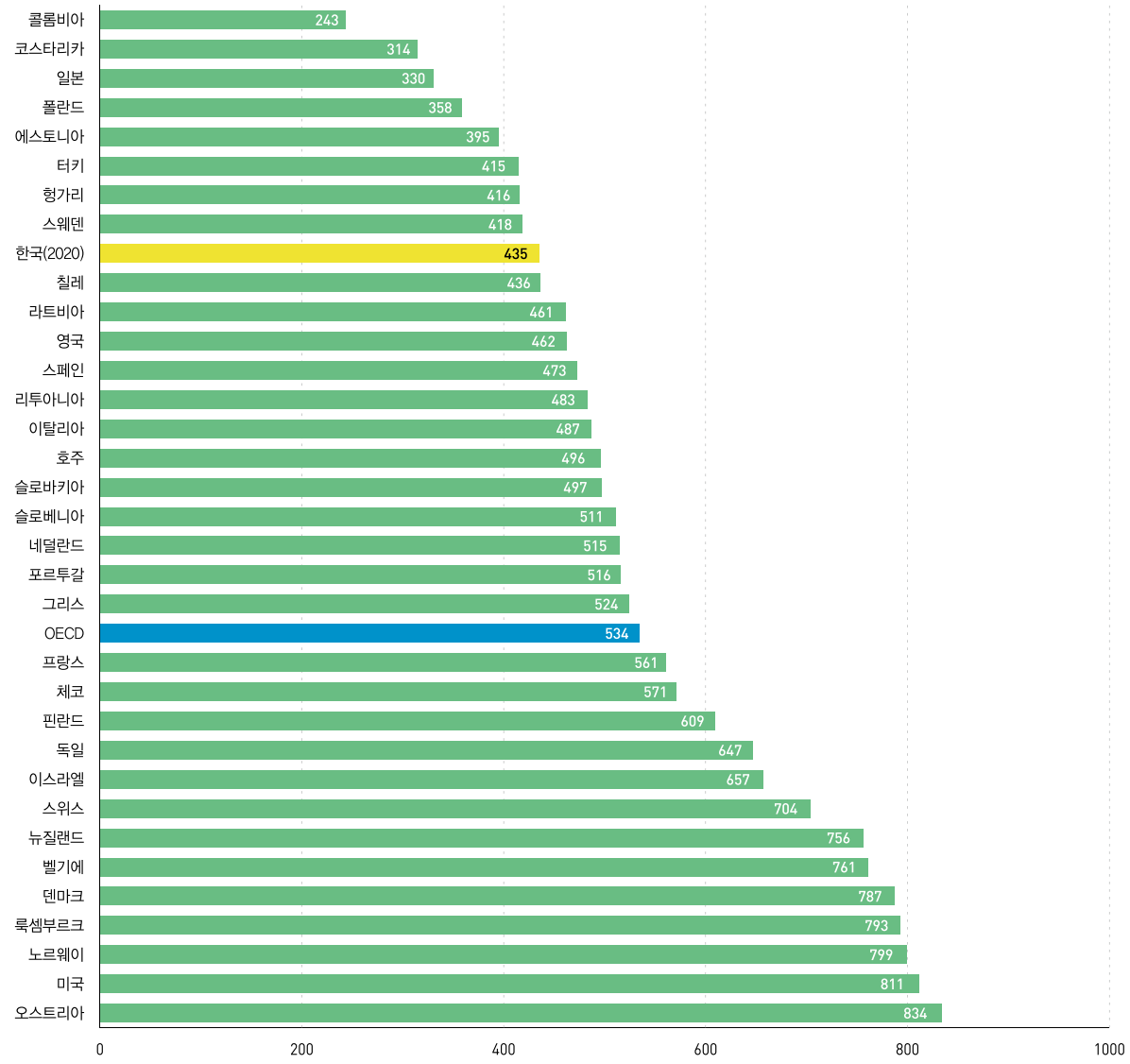
주: 생활계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자료: 환경부, 2021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1993	2021	1년

그림 13-22 OECD 국가의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021)

(단위: kg/년/인)



주: 2021년 자료가 없는 경우 OECD에 제출된 최근 연도 자료를 활용 (한국은 2020년 자료)
자료: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2021 (http://stats.oecd.org에서 2023.04.25. 인출)

08
대 표

환경성질환자 수

Number of patients with environmental disease

지표 정의

환경성질환자 수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수이며, 환경성질환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의 3개 질환을 포함한다.

측정 산식

• 합계 = 알레르기비염(J30) + 아토피피부염(L20) + 천식(J45~46) 질환자 수

표 13-10 항목별 환경성질환자 수 (200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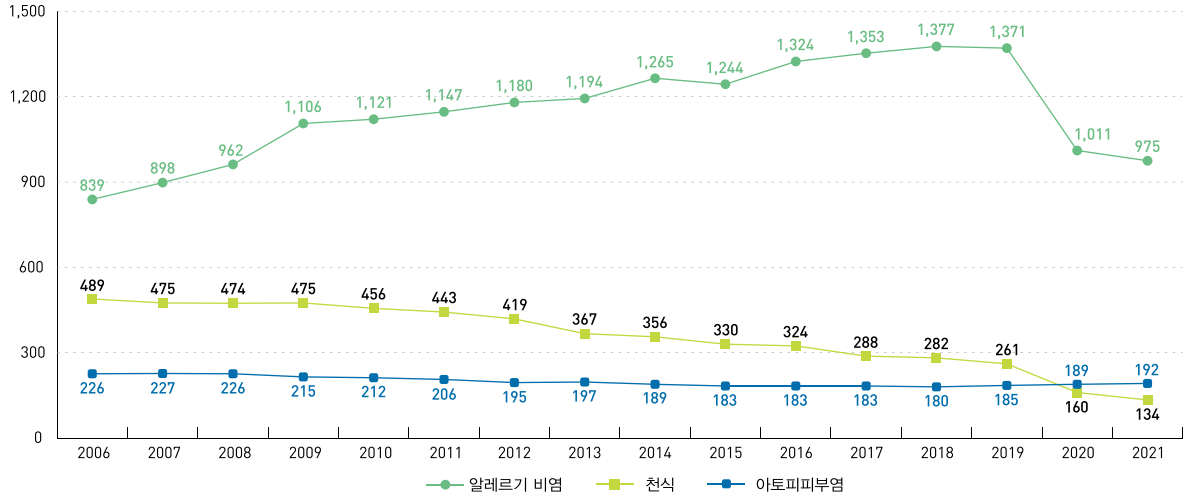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4,292	4,633	5,379	5,482	5,652	5,862	5,968	6,368	6,280	6,723	6,892	7,034	7,047	5,189	6,010
아토피피부염(L20)	1,086	1,090	1,048	1,039	1,013	971	983	951	925	930	934	918	949	973	988
천식(J45) 및 천식 지속	2,270	2,282	2,310	2,230	2,182	2,080	1,833	1,789	1,668	1,644	1,466	1,438	1,341	822	688
합계	7,648	8,005	8,737	8,751	8,848	8,912	8,784	9,108	8,874	9,297	9,292	9,390	9,337	6,983	6,373
순계	6,873	7,165	7,821	7,825	7,918	8,006	7,936	8,265	8,081	8,483	8,538	8,648	8,611	6,523	6,251

주: 순계 =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총합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3-23 인구 1만 명당 주요 환경성질환자 수 (2006~2021)

(단위: 명, 인구 1만 명당)



주: 1만 명당 환자 = 환자 수/건강보험 연말 적용인구 × 10,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 (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 (내부자료)	1994	2021	1년

14

사회재정

01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0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04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05 공적연금수지
06 고용 · 산재보험수지
07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08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재원배분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사회보장 지출 구조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공적연금수지	
	고용 · 산재보험수지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국제비교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01
대 표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Central government spend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 of CG total spending)

지표 정의

국가의 16대 예산 분야 중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국가 총지출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규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측정 산식

$$\frac{\text{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text{국가 총지출}} \times 100$$

유의사항 국가란 행정주체로서의 중앙정부를 의미하며, 국가재정은 중앙부처 소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예산과 결산상 지출 규모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표 14-1 국가 분야 · 부문별 지출 (2019~2022)

(단위: 조 원, 억 원, %)

	2019	2020	2021	2022
사회복지 · 보건[A]	161.0	180.5	199.7	217.7
국가총지출[B]	469.6	512.3	558.0	607.7
비중[A/B]	34.3	35.2	35.8	35.8
[사회복지, 억 원]	1,488,769	1,670,210	1,849,420	1,949,261
기초생활보장	127,046	139,659	153,243	167,638
취약계층지원	34,019	39,603	45,132	47,884
공적연금	12,958	14,215	13,710	9,473
보훈	81,297	85,127	85,582	91,827
주택	10,475	10,950	12,001	14,289
사회복지일반	139,776	166,323	188,723	204,592
아동 · 보육	257,309	297,314	335,184	358,263
노인	503,116	554,491	600,408	629,823
여성 · 가족 · 청소년	55,588	57,345	58,866	59,308
고용	194,598	222,759	258,402	259,383
노동	67,138	77,133	92,595	100,736
고용노동일반	5,449	5,291	5,574	6,045
[보건, 억 원]	121,203	135,218	148,006	227,125
보건의료	25,930	27,694	34,232	101,264
건강보험지원	90,187	101,956	107,688	119,242
식품의약안전	5,086	5,568	6,086	6,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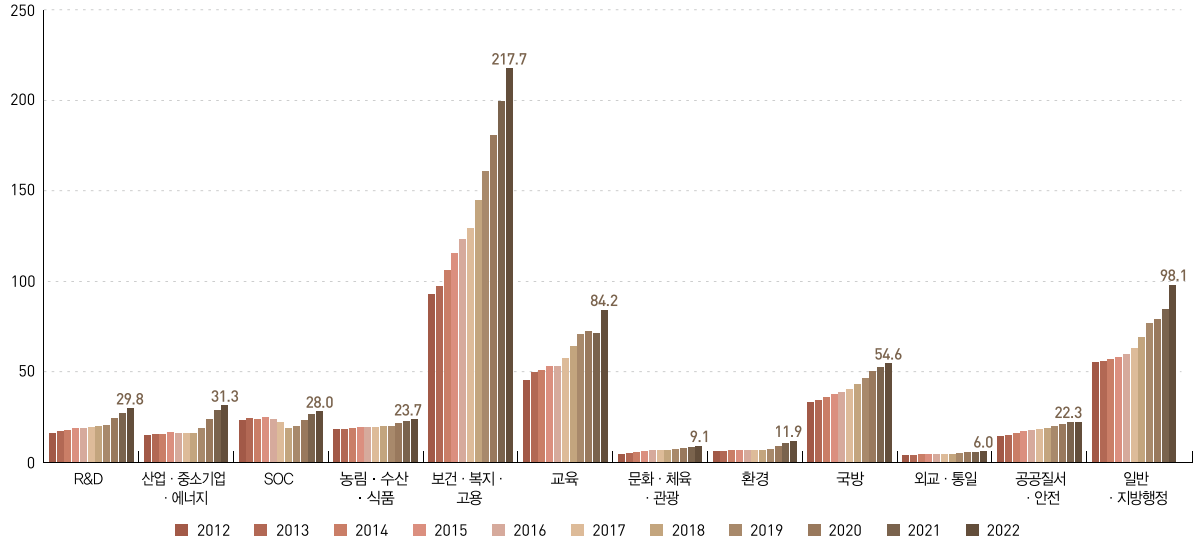
주: 본예산 기준, 2019년 이후 분류체계 개편 및 세분화되어 2019년 이후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2009	2022	1년

그림 14-1 국가 분야별 재원배분 (2012~2021)

(단위: 조 원)



주: 그래프 안의 수치는 2022년도 본예산 규모임.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연도

02
대 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Local government sepnd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 of LG total spending)

지표 정의

지방자치단체* 13대** 예산분야 중 사회복지 · 보건 지출 비중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 보건 지출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재정 규모를 파악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측정 산식

$$\frac{\text{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text{지자체 예산 규모}} \times 100$$

유의사항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일반재정(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과 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지자체 일반재정 중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를 기준으로 지표를 작성하였다. 예산순계는 자치단체 내 회계 간(일반회계 – 특별회계) 내부거래,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 중복계상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국 및 시도별 재정 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 이전을 비롯하여 지자체 및 회계 간 복잡한 재정 관계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빈번한 추경편성이 이루어지므로 당초 예산과 최종예산, 그리고 예산과 결산상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최종예산의 편성이나 결산정보가 상대적으로 늦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과의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출했다.
한편, [지표 14–1]과 [지표 14–2]의 행정주체별 지출 규모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재정 이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각 지출 규모를 단순 합산하거나 그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보장지출 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2 지방자치단체 분야 · 부문별 세출 (2013~2022)

(단위: 조 원, 억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증가율
사회복지 · 보건[A]	37.3	42.5	46.8	49.5	52.6	60.7	69.9	79.1	89.3	93.9	5.2
지자체예산규모[B]	156.9	163.6	173.3	184.6	193.2	210.7	231.0	253.0	263.0	288.0	9.5
비중[A/B]	23.8	26.0	27.0	26.8	27.2	28.8	30.3	31.3	33.9	32.6	-3.9
[사회복지,억 원]	349,921	400,832	440,629	466,075	494,509	571,293	661,588	751,015	848,858	880,572	3.7
기초생활보장	102,700	103,231	105,279	111,722	114,787	126,262	146,194	160,332	172,728	190,822	10.5
취약계층지원	47,401	52,644	57,547	62,253	66,796	77,318	91,196	107,375	117,100	129,344	10.5
보육 · 가족 · 여성	98,688	118,631	116,017	121,192	127,708	148,312	167,595	178,546	184,633	195,970	6.1
노인 · 청소년	76,976	102,545	134,884	142,234	149,433	180,278	208,730	241,287	267,557	290,682	8.6
노동	6,481	6,664	6,792	7,212	8,879	12,147	13,836	17,787	19,271	21,706	12.6
보훈	2,465	2,475	2,782	3,407	3,683	4,599	5,278	5,990	6,239	7,080	13.5
주택	11,655	10,164	12,640	13,019	17,090	14,888	19,633	28,578	25,821	30,730	19.0
사회복지일반	3,554	4,478	4,689	5,036	6,135	7,489	9,126	11,115	11,418	14,238	24.7
[보건,억 원]	23,323	24,139	26,935	29,123	31,505	35,217	37,002	40,057	44,091	58,282	32.2
보건의료	22,699	23,415	25,935	27,965	30,063	33,678	35,453	38,327	42,282	56,257	33.1
식품의약안전	624	724	1,001	1,158	1,442	1,538	1,549	1,729	1,809	2,025	11.9

주: 당초 예산(순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1997(2008년 기능분류체계 개편)	2022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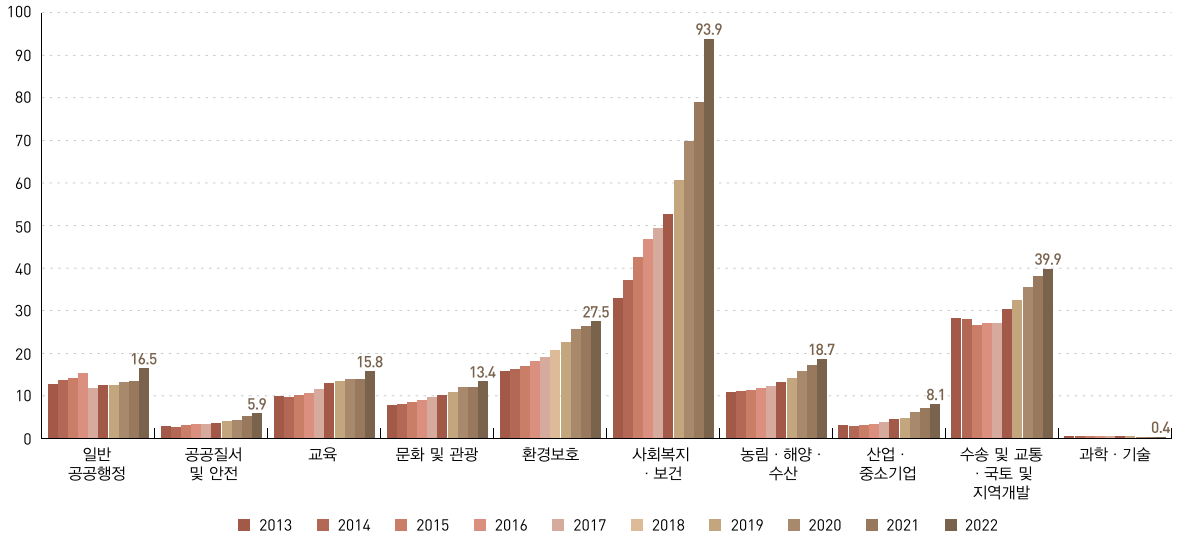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17개)와 기초자치단체(226개)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이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된다.

** 2014년부터 기존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 [지표 14–2]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기초한 것으로 지표명이나 설명에 '지출' 대신 '세출'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나, [지표 14–1]는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과 관련한 재정 범위가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에 기준한다는 점에서 세출 대신 지출로 표기하였고, 지표 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세출' 대신 '지출'을 사용한다.

그림 14-2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재원배분 (2013~2022)

(단위: 조 원)



주: 1) 당초 예산(순계) 기준
2) 그래프 안의 수치는 2022년도 예산 규모임.
3)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합계지출 규모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각 연도

03
대 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Subsidy spending ratio of local government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지표 정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관련 사업의 유형과 지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보조사업비 규모}}{\text{지자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세출 예산}}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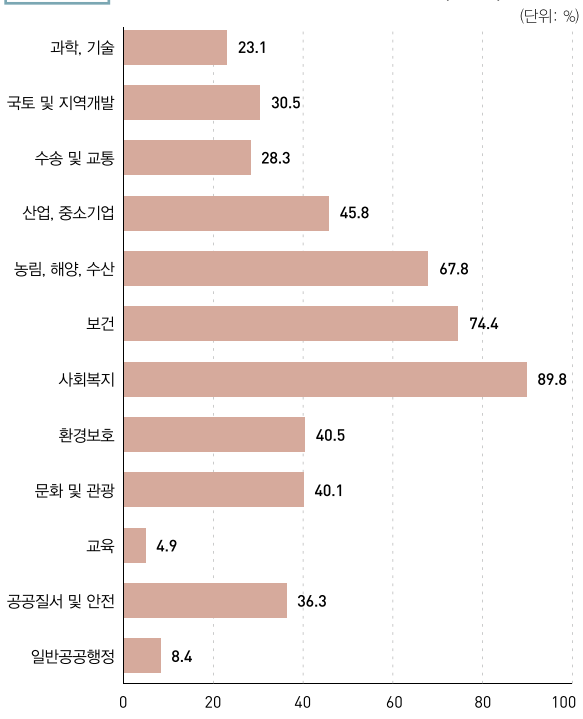
표 14-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2022)

(단위: 억 원, %)

구분	보조사업 (A)	자체사업 (B)	보조사업 비중 [A/(A+B)]	2020년도 보조사업 비중
지자체 예산	1,324,657	1,077,127	55.2	55.3
사회복지 · 보건	834,570	97,673	89.5	90.0
사회복지	791,184	82,869	90.5	91.1
기초생활보장	186,892	3,477	98.2	98.2
취약계층지원	112,633	15,745	87.7	88.6
보육 · 가족 · 여성	182,536	13,223	93.2	93.4
노인 · 청소년	262,981	27,476	90.5	91.3
노동	12,326	9,044	57.7	59.4
보훈	2,902	4,178	41.0	42.9
주택	20,355	6,117	76.9	76.2
사회복지일반	10,557	3,609	74.5	77.8
보건	43,386	14,804	74.6	71.6
보건의료	41,873	14,296	74.5	71.4
식품의약안전	1,513	508	74.9	75.1

주: 1) 당초 예산(순계) 기준
2) [지표 14-2] 분야 부문별 예산 규모와 차이는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 등이 제외되기 때문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2022

그림 14-3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보조사업 비중 (2022)



주: 당초 예산(순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1997(2008년 기능분류체계 개편)	2022	1년

04
대 표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Government spending on major social welfare programs

지표 정의

사회복지 분야 주요 예산사업 즉,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재정 규모를 의미하며, 국가-지자체 간 분담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생계 · 해산 · 장제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국비+지방비 합계와 신설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을 합산한 것임.

표 14-4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현황 (2022)

(단위: 억 원)

구분	계(A)	국비(B)	지방비	국가분담률(B/A)
합계	505,683	403,101	102,582	79.7%
기초생활보장	199,669	156,814	42,855	78.5%
생계 · 해산장제급여	63,744	52,996	10,748	83.1%
주거급여	26,422	21,364	5,058	83.1%
교육급여	1,468	1,222	246	83.1%
의료급여	108,035	81,232	26,803	75.7%
장애인연금	12,420	8,323	4,097	67.0%
장애수당	2,123	1,424	699	67.0%
기초연금	199,926	161,140	38,786	80.5%
영유아보육료(0~2세)	45,864	32,028	13,836	69.5%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290	38,290	0	100.0%
가정양육수당	7,391	5,082	2,309	68.4%

주: 1) 세출규모는 예산 기준임.
2)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육부 소관) 세출규모만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2022 나라살림예산(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내부자료), 국토교통부(내부자료), 교육부(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주요 사회복지 예산 (내부자료)	-	2022	1년

05
대 표

공적연금수지

Fiscal balance of public pension funds

지표 정의

4대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상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회수 및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수지차의 합계로 정의한다.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건전성과 국가지원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4대 공적연금 경상수입(자체수입+경상이전수입)–경상지출(사업비지출+기금운영비)

유의사항 동 지표는 실적이 아닌 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표 14-5 4대 공적연금기금 운용계획 (2022)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수지차[A+B–D–E]	272,467	422,482	-124,888	-28,921	3,794
[조달]	1,745,525	1,307,422	267,951	37,212	132,940
자체수입(A)	901,765	737,131	97,670	7,493	59,471
기여금(보험료) 수입	641,453	531,353	64,974	7,194	37,932
이자 및 재산수입 등[1]	260,156	205,778	32,696	143	21,539
경상이전수입(B)	525	-	-	156	369
정부내부수입(C)	181,265	103	142,065	29,220	9,877
국가부담금[2]	113,768	-	101,341	12,427	-
보전금	57,507	-	40,714	16,793	-
전입금[3]	9,990	103	10	-	9,877
공공자금예탁원리금 및 이자	-	-	-	-	-
여유자금회수	662,127	570,188	28,216	500	63,223
[운용]	1,745,525	1,307,422	267,951	37,212	132,940
사업비(D)	623,060	309,190	221,805	36,557	55,508
급여지출	589,870	306,085	201,300	36,557	45,928
경상지출[4]	3,467	2,606	159	-	702
융자지출[5]	22,554	499	13,177	-	8,878
자본지출[6]	7,169	-	7,169	-	-
기금운영비(E)	6,763	5,459	753	13	538
정부내부지출[7]	1,260	-	774	-	486
여유자금운용	1,114,442	992,773	44,618	643	76,408

주: 1)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잡수입 및 융자원금 회수 포함;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융자원금 회수 및 민간차입금 포함
2)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지자체부담금 포함
3)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대여장학금 수탁금 및 운영부담금 포함;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국가부담금 포함
4)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복지타운운영비, 기금운용본부운영비 및 기타사업 포함;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차입금원리금 상환 및 국민주택기금 예탁금 포함; 군인연금기금의 경우, 공자기금예탁 포함
5)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포함;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대부사업운영 포함;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생활자금대여 및 학자금대여 포함
6)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주택사업운영, 시설사업운영 및 통합전략시스템 포함
7)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국고학자금대여반환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경제 · 재정수첩 p.262, 수정 인용(원자료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2022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안(내부자료)	-	2022	1년

06
대 표

고용 · 산재보험수지

Fiscal balance of the employment·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unds

지표 정의

고용 · 산재보험수지는 근로안전망으로 6개 사회보장성 기금을 구성하는 고용 · 산재보험의 재정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고용 · 산재보험기금 경상수입(보험료 + 기타) – 경상지출(사업비 + 기금관리비 등)

표 14-6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 현황 (2021)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차[A+B–C–D]	Δ78,247	Δ67,741	Δ10,506
[조달]	404,799	244,966	159,833
보험료(A)	218,481	142,836	75,644
기타(B)	19,632	0	19,632
정부내부수입(전입금)	71,238	57,238	14,000
여유자금회수	98,556	47,999	50,557
[운용]	407,907	248,073	159,834
사업비(C)	284,604	208,551	76,054
기금관리비 등(D)	31,756	2,027	29,729
여유자금운용	91,547	37,496	54,051

주: 2021년도 결산 기준임.
자료: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 p.11. 수정 인용
산재보험: 고용노동부, 2021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p.203–206. 수정 인용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 현황	2006	2021	1년

07
대 표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Fiscal balance of the national health and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지표 정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정의되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상수입(보험료 + 기타) – 경상지출

표 14-7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결산 현황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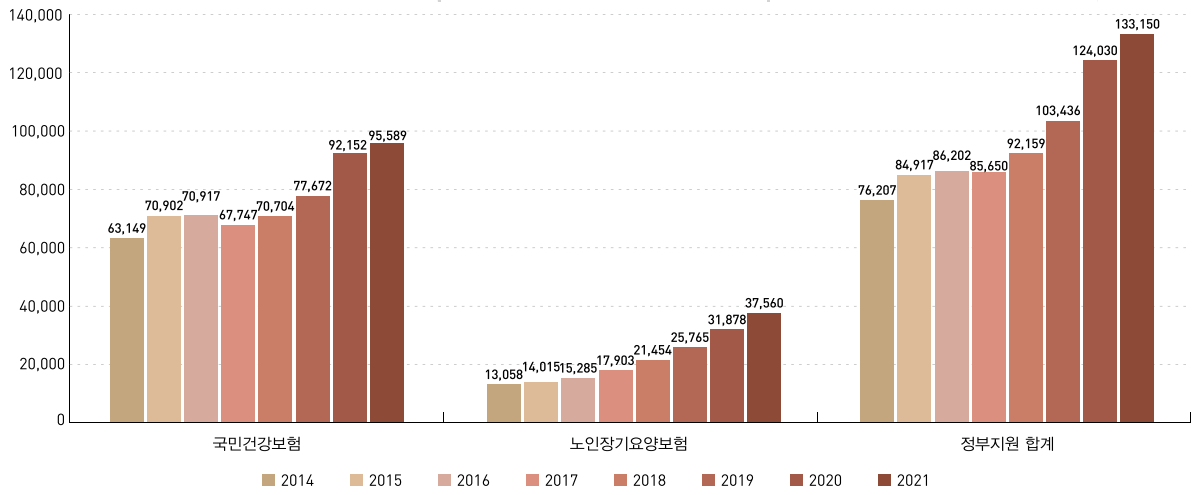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지차[A–B]	Δ37,902	Δ27,571	Δ10,332
[수입]	934,600	817,082	117,519
보험료 및 기타(A)	801,451	721,492	79,958
정부지원	133,150	95,589	37,560
[지출] (B)	896,698	789,511	107,187

자료: 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그림 14-4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규모 (2014~2021)

(단위: 억 원)



주: 2014~2021 결산기준
자료: 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1	2021	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08	2021	1년

08
대 표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Composition of public social expenditure(SOCX)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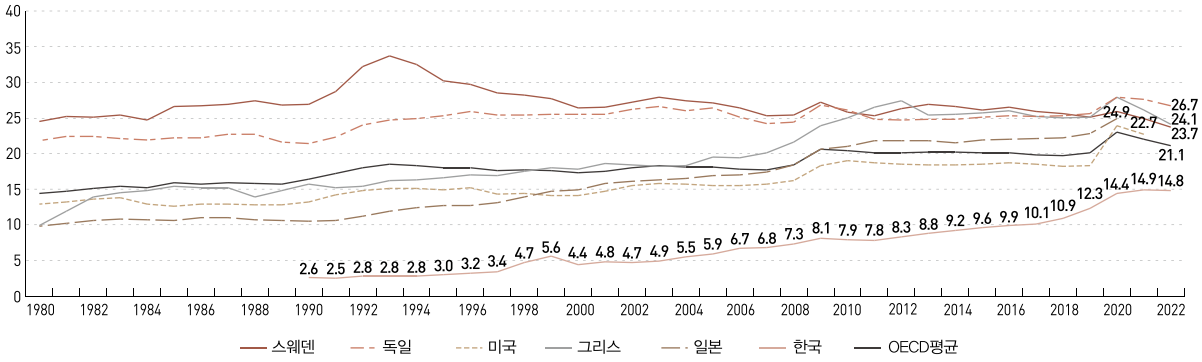
공공사회지출은 명목 GDP 규모 대비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중으로 국가 간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측정 산식

- $\frac{Public\ SOCX}{명목\ GDP} \times 100$

그림 14-5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198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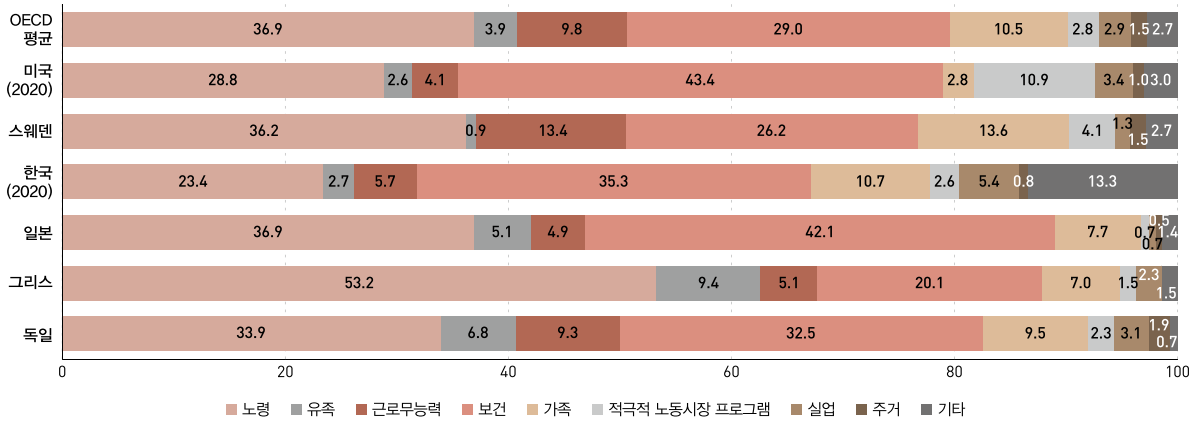
(단위: 명목 GDP 대비 %)



주: SOCX의 각국 자료 범위는 1980~2022년, 1980~2019년은 확정치, 2020~2022년은 예측치(단, 일본은 2017년까지, 한국은 1990년 이후 자료)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에서 2023.04.13. 인출)

그림 14-6 공공사회지출 구조 국제비교 (2019 혹은 최신 연도)

(단위: 공공사회지출 대비 %)



주: 1) 각 국 SOCX 9대 영역별 GDP 대비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를 합하여 영역별 분율을 계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
2) 한국과 미국은 2020년도 자료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에서 2023.04.13.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발표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1990	2020 (확정치 '80~'18, 예측치 '19~'20)	2년

표 14-8 9대 영역별 공공사회지출 (1990~2020)

(단위: 백만 원)

연도	합계	공공사회지출								
		1.노령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1990	5,300,288	1,165,749	374,101	486,647	2,827,892	59,886	50,690	-	-	335,323
1991	6,173,644	1,470,571	510,848	676,336	3,047,700	88,738	43,613	-	-	335,837
1992	7,675,829	2,028,385	581,111	858,382	3,665,683	110,865	103,162	-	-	328,241
1993	8,948,860	2,660,554	610,600	879,358	4,141,643	153,824	144,042	-	-	358,840
1994	10,556,695	3,316,754	725,579	1,137,271	4,715,003	184,860	114,439	-	-	362,789
1995	13,167,906	4,372,921	811,946	1,324,006	5,774,227	261,762	168,119	-	-	454,926
1996	15,519,434	4,650,867	915,671	1,549,479	7,291,890	337,352	183,633	10,459	-	580,084
1997	18,440,043	5,458,158	1,035,923	1,862,131	8,482,750	428,714	359,558	78,737	-	734,072
1998	25,340,693	8,930,747	1,058,084	1,887,317	9,612,703	548,994	1,627,392	799,415	-	876,042
1999	33,253,240	13,004,910	1,072,284	1,756,747	11,229,380	530,003	3,265,765	936,163	-	1,457,988
2000	28,752,016	7,570,329	1,247,962	2,095,087	12,782,221	664,909	2,313,351	470,792	-	1,607,364
2001	33,852,286	6,714,835	1,361,495	2,509,899	17,510,247	941,250	1,428,835	845,109	-	2,540,617
2002	36,519,738	7,324,597	1,570,839	2,989,398	18,468,439	1,017,929	1,342,499	834,948	-	2,971,089
2003	41,404,583	8,785,190	1,860,768	3,586,355	20,749,650	1,268,122	931,917	1,030,304	-	3,192,276
2004	50,287,246	10,706,653	2,058,380	4,485,396	22,614,681	1,654,245	938,848	1,448,306	-	6,380,738
2005	56,295,845	12,183,883	2,254,962	4,942,264	25,214,716	2,131,329	1,022,514	1,751,974	-	6,794,203
2006	67,367,467	13,546,495	2,510,647	5,520,371	29,334,113	4,753,167	1,074,230	2,074,004	-	8,554,438
2007	73,899,687	15,525,965	2,790,585	6,009,967	32,852,515	4,540,474	1,255,823	2,434,033	-	8,490,325
2008	83,844,436	19,446,695	3,008,426	6,672,889	35,671,296	6,241,375	2,606,232	2,865,256	-	7,332,268
2009	97,263,139	21,348,690	3,281,683	7,104,927	41,245,422	7,823,589	4,961,445	4,116,404	-	7,380,979
2010	103,962,371	23,686,227	3,589,646	6,633,875	46,447,780	8,850,262	3,815,149	3,686,529	-	7,252,902
2011	108,526,687	25,378,967	3,923,011	7,245,329	48,874,078	9,349,951	3,308,486	3,561,353	-	6,885,510
2012	119,953,845	29,195,474	4,223,476	7,916,355	50,928,968	12,002,439	4,495,698	3,676,665	-	7,514,770
2013	132,453,110	31,478,367	3,989,739	8,097,000	54,234,013	17,155,870	5,248,351	3,883,507	-	8,366,262
2014	143,638,953	36,670,451	4,354,975	8,314,408	58,006,819	17,556,828	5,365,912	4,156,137	-	9,213,422
2015	159,767,425	42,347,984	4,822,168	9,206,109	63,265,137	18,693,283	5,538,555	4,547,336	410,760	10,936,094
2016	171,811,916	44,986,564	5,146,743	9,750,761	69,235,135	19,178,613	6,051,662	4,895,396	1,125,866	11,441,177
2017	185,526,941	49,021,923	5,941,346	11,019,111	75,553,210	20,245,518	5,454,739	5,264,784	1,177,524	11,848,786
2018	206,806,618	53,394,479	6,504,697	12,168,502	83,643,363	22,395,079	6,856,095	6,737,845	1,465,547	13,641,011
2019	235,925,478	59,362,911	7,038,219	13,629,452	93,265,432	26,437,218	7,086,752	8,545,515	1,762,549	18,797,430
2020	279,336,546	65,478,254	7,445,991	15,841,074	98,652,969	30,025,319	7,290,996	15,140,796	2,186,170	37,274,978

주: 1) 1990~2019년은 확정치이며, 2020년은 예측치임.
2) 각 항목은 반올림되어 있어, 합계와 맞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에서 2023.02.23. 인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Social Security Factbook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지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황안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소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박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디자인 좋은PR소야 070-4616-4040



Social Security Factbook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